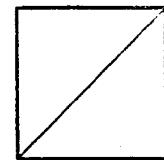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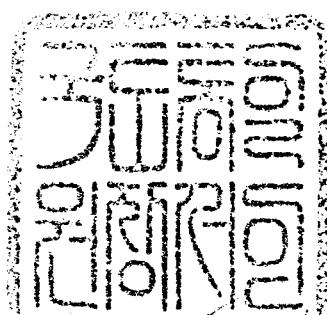
3882  
3401925

국통조76-12-32



分斷國－調查研究

# 東・西独 基本條約에 관한判例



동서독판례  
동서독기본조약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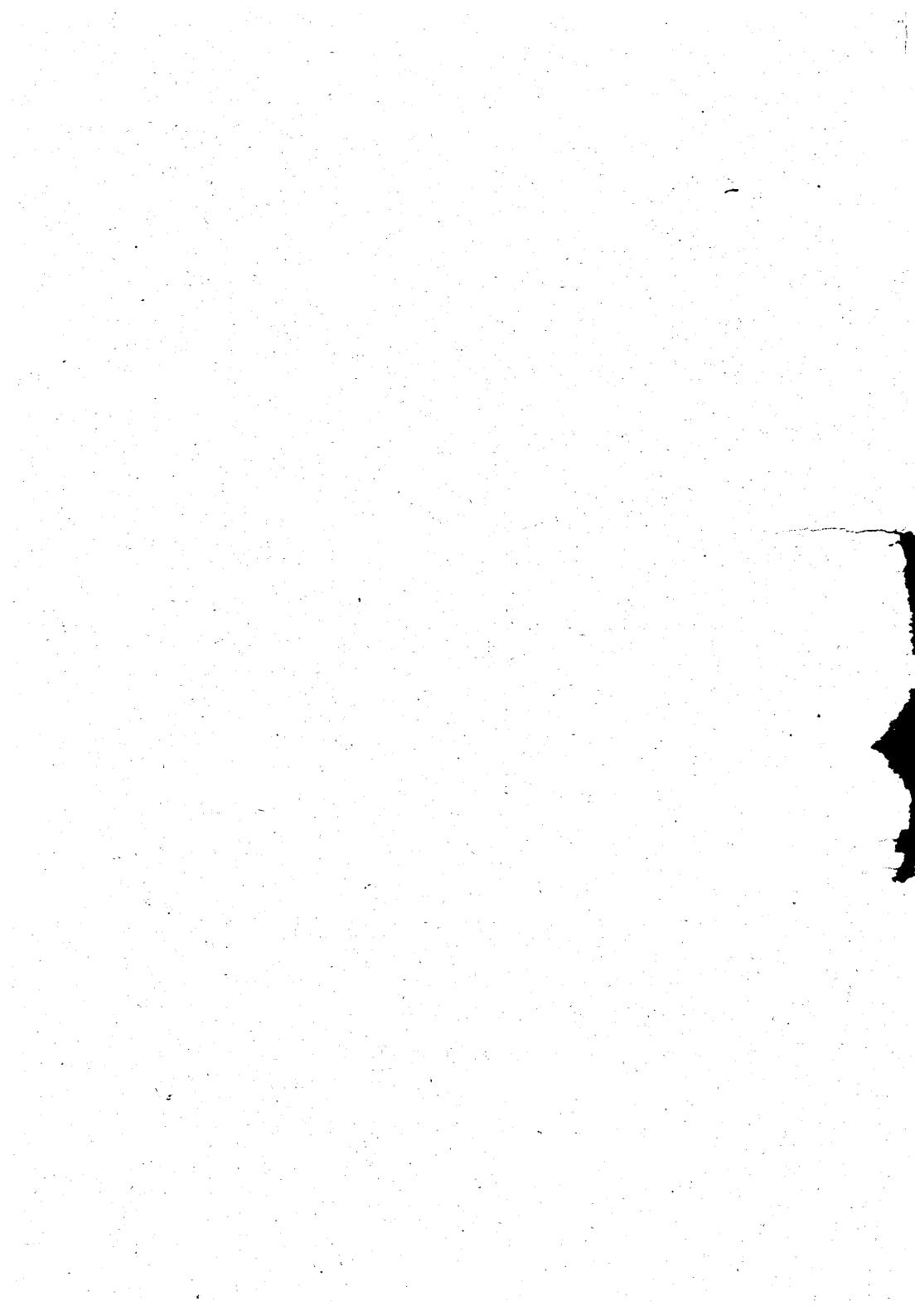
이 冊子는 国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拠하여 翻訳出刊한  
分斷國關係 文獻으로써 統一問題에 関聯된 研究에 參考資料로 提  
供되는 것임

### 分斷國調査研究

東西獨 基本條約에 関한 判例

刊行責任 羅 昌 柱 研究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査 研 究 室



獨逸聯邦憲法裁判所斗 共同으로 公報部 및 情報部 発行。

編 輯： 法務部長官 Peter Gielen 斗 公報 및 情報部長

Haus Pollmann.



## 目 次

序 言	1
A. 1973年5月22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에 관한 裁判節次	3
I. 1973年5月22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	3
II. 1973年5月22日 바이에른州政府 首相의 文書	28
III. 1973年5月23日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29
IV. 1973年5月25日의 聯邦法務部長官의 文書	30
V. 73年5月29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32
VI. 1973年5月30日 聯邦法務長官의 文書	33
VII. 1973年6月2日의 聯邦法務長官의 文書	35
VIII. 1973年6月4日의 바이에른州政府 首相의 文書	57
IX. 1973年6月4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	61
X. 1973年6月5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71
B. 1973年6月13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에 관한 裁判節次	72
I. 1973年6月13日의 바이에른州政府 訴訟代理人의 提訴	72
II. 1973年6月14日의 聯邦法務長官의 文書	74
III. 1973年6月15日의 聯邦法務長官의 文書	78
IV. 1973年6月14일의 1973年6月16日에 開催될 口頭審理에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召邀	80

V.	1973年6月16日의 口頭審理에 関한 記錄.....	81
VI.	1973年6月17日의 바이에른州政府首相의 文書.....	83
VII.	1973年6月17日의 바이에른州政府 訴訟代理人의 文書.....	84
VIII.	1973年6月18日의 바이에른州政府首相의 文書.....	86
IX.	1973年6月18日 宣告期日의 記錄 .....	87
X.	1973年6月18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示.....	89
XI.	公 告 .....	95
C.	바이에른州政府 申請에 関한 規範審查公判 .....	96
I.	1973年5月28日字의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 .....	96
II.	1973年5月29日字 聯邦憲法裁判所 合意2部 裁判長의 書信 .....	118
III.	1973年6月5日字의 聯邦法務長官의 書信 .....	120
IV.	1973年6月19日 口頭公判 開催에 対한 聯邦憲法 裁判所의 1973年6月12日字 公告.....	121
V.	第2次 바이에른州政府의 委託에 따른 伯林大教授 뱅그러博士의 書信 .....	122
VI.	바이에른州政府內閣首班의 訴答書面 .....	209
VII.	1973年6月18日付 바이에른州長官의 訴答書面.....	211
VIII.	1973年6月19日付 口頭公判 記錄文書(會議錄).....	237
IX.	1973年7月19日施行 口頭審理關係 当事者 代理人의 書面弁論 .....	253
X.	바이에른州政府 訴訟代理人의 1973年6月25日字 書信....	501

XI. 聯邦法務長官의	1973年6月26日字	書信	575		
XII. 1973年7月3日	裁判期日	公告	578		
XIII. 1973年7月3日字	獨逸聯邦裁判所	判決文	580		
XIV. 1973年7月31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公報處發表	623		
D. 聯邦憲法裁判所	裁判官	로트만博士에	對한 바이에른州政府		
의 1973年5月28日字의	忌避申請	審查	628		
I. 1973年5月28日字의	바이에른州政府의	忌避申請	628		
II. 1973年4月28日字의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新聞記事	630		
III. 1973年5月4日字의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의	讀者欄	投稿	632		
IV. "칼스루해"自民黨	支部黨委員長	"레벤거"博士의			
		讀者의	牘지	634	
V. 바이에른州政府에	보내는	聯邦憲法裁判所의	書信	635	
VI. 1973年5月29日字	바이에른州首相의	書信	637		
VII. 1973年5月29日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	639		
E. 1973年6月15日字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博士에		
	對한	바이에른州政府의	忌避申請에	關한 節次	643
I. 1973年6月15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	643		
II. 1973年6月14日字	"Die Welt"紙의	報道	644		
III.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博士가	칼스루해市議員		
	구우트만에게	보낸	書信	646	

IV. 1973年6月15日의 聯邦法務長官에게 보내는	
聯邦憲法裁判所의 書信 .....	650
V. 바이에른州政府에게 보내는 1973年6月15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의 書信 .....	654
VI. 1973年6月15日字 独逸聯邦共和国 法務長官의 書信 .....	655
VII. 1973年6月16日字의 바이에른州政府首相의 書信 .....	657
VIII. 1973年6月16日字 聯邦憲法裁判所 決定 .....	660

## 序　　言

西独聯邦憲法裁判所法 第1条1項은 「聯邦憲法裁判所는 모든 他憲法機關으로부터 自主独立한 聯邦의 裁判所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 (BVerfG; Bundesverfassungsgericht) 가 憲法의 守護者로서 独逸最高裁判所로서의 地位는 特히 그것이 「基本法 (GG;Grundgesetz) 과 聯邦法과의 形式的 實質的 両立性에 意見 差異나 疑問」을 判決할 때에 두렷하게 나타난다 (GG第93条1項2号).

그와같은 抽象的規範統制의 裁判節次가 1973年 廿, 바이에른 (Bayern) 州政府가 聯邦憲法裁判所에 提起한 西獨(独逸聯邦共和国; BDR;Bundesrepublik Deutschland) 과 東獨(独逸民主共和国; DD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12月21日의 条約에 관한 1973年6月6日의 法律의 合憲性 与否의 審查請求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1973年5月23日 (이때까지 立法府의 条約批准法律에 관한 審議는 아직 終了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날 바이에른州政府는 칼스루해 (Karlsruhe)에 所在하는 聯邦憲法裁判所에 最初의 仮処分申請을 提出하였다) 과 1973年7月31日 (이 날 聯邦憲法裁判所 法廷에서는 第2部 議長이 条約承認法律의 違憲審查의 結果에 대한 同裁判所의 終局判決을 宣告하였다) 사이는 정말 多事多難한 数週日이라 할 수 있었다. 칼스루해에서 있운 이 判決은 비단 本国에서 뿐만 아니

라 全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킨 것 이었다. 그리고 裁判所의 本案判決이 있기 以前에 仮処分申請과 裁判所審判員에 대한 忌避申請 등에 관한 몇몇 重要한 判決이 있었다.

지난 날에 联邦憲法裁判所가 公衆의 非常한 関心을 불러 일으켰던 몇 가지 다른 重要한 判決, 즉 예를 들면 联邦共和国의 유럽防衛共同体參加에 관한 判決, 独逸共產党禁止判決( KPD-Urteil ), Konradat 判決 그리고 T V 争訟事件 等에서와 마찬가지로 本件 基本條約의 訴訟에 관한 記錄을 提示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이 든다. 裁判이 끝난지도 상당한 歲月이 지났다. 테이프에 錄音된 内容을 文字化하고, 各種資料들을 編輯하여 이것을 訴訟에 関与했던 여려분들에게 対照하는 데에 꽤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이와 같은作業은 基本的인 原則下에서 이루어졌다. 즉 嚴密性을 事實性보다優位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 立脚하여 政治에 関心있는 사람들에게나 学界, 또는 各種機關에 이처럼 重要한 訴訟節次에 관한 完璧한 資料를 提示하는 바이다.

本 記錄은 訴訟当事者들이 法院에 提出한 訴狀 및 諸文書, 法院에 提示된 專門学者의 意見, 法院의 訴訟指揮內容, 그리고 法院의 裁判에 대한 公的記錄들을 包含한다. 그 核心的인 部分은 1973年 6月 19日에 있었던 ■頭審理를 錄音으로 담은 테이프를 글로 옮겨 적은 記錄文이라 할 수 있다. 联邦憲法裁判所의 判決文은 모두 収錄되었으며, 訴訟進行上의 모든 資料는 完全히 記錄化 되었다. 본( Bonn ), 1975年 7月 31日 編者

A. 1973年5月22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에 관한 裁判節次

I. 1973年5月22日의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

바이에른州政府首長 8 원행 22 1973年5月22日

Nr.BIII / 2-020004-3-25

聯邦憲法裁判所 貴下

7500 칼스루하 (Karlsruhe)

카알슈트라세 (Karlstraße) 10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

12月21日の 条約에 관한 承認法律

本件：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

添付：本 文書의 50通의 写本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法 第93条1項2号 및 이와 関聯된 聯邦  
憲法裁判所法 第13条6号와 第76条1号에 依拠하여 西獨과 東獨間  
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12月21日의 条約  
(基本條約; Gründvertrag)에 관한 承認法律의 基本法合致性与否  
判断을 聯邦憲法裁判所에 提訴하기로 決定했다. 本 提訴의 請求趣旨  
는 基本條約에 관한 條約承認法律이 基本法에 違背되므로 無効確認  
을 求하는 데에 있다. 本訴의 提起는 立法團體의 條約承認法律의  
審理가 終了하는대로 즉시 行해질 것이다. 바이에른州政府는 本案  
判決의 保全을 위하여 우선 仮処分申請을 提出하는 바이다.

이에 本人은 바이에른州政府의 이름으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  
12月21日의 條約批准法律에 대한 副署(Gegenzeichnung), 署名  
(Ausfertigung), 公布(Verkündung) 및 基本條約 第10条에  
따른 批准書의 交換 등一切의 行為를, 條約承認法律이 基本法을  
違反한 無効의 것임을 確認 받을 때까지 停止해줄 것을 請求하는  
仮処分申請을 提出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本 請求에 대한 判決을 立法團體의 審理가 終了되는  
直後 그리고 적어도 批准이 行해지기 前까지 내려주기를 懇願한다.

#### 請求原因

A

本 仮処分申請(e.A.; einstweilige Anordnung)은 許容된다.

1. 本 仮処分申請은 適法하다. 그것은 基本法上 聯邦憲法裁判所에  
係屬된 모든 裁判에 있을 수 있다. 聯邦憲法裁判所法 ( BVerfGG;   
Gesetz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第32条는 1971  
年 2月 3日의 判決에 비추어 볼 때 [聯邦法律公報 ( BGBl; Bundesges-  
etzesblatt ) II 105面] 一般的의 裁判規範이며, 이것은 基本法  
第93条項2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13条6号, 第76条에 따라  
提起된 抽象的規範統制의 訴에도 마찬가지이다. ( BVerfGE 1.85/86  
; 1, 281/282; 2, 103; 7, 367/370; 12, 36/39 ).

2. 바이에른州政府는 仮処分을 申請할 権限이 있다. 同政府는 基  
本法 第93条項2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13条6号, 第76条1  
号에 따라 本案判断을 提請할 権限을 아울러 가지기 때문이다.

3. 本案判断의 請求가 法院에 係屬되기 以前에 仮処分申請은 提  
出될 수 있다 ( BVerfGE 3, 267/277; 11, 339/342; 16, 220/226;  
27, 152/156 ). 本案請求自体가 聯邦憲法裁判所의 訴訟物로서 成立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同法院의 一貫된 判例  
를 보면 条約批准法律 ( Vertragsgesetz ) 은 基本法 第93条項  
2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76条1号에 規定된 抽象的規範統制의  
對象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BVerfGE 1, 396/410; 4, 157/162;  
12, 281/288 ). 本案請求는 法院이 이를 認容하는 때에 許容된다.  
現在 条約批准法律의 경우에는, 立法團體의 모든 立法節次가 終結되  
고 다만 聯邦大統領의 署名과 公布만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일 것  
이 要求된다 ( BVerfGE 1, 396/413; 2, 143/169; 12, 281/288 參照 ).

4. 仮処分申請은 또한 時期에 適合하다. 仮処分申請은 基本法 第 77 条 2 項 내지 4 項에 따라 聯邦參議院 (Bundesrat) 의 參与까지 도 包含한 一切의 立法節次라든가 法律에의 署名, 公布行為가 終了 될 때까지 그 提請이 可能한 것이다. 聯邦議會 (Bundestag) 가 本 条約承認法律案을 議決한 1973年5月11日부터 仮処分申請의 時期的要件은 갖추어진 것이다.

3) 万若 批准法律에 대한 立法團體의 審理가 完全히 끝난 뒤 仮処分申請을 提出한다는 것은 不測의 危險 (unzumutbares Risiko) 이 따르리라고 本 提訴人에게는 생각이 들었다. 聯邦參議院이 審議 委員會의 召集을 要求하고 同委員會가 異議를 提起할 경우 聯邦議會가 이 異議議決을 却下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例가 되리라 믿는다. 이때는 提訴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感이 있다. 聯邦大統領은 条約批准法律을 立法團體의 最終的인 審議가 끝난 後, 그리고 聯邦首相와 外務部長官의 副署가 끝난 後 遷滯없이 (聯邦政府議事規則 第 29 条 1 項 1 文, 1951年5月11日, GMB1 137 頁 參照, 最近 1970年1月23日 改正됨, GMB1 50 頁) 署名하고 公布할 것이 分明하다. 그와같은 技術的諸節次가 具備되면 条約批准法律은 立法團體의 審議가 終了되는 날짜로 聯邦法律公報에 公布되고 그翌日부터 施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基本法 §82[2]1文 및 基本條約承認法律 § 3 [1] 參照). 이 法律이 發效되면 뒤따라 批准文書의 交換이 있게된다. 그럼으로써 拘束力 (Verbindlichkeit) 이 發生하고, 此後에는 變更不可能한 既成의 事實로 確定된다. 同時に 本 提訴者

를 憲法的으로 保障해준 規定 (§ 93[1]②GG) 은 그것이 基本法과  
不一致하는 形式的인 聯邦法의 審查를 要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에도 不拘하고 이제부터는 不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b) 聯邦議會에서 議決한 法律을 審議하는 聯邦參議院의 會議가  
끝난 뒤 即時로 仮処分申請을 낸다는 것 또한 不適合하다. 왜냐  
하면 이때에도 提訴가 너무 늦은 危險이 있기 때문이다. 즉 聯邦  
參議院이 審議委員會의 召集을 要求치 않는다면 -이 瞬間이 提訴時  
期로 꼭 適合한 듯 보일 때이다 -既述한 바와 똑같은 狀況은 역  
시 招來할 것이 不可避하다. 즉 約批准法律에 署名하고 그를  
公布하게끔 된다. 提訴時에 이르도록 聯邦參議院이 어떠한 決定을  
내릴 것인가 未定이라는 不明瞭性은 결코 提訴를 妨害하지 않는다.

c) 本件은 1952年5月15日의 聯邦憲法裁判所判例 (BVerfGE  
1, 281) 의 경우와 勿論 同一하지는 않다. 当時의 仮処分申請은  
對外政策 擔當者로 하여금 國際法上條約의 調印에 있어서 確實한  
法의 意味를 갖는 内容의 宣言을 義務化시키는 것에 目的을 두고  
있었다. 그와같은 請求에 대하여 当法院은 그때까지는 國際法의 条  
約의 調印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理由로 棄却해버렸다. 그에  
반하여 本件은 訴提起의 時期의 要件으로서 批准節次, 聯邦參議院의  
参与에 이르기 까지의 一切의 立法節次, 大統領에 의한 法律에의 署  
名 및 그 公布 그리고 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条約批准文書의

交換 等이 모두 끝날 때까지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上記判例上의 联邦憲法裁判所의 態度는 立法의 議決된 바에 의하면 즉 本案判断이 있기 以前에 들이킬 수 없는 國際的, 国内法的인 变化가 發生할 豪慮가 있을 경우에는 仮処分으로 防止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事件 및 其他 여러 条約承認法律에 관한 同裁判所의 判決은 適合한 것 같아보인다. 그러나 本件에서는 联邦政府에 莫重한 利害가 걸려있는 関係로 다른 判決이 내려지기 前에 承認法律을 봄 수 있는대로 빨리 發効시킬 것이며 批准文書를 交換할 것이다.

그러므로 同判決文으로부터 立法團體가 条約承認法律을 承認하기 以前에도 仮処分申請을 할 수 있다는 것도 把握할 수 있게 된다 ( Lechner, BVerfGG, 2. Auflage 1967, Ann 3b Zu §32 )

d) 仮処分申請을 提出할 수 있다는 이 時期에 대한 反問은 그 만두고라도, 그것은 联邦憲法裁判所가 許容하는 時期에는 合당한 것은 分明하다.

5. 本案判断 ( Art. 93 Abs. 1 Nr. 2 GG 및 § 13 Nr. 6, § 76 Nr. 1 BVerfGG ) 은 条約承認法律이 立法團體의 審議가 아직 未決中이고 따라서 時期的으로 不適合하다는 状況은 仮処分申請을 提出하는 데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BVerfGE 1, 281/282; 3, 267/272; 8, 42 / 44; 12, 36/39; 16, 220/226 參照 ), 왜냐하면 本件判決은 条約承認法

律이 立法團體의 審議가 終了되었을 때 그것이 適法하며 (Zulassig), 明白한 瑕疵가 없지 아니하다면 (nicht offensichtlich unbegründet) 可能하기 때문이다.

a) 우선 本案判断의 請求가 適法하다. 이미 詳述한 바와 같이 (Nr. 3) 条約承認法律은 基本法 第 93 条 1 項 2 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13 条 6 号, 第 76 条 1 号에 의한 節次의 対象이 될 수 있다.

b) 本案判断의 請求에 明白한 瑕疵가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基本法 第 93 条 1 項 2 号에 의하면 基本法과 聯邦法과의 形式的・實質的 両立性에 관한 意見差異나 疑問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確認을 求하는 경우, 어느一方의 当事者도 根拠 없다거나 明白히 不法이다라고 規定지을 수 없는 것이다. (BVerfGE 7, 367/371; 8, 42/44; 12, 36/37). 이것은 聯邦憲法裁判所가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 1 項에 따른 裁判에 있어서 바이에른州政府가 勝訴할 수도 있다는 可能性에서 出發해야 함을 뜻한다.

6. 提訴의 内容 또한 適法하다. 訴의 目적이 되는 判決은 本案判断을 미리 求하지도 않고 있으며, 本案判断의 内容으로서 適合치 않을 内容을 要求하지도 않았다. (BVerfGE 3, 41/45; 8, 42/46; 11, 306/308; 12, 276/279; 14, 192/193; 15, 77/78; 16, 220/226 參照).

그것은 단지 臨時的으로 規律할 뿐이며 결코 普遍妥當한 確定된 것을 創造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現狀態의 仮處分은 數個月間만 持続될 것이다. 그리고 나

서 聯邦憲法裁判所에서 本案判決後 条約批准法律을 基本法과 合致된다고 判断하게 되면 東獨과의 条約의 批准은 당장 実現될 것이다  
( BVerfGE 7, 367/374; 12, 36/39, 16, 220/226 參照 )

7. 仮処分申請은 法的保護의 利益을 갖는다. 그밖의 方法으로서는 保全의 目적이 達成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法的手段은 存在하지도 않는다 ( BVerfGE 15, 77/78; 17, 120/122; 21, 50/51 參照 ). 이 밖에도 聯邦政府는 批准節次를 本案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하겠다는 意思表明도 한 바 없기 때문에 本件의 法的 保護의 必要性은 이미 存在하고 있다 하겠다.

B.

仮処分申請은 正當한 理由를 갖는다.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1項은 重大한 損害를 防止하기 위해, 或은 公共利益을 위한 다른 理由로 緊急하게 必要할 때에는 仮処分申請을 提出할 수 있음을 規定하였다.

이와같은 要件이 本件에 存在한다. 同裁判所法 第32条1項이 要求하는 要件들은 그 性質上 個別的으로 区分지울수는 없으며 「公共福利」 ( Zum gemeinen Wohl ) 한 表現은 나머지 諸要件들을 包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不明瞭性을 갖는다. 이같은 疑問은 本件에서는 問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公共福利라는 要件은

仮処分을申請함으로써重大한損害를豫防할 것을要求하는 것이다.  
기 때문이다.

聯邦憲法裁判所의判決에 따라同裁判所法第32条1項의要件을  
審查함에는嚴格한基準을設定할 것을要한다 할 때 仮処分을  
申請함에는焦眉의緊急性이必要하다. 따라서批准法律의基本法  
抵触与否가公共間에다투어지고 있다든가聯邦憲法裁判所의本案判  
決이끝난뒤라야만憲法上法의不安이解消될 것이라는事實만으  
로서는 仮処分申請의要件을充足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仮処分申請의理由가되기 위해서는 모든豫測可能한重要性이나利害의對立을考慮한結果 仮処分申請이緊切히要求되는것이判断되어야 한다. 이 경우聯邦憲法裁判所의一貫된判例는(Ⅲ 3,34/37;3,41/44;6,1/4;11,102/104;11,306/308;12,276  
/279;16,220/227;18,34/36,18,151/153;18,157/158参照) 仮処分申請이却下되고,係争批准法律의本案判断의結果違憲으로宣言될경우隨伴될 모든結果를考察한다. 그리고 이것과批准節次를本案判断이있을때까지停止시키는 仮処分申請을認容하였을때發生할損害와較量해보는것이다.

이 때條約批准法律이違憲임을說明하는理由들은提訴要件의考察對象以外의 것이다. 仮処分申請節次에 있어서는裁判의對象이된法規範의妥當性与否는審查될 수 없기 때문이다(BVerfGE  
3,267/281 ff;7,367/371;8,42/44;11,102/104;11,306/308;  
18,151/153;24,27/31;24,68/74).

提請된 仮処分이 認容되지 않을 경우 招來될 損失이 보다 큰 것일 경우에 다가울 일에 대한 審査와 考慮가 있게 된다.

## I

1. 条約의 批准 ( die Ratifizierung des Vertrages ) 이 行하여짐으로써, 本案判決로서도 다시 回復할 수 없는 既成事実 ( vollendete Tatsachen ) 이 創造되는 것은 联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 1項의 重大한 損失 ( schwerer Nachteil ) 에 該當한다.

仮処分을 申請하지 않는 경우, 西独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独과 東獨間의 1972年12月21日의 条約은 批准된다. 基本條約 第10条에 依拠 批准文書의 交換과 더불어 条約은 拘束力を 갖게 되며 施行된다 ( 基本條約 第10条 參照 )

脚註 1. 編者註 ; B R D ( 西独 ) 을 略称으로 使用하겠다. 正式名称은 Bundesrepublik Deutschland로 表現되고 있다.

批准이 끝난 後에 联邦憲法裁判所가 本 批准法律이 基本法과 不合致한다고 判示할 경우에 本 条約은 基本法을 侵害하면서 施行될 것이다. 왜냐하면 判決의 確定力은 侵害되어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a) 이것은 基本法 ( GG ) 은 東獨에는 効力이 미치지 않으며 ( Art. 23 GG ), 따라서 联邦憲法裁判所의 判決은 그쪽까지 拘束力を 갖지 못한다는前提에서 出發한 것이다. 비록 基本條約이 國內法的 ( Staatsrechtlich ) 인 것이며, 國際法的 ( Völkerrechtlich ) 인 条約이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理由 때문에 國際法이 類推

適用되어질 수 밖에 없다. 國際法은 条約의 拘束力은 그것이 当事国의 憲法에 背馳되게 締結된다 할지라도 계속 維持된다고 說明 한다.

이에 대해서 学問的으로 議論의 対立이 있으나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Band I, 1960 S.435 參照), 여기에서는 重要 치 않다. 왜냐하면 西獨의 어느 法院도 基本法에 抵触되는 兩獨間의 条約에 대해서 無効判斷할 수 없음은 不動의 事實이기 때문이다. 聯邦憲法裁判所가 이제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現在의 國際法上에서 볼 때 条約이 締結된 以後에는 之後에 그것이 基本法과 違背된다는 判斷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西獨政府는 締結된 条約에 國際法의 拘束을 받아야 한다 (E 1,396/412 f; 16,220/227).

이와같은 当院의 判例는 本件 基本條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b) 일단 効力を 갖게되는 경우 (그 후 聯邦憲法裁判所가 本案判決의 結果條約의 基本法違背를 判決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已往之事는 다시 回復할 수 없게 된다.

一條約의 解除 (Kündigung des Vertrages)는 本條約이 그려한 条項을 包含하고 있지 않으므로 不可能하다.

一條約의 形式을 밟아 条約을 終止 (解除條約; Auflösungsvertrag) 시키는 것은 東獨이 条約의 締結과 더불어 갖게된 政治的利益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도 없다.

一条約의 撤回 (Rücktritt vom Vertrag) 또한 承認된 撤回要件이 存在치 않는 까닭으로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条約의 拘束力이 發生케 되면 聯邦憲法裁判所가 条約의 基本法不合致性을 宣言하는 경우에도 事態는 確定되어 버리고 이를 은 追後에 결코 順復할 수 없는 것이다.

c) 联邦憲法裁判所는 많은 事例에서 이러한 問題를 取扱한 바 있다. 그때마다 当院은 判示를 통하여 만약 基本法과의 合致性与否가 不確実한 가운데, 事後에는 回復不能의 政治上 重大한 措置를 執行하는 경우는 联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 1 項의 重大한 損害에 該當한다고 하겠다 (E 7,367/373; 7,374/376; 8,42/45; 11,102/105; 12,35/41).

本件은 無比의 重大한 政治的意義가 附帶되고 있기 때문에 前示 当院判例와 경우와 加一層 結付될 수 있다. 이밖에도 本件에서는 그 執行措置의 事前復旧可能性마저도 國際法에 準하는 (quasi-Volkerrechtlich) 拘束力を 받고 있는 것이다.

d) 요컨대, 本 仮処分申請은 1963 年 7 月 24 日의 联邦憲法裁判所의 判決 (E 16,220/226) 과 마찬가지로 棄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 判決에서는 独・和間의 財政條約 (deutsch-Niederländischer Finanzvertrag) 에 대한 1962 年 5 月 14 日의 附加協定

( Zusatzabkommen )의 承認法律에 대한 公布 및 批准文書의 交換을 (聯邦憲法裁判所의 同 承認法律에 대한 判断이 있기까지) 停止시키는 仮処分申請을 다룬 것이다. 結局 그 訴는 拒絶當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理由로서 聯邦憲法裁判所는 이 条約의 批准이 있다하여 具体的인 경우에 있어서 (im Konkreten Fall) 결코 回復不能의 要件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立場을 取혔다. 提訴者が 本案判決에서 勝利하고 条約批准法律이 基本法 第14条3項에 違背된다는 判決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缺點은 事後에 (Nachträglich) 基本法 第14条3項에 따른 补償規定을 통하여 治療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本件에서는 追後에 다시 基本法과 合致될 수 있는 狀態를 만들 可能性이 不存在한다. 단지 基本法을 改正함으로써만 可能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解決策은 聯邦憲法裁判所에 係屬된 現裁判에서는 考慮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2. 条約批准法律은 根本的 憲法規範 (fundamentale Verfassungsnormen)과 抵触할 것이므로 联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1項의 重大한 損害의 發生이 憂慮된다.

条約의 批准이 行하여짐으로써 本案判決의 結果 提訴人の 勝利로 確定되는 경우에도 回復不能의 重大한 損害가 發生한다 할 경우; 여기에는 우선 根本的憲法規範의 侵害를 들 수 있다.勿論 法律의 違憲性与否에 대하여 本案判決에서 取扱한 請求理由는 联邦憲法

裁判所法 第32条1項의 節次에서는 原則的으로 無視된다 ( BverfGE 前掲判決 參照). 그렇다고 그것이 仮処分節次에서는 그러한 理由를 이一考의 餘地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 BverfGE 7, 175/179 參照). 도리어 联邦憲法裁判所는 本案判決에서 根本的 憲法規範의 解釈을 要求하는 경우, 그와 같은 憲法規定을 侵害하는 것은 联邦憲法裁判所 第32条1項의 公共福利에 대한 重大한 侵害에 該當한다는 것을 認定하였다 ( BverfGE 7, 367/373, 12, 26/39 參照). 따라서 여기에서는 本案判決의 対象이 되는 理由들을 낱낱이 檢討하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西独의 自明性 ( Selbst-Verständnis ) 과 國際法 的地位를 憲法規範의 基礎하고 있기 때문에 重要한 意義를 지니는 다음과 같은 憲法規範들에의 侵害에 대하여 考察을 할 計劃이다.

a) 国家統一原理의 侵害 ( Verletzung des Wiedervereinigungsgebot )

聯邦憲法裁判所는 多数의 判決을 통하여 ( E 5, 85/127; 11, 150/160 f; 12, 45/51 ) 基本法의 前文 ( Praambel ) 이 政治的意義 뿐만 아니라 法의 内容까지도 内包한다고 밝힌 바 있다. 基本法 前文으로부터 独逸聯邦共和国의 모든 国家機關은 独逸의 統一을 위하여 全力を 다하며, 이와 같은 目的에 따라 모든 措置를 志向시키며 이 目的에의 合當与否를 그때그때의 政治的 行為의 尺度로 삼아야 한다는 憲法的義務 ( 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 를

賦課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憲法機關은 統一을 法的으로 妨害하든지 實際의으로 不可能하게 만드는 一切의 措置를 遏止시켜야 함을 意味한다. 独逸統一을 促進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分裂을 助長하는 모든 措處는 聯邦共和國의 憲法의 秩序와 一致하지 아니한다. 東獨을 獨立的・主權的國家로 承認하는 것 (基本條約의 前文 및 第6条)과 兩獨逸間의 (beiden deutschen staaten) 國境相互不可侵의 確約과 東獨의 領土保全을 全幅의으로 尊重함은 (基本條約 第3条2項) 全獨逸統一의 根本原則을 抵触한 것이다. 基本條約은 兩獨이 相互 그들의 現狀態를 保障한다 하여 東獨의 國際法上의 主體的地位를 賦与함으로써 國家統一의 完遂를 引導하기는 커녕 分斷을 永久化한 것이다. 1955年5月4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 (BVerfGE 4, 157/169, 170)에 立脚한 反論 즉 文化的接近이라는 政治的方法은 独逸國家의 統一로 이를 수도 있다는 式의 說明은 無益한 말이며 그것은 基本條約은 独逸의 分斷을 法的으로 拘束시키는 方法으로 固定시키며 따라서 基本法과는 현격한 距離를 둔 狀態가 招來될 것이다.

b) 國家の單一性 (Staatliche Einheit)의 維持라는 根本原則의 侵害

基本法은 全體独逸의 國民, 全體独逸國家領土 그리고 全體独逸國家權力이라는 前提에서 出發한다. 西獨은 國家로서 다시 組織될 수 있는 全體独逸의 召命되고 唯一한 行動可能な 部分이다 (BVerfGE 2, 277). 独逸國家는 1945年の敗

戰에 依하더라도 國內法主体와 國際法主体로서 没落한 것은 아니다.

( BVerfGE 5, 126; 6, 336, 363 ) 1945年 5月 8日以後 独逸國家는 國家組織·機關만을 墓失하였다. 基本法에 의하여 創設된 組織이 臨時의으로 独逸國領土의 一部에 制限되어 있다 하더라도 独逸聯邦 共和國은 独逸國家 ( Deutsches Reich ) 와 同一하다 ( BVerfGE 3, 319 f, 6, 338, 363 ). 이것은 基本法 前文 第1文과 第2文의 "民族的·國家的統一을 維持할 것을 決意하며" 라든가 "이 基本法 은 參与하지 못한 独逸人們의 問題도 다루었다" 라는 点에서 그러하다.

이 같은 國內法的·國際法의 基本概念으로 볼 때 基本條約은 基本法과 不合致한다. 그것은

- a) 두 개의 平等한 主權國으로서의 独逸國家에서 出發하였으며
- b) 本條約에 있어서 上位에 存在하는 "國家的單一性"라는 言及을 放棄함으로써 独逸國의 繼続을 否定하였으며 즉 第9條를 통하여 聯合軍 留保権利에로 還元하게 된 것이다.

獨逸國繼続存在理論으로부터의 後退에 대해서 1972年 12月 21日의 独逸의 単一性에 관한 書翰은 아무 影響도 주지 않는다. 그 것은 단지 聯邦政府의 政治的 意圖를 宣言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c) 独逸의 그밖의 領域의 加入權 ( Beitrittsrecht )의 侵害.

基本法 第23條에 의하면 基本法은 우선 本法에 列舉한 諸州의

領域에서만 適用하도록 하였다. '独逸의 그 밖의 領域에서는' ( andere Teile Deutschlands ) 그들의 加入後에 効力を 갖는다. 이로부터 BVerfGE 4, 157(174)에 의하면 聯邦共和国의 義務는 '独逸의 그 밖의 領域'의 加入可能性이 制限되거나 또는 困難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推斷할 수 있다. 그와 같은 困難의 程度가 明白한 程度에 이르면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한 基本法違背의 確認을 求할 수 있다. 独逸의 그 밖의 領域(이에는 특히 東獨領域과 그밖의 그곳 地域을 包含한다)의 加入은 兩獨間의 国境不可侵確約과 東獨의 領土의 完全性을 全幅으로 尊重할 義務를 規定함으로써 이제는 東獨의 同意를 얻은 뒤에만 可能하다. 이같은 同意는 東獨政府의 알고 있는 政策으로 볼 때에 결코 期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 加入權에 事實上의 (tatsächlich) 障碍가 놓여왔다면, 基本條約은 그 위에 法的인 (rechtlich) 障碍物까지를 添加시킨 셈이 되었다. 現狀 (Statusquo) 을 法的으로 固定化시킨 것은 다른 한便으로는 加入을 막는 事實上의 障碍要素들을 完全히 봇박은 結果가 되었다. 本 基本條約의 結果는 明若觀火하다. 더우기 이것에 대해 聯邦政府는 否認하려고 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聯邦政府自身이 원하듯이 東獨政府가 自立하여 可能한 限 人間의平和의措置를 取해 주기를 目的하고 있는 것이다.

d) 第23條1文의 侵害

基本法 第 23 条 1 文에 의하면 基本法은 大베를린 (Groß-Berlin)의 領域에서도 適用되도록 하고 있다. 本 規定은 基本法의 適用範圍 (Geltungsbereich) 및 또한 或者의 見解를 빌리면 西獨의 領域要件을 規律하는 데에 그 重要性이 있다. 이 規定이 基本條約에 의해 두 가지 点에서 侵害되었다.

aa) 同條約은 基本法 第 23 条 1 文上 大베를린 区域이當時의 네 区域 즉 오늘날의 部分都市인 西베를린, 東베를린과 同一視하는 見解에 立脚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基本法이 成立하던 当時에는 베를린市는 어전히 하나의 都市였었고 分離되지 않았었다는 것으로 부터 나오는 結論이다 (同旨 Demowitz, Bonner Kommentar Art. 23 S. 2). 그의 見解에 따르면 基本法은 東獨이라 名称되는 部分의 베를린에도 適用하게 된다.

이 部分은 東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것으로 主張하는 곳이다. 그들의 主張은 東베를린은 東獨의 首都라고 까지 하고 있다.

現在의 国境을 바탕으로 한 모든 유럽 国家들의 国境不可侵性 및 主權의 尊重이 平和의 基本的 必須条件임을 알아 그리고 歷史的現実 (historische Gegebenheit)에서 出發한다는 基本條約은 西獨은 東獨의 主權을 東베를린에 까지 미치는 것을 承認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基本條約은 基本法의 適用範圍를 奪取한 것이 된 다. 따라서 基本法 第 23 条 1 項과는 合致될 수 없다.

bb) 1949年5月12日의 聯合國軍政長官의 認准書의 留保下에  
서 基本法은 大베를린의 領域에서도 適用되었다. 西獨政府에 의한  
베를린의 代表權은 認准書에서 排除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基本法  
第23條1文을 適用하였다. 聯合三大國의 留保가 反對하지 않는  
限 베를린에 관한 基本法의 原則의 効力에서 모든 結論이 도출  
되어져야만 했다 (BVerfGE 7, 1/10).

베를린(西部)에 関聯한 兩國의 宣言을 除外한다면 本條約行為는  
베를린에 대한 어떠한 規定도 갖고 있지 않다. 基本條約에는 베  
를린 条項은 全無하며 따라서 同條約 第2條에 나타나듯 根本的으  
로는 베를린도 除外하지 않는다. 4大聯合國에 留保한 狀態에 관  
한 問題를 度外視한다면 베를린은 基本法 第23條1項에의 訂正이  
妥當하다.

cc) 條約批准法律과 결국 같은趣旨인 베를린(西部)에 관한  
兩國의 宣言은 단순히 基本條約 第7條에 立脚한 議定書의 合意와  
規律의 拓大로서隨時의 경우에 있어서 베를린(西部)에 관한 協  
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規定하였다. 西獨과 東獨間의  
베를린(西部)에 관한 協定이 未來에 適用될 것인가는 東獨의 同  
意에 依存할 뿐이다. 基本法 第23條1文에 의한 西獨의 베를린  
(西部) 代表權受任은 이러한 式으로 더以上 保障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基本條約은 基本法 第23條1項과 合致될  
수 없다 하겠다.

⑥ 東獨居住独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의 侵害.

基本法 第1条에서 保障하는 人間의 尊嚴性의 保護에 관한 基本權 (Grundrecht) 은 國家에 대한 防禦權 (Abwehrrecht) 을 内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例컨대 한 個人이 - 그리고 특히 基本法 第116條에 따라 西獨이 責任을 져야만 할 数百万을 헤아리는 団體中의 하나가 第3者에 의해 (그것이 私人이전, 會社團體이전, 또는 어느 國家이전) 人間의 尊嚴을 侵害받는 경우에는 積極的인 行動을 措施할 義務를 負担한다 (Maunz-Dürig GG Art.1 RNr.2 參照).

西獨에서 行하여지고 있는 基本法 第1条가 保障하고 解釈하는 人間의 尊嚴性이 東獨에서도 같이 保障되지는 않고 있다. 東獨에서는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侵害가 다반사가 될 程度로 차주 態行되고 있다. 그런데 基本條約 第6条에서는 東獨의 그 領土內에서의 主權을 認定함으로써 西獨은 東獨이 基本法 第116條가 規定하는 独逸國民에게 規則的이고 頻繁히 實施되는 人權侵害의 權力行使를 法的으로 承認한 것이다. 그것은 1700万 独逸人에 대한 人權侵害의 權力行使를 法的으로 委任한 것이다. 基本條約은 이제 까지 西獨이 東獨의 独逸人에게 事實上 배울 수 있었던 諸 助力들 例컨대 第3國에서 그들을 代理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將來에 있어서는 完全히 不可能하게 만들어 버렸다.

西獨은 東獨의 國家權力を 다음과 같은 限度内에서 즉 東獨이 東獨內의 独逸人으로 하여금 出國을 통하여 共產政權을 벗어날 수 도 있게해 주는 條約上 協定을 肯定하는 限에서 認定했어야 할

것이다. 基本條約은 이와는 반대로 東獨地域을 拋棄함으로써 거기에居住하는 수많은 独逸人을 生活의 威脅下에 放置하였다. 基本條約의 締結로서 西獨은 東獨간의 独逸人에 대한 保護와 配慮義務에反하였다.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르면 1回의이며 同時に 合憲의이라는信念下에 행한 根本的憲法規範의 侵害의 可能性은 公共福利에 重大한 損害에 該當한다. 따라서 本 仮処分申請은 正當함이 立証됨은勿論 (E 7, 367/373; 12, 36/39 參照) 그와 같은 侵害가 憲法秩序에 持続的인 障碍가 될 개연성이 질을 때 그것은 一忰妥當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件은 바로 이 경우에 該當한다 하겠다. 만약 条約이 批准되고 联邦憲法裁判所가 条約承認法律이 基本法과合致하지 않음을 確認하는 本案判決을 할 경우 한편으로는 根本的憲法規範上의 拘束을, 다른 한편으로는 國際法의拘束이라는 両者の矛盾을 招來할 慢性的狀態에 突入할 것이다. 그와 慢性的狀態는 다음과 같은 結論의 推理을 可能케 한다.

즉, 西獨은 實効力を 갖게된 이 条約을 實現시킬 것이다. 이義務는 本案審理의 結果 提訴人の 勝利로 判断되는 경우에도 存続될 것이며 따라서 基本法을 繼續 侵害하는 狀態가 發生케 될 것이다.

一條約이 施行되면, 그것에 대해서 基本과 合致하지 않는다는 判決이 내려진다 하여라도 基本法과의 不一致에서 오는 負担으로 國際

法上 混難을 빚을 것이 分明하다 ( BVerfGE 1, 396/413 參照 ).

그리하여 両獨間의 関係를 改善하고자 意図한 1972年12月21日  
條約의 目標는 결국 成就될 수 없으며 오히려 両國間의 関係에  
새로운 짐만 가져다줄 결과가 될 것이豫想된다.

### 3. 要컨대 다음과 같은思考는 仮処分申請을 正當化한다.

仮処分申請을 하지 않은 채, 聯邦憲法裁判所가 本案判決의 結果  
條約의 基本法不合致性을 宣言한다면, 그 사이에 이미 條約의 拘束  
力은 發生했을 것이므로 本法院의 判決은 既往의 事態에 束手無策  
이다.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1条1項에 의한 法律効果를 發揮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同時に 基本法이 憲法의 保護를 授任한  
聯邦憲法裁判所의 地位와도 맞지 않게 된다 ( BVerfGE 7, 367/373 ).  
聯邦憲法裁判所는 憲法上 意見이 不一致할 때에 適時에 効力 있는  
調整을 해 줄 任務를 갖는 때문이다.

## II

本件 仮処分을 申請하지 않은 채, 聯邦憲法裁判所가 本案判決의  
結果 條約承認法律이 基本法과 不合致하다는 判決을 내릴 경우豫  
期되는 損害에 比하면 仮処分申請을 認容함으로써 隨伴되는 結果는  
거의 重要치 않다 하겠다.

### 1. 條約을 批准할 義務는 條約의 調印 ( Counterzeichnung ) 으로

서成立하는 것은 아니라는 点을 우선明白히 할必要가 있다.  
調印이란 단순히 政府間의 意見合致의 한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調印을 함으로써 그後批准을 거쳐 条約에拘束力を 賦与할 道  
徳의인 義務가 發生할 것인지의 問題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締結  
当事者는 언제나 調印된 条約을 批准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自由로운 것이다 (Berber aaO s.425 參認). 条約의 批准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違法的態度가 아니라 할진대, 批准節次를 最高의  
意味를 지닌 憲法的判断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키는 것 또한妥當  
하다 아니할 수 없다.

2. 西獨과 東獨間의 関係가 많은 歲月동안 条約이 없이 지내온  
판국에, 批准節次를 이 緊急한 時期에若干停止시킨다는 것은 別  
問題가 되지 않는다.勿論 条約相對國인 東獨에게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東獨은 이에 条約이 締結된 以後 이 条約이 基本法에  
違反될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아왔다. 적어도 1972年12月21日  
以降에는 基本條約의 基本法違反与否에 관한 是非는 西獨에서는 公  
共然히 討論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関聯된 1973年2月2일의  
聯邦參議院의 決定이 있었다. 이것은 基本條約에 反對하는 政治的·  
憲法的理由를 提示함으로써 이루어졌다 (聯邦參議院의 389次 會議  
에 관한 速記録 S. 2ff 및 BR-Drucksache 640/72 參照) 또한  
聯邦議會 法司委員會의 条約承認法律 審議過程에서도 그렇게採  
択되었다 (聯邦議會 法司委員會 第4次에서 第6次 會議에 관한 速記

錄 參照).

結論的으로 聯邦憲法裁判所 스스로도 表現하기를 (E 7,367/372),  
條約承認法律의 基本法合致性与否가 立法團體에서 激烈히 다투어지는  
그러한 狀況이라면, 仮处分申請을 判斷함에 있어 서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 條約이 基本法과 合致되느냐의 問題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宣言은 條約相對國家의 利益과도 関聯된다. 法院이 條約의 合憲性  
을 내릴 때, 이 條約의 實現에 障碍要素가 되었을 모든 憲法的  
疑心이 除去될 수 있게 되며, 이때에 비로소 西獨側에서도 마찰없는  
條約의 實現을 保障할 수 있는 것이다.

4. 비록 東獨政府가 基本條約에 関聯하여 保障하기로 公言한 人  
權의 諸措置들이 적지 않게 尊重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基本條約의 發  
效를 약간 遷滯한다는 것이 至大한 影響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條約이 作成되고 調印된 以後 輕微하나마 약간의 措置가 있었으  
며, 또한 最近 Nadelstiche 政策을 東獨편에서 拗하기도 하였다.  
東獨이 數個月 前부터 國際社會에서一般的으로 承認을 받은 뒤  
부터는 合意한 諸措置에 지금과 같이 점차 注意를 기울일 것이라  
고 判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重要한 것은 家族  
의 共同居住 (Familienzusammenführung) 라든가 非商品性物件去來  
의 改善 (Verbesserung des nichtkommerziellen Warenverkehrs)

等數個의 措施가 基本條約의 施行 以後에 있어서가 아니라 "關係의 正常化過程" ( im Zuge der Normalisierung der Beziehungen ) 이 있은 뒤로 있었다는 点이다. 다만 広範囲한 國境通行設定 ( Grenzübergangsstellen ) 의 開始를 基本條約이 施行되는 時期로 잡고 있을 뿐이다. 이미 共同國境委員會 ( Grenzkommission ) 가 그의 作業을 着手했다. 따라서 東獨과의 關係가 그와 같은合理的인 根柢下에 批准節次를 停止시킨다 하여 致命的인 打擊을 입을 理由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고 펠

( Dr. h. c. Goppel )

II. 1973年5月22日 바이에른州政府 首相의 文書

바이에른州政府首相 8 뮌헨 22, 1973年5月22日

Nr. BM/2-020004-3-25

聯邦憲法裁判所 貴下

7,500 칼스루헤

카알슈트라세 10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

12月21日의 条約承認法律에 관한 合憲性与否의 審查節次

本件：訴訟代理人의 決定通知

開始된 바이에른州政府가 오늘 提起하고 仮処分申請으로 上記法律의 基本法律의 基本法 合致性 審查節次는 Dr.Dieter Blumenwitz 교수가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으로 決定되었다. Dr. Blumenwitz 教授의 住所는 下記에 鑄친 바와 같다.

아우구스부르크 大學

89 아우구스부르크

해싱슈트라세 9.

Dr.h.C. Goppel

### III. 1973年5月23日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 聯邦憲法裁判所의 紙上發表

聯邦憲法裁判所에는 現在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関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 12月 21일의 条約(「基本條約」)의 承認法律에 대한 副署, 署名 및 公布 그리고 本條約 第10條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 等一切의 行為를 (本法律이 基本法에 合致될 수 없어 無效라는 確認이 내려질 때까지) 停止시키는 仮処分申請이 係屬中이다.

立法團體에서의 条約承認法律의 審查는 빠르면 1973年5月25日 金曜日 聯邦參議院의 審查가 끝난 뒤 비로소 締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이에른州가 提請한 仲裁委員會의 召集이 拒否된다는前提下에서의 말이다.

本案判決을 위한 바이에른州政府의 確認의 訴는 아직 開始가 없었다. 그것은 条約承認法律이 國家統一의 原理(国家的 单一性 維持의 原理, 独逸의 그밖의 領域의 加入權의 原理, 基本法 第23條1項, 東獨居住 独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 等의 諸原理)에 背馳된다는 것을 理由로 삼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는 1973年5月28日 月曜日, 訴의 審查를 위하여 召集되었다. 이같은 國聯下에서 아마도 本 確認請求의 訴에 대한 判決 및 本案에 대한 公開審理를 언제 어떻게 開催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와 더불어 詳細한 時間이 發表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參加者가 밝혀질 것이다.

칼스루해, 1973年5月23日

IV. 1973年5月25日の 聯邦法務部長官의 文書

聯邦法務部長官 53 Bonn, 1973年5月25日

1004E(2321)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 議長 貴下

7500 칼스루해 1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条約承認法律의 違憲性与

否에 대한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

1973年5月23日字 聯邦憲法裁判所公報의 報道를 읽고 本人은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가 바이에른州政府의 訴의 審理를 하기 위하여

여 1973年5月28日字로 集会된다는 것을 알았다.

聯邦政府의 이름으로 本人은

바이에른 州政府가 提請한 仮処分申請을 却下시킬 것을 求하는  
訴를 提出하는 바이다.

應急策으로서 本人은 本訴를 口頭審理 없이 判決해 주도록 要請한다.  
條約締結의 全過程을 통하여 憲法的 審查를 細密히 해보고 또한  
立法團體의 基本條約의 審查가 끝난 뒤 本聯邦政府는 바이에른州政  
府가 우려하는 바는 明白히 根拠 없는 것이라는 데에 意見을 모으  
게 되었다.

聯邦政府는 本訴를 提起함에 真摯하게 理由를 列舉고자 한다.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의 批准을 遲滯하는 것은  
重大한 損害를 招來할 수 있다.

聯邦憲法裁判所가 1973年 5月 28日의 會議에서 最終的인 判決  
은 내리지 못할 것이라면, 聯邦政府는 仮処分申請에 대한 口頭審理  
를 短時間동안 行해 줄 것을 要請한다. 聯邦政府는 그 代表者를  
각자의 訴內容을 充分히 理解케 한 뒤에 聯邦憲法裁判所에 隨時로  
派遣할 作定이다.

게르하르트 얀

(Gerhard Jahn)

V. 1973年5月29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오늘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는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이른바  
基本條約의 承認法律의 違憲審查 要求에 대한 口頭審理의 期日은  
1973年6月19日 木曜日 10時로, 그 判決의 宣告날짜는 1973年  
7月31日 木曜日 12時로 決定하였다.

이밖에도 아예 대한 어느当事者의 停会要請은 受諾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칼스루해,

1973年5月 29日

VI. 1973年5月30日 聯邦法務部長官의 文書 (텔레타이프受信)

聯邦法務部長官 Bonn, 1973年5月30日

1004E(2321)-198/73 14:00時

脚註 本 텔레타이프는 当日 平常文書로써 聯邦憲法裁判所에 送達  
되었다.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 議長 발터 쇠페르트 (walter Seuffert.) 氏 貴下

7500 칼스루해 1

案件 :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条約의 承認法律에 대한  
바이에른州政府의 違憲審查의 訴

尊敬하는 議長께 .

聯邦法務長官 얀 (Jahn) 氏의 부름을 받아 本人은 1973年5月  
29日 長距離通話を 통하여 당신께 말씀드린 바를 다시금 強調하고  
자 합니다.

1. 聯邦政府는 法院에 問題로 係屬되어 있는 바 批准文書의 交  
換을 聯邦憲法裁判所가 本案判決을 宣告토록 되어 있는 1973年7月  
31日까지 延期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상상조차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 聯邦政府는 늦어도 1973年6月4일까지는 聯邦憲法裁判所에 대하여 1973年7月31日以後에 批准文書를 交換할 경우 어떤重大事由가 発生한 것인가에 대하여 明確한 解明을 할 것입니다.

3. 聯邦憲法裁判所가 1973年5月30日 行한 口頭審理는 聯邦政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頓首再拜

바 알 만

(Bahlmann)

VII. 1973年6月2日の 联邦法務部長官の 文書

聯邦法務部長官 53号, 1973年6月2日

1004 E (2321) - 198/73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 議長 貴下

75 칸스루해 1

聯邦政府의 名義로 本人은 1977年5月22日, 바이에른 州政府가  
提請한 仮処分申請에 대한 立場을 伝達한다.

第III節에서 本人이 联邦政府의 名義로 針對듯이 仮処分申請을 認  
容한 경우 미치는 重大한 損害의 仔細한 說明이 法院을 說得하는  
데에 큰 寄与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联邦政府는 本 内容을 公共  
然하게 伝達할 수는 없다.

Gerhard Jahn

聯邦法務部長官 53号 1973年6月2日

1004 E (2321) - 198/73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 議長 貴下

75 칼스루해 1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条約에 대한 바이에른州

政府의 違憲性審查要請

本件：1973年5月22日의 仮処分申請

關係文書：1973年5月23日字 貴院의 文書 - z Bv Q 1/73 -

添附：30通의 写本

聯邦政府의 名義로 本人은 1973年5月22日字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에 대한 立場을 다음과 같이 表明한다.

聯邦政府의 見解에 의하면 本訴는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不適法하다(I). 그리고 原因自體에 있어서도 根拠가 簿弱하다(II). 또한 그와  
같은 仮処分申請은 西獨에게 國内外에 걸친 重大한 損害를 招來하  
게 될 것이다. (III).

I.

1.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仮処分申請 즉 聯邦憲法裁判所로 하  
여금 西獨과 東獨의 1972年12月21日의 条約에 관한 承認法律의  
副署, 署名 및 그 公布를 바이에른州가 提訴한 本案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해 줄것을 要請하는 限 그 申請은 許容될 수 없다.  
( unzulässig ).

이제까지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聯邦憲法裁判所는 國際法上 条約에 관한 批准法律을 基本法 第 93 条 1 項 2 号에 依拠하여 抽象的規範統制 ( abstrakte Normen Kontrolle ) 를 통하여 그의 形式的・實質的基本法合致性 与否에 대하여 審查할 수 있다 ( BVerfGE 1,396 [410]:4, 157[162]:6, 290[294]; 12,205 [220]; 12,281 [288] ). 原則的으로 聯邦憲法裁判所는 우선 形式的으로 存在하는 法 ( formell bestehendes Recht ) 만을 審查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소 벗어나 聯邦憲法裁判所는 國際法上 条約의 批准法律은 비록 그것이 公布前일지라도 審查가 可能하다는 立場을 取한다 ( BVerfGE 1,396 [410] ). 聯邦의 立法團體에서의 節次上의 条約承認法律은 아직도 聯邦大統領에 의한 署名 및 그 公布를 必要로 한다는 制限된 意味로 새겨야 할 것이다 ( BVerfG aaO. Seite 413 ). 結局 批准法律의 合憲性 与否를 審查할 責任이 있는 聯邦憲法裁判所는 聯邦大統領이 法律의 公布를 하고 그려므로 서 批准이 行하여지기 전에 判決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 BVerfG aaO. Seite 414 ). 이 같은 根本原則을 考慮해 볼 때 基本 条約에 관한 批准條約에는 仮處分으로 인한 批准條約에의 副署, 署名 그리고 公布를 停止시킴으로써 基本條約의 捆束力 있는 實効性을 阻止시키려는 原因이나 必要性의 別無한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는 条約批准法律에 대한 聯邦大統領의 署名이나 公

布以前에 規範統制를 許容하는 것은 다만 그렇지 않으면 西獨이  
國際法上의 義務를 憲法을 侵害하면서 까지 實行하여야 하게 될지  
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認定하는 것이다 ( BVerfGE aaO, Seite  
413 ). 그것은 批准法律의 署名 및 公布 그리고 條約의 批准은  
해당 憲法機關의 責任下에 法節次進行이라는 論旨에서 出発한 것임  
이 分明하다. 이 같은 構成要件이 本件에서는 該當하지 아니한다.  
基本條約은 第 10 条에 따라 批准이 要求되며, 그리고 批准文書의  
交換과 더불어 發効하는 것이다. 그리고 聯邦大統領에게는 批准文書의  
慣例的交換이라는 것은 없다. 도리어 聯邦政府는 聯邦大統領  
에 授權하는 形式을 통하여 東獨政府와 批准文書를 交換하도록 前  
示한 條約 第 10 条는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件에서는 聯邦大  
統領에 依한 署名과 公布를 停止시킬 何等의 理由도 없는 것이다.  
仮処分은 無条件 아주 緊急한 措處에만 局限되어야 할 것이다  
( Leibholz Rnpprecht, BVerfGG, 1968, §32 Randnr.20 ).

2. 基本條約 第 10 条에 따른 이미 言及한 批准文書 交換을 仮処  
分節次에 따라 暫定的으로 停止시켜 달라는 訴는 심각한 豐慮가  
되지 않을 수 없다. 本訴는 基本法 第 93 条 1 項 1 号에서 規定한 이 基  
本法과의 形式的・實質的 両立性에 관한 意見差異나 疑問을 聯邦憲  
法裁判所가 判断한다는 法理를 誤解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  
에 따라 抽象的 規範統制의 節次 및 判決이 考慮될 수 있다고

表明하였다. 또한 同裁判所는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의 体系上 位置를 一般的的節次規定으로 보고 있다. ( BVerfGE 1, 85 [86]). 聯邦憲法裁判所는 더욱 나아가서는 그의 判決을 通하여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의 適用에 관하여 解決의 基準을 發展시켰으나 그것은 대개는 抽象的規範統制와의 関聯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聯邦憲法裁判所는 그의 判決에서 결코 條約批准法律과 関聯한 仮處分의 事例에 대해서는 言及한 바가 없었다.

基本法 第 93 条 1 項 2 号에 의거한 抽象的規範統制에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를 適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즉 이와같은 客觀的節次에서 비로소 憲法守護者 ( Hüter der Verfassung )로서의 聯邦憲法裁判所의 任務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 BVerfGE 1, 184 [195] ). 그것은 憲法을 保護함에 있어서 主觀的 正當性과는 無關한 客觀的節次이며 또한 단지 憲法이라는 尺度下에서 法律審查에 寄与한다 ( BVerfGE 1, 396 [407] ; 2,307 [311] ; 20,56 [95] ). 그러나 基本法 第 93 条 1 項 2 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76 条는 聯邦政府, 州政府 및 聯邦議회員 3 分之1에게만 聯邦憲法裁判所에 대한 提請을 許容하고 있다. 여기에서 重要한 것은 어떠한 混難도前提하지 않는 訴訟의 正當性이라 하겠다. 訴訟節次는 原則的으로 訴提起機關이 異議있는 規定에 同意를 하였을 경우에만 開始될 수 있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의 審查가 가지는 客觀的性格 때문에 抽象的規範統制의 節次는 当事者를 要하지 않으며 ( BVerfGE 2,307 [311f.] ) 그리하여

例컨대 被告라는 것도 없다 (BVerfGE 1, 208 [220]). 이 같은 憲法의 位置는 (그것이 일단 開始가 된 以後에는) 裁判이 經過함에 따라 提訴人의 請求 (Verfügung) 가 除去되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리하여 提訴人에 의한 訴의 撤回라는 것은 論理上必然的으로 裁判의 成立에서 影響을 奏 수 없다 (BVerfGE 1, 396 [414]). 이와 같은 法的狀態는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條를 適用함에 있어서 尊重되어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仮処分申請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抽象的規範統制에 있어서는 提訴者에 대해서만 臨時的으로 法的保障을 해 주는 것이 問題가 될 수 없으며, 聯邦憲法裁判所는 그것이 憲法의 守護者로서 그에게 賦与한 任務를 成就시키는 過程으로서 判決할 것이 要望된다.

3. 그와 같은 法的狀態는 聯邦憲法裁判所에서는 本裁判所가 職務上 仮処分申請에 대해서 判断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訴提起가 없었을 때의 權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BVerfGE 1, 281 [283]).

仮処分申請을 認容하는 데는 많은 結論이 뒤따르게 되므로, 聯邦憲法裁判所는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條 1項의前提에 合致되느냐에 대한 審查를 함께 있어서 하나의 嚴格한 尺度를 마련해 두었다. 法院의 判決을 따르건대 그 結論은 만약 仮処分申請이 없었을 경우 그 後에 本案判決의 結果 係屬中의 処分 (Maßnahmen)이나 其他 法規範 (Normen)들이 違憲이라고 判断될 경우에 到來할 損害 (Nachteil)과 同 処分이나 其他 法規範들이 仮処分申請에 따라 일단

停止되었을 경우 発生한 損害와 較量해 본다는 것이다 (BVerfGE 12, 276 [297]; 16, 220 [226f]; 18, 34 [36]; 18, 157 [153]; 18, 157 [158f]; 31, 381 [386]).

抽象的規範統制 특히 条約批准法律이 그 対象이 되고 있는 경우 그 審査는 性質上 매우 重要한 結果로 인하여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1項에 規定된 公共福利의 原則이라는 嚴格한 尺度에 따라 特別한 方法에 따라 實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國内外政策形成의 権限있는 聯邦憲法機關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은 그의 憲法的義務를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考慮下에 두어야 한다. 바이에른州政府의 見解는 그가 提出한 仮処分申請을 통하여 볼 때 同條約承認法律이 違憲임을前提로 出発하고 있으나 聯邦憲法裁判所가 合憲宣告를 내리기 까지에는相當히 重要한 憲法的 豪慮를 内包하고 있다.

## II.

1. 本件에 있어서 仮処分申請은 그 実質上 이것이 公共福利上切実한 경우에만 단지 一時的 代替性이 認定되며 또한 必要되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는 判決에 즈음하여 条約承認法律을立法的으로 議決할 権限을 受任받은 憲法機關이 決定하게 될 그 根拠를考慮하여야만 한다.

단지 暫定的인 批准節次의 中斷과 基本條約의 兩國間의 實效性의

현저한 政治的效果는 (이에 대한 詳細한 内容은 III以下) 聯邦憲法裁判所의 그밖의 判決의 国家法의 意味를 害침이 없이 前記와 合致될 判決은 「特異한 政治家의 判決의 要素」를 内包하고 있다는 것을 分明히 한다. (Grundmann, Zur Vergriflichkeit verfassungsgerechflicher Anordnungsentscheidungen, DÖV 1960, 680 [681]). 이와 같은 意味에서 憲法機關으로서의 聯邦憲法裁判所는 하나의 判決을 통하므로서 政治的意思形成過程에 있어서 고유한 責任을 承繼받게 된다. 이와 같은 責任과 相應하여 聯邦憲法裁判所는 判決에 있어서 仮処分申請에 同意 또는 反對의 모든 實質的인 觀點을 可能한限 審查하여야만 한다. 仮処分申請은 다음과 같은 떼에 限하여 許可될 수 있다. 즉 基本條約의 基本法과 合致与否에 대한 憂慮가 實際로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充分한 개연성이 存在하는 限에서 可能하다.

同時에 그로부터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1項에 따른 仮処分申請은 이미 聯邦憲法裁判所의 그와 같은 判決이 適合하다고 認定한, 그렇게 重要한 要件들을 包含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라는 結論이 생긴다. 그러므로 抽象的規範統制의 権限을 부여받은 憲法上機關이 充分한 内容 審查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対象인 法律이 基本法에 抵触할지도 모른다든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公共福利上 緊切히 要求되는 仮処分을 通하여 우선 規範의 停止를 命하여야 한다는 단순한 主張만 가지고는 理由에 適合치 않다.

2. 바이에른주政府는 基本條約의 根本憲法規範과의 合致性에 疑問을 表示하였다. 그는 또한 基本條約이 國家統一이라는 至上原理(國家的 单一性 維持의 任務, 基本法 第 23 条 그리고 東獨內居住獨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 等一切의 原理)에 違背된다고 主張한다.

이와같은 論旨는 根拠가 되지 못하며 仮处分申請을 위해서도 充分한 事由가 될 수 없다. 바이에른주政府는 前記한 審查 및 특히 立法團體에서의 憲法的 問題에 대하여 國家法과 國際法의 文獻上 이미 몇年 前부터 支持되어오는 意思形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다.

3. 基本條約은 基本法과 密接히 関聯되는 政策에서 判断되어야 한다. 聯邦의 政策關係를 規律하는 條約에 대한 憲法的 審查는 그 條約이 成長하여 온 政治的인 基盤 (Politische Ausgangsstellung)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條約이 形成하고 變更시켜야 할 政治現実 (Politische Realitäten)을 忘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BV-erfGE 4, 157 [168]). 모스크바 (Moskau) 와 바르샤바 (Warschau)의 條約을 통하여 聯邦政府는 両獨接近의 前段階로서의 유럽에서의 平和的 秩序를 創造했으며 両獨의 새로운 共存을 目標로 하였다. 基本條約은 最初로 根本의 方針으로 両獨의 関係를 規定하였다.

基本條約과 그에 附隨된 政策은 유럽의 平和를 維持 保護하며

또한 그러한 狀況下에서 独逸에 있어서의 可能한 政治的 緊張緩和 (politische Entspannung) 와 接近 (Annäherung) 을 實現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였다. 基本條約은 이와 같은 目標 設定을 통하여 우리 憲法秩序 (Verfassungsordnung) 의 政治的 法的 自明性이 根柢하고 있는 兩大 基本原則 즉 平和의 原則 (Friedensgebot) 과 再統一의 原則 (Wiedervereinigungsgebot) 과도 相應한다.

平和를 維持하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国 및 그 憲法을 正當化시키는 根本原理이다. (R. Smend; Der Kampf um den Wehrbeitrag, 2. Hlbd, 1953, S.558 [561]). 平和 原則은 基本法 前文 및 第 24 条 2 項, 第 26 条에 그 基礎를 発見할 수 있다.

4. 基本法 前文에서 볼 수 있는 統一의 原則은 平和維持라는 根幹이 되는 憲法 原理下에서 成立한다. 聯邦憲法裁判所는 政治 機関으로 하여금 再統一의 手段과 方法의 選択에 있어서 広範囲한 政治的 裁量權을 賦与하였다. 1956年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르면 法官은 한 憲法機關이 發한 措置에 대하여 그것이 国家 再統一이라는 憲法原理를 侵害하는 것이 明白하면 또한 그에대한 見解를 分明히 밝히지 못하는限 그에 대한 拒否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BVerfGE 5, 85[127f]).

a.) 聯邦政府가 行한 条約政策은 統一 原則을 法的으로서나 事實上으로나 不可能하게 하지는 않았다. 1969年 10月 28日의 政策

宣言 即 独逸 領土위에 두개의 独逸 国家가 存在한다 ( auf dem Boden Deutschlands existierten zwei Staaten ) 는 決斷이라든가 同時に 그에 의해서 公式化된 基本條約이 있었다고 하여 統一을 成就시킬 수 있는 法的 事實의 可能性이 排除된 것은 아니다. 이와 反對되는 見解는 独逸国家는 1937年의 國境線과 同一함은 不變의이며 兩獨政府는 独逸国家와 同一하다 ( id entisch. ) 는 主張에 基礎를 두고 있다. 이 理論은 独逸의 地位에 관한 相異한 여러 理論들 중의 하나이나, 이것은 独逸의 地位에 관한 國家法理論이 發展시킨 바 중에서 出衆치 못하는 것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미 1955年에 하이데 ( Heydte ) 가 編著한 F.A. 刊 國法学者論誌 ( Staatsrechtslehrer-Tagung von F.A. ) 에는 同一說 ( Identitätstheorie ) 이 外에도 部分國家說 ( Teilordnungstheorie ) 이 法的으로 說明이 可能하며 또한 그것이 本件에서 判決を 자하는 政治家들의 見解라는 것이 確認되고 있다 ( Verö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Bd. 13. 1955, Leitsatz c2, S. 6. ff ). 部分國家說에 基礎된 独逸政策이라 할지라도 결국 처음부터 再統一 原則과 背馳되지는 않으며, 나아가서는 民族과 國家의 单一性을 維持하여야 된다는 基本法 前文의 本旨와도 抵触되지 않는다.

b) 바이에른州 政府의 訴가 西獨과 東獨間에 國境不可侵의 条約으로서 承認한 것과 同時に 東獨의 領土의 主體性을 尊重하는 것은 統一 原理에 背馳되는 것이라는 것을 說得시키려 하는限,

그것은 基本條約 第3条가 内包하고 있는 内容과 意味를 誤解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基本條約 第3条 1項은 西獨과 東獨間에 있어서 武力의 抛棄를 規定한 것이다. 이 規定은 平和 原則을 具体化한 双務的 條約 (bilateraler Vertrag)에 지나지 않는다. 基本條約 第3条 2項에서 宣布한 国境 不可侵의 確認과 領土의 完全性을 尊重하는 것은 武力 抛棄를 實効시키는 限界를 規定한 것이다. 基本條約 第3条 2項은 (平和原則의 政策이 강안된) 国境의 武力的 變更을 條約을 通한 抛棄를 包含한다. 基本條約 第6条에서 確認하고 있는 両국은 自國의 領土内에 最高權을 局限한다는 것은 이미 基本法 自體가 그의 適用範圍 (Geltungsbereich)를 限定了하였다는 것과 같아 한다. 基本法은 西獨이 東獨領域에 까지 그 權力行使를 하도록 要求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지난날 바이에른州가 1972年 5月 26日 西獨과 東獨間의 往來에 관한 協定 (der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Fragen des Verkehrs vom 26. Mai 1972)에 대하여 1972年 10月 6日 聯邦參議院 385次 會議에서 明白히 同意를 表했던 것을 注意해 보자. 이미 이 條約에서 両국의 最高權領域 (Hoheitsgebiet)과相互 独立의 인 國家에 관한 言及이 있었던 것이다.

西獨과 東獨間의 国境不可侵에 관한 確認 行為는 全獨逸의 總選舉實施 (Die Abhaltung gesamtdentscher Wahlen) 라든가 또 다른 形態의 統一을 妨害하지 않는다.

c) 第3条, 第6条, 其他 条約의 諸規定 之外 것도 独逸이 가지는 政治的 目標 즉 独逸의 統一을 創造하는 것에 矛盾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条約 第9条에서부터 發生한다. 거기에는 明白히 앞서 締結된 双務 또는 多邊 条約이나 協定이 다른 条約 当事国에 何等의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明定하였다. 앞서 締結된 条約에는 1954年 10月 23日 巴黎 (Paris)에서 調印된 西独의 變更된 体制内에서 占領軍政의 終結에 관한 議定書 (Protokoll über die Beendigung des Besatzungs regirn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änderten Fassung) 第1部 (Liste)에 따른 1952年 5月 26日 西独과 3大国間의 関係에 관한 条約 (独逸條約 : Deutschlandvertrag)도 包含된다 (BGBI. II. 1955.8.213,305), 西独과 3大国間에 締結된 独逸條約 第7条 2項에 規定된 義務가 明示되었다. 즉 平和的 手段을 통하여 独逸 統一을 実現시킨다는 共同 目標를 위하여 共同 努力한다는 것이다. 基本條約 第9条에 依拠한 1972年 12月 21日의 西独 首相의 任務를 된 聯邦長官과 東独 閣議 (DDR-Ministerrat)의 国家書記와의 書信交換은 本 覺書 (Noten)의 内容을 三国과 蘇聯에 伝達한 바는 西独과 東独은 全体 独逸 및 배를린에 관連한 四大国 権利 및 義務의 存在 및 繼続을 認定한다는 것을 明白히 言했다. 이 書信 交換中에서 點한 確認을 通하여 両独逸國은 如前의 四大国의 権利와 義務가 存在함을 認定했다. 基本條約은 四大国의 権利를 否認하지는 않았으며 同時に 講和 (Frieden-

vertrag) 나 그와類似한 解決을 表하지도 않았다.

d) 이미 모스크바 条約 (Moskauer Vertrag) 과 관련하여 聯邦 外務部長官이 蘇聯 外務長官에게 보낸 1970年8月 12日의 書翰 ("Brief zur deutschen Einheit") 이 蘇聯에 대한 関係에서 와 마찬가지로 聯邦首相으로부터 特別任務를 받은 聯邦長官이 東獨閣議의 國家書記에게 보낸 1972年 12月 21日의 書翰에서의 東獨과의 関係에서도 西獨으로 하여금 独逸民族은 自由로운 自己決定 (Selbstbestimmung) 으로 統一하려는 政治的 目標를 基本條約의 締結과 同時에 拠棄토록 主張하는 것을 防止하였다. 条約에 関係된 条約當事國들에 依해 採択된 그러한 文書들은 一般的으로 承認된 条約當事國間의 条約慣習法에 따라서 1969年5月 23日 비인 条約協定 (Wiener Vertragskonvention) 에서 合法化되었듯이 (이에 대해서는 Art.31.Abs.2.Ziff.6/2b) 그 意味의 解釈을 할 것이며 그에 義束될 것이라 하였다. "独逸統一에 관한 書翰" 은 東獨에 의해서 異議 없이 受諾되었다. 그것은 (文言이 말해 주듯이) 条約의 締結과 더불어 到達될 書類들과 関聯하여 그리고 条約과 関係 있는 하나의 文書로서 条約當事國에 의해서 採択되었다. "独逸統一에 관한 書翰" 은 基本條約이 西獨의 政治的 目標와相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由로운 自己決定을 통하여 統一을 이룩코자 하는 独逸民族의 努力과도 反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는 解釈法의 指針이라 할 수 있다.

5. 基本條約은 基本法 第23条와 合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에른州政府의 推測은 根拠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仮処分申請이 表現하고 있듯이 그렇게 充分한 만큼의 内容도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하다. 主張되고 있는 基本法 違背性은 明白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 論理性을 缺如하고 있음을 否認치 못 할 것이다.

a) 基本法 第23条 2項은 단순히 "独逸内의 또 다른 地域에서"라는 表現을 통하여 그들의 加入과 同時에 效力を 갖는다고 規定한다. 基本法은 이 文言을 통하여 西獨은 1937年 現在의 国境線内의 独逸国과 同一視하는 것을 回避하였다. 基本法 第23条는 同條에 立脚한 広範囲한 憲法 委任을 통하여 加入可能性 (Beitrittsmöglichkeit)을 認定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基本法 第23条 2項에 規定된 独逸의 다른 地域의 加入에의 法的可能性은 基本條約의 締結로서 排除된 것도 妨害된 것도 아니다.

그밖에 基本法 第23条에 立脚한 政治的 判決의 審議에 있어서 聯邦憲法裁判所의 宣言은 基本法에 의해 特定地域의 度外視 내지는 排除된 事實的 狀態를 外面하지도 않았다. 어떤 特定의 協定이 그러한 地域을 平和協定이 있을 때 까지의 一定 過渡期동안 加入하는 可能性을 事實上 어렵게 만들었는가는 憲法的 判斷을 넘어서 고 있는 하나의 政治的인 問題 (eine Frage der politischen Wertung)인 것이다. 独逸에 있어서 1972年에 確認된 事實上の 狀態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基本法 不合致性의 確認을 받을 정도로 確實하여 東獨의 基本法에의 事實上 加入可能性을 어렵

게 만든 것은 아니다. 1949年 以来 基本法 第23条 2項에 의해 加入權이 保障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東獨은 加入을 宣布하지 않았다. 基本條約의 締結이 있은 後 東獨이 基本法에 加入하더라도 그들의 國家機關의 意思에 反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는 加入可能性을 困難하게 만드는 事實上의 隘路事項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부터 東獨政府의 承認없이는 東獨의 基本法에의 加入은 排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b) 바이에른州政府가 條約承認法律이 大베를린 (Groß-Berlin)과 東部베를린 (Ost-Berlin)과 関聯, 基本法 第23条 1項과 背馳된다고 主張하는限, 大베를린은 変합없이 4大国의 責任下에 存置될 것이라는 意味가妥當하게 될것이나, 1949年5月12日의 基本法에 대한 軍政長官의 認准書에 의한 그에관한 関係質問이 聯邦憲法裁判所 判決로서排斥되었다. 그밖에도 1971年9月3일의 4大国 協定으로서 (1972年9月15日字 Bundesanzeiger 附錄 Nr. 174) 베를린의 地位가 最近独逸聯邦共和国을 拘束하는 形式으로 確認되었다.

6. 基本條約으로써 東獨居住 独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를 侵害하게 되어 곧 本 条約은 基本法에 違背되는 것이라는 바이에른州政府의 主張은 東獨居住 独逸人에 대한 義務를 憲法的次元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이 그와 같은 保護 및 配慮義務를 認定할 것이냐는 道德的, 政治的인 問題이며 결코 基本法上 認

定되고 있는 憲法上義務는 아닌 것이다. 基本法을 適用할 수 있는範圍가 制限된 関係로 独逸聯邦共和国은 이미 오래전부터 東獨居住 独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가 不可能하게 되었다. 独逸聯邦共和国이 東獨居住独逸人에게 西獨內의 独逸人과 똑같이 保護 및 配慮義務를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完遂할 수 있느냐는 法的問題이자 동시에 政治的인 問題라 하겠다. 西獨이 外國의 独逸人에 대한 保護를 할 수 있는 法的 그리고 事実的狀況에 依拠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可能하며, 보다 広範囲하게 實現시켜야 함은勿論이다. 助力義務 (Hilfeleistung) 은 独逸人国籍 (Staatsangehörigkeit) 을 갖출 것을 要하며, 個個人에 대한 保護行為와 助力行為는 屬地法 (ortsrecht) 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東獨居住独逸人에 대한 助力義務가 適法하여 可能한 것이냐는 基本條約에 의해서가 아니라 (政治的으로) 外國의 西獨과 東獨에 대한 関係가 規定되므로서 비로소 決定되는 問題이다.

### III.

假處分申請이 認容되는 경우의 그 結果에 대하여 本人은 聯邦政府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알린다.  
批准節次가 다만 暫定의 일지라도 中斷되는 경우 独逸聯邦共和国에 内外의 重大한 損失이 招來될 것을 念願하는 바이다. 他국과의 交涉에 있어서 條約에 대한 一方的인 見解에 의한 判断은 相對國에 는 何等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分明하므로, 스스로 그 地位

를 弱化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聯邦政府는 그의 責任上 그와 같은 損害를 防止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詳細한 說明은 해주지 못하였지만 法院이 그豫測되는 損害를 賢明한 洞察로서 判断해 주기를 希求하는 바이다.

強大國의 政策이 되도록 緊張緩和를 摂索하는 時期에 있다 하겠다. 여기에 独逸問題는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分明 重要한 役割을 占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恒常 이 같은 緊張緩和가 持続되는 것을 遷滯시키거나 妨害하려는 力이 있기 마련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은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根拠와 時期를 注意깊게 觀察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独逸聯邦共和国이 우리의 利害를 저버린채 緊張緩和를 推進시키려는 加에 대한 解明이 期待된다.

오늘날의 國際情勢가 주로 少數의 "頂上會談" (Gipfelsprach)이라든가 大規模의 國際會議라는 前段階를 밟아 決定되어진다. 1971年9月3日의 協定을 確定시킨 4大聯合国이 이들 會議의 主導權을 잡고 있음은 公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그들의 東西獨내에서의 國際的 行為를 制限시키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国의 對外政策面을 위하여서도 상당히 不利한 展望이 따른다 하겠다.

独逸聯邦共和国의 政策은 4大国協定이 發效한 以後부터 KSZE (Konferenz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의 准備를 始作하는데 대한 우리들의 結束의支柱가 되어왔다. 그 밖에도 両獨間의 基本條約이 實效化하는 今年 6月 마지막 週間 혹

은 7月 첫째週間に 第1次外相會議를 可能케 하였다. 따라서  
國際會議席上에서 最初로 同等한 地位로 參席케 될 兩獨外相에 複  
시라도 發生할 일체의 不透明한 要素들은 除去되어져야만 한다.

仮處分은 가히 責任을 免치못하게 될 聯邦政府의 헬싱키에서 開  
催될 外相會議에의 不參을 招來한다든가(東獨側이 아니라), 혹은  
他國家들로 하여금 과연 兩獨間의 基本條約이 真正으로 成立하였는  
가에 대한 疑問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특히 聯邦政府는 独逸聯  
邦憲法裁判所에 대한 礼儀上法院의 終局的인 判決에 대해서는 어  
떠한 異議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國際的으로 解明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聯邦政府는 恒常 主張하기를, 兩獨의 基本關係 (Grundverhältni-  
sse) 가 相互 不分明한 位置에 처해 있는 限, 兩獨의 UN에의  
加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 反面에 東獨側은 그  
들의 同盟國과 더불어 恒時 유엔에의 先加入을 推進해 왔다. 따  
라서 仮處分이 있게 되는 경우에 東獨은豫期치 않게 그들의 本  
來의 目的을 達成케 될 것이다. 그들은 基本條約의 發效与否와는  
無關하게 유엔에의 加入을 申請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東獨의 法的狀態에 의거해볼 때 東獨政府는 全人民會議의 決定  
(Volkskammerbeschluss) 이 없이도 유엔加入 申請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음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兩獨의 유엔加入의 경우에 四  
大國으로 하여금 既存의 權利와 責任을 宣言케 하려는 聯邦政府의  
努力이 成功하고 同時に 그들로 하여금 加入을 支持케 한다면 三

大国이 東獨에 의해 安全保障理事会 ( Sicherheitsrat ) 에 提出된  
申請에 대한 拒否權 ( Veto ) 을 充分히 納得시킬 정도로 提示하기  
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独逸聯邦共和国이 東獨과 4 大国  
에 대하여 왜 同時에 加入申請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무런  
理由도 불일 수 없게 된다.

仮處分이 있게 되는 경우, 이제는 安全保障理事会가 스스로 東獨  
의 加入에 대한 票決을 한다거나 혹은 西獨은 이것을 防止하기 위  
해서 基本條約이 最終的으로는 어떻게 判決이 될 것이냐도 잘 모  
르는 채 궁금하게 될 것이다. 바이에른州政府의 이 같은 要請이 受  
諾되는 경우에는豫期치 않았던 一方의인 利益이 東獨에게 돌아가  
게 되는 것이다.

聯邦長官 Bahr 와 國家書記 ( Staatskretär ) Kohl 이 5月 30日  
発表한 宣言에서 이루어진 情勢를 살펴보건대 이와 같은 切実한  
對話를 繼續하기 위한 새로운 期日을 合意하는 것은 成功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이미 合意되었던 스포츠, 保健施設, 通信, 国境委員  
会, 接境地往来, 새로운 移住 등 여러 가지 重要問題들에 관한 对話  
期日은 우선 拒否되지 않았다. 联邦政府가 알고 있는 情報에 의  
하면 仮處分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拒否도 免치 못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事実은 基本條約의 施行의 準備를 最少限 2個月 더 延  
延시키게 될뿐만 아니라 例컨대 国境上人的往来 또한 8月 1日現在  
그 要件이 法的으로 充足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코 實行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集約된다. 왜냐하면, 계속 憲法的인 形便으로  
事實上 (de facto) 그동안은 進行할 수 없었던 協議들이 모두  
다시 再開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仮処分이 있는 경우 이  
미 發效된 兩獨間의 通行協定 (Transitabkommen) 과 往來條約  
(Verkehrsvertrag) 的 部分까지를 危殆롭게 할 念慮도 없지  
않으며, 離散家族의 相逢에 悲報를 가져다 준다는 可能性도 無視할  
수 없다. 聯邦政府가豫測키로는 仮処분이 있는 경우 東獨과 這間  
에 있었던 모든 関係事件이 本案判決이 있기 까지는 모두 그  
影響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仮処분이 聯邦共和國과 東獨人에 미치게 될 惡影響은 만약 사람들이  
基本條約은 틀림없이 違憲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되는 경우에  
는 틀림없이 発生케 될 것이다. 그러나 聯邦憲法裁判所가 支持하  
듯이 그 判決이 基本條約의 合憲性을 確認하는 경우 仮処分으로  
인한 損害를 利益考量 (Güterabwägung) 的 觀點下에서 어떻게  
政治的으로 合當하게 그리고 責任있도록 할 수 있느냐의 疑問이  
提起된다. 그리고 이러한 損害는 判決이 내립과 同時に 사라질  
것들은 결코 아니다. 聯邦共和國의 國地的地位에의 侵害가 다만  
서서히 除去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前示한 KSZE에서 西獨의  
位置에 있어서도 그 損害는 回復할 수 없으며, 國際聯合에의 加入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東獨과의 閥聯下에서도 損害가 나타날  
것이 分明하다. 그 크기와 期間을 推測하기는 어렵다.

IV. 結論的으로 말하면 대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內容 은 基本條約이  
獨逸聯邦共和国의 憲法秩序에 反한다는 充分한 根拠을 提示하지 못하  
기 때문에 仮処分申請의 모든前提들은 存在하지 않는다. 聯邦政  
府의 見解에 따르면 権限있는 國家機關은 그의 憲法的責任과 充分  
히 合致된다고 생각된다. 基本條約은 基本法의 根本目的을 參酌한  
것이다. 仮処分申請은 獨逸聯邦共和国에 미치게 될 重大한 国内外  
의 損失과 密接히 関聯하여 考察하여야만 할 것이다.

제 르 하 르 트 얀

VIII. 1973年6月4日의 바이에른州政府 首相의 文書

( 텔레 타이프受信 )

바이에른州政府首相 8 원현 1973年6月4日 14:00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議長 貴下

칼스루해

案件 : 基本條約承認法律의 違憲審查에 관한 節次 - 2BvQ 1/73 -

本件 : 仮処分申請

聯邦政府의 이름으로서 立場을 阐明한 1973年6月2日의 聯邦長官에 대하여 바이에른州政府는 다음과 같이 意見을 表明한다.

I.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 第10條에 의거 批准文書의 交換으로써 不可避한 事実이 発生되리라는 것을 明白히 한바 있다. 事情如何에 따라서는 執行되지 않을 法律은 署名과 公布도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따라서 條約의 副署, 署名 및 公布에 관한 停止를 要請하는 仮処分申請을 提出한 것이다.

## II.

仮処分申請을 하기 위한 前提条件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聯邦政府의 唯一한 法的論証은 本案의 訴自體가 根拠없는데 基礎를 두고 있다. 그러나 仮処分申請을 審查하는 데 있어서는 係爭規範의 效力与否는 審查對象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본 바이에른州政府는 1973年5月22日의 提訴時に 充分히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基本條約의 違憲性与否에 관한 疑心이 있는 것으로서는 仮処分申請을 할만한 緊切性의 内容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聯邦政府의 主張은 無益하다. 그밖에도 立法團體에 관한 問題에 대하여 慎重한 審議를 하고 있다든가 國家法의 國內法의 文獻上 数年前부터 쌓여온 意見形成(이에 대해 바이에른政府는 아무런 言及을 한 바는 없으나)을 보건대 聯邦政府의 無根拠性은 充分히 說明된다고 하겠다.

## III.

本 仮処分申請이 受諾아니면 拒絶當하는 경우 發生될 損害에 대하여 審按해 보면 聯邦憲法裁判所는 事情如何에 따라서는 両國間의 条約을 基本法을 侵害하면서 実現시켜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重要한 事態가 發生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聯邦政府가 主張하고 있는 仮処分이 있는 경우에 招來될 것

이라는 損害에 대하여 若干의 意見을 披瀝해 볼 것이다.

1. 联邦政府는 그의 意見의 源泉이 되고 있는 联邦의 政策을 国家利益 ( nationale Interesse ) 의 唯一正当한 政策으로 想定시키고 있다. 오히려 그와 反對로 바이에른州政府는 이른바 联邦政府의 繁張緩和政策은 一連의 重大한 危險을 惹起케 될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仮処分에 隨伴될 利益 또는 損害를 評価하는 데에 있어서 联邦政府의 政策을 独逸聯邦共和国 혹은 全独逸國의 利害의 唯一한 基準으로 삼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2. 联邦政府가 憂慮하고 있는 바인 政策實現을 위한 国家的 緊急性을 認定해준다 하더라도, 本 仮処分이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联邦政府의 行為能力을 마비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联邦政府는 基本條約과 KSZE와 國際聯合 ( die Vereinten Nationern ) 加入要求 사이에 헬싱키 ( Helsinki ) 外相會議에의 參加나 國際聯合加入要請을 排除시키는 그러한 関係가 存在한다는 것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한 関係는 실로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3. 國際的 會議上에서 联邦政府의 位置가 그로 인하여 政府가 會議에서 目的한 바 結果가 때로는 国內法의 으로 憲法的審查를 받아야 한다는 事實을 變更시키는 것은 아니다. 民主主義의 法治國家의 徵表가 되는 이와 같은 联邦政府의 法的狀態는 締約相对国家

에게도 잘 알려진 것이다. 이렇치 못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事  
實을 相對國家에 대하여 注意를 喚起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兩國은 批准節次上에서 發生한 諸結果를 拒絕한다는 危險負  
担까지 覺悟하여야 한다.

4.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이 憲法的審査의 対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一瞬의 考慮함도 없이 단지 政治的 計劃이란 名目  
으로 仮処分申請을 反對하였다. 國內政策에서 오랫동안 認定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憲法審査는 分明히 可能하다.

5. 独逸聯邦共和国과 東獨政府との 対話 (Gespräch) 의 持続시킬  
때의 問題로서 基本條約이 全的으로 無效될 경우의 危險과 2個月  
間 遷滯할 때의 危險을 考慮하여야만 한다.

Dr.h.c.Goppel

IX. 1973年6月4日의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 (Beschluß) —

ZBvQ. 1/73—

聯邦憲法裁判所

- ZBvQ. 1/73 -

国民의 이름으로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12月  
21日의 条約에 관해 承認한 法律을 暫定的으로停止시켜 달라는 仮  
処分申請을 審査한 節次에 있어서

訴提起人 : 바이에른州政府, 州政府首相의 代理

訴訟代理人 : 브루멘비츠教授 (Prof. Dr. Blumenwitz), 아우구스부르  
그, 아우그스부르크大学, 헬싱슈트라세 9 独逸聯邦憲法裁  
判所 (第2部) 는

副所長 쇄페르트 (Seuffert)를 議長으로 하고,

슈라브렌도르프 (Dr.v.Schlaboendorff),

루프 (Dr.Rupp),

가이거 (Dr.Geiger),

히르쉬 (Hirsch), 링크 (Dr.Rinck)

로트만 ( Dr. Rottmann ),

반트 ( Want )로構成된法官의參席裡에

1973年6月4日,

本申請을棄却하기로決定했다.

#### 判決理由

A.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  
12月21日의 条約(以下 条約으로 略稱)이 調印되었다( para-  
phiert ). 条約承認法律이 立法團體에 壊附되었다. 条約批准節次를  
終結시키는 것을 妨害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3年5月22日 바이에른州政府는 訴를 提起하였는 바,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條約을 承認하는 法律에 대한 副署, 署名  
및 公布 및 同 条約 第10條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 등 일체의  
行為에 대하여 聯邦憲法裁判所가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訴한 条約의  
違憲性与否에 대한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停止시켜 줄  
것을 要請하는 仮処分申請을 提出하였다.

本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은 基本法에 違背된다고 主張하고  
특히 再統一의 原則, 國家的 単一性維持의 原則, 또 다른 部分의  
獨逸의 加入權, 그리고 基本法 第23條1項, 東獨居住 獨逸人에 대한  
保護 및 配慮義務 等에 違背된다고 力說하였다.

仮処分申請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 의해서 緊急히 受諾되어야 할

것이다. 즉 仮処分이 없이는 聯邦憲法裁判所는 条約에 대한 憲法的審查를 할 겨를도 갖지 못하여, 批准文書의 交換과 더불어 國際法의 效果가 發生하므로서, 聯邦政府는 자칫 잘못하면 憲法을 侵害하면서까지 그의 義務를 實行하게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만약 条約이 基本法과 合致된다는 判決을 내리는 경우에도 一時的으로 延期되었던 批准節次가 正當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聯邦政府는 仮処分을 許容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訴를 提起하였다.

聯邦政府側은 仮処分이 条約承認法律에 대한 副署 및 署名 그리고 公布는 停止되어야 한다는 仮処分申請은 不適法하다한다. 왜냐하면 基本條約 第 10 条에 따르면 同 批准文書의 交換이 있는 날부터 發效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國際法의 条約에 있어서 通常節次와는 反對로 聯邦政府는 条約의 拘束力を 뒷받침하기 위해 独自의으로 努力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밖에도 聯邦政府는 仮処分은 根拠없는 것이라고 論駁하였다. 즉 本件에서는 本 被訴된 条約承認法律에 대한 立法府의 議決에 대하여 憲法上 權限있는 機関이 判断을 해 주기 위해서는 充分한理由가 提示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州政側이 主張하는 바 憲法의 憂慮는 立法節次上에서 慎重히 審查되어짐으로서 根拠없는 것이라고 判明되었다.

仮処分이 結果할 損害에 대하여 聯邦政府의 意見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独逸聯邦共和国은 對話의 相對

國에 대하여 國際的으로 볼 때 相當히 制約된 行為能力下에서 接触 할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事態는 이미 始作된 KSZE 準備를 위한 外相會議를 볼 때나 혹은 유엔加入에 대한 兩獨의 計劃을 살펴볼때 특히 深刻하다. 이렇게 되면 東獨과의 對話의 繼続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며 人權에 관한 諸措置들도 打擊을 받게 될 것이다.

B.

聯邦憲法裁判所는 時間의으로 時急히 要求되는 관계상 口頭審理 (mündliche Verhandlung) 없이 判決하였다 (§32 Abs.2 Satz 1 BVerfGG).

1.

訴提起는 正當하다 (Zulässig). 提訴는 憲法的節次의 係屬 이전에도 可能하다 (BVerfGE 7, 367 [371] u.ö.). 本案判決은 立法團體에서 條約承認法律에 대한 諸立法節次를 끝낸다음에야 비로소 可能하다 (BVerfGE 1, 396 [413] u.ö.).

바이에른州政府는 訴提起權을 갖는다 (antragsbefugt) (§76 BVerfGG). 訴의 内容으로 本案을 問題삼지는 않는다.

本案請求가 첫째 不適法하며 둘째 明白한 瑕疵가 있다하여 仮處分申請이 不當하다는 論拠는 採択할 수 없다. 첫째번 異論에 대

하여 本 第2部는 6:2로, 둘째번 異論에 대하여는 5:3으로 否決하였다.

## II.

1. 4人の法官이 다음과 같은 判決을 하였다.

a) 基本條約 第10条에 따르면 本 条約은 批准을 必要로 하며批准文書의 交換이 있는 날부터 發效하게 되어 있다. 締約当事国에게 拘束力を 미치는 最後의 行為는 이번 경우에는 聯邦政府가 "批准文書"를 交換하는 때 있다. 따라서 本件에서는 聯邦大統領의 條約承認法律에 대한署名. 혹은 公布를 할 権限을 制限시킬理由가 당초부터 存在치 않는 것이다.

b) 联邦憲法裁判所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73年7月31일本案判決을 마치게 된以後에는 만약 本案判決이 있기 까지 仮処分이 있었고 그리고 條約承認法律은 基本法과 合致된다는 判決이 있는 경우에 있을 損害(Nachteile)와 仮処分이 없었고 그리고 條約承認法律이 基本法에 違背된다는 判決을 받는 경우 닥쳐 올損害와를 比較考量하여야 할 것이다.

同法院의 오래된 判例를 살펴보면 仮処分은 嚴格한 基準(strenge Maßstab)의 設定下에서 實施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政治的으로 매우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 國際法의 承認法律인 경우에는 반드시 必要하게 된다. 이리하여 國際法의 條約에 관한

憲法審査에 관련한 仮処分申請이 한번도 그 목적을達成한例는 없었다. 그같이重大한條約에 대하여法院은條約承認法律이違憲일 것이라는抽象的인可能性与否를考慮하여야하는程度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하였다. 聯邦憲法裁判所法第32条1項에 따른審査가 있을 경우 우선 이제까지 알려진條約承認法律의違憲性根拠의程度가聯邦憲法裁判所가全般的 혹은部分적으로違憲임을宣言하게 될蓋然성이질을것이要求된다.

c) 다음과 같은思考가 있을 수 있다. 즉引用한法院의判決을回顧해 볼 경우(특히 BVerfGE 4, 157 [169, 178]:5, 85 [128]参照)本院이條約承認法律이基本法과合致하지 않는다고(따라서無效라고)判断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審査의結果가條約承認法律은基本法과 단지 어느 일정한 점에서 그리고特定解釈으로서만合致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條約의發效가時間의으로制限된다든가그実效力을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仮処分申請을棄却하고 이로써本案判決이있기以前에條約의施行에必要한批准文書의交換이行해진다하더라도,比較的卑小한損害밖에發生치 않을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는 仮処分을行함으로써 그것이비록法의으로는 1973年7月31日까지로局限된것이기는 하나 매우重大한損害를招來할지도 모른다.

本條約은 모스크바條約과 바르샤바條約의締結이完了된以後聯邦政府가企図한緊張緩和를 위한東方政策(auf Entspannung

gerichteten Ostpolitik)의範圈內에서의一大進步를意味한다. 따라서本條約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批准節次上의協商은聯邦政府가推進하는諸東方政策에直接影響을 미치게 된다. 条約協商은條約自體가目的하고 있는 바 즉 특히西獨과東獨과의關係正常化라든가兩國內에서의人權에관한諸措置와도密接히關聯을맺고있다. 基本的인政治의意義를지니는本條約의締結과批准을들이켜볼때聯邦共和國의政治的行為를召任한機關은그의責任을銘心하여야만한다. 法院은獨自의in知識으로서는政治의meaning을充分히概觀할수없는까닭에이러한점을疎忽하지않았다. 聯邦政府가이미説示한바와같이條約批准이1973年7月31日까지延期되므로써國際會議上에서특히KSZE의參加및유엔加入等에서의獨逸聯邦共和國의行為ability이問題視될것이다. 그러한損害는復旧할수없는性質의것이다. 그外에도條約과附加條項에따른諸協定에관한協商들이難處에부딪힐것이다. 獨自의으로成立시킨接觸과이미確實해진人權措置가弊를당하게된다.

위와같은여러가지理由로인하여假処分申請은받아들일수없음. 本申請은公共福利上緊切히要求되는어떠한理由도내包하고있지않다.

2. 이에 대하여 4人の法官은 다음과 같은見解를 採択하였다.

a) 本判決理由 3番에 記述되었듯이 全法官은 提請된 仮処分申請은 現在(derzeit), 「緊切히 要求」(dringend geboten)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32 Abs.1 BVerfGG 參照) 받아들일 수 없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따라서 지금은 혹시나 또 다른 根拠로 해서 仮処分申請이 棄却될 수는 없었는가라는 혹은 事態의 추이에 따라서는 또다른 判決도 나을 可能性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떠한 質問도 하지 않기로 한다.

b. 現狀態(gegenwärtiger Stand der Dinge)로 보아 다음과 같은 説明이 可能하다.

仮処分이 내려지지 않은 채 本案判決이 宣言되기 以前에 条約이 批准文書의 交換과 더불어 發效되는 경우 発生する 損害는 以下와 같다.

判決이 説示한 것처럼 法治國家(Rechtsstaat)에서 憲法上 条約承認法律의 違憲審查를 할 権限을 保有하는 憲法機關(Verfassungsorgan)인 聯邦憲法裁判所가 本案에 대한 判決이 있기 以前에 지금과 같은 方式으로 条約이 發效된다면 그것이 가장 重大한 損害라 할 수 있다. 最高憲法機關들은 憲法에 따라 相互를 尊重하여야만 한다. 法的으로 要求되고 있는 이러한 事項은 어떠한 政治的理由에 의해서도 깨어질 수 없다.

그와는 別途로, 本件에서는 우선 大綱 両者択一(Alternative) 즉 条約承認法律이 基本法과 合致되느냐 혹은 違背되느냐는 方法以

외에도 第3의 方法 즉 과연 条約承認法律이 어떠한 点에서 어떤  
特定한 解釈을 通하여 (憲法合致的解釈;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基本法과 合致될 수 있겠느냐라는 可能性도 存在한다.  
그러나 이 表現이 위 两者択一을 "더욱 包括的"인 意味로 使用  
하는 경우 이 같은 問題는 없을 것이다. 仮處分이 行해지지 않고,  
仮說의이지만 基本條約承認法律이 憲法合致的解釈方法을 通하여서는  
基本法과 合致될 수 있다는 本案判決이 있게될 때 成立되는 損害  
는 결코 작은 것만은 될 수 없다. 그 損害는 兩國間 批准節次를  
拘束시키는 國際法의 段階에서 나타난다. 国內的으로는 모든 憲法上機  
関을 拘束하는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은 条約 相對国에게는 그 效  
果가 미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批准으로 發生된 信賴保護  
를 할 것이 期待된다. 이리하여 基本法上 保護된 保障된 聯邦憲  
法裁判所의 違憲審查는 条約當事국도 이와 関聯되어져야함에도 不拘  
하고 空虛하게 되어 버린다.

또한 有力한 根拠가 되는 要件인 "公共福利"上 仮處分이 緊切  
히 要求된다는 것은 결국 聯邦憲法裁判所는 憲法的秩序를 守護한다는  
말하자면 基本法에 違背한다는 解釈이 可能한 条約이 施行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自身의 機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을 의미한다.

法院이 条約은 基本法과 合致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될 경우 仮  
處分으로 인한 損害는 容易하게豫測할 수 없다.

聯邦憲法裁判所는 그의 表現을 통해 批准을 時間의으로 1973年

7月31日까지 遅延시키는 것은, 그동안 國際的會議席上에서의 聯邦  
共和國의 行為能力을 현저하게 不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認知하였다.

3. 判事全員이 現在 仮处分은 "緊切히 要求" 되지 않는다고 見  
解를 合意했다.

Seuffert Dr.V.Schlaebendarf Dr.Rupp

Dr.Geiger Hirsch Dr.Rinck

Dr.Rottmann Wand

X. 1973年6月5日の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聯邦憲法裁判所의 公報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는 1973年6月4日 그의 決定을 통해 巴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基本條約 第10条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을 法院의 本案判決이 있을 때까지 停止시켜달라는 仮処分申請을棄却하였다.

本院은 만장일치로 仮処分申請은 現在 "緊切히 要求" 되지 않 는다고 判断하였다. 그것은 兩國間의 批准節次上에서 批准文書가 任意로 交換되어 질 수도 없는 狀態에 있으며 또한 批准節次를 1973年7月31日 (本案判決의 宣告期日) 까지 延期시킬 것 이나 아니면 本案判決確定 以前에 文書交換을 할 것인이라는 것도 아직 未定狀態에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 그의 論旨를 두었다.

4人の判事は 仮処分申請을 反対하는 見解를 取하였다. 그것은 責任질 수 없을 정도의 重大한 損失을 起起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根拠를 두었다. 즉 条約批准節次의 時間의 遲滯는 國際會議 例컨대 KSZE에의 參加, 유엔加入要請에서의 独逸聯邦共和国의 行為能力을 현저히 不安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發生 한 損害는 回復不可能하다. 이밖에도 条約과 그 附加條項에 따른 附加協定에 대한 協商이 또한 困難을 겪을 것이며, 兩國內에서의 人權保障에 관한 諸措置 또한 被害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른 4人の判事은 仮処分申請은 現在 繁切히 要求되는 것  
이 아니라는 데 一致를 보고 난 지금 聯邦憲法裁判所法 第 32 条 1 項  
에 따른 仮処分申請要件이 發生하게 되는 새로운 事態의 進展이 있  
을 때 까지는 그에 관한 討論을 避하기로 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現在에 回復不能의 損害들 즉 聯邦政府는 仮処分을 拒否하면서 아  
마도 어떠한 憲法機關도 拘束을 받아야 할 憲法의 根本原則을 損  
傷시켰다는 것과 聯邦憲法裁判所는 將來 자칫하면 條約締結에 반하  
여 憲法的秩序를 実現시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게 된다.

### B. 1973年6月13日의 바이에른주政府의 仮処分申請에 대한 裁判節次

1. 1973年6月13日의 바이에른주政府 訴訟代理人의 提訴 ( 텔레 타  
이 프受信 )

디터 부르멘비츠教授 ( Prof.Dr.Dieter Blumenwitz )  
아우그스부르크大学 公法 특히 國際法 및 유럽法 ( Europarecht )  
講座 担当教授

8900 아우그스부르크 1973年7月13日

聯邦憲法裁判所 貴下

7500 칸스루해

카알슈트라세 10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  
年 12月 21日의 条約에 대한 承認法律(Az.ZBvQ. 1/73)

本件：바이에른州政府에 의한 仮処分申請

바이에른州政府는 1973年5月28日 ① 基本法 第9.3條1項1号 및 聯邦憲法裁判所法 第13條6号, 第76條1号에 依拠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年12月21日의 条約을 承認하는 法律의 憲法合致性与否에 대한 審查를 要求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그것은 条約承認法律은 基本法에 違背하는 球로 無效임을 確認해 달라는 訴이다. 本案判決의 保障을 위하여 바이에른州政府는 1973年6月12日 새로이 仮処分을申請할 것을決定했으며 이것은 1973年6月14日 以後 變化된 事物的, 法的狀態를 특히 考慮하고 있다.

同 裁判節次에 있어서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으로서 本人은 본州政府가 提起한 바 訴訟에 대하여 聯邦憲法裁判所가 審理한 結果 条約承認法律은 基本法에 違背되므로 無效라는 宣言이 내려질 때까지 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을 停止시키는 仮処分을 申請하는 바이다.

脚註 1 編者註：文書 C1

II. 1973年6月14日의 聯邦法務部長官의 文書

聯邦法務部長官 53 卷, 1973年7月14日

1004 E ( 2321 ) - 230 / 73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2部 議長 資下

75 칼스루해 1

案件 :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  
年 12月 21日의 條約에 관한 1973年 6月 6日의 法律의 違憲与否審  
查를 目的으로 한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 ( BGBI, 1973 II S.421 )

本件 : 1973年 6月 13日에 새로이 提出된 仮処分 申請

添附 : 30通의 文書

聯邦政府의 이름으로 本人은 1973年 6月 13日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仮処分申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立場을 表明한다.

다음과 같이 論拠에 의하여 本人은 새로이 提出된 仮処分申請은  
不適法하므로 明白히 根拠없는 것으로서 棄却되어야 함을 要求하는  
바이다.

脚註 編者註 : 文書 B I

## I.

바이에른주政府가 출판 主張하는 바 基本條約에 대한 批准節次를 中斷시켜달라는 要求는 法的保護한 必要性에서 볼 때 何等의 理由가 없다. 1973年6月4日 決定이 있은 後 - 2 BvQ. 1/73<sup>(2)</sup> - 联邦憲法裁判所의 立場에서 볼 때 仮処分申請을 받아들일만한 어찌 한 새로운 狀態가 明白한 理由가 될 정도로 發生한 것은 없다.

脚註 編者註：文書 A IX

聯邦憲法裁判所의 仮処分申請에 대한 判決이 물론 實質的인 法力 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原則적으로 本 仮処分申請節次에 서 联邦憲法裁判所法 第 76 条에 따라 새로이 提起된 申請을 다시 금 判断하지 않으면 안된다. 联邦憲法裁判所가 詳細한 理由를 볼 이면서 棄却決定을 한 뒤 1週日만에 새로이 提起된 仮処分申請에 도 또한 嚴格한 要求事項이 갖추어질 것이 必要하다. 한번 棄却당한바 있는 仮処分申請을 例外的으로 다시 正當化시킬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대하여 联邦憲法裁判所가 宣言한 意味로서 생각할 때 (BVerfGE 4, 110 [113] : 이 밖에도 Leibholz-Rupprecht, BVerfGG, 1968, §32 Ranen.8.22: Klein in Maunz-Sigloch-Schmidt-Bleibtreu-Klein, BVerfGG, 1972, §32 Ranen.37: Grundmann, Zur Vargreiflichkeit Verfassungsgerichtlicher Anordnung-

sentscheidungen, DÖV 1960, 680, 684; Granderath, Die einstweilige Anordnung im vordem Bundesverfassungsgericht, NJW 1971, 542, 544), 이번의 새로운 理由를 또한 認定하기 困難하다.

1973年6月4日 行한 (BII 1 理由)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論旨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즉 仮処分申請을 審査한 結果 本 第2部는 索約承認法律이 基本法과 一致할 수 없다(따라서 無效이다)라는 事実을 거의 發見할 수 없었다. 1973年6月4일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르면 本 仮処分申請은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2条 1項의 仮処分申請理由에 따른 公共福利上 緊切히 要求되는 要件을 欠如하고 있다. 1973年5月22日,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請의 理由가 가지는 이 같은 缺點事項은 1973年6月4일의 決定이 있은 以後로도 아무리한 變化가 없다.

脚註 編者註 : 文書 C I

## II.

本人이 1973年6月5日 聯邦政府의 立場을 言한 바 있는 仮処分으로 말미암아 独逸聯邦共和国에 미치게 될 国内外的 損害(그에 대해서는 III以下 參照)는 只今도 如前히 尚存한다. 이제 本人은 1973年6月2日當時에 指示한 理由에 立脚하여 이번 새로운 提起된 仮処分申請에도 對処하려 한다. 그리고 實際적으로 観  
脚註. 編者註 : 文書 A VII

察해 볼 경우 這間에 变化한 것은 以下와 같다.

1973年 6月 12日 東獨은 유엔加入要請을 發表하였다. 1973年 6月 6日의 유엔憲章에 立脚한 独逸聯邦共和國의 加入에 관한 法律 ( das Gesetz zum Beitrit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r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vom 6. Juni 1973 ) ( BGBl. II S. 430 ) 이 이미 發效되었고, 또한 1973年 6月 12日 聯邦大統領閣下께서 이미 뉴욕 ( New York )에 보내신 加入에 관한 諸文書에署名을 끝마친 지금, 独逸聯邦共和國 또한 유엔加入要請을 더 以上 遲滯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유엔加入에 관한 우리와 節次가 더 以上 遲延될 수 없기 때문에, 仮處分이 있게되면 유엔은 基本條約이 数日만 지나면 發效하리라는 確實性도 없는 가운데 加入申請案을 处理하게 될 것이다. 兩獨의 加入案을 審理할 1973年 6月 21日로 豫定된 유엔安全保障理事会의 召集은 결코 任意로 延期시킬 수 없는 것이다.

1973年 6月 13日 東獨은 基本條約에 관한 國內的立法을 終結시켰다. 1973年 6月 20日에는 東獨과의 批准文書交換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聯邦政府가 聯邦憲法裁判所에 基本立場을 訟訟以来 또한 1973年 6月 4日 裁判所의 決定이 있은以来 基本條約의 施行을 延期시킴으로써 나타날 損害에 대하여 또 다른 判斷이 있을 수 있는 事態進展은 결코 없었다 하겠다. 聯邦政府의 立場으로 볼때에도 聯邦共和國에 미칠 損害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裁判所側에서 하루

빨리 条約承認法律의 承認과 基本條約의 兩國間 實效에 대한 審理를 해 줄 것에 대해서는 何等의 疑心을 가지지 않는다.

1973年 6月 4日의 決定에서 聯邦憲法裁判所는 비록 時間의 으로 緊迫함을 無条件 認定하지는 않았지만 仮処分申請의 要件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基本條約의 施行을 遲滯할 경우 나타나게 될 損害는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深刻한 것이기 때문에 仮処分申請은 公共福利上 承認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1973年 6月 4日의 決定으로 볼 때 聯邦憲法裁判所는 그의 判決에 대한 새로운 審查가 可能하리라는 示唆는 없었다.

게르하르트 얀

(Gerhard Jahn)

### III. 1973年 6月15日의 聯邦法務長官의 文書

聯邦法務長官 53 본 1973年 6月 15日

1004 E (2321) - 230/73

聯邦憲法裁判所副所長 兼

第二部 議長 貴下

75 칼스루해 1

案件：西獨과 東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西獨과 東獨間의 1972  
年 12月 21日의 條約에 관한 1973年 6月 6日의 法律에 대한  
바이에른州政府의 違憲審查要請 ( BGBl. 1973 II S.421 )

本件：1973年 6月 13日에 새로이 提起된 仮処分申請

關係文書：1973年 6月 14일의 本人의 文書

添附：30通의 写本

聯邦政府는 새로운 仮処分申請의 内容을 包含하고 있는 바이에른  
州政府 訴訟代理人의 텔레타이프를 1973年 6月 14日에야 비로소  
接受하였는 바 이때는 이미 1973年 6月 14일의 聯邦政府의 文  
書가 모두 作成되었을 때이었다.

聯邦政府는 바이에른州政府의 見解를 認定할 수 없다. 1973年  
6月 4日 行하여진 聯邦憲法裁判所의 理由説示는 여전히妥當하다.  
바이에른州政府는 確實히 1973年 6月 2日 聯邦政府의 文書가 包  
含하고 있는 理由의 效果를 誤解하고 있다. 이것은 1973年 6月  
2日 聯邦政府의 立場을 陳述한 論拠 3番에 明確히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聯邦政府는 새로운 仮処分申請에 대해서 口頭審理를 해  
줄 것을 要請하는 바이다. 聯邦政府는 1973年 6月 2일의 文書  
3番에서 그 理由를 充分히 글로써 다 나타낼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聯邦政府는 이에 대해서 非公開審理를 통해 法院에게 伝達  
하였다.

제 르 하 르 트 얀

IV. 1973年 6月 14日의 1973年 6月 16日 18時에 開催될

口頭審理에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召還(텔레 타이프)

聯邦憲法裁判所 칼스루해, 1973年 6月 16日, 13:55

第2部

聯邦法務長官 貴下

본 ( Bonn )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는 1973年 6月 15日의 聯邦法務長官이 伝達한 文書의 内容에 따라 基本條約의 效力發生을 停止시키라는 仮処分申請에 대한 口頭審理를 今日 1973年 6月 16日 18時 칼스루해 술로스 베찌르크 3에 所在한 聯邦憲法裁判所 法廷에서 開催키로 決定했다.

이 時刻까지 貴下께는 登院하여야 한다. 訴訟代理人은 그 자리에서 밝히도록 要請하는 바이다.

副議長, 쇄페르트 ( Seuffert )

V. 1973年 6月 16日의 口頭審理에 관한 記錄

聯邦憲法裁判所 칼스루해 1973年 6月 16日

第2部의

公開會議

- 2 BvQ 1/73 -

口頭審理에 관한 記錄

前示한 바 있는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條約에 관한 批准文書를  
停止시켜 줄것을 内容으로 하는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에 대  
한 裁判節次를 開始함에 있어서,

現在 그 法官들은,

議長에 副所長 Seuffert를 비롯하여 Dr. V.Schlabrendorff,  
Dr.Rupp, Dr.Geiger, Hirsch, Dr.Rinck, Wand 그리고 本 執行 文書  
管理人으로서 行政書記長 Hofel이 맡았다.

議長은 18時에 會議를 召集하고 審理에 들어갔다.

提訴人인 바이에른州政府側에는 Prof.Dr.Bluemenwitz, Dr.Kesler,  
Bußler, Eberle 가, 그 相對方인 聯邦政府側에는 聯邦首相 Jahn,  
聯邦長官 Bahr, 그리고 Bahlmann, Dr.Eitel, Bauch 가 맡고 있다.

議長은 바이에른州政府의 要請에 따라 Dr.Rotmann을 偏頗的이라  
는 理由로 忌避시켰음을 알렸다.

바이에른州政府를 代弁하여, Dr. Blumenwitz는 条約承認法律은 基本法에 違背하는 것임으로 따라서 無效이다라는 判決이 내릴 때까지 基本條約 第 10 条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을 一時的으로 停止시켜 달라는 仮処分申請을 提出하였다.

聯邦政府側을 위하여서는 聯邦首相 Jahn 이 새로이 提起된 仮処分申請 또한 正當하지 못하며 따라서 明白한 瑕疵를 가진 것으로棄却되어 마땅하다고 反駁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決定이 있었다.

裁判은 公開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事例를 통하여本件에 関心 있는 第 1 部의 判事들과 같은 本判決에 関係 있는 사람들에게는 參席을 許容하였다.

非公開審理에 있어서 모든 參席者들은 秘密을 維持할 義務를 갖는다는 것을 明白히 밝혔다.

聯邦長官 Bahr는 仮処分으로 인하여 基本條約에 관한 批准文書의 交換이 中止되는 경우 招來될 損害에 대하여 陳述하였다.

또한 그는 Prof. Dr. Blumenwitz, Dr. Kepler, Büsler, Eberle 및 聯邦憲法裁判所法官 Dr. Rinck, Dr. v. Schlabrendorf의 質問에 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当事者들은 그들의 文書內容에 대하여 進行을 繼続했다.  
다시 會議를 公開하기로 하였다.

議長은 1973年 6月 18日 月曜日 15時 같은 자리에서 判決의

宣言이 있을 것이라는決定을 했다.

会議는 19時 34分에 마쳤다.

죄 케르트 ( Seuffert )

회 펜 ( Hofé1 )

## VII. 1973年 6月 17日의 바이에른州政府首相의 文書 ( 텔레타이프 )

바이에른州政府首相 8월 17일 1973年 6月 17日, 10:00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 貴下

칼스루해

案件 : 바이에른州政府의 基本條約의 違憲性審查要請

本件 : 第2次 仮処分申請

1973年 6月 16日行한 口頭審理에서 聯邦政府는 充分한 審查 없이  
그자리에서 즉각 本 바이에른州政府의 立場을 謂 수가 없는 정도  
의 演說을 하였던 것이므로 그자리에서는 見解의 披瀝을 抛棄하였  
다.

바이에른州政府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聯邦政府에 텔레타이프로

伝達하므로서 答弁에 必要한 時間을 確保해 주도록 努力하였다.

VII. 1973年 6月 17日의 바이에른州政府 訴訟代理人의 文書(텔레타이프)

Prof.Dr.Bluemenwitz 1973年 6月 17日 17:55

바이에른州政府訴訟代理人

1.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 貴下

칼스루해

2. 본 - 聯邦法務長官

案件 : 基本條約의 批准法律에 관한 바이에른州政府의 違憲審査要請

本件 : 第2次 仮処分申請

바이에른州政府는 口頭審理가 進行되는 가운데 訴訟代理人으로 하여금 本政府가 提請한 条約承認法律은 基本法에 違背하는 고로 無效라는 判断을 確認받을 때까지 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批准文書의 交換을 停止토록 法院에 促求하였다.

## 請求原因

73年 6月 16日 非公開로 進行된 口頭審理過程에서 政府가 본  
仮処分申請을 論駁할 理由는 納得할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1. 联邦政府는 詳説하건대 西獨과 東獨間의 基本條約에 의해 確立된 '特別한 関係' (besondere Verhältnis) 가 條約施行의 延期로 말미암아 打擊을 받게 되리라고 評하였다. 그러나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上의 그와 같은 特別한 関係 (國際法의 拘束力を 갖는거나 憲法의 関聯을 갖는 式으로 實現될) 는 本案請求를 통해 볼 때 何等의 理由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联邦政府가 言及한 4大国의 (全体独逸에의) 權利와義務는 東獨과 蘇聯 (Ud SSR) 間의 批准文書交換이라든가 書信交換이라는 實現過程속에서 拘束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2. 联邦政府가 推進하고 條約批准文書의 延期로서 回復할 수 없는 政治的 損害의 發生은 거의 믿을 수 없다. 東獨이 유엔加入을 申請을 한 뒤에 곧 基本條約의 批准을 아니 할 明白한 危險은 없는 것이다.

VIII. 1973年 6月 18日의 바이에른주政府首相의 文書

바이에른주政府 首相 8 편행 22 1973年 6月 18日 10:45

一 真実로 火急 一

聯邦憲法裁判所 第2部 貴下

칼스루헤

案件：바이에른주政府의 条約承認法律의 合憲性審查에 관한 提請

한편으로 今日 決定된 判決의 앞으로의 意義를 考察하며, 또한  
1973年 6月 17日 텔레타이프로 送信했던 바 1973年 6月 16日  
의 口頭密理에서 聯邦政府의 提請을 充分한 審查도 없이 認定하는  
것은 不可함을 翳察하고, 本人은 바이에른주政府를 위해서 再次 仮  
处分申請에 대한 口頭密理를 받아들여 줄 것을 要求하는 바이다.

바이에른주政府首相

고 펠

IX. 1973年 6月 18日 宣告期日의 記録

聯邦憲法裁判所

찰소루해

1973年 6月 18日

第2部의

公開法廷

— 2 BvQ 1/73 —

前示한 바 있는 西獨과 東獨間의 批准文書交換을 暫定的으로 停止시켜줄 것을 内容으로 한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審查에 있어서, 이에 관한 判決期日의 公告에 대한 記錄이다.

現在 判事로서는 : 副所長 Seuffert 가 議長을 맡았으며 Dr.v.Schlabrendorff, Dr.Rupp, Dr.Geiger, Hirsch, Dr.Rinck, Wand 로 構成되었다. 進行上 文書管理人으로서 執行書記長 Höfel 이 選定되었다.

議長은 15時에 開廷하고 事件의 審理에 着手했다.

이 때,

바이에른州政府側을 위해서는 Prof.Dr.Blumenwitz 와 Büßler가  
聯邦政府側을 위해서는 Dr.Leverenz, Bahlmann, Dr.Mahnke, Giel-  
en 이 나와주었다.

議長은 다음과 같은 判決을 公告하였으며 重要한 判決理由를 伝  
하였다.

法廷은 15時 11分에 終了하였다.

죄 폐 르 트

회 펠

X. 1973年6月18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示

聯邦憲法裁判所

- 2 BrQ. 1 / 73 -

国民의 이름으로 東西独基本條約 効力停止 仮処分申請을 決定  
한다.

申請者：바이에른 州政符 州首相

全權代理人：부루엔教授

被 告：聯邦政府 代表 聯邦政府 法務部

關 与  
法 官 : 聯邦憲法裁判所 合意 2 部

副院長兼 裁判長 조위헬트

博士 허 슈라브레들후

博士 투프

博士 가이거

힐쉬

博士 링크

반트

1973年 6月 13日字의 仮処分申請은 棄却한다.

理由：

A 1972年12月21日 東西独間에 署名한 独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關係條約이 西独憲法에 違背되며 따라서 無  
効하다는 바이에른 州政府의 主張에 따른 違憲審查 申請이 1973年  
5月29日 当 憲法裁判所에 提出되었다.

兩獨間의 基本條約이 署名되자 聯邦政府는 이 條約効力에 必要한  
法的節次 즉 同條約의 批准, 公布 等等의 作業을 完了했다.  
基本法에 違背된다고 생각한 바이에른 州政府는 仮処分申請을 提起  
했으며 이에 대하여 聯邦憲法裁判所는 理由없다고 破棄시킨 바 있다.

1973年6月13日에는 東西独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両獨間의  
覺書交換에 對한 仮処分申請을 바이에른 州政府가 새로이 提起했다.  
仮処分의 期間은 東西独基本條約에 對한 違憲與否의 審查가 聯邦  
憲法裁判所에 依하여 決定날때까지 였다.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첫 번째의 仮処分申請이 棄却된後의 法  
의 狀況은 달라졌다. 聯邦政府는 첫 번째의 仮処分이 棄却되자 條約  
法을 制定 公布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東獨은 同條約에 对한 人民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覚書交換準備가 다 되어 있는 狀態다.

이에 따라 両獨代表는 同條約第10條에 依拠 1973年6月20日 西獨의 首都 본에서 双方이 覚書를 交換키로 合意를 보고 있다.

東西獨 基本條約의 効力은 1973年6月21日字의 仮処分申請으로 因하여 停止되었고 裁判部의 決審公判이 延期되었다.

東西獨基本條約이 違憲이라는 判示가 난後에 發生된다면 決審公判以 前에 決定된 條約의 批准으로 그에 对한 損失은 커질 것이다. 즉 同條約이 批准된다면 聯邦政府는 同條約을 遵守할 國際法의義務를 지며 聯邦憲法裁判所가 決定내린 條約相對方의 國際法의義務를 要求할 수 없게 된다.

이 外에도 聯邦憲法裁判所가 同條約의 違憲与否를 決定하기 前에 同條約이 効力を 發生하게 된다면 不安한 狀態에서의 유엔 同時加入 등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일이 發生된다. 왜냐하면 同條約은 両獨의 유엔加入 等을 規定하고 있으나 말이다.

同條約은 家族의 再結合 両獨間의 旅行, 訪問 等을 容易토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에 对한 實現 亦是 不安한 狀態에서 發生된다.

聯邦政府를 代表한 聯邦法務長官 온 바이에른州政府의 仮処分申請이 不當하다고 主張하면서 이에 对한 決定을 聯邦憲法裁判所가 決定하여 줄 것을 要求해 왔다.

聯邦政府가 仮処分에 反對하는 理由는 그로 因하여

聯邦政府의国内外政策에 至大 한 損失을 갖다준다는데 있다.

이는 바이에른 州政府가 첫 仮処分申請을 냈을 때의 聯邦政府의 反對意見과 同一한 内容이다. 오늘에 이르러는 両獨의 UN加入이 目前에 이르고 있다.

萬一 仮処分申請이 裁判部에 依하여 認定되고 効果를 發揮하면 東西独基本條約이 違憲이라도 判示가 나기 以前부터 不確実한 狀態에서 UN加入問題가 UN에서 多루어 지는 것이다.

#### B.

##### I.

仮処分 申請을 許容한다.

##### II.

聯邦憲法裁判所에 常設되어 있는 두개의 裁判부의 伝統的인  
판시원칙에 따르면 한條約이 合憲이라고 판시되고 보니 이미 그  
동안에 仮処分申請이 發生되고 있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發生된  
損失과 이와는 反対로 한條約이 違憲이라고 판시되면 以前에 効  
力を 나타낸 仮処分効力으로 發生된 損失, 다시 간단히 말하여  
보자면 두개의 損失에 대한 협평원칙은 다음과같은 結果를 發生한  
다; 法院의 決定에 따라 仮処分申請이 棄却되면은 聯邦共和國과 聯  
邦政府는 法院의 判示에 따른 憲法의인 侵害強要를 받게 된다.

그것은 無条件 條約을 履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反対로  
違憲이라고 判示가 내려지면은 條約을 履行할 수가 없어 條約違反

이 된다.

聯邦政府의 政策遂行을 支援하고 損失을 막기 위하여는 仮処分申請을 棄却해야 한다. 聯邦憲法裁判所가 条約의 違憲与否를 審查하면서 聯邦政府의 權限인 外交政策問題까지 侵害한다는 것은 憲法의 인正當性을 認定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 原則은 또한 聯邦政府亦是 州政府政策에 關与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聯邦政府와 州政府는 憲法이 定해 놓은 範圍内에서 各己 自治權을 갖고 있는 것이다.

萬一 聯邦憲法裁判所가 仮処分申請을 棄却하면 憲法이 恢與한 權限内에서 聯邦政府는 그의 權限을 行使하여야 한다.

이는 3権分立의 原則에 따른 것이며 聯邦制度原則에 起因한 것이다.

仮処分申請이 認定받으면 이에 따른 政治的 損失은 莫大한 것이다. 最終的인 決定이 내려질때까지 条約의 効力이 發生될 수 없기 때문이다.

基本條約 第10條를 規定에 따라서 1973年6月20日까지는 批准覺書가 交換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6月21日에는 유엔安全保障理事会가 東西獨의 유엔加入申請을 決定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해도 聯邦政府가 独逸民主共和國을 外國이 아니라는 것에는 變化가 없고, 両獨關係는 特殊性을 具する 内國關係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볼때 仮處分申請이 認定되는경우 이 모든것이  
停止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損失이 莫大하다 하겠다.

따라서 바이에른州政府의 仮處分申請을 棄却하는 바이다.

東西獨基本條約의 違憲与否에 对한 公判은 곧 開庭되며 이는 獨逸国家의 法的意義 決定에 重大한 意義를 가질 것이다. 이 決定은 모든 閑与法官의 滿場一致로 決定한다.

조위 헬트

흔슈라브레돌후 博士

루프 博士

가이거 博士

힐쉬

링크 博士

반트

## XI. 公 告

바이에른 州政府가 提起한 仮処分申請을 1973年6月19日 聯邦  
憲法裁判所가棄却한다는 聯邦憲法裁判所 公報部의 發表  
聯邦憲法裁判所 合意 一部는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仮処分申  
請을 1973年6月19日 棄却했다.

同仮処分申請內容은 基本條約 10條規定에 따른 批准覺書交換 効  
力停止에 관한 것이었다.

原告의 主張은 東西獨基本條約이 基本法 第2條1項 3條3項,  
14條1項 16條1項 및 2項의 基本權에 違背되는 條約이라는 것  
이었다.

獨逸聯邦政府는 同條約에서 避難民의 権利를 留保했다.

그外에도 同條約은 同條約이 効力を 發生하기 以前에 一定한 政  
治的, 法的 問題를 处理토록 規定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同條約批准覺書交換 効力停止 仮処分申請을 棄却  
했다.

棄却理由는 1973年6月18日 本裁判所 合意2部가 내린 理由와  
같이 聯邦政府의 政治的損失을 根據로한 것이다.

1973年6月19日

## C. 바이에른 州政府申請에 関한 規範審查 公判

### 1. 1973年5月28日字의 바이에른 州政府의 申請

바이에른 州政府首長

1973年5月28日

聯邦憲法裁判所 貴下

案件：1972年12月21日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에  
署名한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에 関한 法,  
同條約이 基本法에 違背되며 無効라는 바이에른 州政府의 確認  
訴訟에 関한 審議 公判申請  
提出証拠. 50個의 印刷物

바이에른 州政府의 이름으로 本人은 独逸聯邦共和國 憲法(基本  
法)第93條1項2号 및 1951年3月12日에 制定된 聯邦憲法裁判所  
法 第13條6号와 同法第76條1호에 따라 東西獨本條約이 違憲이  
며 無効라는 確認을 決定내려 주시기를 申請하나이다.

#### 理 由

##### A.

申請은 許容된다.

1. 바이에른주政府는 憲法 第93条1項2号 및 이와 関聯된 聯邦憲法裁判所法 第76条1項에 依拠 申請資格이 있다.
2. 基本法 第59条2項에 該當되는 條約法은 基本條約 第93条1項 2号 및 이와 関聯된 聯邦憲法裁判所法 第76条1号에 依拠한 規範審查公判 對象이다.
3. 이에 對한 申請은 一定한 時期에 提起되어질 수 있다.  
現在 有効한 規範이 規範審查를 위한 基本이 必須的인 原則은 基本法 第59条2項이 말하는 條約法에 適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立法節次는 聯邦大統領이 署名하고 이를 公布할때까지 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後에 規範審判公判이 이루어 진다.

4. 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法 第93条1項 第2号 規定에 依拠 聯邦法과 州法이 基本法에 違背되는지도 審查한다.  
따라서 本 申請이 現行憲法規範에 條約法이 制限되었는지에 對하여는 瞥힐 必要가 없다.

憲法審議의 尺度는 一般原則에 따라야 한다. 憲法이라는 것은 明文化된 憲法的規定에서 만이 아니라 解釈上 그 憲法規定이 規定하고 있는 一般原則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이다.

#### B.

申請은 理由 있다.

1972年12月21日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에 署名한

東西独 基本條約 및 이와 関聯된 条約들은 原則的으로 基本法에  
違背된다.

東西独基本條約과 이와 関聯된 条約에 違背되지 않도록 하는 基  
本法 第 79 条에 따른 憲法改正은 없었다. 또한 基本法 第 79 条 1  
項 2.号에 따른 基本法補充法의 制定도 企劃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同條約들은 全体가 無効다.

同條約들의 違憲理由는 다음과 같다.

#### I.

東西独基本條約은 基本法 前文이 要求하는 独逸統一要求에 違背된다.

1. 基本條約前文은 “民族과 国家의 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国民의 意思를 明文化 시켰으며 이와 関聯하여 “全獨國民은 自由스  
런 自決權을 行使하여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實現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憲法前文이라는 것은 政治的意義를 表現한것은 事実  
이나 亦是 法的性格도 内包하고 있다는 것이 聯邦憲法裁判所의 判  
示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5.85 (127:11, 150/160; 12, 45/51 참조)

a) 上記憲法前文은 解釈上 独逸國家의 同一性을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第 3 諸國이 滅亡했으나 國際法의 으로는 独逸國家가 消滅한  
것이 아니라 同一性이 維持되어 独逸國家의 存続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法理는 独逸聯邦共和國이 独逸第 3 諸國의 相統國家라는 法  
理를 根拠로 한 것이다.

이 같은 同一性의 原則이 基本法 前文과 同法 第 23 条에 明示되어

있는 것이다.

b) 联邦憲法裁判所의 伝統的인 判示는 “1945 年의 敗戰으로 滅亡한 独逸帝国이 있으나 國際法의 및 国家法의으로 볼 때 独逸国 自体가 完全 消滅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참조. 联邦憲法裁判所 判示 5,126 ; 6,336,363)

敗戰으로 因하여 1945 年 5 月 8 日부터 다만 國家機關만이 없어졌을 따름이다. 基本法規定에 따라 組織된 憲法機關이 暫定으로 滅亡한 独逸帝国의 一部地域에 局限되어 設立되었다 해도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과 同一性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联邦憲法裁判所 判示 3,319 ; 6,338 및 363) 独逸聯邦共和国은 全体独逸国家의 部分行為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이 能力에 따라 全体独逸을 再組織할 수 있는 것이다. (聯邦 憲法判示 2,277)

## 2. 東西独基本條約은 国家法의 基本的見解에 違背된다.

a) 問題되고 있는 條約를 속에는 어떠한 곳에도 独逸諸國이라던가 全体 独逸 또는 이와 비유할만한 表現이 明示되어 있지 않다.

獨逸帝国의 領土上에 있는 両獨의 基本關係를 規定하고 있는 이 條約속에다가 独逸諸國은 存続하지 않으며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의 相繼國家가 아니라는 両側의 合意가 있었다는 解釈을 폐하기 위하여 充分한 規定이 必要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이 없다. 그리고 独逸帝国이나 또는 全獨이라

는暗示마저 없으므로 이 条約은 独逸帝国이 存続하지 않는다면가, 帝国이 消滅되었다면가 또는 同帝国과 同一性이 없다면가 하는 것으로 끝이된다.

따라서 同條約은 東獨이 主張하는것과 같은 것이며 基本條約에 違背되고 独逸帝国은 消滅했으며 旧 独逸帝国領土上에 서로 独立된 主權國家가 建國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수록 国家理論에 따른 条約內容이 独逸聯邦共和國은立法者的立法 趨旨가 明示되어 있는 基本法前文에 違背되는 것이다.

b) 兩獨中 어떤 独逸國家도 他의 独逸国家를 對外的으로 代表 못하며 他独逸 国家의 이름으로도 行使할 수 없는 同等한 두개의 主權国家가 있다는 것이 基本條約 4条의 내용이다.

이 条文의 内容을 正確히 말하자면 独逸聯邦共和國은 앞으로 全獨을 위한 行使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基本條約 第4条의 表現은 東獨의 主張과 같으며 基本法에 違背되는 두개의 独立된 同等한 主權 独逸国家가 있으며 이들은 独逸諸國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独逸帝国存續의 否定과 全獨行使를 禁止시킨 基本條約 4条는 違憲이다.

a)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이 서로 상치되게 해석하고 있는 基本條約의 前文은 独逸聯邦政府의 法的見解를 保護하지 않고 있다.

基本條約의 前文이 不明確하여 兩獨이 双方에게 有利한 解釈을

할수있겠금 規定한 것은 基本條約第 4 条가 同等한 두개의 主權國家 를 規定함으로써 聯邦共和國政府見解와같은 條約法解釈을 禁止한 것이며 第 1 条부터 10 条까지의 基本條約規定을 볼 때 東獨이 主張하는 國際法解釈을 따르도록 強要하고 있는 것이다.

b) “独逸統一을 위한書信” 역시 聯邦政府가 主張하는 바와 같은 “國際法上의 同一性原則이 同條約에 反映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도록 保障된 것은 아니다.

同書信이 비엔나協定 第 31 条 2 号 (b) 가 내린 條約解釈道具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同書信이 “自決權”이라던가 “統一시킬 權利”等을 明示하고 있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現在의 独逸形態를 變更시킨다는 政治的 目的만을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같은 政治的 目的是 同書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可能한것이지만 條約上에서 나오는 法的論理와 法的풀이에는 어떤 影響도 주지 못한다.

c) 基本條約第 9 条와 이와 関聯된 書信交換 亦是 祖國統一要求에 違背된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이 條約의 部分은 第 3 国과의 締結되는 條約當事者와 어떤關係도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런規定은 1953年 5月 26日 締結된 3大強大国과 独逸聯邦共和國과의 基本關係條約에 特別한 意味를 안겨 주고 있다.

이 條約은 聯合國의 独逸全体에 대한 留保權과 責任을 認定한

것이다.

同條約의 留保權은 独逸統一을 禁止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되어 있다.

또한 同條約은 聯合國과 独逸聯邦共和國과의 関係만을 規定한 것 이 아니라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과의 関係도 規定한 것이다.

오늘날 聯合國이 이 條約을 충실히 履行치 않고 있는 것은 事実이나 이 外에도 聯合國이 同條約의 義務를 完全 抛棄한다면 独逸統一은 完全히 排除되는 것이다. 憲法的規定에 따르면 独逸統一은 留保되어 있는것 뿐만이 아니라 独逸聯邦共和國 機関과 法規範속에 繼続 存在하는 것이다.

## II.

### 再統一要求에 違背

1. 基本法前文은 独逸聯邦共和國의 政治的 모든 機關에 全力を 다하여 統一에 努力하고 이 目的을 위한 対策을 講究하며 이 目的의 實現을 위한 모든 可能한手段을 總動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他面에서 同前文을 볼때 統一에 障碍가 되는 것은 모든 機關이 삼가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5,85/128 參照)

a) 内獨法律協助 (兩獨間의 法律問題에 관한 相互協力を 뜻함)  
에 関한 問題를 審議한 1960年5月31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에 따르면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11,150 / 160 參照) 基本法에 規定된 独逸統一規定에서 祖國統一이 妨害되는 措置는 違憲이라고 判示했다. 또한 이 判示는 独逸聯邦共和国 憲法機關과 緊張을 招来시키는 対策도 違憲의 处理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同 判示는 東西獨의 緊張自体가 違憲임을 밝힌 것이다.

b) 祖國의 統一은 政治的 目的일 뿐만이 아니라 憲法의 要求라는 것은 基本法 第 146 条에서도 派生된다.

憲法이 制定되어 効力이 發生될 때 까지 이 基本法이 憲法을 代身한다는 上記 条文의 憲法의 規範은 全独逸国民의 自由스러운 自決權을 規定하고 있으며, 国家将来에 對한 独逸国民의 最終的 決定權을 나타낸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5,25 / 127 參照)

c) 政策機關과 対策은 憲法이 要求한 祖國統一要求에 合致되는가를 審議되는 것이다. 이 政策機關의 政治的 自由裁量權은 統一要求條項의 範圍內에서만이 認定된다.

따라서 法官은 国家의 政策이 憲法의 要求와 合致되는 가를 審議할 수 있는 것이다.

政治的裁量의 相當範圍가 立法府에도 주어져 있다. 그러나 立法府가 基本法이 規定한 統一要求에 違背될 때는 聯邦憲法裁判所가 이를 規制할 수 있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12,45 / 52 參照)

2. 基本條約은 基本法의 統一要求 規定에 違背된다.

a) 基本條約을 独逸帝國의 國際法의, 國家法의 存續을 否定할 뿐만 아니라 同條約 4條는 聯邦共和國이 全獨을 代表하는 것도 禁止하고 있으며 同條約 1條, 6條 및 8條는 独逸民主共和國을 独逸聯邦共和國과 同等한 獨立된 主權國家라고 하고 있으며, 独逸聯邦共和國과는 善隣國家며 常設代表部를 相互 交換設置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独逸帝國의 位置에 두개 主權國家가 建國된 것이며 相互 國家의 存續을 保障하도록 되어 있다.

일민족 두개의 國家라는 独逸聯邦政府의 論理는 國際法關係에서 볼때 無意味한 것이다.

이런 規定과 論理는 國際法的으로 두개의 永久 分斷國家가 있다 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一般國際關係에서 通用되는 用語와는 달리 形式的인 表現上에서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는 表現 즉 大使館設置라는 用語대신 常設代表機構設置라던가, 또는 覺書交換이라는 말 대신 批准文書交換이라고 表現되는 등등은 基本條約 2條, 3條, 4條 및 6條 規定에 比해 어떤 比重도 없다.

條約內容은 以外에도, 兩獨間의 國境을 保障할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國境이라는 것은 勝戰國家가 独逸帝國에 強要한 休戰線이다.

基本條約은 이와같은 休戰線을 兩獨의 國境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国에 대한 独逸聯邦共和国의 関係는 앞으로 外國과의  
關係와 同質的인 것이며 相互國際法의 主體關係에 不過하겠금 되어  
있다.

이와같이 独逸帝國의 領土를 独逸聯邦共和国이 一도로 찾지 못하게  
規定한 것은 基本法에 違背되는 것이다.

이는 永久의 分斷을 뜻하는 것으로 違憲이다.

오늘의 現實이 東西獨統一을 이를 수 있도록 成熟되지 않았다  
는 狀況이라 하더라도 憲法의으로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法的  
要求에는 變化가 있을 수 없다.

b) 이러한 法的 requirement에는 “統一을 위한 書信” 亦是 어떤影響  
을 줄 수 없다.

c) 東西獨基本條約의 内容이 憲法의 requirement하는 統一成就와 類似  
하다는 말을 가지고 그 條約署名의 正當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a) 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說인 接近理論에 依한다면 憲法의  
requirement에 接近되어가는 狀態가 을때에 한하여 憲法의規範의縮小가  
International條約에 依하여 可能하다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4, 157 參照)

bb) 聯邦憲法裁判所가 接近說을 利用한 境遇에는 例外規定으로  
서 占領軍 秩序를 廢棄할 때에 限하였다는 것을 指摘해야 겠다.

이와같은 狀況이 東西獨基本條約에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条約当事者들이 対等当事者들이며 占領國이나 또는 占領地域과의 関係처럼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르지방事件은 자르지방이 仏蘭西地域에서 離脱되어 나와 独·仏講和條約에 따라 独逸에 편입되는 것이다.

東獨이 소련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떤 共產國家 地域에서 離脱되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르事件과는 다르다.

cc) 이와같은 特殊性이 東西獨間에 있는데도 이 경우 역시 차르의 경우와 같다고 본 뱌자 联邦憲法裁判所의 判例說을 이에 引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東西獨基本條約이 東獨을 国家로 承認함으로써 東西獨關係는 完全 分離된 外國의 関係며 이는 基本法 前文이 要求하는 統一要求에 違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dd) 實質的 政策遂行으로 東西獨의 関係가 改善되고 이리하여 漸次的으로 東西獨이 接近하여 統一의 機会를 成熟시 키는것 보다 東獨을 独立된 主權國家로 承認하는것이 果然 옳을 수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런다.

ee) 또한 基本條約이 과도적인 性格만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라 그條約의 一定한 有効期間이 없기 때문에 联邦憲法裁判所의 判例說인 接近理論이 適用될 수 없다.

dd) 東西獨條約에 明示되어 있는 有益한 점 즉 東西獨人民의 고통을 덜어주고 両獨政府의 協調 및 平和와 自由를 위하여 緊張을 缓和시킨다는 등등의 條約上의 有益한 点 등을 联邦憲法裁判所

의立場에서考慮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統一과直接的인關聯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條約上의規定은 다만兩獨間의關係正常化를 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兩獨間에關係正常화한統一을永久히不可能하게 할 따름이다.  
兩獨間의國境을超越한商去來旅行등등은相當한成果인것만은틀림없다.

그러나 이것亦是統一과는無關한 것이다. 活潑한兩獨關係가統一을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것은兩獨의體制를固定시키는結果밖에 안된다.  
歐羅巴統一努力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強力한統一意慾만이統一에對한前提条件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統一意慾이東獨에欠乏되어 있는것이다.

東西獨의自由往來는獨逸國民이 떠어져사는 것을促進시키기만 한다.

이력意味에서 볼 때 文化的統一性은 이루어질 수 있다.  
國家의統一은人間의고통을덜어주고兩政府間의協力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상과같은理由에서接近理論을東西獨基本條約에適用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 III.

基本條約은 伯林에 関한 基本法規定에 違背된다.

1. 東西独基本條約 第2條의 伯林約款은 違憲이다.

a) 基本法 第23條1項에 依하면 西獨의 憲法은 西獨의 모든 州와 大伯林(東西伯林)에 그의 効力이 있다고 되어 있다.

1949年 5月 12日 制定된 基本法이 占領軍許可伯林留保規定에 違背되지 않는限 西獨의 基本法이 伯林에 適用된다고 聯邦憲法裁判所의 伝統的 判示도 말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7.1 / 10 參照)

西獨이 外國과의 國際條約을 締結할때는 언제든지 西獨內의 州만 을 代表하여 國際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아니라 伯林까지도 이에 包含시키고 있으며 이는 3大強大國 協定의 留保條項에 抵触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聯邦政府가 어떤條約을 締結할 때 聯邦共和國 全體속에서 伯林만을 除外시키고 締結한다면 이는 違憲일 따름이다.

이는 聯邦에 주어진 憲法義務 違反일 따름이다.

聯邦이 伯林을 支配하지 않는다는 留保도 단하나의 伯林約款에서만例外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伯林州가 이 法을 適用, 有効하게 하겠다고 確認하면 이 法 亦是 伯林에서 効力이 發生된다.”

國際法의 一般原則은 東獨과의 關係에서도 適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東西獨 基本條約이 國際法의 條約이기 때문이다.

설사 東西獨基本條約이 백보 양보하여 國家法的條約이라 하더라도 그 條約역시 伯林에도 一括하여 効力이 있어야 한다.

聯邦이 東獨과 締結한 條約에서 伯林을 除去시킬 어떤 法的理由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他外國과의 関係에서 聯邦이 伯林을 代表하기는 容易하나 이와 같은 原則이 東獨과의 関係에서도 成立시키기란 무척 어렵다는 理由 때문에 聯邦政府가 伯林을 除外시켰다는 것은 法的으로 볼 때 容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는 憲法的義務를 違背하는 結果밖에 되지 않는다.

b) 基本條約은 앞에서 指摘한 伯林約款만을 違背한 것이 아니라 다음 事項도 違背하고 있다. 즉,

“伯林州”가 이 法이 伯林에서도 有効하다고 確認하는 限 伯林에 関係를 規定한 條約은 伯林에서도 効力이 있다.”

앞으로 締結될 條約에서 伯林問題를 取扱한다는 例外의in 規定을 両獨이 合意함으로써 東西獨 基本條約이 伯林을 除外시키고 있다.

따라서 東西獨 基本條約이 伯林에 通用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은 條約의 풀이는 同條約 第2條의 풀이에서 明白히 나타난다.

c) 伯林의 國際적인 問題는 3大 또는 UN強大國이 決定한다는 事實만을 가지고 東西獨條約이 伯林에서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

에 대한 正當性을 認定받을 수 없다.

東西獨基本條約이 伯林에 関係되는 것은 聯合國의 留保事項으로 생각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런 条約은 非商品用物品去來에 限하여 適用토록 한것임을 알아야 겠다. 최소한도 同 規定이 基本法에 違背되는 것만은 否定할 수 없다.

## 2. 伯林에 関係되는 兩獨間의 宣言은 違憲이다.

東西獨條約에 反影된 바와같은 西伯林에 関한 兩獨의 宣言은 基本條約 補充速記錄 第7條에도 明示된 바와 같이 “條約과 協定을 西伯林에 拓大適用할때는 兩側의 合意에 依한다”고 되어 있다.

앞으로 締結될 協定이 西伯林에도 適用될 수 있는지는 東獨의 同意 如何에 달려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西伯林을 對外的으로 代表한다는 基本法 第23條 1項은 이런 東西獨의 宣言으로 死文化되었다.

東獨과 合意본 모든 条項은 西伯林에도 適用된다는 聯邦政府의 宣言은 憲法違反이다. 왜냐하면 “할수있다”는 規定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基本條約의 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연 聯邦政府가 그들의 約束을 履行할지가 의문스럽고, 他面에서 볼 때 이미 그런規定이 違憲임에 틀림없다.

3. 東獨의 主權承認은 違憲이다.

a) 基本法이 東西伯林인 大伯林에도 通用된다는 基本法 第 23 条 1 項의 規定은 特別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 規定은 基本法의 効力範圍를 規定한 것이며 独逸聯邦共和國의 地域範圍를 宣言한 것이기 때문이다.

基本法 第 23 条 1 項이 말한 大伯林이란 말은 大伯林의 行政統一과 直結되는 것이다.

4 大強大国의 合意에 따르면 大伯林이 오늘날에도 法的으로 持続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實質적으로는 1948 年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伯林은 分斷되어 있다. 그러나 1948 年 9 月 처음으로 開院된 制憲議會는 伯林의 分斷을 認定치 않았으며 계속 単一로된 大伯林이라고 했고 이러한 大原則下에서 伯林州라고 했던 것이다.

基本法이 伯林이라고 말 한것도 이 大伯林을 뜻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 23 条 1 項이 “大伯林”이라고 말 한것을 “西伯林” 또는 그냥 “伯林”을 뜻하는것이라고 누가 풀이 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것이다.

聯合國의 留保權때문에 基本法이 伯林에 通用될 수 없다는 論調는 옳지가 않다. 그러나 西方聯合國이 基本法을 制定할當時 그 法의 効力이 西伯林에만 미치도록 한것도 事實이다.

그럼지만 1949 年 5 月 12 日의 軍政許可書는 基本法의 効力이 全 伯林에 미치도록 했다.

國際法條約締結에 따라 伯林의 法的地位에 变動을 加할 수 있는

지는 決定하지 않았다.

萬一 伯林의 法的地位를 國際條約에 의하여 變更시키면, 그런 경우는 國際法의 一般原則에 起因한 것이 아니며 基本法 第 25 条에 따른聯邦法의 一部가 될 수 없다. 한 國家憲法은 基本法第 25 条를例外로 하면서 独立的으로 存在한다.

한 國家憲法과 다른 國際條約이 있다해도 그 國家의 政府는 그 나라의 憲法에 拘束되는 것이다.

伯林의 法的地位를 國際法의 으로 可能케 하는 것도 또한 基本法이 実質적으로 東伯林에서 通用될 수 없다는 事実도 基本法 第 23 条 1 項을 無視할 어떤 正當性이 聯邦政府에 있는 것은 아니다.

b) 国境不可侵을 規定하고 있는 東西独基本條約, 現行分界線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主權의 尊重 등이 平和를 위하는 것이며 주어진 歷史的 事実을 尊重해야 한다는 基本條約은 (同條約 前文, 2 条 및 3 条) 東伯林을 包含한 東獨을 主權國家로 承認한것 外에 달리 解釈할 수 없다.

따라서 基本條約이 基本法의 大伯林効力を 剥奪한 것이다.

그리고 東西独基本條約은 基本法 第 23 条 1 項에 違背된다.

東伯林을 包含한 東獨의 主權을 承認한 것이 占領法에 抵触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는 여기에서 言及한 性格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聯邦憲法裁判所가 이에 對한 審議權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同條約이 基本法 第 23 条 1 項을 變質시켰다는 것이 違憲이 될

따름이다.

왜냐하면 基本法 第79条는 어떤 基本法條文을 他法改正이나 制定으로 変質시키는 것을 禁止하고 있으며 変質시킬 때는 반드시 該當條文을 直接改正할 것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東獨내에 있는 独逸国民에 对한 社会保障義務에 同條約은 違背된다.

1. 基本法 第1条1項2段 및 第16条에 따르면 聯邦政府와 모든 聯邦政府機關은 그의 影響力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独逸人の 尊嚴도 保障해야 하며 그들 独逸人들이 外部로 부터 侵害받거나 攻擊당하는 것을 保護해야 할義務가 있다고 宣言하고 있다.

이같은 聯邦政府의義務는 그들 独逸人이 私人에 의하여 侵害당하건, 어떤 社会團體이건 또는 어떤國家이건간에 莫論하고 保護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나 自国国民을 外部의 侵害로 부터 保護해야 한다는 祖國으로서의義務는 独逸憲法의 伝統的인 原則이다.

独逸民主共和国에 居住하고 있는 国民은 基本法第116条가 말하는 独逸国民이며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의 保護와 社会保障法의 惠澤을 받을 権利를 갖고 있다.

2. 基本條約締結로 말미암아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에  
사는 独逸人の 保護義務와 社会保障義務를 違背한 것이다.

a) 基本條約 第6条는 独逸聯邦共和国의 高權行使는 그의 領土  
에 局限하며 独逸民主共和国의 高權을 認定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의 對外의 国家權力  
行使를 尊重할義務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서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国의 國民保護權과 社会保障權을  
剝奪한 것이다.

b) 独逸聯邦共和国이 實質的立場에서 볼 때 建國以來 한번도  
獨逸民主共和国内에 居住하는 独逸人을 保護하거나 社会保障을 시켜  
주지 못 했다는 事實이 基本條約締結의 正當性이 될 수 없다.

a). 이러한 事實을 基本條約은 보다 惡化시킨 結果밖에 되  
지 못한다.

過去의 聯邦政府나 또는 法的現実은 一定한 대策을 講究했었다.  
그러나 基本條約이 이를 削除 함으로써 앞으로는 不可能하게  
만들었다.

b) 東獨市民이 外国에 있고 그 外国에 聯邦共和国의 大使  
館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는 그 独逸大使館이 東獨의 独逸国民을  
實質으로 保護할 수 있었으며 保護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考慮할 수 없게끔 基本條約이 만들었다.

基本條約이 効力を 發生하고 第3國에 独逸民主共和国의 大使館이  
設置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3國에 있는 東獨의 独逸軍民을 保護

할 수 없게 됐다.

c) 基本條約締結로 因한 独逸聯邦共和国의 義務履行은 路은 負担感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東獨은 그곳에 居住하고 있는 独逸人으로 부터 거의 모든 基本權을 剝奪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保護範圍가 보다 넓어졌는데도 東西獨 基本條約으로 말미암아 이를 実行에 옮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3. 基本條約이 東獨內에 居住하는 独逸人の 国籍에 어떤影響도 주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基本法 第116條가 規定한 独逸의 国籍問題는 前과 같이 効力이 있다.

이 点만은 独逸聯邦共和国이 留保함으로써 明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留保라는 것이 問題된다.

이 留保가 独逸民主共和国의 高權이 行使되는 地域에 居住하는 独逸国民에게 무슨 影響을 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發生 한다.

모든 国家가 自國国民의 国籍을 決定치을 수 있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基本條約이 東獨을 主權 独立国家로 認定한限 東獨이 東獨의 高權下에 居住하고 있는 国民을 自國国民이라고 主張할 수 있겠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東獨에 居住하고 있는 国民은 2重国籍을 갖게 된다.

국際法原則에 따라 東獨은 東獨에 居住하는 国民을 自國国民이라  
고 主張할 수 있다.

또한 東西獨基本條約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國이 東獨에 居住하는  
국민을 對外的으로 代表할 수 없게끔 했다.

4. 他国家의 高權이 (-특히 自由民主国家가 말하는 真正한  
基本權이) 適用될 수 없는 社會主義 국가-) 独逸民族의 國籍  
을 國際法條約締結이라는 手段을 통하여 決定지을려고 하면 独逸  
聯邦共和國은 이런 条約을 그런 国家와 締結해서는 안된다.

條約에 의하여 自國国民을 第3國에 譲渡할 수는 없고 다만 國  
土의 讓歩만이 可能할 때를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讓渡된  
는 國土内에 居住하고 있는 自國国民의 出國이 保障되도록 条約을  
締結해야 한다.

基本條約은 出國保障을 規定하고 있지 않다. 東獨에 居住하고  
있는 大多數의 独逸国民의 出國이 禁止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死  
殺을 한다던가 또는 전기철조망에 걸려 죽게 한다던가, 行政的인  
處罰을 加하고 있기 때문에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  
國民保護規定에 違背되는 것이다.

5. 書信交換을 통한 家族의 再結合, 東西獨旅行의 緩和, 非商易用  
物品去來의 改善등등의 緩和가 独逸民主共和國內에 居住하는 独逸國  
民에 對한 独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의 保證義務에 接近한다는 接近

理論이 適用될 수 없다.

聯邦憲法裁判所가 接近理論을 開發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憲法의 原則은 어떤 경우를 莫論하고 損傷되어서는 안된다”고 強調했기 때문이다. (聯邦憲法裁判所 判示 4, 157LG 4 參照)

이判示는 基本法 第 1 条 人間의 尊嚴 속에 内包되어 있는 国民에 대한 国家의 社会保障義務가 人間의 尊嚴은 不可侵이라는 말과 同一한 法的価値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沈默만을 지키고 있었다.

설사 国民에 对한 社会保障이 基本法 第 79 条 3 項에 該當되지 않나 해도 同義務는 抛棄할 수 없는 憲法의 基本原則임에 틀림없다.

旅行自由保障의 基本法의 要求에 따라 旅行을 自由로이 保障시켜주는 대価로 自国国民을 他国, 特히나 人間의 基本權이 完全히 無視당하고 있는 社会主義国家에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人間의 휴메니즘을 基盤으로 하고 있는 憲法의 規定에서 볼 때 不當하며 이는 抛棄할 수 없는 憲法의 大原則이다.

名譽博士 龔飭

II. 1973年 5月 29日字

聯邦憲法裁判所 合意2部 裁判長의 書信

聯邦憲法裁判所

1973年 5月 29日 17:30

合意 2部

裁判長

2BvQ 1/73

聯邦法務長官 貴下

案件：東西獨基本條約의 違憲審查에 관한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

聯邦憲法裁判所는 바이에른州政府의 基本條約 違憲審查申請에 대한 口頭公判을 1973年 7月 31日 改正할 것을 決定 通告하는 바입니다.

本裁判部는 이期間內에 貴政府가 東獨과 批准文書를 交換하는지에 대한 貴政府의 見解를 밝혀줄 것을 付託하는 바입니다. 萬一 貴下가 이에 대한 答信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本裁判部는 이에 대한  
仮処分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本裁判部는 貴政府가 이에 대한 答信을 1973年 6月 4日까지 보내주실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萬一 貴政府가 이에 対한 答弁을 口頭로 하겠다는 意思를 가지  
고 있으시다면 1973年 5月 30日 水曜日까지 通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院長

조 이 혈 트

III. 1973年 6月 5日字의 聯邦法務長官의 書信

聯邦法務長官

1973年 6月 5日

聯邦憲法裁判所

1973年 6月 5日

副院長兼 合意2部 裁判長 賀下

案件；1972年12月21日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에

東西獨基本條約에 関한 違憲審查公判

1973年 6月 19日의 口頭公判에 関한 聯邦共和国의 見解

聯邦政府를 代表하여 本人이 賀下에게 다음과 같은 事實을 報告하는 바입니다.

賀 裁判所의 口頭公判에는 聯邦政府側에서 다음 人士를 派遣합니다.

理 事 官 발만 聯邦法務部

副理事官 쇠허博士 聯邦內務部

書記官 만케博士 聯邦內獨關係省

聯邦政府訴訟全權代理人

蔚園大學校 教授 크리례博士

弁護士 레베 렌즈

聯邦 法務長官

게르하르트 얀. 올림

IV. 1973年 6月 19日

口頭公判開催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1973年 6月 12日  
字 告

聯邦憲法裁判所

1973年 6月 12日

合意2部 裁判長

- 2 BvF 1/73 -

東西独基本條約에 관한 違憲審査를 위한 口頭公判이 1973年  
6月 19日 火曜日 10時에 聯邦憲法裁判所法廷에서 開催된다.

副院長

조 이 혈 트

V. 第 2 次 바이에른 州政府의 議會에 따른 伯林大學教授

벵그러博士의 書信

教授, ベングラー 博士

1973年 6月 12日

聯邦憲法裁判所

合意 2 部 貴下

案件; 東西独基本條約의 違憲審查

公判

尊敬하는

聯邦憲法裁判所 裁判長 님

바이에른 州政府의 命에 따라 本人은 東西独 基本條約에 대한

벵그러教授의 評価書를 8 部複写하여 提出하는 바입니다.

博士 요세후 티센 울립

## 評 価 書

教授 뱅그리 博士

바이에른주 政府의 議会에 의하여 東西獨基本條約에 対한 法的評  
價書를 本人이 作成하여 聯邦憲法裁判所에 提出하나이다.

### I. 東西獨基本條約의 法的性格

法의 拘束力を 갖게하는 近代國際法의 契約이 아닌 것이 東西  
獨基本條約이다.

同條約의 性格上으로 보아 独逸의 伝統적인 国家法의 契約이거나,  
他國家의 国家法의 契約 또는 國際社會에 通用되는 國際法의 条約  
에 該當되는것 같다.

教授 Wilhelm Wengler 博士

## 憲法과 東部條約에 대한 合意法의 合憲性

聯邦憲法裁判所에 提出하기 위한 意見書

### 東部條約과 合意法 1, 2의 領土上의 規定分析 ⑩ 2)

2. 모스크바條約의 第三条와 바르샤바條約의 第一条는 “諸國의 國境線”에 関해서 言及하고 있다. 바르샤와條約의 第三条에는 条約當事者 따라서 両國家에 의하여 Oder-NeiBe 線이 patsdam 會議의 決議에 記述되어 있는 바와 같이 <sup>3)</sup> 폴란드의 西部 “國境”을 設定한다는 것을 明示的으로 “確定”하였다. 모스크바條約의 第三条에는 欧羅巴의 모든 国家의 國境은 1970年 8月 12日現在 그어진데로 “不可侵的” <sup>4)</sup> 이라고 看做된다는 声明과 関聯을 지어 明示 되어있고 同時に 이와 関聯해서 비록 默示的일지라도

註 1) 짧은 時間に 作成한 이 意見書는 東部條約에 대한 가장 最近의 独逸語文獻을 다만 例外로 引用했으며 더불어 또한 操心스럽게 引用했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그以外에도 같은 方向으로 생각하는 著者들의 引用을 通해서도 또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의 見解를 參照해서도 意見은 더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다.

특히 独逸政策의 法的 問題에 对한 못마땅한 論議는 벌써 지난  
數年 동안 혼히 소홀히 되었다는 非難이 聯邦共和国의 輿論  
形成에 잠자코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現実的인 問題가 現  
実的인 問題로서 法的 拘束力を 가진다는데 对한 批判的이고  
學問的인 思索을 通해서 이루워진 어떤 法的 確信을 이루고  
있느냐에 对해서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이 意見書의 作成者が 1965年 独逸問題의 “位置와 概念”  
에 对한 그 当時에는 “어울리지” 않은 研究를 하여 그 論  
文에서 그 当時의 公的인 見解의 微弱한 点을 批判하여 内獨  
關係省에 이것을 出版하라고 提供한바 있었는데 内獨關係省은 그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後에 이 論文은  
“独逸政治와 國際政治誌”的 10年号 336 폐지以下와 426 폐  
지以下에 印刷된 바 있다. 그後 内容에 있어서는 비슷한 命  
題를 Menzel 教授가 1971年에 “聯邦共和国은 어느만큼 主  
体의인가”라는 表題로 (1971年 法政治誌 178 폐지以下)  
發展시킨바 있지만 1965의 本人의 論文은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註2) 條約의 内容 및 條約의 公布에 関한 知識이 이 意見書  
의 讀書에게 있다고 看做될 수 있다.

註3) postdam協定에서의 오며-나이세線의 記載는 特히 北部에서  
事實上으로 存立하고 있는 境界를 짓고 있고 独逸民主共和国  
과 폴란드 当局에 의하여 表示된 境界와 반드시 全部가 一

1) 오데-나이세線은 1970年 8月 12日 時点에 存立하는 풀

랜드의 西部国境을 設定하고 있음과 同時に

2)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国境은 不可侵한다고  
宣言한 “歐羅巴國家間의 国境”에 屬한다는 것을 確定했다.<sup>5)</sup>

“國家境界線”이 条約에 依해서 確定된다는 것은 結局 國際法의  
意義에서는 国家領土의 範圍의 確定이어야 할것이다.

이 境界線은 同時に 이 聯閥性에서 明示的으로 일컬어진 어떤 国  
家의 存立을 默示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어떤 国家의 “境界”는  
空間으로서의 国家領域을 가지는 国家의 存立을 概念的으로前提하  
고 있으며 이 空間안에서는 그 国家만이 合法的으로 領域權을 行  
使할 수 있다. 위에서 概略한 國際法上의 効力を 지니는 国家領

致하지 않는다는 事実은 이 意見書의 目的에는 論議되지 않  
을수도 있다.

註 4) 이 独逸말 表現이 全的으로 올바른가에 对해서는 下記 28 폐  
지以下를 參照하기 바람.

註 5) 國際法에 默示된 커다란 意義에 関해서는 Wengler著, 國際法  
684 폐지 以下 및 707 폐지를 參照하기 바람.

東部條約에 对한 聯邦參議會의 立場宣言에 모스크바條約은 独逸  
民主共和国의 “國家”임을 그리고 元來의 地域境介線(分界線)  
을 이 国家의 “境界線”으로 認定하고 있다. 말하자면 默示  
의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对한 外務部長官  
Schell의 答弁에는 (公報處 官報 246 폐지) 이 問題가 全히  
理解되지 못한것 같아 보인다.

域의 境界는 다음과 같은 “領域의 境界”(限界)와 区別되고 있으며 이 領域이란 어떤 国家가 権利名義로 或은 権利名義도 없이 軍事的으로 占領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軍事的인 占領과 더불어 同時に 다른 国家의 機関을 通해서 “民間의인”主權을 實際로行使함을 意味하며 마찬가지로 어떤 国家가 自己国家의 그 어떤 利權의 對象으로 看做하는 그러한 領域의 境界를 意味한다.

歴史의 經過에 따라 이루워지게 된 独蘇條約들은 条約國 当事者에 依해서 何如間 國際法의 意義에서 合法의이라고 看做된 國家領域의 境界로서의 “國家境界”와 國家支配權의 空間 사이의 境界의 差異를 強調하고 있다.

條約이 polen과 独逸民主主義共和國의 境界를 “事實上으로 存立하고 있는 “境界”라고 보는 東方條約에 대한 独逸聯邦國令 決議文은 國際法上 根柢가 없다. 一般 國際法에 依拠한 武力行使禁止는 事實上의 所有權狀況과 正當한 國家境界가 아닌 境界의 侵害를 否認하게 되는 事情은 나중에 論議되어야 할 事情이지만 이 事情은 와르사와 條約의 第一条에 있는 “國家境界”라는 表現이 앞서 使用한 “境界線” 또는 附加語 없는 “境界”라는 用語와 反對로 그의 (條約國 双方의 見解에 따라서) 國際法上 合法的範圍에서

註 6) 1939年 9月 28일의 独蘇國境 및 友好條約은 “双方의 國家” “境界”를 規定했다. 1941年 “11月 10일의 條約은 “國家 및 利權境界”를 “國境과 事實의인 國境”에서 区別하고 있다. Munch氏의 本文, 東方條約 第一卷 1971年 參照하라.

어떤 国家領域의 権限境界에 関聯하고 있음을 어찌 할 수 없다?

萬若에 領域部分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所屬되지 않았고 그 確定에 參与한 어떤 国家의 態意로운 意思行為를 通해서만 國際法 上 다른 나라의 合法的인 国家領域이 될 수 있을려면 그런 境遇에는 “國家境界”에 関한 条約에서 어떤 国家에 依해서 다른 国家의 国家領域의 範圍를 確定하는 한가지 处理方法(割讓 乃至는 領域權의 謾渡를 위해서 不可決한 同意)가 있다. 이를바 既存法 狀態의 “承認”은 이 法狀態의 正當化에의 处理權으로 바꾸어 解釈되다는 모-든 国法에 熟知된 制度는 法에 따라서 具体的인 法 狀態가 承認權者의 处理行為로서만이 成就될 때에 一般的인 法制度로서 또한 実定國際法인 것이다. 國際法에는 그 위에다 法機關을 通한 具体的인 法狀態에 對한 拘束力 있는 確定의 專擔이 없기 때문에 主張대로 다만 確定된 法狀態가 处分行為없이 成就될 수 없을 때는 國際法上의 条約의 当事者에 의해서 “確定”으로서 보는合一된 声明도 또한 处分行為로 바꿔 解釈될 수 있다. 序頭에 言及한 바 polen 乃至는 独逸民主共和国에 對한 条約의 明示的 或은 默示的 確定은 一般的인 國際法은 여러 国家들이 그들 스스로가 国家權力を 行使하고자 하고 行使할 수 있는 一定한 領

註7) Skubiszewski 著 「Annales d' Etudes Internationales」  
(192) 參照

域을 相互間의 集團條約을 通해서 時時로 特殊한 通商去來라고  
謂하고 따라서 併合 및 割讓의 対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決定  
하는 것을 可能케 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法은 바로 言及한 種  
類의 拘束을 다시 同意를 얻어서 全的으로 或은 個個의 境遇에 廢  
止하는 能力を 빼앗는 것들이 国家들에게 可能케 하고 있지는 않  
다. 4個國 責任 혹은 現存하는 独逸國家權力 자체가 좀 暫定의이고  
자 하는 事情은 따라서 独逸의 国家領域의 割讓이 不可能하다란 가  
혹은 暫定的 狀態의 期間에만 可能하다란 가만을 結果로 맷이는 것  
은 아니다.

와르샤와 條約이 確定한 바대로 OdermeiBe 線의 東쪽에 놓여 있  
는 領域이 poland의 国家領域에帰屬된다는 것은 앞서 說明한 바  
같이 統一體의 가장 重要한 特性이 다른 国家에 依해서 外國의  
領域으로 그리고 무슨 나라없는 땅으로서 看做되지 않아야 된다면  
國際法上의 独逸統一體에의 이 領域의 不帰屬을 同時に 意味한다.  
四個國 管理와 四個國에 依해서 元來 이 管理의 實現을 為해서  
要求되었던 “独逸에 있어서의 最高의 權力은 元來는 1945年 5月8日의  
<sup>8)</sup>

註 8) 独逸에서 四個國에 依한 最高의 國力權力의 引受뿐만 아니라  
또한 独逸國의 領域에 對한 終局的인 処分權의 一方的인

時点에서 独逸國의 領域과 民族이었던 모든 것에 適用하였다.

再次의 独逸侵略戰爭의 遏止를 配慮해야 하는 四個國管理는 第三帝國에 依해서 接受된 領域內의 独逸人 또는 그 領域에서 온 独逸人도 또한 包含했다. 四個國管理權은 또한 元來 交戰한 独逸國家의 모든 領域을 包含했고 独逸國에의 이 領域의 國際法上의 屬屬은 戰爭동안 敵對國에 依해서 論爭된 바 없었으며 이 領域은 敵對국에게 降服時까지 敵國의 軍事的인 占領地域을 意味하고 있었다.

以前에 独逸國의 敵對國의 立場에서도 独逸國의 國境이었던 領域의 部分이 全體独逸의 國家權力에 依한 合法的인 割讓도 없이 그 리고 講和條約前에 國際法上의 独逸 統一体에서 分離하여 同時에 終局的으로 다른 國家의 國家領域이 될 수 있다는 것은 論爭의 餘地도 없이 Öster-reith 와 Sudetenland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다. 問題는 國際法上의 独逸統一体에서의 Oder-neiße 線의 東部領域의 終局的인 分離를 누가 是認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是認하겠느냐에 있다. 同一性 學說의 絶對的으로 整然한 展開의 뜻에서

纂奪, (註 10 을 參照) 元來 國際法에 비추어 許容되었는가에 関해선 많은 사람에 依해서 論難되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聯邦共和國의 政治機構에 依해서 (- 지난번에는 東方條約에 對한 覺書交換에서 ) 오늘날에 要請되는 范圍에서 明白하게 承認한 四個國管理의 存立을 疑心해서는 안되었다.

( 뒤에 이점에 다시 돌아오게 됨 ) 独逸聯邦共和國의 機関이  
國際法上의 独逸統一体를 “為하여” 서도 条約을 맺을수도 있다고  
우리가 仮定해 본다면 Polen과의 独逸聯邦國의 条約에서, Polen  
에의 東部領域의 帰屬의 確定은 聯邦共和國의 機關에 依한 秘密의  
割讓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論議하겠지만은 聯邦共和  
國의 國際法上의 代表機構를 通한 東方條約에서는 “聯邦共和國을  
為해서”만이 取扱되었고 따라서 이 統一体를 為해서 後日 形成되  
는 全體 独逸國의 國家權力의 拘束力은 除外된다는 結論인 說明은  
無意味하다.

四個管理國이 polen이 主張한대로 1945年에 polen에 依한 合  
併에 承認을 안했었는데 1970年에도 亦是 单独으로 独逸統一体의  
領域에 处分行事를 할 수 있다고<sup>9)</sup> 仮定해 본다면 이 領域은 반  
드시 polen과 管理국과의 条約으로 매듭짓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四個國管理國은 处分權이 없는 独逸의 分割國  
家의 國家權力에 依한 公的인 또는 秘密의 处分에 承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polen에 依한 独逸統一体의 領域의 合併을  
國際法上 合法的이고 終局的으로 定하기 위해서<sup>10)</sup> 國際法의 뜻에서  
國家가 問題가 되는 境遇에는 國際法에 立脚한 一致한 말하자면  
條約에 꼭 不可欠 하다고는 볼 수 없는 管理國의 承認과<sup>11)</sup> 独逸

全域에 다시 形成되는 모든 独逸 国家의 承認이 있으면 足하다는 것을 結局 생각할 수도 있다.

와르샤와條約이 polen에의 東部領域의 帰属性을 現存하고 있다고 確認하고 있지만 聯邦共和国쪽에서는 이 帰属性은 全体独逸의 国家 權力의 成立이나 講和條約의 締結로 解消하게 制約되었다고 說明하고 있다.

協商에 臨하여 發表한 声明에 依하면 聯邦共和国은 와르샤와條約의 締結에서 “聯邦共和国을 為해서만” 論하고 이 条約이 將來의 全体 独逸의 国家權力を 制約하지 않은거라는 것이 國際法上 說明되었다는 見解의 正當性은 <sup>12)</sup> 이 声明에 條約本文의 혹은 署名과 認准時에 發表된 合法的인 留保의 <sup>13)</sup> 内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아롭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比較的 最近의 独逸民主共和国의 條約에 再統一의 條項이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事実上 더욱 눈에 띈다. 이러한 疑心은 聯邦共和国이 過去에 이미 將來의 全体 独逸国家는 聯邦共和国쪽에서는 政治的인 意義가 있는 國際法上의 條約에 拘束되지 않는 데에 <sup>14)</sup> “原則的으로”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根柢 없을려지 모르겠다.

註 9) 혹은 아무튼間에 一定한 国境을 가지는 独逸이 아닌 어떤 国家가 形成되었던 領域

註 10) 1945年 6月5日의 声明書에서 “後日에” “独逸의 国境의 혹은 現在 独逸領域의 一部를 形成하고 있는 어떤 領域의

境界를 確定 할 것을 四個管理国은 主張했다. 그것은 独逸國家權力의 새로운 形成까지의 時日동안에 四個管理国에 依해서만이 行使할 수 있는 権限으로 理解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1945年 6月5日의 四個管理国의 見解에 따르면 國境의 “確定”은 또한 어떤 条約에서, 特히 講和條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며 이 条約에서는 独逸을 “為한”意思表示가 四個管理国에 依해서가 아니라 独逸國家權力에 依해서만이 表明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있을법한 既能力이 있는 어떤 独逸國家가 어떤 境遇에도 그의 國境을 隣接국과 単独으로 規定할 수 있으며 어떤 境遇에도 四個管理国 모두의 承認이 不可欠 하다는 것이다. 이 四個國中에서 두나라는 勿論 独逸國의 隣接국이 全혀 아니었다.

Menzel 教授는 四個管理国의 이 主張을 “一種의 保護國”이라 고 이야기 하고 있다.

註 11)이 意味에서의 暗示는 Schmidtjorzig著, 國家, 1971年

319 ~ 320 페이지에 있다.

註 12) Bd. Td. VI / 3157 11, 17 페지 參照

註 13) 國際法上의 条約法의 뜻에 있어서의 合法的인 留保는 그 留保가 署名時나 認准時에 (혹은 追後의 賛成 혹은 認准에 對等한 “承認”으로) 說明되기를 要求한다. Wien 法典編纂協定 第 19 条 參照. 이것은 Wien 協定中에서도 거기에 確定된 密密期間의 開始때문에 特히 重要하며 그 確定은 一年間順次의 法典 编纂으로 条約當事者에 對해서만 拘束力이 있다. 留保나 署名이나 혹은 認准과 聯關해서 發表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별써 아직까지 编纂되지 않고 있는 國際慣習法에서도 効力を 지니고 있다.

歐洲 経済 共同体條約의 締結에는 例를 들자면 “独逸條約”에 있어서와는 다르다.<sup>14)</sup> “再統一條項”은 條約本文에 들어 있지도 않고 또 正式의 留保로서도 表明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다만 独逸全權委員의 声明이 會議錄에 記載되었을 뿐이며 그 會議錄에 依하면 再統一의 境遇에는 歐洲 経済共同体 條約의 再檢討가 있어야 한다.<sup>15)</sup> 고 되어 있다. 따라서 將來의 全體 独逸 国家權力의 不拘束性에 関한 聯邦政府의 主張은 와르샤와 條約과 聯關해서 發表한 声明이 歐洲 経済共同体에 對한 声明 같은것 보다 달리 全히肯定的으로 表現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將來의 全體 独逸国家의 拘

束力이 排除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한 白紙化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声明이 表現하고 있는대로 보자면 이 声明의 意図는 말하자면 联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을 “為해서”도 管理国을 “為해서”도 議論하지 않겠다는 意図뿐이라고 하겠다.

poland 国家의 固有의 国家領域으로서의 poland에의帰屬은 不可避하게 이 領域이 独逸帝国에서 由來하는 國際法上의 独逸統一体에、所属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에 対해서는 위에서 論한 바 있다.<sup>16)</sup> 이것은 二次大戰에 敗한 国家의 境界는 一般的인 國際法에 依拠해서 講和條約을 通해서 새롭게 設定되어야 하고 講和條約에서만 確定되어야 한다고<sup>17)</sup> 評함으로써 論難될 수 없다. 여러 講和條約에서 交戰國의 戰前에 存立한 境界가 變更되고 혹은 戰前境界의 繼続 効力を 承認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不可欠한 것은 아니고 領域上의 条項 없는 적지 않은 講和條約이 있다. 将來에 全體独逸의 国家權力이 賦与될 独逸国家와 以前의 交戰國사이에 “講和”(平和)條約이 締結된다는 것은 絶對的으로 必須的인 것은 決코 아니다.

聯邦共和国 및 独逸民主共和国을 한便으로 해서 独逸국과 戰爭 했었던 다른 国家들 사이의 戰爭狀態는 오래前에 다른 方法으로 除去되었다고 声明되어 버린 다음에는<sup>18)</sup> 戰爭狀態를 停戰後에 平和状态로 代替하는 어떤 “講和(平和)”의 第一義的인 機能을 지니는 条約은 아무튼 間에 不可欠하지도 않고 可能하지도 않다.

独逸의 往年의 敵對國들과 独逸聯邦共和国 및 独逸民主共和国과

區別되어 存続될 全体独逸国家사이의 戰爭狀態가 繼続된다고 深刻하게 主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어떤 “講和條約”的機能은 戰爭으로 因하여 発生한 法律問題의 終局的인 解決을 (例를 들자면 賠償義務, 国籍問題等等) 하는데만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러한 個個 問題가 그동안에 이미 다른 方法으로 確定的으로 解決되지 않은限에 있어서만이 이러한 條約의 問題가 될것이다.

註 14) 10 条 (聯邦法律公報 1955. II.311)

註 15) 福祉 等等 歐洲經濟共同体 1960 參照

註 16) 그外에도 이 統一体의 存立은 polen에 依하여 承認되지 않았다.

註 17) 聯邦国会의 決議에 이 條約들은 “講和條約의 規則을 완질로 치 않는다”라는 말로 言及되었든가 혹은 言及되어야 했었는 가에 대해서는 疑問스럽다. 聯邦国会의 決議는 正確性의 欠乏에서 東方條約과 이에 対한 聯邦政府의 声明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도리히 聯邦政府의 声明 Bds TDs VI / 3157 18 페이지 数字 4에 上記 本文에 明記된 意義를 뒤 言明이 보인다.

註 18) Doehring 외 Mosler著 二次大戰後 独逸파의 戰爭狀態의 終結, 1963年 參照

境界의 終局的인 講和條約上의 規定을 為한 留保는 1954年 10月 8日의 첫째의 Saar條約과는 反對로 聯邦共和國쪽에서 와르샤와 条約의, 보다 적계는, 모스크바條約의 内容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 또는 多數의 独逸國家에 對한 polen 國境의 終局的인 規定이 어떤 講和條約에 留保되어 있다면 오로지 四個管理國에 移管되어 가고 있는 決定의 탓이다.

1960年 8月 11日의 美國政府의 polen政府에의 通牒은 postdam決定에 依해서 終局的인 境界規定은 講和條約을 通過해서 비로소 이루어 진다고 明示的으로 確証하고 同時に 이 講和條約의前提는 (何如間美合衆國의 見解에 依한다면) 全獨逸民族을 代表하는 政府의 形成이라 고 声明했다. 여기에서 벗어난 美國政府의 言明은 그 後日에 없다.勿論 四個管理國의 모두가 이에 對한 処分權을 가지는限 polen에 依한 東部領域의 合併은 講和條約前에 終局的으로 되어야 한다고 尚 今도 一致된 声明을 發表할 수도 있다. 西方管理國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全體 独逸政府의 形成前에 안하고 있다는데 對해서 独逸條約의 第7條에 따른 聯邦政府의 權限의 要求가 있다.

1960年 8月 11日의 polen政府에 보내는 美國의 通牒에 独逸再統一에 協助해 주라는 提議와, 講和條約을 通過해서 東部領域에 對한 完全한 領有權을 割當한다는 承諾의 暗暗裡한 連結은 와르샤와 条約에서 聯邦國의 便에 依해서 이미 承認되었고…… 確定된 全領域權의 獲得을 解消하는 조건으로 曲解되어 버렸다.

이것은 polen 쪽 条約当事者에 全体独逸의 国家權力의 形成을 돋지 않은 結果가 되었다. 이 割讓은 相統人을 못박아서는 안된다 고 明白한 附則을 붙여서 어떤 사람에게 財產物을 讓渡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割讓 또는 그에게 屬한다고 承認함.)

어쨌든間에 将來의 相統人을 不信하게 对하고 있을 때 그 恩惠를 받는者가 可能한限 相對方의 早速한 死亡을 앞당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를 理性的으로 期待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이 条約의 憲法上의 判決에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論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便에서 polend가 그 어떤 根拠에서 賠償請求 같은 것 을 내세우고 이 賠償은 東方領域의 割讓으로 補償된다고 나온다면 와르샤와 条約의 一般條項의 文句가 바로 있을 수 있는 將來의 全体独逸政府의 条約에의 不拘束에도 不拘하고 polen에의 東部領域의 國際法上의 歸屬을 問題 삼은 것을 沮害 하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은 와르샤와條約에서 Oder-neiße線을 따르는 境界線이 polend의 国家領域의 西部境界를 形成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있다. polend와 独逸民主共和国間의 Görllitz 条約에도 이미 polen의 既存 国家境界로서의 Oder-neiße線의 確認에 関한 거의 똑같은 말이 있다. 여기서는 勿論 “独逸과 polen”의 国境을 論한다는 附則이 있다. 国境確認은 와르샤와條約의 効力發生의 時點에서 바로 소 “遍及効力 없이” 联邦共和国을 拘束한다는

境界의 終局的인 講和條約上의 規定을 為한 留保는 1954年 10月 8日의 첫째의 Saar條約과는 反對로 聯邦共和國쪽에서 와르샤와條約의, 보다 적계는, 모스크바條約의 内容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 또는 多數의 独逸國家에 對한 polen 國境의 終局的인 規定이 어떤 講和條約에 留保되어 있다면 오로지 四個管理國에 移管되어 가고 있는 決定의 탓이다.

1960年 8月 11日의 美國政府의 polen政府에의 通牒은 postdam決定에 依해서 終局的인 境界規定은 講和條約을 通過해서 비로소 이루어 진다고 明示的으로 確証하고 同時に 이 講和條約의 前提는 (何如間美合衆國의 見解에 依한다면) 全獨逸民族을 代表하는 政府의 形成이라 고 声明했다. 여기에서 벗어난 美國政府의 声明은 그 後에 없다.勿論 四個管理國의 모두가 이에 對한 处分權을 가지는限 polen에 依한 東部領域의 合併은 講和條約前에 終局的으로 되어야 한다고 尚 속도 一致된 声明을 發表할 수도 있다. 西方管理國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며 特히 全體 独逸政府의 形成前에 안하고 있다는데 對해서 独逸條約의 第7條에 따른 聯邦政府의 權限의 要求가 있다.

1960年 8月 11日의 polen政府에 보내는 美國의 通牒에 独逸再統一에 協助해 주라는 提議와, 講和條約을 通過해서 東部領域에 對한 完全한 領有權을 割當한다는 承諾의 暗暗裡한 連結은 와르샤와條約에서 聯邦國의 便에 依해서 이미 承認되었고…… 確定된 全領域權의 獲得을 消解하는 조건으로 曲解되어 버렸다.

이것은 polen쪽 条約当事者에 全体独逸의 国家權力의 形成을 遼  
지 않은 結果가 되었다. 이 割讓은 相続人을 뜻박아서는 안된다  
고 明白한 附則을 붙여서 어떤 사람에게 財產物을 讓渡하는 사람  
이 (다시 말해서 割讓 또는 그에게 屬한다고 承認함.)  
어쨌든間에 将來의 相續人을 不信하게 대하고 있을 때 그 恩惠를  
받는者가 可能한限 相對方의 早速한 死亡을 앞당기지 않으려고 애  
쓰기를 理性的으로 期待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이 条約의 憲法  
上의 判決에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論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便에서 poland가 그 어떤 根拠에서 賠償請求 같은 것  
을 내세우고 이 賠償은 東方領域의 割讓으로 補償된다고 나온  
다면 와르샤와 条約의 一般條項의 文句가 바로 있을 수 있는 將  
來의 全体独逸政府의 条約에의 不拘束에도 不拘하고 polen에의  
東部領域의 國際法上의 帰屬을 問題 삼은 것을 沮害하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은 와르샤와條約에서 Oder-neiße線을 따르는 境界線  
이 poland의 国家領域의 西部境界를 形成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있다. poland와 独逸民主共和国間의 Görlitz條約에도 이미  
polen의 既存 国家境界로서의 Oder-neiße線의 確認에 関한  
거의 똑같은 말이 있다. 여기서는 勿論 “独逸과 polen”의  
國境을 論한다는 附則이 있다. 国境確認은 와르샤와條約의 効力發  
生의 時點에서 비로소 “遍及効力 없이” 聯邦共和国을 拘束한다는

獨逸聯邦政府의 主張은 条約에 依한 聯邦共和國의 拘束은 이 時點에서 비로소  
發生한다고는 하지만 polen에의 이 領域의 確定된 帰屬의 開始  
時點은 条約本文을 客觀的으로 解釈 해 본다면 더 以前의 時點에  
固定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데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이미 모스크바條約에서 1970年 8月 12日의 時  
point에 polen의 西部國境은 Oder-neiße線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쏘비에트共和國에 대해서 承認했기 때문에 polen에의 東部  
領域의 帰屬時點은 그 後에 成立된 와르샤와條約에 대해서는 後日에  
fixed 될 수 없는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이 東部領域이 늦어도 1970年 8月 12日에  
polen에 (乃至는 쏘비에트共和國에) 帰屬하고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國際法上의 獨逸統一體의 領域이 될 수 없다는 確認에 関与했다면  
그리고 이 確認이 위에서 言及한 声明때문에 將來 다시 機能을 發  
揮할 獨逸全體國家를 拘束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polen에 의하여  
自刀을 表現하는 处分權이 없는 第三國에 依한 確認이라고 解釈될  
수 있다. 그런데 現代 國際法은隣接國도 全혀 아닌 第三國에 依  
한 어떤 国家의 領域存立의 確認은 그 国家의 法的立場을 支持하기  
위해서 즐겨 모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20年 10月 28日의  
條約에서 憲聯合國의 主要國들은 Bessarabien 帰屬을 루마니아의 国家  
領土로 承認한 (그 地方住民의 自決權으로 正當化 했다) 일은 有名  
하다. 露西亞는 関与하라고 要請을 받았고 여기에서 루마니아와

露西亞의 國境도 規定 될 수 있었지만 Bessarbieen에 对한 루마니아의 領域權은 露西亞의 関与에도 不拘하고 더 以上 問題視 되어질 수 없다고 明示的으로 決定 됐었다. 最近에는 Kambodnba 가 自己領域의 存立에 関해서隣接國보다는 다른 國家의 確認을 얻으려고 繼續 努力한바 있고 가장 最近에는 北京政府를 代表하는 中国이 台灣의 帳屬을 諸國을 通해서 中國 領域으로 承認 시켰다. 이러한 方法으로 具體的인 領域上의 法的狀況에 関한支配의 意見이 造成되었다. 그래서 polen에 依한 東部領域의 終局의 인 獲得에 関한 이러한 “確認” 특히 이 제까지의 臨時의 独逸國家에 依한 確認이 將來의 全體 独逸 政府에 부딛하게 되리라는 것은 確信을 가지고 期待할 수 있다.

3. polen의 國家領域으로 一定한 領域의 帳屬의 確認을 言明한 國際法上의 条約에 对한 同意法은 內國的 法主体의 새로운 態度義務가 이와 더불어 独逸聯邦共和國의 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다만 “政治的” 条約으로서의 資格으로 聯邦共和國立法權者の 同意가 必要한 条約이 問題가 될지라도 聯邦共和國의 裁判官과 市民에 对해서 또한 國法의 遵守와 適用함에 있어서 効力を 갖고자 할 것이다. 이 境遇가 어느 程度인가 하는 問題는 이 条約自體가 內國의 結果를 願하느냐에 于先 달려 있다. polen의 東部領域의 帳屬에 関한 条約当事者들의 一致된 確認을 하고 있는 와르샤와 条約 第一条는 意味깊게 解析해보면 또한 兩國家의 義務가 包含되고 있다. 말하자면 國際法의 次元에서 또는 國際法의 執行에 利用되는

独逸聯邦政府의 主張은 条約에 依한 聯邦共和国의 拘束은 이 時点에서 비로소 發生한다고는 하지만 polen에의 이 領域의 確定된 帰屬의 開始 時点은 条約本文을 客觀的으로 解釈 해 본다면 더 以前의 時点에 固定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데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은 이미 모스크바條約에서 1970年 8月 12日의 時点에 polen의 西部國境은 Oder-neiße線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쏘비에트共和国에 대해서 承認했기 때문에 polen에의 東部領域의 帰屬時点은 그 後에 成立된 와르샤와條約에 대해서는 後日에 固定될 수 없는 것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이 東部領域이 늦어도 1970年 8月 12日에 polen에 (乃至는 쏘비에트共和国에) 帰屬하고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國際法上의 独逸統一體의 領域이 될 수 없다는 確認에 関与했다면 그리고 이 確認이 위에서 言及한 声明때문에 將來 다시 機能을 發揮할 独逸全体國家를 拘束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polen에 의하여 自力を 表現하는 奴分權이 없는 第三國에 依한 確認이라고 解釈될 수 있다. 그런데 現代 國際法은隣接國도 全혀 아닌 第三國에 依한 어떤 國家의 領域存立의 確認은 그 國家의 法的立場을 支持하기 위해서 즐겨 모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20年 10月 28日의 条約에서 聯合國의 主要國들은 Bessarabien 帰屬을 루마니아의 國家領土로 承認한 (그 地方住民의 自決權으로 正當化 했다) 일은 有名하다. 露西亞는 関与하라고 要請을 받았고 여기에서 루마니아와

露西亞의 国境도 規定 될 수 있었지만 Bessarbieen에 对한 루마니아의 領域權은 露西亞의 関与에도 不拘하고 더 上이 問題視 되어질 수 없다고 明示的으로 決定 됐었다. 最近에는 Kambodnba가 自己領域의 存立에 関해서隣接國보다는 다른 國家의 確認을 얻으려고 繼続 努力한바 있고 가장 最近에는 北京政府를 代表하는 中国이 台灣의 帳屬을 諸國을 通해서 中國 領域으로 承認 시켰다. 이러한 方法으로 具体的인 領域上의 法的狀況에 関한 支配의 意見이 造成되었다. 그래서 polen에 依한 東部領域의 終局의 獲得에 関한 이러한 “確認” 특히 이 제까지의 臨時的인 独逸國家에 依한 確認이 將來의 全體 独逸 政府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은 確信을 가지고 期待할 수 있다.

3. polen의 國家領域으로 一定한 領域의 帳屬의 確認을 言明한 國際法上의 条約에 对한 同意法은 内國의 法主体의 새로운 態度義務가 이와 더불어 独逸聯邦共和國의 法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다만 “政治的” 条約으로서의 資格으로 聯邦共和國 立法權者의 同意가 必要한 条約이 問題가 될지라도 聯邦共和國의 裁判官과 市民에 对해서 또한 国法의 遵守와 適用함에 있어서 効力を 갖고자 할 것이다. 이 境遇가 어느 程度인가 하는 問題는 이 条約自身が 内國의 結果를 願하느냐에 于先 달려 있다. polen의 東部領域의 帳屬에 関한 条約 当事者들의 一致된 確認을 하고 있는 와르샤와 条約 第一条는 意味깊게 解釈해보면 또한 両國家의 義務가 包含되고 있다. 말하자면 國際法의 次元에서 또는 國際法의 執行에 利用되는

國法의 次元에서 polen의 領域의 帰屬이 問題가 될때는 언제나  
兩國機関은 条約에 確認된 帰屬을 問題의 領域의 基礎로 삼는다는데  
責任을 진다는 義務이다.

여러가지 聯関性에서 独逸聯邦共和國의 國法의 適用에 있어서 独  
逸聯邦共和國 憲法 第 25 条에서 誘發되는 一般國際法의 適用에 있어  
서 어떤 場所가 어떤 他國의 國際法上의 國家領域에 있는가 어떤  
가가 問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于先 첫째로 法에 依해서 同  
意되었든 다른 어떤 國際法上의 条約이 他國의 國家領土에 關係할  
때는 언제나 있다. 他方의 条約國家의 領域에서 저지른 犯行때문에  
獨逸聯邦共和國의 引渡의 義務를 規定하고 있는 어떤 条約은 그 条  
約에 相反된 規準이 없기 때문에 “國際法에 準해서” 他國의 領域  
에 있다는 것에 關聯시킨다. 그런데 와르샤와條約에 있어서와  
같이 이 國家領域이 独逸聯邦共和國과 兩面의 条約에 依해서 固定되  
어 버렸으면 이 國際法의 國家領域의 定義가 引渡條約의 適用에  
있어서도 여기에 對해서 權限이 있는 國家機關에 依하여 基礎가  
된다는 것은 條約締結者의 意思임이 分明하다. 独逸聯邦共和國과  
polen間의 어떤條約이 “polen”에서 生產 되지 않은 어떤 物件을  
聯邦國에서 polen의 生產地의 이름으로 購買되는 것을 禁止한다면  
마찬가지로 polen의 國家領域의 概念은 이 聯關性에서 와르샤와條約  
에 依해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 國際法에 依해서 下位의 國家機關은 公的인 言明에서 國際  
條約에 記錄되고 義務를 가진 國際法上의 實情의 確認을 直接 혹은  
間接으로 否認하는 것을 配慮하는 義務가 또한 勿論 있으며 거기에  
다 또한 이 機關은 國法에 依해서 制裁되어야 한다. 그리고 同意  
法은 必要한 手段을 行事할 수 있다. 많은 條約에서 國家의 裁判  
이 條約의 無視 라는 것을 配慮하는 條約國家들의 義務를 規定하  
는 根拠는 와르샤와條約에는 分明히 없다.

그래서 聯邦共和国은 條約의 意味에 따라서 聯邦法에서 變形되고  
있는 國際法句節에 國際法上의 領域의 帳屬이 問題가 될 때는 언제  
나 polen에 東部領域의 國際法上의 帳屬을 是認하는 独逸의 國家  
機關은 그 어떤 方法으로 制裁해야 하기 때문에 同意法 自體가  
應當한 國家 命令을 独逸聯邦共和国의 모든 機關에 내리고자 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條約上 拘束이 없는 國法도 또한 어떤 國家 法律이 國民  
의 出生處 表記의 虛偽申告를 禁止하는 境遇 같을 때는 어떤 國家의  
國際法上의 國家領域에 對한 어떤 곳(場所)의 帳屬을 끌어 내고  
있다. 특히 EGBGB의 國際 私法이 領土上의 連結을 除去하는 限  
一定한 場所에 効力を 가지는 法의 適用을 規定 할 때, 또한 一定  
한 場所에 國際法을 違反하고 領土權을 行事하는 어떤 國家의 아마  
도 事實上 強要된 法이 參酌 될 때에도 管轄국과 다음 國家들의

국際法上의 國家領域을 不決斷하게 除去하고 있다.

獨逸法官은 따라서 正規의 國際私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별색  
他國領域의 國際法上의 存立에 關해서 調査를 종종 해야 한다.

와르샤와條約에 대한 同意法이 獨逸國法의 執行에 있어서 polen의  
의 東部領域의 帳屬을 承認하도록 獨逸 國家機關에 命令하고  
polen이 이렇게 되도록 國際法上의 要求를 한다면 同時に 이  
同義法과 더불어 polen에 대해서 條約上 拘束力이 없는 獨逸  
國法이 他國의 國家領土에 어떤 場所의 帳屬을 겨냥하고 있는 곳  
에서도 이 承認은 또한 行해져야 한다.

國際法에 依해서 國際法上의 帳屬이 問題가 되어 있는 東部領域  
을 polen의 國家領域으로 取扱하는 義務는 다시 나아가서 他國의  
國家領土에의 非帳屬에 根拠하고 있다는 國際法上의 義務가 polen  
과의 關係에서 成立 되는 곳에서는 東部領域을 他國의 國際法上의  
國家領土로서 取扱하지 않는다는 義務를 同時に 意味한다.

聯邦共和國에 効力を 가지는 모든 法規의 解釈에.....  
이 法規가 “內陸”이라고 表示한 것을 말할거라는 어떤 領域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勿論 錯誤다. 個個 法律의  
뜻에서의 内陸의 概念은 獨逸聯邦共和國의 州의 領域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獨逸聯邦共和國은 나중에 다시 說明하겠지  
만 國法의 態度義務를 밀반침하는데 言明한 領土權을 獨逸聯邦

共和国에 “만”行使할 수 있기 때문에 内陸은 独逸法律의 뜻에서 独逸聯邦共和国이 領土權을行使할 수 있는 바로 그 領域에 独逸聯邦法律이 問題를 삼고자 할때의 独逸聯邦領域을 말한다.

主觀的 権限과 犯罪庇護를 밀받침 하기 為해서 内陸概念은 國際法에 依하면 境遇에 따라서는 自己의 國際法上의 領土權의 空間을 벗어나서 拡大할 수 있다.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은 이 内陸concept을 活用해서 主觀的인 権限과 犯罪庇護를 独逸聯邦共和国의 権限에 制定하기 為하여 特히 다시 論하게 될 全體独逸의, 憲法委任의 遂行에서 四個國管理國의 뜻으로 独逸帝國 (Reich) 의 領土에의 独逸領域에 連結을 機会로 잡을 수 있다. 이와 같이 独逸聯邦共和国은 例를 들자면 國際法에 依한 独逸法律의 뜻에서 独逸人の concept을 規定하는데에도 또한 独逸帝國의 領域과 一致한 “内陸”的 concept을 利用할 수 있다.

그러나 独逸의 領域上 統一体의 構成要素로서의 어떤 地帶의 特性이 同時に 他國들에 外國의 国家領域으로서 보일 때는 独逸聯邦共和国에 依해서 이 領域이 他國에 归屬한다고 承認할 때는 이 領域이 独逸의 領域上의 統一体에 所属하지 않으며 乃至는 더 上이 所属하지 않는다는 承認이 담겨 있다. 独逸聯邦共和国 法律이 그의 “内陸”이라는 concept으로 一定한 期日이 아니라 時時로 独逸의 領域上의 統一体의 領域에 属하는 것을 問題로 삼을려고 할 때는 同意法과 와르샤와條約에서 polen의 国家領土로서 確定된 領域은 同意法

과 条約認准의 発効後에는 이 意味에서 더 以上 "内陸"일 수 없고 独逸聯邦法律의 適用에도 不拘하고 内陸概念은 바꾸어 解釈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結果가 나온다. 와르샤와條約의 内國的 有効適切性은 여기서 또한 論議의 餘地가 없다.

와르샤와條約에 對한 同意法이 独逸統一體의 領域으로서가 아니라 polen의 國家領域으로서의 Oder-neiße線 東部・領域을 看做하는 것을 正規 独逸 國際私法의 執行에 벌써 命한다면 그것은 더 폭넓은 結果를 갖게 된다. 独逸聯邦共和国안에 있는 어떤 裁判所가 國際私法에 對해서 決定을 해야 할 때 東部領域과 連結되는 権限關係에 關하여 独逸聯邦所持者들間에는 何如間에 polen國家에 依해서 採択된 polen國法의 遵守가 独逸人の 権限이 独逸法官이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足하다 할지라도 東部領域의 地方法으로서의 独逸法을 適用할 수 있다고 이 제까지는 생각되어 왔다면 와르샤와 条約에서 polen의 國家 領土가 規定된 後에는 独逸聯邦共和国의 裁判에 依한 同意法의意義에서 보자면 이제는 이 領域에 合法的으로 効力を 가지는 国法으로서의 polen의 立法權者에 依해서 制定된 法의 効力에서 나와야 한다. 独逸과 polen의 協商에서 独逸聯邦共和匪側에서 独逸聯邦共和国에서 効力を 가지는 権限도 条約으로 因하여喪失되지 않는다는 声明이 發表되어 있다면 國際法上 私權에 關한 独逸法規는 또한 独逸 法律에 屬하게 된다. 이 法規가 一定한 場所에서 國際

法上 合法的으로 効力を 가지는 権限을 끌어내고 있는 限 独逸法  
官은 또한 東方領域의 (外國의) 地方的 権限으로서의 polen의  
法에서 出發해야 한다.

polen에의 東方領域의 帳屬의 確認은 그 以外의 polen이 이  
領域과 人間들의 領土上의 連結을 이제는 國際法上 障碍없이 利用  
할 수 있는 機會를 주고 그들에게 polen의 國籍을 承認하는 結  
果를 가져오게 한다. 이 polend의 國籍은 法律이나 또는 条約  
이 polen 國籍의 所有를 끌어 낸다면 이 polen의 國籍은 独  
逸聯邦共和国에서 또한 尊重되지 않을 수 없다. 独逸과 polen의  
兩國籍 所有의 境遇에서 後者가 大體로 (언제나 全혀 不可避한 것  
은 아니라 할지라도 )無視되어도 相關없다는 것은 이 事情을 全혀  
變更하는 것은 아니다.

独逸聯邦共和国안에서 polend의 法의 個個 適用이 그 内容때문  
에 公序條項 (EGBGB第30條)에서 廢棄할 수 있다는 것은 東部領  
域의 地域的인 権限으로서의 polend國家의 権限으로 보아야 하는데  
는 變함이 없다. 独逸의 國際的인 私法이 地域的인 権限의 適用  
을 規定할때 公序條項의 助力으로 각個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는  
留保로 이 polend의 権限을 東部領域의 地域的인 権限으로 看做  
한다는 独逸聯邦共和国 裁判官의 義務는 polend人에 對해서 聯邦共  
和國의 國際法의 義務로 되어야 한다.

獨逸聯邦共和国의立法權者가 polend人에 대하여 条約上拘束力이 없는 國際私法의 法規를 適用함에 있어서 앞으로 獨逸人の 權限을 東部領域의 地域的 權限으로 看做하도록 西獨의 裁判官에게 明示的으로 權能을 줄것같으면 이것은 分明 와르샤와條約의 違反이 될 것이다.

獨逸의 内國的 法律이 國際法上 条約의 領土上의 条項을 參照하라는 것은 勿論 獨逸 實在法에 있어서 内容으로는 全혀 새로운 態度義務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同意法은 例를 들자면 앞서 提示한 바와 같이 獨逸의 矛盾의 法則의 取扱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 機能에서 그것은 어떤 國際法上의 条約에 对한 어떤 同意法에 類似한데 그 条約에서는 矛盾의 法則에만 따라서 獨逸의 法官에 依해서 採用되어야 할 獨逸과 外國의 實在法의 適用範圍에 關한 規定이 變化되고 있다. 이 点에서도 또한 同意法이 明確하게 달리 規定되지 않고 있으면 自動的으로 内國的인 作用을 誘發하다는 것을 否定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BVef GE29에서 同意法의 憲法上의 再檢討를 為해서 提出된 要求들은 조건을 成就하고 있다.

東部領域에 効力を 가지는 權限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의 判決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와르샤와條約에 对한 同意法으로 因하여 나타난 變化는 東부領域에 있는 土地 所有權이 問題가 되고 이것은 最終

의結果에서는 違憲的 没収를 意味한다는 여러가지 憲法抗告의 主張은 그래서 何如間 論理의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의 法秩序를 為한發効로 별씨前에 没収할수도 있었던 占領軍法은 BVerGE와는 달리 없다. 独逸裁判에 依한 外國法의 適用이 또한 違法이 된다는 것은 “西班牙人의 婚姻”의 境遇에 男子쪽 署名人이 별씨 数年前에 言明 했든 것에 準해서 憲法裁判所에 依해서 承認되었다.

그런데 또한 独逸聯邦共和国안에서 裁判을 通한 polen法의 強要된 適用이 公序條項에서 廢棄되리라 보는限 polen立法의 合法의 인有効範圍가 同意法에 依하여 处理된 그 拡大의 承認이 되고 그 執行은 結果的으로는 polend의 裁判에 依하여 아마도 基本權이 侵害될 수 있는 것이다. 独逸聯邦共和国에 어떤 作為나 또 不作為로 한 独逸国籍 所持者를 外國의 権力에 내맡기고 外國의 判事裁判에 붙이는 것을 可能케 한다면 独逸法에 따른 正式 引渡의 結果가 아닐지라도 不引渡에 根拠한 憲法上의 基本權이 侵害되고 있다. 東部領域의 合法의 地域의 権限으로서 東方條約의 領域上의 規定으로 誘發된 polen法의 承認에서 polen (乃至는 쏘비에트) 国家에 依한 財產沒収를 奨励하는 것이 보인다면은 独逸法廷은 聯邦共和国에서 polen法의 強要된 適用을 公序條項의 힘으로 如前히 拒否할 수 있다는 事情일지라도 立法權者에 依한 條約에 對한 同意公布는 차치하면 基本權에逆行하는 所有權 没収가 될것이다.

와르샤와 条約에 对한 同意法으로 因해서 補償없는 財產沒收를 했다는 非難이 밀반침 되었는가 어떤가 하는 檢討는 同意法이 基本權 侵害의 根拠보다도 다른 根拠에서 벌써 憲法上 無効라고 看做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檢討가 先行되어야 한다.

4. 여기서는 于先 東方條約의 몇個의 다른 規定을 國際法上의 内容에서 檢討하는 것이 重要하다.

a) 모스크바條約의 第二條와 와르샤와 条約의 第二條에 条約当事者들은 相互 關係에서 武力의 適用과 武力에 依한 威脅을 中止 할것을 義務로 하고 있다.  
東方條約에 对한 모든 政治的 聯邦共和國 機關의 態度는 武力拋棄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独逸聯邦共和國쪽에서는 独逸聯邦共和國이一般的인 國際法에 따른 條約없이도 行使할 수도 있는 武力適用에의 權限을 拋棄않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武力行使禁止 말하자면 侵略的 武力禁止가 어떤例外에 依해서 違反될지라도 双方의 條約 없어도 甚之於是 UN憲章없이도 普遍的 國際法이 모든 國家의 法的論証에妥當性을 주는 어떤 法規가 있다. Kellegg協定이 以前에는 아무튼 間에 權限要求를 貫徹하기 위하여 그當時에는 아직도一般的인 國際法에 根拠을 두고 있는 戰爭勃發에의 權限의 拋棄를 意味했었는데 오늘날에도 UN의 非會員國에게는 侵略的 武力行使의 條約上의 禁止는 不文法에서 나오는 既存 義務의 反復에 不過하다.

東方條約에서 当事国들이 國際法上 禁止 되어 있는 侵略에 対抗한 武力行使로서 一般國際法이 許容하고 있는 防禦權을 抛棄했다는 것 은 이 条約이 東方陣營 国家들 사의의 条約과는 反對로 自体防禦의 權利를 明示的으로는 言及하지 않했을지라도 한번 생각 해 볼만 하다.

쏘비에트 聯邦이 自己쪽에서 모스크바條約에서 例外의 例擧로 拘碍 되지 않은 武力行使 禁示를 把握하고 U N 憲章 乃至는 四個國管理의 條項에 依拠하고 信服할만한 一般 國際法과 合致되는 独逸聯邦 共和國에 對한 武力行使에의 特權을 事實上 默示的으로 抛棄 했는 가는 (여기에만 抛棄라는 表現이 들어 맞는다.) 勿論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論難되었지만 여기서는 論議할 必要가 없다.

東方條約에 담아진 一般國際法의 承認으로 또는 反復으로 言明된 武力行使禁止에서 欧羅巴의 모-든 国家들의 領土上의 保存은 오늘의 境界로 無制限 尊重되어야 한다는 條約 当事국의 義務가 모스크바條約에는 何如間 結論으로 提示되어 있는 反面에 와르샤와條約에는 兩條約國 國境의 領土上의 保存을 無制限 尊重한다는 義務에 関한 言明이 一般的인 武力行使禁止에 얹세워 지고 있다.

現存 國家境界의 不可侵性에 関한 言明은 벌써 武力禁止의 結果로서 条件付로 말하자면 國家境界가 事實上 妨害 받지 않은 國家權力의 現存範囲의 境界와 符合할 때만이 正當하다.

武力禁止의 違反은 合法的인 国家領域을 侵犯하는 것은 다 다른  
状況에서 말하자면 充분히 일어날 수 있다.

아무데도 侵略의 定義에 関해서 쏘비에트聯邦의 条約들과 提案에서  
보다 더明白히 表現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런데 “國境”的  
不可侵性을 為한 武力禁止의 意義에 对한 問題를 提出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國際法上으로 禁止된 武力行使는 어떤  
領域과 그 境界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까지는 問題의  
領域에서 国家権力を行使했던 国家의 어떤 다른 国家의 主權行使  
에 对한 反抗이 武力으로 껴졌다든가 혹은 이 反抗을 武力으로  
꺾을려고 試圖하리라는 것이 分明히 되었을 때의 境遇다.

“어떤 領域”에 对한 禁止된 武力은 따라서 이제까지 이 領域에  
国家主權을行使했던 国家의 合議欠乏以外에妨害되지 않은 (“平和  
로운”) 所有權 状況을前提로 한다. 어떤 平和로운 所有權状况을  
武力으로 侵害한다는 것은 이 所有權状况의 境界線을 侵害함으로써  
이루워지고 이 境界線은合法的인 国家領域의 國際法上의 境界에서  
全의으로相反될 수 있다.

한 国家는 正常의으로 自己에固有하게 屬하는 領域에만 国家主權  
을行使 할 수 있다. 国家는 또한 条約을 혹은 一方의 行動  
을 通해서 处理權이 있는 國際法主体에 依해서 権限이 委任되었을  
때 혹은合法的인 “軍事的”占有를 했을 때 外國 国家領土에 合  
法의으로 国家主權을行使 할 수 있다.

“外國”의 領域에서 처음에는 合法的인 国家權力行使의 不法의  
繼続이 (軍事的 占領 形態이든 民間的 領土權의 行使와 結合한  
軍事的 占領이건) 이들 쪽에서一般的으로 혹은 어떤 事情에 따  
라서 禁止된 武力行使를 明示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尚속도 아직  
解明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外國領域의 어떤 軍事的  
의 占領者가 占領權의 廢止後에 占領領域을 떠나지 않는다는 境遇  
는 論議되었다. 그런데 이런 境遇에 어떤 領域에서의 純한  
滯留가 國際法上 禁止된 武力行使로 解釈된다 할지라도 占領者에게  
領域을 撤收回도록 強要하는 武力의 試圖가 許容된 武力行使라고  
그쪽에서는 看做된다는 結論은 나오지 않는다.  
어떤 国家가 다른 国家로부터 法的으로 有効하게 文書上으로 割譲되  
었거나 또는 法律上 國際法에 依拠해서 帰屬한 領域을 이제까지의  
所有權者의 不法의 主張意志에 대해서 所有하려고 試圖한다면 그것  
은 論議할 餘地없이 禁止된 武力行使이다.

認定되어 있는바와 같이 國際法의 意義에서 國際間의 境界가 아  
닌 分境線과도 비슷한 “境界”뒤에서妨害 받지 않은 所有權者狀  
況이 成就했다면 바로 이境界線은 武力行使 禁止에 依해서 保護  
되고 있다. 이 所有權者地位는 이線을 넘어서 合法的인 国家  
境界線까지 前方으로 移動 하려는 試圖는 武力行使 禁止에 대한 違  
反마저 된다. 이것은 国家間의 平和스러운 関係에 関하여 UN總  
會에 依하여 宣言된 國際原則에 明白히 表現되어 있다. <sup>56)</sup>

條約上의 武力行使拋棄는 境遇에 따라서는 파키스탄과 印度間의 Simla協定의 例에서 처럼 主張되어 왔고 法律上 存立하고 있는 国家境界에違反하고 있는 事實上의 所有權者狀況의 그려한境界를 明示的으로 適用하고 있다.

바로 쏘비에트政府가 上前의 機会에 武力行使禁止는 不法的인 所有權狀態에도 利롭게 될 수 있다고 言明한바 있다.

1928年 8月27日의 戰爭追放條約이 元來의 調印國家의 認准을 通해서 有効力を 發生하기 前에 이 協定은 쏘비에트政府의 發議로 쏘비에트聯邦과 루마니아를 包含한隣接國들 사이의 関係에서

1929年 2月9日의 모스크바議定書에 依해서 地域의 戰爭追放協定으로 암질려 効力を 發生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쏘비에트政府는 이條約으로 루마니아에 依한 Bessarabien 合併의 武力的인 取消를 遏止 할 것이다. 그러나 쏘비에트政府는 Bessarabien에의 權限을 抛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言明했다.

b) 誤認할 餘地없이 쏘비에트聯邦은 모스크바條約에서 事實上의 所有權狀況이 國際法에一致한 国家領域의 存立으로서 이 機会에 承認되고 다른 한便에서는 独逸聯邦共和國이 武力的인 方法以外의 다른 方法으로도 쏘비에트聯邦의 意思에 反하여 欧羅巴國家들의 領域의 이 存立의 變更을 図謀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함으로써 武力行使禁示에 依拠해서 事實上의 所有權狀況을 (現存하는 実際上의

現勢) 保護하는 承認을 沮止하려는데 決定的인 價値를 두고 있다.

바로 東歐羅巴의 國際法史에서 첫째의目標는 全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一般的인 武力行使禁止와 特殊한 双方의 不可侵條約에도 不拘하고 어떤 時点에 存立한 所有權狀況에 関心을 가지는 国家들이 어떤 領域狀態의 附則的 承認을追求하는데 対하여 쏘비에트聯邦에 対한 루마니아와의 지난날의 政治는 教訓的인 例가 된다. 쏘비에트聯邦이 1929年後隣接国들과 Kellgg協定에 依拠해서 相互間의 不可侵條約에 関한 協商을 했을 때 루마니아는 쏘비에트聯邦에 依한 現在 國境線의 明示的인 承認을 願했다. 쏘비에트政府는 領域의 紛爭을 武力으로 解決하려는 모 - 든 試圖를 条約違反이라고 声明하는 条項에 同意하는데 暫時 用意가 있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이에 滿足하지 않고當時 루마니아에 依해서 所有되고 있는 範圍에서 루마니아 国家領域의 保全의 明示的인 承認을 要求했다. 이것이 바로 쏘비에트聯邦에 依해서 拒否 되었다.

同時に 一次大戰後의 條約史에는 國境의 尊重에 関한 또는 國境의 保障에 関한 條約上의 規定과 聯關해서 어떤 國境의 合法性에 対한 明示的인 承認을 얻으려는 試圖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플랜드는 1921年 3月3日, 1926年 3月26日 그리고 1931年 1月15日의 諸條約에서 当事国들은 그들의 現在의 東部國境 \* 乃至는 그들의 現在의 領土上의 保存에 対한 第三國의 侵略時에 援助를 約束하면서

Bessaralien의 루마니아帰屬을 默示的으로 承認했다. 그런데 쏘비에트聯邦은 Bessaralien에 関한 그의 立場 때문에 이에 对해서 即刻 抗議 했다. 60)

모스크바와 와르샤와條約에서 条約当事者들은 領域權의 要求가 없으며 말하자면 自己領域의 撤去나 혹은 領域의 割讓에 对해서 國際法上 밀받침되는 要求가 없다고 明示的으로 声明하고 있다.

Oder-neiße線과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現在의境界는 폴란드乃至는 独逸民主共和国의 國境이라는 承認에는 同時に 이境界에 依해서 規定된 國家領域의 國際法上 合法的인 存立의 承認을 엿달고 있다. 一般國際法은 領土權의 制定과 더불어 어떤 國家의 機関은 다른 國家의 國家領土에 屬하는 領土에서 그 國家의 許可없이 主權行使하는 것을 禁하고 있다.

武力行使禁止는 어떤 國家가 平和로운 所有權 狀況에 对하여 武力의 適用으로 “外國領域權의 侵害” 可能性을 얻은 것을 다만 補充해서 禁止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一般 國際法에 依하면 어떤 國家가 武力 使用이나 武力 威脅을 하지 않고 다른 國家에게 이 다른 國家의 國家領土에의 帰屬이 現在 國際法上 否定되지 않는 領域을 既存國家를 為해서 創建될 國家를 為해서拋棄해 주라고 所望하는 것은 國際法을 違反한 行動은 아니다. 이러한 要請은 어떤 領域의 住民의 自決權을 내걸고 있는 現代의 國際法에 立脚해서 “밀받침”

되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어느程度乃至는 언제 이貫徹을 為해서  
武力의 使用과 武力의 威脅이 아닌 이러한 圧力이 適用될 수 있  
는가는 “不分明한 地帶”에 있는데 이 問題를 解明하는데에 많은  
국家들이 그다지 関心을 가지고 있지 않다.

他面 어떤国家가 条約을 通해서 어떤 領域變更의 所望을 斷念  
한다는 것은 全的으로 可能한 일이다. 이와같은 義務는 그러나  
어떤 条約上의 “武力行使禁止”에만 默示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은 約定은 國際法上에 새로운 것은 全히 아니다.

특히 一次大戰後에當時의 所有權狀況의 旧状을 固定하기 為한 鮮  
明한 意圖를 가지고 一連의 条約이 締結되었었다.

이러한 条約이 어떠한 境遇에도 許容되는가의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既存 所有權狀況의 變更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遏止하기  
위해서 条約을 締結하는 것이 國際法上 無制限으로 許容 되는가는  
다음과 같은 것과 聯閼되고 있다. 即 处分權이 있는 國際法上의  
主体에 依한 条約을 通해서 國際法을 違反한 行為로 일어난 所有  
權狀況의 追後의 正當化를弁護하는 것이 許容되는가, 所有權狀況의  
變更에 對해서 國際法上으로 밀반침되는 要求를 할 수 있는데 所  
有權 狀況의 不變更을弁護하는 것이 許容되는 가에 聯閼되고  
있다. 이것은 所有權狀況의 試圖된 条約上의 保障으로 말미암아  
強制性 있는 一般 國際法을 違反할때는 一般 國際法의 오늘날의 立

場에서 다시금 否認되고 있다. 그래서 領土上의 現況의 據護도  
萬若에 只今의 國家에 永統的으로 帰屬함으로써 民族自決權을 明白  
하게 違反한다면 國際法 違反이라는 意見이 나온다.

이러한 理由에서 포르투갈에게 國家領域으로서의 海外 領域政治를  
容易케 하는 影響을 미치는 第三의 支持는 數 많은 아프리카 國家  
들로 부터 UN憲章에 비추어 第三國의 義務 違反이라고 批判되고  
反面에 “殖民地兵力”에 依한 解放運動의 弾圧은 國際法上의 武力  
行使禁止의 違反이라고 까지 말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背後關係에 直面해서 특히 쏘비에트聯邦이 스스로 어떤  
變更이 아니라 維持에만 關心을 가지는 領域에만 現狀 維持를 為  
한 明示的 条約上의 義務를 制限하고자 努力하는 것이 說明되고  
同時間에 이 努力은 現狀 維持에 對한 条約上의 言明을 武力行使禁  
止 및 平和安定에 關한 言明과 混同 하는 努力인 것이다.

1967年부터 共產陣營의 國家들 사이에는 一連의 条約이 締結되  
었는데 이 条約에서 欧羅巴에 있어서 領土上의 現狀維持가 条約國家들에  
게는 義務的인 政治的 目標로 혹은 条約当事者の 協力義務의  
對象으로 宣明되었다. 그러나 現況維持에 對한 規定들이 演繹되어  
나왔어야 했든 条約 國家間의 条約上의 武力 “拋棄”라는 이 義  
務에 先行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始初에 現狀 保護의 措置는 強莊的 變更의 試圖에만 取 해진다는 方法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規定은 1967年 5月 12日의 쏘비에트와 불가리아條約에 있다. 1967年 3月 17日의 独逸民主共和国과 체코間의 條約(64)은 이에 反하여 第二次大戰의 結果의 修正하려는 “勢力”에 対抗하는 措置로 双方이 義務를 지는 関係에 서서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明示的으로 指摘한 境界를 包含한 兩國家 国境의 “不可侵性”을 떨어 定立하고 있다. 1967年 5月 18日의 独逸民主共和国과 헝가리의 條約 및 1967年 9月 7일의 불가리아의 條約은 비슷한 内容이다.

1968年 5月 16日의 polen과 헝가리條約에는 새로운 表現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모스크바條約의 本文에 影響을 주었운이 分明하다. 여기에서 双方 條約國은 “現存 欧羅巴 国家 国境의 不可侵이 欧羅巴 安全을 維持하는데 主要한前提가 된다”는데 合意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相互間의 武力拋棄에 関해서는 全혀 言及이 없으며 똑같은 慣用文句가 담겨져 있다.

1967年 3月 15日의 polen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條約 第3條에는 아주 똑똑하게 兩국의 領土上의 保存과 더불어, 따라서 한쪽 條約國家의 領域에 対한 武力使用의 禁止와 더불어, Oder-neisse線에 接하는 polen人民共和国의 境界와 아울러 独逸聯邦共和国의 境界가 條約의 独逸文에는 “不可侵”이라고 表現된 (一

方의인) 保証을 하고 있다.

1972年 5月12日의 独逸民主共和과 루마니아間의 条約은 境界의 不可侵性은 武力行使禁止의 使用境遇가 아니고 모든 “修正”에 対한 第二次大戰 結果의 確保論의 適用境遇임을 明確하게 보여 주고 있다.

共產陣營國家間의 이러한 条約의 背後關係로 보아서 모스크바條約의 第一章과 마지막 章은 武力行使禁止의 具体化로선 到底히 理解하기 어렵고 따라서 欧羅巴에 있어서의 一方的인 領土上의 現狀變更은 武力以外의 다른 方法으로도 試圖해서는 안되며 他國의 그러한 試圖에 反對하는 것이 共產國家사이의 条約義務가 되어야 한다고 実証되어 있다. 이것은 条約自體의 解釈을 通해서도 符合하고 있다. 即 모스크바條約 第三条의 마지막 項의 意義에서 보는'國境은 “不可侵하다”라는 말이 条約 当事者들에 対해서 領土權과 武力行使禁止의 概念에서 나온다는 結果의 確証만을 意味하고자 한다면 그것으로서 条約當事者들은 “歐羅巴의 모든 國家의 領土上의 保存은 現今의 境界에서 無制限 尊重한다”는데義務를 지고 있다 는 用語로서 별씨 前에 分明히 表明 되었던 것을 不必要하게 反復한 것이다. 第三条의 마지막 項이 所有權狀況의 暴力에 依한 勉害를 適用하려 하지 않고 바로 武力威脅이 아닌 것으로 提議된 國家變更의 所望도 또한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을 表明하고자 함은 条約의 露西亞文이 “Neruschimyj”라는 말을 使用하고 다른 慣例

의인 “neprikosnowennyj”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証明되고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쏘비에트聯邦이 武力에 依한 国境侵害를 許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独逸語 条約文이 恒常 不可侵性이라 했고 仏蘭西語로는 inviolalité로 表現된 것 을) 表明하고자 할때는 例를 들자면 1926年 9月28日의 쏘비에트와 럿타오間 条約의 前文과 第2條에서, 1932年 7月25日의 쏘비에트와 polen間의 条約 第1條에서, 1933年 9月2日의 伊太利 쏘비에트條約 第一条에서, 1964年 9月24日의 独逸民主共和國과 쏘비에트聯邦間의 第4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핀란드와 쏘비에트間에 이 両国家間의 国境의 不可侵性을 保障하기 위한 特別措處 (말하자면 国家機構의 武力에 依한 干涉에 対하여)에 関한 1922年 6月1日의 条約에서와 같이 쏘비에트聯邦의 以前의 条約에서 使用되었던 用語이다.

武力威脅과 結付되지 않은 国境變更의 要請도 특히 이 要請에 法的이고 道義的 根拠가 주어지고 이 根拠가 異議 없이 受諾되기를 期待할 수 없을때는 國際交易에서 重大한 難題로 思慮되고 있다. 他人 所有權에 対한 単純한 異議나 혹은 国法上 他人 所有權을 讓渡하라는 主張이 境遇에 따라서는 所有權者地位에 対한 侵害로 看做되는 것과 비슷하게 国家間에 領土 割讓과 国境移動에 対한 要請은 별씨 国境에 対한 破壞로서 이 国境의 “侵害”로서 따라서 国境의 道義의 “侵害”로서 생각 된다.

이러한 뜻에서 모스크바條約의 第3條 2項도 쏘비에트의 主權概念을 考慮해서 理解해야 한다.<sup>19)</sup>

두 국가가 第三国에 對한 関係에서 또는 第三国들間의 関係에서 까지도 領土上의 現狀의 維持를 為해서 保証의 義務를 질때도 그들이 이 義務에 反하여 处分權者의 同意를 얻은 平和로운 方法으로 成就된 現狀의 變更은 國際法上 絶對的으로 有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以外에도 바로 後日의 條約이 旧條約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 自力사이에 將來 处理될 現況의 變更은 有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쏘비에트外相은 合議한 国境變更是 모스크바條約으로 妨害 받지 않는다고 言明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聯邦国会의 司法分科委員會의 大多數가<sup>20)</sup> 생각하듯이 모스크바條約은 政治의 用語에서 平和로운 變更으로 (peaceful change) 表現 되고 있는 것을 是認하고 奬勵까지 한다는 結論은 나오지 않는다.

露西亞語와 独逸語에는 国境에 对한 武力行使의 不許나 혹은 이보다 더 한것을 表現하기 위한 많은 말이 뜻대로 되는데 UN의 条約集에 있는 共產陣營의 条約 諸訳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로만語 系統의 言語에는 他國의 国家領域에 統治權行為의 認可되지 않은 处理나 他國의 国家領域에의 武力으로 強奪하는거나 또는 어떤 領域을 “問題로 삼은 일”이 許容안된다는 것을 表現할 수 있는 術語가 아직까지 形成되지 못하고 있다.

註 19) 모든 欧羅巴 国家의 事実上의 所有權狀況에 对한 第3条의 마지막 細目項이 아직도 欠如하고 있는 하나가 아닌 國際法 基礎를 制定하고자 한다고 聯邦国会 司法分科委員會가 認定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当然한 일이기에 特別한 確言의 対象이 될 수 없다.

註 20) 第81回 會議 決議錄 11 페지 參照。

1972年 5月12日의 独逸民主共和国과 루마니아間의 条約은 国家의 国境에 对해서 要求되는 不可侵性은 東쪽(共產陣營)의 觀點에서는 武力行使禁止의 適用境遇로서가 아니라 “平和로운 變更”으로서도 바라지 않은<sup>21)</sup> “修正”에 对하여 “二次大戰의 結果”를 保障하는 政治的 原則에서 나오는 結論으로서 把握되고 있다.

그래서 平和로운 變更이 遏止될 수 없었던 歐羅巴 國家의 不時의 새로운 境界는 特異하게도 모스크바條約에 規定된 條約上의 保護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現在 國境의 侵害만이 條約當事者의 見解에 依하면 第3條 1項의 明確한 原文에 따라서 歐羅巴의 平和를 威脅하는 것이다.

第一條에 이어지는 첫째 細目項은 領土上의 保存의 無制限한 尊重을 오늘날의 境界에만 規定하고 있으며 平和의이고 合法的으로 이루워 젖건 萬一의 將來 境界에 對해서는 規定하고 있지 않다.

條約當事者例의 한쪽에 依해서 歐羅巴 境界의 平和로운 變更을 一方的으로 要求한다는 것은 그 当時 第三条의 마지막 項에 依해서 明確하게 否認된 것으로 보았다. 萬若에 條約當事者의 한쪽이 다른 國家를 牺牲하여 어떤 한 國家の 國家領域의 缩少뿐만 아니라 一方的으로 한 國家の 다른 國家에의 完全한 合併이나 혹은 하나의 唯一한 새로운 國家에의 多數國家의 融合을 尽力한다면 이와 같이 條約의 意義에서는 否認된 要求를 表示하게 될 것이다.

“再統一”이란 (何如間 独逸聯邦共和國에서 이제까지 想像했는 것처럼)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의 境界의 移動뿐만 아니라 完全한 開止를 意味하게 될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國이 將來에도 領域要求를 하지 않을 것이라 声明함으로써 쏘비에트 聯邦의 意思에 反하여 独逸聯邦共和國의 國家領域의 拡大에 對한 將來의 國際法上 根拠가 있는 要求를 主張하지

않는다는 것을 22) 何如間 義務 것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에의 다른 한쪽의 独逸의 合併에 依하여 独逸人의 完全한 또는 部分的인 自決權의 實現은 따라서 排除 되고 있다.

既述한바와 같이 모스크바條約의 第三条 後章의 目標가 武力에 依한 侵害와 一方의in 変更 要求에 反하여 欧羅巴에서의 現在의 領土上의 現況의 維持라면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의, 따라서 그들사이에 現存하는 境界의 廢止下에 再統一의 現実化를 琴하 는 独逸聯邦共和国의 一方의in 要求는 모스크바條約과 兩立할 수 없다. 이것은 모스크바 条約이 “再統一”을 永久히 不可能케 하 고 어떤 種類의 再統一도 不可能케 하고자 함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註 21) 露西亞人 教授 Blitschenko 는 모스크바條約에 合議된 것으로서의 frontières 의 inviolabilité와 immunité를 区分없이 使用하고 있다: sécurité et coopération européennes.  
Aspects Juridiques 1971年 11 페이지 參照。

註 22) 自決權의 現実화에 對한 要求로서 独逸聯邦共和国은 領域과 国境의 変更要求를 내걸지 않는다는 東方條約에 對한 聯邦國 會決議 声明은 全的으로는 들어 맞지 않다. 独逸民主共和国内의 独逸人에게 全体 独逸國家 権力의 形成 뿐만 아니라 그들이 独逸聯邦共和国에 혹은 独逸民主共和国에 所屬되고

심으나의 問題가 提出되어 全體領域의 住民이 前者에 同意 한다면 自決權 實施의 結果를 実現하자는 独逸聯邦共和国의 要求는 아마도 國境變更要求가 될 것이다. 第3條 2項에 서는 바로 이러한 要求提起를 拠棄하고 있다.

現狀을 保護하자는 条約當事者の 相互間의 約定은 벌써 말한 바와 같이 將來에 合議에 따라 具体的인 變動을 일으려고 尽力 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处分權이 있는限 実現까지 하는 것을 沮止하지 않는다. 따라서 独逸民主共和国이나 또는 쏘비에트聯邦(혹은 双方)이 将來에 “再統一”을 願하고 이 再統一이 同時に 独逸聯邦共和国에 依해서 말하자면 쏘비에트聯邦이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樣式과 조건에서 願해진다면 모스크바條約 第3條는 現況의 合議에 依한 變更에 何等의 障害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独逸統一에의 摘要書를 모스크바條約의 現狀條項의 違反으로서가 아니라 条約에 一致하다고 理解하는 可能性을 준다.

獨逸統一에의 摘要書는 (와르샤와條約이 独逸聯邦共和国을 為해서만 締結되었다는 声明과 꼭 마찬가지로) 条約原文의, 또는 署名과 認准時에 虛偽없이 作成되고 沈默 속에 承認된 留保의 内容도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서만이 統一摘要書는 条約原文에 对한 異論 時에 条約原文에 先行할 것이다. 統一摘要가 發表되었는데도 이 統一摘要書는 条約原文의 解釋을 為해서 条約原文의 어떤 있을 직스러운 說明이 具体的으로 確訖 되는 限度 내에, 그러나 또한

그 限度에서만 풀어 넣을 수 있다. 統一摘要書가 말하고 또한 모스크바條約에 따르면 再統一을 可能케 할 수 있다는 “歐羅巴에 平和의 狀態”는 再統一과 그와 더불어 現況打開에 对한 쏘비에트 聯邦과 独逸民主共和国의 特有한 實際的인 関心이 發生하고 있다는 데 緣由하고 있을 것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이 쏘비에트聯邦과 独逸民主共和国自体에 独逸 再統一의 願望을 일으키는 外交政策과 國內政策을 施行한다면 그것은 勿論 모스크바條約의 第3條와 一致한다. 이것만이 独逸統一摘要書의 條約에 合致한 意義이며 이 意義만이 또한 摘要書의 複雜한 表現을 解明하고 있다.

이 “再統一”은 그렇게 되면 쏘비에트聯邦과 独逸民主共和国의 되풀이 되는 言明에 表現되었듯이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따라서 그때 그때의支配權을 가지는, 그래서 予想컨대 쏘비에트聯邦에 隸屬한支配權을 가지는 独逸民主共和国) 結合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兩獨逸國家사이의 融合에 関한 條約이 必要하다는 것이겠다. “再統一”은 따라서 모스크바條約의 第3條 마지막章에 依하면 憲法(基本法)에 있듯이 “自由로운 自決權에 依한 全獨逸民族의 決定에” 依해서가 아니라 独逸聯邦共和国이란 国家와 独逸民主共和国이란 国家의 “自發的”인 統一에 달려 있다. 이로서 独逸聯邦共和国은 (四個國管理權을 別途로 치드라도...) 独逸民族에 自決權과 自決權에 依한 統一에 对한 要求權을

과 独逸聯邦共和国은 이 決定을 招來케 하고 아울러 境遇에 따라  
서는 境界變更이 있을지 모르는 決定의 實現에 對한 要求權을  
一方的으로 適用시킬 수 있는 法的地位를 抛棄 해버렸다.<sup>24)</sup>

註 24) 이것은 佛蘭西文獻에 별씨 明白하게 表明되었다.

Meyrowitz, Annuaire Francais de Droit International  
1970. 113 페지 參照。

獨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의 乃至는 쏘비에트聯邦의 國家權  
力者들과의 条約上의 合一은, 四個管理國權이 管理權을 抛棄했을  
境遇에 또는 四個國權이 어떤 다른 理由에서 ( 特히 U N에의  
兩獨逸國家의 無條件 加入을 생각해서 ) 根拠 없게 될境遇에 또  
는 四個國管理權이 쏘비에트聯邦의 見解에 依해서 별씨 無根拠하다  
는境遇에도 亦是 必要하다.

## II. 憲法의 個個 規定과 東邦條約의 分析된 規定의 合憲性

### 1. 憲法 第97條와 와르샤와條約 第一條의 合憲性

다름아닌 와르샤와條約 第一條가 그 내용을 위의 13에서詳論한 것에 相應하게 가진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條約의 内國的 執行은 아마도 條約의 審議에서 아주 看過 되었던 難點을 憲法에 알려다주고 있다. 이미 提示한바와 같이 國際法上의 條約에 拘束 되지 않은 國際私法의 權限行使指示는 “地域의인” 權限의 (犯罪場所 같은) 調査時에 独逸法官으로 하여금 어떤 地方이 國際法上 이 國家에 또는 저 國家의 國家領土에 所屬하고 있는가를 確認할 것을 強要하고 있다. 또한 数많은 다른 規定도 어떤 地方이 어느 國家에 所屬하고 있는가 하는 予備問題를 國際法을 適用해서 解決하도록 独逸法官에게 마찬가지로指示하고 있다. 이 目的으로 独逸法官은 一般 國際法의 規則뿐만 아니라 條約도, 그것도 아마 第三國끼리의 條約까지도 끌어 넣어야 하고 또 (더 넓은 뜻에서) “適用” 해야 한다.

裁判官 職權의 獨立性이란 原則으로 부터 独逸聯邦共和國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와는 反對로<sup>25)</sup> 裁判이 内國의 法規定에 있는指示로, 特히 國際法上의 予備問題를 다루는 國際法의 適用時에는 어떤 抽象의인 解釈도, 独逸聯邦政府의 혹은 行政府의 어떤 權位에

서 國際法 法規의 具體的인 影響力에 関한 陳述에도 拘束되지 않는다는<sup>26)</sup> 結論이 演繹된다. 一般 國際法에서는 國際法의 이 部分의 成分과 解釈에 對한 抽象的인 不確実한 問題를 解明하는 것 이 独逸聯邦憲法裁判所에는 留保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当該正式裁判에서는 抽象的인 法規의 適用은 具體的인 事件에 拘束力を 가지는 行政府의 이러한 教示가 내려져 있는 어떤 法律은 이와같이 違憲의이다.<sup>28)</sup>

註 25) 나의 國際法 821 페지에 指摘.

註 26) 그것은 自明하기 때문에 便覽에 明白히 이야기 되어 있지 않다. 憲法(基本法) 第 25 条와 100 条 2 項은 이미 一般 國際慣例法이 法廷에 依해서 独立的으로 다시 말해서 行政府立場의 拘束없이 適用된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다.

註 27) 憲法 100 条 2 項.

註 28) 이에 따라서 오스트리아憲法 裁判所는 同文의 憲法規定下에서 어떤 個人의 所屬에 関한 政府의 拘束力 있는 決定을 國際法上 旧領土上의 範圍로 規定한 法律을 無効라고 說明했다.

어떤 個個 土地가, 어떤 마을이 또는 어떤 地方이 國際法上 어떤 国家의 国家領域이 되어버렸는가에 對한 調査는 恒常 領域權의 獲得과 墓失에 関한 抽象的인 國際法의 規範을 具體的인 事件

에 適用하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 憲法에는 政治的 行動을 裁判 할 수 없다는 說은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 憲法裁判所는 이를 為한 例證이 必要없다.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의 国法을 為해서 美国의 判決을 받아들여 領域의 境界가 그어가는데 對한 그리고 그 所屬에 對한 問題는 政治的인 問題이며 이 問題에서는 裁判은 立法府와 行政府의 見解에 拘束 된다는 것은<sup>29)</sup> 있을 수 없다.一面 国家為主原則의 法令과 이 原則의 適用에서 오는 行政府가 要求하는 裁判의 免除에 關해서 他面 外部關係의 政治的 問題로서의 國際法上의 問題에 對한 決定을 回避하거나 혹은 아무튼 間에 行政府에 反對하지 않으려는 裁判의 努力으로 말미암아 蒼起되는 紛糾가 어떠한가를 法官의 一部가 다른 法官을 政治權力下에 裁判力이 屈服했다고 非難한 1972年 6月7日의 大法院의 最近決判은<sup>30)</sup> 보여 주고 있는바다. 独逸聯邦共和国에서 이에 相應한 紛糾가 일어나는 것은 憲法과 法이 一定한 法規定을 適用해서 法的인 主要問題와 予備問題를 判決하도록 指示하는데는 연제나 이 法適用의 個個結果는 自國法이전 外國法이전 또는 國際法이전 全히 相關없이 그리고 当該 法規가 本質적으로 論爭의 餘地가 있건 없건 또 그 法規가 重大한 政治的 影響을 論爭의 対象이 되건 안되건 間에 全히 相關없이 法官들에게 行政府로 부터 承認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에 불들고 있는데만 避할 수 있다.

獨逸聯邦共體의 法官이 國際法에 따라서 이 國家의 또는 저  
國家의 國家領域에 屬하는가에 関한 法律에서 立法機關의 証言에  
拘束되는 가의 問題가 생길 때 이 証言이 憲法에 또는 單純한  
法律에 包含되어 있는가, 이 証言이 自國의 國家領域에의 領域의  
帰屬에 関한 肯定的인 証言인가, 이 証言이 自國國家領域에의 不  
帰屬에 對한 明示的인 혹은 默示的인 証言인가, 이 証言이 他國  
의 國家領域에의 어떤 領域의 帰屬에 関한 肯定的인 또는 否定的  
인 証言인가가 区別되어야 한다.

憲法自身에 包含된 具体的인 証言은 獨逸의 占領軍法 规定을 <sup>31)</sup>  
假定 할지라도 恒常 法官을 拘束하고 있다. 다른 便에서는 憲法 116  
条가 1937年 12月 31日의 狀況에 따라서 獨逸國의 領域을 適用  
하고 있지만은 獨逸國의 領域에 屬하는 것의 範圍에 関한 아무런  
肯定的 証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重要하다.  
어떤 具体的인 土地가 이 領域에 屬하는가에 對한 論爭이 벌어질  
때는 獨逸聯邦共體의 裁判은 여기에 對해서 스스로 그리고 오로  
지 國際法에 依해서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sup>32)</sup>  
憲法은 獨逸의 領域上 統一體의 그때 그때의 範圍에 對해서 四  
個管理國보다 할 말이 더 적다.

註 29) Foster 對 Neilson 事件. 2. pet. 253. Jones 對  
United states 137 US. 202, 212. 이 立場은 그 밖에

도 美合衆國의 外部境界에 効力を 가지는 것이며 成員州사이의 境界에 効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奇妙하게도 大法院의 決定에서 該當 法規에 따른 境界의 調査는 政治的인 問題가 아니라고 다시 再遍의으로 說明하고 있다. Rhode Island 対 Massachusetts 件. 12 pt 657 參照。

美國 大法院의 判決에 있어서 “政治的 問題에 関한 論과 國際法上의 問題에의 그의 適用에 関해서 特히 scharpt著 司法 責任의 限界. Karlsruhe 1965年 15 페지 以下와 Haller著 大法院과 U S A에 있어서의 政治. Bern 1972年 194 페지 以下 參照. 著者들은 美國에서 採用된 立場을 “説明”하고 試圖하고 있지만 独逸聯邦共和國이나 오스트리아 伊太利같은 나라의 憲法裁判權에 美國 大法院의 實務를 推舉를 両者中의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註 30) National City Bank 対 Banco National de Cuba 1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811

註 31) 聯邦共和國에의 Berlin의 所屬에 関하여.

註 32) 그래서 例를 들자면 Boden湖의 各個部分의 帳戶에 関한 問題가 解答된다면.

個個 地方의 聯邦領域에 의 帳屬에 関한 簡單한 法律의 肯定的인  
証言은, 自己便에서 勿論 憲法 第25條에 따라 上位의 一般 國際  
法에 一致하는가를 檢查해 볼 수는 있다. 어떤 簡單한 法律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家領域에 어떤 地方이 더 以上 屬하지 않는다  
는 証言을 獨逸聯邦共和國 領域 割讓에 関한 条約에 對한 同意의  
形態로 할 수 있으면 이 証言이 法官을 拘束하는 가는 論難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獨逸聯邦 領域의 割讓을 為해서 이 領域이  
憲法에 直接的으로 또는 間接的으로 쓰여져 있는限 憲法을 改正하  
는 法律을 要望하고 있다.<sup>33)</sup> 讓渡條約에 對한 必要한 手續으로  
成就된 同意法이 聯邦領域에 의 領域의 非帳屬 또는 더 以上 帳屬  
치 않는다는에 對한 証言을 含畜하고 있는限 裁判을 拘束하리라는  
것은 分明하다. 이것은 立法權者의 同意를 얻어서 成就된 条約으  
로 그 領域은 处理되고 处理될 수 있다는데 根拠하고 있다.  
法에 依한 領域의 一方의 動產所有權 抛棄도 裁判에 拘束力이다.  
다른 한便에서도 一定한 時点에 一定한 領域에 對한 主權의 “物  
權의” 讓渡가 獨逸聯邦共和國에서 他國家로 이루어지는 割讓條約에  
對한 憲法을 改正한 同意法은 獨逸聯邦領域에, 譲渡된 領域이 더  
以上 帳屬하지 않는데에 関한 条約法의 証言에 関한限에서는 直接  
的으로 裁判官을 拘束하고 있다. 이 領域이 一定한 時点부터 어  
떤 다른 國家에 帳屬한다라는 条約의 証言은 다른 國家가 이 問  
題의 領域을 第三国에 割讓했을 때는 分明을 裁判官을 拘束 못한  
다. 獨逸聯邦共和國이 大體로 全히 関与하지 않은 이 条約은

聯邦法誌에 当然하게 發表될 必要가 없으며 그러므로서 裁判官은 同意法에 依해서 承認된 約定에 包含된 이제 것 取得한 다른 國家에의 이 領域의 歸屬에 関한 証言에 拘束되지 않고 있다.<sup>34)</sup> 따라서 裁判官은 結局 聯邦領域의 割讓에 있어서 取得國家에의 割讓된 領域의 歸屬을 全히 同意法에서가 아니고 이 제까지의 領土權所持者와 他國家의 合併意思에 法効力으로서의 國際法上의 歸屬을 結付시키고 있는 一般國際法에서 直接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憲法은 國際法의 뜻에서 他國家의 領域範圍에 関한 어떤 証言을 안하고 있고 또 이러한 規定은 推測컨대 決코 現實的이 되지 못하기에 裁判官이 境遇에 따라서 이러한 憲法規定에 뛰어는가의 問題가 남아 있다. 聯邦領域의 割讓에 関한 國際法上의 約定에 對한 同意法에 聯邦領域에의 어떤 具體的인 地帶의 非歸屬에 関하여 裁判官을 拘束하는 証言以上의 것이 包含되어 있는限 그는 다른 聯邦法으로 그에게 必要한 他國의 國家領土의 範圍를 調査함에 있어서 國際法에 따라서 法律의 이에 関한 証言을 土台로 삼아야 된다는 뜻에서 簡單한 法律은 何如間 独逸裁判官을 拘束할 수 없다. 어떤 土地나 어떤 都市나 어떤 地帶가 法에 表示된 他國에 屬한다는 것부터 國際法의 어떤 独自의 調査가始作하지 않고선 裁判官이 國際法에 따라서 어떤 外國의 어떤 場所의 歸屬을 調査하는 境遇에 聯邦法은 어떠한 裁判官도 独逸聯邦共和國에 속박시킬 수 없다.

外國 国家領土의 存立에 関한 이려한 具体的인 証言으로 立法權者는 法適用範例의 一部를 따라서 典型的인 裁判官의 課業을 憲法第97條에 反해서 自力에게 잡아 당기고 있다. 35)

註 33) 最近 soell著 公法雜誌 95 (1970) 424 페지 以下 參照。

註 34) 여기에 나의 著書 國際法 469 페지, 468 페지 註 3의 마지막 줄 參照。

註 35) 個人法에 依한 各個件에 對해서 立法權者의 指示에서의 裁判의 独立에 関한 文獻의 이 계까지의 詳述이 (Bettermann著. 憲法 第三卷 2.535 페지 參照) 위의 原文에서 이야기 한 것을 생각했는가는 의심스럽다.

國家의 國際法上의 代理機關에 依해서 締結된 國際法上의 条約에 依해서 國際法에서는 全的으로 承認하는 具体的인 國際法上의 事實의 法律上 有効한 確認은 (國際法에 있어서 裁判의 未發展한 役割을 감안하면 現今에는 가끔 避치 못하고 있다.)

“司法國家”에서는 國法에 있는 同意法으로 直刻的으로 有効하게 難點이 있다고 나는 다른 뜻에서 <sup>36)</sup> 示唆한바 있다。國家領域의 國際法의 帰屬에 関한 確認에는 萬若에 自己國家에의 帰屬 또는 不帰屬에 関한 確認이 이려한 处理에 對한 仮裝된 处理이거나 同意라면 事情은 달라진다。어떤 國家가 어떤 处分權 行為로 그 領土의 帰屬에 全히 作用할 수 없는 領域에 다른 國家와 条約을 通해서

確認을 하는 境遇에는 司法国家에서는 領域帰属에 關한 条約規定에도 同意法은 抽象的인 國際法 規範의 具體的인 適用 結果를 裁判의 決定 先行해서 判決해서는 안되고 法의인 予備判決로서 모든 裁判에 義務라고 提示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認識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独逸聯邦共和國이 印度에 對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의 모든 機關은 独逸聯邦共和國에서 適用되는 法에 따라서 領域의 國際法上의 帰屬이 問題될 때는 언제나 全 Kaschmir 地方을 印度에 帰屬한다고 看做하지 않으면 안된다고<sup>37)</sup> 配慮하는데 義務를 지는 國際法上의 条約에 對한 同意法은 違憲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独逸裁判이 印度의 國家領域의 范圍에 關해서 國際法에 依拠해서 处理하는 判決할 때 이에 拘束되어야 한다고 하는限 違憲이다.

註 36) 나의 國際法 805 페지 參照。

註 37) 著者는 有効한 國際法에 依하여 누구에게 Kaschmir 가 屬하는가 또는 自決權의 確保해서 누구에게 帰屬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問題에 對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意図는 없다.  
따라서 더 넓은 例로서 独逸聯邦共和國과 파키스탄과의 仮想的 条約도 構成될 수 있다. 이 条約에서 条約当事者들은 Kaschmir 가 "特殊한 政治統一體"임을 確認할 수도 있고, 共產陣營쪽에서 그들끼리의 条約에서 자주 西伯林에 關해서

決定하는 確認도 할 수 있다.

## 2. 東部條約의 領域制限과 憲法 第 146 条 23 項 및 그 前文과 의 合議事項

大体로 “再統一告示 (Wiedervereinigungsbot)”로 表示되는  
裏面에는 聯邦共和国 機構에 原則上 憲法의 明白한 法制委任이 伸  
張되어 있다. 이 法制委任은 이려한 民族을 包容하는 統一된 國  
權이 成立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한 全独逸民族의 決議가 이  
問題에 對한 國民의 自由로운 決議에 適合한 处理 (國民投票 같은)  
方法으로 成就되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에 “独逸民族”的 憲法上 意味의 概念은 憲法 第 116 条에  
依하여 絶對的으로 明白히 定義되는데 그 概念은 憲法制定當時 有  
効하다고 仮定된 独逸法에 따라서 그 法은 1913年 그當時 아  
직 改正되지 않은 國籍法이었다. 그 独逸國籍을 가지거나 1937年  
12月31日 当時 独逸帝國領域内에서 “独逸民族所属權” (Volksz-  
ugehörige) 을 받은 사람들을 包含한다.

憲法에 依하여 옮겨쓴 이려한 人的範圍의 所屬人 (Angehörige)  
이 全独逸國權成立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憲法上 存立仮定된것  
과 같이 한 統一된 独逸民族의 所屬人으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  
이며 이것은 自決權自體의 本質로부터 일어난다.

憲法委任의 國際法合憲性理解는 또한 이 独逸民族의 어떤 自決이  
同一한 国權을 가진 한 国家内에 살지 않으며 聯邦共和国의 機構  
들에 依하여 考慮되지 않은 것은 除外된다. 그 憲法委任은  
無条件 “再統一”에 関한 것이 아니고 우선 “再統一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関한 独逸民族의 自決을 引導하는데 있다.

以上과 같이 理解되는 “全獨法制委任”의 實現은 正確히 말한다  
면 消滅되지 않으며 그例로선 때때로 同意論의 表明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聯邦共和国의 唯一合法政府權限, 独逸民主共和国 (DDR)  
의 國際法上 国家資格의 부정, 그리고 再統一에 関한 어떤 決意  
를 引導하고자 政治的 方法의 選舉를 통한 주정활동범위의 強調  
등에서 볼 수 있다.

(1) 憲法 (基本法) 立案者は 그에게서 要望되는 <独逸国民>이  
統一된 独逸国家体制를 이루는데 있어 그 国民이 그렇게 될  
可能性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絶對多数로 賛成한다는 決定을 내릴  
것으로 期待하였고 또 期待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그 立案者は  
비록 그런 展望은 極히 稀薄하다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平和條  
約에서 말하는 肯定的인 領土分割을 조건부로 하여 이러한 国  
家가 憲法 (基本法) 第 116 条에서 独逸人의 住居地域이라고 부르는  
모든 領域을 独逸人의 国家領域으로 处理하리라는 事実도 予期했기  
에 그는 憲法 (基本法) 에 依해서 形成된 国家組織体로 하여금,  
말하자면 憲法 (基本法) 의 効用範圍안에서의 그 国家組織体의 活

動을, 独逸帝国 領域 위에서 다시 機能發揮할 수 있는 全体  
独逸人 国家에 代身한 權限受託者로써 行使할 것도 아울러 暗示的  
으로 委任했던 것이다.

(2) 憲法 (基本法) 으로 해서 創設이 된 国家体制의 空間上의  
統治範囲는 憲法 (基本法) 에서 말하는 独逸聯邦共和國의 國土로  
制限이 되어 있다. 聯邦共和國 創設을 위한 守備權限上의 全体  
委任은 聯邦共和國 諸般機構들이 배틀린에서는 何等의 行政的 機能  
을 行使할 수 없다는 拘束力으로 理解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独逸이라고 하는 國際法上 単一領域의 残餘部分들에 대해서도 이와  
同一한 拘束力은 그들 나름의 特性을 갖는 西方占領國들의 立場에  
서 効力이 있었다. 西方占領國들은 独逸民主共和國과 東獨領土에  
관한 聯邦共和國의 權限을 西伯林에 관한 權限 그 以上으로의 広  
範圍한 權限을 分明코 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憲法 (基本法) 에 依하면 역시 憲法 (基本法) 의 統治範囲는  
다른 独逸의 領域와 그 領域의 住民들을 管掌하는 것인데 그  
領域이 憲法 (基本法) 第2章 第22條대로 編入이 될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까 聯邦共和國의 機構들은  
聯邦共和國 領域内에서와 그리고 그 限度안에서만 國際法에 따라  
個個의 <国家> 權限에 屬하는 領域의 宗主權을 行使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再論하자면 聯邦共和國 機構들은  
領域 宗主權의 義務를 聯邦共和國領土에 限하는 領域宗主權과 相關

시켜서만 創立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要는 그 機構들은 聯邦共和国 領域에 限하는 領域宗主權에 問題性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만은 領域宗主權을 讓渡할 수가 있고 또 让渡해도 무방한 것이다. 또 다른 一面으로 보면 聯邦共和国은 國際法上의, 그리고 国家法上의 不正을 保証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란 그 不正이라는 것이 聯邦共和国領域에서거나 外國에 駐在하는 聯邦共和国의 機構로 因하여 저질려졌을 때에만 限한다. 또 独逸聯邦共和国은 憲法(基本法) 116條의 意味에서 모든 独逸人에 對한 人的宗主權을 決코 行使해서는 안되고 할 수 있다면 오로지 住居地나 滞留로 因해서 聯邦共和国과 연시 地域의으로 因緣이 있는 独逸人이나 아니면 (独逸聯邦共和 外部에 滞留하고 있을 때라도) 自意로 聯邦共和国에 隸屬되어 있다고 告示했던 그런 独逸人에 限해서만은 人的宗主權을 行使하도록 되어 있다.<sup>38)</sup>

또 한便 義務的側面에서 볼때 人的宗主權의 制限은 聯邦共和国이 憲法(基本法) 116條의 意味에서 犯罪庇護 및 可能할 경우에는 外國에 있는 모든 独逸人們 利害關係의 保護를 講究한다는 事項을 排除하지는 않는다. 이 事項은 全獨逸規約命令으로 公示되어져 있다.

註 38) 西方占領國들도 이러한 入場을 代弁하고 있다는 事實은 경우에 따라서는 聯邦憲法裁判所가 外務部 消息을 引用해서 立証시킬 수 있다.

또 어느 法律에서 〈内國〉이라는 概念 그리고 〈内國的〉 또는 〈獨逸〉當局이라는 概念은 그것이 独邦共和国 外部 領域과의 因緣을 바탕으로 해서 強制命令 執行과 無關할 경우에는 獨逸聯邦領域 및 聯邦共和国機構 以上의 形便에 따라 意味를 包容한다. 이 事項은 全体 獨逸人の 利害關係를 위한 全体独逸人 保護命令의 結果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時時로 聯邦共和国 統治權限의 問題가 생겨왔다는 事實이 事態를 全혀 一變시키지는 못한다.

聯邦共和国의 空間的, 人的인 制限은 唯独 聯邦共和国의 機構들이, 全獨逸國權의 어느 한 機構에 依해서만 認定될 수 있는 그러한 課題로써, 特히 “獨逸全般”에 対한 國際法上의 条約締結을 認定치 못하도록 防止하는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国 諸般機構들이 獨逸全般에 対한 統治 및 代表權限을 所有하지 못한다는 것은 1950年 9月 19日字<sup>39)</sup> “解釈上の 時點” (interpretative minute)에 根拠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憲法 (基本法) 과 占領國의 立場에서 共히 생겨난, 그리고 如前히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어떤 事實만을 立証해 주는 것이다.

(3) 憲法 (基本法)이 聯邦共和国行政機構에 指示하고 있는 全獨逸受託者 (官裁人) 立場은 聯邦共和国만이 오로지 또다시 既能力을 行使할 수 있는 全獨逸 國家에 対한 唯一한 受託者일 수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万一 獨逸帝國 領土上에 또 다른 하나의

临时国家가同一한 制度의 受任者로써 創設되어서 合意할 만한 制度의 受任을 実現하려는 일을 그 双方間의 国家가 오로지 外勢로 因해서 奪방을 받았다면 联邦共和国은 이러한 다른 또 하나의 全独逸的 受託者를 中間者的 受託者로써 똑같은 값어치로 대우를 해야 좋을 것이다. 領土의 크기나 면적 国家가 樹立된 事実 自体만으로는 联邦共和国이라는 国家에 全独逸的 代理独占權이나 또는 独逸帝国에서 배출된 國際法의 单一国家로써 同一視되는 “合一性” 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sup>40)</sup>

註 39) : “interpretative minute”라는 말은 멘젤 (menzel) 教授가 独逸大衆을 위해서 発掘해 낸 말이다. 1971年 法律政策誌 (Zeitschrift für Rechtpolitik) 188 페이지 比較要。

註 40) : 合議判決 (Konkordateurteil)에서 联邦憲法裁判所는 独逸帝国이 国家로써 그리고 國際法上 主權國으로 永統하는 것이며 (戰爭으로 因해 消滅이 되어있지 않은 限에서라면) 이 国家의 國際法上 다른 國際法主權국과의 条約은 계속 效用이 있다고 하는 事実에서 出發하는 말이다. 그래서 同憲法裁判所는 联邦共和国의 諸般條約들이 實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署名을 받은 相對人은 비록 合議事項이 한 國際法上으로 規定되는 条約이 아니라는 事実과 그 合議事項의 終結에 對置해서 国家間의 國際法上 条約과는 個別의

規定이 有効하다는 事實에 意見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上記結果에도 同意를 表明했다. 그러나 이 結果는 独逸帝国과聯邦共和国이 同一視된다는 데서 나와서도 안되며 또 나을 수도 없다. 独逸帝国의 現実的인 國際法上의 條約은 國際法上의 単位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共同統治 或은 委任統治領과 類似한 単位였을 때에도 1945年 5月 8日 以後 그 領域에 存続하는 國際法上 単位를 拘束할 수 있었다. 그리고 戰爭以前의 諸般條約들이 1945年 5月 8日 以後에도 계속 効力이 있는限에 있어 그 條約들은 또한 聯邦共和国 創設以前에 누군가에 依해서 独逸内에서 實現되어야 했다. 野党은 친히 東部條約에 대한 論駁에서 더 以上 견딜 수 없는 “處身과 概念”이라는 말로 합정을 걸었다. 이러한 处身을 바탕으로 해서 憲法과 東部條約이合一하고 있음을 指摘하려고 하는 試圖는 더욱 條理가 안서는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Schmidt-jortzig가 (1971年 “國家論” 318 페이지에서) “同時案 (Identitätskonzept)에 依하면 오더-나이세 領域만이 聯邦共和国의 宗主權에 帳屬되는 것”이고 聯邦共和国은 다른 諸般國家와 相對했을 때 聯邦共和国이 宣布한 同時論과 紐帶關係가 있으며 또 同時論의 問題는 適用이 안되는 것이므로 (聯邦共和国만이 唯独 独逸帝国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탓으로) 独逸民主共和国에 障碍가 없는 分離는 受容되어 마땅하다고 畏력하고 있을 때라도 그렇다. 이 著者에게 있어

서는 바르샤와條約 第一条가 唯獨 権利의 効力を 가로막는  
폴랜드 合併에 対한 独逸聯邦共和國의 “権利抗議”課題로  
因한 終局的인 处理案件임을 示唆하고 있다.  
이에 対한 註解参照.

事實上 独逸民主共和國은 自由選舉로 이루어진 集團体制를 지니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이 全独逸国民에 依한 自由로운 自決權의 处理  
過程에서 생겨난 全独逸人 國權의 再建集團이 아닌故로 지금까지  
그리고 現在에 이르러 独逸聯邦共和國 政府도 西方占領國이 늘 되  
풀이해서 表現해 온 바와 같이 國際的인 生活을 하는 “独逸民族”  
에 対해서 말 할 수 있는 独逸이라는 地域의인 單位안에서의 独  
逸人으로 構成된 똑같은 政府인 것이다. 그러나 聯邦領域上에서의  
独逸聯邦共和國 領域宗主權의 法的인 制限撤廢與 國際法의 代表權의  
制限撤廢는 上記事項과는 相關이 없다.

(4) 聯邦共和國은 全独逸人國家에 대한 國權의 受託者라고 함으로  
써 自由로운 自決權으로 因해서 비로소 設立될 수 있는 全独逸人  
의 國權이 必然的으로 留保되어져 있는, 또 権利가 侵害됨으로써  
이러한 國權의 形成이 離방이 될지도 모르는 如何한 権利도 감히  
주제넘게 自己것이라고 主張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憲法의 法制  
受任이 効력을 發生하고 있는限 그當時 戰爭을 遂行하던 全独  
逸帝國이 代理하면 独逸의 國境 및 國權의 戰爭結果의 終局의인

規定은, (설령 國際法에 依해서 하나의 “平和”條約이 여러個의 独逸後統國家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서 可能視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더라도) 留保되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独逸條約” 第 7 条의 内容은 全體 独逸人의 法制委任으로 因해서 公示되어진 것 이지 하나의 오직 條約上 紐帶關係로 公示되어진 것은 아니다.

(5) 全獨逸人 法制委任을 根拠로 해서 全獨逸人 國權形成에 对한 独逸國民의 意思決定이 내려지거나 全獨逸人國權에 依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機能이 아무 目的없이 行使될 때는 그 自体가 聯邦共和의 制限된 領域 및 人的 宗主權의 테두리 안에 内在하는 權限使用은 亦是 許容이 되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實施함으로써 그 票決이 오히려 둘 아니면 그 以上의 独逸國家를 要求하거나 않을까 하는 問題提起로 하여 憲法이 障害를 招來한다면 블라도 (資本主義國家이든 共產主義든 간에) 그렇지 않을 境遇에 그러한 國民의 意思決定없이 独逸을 終局的으로 여러갈래의 国家로 分割하도록 한다는 것은 聯邦共和國 諸般機構가 許容못하는 것이다. 万一 独逸國民 多數決에 依해서 認可된单一國家가 그의 機構를 通해서单一國家를 願하지 않는 그려 部類의 人士들로 構成된 新生國分離에 同意하도록 權限이 賦与되어질 境遇 이러한 結果를 없앨 수 있는 憲法의 法制受任은 聯邦共和國機構에는 許容되지 않는다. 全獨逸人 法制委任은 그러나 이 法制委任을 実現시킬 수 있다고 할 때 그 持統性이 必須不可決한 權限에의 抛棄를

禁한다. 그러므로 全独逸人 法制委任으로부터는 좀더 持続的인 國際法上 単位를 위한 聯邦共和國의 立場이 必要하다는 結論이 나을 수 있다. 憲法(基本法)은 聯邦共和國의 機構들이 自己의 國權을 結局에는 独逸이라는 國際法的 単位에 算入시켜야 할 國權으로 行使해야 할 것이라는 事實에서 出發한다. 独逸民主共和도 自身은 좀더 永統的이라고 看做된 独逸國家를 “위한” 國權을 行使할 意圖가 있었다고 가끔 云云해 왔다. 이 말은 現在 独逸民主共和國에는 適中이 안된다. 위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勿論 概念上으로 “独逸帝國”이라는 概念과 密接한 關係를 짓고 있는 “独逸國民”의 自由로운 自決權을 誘導하는데 있어 具體的인 發展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独逸聯邦共和國은 全独逸人 法制委任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아직도 存續하고 있는 全独逸人 程式的 要素를 뿐만 더 덜 짊어지게 될 터지 모른다.

(6) 全独逸人 法制委任은 聯邦共和國 機構로 하여금 独逸의 다른 地域에서, 예를 들면 伯林이나 東部領域 같은 곳에서 独逸 以外의 国家의 國權이 効果的으로 行使된다는 事實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못한다. 法制委任은 또 聯邦共和國外部의 다른 國權의 存在에 对해서 알고자 하는 権利를 離방하지 못하며 独逸聯邦共和國 外部에 있는 이러한 国家權力과 接触하는 것과 그 國家權力を 相對로 해서 國際法이 効力を 必要로 할 수 있는 限에 있어서 그 國際法을 尊重하거나 하는 権利를 가로막지 못한다.

実際로 独逸民主共和国은 國際法의 意味에 있어서 하나의 国家의 特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例를 들면 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과 比例해서 權力行使禁止와 領域宗主權을 尊重해야 한다. 現在의 國際法은 한개의 国家의 憲法을 考慮에 두지 않고도 如前히 国家의 特質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国家特性의 典型的인 前提条件만이 実現되어 있을 경우, 要컨대 国民의 多數가 그러한 国家의 実在를 願하느냐 안하느냐를 考慮하지 않고도 이를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sup>41)</sup>

註 41 : 居住民의 自決權을 無視하고 생겨난 그리고 機能을 갖춘 国家도 國際法의 意味에 있어서 国家이다. 抽著 : 國際法 569 페이지 參照

또 한便 全独逸的 法制委任은 独逸聯邦共和国의 “外部的”關係에 있어서 다른 나라 政治權力이 独逸民族의 自由로운 自決權을 促進하느냐 안하느냐에 对해서도 留意하도록 公示하고 있다. 憲法委任은 統一이냐 아니냐하는데 对한 独逸国民의 自由로운 決議 그 自体를 複방하려고 하는 聯邦共和国 内外의 그같은 勢力들에 对해서 그런 複방을 図謀할 能力を 強化시 키는 文件들은 禁止한다. 이点에 있어서 国家의 指導層이 独逸 땅을 基盤으로 하여 自決을 願하는 独逸人을 統治의 対象으로 삼는 国家냐, 아니면 하나의 또 다른 攻擊戰을 独逸을 通해서 防止하려고하는 問題를 提起하는 国家

나, 或은 그밖의 国家나 하는데 따라서 差異點을 그을 수 있다.

이 後者의 国家들이 独逸民主共和国을 形式的으로 承認하고 이와 外交的 関係를 維持하려고 했다면 할슈타인독트린 (Hallsteindoktrin) 은 当然히 이러한 国家들을 相對로 外交的 関係를 排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聯邦共和国의 機構들은 이미 行使된 壓力を 받아 国家라고 하는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法上 実存의 단순한 確認이나 또는 独逸民主共和国과 다른 国家間의 經濟交流가 隘방乃至 障害를 받았다고 하는限에서는 國際法上 許容範圍를 넘어서서 行動해 왔다.

그 反對로 聯邦共和国의 政治機構들이 独逸帝国땅을 基盤으로 하여 成立된 国家類型으로써 (설령 그것이 國際法의 意味에 있어서의 国家性質을 지니는 国家라고 하더라도<sup>42)</sup>) 自決權<sup>43)</sup> 을 殊損시켰다는 贻責을 받음이 없이 그같은 하나의 国家集團으로 해서 國際機構에 加入하기를 促進한다면<sup>44)</sup> 그것은 憲法에 違背되는 것이다. 國際機構에 있어서 自決權의 尊重은 비록 그것 역시 단지 書面上에 不過하더라도 會員國이 되는前提條件에 屬한다.<sup>45)</sup>

註 42 : 國際法에 依한 国家類型이 하나의 国家나 하는 問題도 또한 聯邦共和国 法廷 앞에서는 國際法上의 先決問題로 浮上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法廷에 依해서 決定이 내려져

야 할 問題임에 틀림이 없다. 法應用指示가 國際法의 應用에 該當된다면 法廷에다 肯定도 否定도 指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国家類型은 어느 外國과의 領域帰屬에 関한 國際法上 問題를 判決하는데에도 通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理由로 해서。大使職을 歷任한 바 있는 Meyer-Lindenberg 教授는 그當時 이 意見書의 作成者를 非難한 바 있었는데 이 作成者は 憲法에 依하면 全혀 根拠가 없는, 兩者를 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이 라고 並行해서 呼稱함으로써 合法的으로 対等視했다는 것이다。이 意見書 作成者は Leibholz 記念論文集 941 페이지, 노트 11에서 이러한 非難에 맞서 自身의 意見을 反駁한 바 있었다. 그는 自己를 批評한 그 批評家의 意見을 “두独逸國家”에 対한 現在 聯邦政府의 意見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事実만을 確立시키고 있다。

註 43 : 비록 여러가지 面에서 細部의으로 좀더 広範囲한 規定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完全性을 期할 수 있겠지만 自決權이란 國際法과 国家의 境界性을 形成하는데 있어서는 그 自体로써 認定된 人定法의 原則인 것이다。拙著 “國際法” 982페이지 參照。

聯邦共和國政府는 (自決權이란 有効한 國際法의 部分이라고 論議되었던) Saar紛爭 (Mosel江의 支流)에 関한 聯邦憲法裁判所앞에서의 陳述과 그 後의 陳述 (例를 들면

1961年 11月 29日字 政府声明)에서 当然히 矛盾을 들  
어내고 있다. Meyrowitz, 112 p., 註釈 67 參照。

註 44 : 諸般 東部條約 自体는 이에 관한 하나의 規定을 内包하고  
있지 않다. Bahr - 어쨌든 그의 最終的 項目들은 條約  
“解釈”을 위해 引用될 수 없다고 聯邦議會 司法委員會  
앞에서 聯邦政府가 解明한 書面으로 해서 法的 或은 道義  
的으로 紐帶關係가 있는一方의 承諾이 내려졌는지 어찌  
됐는지는 未決일 수 밖에 없다。即 聯邦政府는 合議  
法案에 대한 陳述에서 이法案에 대한 独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은 重要한 것이 아니라 聯邦共和國과의 独逸  
民主共和國間의 諸般條件들은 “國際法的으로 紐帶”가 있을  
수 있으며 “두 独逸國家”的 同時加入은 “兩國間의 相互  
關係를 規定짓는 條約上의 規定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解明했다。

그리데 “國際法的 承認”이라는 用語는 完全히 誤導되고  
있다。 認定된 國家類型의 國際法的 國家性質을 一方의으로  
確認한다는 意味에 있어서의 “承認”이라는 말은 包括의 承認이라는 말로도 帰結될 수가 있고 独逸民主共和國과 関  
聯지를 때는 늦어도 聯邦政府가 政府声明에서 独逸民主共和  
國을 하나의 “國家”라는 말로 表現하고 있다는 事實으로  
帰結 되어져 있는것이다。 外交의 関係를 一般國際法의  
形式속에 受容할 때는 종종 “外交의 承認”이라는 名称

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不當한 言語使用인 것이다.

“國際法的 承認”이라고 하는 表現에 代身할 用語는 決코

하나도 없다. UN憲章이 이를 予示하고 있는 바와 같이

聯邦共和国은 自身과 独逸民主共和国이 UN機構의 會員國이

됨과 同時に 會員國相互間의 國際法的 義務는 効力を 發

揮할 것이라고 主張할 수는 없을 것이다. 联邦共和国에

依한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法的 承認”이 없는 까닭에

兩独逸國家間의 國際法의 義務는 効力を 發揮하지 못하

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또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法的

承認은 条約의 署名과는 아문련 連関性이 없기 때문에

1971年 2月 11日付 条約 以前에도 联邦政府는 海岸에

核武器 設置를 禁止하라는 処事에 대해서 이러한 条約의

“태두리” 안에서는 联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과의 “國際

法의 関係가 없다는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었다.

獨逸民主共和国과 UN憲章과의 國際法의 関係에 関한 適切

한 조건은 展望視되지 못했다. 万一 그려 展望이 생긴다

면 UN機構 自体의 機能力이 問題視될 것이기 때문에 아

마 従來의 모든 會員國들은 그러한 조건에 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獨逸民主共和国이 國民의 絶對多數에 依한 自決意思에 順應

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의 조건(留保) 없이 내려진 独逸民

主共和国이라는 国家의 性質의 承認, 그리고 UN機構의

會員國이 되려는 能力承認에 對処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國際法的인 文獻에 明白히 表現되고 있다.

Meyrowitz, 同掲書, 722 페이지 參照。

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에 對한 適切한 措置를 要求하  
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名目上 促進되었던 自決權毀損때문  
에 非独逸의 國土에 對한 U N 機構의 措置에 加担하게 된  
다면 끊임없는 矛盾 撞着속에 휘말려들어 갈 것이다.

왜나하면 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에 依한 自決權의 毀  
損을 默認해 왔기 때문인 것이다.

註 45 : 四大占領國責任 및 “独逸国民”이라는 事實을 暗示하므로  
해서 國際法이라는 意味에서의 國家間의 正常의인 關係와  
獨逸聯邦共和国 및 独逸民主共和国間의 關係에서 생기는 偏  
差를 풀어 보려는 聯邦共和国의 試圖들은 独逸民主共和国이  
自決權을 尊重하느냐 하는 決定의인 要點을 無視하는 것인  
다.

聯邦憲法裁判所 法律 第11条 第160項과 第12条 第109項에서  
聯邦憲法裁判所는 聯邦 및 州政府 機構들이 어떠한 方式으로든지 自  
身의 決議書로 해서 独逸民主共和國內의 “權力体制”를 支持乃至  
援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말해 왔다. 이래한 權力体制에서 생기  
는 法律은 그것이 “独逸의 統一”이 아니라 独逸의 分割에 目  
標를 두는限에서 独逸聯邦共和国의 合憲的 秩序와 一致할 수 없

다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가 決定的으로 強調하고 있는 것은 独逸民主共和国안에서 實際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権利는 独逸民主共和国에서 살고 있는 独逸人們의 意思에서가 아니라 独逸統一社会黨의 意思에서 나왔다는 事實이다. 聯邦政府도 그 事實에는 오늘날 까지 아무런 變化가 없었음을 主張해 왔다.

(8) (2)와 (7)에서 論議된 事項에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事實은 全独逸的 法制委任을 遂行하는데 있어 政治的인 機構들은 絶對的인 自由裁量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広範囲한 裁量이 存続한다는 事實, 이러한 裁量은 그러나 어디서든지 極端의인 限界를 지닌다는 事實을 이미 聯邦裁判所는 그 前에 数次 發表한 적이 있었다.<sup>46)</sup> 위에서 開陳한 法制委任事項 固有의 이러한 裁量의 限界-(특히 단호한 委任毀損의 禁止)에 대해 지금까지 좀더 詳細한 討論이 없었던 事實은 現 与党이 認定한 앞서의 “東部政策”을 놓고 詳細한 討論을 할만한 時急한 動機가 없었던 点, 그리고 (또 모든 党員을 代理하는) 그 同時論 (Identitätstheorie)이 바로 聯邦共和国의 機能을 全独逸人 國家를 代理하는 暫定的制度의, 그리고 委任受託者의 機能이라는 말로 抹消시켰다는 点과 関係가 있는 것이다.

註 46 : 「新法律週刊誌」 (NJW.) 1971年, 拙著 “詳論” 459 페이지

参照

全独逸人의 法制委任을 遂行함에 있어서 政治機構의 裁量에 正當

한 限界가 그어 죄야 한다는 말은 結局 이러한 機構에 対한 政治的 統制가 오로지 独逸의 一部 国民에 依해서만 行使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実에서 分明해 진다. 이러한 一部国民에서 나온 選舉人들의 所望을 위해서 政治的인 機構들은 全独逸人의 法制委任을 調整하려는 誘惑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法制委任遂行을 統制함에 있어 聯邦裁判所가 할 일은 그 統制가 敗放을 안주는範圈内에서 可能하다면 一部国民이 聯邦共和国 社會福祉에 追從하는 일 보다 더욱더 热狂적으로 憲法 前文에서 말하는 “觀告”에 追從할 그러한 独逸人們의 關心을 有力視하는 것이다.

全独逸人 拘束委任을 貫徹함에 있어서 聯邦共和国의 여러 政治機構들이 限界가 없는 裁量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과 또 特히 그 機構들이 長期的인 眼目으로 보면 어찌됐든 再統一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主張으로서 오로지 再統一에 敵對視되는 勢力들과 아무 条件없이 協定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런 事実들은 憲法에 違背되는 党活動을 遏止시키려는 法制委任과 比較해 봄으로써 들어나는 것이다. 聯邦共和国内에서 憲法에 違背되는 党에 対해 어떠한 措置를 取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비록 聯邦憲法裁判所만이 그러한 党의 違憲性을 確認할 수 있다 하더라도 憲法 第21条에 依해서 聯邦法立案者 或은 聯邦法에 依해 權利委任을 받은 機関이 自己裁量으로 決定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憲法에 敵對되는 党에 対한 措置를 講究하는 政治機構의 裁量에는 限界가 있다.

即 聯邦法을 媒介로 해서 憲法에 違背되는 党에게도 均一하게 財政的인 要求가 憲法에 違背되지 않는 党과 마찬가지로 配分되어야 한다고 指令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確實히 違憲의인 것이다。聯邦憲法裁判所가 公訴를 履行치 않기 때문에 憲法에 違背되는黨이 選舉人들을 選舉에 參与시키고 또 이 選舉人들은 그 党이 憲法에 違背되는 党인 줄을 全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事実을 選舉人們로 하여금 가리켜 주었다는 事実로 해서 明白히 憲法에 違背되는 어느 한 政黨의 解體를 招來케 하는 것이 또한 聯邦政府의 裁量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処事는 이미 違憲이라고 밝혀진 한 政黨에 대해 許用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sup>47)</sup> 이와 相應하는 것 이 全獨逸人の 法制委任을 根拠로 해서 自由로운 意思決定에 敵對視된다고 여겨진 그러한 國家에 대해서도 聯邦共和国의 政策과 關聯하여 通用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8)</sup>

註 47 : 違憲의라고 밝혀진 党이 自己의 目的設定을 合憲의인 目的設定을 바꾸었을 때의 党의 復權 뿐만 아니라 (어떤 点에서 旧党이 新党과一致될 수 있는가?) 政府가 之後에 党行為 禁止에 对한 合目的性의 意思를 変更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解體된 党의 復權의 可能性은 있을 수 없다。  
(Bernstein, Zweigert 共著, “解體된 政黨의 復權” 1972年)

註 48 : 여기에서 이러한 國家의 自由로운 自決意思剝奪은 未來나 現在나 同一할 것이라는 確實에서 出發해야 한다。

여기서도 다른 領域에 関해 受託權을 承認한다는 생각과 比較해 보면 더 쉽게 理解될 것이다.

上記 陳述과 関聯된 第1章 (1973年5月22日付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 原文 9페이지) 의 詳論에서 나타난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모스크바條約 마지막 項目 第3條에서도 그렇거니와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과 関聯해서도 独逸聯邦共和国이 憲法에서 予示한 “再統一”与否에 対한 独逸国民의 意思決定을 제쳐놓고 그 代身 그 領域이 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의 廢止와 아울러 国境의 廢止를 必要케 하는 어느 한 나라를 위해 全独逸의 国權의 形成이 全独逸人の 自由로운 自決도 支配받는 国民의 自決도 願치 않는 그리고 條約上 統一의 内容을 自由로운 自決의 表明으로 伝達하지 않겠다는 從來의 主張을 明確히 再認識시키는 그러한 国家들과 聯邦共和国이라는 나라를 (契約上) 統一시키자고 要求하도록 속박을 받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全独逸人の 法制委任의 毁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9)</sup>

註 49 :憲法 146條에 依해서 万一 憲法이 無効가 될 境遇에는 憲法에 対한 決定与否는 憲法이 갖는 意味에 있어 国家 設立問題를 独逸国民 自由決議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自由決議로 해서 結局 独逸이라는 땅덩어리 위에 여러個의

国家가 새로 亂立할 境遇에도 憲法은 그 自由決議의 尊重을 排除하지는 않는다. 1968年 独逸民主共和国 憲法에 依하면 이런 저런 意味에 있어서도 決定의 餘地는 없고 独逸民主共和国은 거기에 関与된 独逸人의 意思는 묻지도 않으면서 憲法에 对한 承認 및 言及에는 独逸 両국의 統合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니까 独逸問題 解決을 위해 合議한만한 合憲的인 決定事項에 对해서는 무어라고 云謂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68年 9月 12日字 蒙古人民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과의 條約에서 조차도 未来의 統一된 独逸国家는 오직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國際法上) 合議된 事項의 結果로써만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 独逸民主共和国이 自己네 国民에게도 自由로운 自決權을 禁止시키고 있다는 事實에 对해서는 聯邦憲法 第11條 第160項과 第12條 109項参照. 蘇聯과 独逸民主共和国은 自己네 势力 範圍圈 밖에 살고 있는 独逸人們에게도 第23條, 第146條의 憲法이前提하고 있는 바의 意味에 있어서 自由로운 自決權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底意를 独逸民主共和国이 蘇聯 및 第三国들과 맺은 條約에서 採択한 約款에서 도 보여주는 바이다. 이 約款에 依하면 西部伯林은 “自主的인” 或은 “特殊한 政治單位”로 看做한다는 것이다.

(1964年 6月 2日付 独逸民主共和国과 蘇聯邦條約 第6條 및 1972年 5月 12日字 独逸民主共和国과 루마니아條約

第9条 参照). 이 같은 事實은 어쩌면 4大 占領국의 責任 및 이들의 存続權限에 根拠를 둔 것이 아닐 것이다.

伯林이 自由市로 要求되었던 노트에는 分明히 그 当時 西部伯林의 自決權이 注目할만한 것이라고 声明이 되어 있었다.

四大占領國責任權限을 根拠로 해서 現在 自己自身의 共同權限에参与하고 있는 蘇聯, 그리고 그의 圧力으로 해서 除去하지 못한 그의 方式의 條約上 紐帶를 蘇聯을 相對로 해서 받아 드릴 때 独逸聯邦共和國 政治機構의 不適切한 自己抑制는 法制委任을 實現시키는 길을 選擇하기 위한 自己裁量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方式의 紐帶로 해서 생기는 全獨逸人의 法制委任實現의 難點은 다른 觀點에서 委任目的을 達成하는데 進展이 있었다고 表明해 보았자 그것으로써 그의 難點이 相殺되지는 않는다.

(2) 어느 時点부터는 東部領域이란, 플랜드의 國家領域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独逸이라는 國際法의 單位의 領域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問題에 대한 條約上의 態度表明은 全獨逸國權의 留保條件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샤와條約에서 独逸聯邦共和國側 態度表明 指示는 한便 그러한 態度表明을 만듬으로써 将來의 全體 独逸國權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全獨逸人國權을 形成하는데 對해 表明한 確証과 独逸聯邦共和國과의 紐帶關係가 貧弱하다는 条件은 再統一阻止에 對한 플랜드人의 関心을 낳게 하는 것이다. 어떤 不法的인 手段을 使用해서 試圖된 聯邦共和國을 相對로 하여 지금까지 플랜드가 管理해온 領域의

変更에 대해 安全을 期하려는 뜻밖의 慾求는 다른 方途로 充足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3) 모스크바條約이 國際法의 意味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의 (論難의 餘地가 있을 수 없는) 國家性質을 包括的으로 確認한다는 内容을 内包시키고 있다는 것과 또 그 条約締結에 隨伴하는 聯邦共和国政 府의 陳述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이란 自由로운 決議의 形式에서 생겨 난 国民意思에 順應하지 않는 나라라는 아무런 暗示도 없이 独逸民主共和国의 U N 機構加入을 保証한다는 것은 全独逸人の 法制委任을 毀損하는 것이다.

### 3. 憲法(基本法)의 法制委任 全般事項과 東部條約들과의 合議点

諸般東部條約을 合憲的으로 批評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全独逸의 法制委任만이 主要한 것은 아니다. 基本法(憲法)에 依하면 政治 機構들은 内外政策에서 特히 憲法의 規定, 또 或時는 基本法(憲法)의 다른 諸般項目에서 引用되는 原則 및 限界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sup>50)</sup> 國際法上 条約을 締結함에 있어 聯邦機 構들의 活動에 對하여는 肯定이 가는대로 平和政策(憲法 26条)義務, 國際聯合內에서 主權을 課題로 한 共同作業參與義務(憲法 24条) 欧羅巴統合을 위한 共同協力義務(憲法前文)와 같은 特殊한 對外政 策 法制委任이 通用된다. 그러나 또 同時に 独逸의 聯邦機構들은 國際法上 条約을 締結할 때에도 基本權 및 人權의 承認과 促進을 위한 法制受任을 遵守해야 한다. 条約에 関与함에 있어서 留意해

야 할 이 같은 受任事項들의 多樣性은 바로 条約을 締結할 때  
條約 하나하나에서 그 모든 目的을 同時に 眼目에 새겨 두도록, 그  
리고 条約과 条約間의 適合한 関係를 만들도록 強要하는 것이다.  
立法者가 여러 가지 相異한 法制委任으로부터 現行法에서는 이런  
한 가지를, 나중에 생기는 法에서는 저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個個의 國際法에 있어서 重要視되는 것은 外國과의 広範囲한  
條約締結이란 唯獨 独逸聯邦共和国 任意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全体의 法制問題를 計算에 넣도록 試圖해 보는 일이다. 그러므로  
國際의 共同作業을 위해서 어느 条約에서는 人權이 抛棄되거나  
全의으로 度外視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어 51) 또 한便 다른 어떤  
平和條約에서는 人權을 保障함에서 위배로운 일이 發生하도록 放置해  
서도 안되는 것이다. 특히 条約 하나하나에 있어 모든 法制委任의  
同時의 考慮는 다른 나라가 훨씬 나중에 있을 諸般條約에서 留意  
하지 못한 法制定問題를 또 現実化시키려는 試圖에 아마 심중팔구는  
異議를 提起하리라고 예상될 때 생기는 일이다.

註 50 : 다른 民主主義国家에서도 “政府의 對外政策”이란 亦是 法  
制定의 一般原則과 緊密한 紐帶가 있어야 한다”는 事實을  
承認하고 있다. (Ersterlaur著「法律誌」1976年36號이지).

註 51 : Menzel 教授가 法律新聞 (1972年 504号)에서 말한 것처럼  
對外權의 모든 範囲안에서 ..... 國民의 權利事項이 外國을  
相對로 해서 奏効할 때 그런 權利를 國家의 处分에 맡긴다  
면 그것은 더욱 더 効用性이 있다.

이러한 観點에서 볼 때 諸般 東部條約들은 東部領域에 居住하면서 다른 方式으로 그 東部領域並 関係를 맺고 있는 独逸人들을 度外視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特히 東部領域에 滞留하고 있는, 그리고 1913 年의 国籍法에 따라 “独逸國籍”을 所有하고 있는 사람들의 国籍問題에 該當된다. 바르샤와 条約이 締結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独逸國籍을 喪失하지 않는다는 事実은 받아드릴 수 있는 問題이다. 풀랜드의 国籍을 賦与함으로써 (풀랜드가 自己의 国籍賦与를 必然的인 것이며 可能한 事実로 看做될 때) 前보다 훨씬 容易하게 独逸國籍을 이들이 喪失케 된다는 事実은 独逸憲法에서 合議된 駕項이다. 이에 反해서 聯邦共和国이 풀랜드領域宗主權을 承認함으로써 풀랜드가 그곳에 定着하고 있는 独逸人們에게 이를 意思에 反하여 当事者들에게 國籍選択權을 周旋해 주지도 않고서 풀랜드國籍을 賦与해도 좋다고 은연중에 認定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로써 聯邦共和國은 聯邦共和国에 隸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聯邦共和国 國權이 地域的, 人的으로 制限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外交的 保護權行使가 許容되어 있는 그러한 独逸人們에게 그러한 保護權을 行使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異論의 餘地가 없는 國際法上 二重国籍 所持者에게는  
当然히 段本籍地에 대한 保護權은 完結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第三国에 대해서 上記人物들은 國際法上 二  
重国籍者로 通用되는 것이다. 그런데 唯獨 フレン드國  
籍만은 第三国에 依해서 實効性 있는 国籍으로 看做됨으  
로써 수월하게 独逸国籍은 否定되는 危險을 안고 있다.  
이것은 効用面에서 独逸国籍喪失이나 다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当事者が 東部領域과 地理上의 因縁이 있음을  
根拠로 해서 フレン드가 国籍이 賦与하는 権限을 默示的  
으로 承認한다는 것은 憲法 第16条에 違法이 되는 것  
이다. 同時に 그려 한 默示的 承認은 全独逸人 法制委  
任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하나의 全独逸人 国家権力에  
留保시켜야 했던 一段階 措置의 先取点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基本権에 있어서도 事實上 “參戰에 委  
任하는 基本権”이란 存在하지 않겠지만<sup>52)</sup> 아마도 參戰  
으로 因해 생긴 負担을 正當하게 調整하는 基本権은

存在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sup>53)</sup> 上記本文 13에서 指摘했듯이

東部條約의 領域界限는 비록相當한 國內的 遷及力を 지니고 있을  
런지는 몰라도 合議法 發起人은 暫定的인 그 調整問題를 해당초부  
터 생각해 볼 意圖가 없었음을, 合議法案<sup>54)</sup>에는 “何等의 犀牲  
이 있을 수 없다”는 式의 간단한 謬見으로 認識시켜 왔다.

註 52 : Menzel, 同掲書

註 53 : 나치追放者들이, 例를 들면 自己네 憲法때문에 東部領域에서  
送還請求權限 밖에 있을 때 그들의 数가 많든 적든간에  
參戰者에 대해 共同責任을 지는 그러한 성가신 人物들과는  
달리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도 參戰責任者들을 正當하게  
調整해 주는 일에 屬한다.

註 54 : 聯邦議會誌 IV 卷 3157 參照。

聯邦政府는 또 条約立案者에게 이者が 東部領域에 있는 独逸人의  
沒收된 財產問題라든지 아니면 또 그 값어치의 確認만이라도 条約  
規定의 対象으로 삼아보려는 試圖를企劃해 본 적이 있었느냐 하  
는 問題를 提起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義務不履行으로 因한 非憲  
法的 財產沒收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것이다.

個人과 国民의 自決權은 完全히 無視하고 라도 모스크바條約에서 어느 누구든지 国境을 侵害만 하지 않을 때<sup>55)</sup>에는 欧羅巴의 平和가 유지된다고 하는 自主性의一方의인 強調는 亦是 人權이라는 것도 現實화될 때에 限해서만은 世界와 欧羅巴에서 実質의인 平和가 保障이 되어져 있다는 事實과는 対立된 立場에 处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註 56 : 어느 한 条約에서 일컬어지는 特定한 目的들과의 紐帶도 法의인 意味를 지닐 수 있다고 함은 疑心할 나위가 없다. 特定한 政治의 目的에 關해서, 이目的은 또 다른 더욱 抽象의인 内容을 담은 目的實現을 위해서 “必要不可欠하다”는 事實을 또 다시 条約上으로 規定한다는 것은 諸般條約의, 특히 蘇聯邦國들의 技術問題에 속한다.

그리하여 “平和保存”에 있어서는 地域의인 現狀 (status quo)의 保存만이 必要不可欠한 것이 아니라 다른 諸般條約에 依해서도 유럽이 現在 处해있는 狀況 및 “유럽에서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한, 権利가 같은 正常關係들의 樹立이 要求되어 마땅한 것이다. 1967年 9月7日付 独逸民主共和国과 불가리아間의 條約前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 III. 結 論

憲法裁判所가 自己 앞에 提示된 個個의 憲法訴願에 関해 어찌한  
結論을 내릴 것인가에 对해서 本人은 이의한 모든 憲法訴願의 内  
容을 近來에 와서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表明할 수가  
없다. 合議法들이 憲法의 毀損은 고사하고, 或은 合議法 그 하나  
하나가, 또 이 하나하나의 合議法과 더불어, 國內的으로 重要視된다  
고 声明이 된 諸般條約들의 決定들이 憲法에 合當한 것이 아니라  
고 憲法裁判所가 確定짓는限에 있어서 (특히 이것은 憲法裁判所의  
義務와 関聯하여 블랜드領域의 國際法帰屬問題를 判決함에서와 꼭  
같은 경우이지만) 그 限度内에서는 合議法이란 無効라고 解明할  
수 밖에 없다.

이와 同時에 法制委任은 命令的인, 그리고 禁하는 性格을 지닌다.  
法制委任은 禁止하는局面에서立法者の 実質的인 権限의 制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法은 “決定的인 委任毀損”이라고 했을 때  
에도 혹시 無効라고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法制委任의 毀損은 補償義務를 그 結果로 가져올 수  
가 있다.

聯邦憲法裁判所가 合議法의 無効 或은 部分的인 無効라고 하는데  
对한 陳述만으로 滿足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東部條約들이 國際法의 面에서 批准됨으로 해서 効力を 發生케 되었기 때문에 疑心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外國의 条約相對者들이 合憲의 인 생각에 对한 情報入手가 없었다는 事實에서 그런 結果가 생겼느냐를 혹시 吟昧해 볼 必要도 있겠지만 合憲의 인 解明을 発顯하기 위해서 権限을 물려 받은 機構들이 批准以前에 適切한 檢討段階를 태만히 했다는 事實에서도 그런 結果가 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追後에 憲法을 改定함으로써 合憲의 인 規定을 다시 만드는 일을, 그리고 이와 同時에 거기에서 “어떠한 犠牲도 없다”고 하는 法案의 謬見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는 다른 結果를当事者的인 国民을 위해招來할 处分을 法을 起案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내어맡겨야 하느냐 하는 것도 모를지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公益의 不得已한 原因들이 要求하고 나설 때는 周知하는 바 原則上 憲法이 是認하지 않는 憲法違反이 必要로 할 수 있는 狀況도 없을 수 없음을 本 所見人은 否認하지 않는다. 全獨逸의 法制委任과 憲法 第99條는 憲法 第79條 第3項에서 말하는 不變의 規定에 속하지 않는다. 憲法 第10章a가 말하는 意味에 있어서 緊急事項이 必要치 않는 어느 特定한 狀況에 处하여 憲法을 改正處理하는 過程에 憲法의 犯法事實이, 어느 條約에 合意하기 위해 생겼을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憲法의 “窮極의인” 目的設定에 따를 수밖에 없다. 聯邦政府立場에서 볼 때 諸般條約으로

因为 時急히 어찌 緊張解消를 要하는 <sup>56)</sup> 聯邦共和国과 東部 여  
러国家들間의 関係狀況이 또 특히 西部伯林의 公開된 것인은 隱蔽  
된 것인은 간에 交渉의 威脅이 (그 保障은 全獨逸的 法制委任도  
승기고 있다) 權力의 行使와 더부려 이를 審議하고 그에 對해  
決定을 치울 만큼의 段階가 必要不可欠한 性格을 지녔는가는 憲法  
改定의 權限을 맡은 機構들 및 그機構 모든 任員들의 問題事였다.  
議會에 대단히 미약한 過半數議席을 차지하고 있는 政府한테는  
憲法改定에 必要한 絶對多數를 다른 方式의 議與로써 取得할 意思  
가 없었다는 事實과 이와 同時に 野黨은 또 責任에서 기피하려고  
하는 利害關係를 그當時 그 歷史的인 憲法立案者는 看破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憲法立案者가 非常時에는 法制를  
犯해서라도 正當한 多數決로 憲法改正을 必要視했었다면 그는 率直  
히 말해서 機能을 發揮하고 있는 議會의 立法制度에 對한 信賴  
와 將來法을 定한 機構會員들의 責任意識을 지니고 있었던 結果  
이다. 万一 그가 그런 데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면 "憲法이  
갖춘 品位"는 "憲法의 改定 없이 판결해 보려는" 努力を 認定  
함으로 해서 憲法裁判所 立場에서 본다면 謂究할 手段이 없게  
되는 것이다.

1972年 10月1日

註 56 : 現状을 強压的으로 修正하려는 試圖에 對한 憂慮가 먼저  
생겨났는지, 그러한 憂慮가 진정 있었던 憂慮인지, 아니면

혹시 그 憂慮가 聯邦共和国 政治家들의 陳述로 해서 더  
高調되어 버린 것인지 하는 問題를 調査하려는 것이 本意見  
書가 하는 일이 아니다. 「權力拋棄」라는 常套語가 聯邦共  
和國은 그러한 拋棄 없이도 權力行使權을 要求할 것이라는  
見解를 強化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非論理的인 말은 아닐  
것이다.

VI. 바이에른 州政府 内閣 首班의 訴答書面

바이에른州政府

8 München 22, 1973年 6月 13日

内閣首班

B III 11040 BV 1209-15

聯邦裁判所 副所長兼 第二審議部 部長貴下

75 Karlsruhe

Schloßbezirk 3

案 件 ;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請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  
共和國間의 相互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1972年 12月  
21日付로 締結된 條約의 法律上 合憲性 与否를 審議하  
기 위한 处理의 件

- 2 BVQ 1/73 -

全權委任者の 任用

尊敬하는 裁判長 貢下 !

猝地에 發生한 疑惑을 排除해드리기 위해서 本人은 1973年  
5月 22日付<sup>1)</sup> 바이에른 州政府長官의 書信과 더부려 행해진 聯邦

憲法 第 22 条에 의한 Dr. Dieter Blumenwitz 教授의 바이에른州政府 全權委任者로의 任用은 本件 处理 및 어느 一件의 暫定的인 規定 公布에 対한 提議의 处理에도 有關係다는 事實을 瞥히 解明해 드리는 바입니다. Dr. Dieter Blumenwitz 教授는 1973 年 6 月 19 日에 있을 口頭公判에서도 바이에른州政府를 代理할 것이며 그를 支援하기 위해서豫見컨대 人士 三名이 隨行될 것입니다.

1973 年 6 月 4 日以来로 Dr. Blumenwitz 教授의 現居住地는 다음과 같습니다.

8011 Zorneding, Herzog-Albrecht-Str. 26.

1973 年 6 月 19 日에 있을 口頭公判에는 Berlin 居住 . Dr. Wilhelm Wengler 가 參与할 것입니다. Wengler 博士는 上記案件處理에 있어 하나의 法律意見書를 作成했읍니다. Wengler 博士는 自發的으로 發言할 意図는 없으나 裁判의 不時에 일어날 問題에 대備해서 自己 意見書에 対한 解明을 내릴 것입니다.

頓首再拜

Dr. Kepler

州政府事務局長

註1) 編者の 註解 記錄文書 A II 參照。

VII. 1973年6月18日付 바이에른주 長官의 訴答書面

바이에른주長官 1973年6月18日 8월 22

Nr. BIII 11040 BV 1209-19

独逸聯邦憲法裁判所 一 第二審議部 一 貴中

7500 Karlsruhe

Schloßbezirk 3

案件：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共和国間의 国交를 土台로 한  
1972年 12月 21日付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共和国 相互間  
에 締結된 条約에 對해서 그 法律의 合憲的 審議에 関한 1973年  
6月 6日付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請處理의 件(聯邦法律志 第2卷  
421頁) - 2 BvF 1/73 -

附錄：本書文案의 写本 30部

1973年 5月 28日付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請을 基礎・補完함에  
있어 本人은 바이에른州政府의 이름으로 ( 특히 그間에 行해진  
進展을 감안하여 ) 独逸聯邦裁判所에 아래와 같은 事実을 부여  
提示하는 바이다. 그 要點은 다음 質問에 있다.

a)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사이의 「特別한 関

係」樹立이 基本條約에서 成功裡에 履行되었는가?

b) 바이에른주政府에 依해서 主張된 憲法(基本法)에 對한 違反이 独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서 展開된妥協論으로 하여 正當視될 수 있는가?라는 点인 것이다.

基本條約은 国家統一의 維持催告를 褴 손하다.

憲法(基本法)은 国家統一問題에 있어 独逸国民이 国家の 統一을 持続시키려는 意思를 특히 強調해서 暗示하고 있다. 国家の 統一是 独逸国家의 存続에 適応하는 것이다. 統一是 独逸国民 全体를 포용하는 鎖쇠이다. 独逸分斷의 生成과 存續은 独逸国民이 決定한 結果가 아니다. 国家統一是 第二次世界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勝戰強大国들의 決定權으로도 또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樹立으로 해서 独逸 地方에서 消失된 것은 全혀 아니다. 分斷이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하나의 共同国家안에 함께 生存하려고 하는 国民의 意志는 存續하고 있다.

基本法은 条約前文의 基本命題에서 国家統一問題 褴 손을 許用치 않는다. 이 基本法은 오히려 独逸国民의 意思에 合당한 国家統一의 再現을 모든 힘을 다해서 진력할 것과 이러한 目的에 對한 措處를 講究하도록 命하도록 命하고 있다.

1.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間의  
国家統一 및 独逸內에서의 特別한 狀況을 勘案해야 할 것이다.  
이 条約은 相互 獨立된 國際法主題와는 性質이 다른 独逸  
國內事情에서만 出發해도 無妨할 것이다.

基本條約은 그러나 特異한 国家問題를 否定하고 있다. 이 基本  
條約은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民이 서로 相異한  
国家間의 国民인 뜻한 関係를 바탕으로 規定하고 있다.

2. 1970年 8月 12日字 モ스크바條約의 署名捺印時 目的說明 第2号  
에서도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間의 條約上 関  
係規定은 独逸을 하나의 全體로써 或은 国民의 統一된 単位로 본  
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定立된 것이다. 이와같은 決定의in 會  
談期間에 独逸聯邦政府는 代理人을 通해서 會談主要相對國인 쏠비에  
트聯邦共和國에 對해 独逸問題에 있어서 基本法이 要求하는 立場  
의 固守를 拋棄해 버렸다. 注視되었던 協定은 國際法파는 何等의  
다른 紐帶가 없는 國際法主題를 위해서 草稿가 作成되었다. 独逸  
聯邦政府는 이미 그當時 独自의in 標語에 不忠実했었다. 1969  
年 10月 28日字 聯邦共和國首相 브란트는 그의 첫 政府声明에서  
「独逸內에서의 相互 兩國間의 関係는 오직 特別한 方式일 수 있  
을 다름이다」라고 宣布했던 것이다.

聯邦共和國首相 브란트는 다음에도 繼續해서 모스크바에서 그와

같은 決定的인 措置를 내린 後에도 1970年 5月 21日字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内閣議長 슈토프와 만났을 때 이른바 20個의 칸센条項中 第1項과 第10項에서 独逸內에서의 兩國間의 関係를 規定하는 約款은 兩國家内에서 生活을 하면서도 한 国民의 一員으로서理解된 独逸과 独逸人의 特別한 状況에서 出發해야 되는 것임을 声明으로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確証도 그렇고 브란트首相이 어쨌든 칸센에서 上述한 機会에 表現했던 그러한 事実도 基本條約에는 插入이 되지 못했다. 「本人이 이미 에어프로트에서 높이 強調했던 바와 같이 独逸兩国家의 憲法은 国民의 单一体위에 바탕이 두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憲法의 基本原則을 勘察하지 않고서 우리 兩國間의 関係를 相互 합축성있게 定立할 수 없다고 本人은 생각한다」라고.

基本條約에서는 오히려 슈토프가 칸센에서 聯邦首相 브란트에게 答弁했던 事実이 貫徹된 셈이다. 「貴下는 必要한 國際法上의 関係를 놓고 国民의 統一이라는 概念을 여러번 使用하였다. 貴下는 기필코 本人만큼이나 그것이 社会的, 政治的 現實性과는 전혀 調和를 이를 수 없다는 事実을 잘 理解하실 것으로 믿는다.」

基本條約은 国民의 統一과 特別한 独逸의 国内的 関係에서 出發하는 것이 아니고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間의 関係는 結局 國際法의 規範에 따라서 確立되는 것이기 때문에 約款

의 亀裂은 깊어지는 것이다.

II. 基本條約의 이 같은 缺陷은 다른 如何한 方法으로도 治愈될 수가 없다.

1. 独逸全体와 베를린에 对한 四大強국의 権利 및 責任은 基本條約에서는 独逸을 위한 正當한 鎖쇠라고 부르지 못한다. 第9條의 非接觸條款은 단지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両國間에 依해서 일찌기 締結되었던 條約과 協議事項임을 暗示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事實上 独逸聯邦共和國과 西方側同盟國들 사이에서 締結된 独逸條約도 예속되지만 그렇다고 前記 強大国들이 이들 의 協議事項에서 「独逸을 全体로써 보는」客觀性에는 合議할 수 없다는 事實을 無視한다면 第9條는 아무도움이 될 수 없다.

獨逸聯邦政府의 主張 (1973年 6月 2日付 聯邦憲法裁判所에 对한 法務長官의 態度表明 12頁参照) 과는 달리 聯邦首相의 特別任務를 代理遂行하는 聯邦長官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內閣書記長사이에 오고간 1972年 12月 21日字 書信에서도 上記 両국은 独逸全土와 베를린에 関係된 四大強국들의 権利와 責任의 存續을 認定하지 않다는事實을 闡明한바 있었다. 이 같은 書信往来에서도 그렇지만 1972年 11月 9日字 發表된 基本條約協商과 並行해서 基本條約에 마련된 條約相對國 双方間의 U N機構 同時加入에 对한 四大強국들

의 声明에서도 그려한 権利와 責任의 対象, 即「独逸全土와 베르린」이라는 말은 列舉된 적이 없고 오히려 四大強國들의 抽象的인 「権利와 責任, 그리고 거기에 随伴하는 多樣한 協議事項, 議決과 実務的 処事」에 对한 暗示만 있을 뿐이다. 1973年6月2日字聯邦憲法裁判所에 对한 態度表明에서 独逸聯邦共和国 法務部長官의 答弁을 忌避하는 12頁의 陳述은 그러한 点에 있어서 不當한 것 이다.

1964年6月12日字로 쏘비에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사이에 友好 및 援助協定이 締結된 以来로 蘇聯邦은 独逸全土에 对한 正當한 이 같은 罪穢를 否定하고 있다. 蘇聯邦은 高次의 尺度에서 옛날 勝戰國의 그 権利와 責任을 「独逸聯邦國의 문턱을 向해一步를 내딛을」國際法上의 道具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主觀대로 포츠담會談은 東獨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反해서 1945年8月2日에 있었던 四大強國의 課題가 独逸聯邦共和国 内에서의 武裝解除, 脱ナ찌化, 民主化에 对한 포츠담 會談의 決定을 実現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对한 蘇聯側 意見에 依하면 東獨에서의 西方強大国들의 留保權은 全혀 그 餘地가 없는 것이다.

第9條의 非接觸約款도 또 第9條를 위한 書信往来도 独逸을 위한 正當한 罪穢 (Klammer)를 提示도 証明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基本條約에서는 国民의 存続과 特別한 独逸国内事情의 誇示가 欠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未解決인 平和條約規定에 對한 暗示도 빠져 있다. 이러한 欠陷은 條約 第9項으로 해서도 調整이 안되고 있다.

왜냐하면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指導層과 政府는 平和條約을 몇몇이 理解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第9條가 條約相對國인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의 協議를 위한 西方側의 留保權을 行使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國家의問題인 多樣한 見解에는 損傷을 加하지 않고」) 條約前文에 쓰여진 指針은 條約自體가 国民의 統一이라는 点에서 出發하는 것이 아님을 強調하는 것이다. 이렇게 固着된 意見의 相衝과 오로지 國際法上의 規範대로라고 하는 하나의 協議事項으로써의 條約의 全體狀況을 놓고 볼때 独逸統一을 위해서의 「書信」 따위는 하나도 痘을 治療하는 効果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書信으로써는 基本條約 第2, 3, 4條에서 明示하는 規約의 明白性을 變更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비엔나條約法律協商 第31條에 依한 解說機構로써의 独逸聯邦共和國政府를 通한 等級區分은 條約의 原文에 何等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어쨌든 書信은 유럽에서 平和를 定立하는 目的에는 有闕한 것이지만 持続的으로 効用性 있는 国家統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基本條約 解釈에 要하는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 1972年 12月

21日付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内閣書記長에게 보낸 聯邦首相의  
特別任務遂行을 代理한 聯邦長官의 書信이 어떠한 意味를 지니고  
있는가에 對한 結果는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에 依한 그 書信의  
處理가 가르쳐주고 있다. 條約을 署名하는 날 書記長 코울은 受  
取人으로써 書信接受를 否定하였다. 独逸聯邦政府가 独逸聯邦議會  
主務分科委員會에 書信接受確認을 拒絕하고 있다는 觀點에서 보아도  
아마 提示될 性質의 것이 못되는 것으로 看做된다.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 外務部長官 빈케는 1973年 6月 13日付로 그 基本條約이  
作成될當時 「그 條約이나 그 條約附錄文書에서 協商相對國끼리  
合議한 것만은 國際法上으로 紐帶關係가 있는 것이고 또 法的으로  
는 同等한 形式을 지니는 것으로 認定될 수 있다」고 詳述했을  
때 그 書信 역시 公式的인 意思表明으로 看做되었다. (独逸聯邦共  
和國 憲法裁判所 [ 13 項 ]에 보낸 1973年 6月 2日字 法務長官의  
態度表明에서) 独逸統一을 위한 그 書信이,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으  
로 하여금 独逸聯邦政府가 그 基本條約으로 해서 自己의 政治的  
目的을 抛棄하고 独逸國民을 自由로운 自決權으로 再統一시키는  
義務를 부과받았다고 하는 主張을 못하게 騥방하는 것이라는 聯邦  
政府의 所見은 그 後에 더욱 많은,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外務長  
官의 人民委員會席上에서의 分明한 詳論으로 反駁되었다.

4. 「外交的인 使節」(第8項) 代身 「常任代表部」라는 人士交流,

또는 常套的인 國際의 条約의 慣例에서 벗어난 批准處理(第10項) 와 같은, 말하자면 特別히 独逸의 内的事情을 設定하는데 寄与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要素들은 基本條約自体만으로는 大端히 不完全하고 또 대단히 未熟하게 形成되었기 때문에 이론바 말하는 所期의 目的 実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独逸聯邦政府는 条約 自体内에서 双方間 代表部가 받아드릴 수 있는 規定을 놓박아 넣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代表部의 設置와 그 地位로 해서 独逸聯邦共和國으로 하여금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國際法上 直接의으로 承認하 하는데 도움이 되는 法律要件이 結果로써 생겨나게 된다는 事實을 包含하는 規定인 것이다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定에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參與한以後 東·西獨 會員國 双方間의 関係가 分裂되는데 對한 防止로써 多樣한 國際法上의 紐帶는 相互間의 関係를 받아드림으로써, 即 双方間 代表部를 設置하므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時點부터 独逸聯邦共和國은 兩國家가 双方代表部의 特別한 法的形態, 即 外交의 代表部와 比較해서 하나의 또 다른 法律(Aliud)을 協議하지 않는限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代表部를 外交의인 地位로 認定해야 하는 任務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代表部의 便宜와 優先權, 自由로운 往來

認可에 对한 法律起草案 处理가 아직 現在로서 完結이 안되어 있으므로 그 같은 合議事項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면 어느 方式으로 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問題도 또한 確定이 안된 実情에 있다. 이로써 独逸聯邦政府는 1973年 6月 20日에 내린 裁可로 因해서 이 問題를 미리 부터 憲法에 一致시키는 方式으로 規定짓지 않고 國際法上 效力視하는 处事으로써 이 基本條約을 하는 수 없이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基本條約 第 8 条와 第 10 条의 欠陷이 있는 規定은 條約에서 明白하게 못을 박아 分離시킬 要素를 相殺시키는데는 適切한 것이 아니었다. 이 條約의 그러한 規定은 特異한 独逸国内 事情을 造成하는데 있어서 本質的인 寄与가 없이 그같은 法的要因만으로 위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5. 同時に 基本條約과 관련해서 国籍의 問題가 如何히 处理될 것인가 하는 種類와 方式에 있어서 그 條約에서는 独逸의 国家分斷의 独自的 傾向을 짐짓 거짓으로 캄플리즈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独逸聯邦共和国이 基本條約에 署名捺印할當時 調査로 作成한 바 있는, 이른바 「国籍의 問題가 條約을 通해 規定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留保声明은 더구나 基本法 116条 規定의 繼続的인 効力を 明白視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準하여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住民들도 基本法의 意味에 있어서 独逸人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留保는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이 主權領域에서 生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国民임을 承認하고 또 國内外에 居住하는 国民의 一員으로써 이들을 必要로 하는 것임을 複방하지 못한다. 独逸聯邦共和国이 基本條約에서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主權과 그 独自의인 権力を 認定하고 난 後라면 独逸聯邦共和国은 더 이상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그러한 所見을 牽制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므로써 独逸聯邦共和国은 基本法의 意味에 있어서 基本法에 準하여 모든 独逸人에게 주어진 監督義務와 社會福祉義務에 對한 法的인 障害까지도 提起해 놓았다. 한便 基本條約에 署名捺印할 때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에 依해 調書로 作成된 이른바 「上記共和国은 그 条約이 国籍의 問題를 柔和시킨 것이라는 事實에서 出発한다」는 声明은 이미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目標設定에 相應하는 方向으로 未來가 展開되리라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다.

1973年 6月 23日字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人民委員會에서 基本條約을 다를 때 同 外務部長官 빈찌는 이미 独逸聯邦共和国을 相對로 基本法 116條의 国民法 改正과 아울러 分斷을 위해서는 独逸內에서의 公民權의 改正도 要求하고 나섰다. 그는 여기에다 다음과 같이 詳述했다.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独逸聯邦共和国은 國籍問題에 있어서도 違法의 면서 또 實質적으로는 간단하게 履行못할 諸般構文에서 分離되는 것은 当然한 理致이다. 두個의 主權國이면서 서로 独立

된 국가가 存立한다는 事實로 해서 또한 相互 種類가 다른 公民 權도 分離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基本條約이 独逸民主主義人 民共和国에 依해 推進된 이러한 發展을 阻止시키지 않고 그 發展 을 더구나 促進시킬 때 그 条約은 이러한 分野에서 独逸과 独逸 国民의 分割을 深化시키고 또 分割을 공고히 하는데 寄与할 際다.

6. 従来 独逸国内의 郵便往来制度가 基本條約(第7条에 附錄된 調書 第5号와 관련된 第7項目)에서 마련된 郵便 및 通信協定으로 因해 必然的인 結果로 생겨난 国外郵便往来制度에의 탈바꿈은 보다 広範囲한 独逸国内의 特殊制度의 하나를 除去하는 处事인 것이다.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는 自己들이 欧羅巴共同市場과의 間接的 인 来去에서 誘致해 오던 利潤의 損失을 막기 위해서 従来까지 施行해 오던 独逸内国의 貿易行為만을 基本條約을 通해서 接近시키지는 못했다.

7. 解約豫告權이 없는 基本條約에서 基本權出發의 根源이 되고 있는 独逸帝国과 独逸聯邦共和国과의 同質性 및 連関性은 두個의 国家가 現在 存立한다는 事實을勘案해서 「独逸内에 두個의 国家」間의 特殊한 内国的 関係를 合法的인 順序로 定立시키지는 않고 抛棄해 버린 것이다. 그 結果가 「두個의 独逸国家」라고 하

는 合法的인 利得인 것이다. (1973年 2月 15日 独逸聯邦議會에서 行한 州政府長官 Bahr 의 말) 独逸聯邦政府가 代弁하는, 이 든바 두個의 國家形態가 없으면 흔히 特殊한 國家가 保存될 展望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태제는 基本條約과 그 條約에서 생겨난 東獨파의 関係를 위해서 課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頂으로써 역시 法的으로도 基本法과 거리가 먼 狀況이 나타난다. 独逸을 独逸人の 自由로운 自決權으로써 再統一을 達成시키려는 处事는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再統一은 이제부터 合法上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그 指導層의 意思決定事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独逸에 두個의 國家가 存立한다는 事實을 承認함으로써 하나의 國家의 統一을 이를 수 있는迂回路가 容納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東獨集團이 生存保存을 理由로 해서, 基本法에서 오로지 明示된 独逸國의 自決權으로써 独逸을 再統一하겠다는 意思의 實質的 障害物이 되어 対抗해 왔다면 基本條約에서 이루어 놓은 國際法上의 規定과 더불어 이제는 거기에 한줄 더 떠서 独逸의 再統一을 위해서는 法的으로도 要請되는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同議가 不可避하다는 形態에서 合法的인 障害物이 되었다는 事實이 더해진 것이다.

이토록 끈질기게 構想된 合法的인 障害는 社會主義的 國際法, 특히 브레즈네프-독트린을 手段으로 해서 核心的으로는 民主主義의인

自由化를 위해 소위 「社會主義의인 興奮度를 一变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对外政治的, 軍事的 面으로 社會主義 陣營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東獨集團을 막아버린다면 더욱 더 克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基本條約의 特徵이란 國際法上의 意味에 있어서의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또 基本條約의 解約豫告權이 없는 까닭에 第7条에서 明示된 結果라고 하더라도 이 基本條約은 典型的인 條約이 아니라는 点이다.

그러기에 西方外國들의 輿論에서는 独逸帝國의 没落은 基本條約때문이었고 그 언더라인은 独逸의 問題로 해서 그어졌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認識해야 될 것은 基本法에 依해서 独逸聯邦共和國의 國家組織에 課해진 独逸國民의 閑心事が 独逸人를 自身에 依해서 보다는 西方世界의 슷한 사람들에 의해서 白眼視당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III. 西方世界의 輿論에 나타난 分割條約으로써의 基本條約에 대한 이 같은 広範囲한 評価는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와 그 政府의 指導層에 依한 明白한 條約解說을 通해 補充이 되고 있다.

1. (1971年 6月) (東獨의) 独逸統一社會黨(SED) 第8次 全党大会 以後 共通된 歷史, 文化, 言語 그리고 같은 同族임을 바탕

으로 한 集團으로써의 国民이라는 概念은 否定이 된다. 国民이라는 概念은 独逸聯邦共和国을 相對했을 때 境界를 긋는 政治와 一致하는 것이다. 人間社會의 모든 生存形式을 改善하기 위해 誘導하는 社會主義的 革命은 国民을 基盤으로 해서도 更新된다는 것이다. 勤勞大衆(플로레타리아階級)이 政治的인 支配權을爭取하는 同時에는 勤勞大衆은 国民階級으로 昇格되어 그 勤勞大衆自身들이 国民으로 造成된다는 것이고 庶民的 国民이 永続하고 있는 独逸聯邦共和国과는 달리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内에서는 社會主義的 国民이 發展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社會主義的인 国民과 庶民的인 国民間에는 하나도 共通되는 点이 없다는 것이고 두個의 独逸國家 内에서의 国民的인 것이라는 말은 그 質이 相異하기 때 문에 두 国民의 統一性은 存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을 解說함에 있어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指導層은 国民을 이같은 階級概念으로 表現하는 데서 出発한다. 유엔憲章의 指針인 自主獨立와 領土의 不可侵性, 現在와 未來에 걸쳐 基本條約 2條 및 3條에서 말하는 國境의 不侵犯 句위를 가지고 그들은 独逸國民의 分割이 承認되는 것으로 評価한다.

2. 이와 類似한 것이 自決權에도 通用된다. 基本條約에서는 独逸國民의 自決權을 暗示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国家의 主權平等, 自主獨立, 領土의 不加侵性 等等과 관連을 지음에 있어서 自決權이

라는 抽象的 概念을 誘導해 내는데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指導層과 政府는 独逸統一社会党 第8次 全党大会에서 내린 定義, 即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人民은 社會主義 革命을 通해서 自決權을 行使했다」라는 말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3.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指導層을 通해서 基本條約에 관해 내려진 解說을 列舉하자면 특히나 1973年 5月 29日字 独逸統一社會党 中央委員會에서 行한 호넷커의 陳述과 内閣會議室에서 基本條約을 作成할 때인 1973年 6月 13日字 同共和国 外務部長官 빈찌의 陳述을 引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호넷커는 이미 그前에도 여러번 反復해서 (例를 들면 基本條約審議中인 1972年 6月 20日 카스트로의 東部伯林訪問을 契機로) 独逸內國的 関係에는 一言反句도 할 수 없다고 하고서 統一된 国民은 國際法의 規範에 応해서만 擬制와 正常化가 可能視된다고 말해 놓고 1973年 5月 29일에는 基本條約이야말로 兩主權國間의 正常的인 國際法上 條約이라고 評했던 것이다. 그는 繼續해서 말하기를 「그런데도 独逸聯邦共和国의 수많은 사람들은 如前히 普遍化된 國際法에서 벗어난 東西獨 兩國家 間에 있을 諸般關係의 特殊한 性格을 造成하려 든다면 베를린의 條約이야말로 諸般關係의 바탕을 초월한 決定的 國際法上의 規定이며 따라서 이 條約은 어느 類型의 모방이 아니므로 論理에 비추어도 전혀 未解決의 独逸問題는 있을 수 없고 그 反對立場을 固守하려는데 고집을 부리는

者는 공연한 時間浪費일뿐」이라고 力説했던 것이다. 国民이라는 말을 引用함에 있어서 그는 言語, 歷史, 文化는 問題視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概念이 하나의 共通된 国民과一致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英国, 오스트리아, 美合衆國, 奧地利 그리고 瑞西가 証明한 바 있었다. 文化와 관련짓는 말에서는 分明히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社會主義的 国民文化임을 代弁하고 있었다.

4. 人民委員會議長 프리드리히·에버트의 相扶相助하는 陳述의 도움을 받은 東獨의 外務部長官 빈찌는 유엔機構憲章의 趣旨와 그原理를 基本條約에 引用하면서 東西獨 両國間に 생긴 関係의 國際法上의 性格은 의심할 여지없이 確認되었다고 結論지었다. 그는 條約의 効用性이 無限하다는 点을 分明히 暗示하면서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은 절대로 相互關係의 이리한 基盤을 애매모호한 方向으로 끌고가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혔다. 権力行使禁止는 国境의 相互紐帶의인 國際法上의 確定과 관련했을 때만은 無制限의인 効果를 行使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国境의 「平和의인」 칠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條約의 그 基礎가 永久의으로 기桓을 두지 않았다는 事實은 이 條約이 人間과 国家相互間의 契約上 協定 (Modus vivendi)이 아니고 國際法上 規定의 終局의인 効用性을 招來케 될 것임을 意味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 條約은 独逸의 問題를 決코 保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事實은

잘못된 解釈이고 条約締結相對國들은 그들의 相互關係를 最終的으로  
規定했으므로 이것이야 말로 条約을 解說함에 있어 唯一한 基盤이  
되는 것이라고 附言했던 것이다.

5. 여기서 問題視되는 것은 条約의 前文에서 말하는 国民이라는 問題가 異見의 差異를 나타낸다는 意味에 있어서 留保라는 것이  
아니고 条約相對國 双方間의 条約規定의 解說問題인 것이다.

独逸聯邦政府는 西方世界의 輿論에서 말하는 条約의 解釈에도 그  
별고 条約締結相對國으로 因한 그려 한 解說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对抗해 본 적은 없었다.

IV. 基本條約에서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認定했거나 展望視되었  
던 人間의 意思疎通과 實質의in 共同協力의 柔和政策이 国民의 人  
間의 共同協力과 統一을 위한 国民의 意思를 強化시키기에는 미흡  
하고 그 끈기에 있어서도 別로 確實性이 없는 것이기에 基本條約  
을 通해서 公開裡에 그 깊이가 더해진 独逸의 國家的in 分割은  
正当하다고 認定될 수가 없다.

平和롭고 自由스럽게 独逸의 統一을 完遂할 憲法을 委任하는 고초에서 犀牲  
이 뒤따랐던 事實과 그리고 그 憲法을 有利하게 이룩했던 事實을  
깊이 통촉해 볼 때 그것은 独逸聯邦憲法裁判所에 依해서 展開해  
놓은 妥協論의 求心点으로 보아 度外視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  
이다.

아떠어먼 事情下에서는 過渡期니까 그 期間에 限해서만은 憲法의規範을 관대히 制限한다 할 때라도 抛棄하지 말아야 할 憲法의 基本原則들은 또 절대로 侵害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모든措置는 「意志로써計劃되어야 하는 것이며 政治的으로 할 수 있는限度내에서는 最小한 전적으로 憲法에 기초를 둔 狀況에接近할 수 있는 傾向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独逸憲法第4条 169項). 더구나 基本條約과 관련해서 이를 통촉해 볼 때重要視되어야 할 事實은 그러한 條約으로 因해서 蒙起된 發展의結果만 特히 條約相對國의 対立된 意圖에 面했을 때는 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이미 發表되었던 東西間의 往來에서 交通의 便宜와 離散家族의 結合, 非商業的인 商品去來의 便宜等等은 아직 確實한 保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便宜는 條約 속에 採抝되지 못하고 東獨의 州長官 諮問委員會에서 發送한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書記長의 書信을 通해서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은 條約이 發效된 後에야 相互關係가 正常화되는 課程에서 그 分野에 對한 問題를 規定하기 위한 書類를 作成해 보게될 것」이라는 形式으로 通告된 바 있었다. 이로써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政府는 그러한 措處의 範圍가 어느 정도나 하는데 對한 周知할만한 責任에 관해서는 論及을 回避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나은 「正常化」라는 書信의 暗示로써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政府가 떠맡고 있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国 政府의 諸般

組織体들이 品行方正하게 行動하도록 함으로서 그들이 達成할 수 있었던 하나의 政治的 壓力手段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承認을 해버린 条約의 基本決議와는 正反對로 그一方의 承諾은 最小한 条約認準의 広範囲한 懸案問題 때문에 撤回할 수 밖에 없다. (차단구역은 제쳐놓고) 界界線에 接近해 있는 56個 区域의 独逸聯邦共和国 政府 住民들의 離散家族 訪問可能性이야 말로 徒來까지 있었던 東獨으로의 旅行可能性을 改善시키는 措施이기는 하나 아직은 交通의 一般通路로 머물고 있다.

새로운 旅行의 可能性과 그 밖에 改善될 諸般事項들은 이미 徒來에 認定되었던 通信可能性의 보다 나은 진척이기는 하지만 障壁과 鐵條網으로 因한 遷斷措置로 해서 빚어진 狀況의 質的인 變化는 하나도 없다. 数年来로 平均 1年에 聯邦共和国 住民이 東獨으로 往來한 数는 百万에서 一百參拾万名이나 된다. 덧붙여 말하거나 그 前에는 또 해마다 東伯林으로 旅行을 한 聯邦共和国 住民의 数가 一百四拾万이나 된 적도 있었다. 여러 해 前부터는 百万以上의 年金生活者가 東獨에서 西獨으로 往來를 하게 되었다.

四大強國의 베를린에 대한 協定, 通過協定 및 交通協約과 관련해서 생겨난 交通의 改善은 基本條約을 評價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2. 비록 사람의 便宜는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東獨의 政府로 因한 目的設定을 废外視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便宜란 条約의 基本決議로 因한 國際法上의 境界設定을 이룩하기 위해 만들어진 制限된 讓步에 不過하지만 또 한便으로는 共產主義集團도 人間의 막혀진 慾求에 对한 換氣를 抛棄할 수 없다는事實이다. 同時에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政府는 이와 같은 让歩를 翳固히 하기 위해서 年金으로 生活하는 旅行者는 除外시키면서 西獨에서 東獨으로 만 旅行이 許諾된 交通統制에 도움이 되는 組織的인 措置를 거이 独斷的으로 取하고 있다. 徒來의 經驗이 보여주는 바로써 強化된 이런 旅行의 可能性은 東獨政府 当局의 조종에 의한 制限된 措置로 해서 어느 範圍에 이르면 다시 철폐될 展望이 엿보인다.

嚴重한 統制下에 놓여 있는 旅行・往来에 換氣를 불어넣어 주는 일은 条約當事者間의 觀點에서 볼때 역시 시스템을 갖는 作用도 지닐 수가 있다. 이것은 두個의 國家가 並存한다는 事實을 끽박기 위한 目的으로 십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領域이 拡大된 旅行可能性이 이 세까지는 制限된 範圍로 끝났다는 事實과 이와 관련해서 생긴 理念의 境界設定行為의 激化가 모든 事實을 評価하는데 無視되어서는 안된다. 이 데오로기的인 境界設定行為가 東獨人을 위한 自由化한 意味에 있어서 政治的 시스템의 制約化를 피할 수는 없다. 東歐에 있는 그밖의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도 最近에

이로써 激化된 理念的, 政治的 統制를 手段으로 했을 때 内部의 으로는 對外政治的 開放의 「冒險」이 中立化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事實을 보여주었다.

3. 基本條約과 그 附錄은, 特히 마지막으로 明示된 最終的인 條約을 보아도 独逸의 両断된 두 地域間의 實質의 関係와 人民들이 서로 対面하게 되는데 对한 어떤 具體的인 可能性을 만들어 줄 何等의 指針이 内包되어 있지 못하다. 더구나 第7條에서 「正常化 過程에서 經濟, 科學과 技術, 交通, 法律의 交流, 郵便 및 通信制度와 保健制度, 文化, 스포츠, 環境保護와 그 밖의 分野에서의 共同協力を 促進시키기 위한 갖가지 展望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处事를 準備함에 있어서도 東獨쪽에서는 具體적으로 期待를 걸게한다고 하는 嚴密한 表現이 없다. 또 老大한 附錄의 調書에서도 다만 可能한 限度안에서의 共同協力 分野라는 것만이 列舉되어져 있다. 이로써 타무리를 짓는 最終的 條約文書에서는 어느 條項을 莫論하고 條約當事國間의 対立된 基本意圖가 막는 적은 深刻한 衝突을 이르렀기 때문에 認定論의 觀點下에서 慎重히 考慮해야 할 그 條約의 効用에는 反對感情의 両立이 不可避했던 것이다. 即 이러한 处事는 이미 徒來에 있었던, 저나리스트들의 双方間 作業能力에 대해서 가졌던 會談이나 郵便 및 通信協定에 对한 談判에서의 經驗들이 잘 實証해 주고 있다.

外務部長官 빈찌는 内閣會議室에서 基本條約을 作成할 때 境界設定政策에 관해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이 意圖로 삼았던 最約的條約文書의 項目配列을 明白하게 다음과 같이 要約했다.

「如何한 경우를 莫論하고 하나의 共同作業은 重要視될 수 있다 그 作業은 유엔憲章의 基本原則에 따르는 것이다。 万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사이의 関係는 特異한 것, 即兩국의 関係가 第三國과의 関係와는 서로 相違한 것이라고 独逸聯邦議会가 主張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이같은 根拠없는 擬制가 成立한다면 同時에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은 결국 独逸聯邦共和国의 内國이라고 하는 根拠 없는 主張도 成立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오로지 그같은 <独逸內의 義務遂行>이 얼마나 非實在의 인가를 立証해 줄 뿐이다。 東西兩國間의 相互關係를 基盤으로 하는 배를 為條約의 運命은 明明白白한 것이다。 即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의 内國도 아니고 또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의 内國도 아닌 것이다」 이 모든 事實에서 일어나는 結果는 即 基本條約에 들어있는 決定의인 條項들을 公布한다는 事實에 있어서 唯獨 그 條約 自體만으로는 認定論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何等의 正當하다는 見解가 派生될 수 없다는 事實이다。

V. 基本法이 明示하는 意味에 있어서 再統一問題에 대해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外務部長官 빈찌가 뒷받침한 말은 1973年 6月

13日字 人民内閣會議室에서 基本條約을 作成할 때 그 基本條約  
第3項에다 分明히 明示해 놓은 「国境의 平和的 철폐」可能性에  
대한 拒絶이었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이 資  
本主義的 独逸聯邦共和国과 「現存하는 国境의 平和的 철폐」에 對  
해 協商할 수 있으리라고, 또 하게 되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한낱 헛된 所致로 볼 것이다) - 빈찌의 陳述引用

한便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指導層과 政府는 同憲法 第8条  
第2項에 準하여 再統一, 即 「民主主義와 社會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統一을 暫定的으로 保留시키고 있다. 비록 独逸民主主義 人  
民共和国이 조심스러운 態度로 「共產主義」라는 單語는 回避하고  
있지만 東獨側은 그들의 모든 構想대로 그러한 말(「民主主義와  
社會主義」) 속에서 理解하고 있는 뜻은 「人民民主主義와 共產主義」  
라는 것이다. 特히 東獨集團이 此後에 내딛을 발걸음은 境界設定  
이 安定된 作用을 보여주고 나면 第8条가 가리키는 그 目的에  
힘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례한 意味에 있어서 独逸  
統一社會黨 条8次 全党大会에서와 그리고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指導層이 말하는 國民의 概念도 理解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례  
한 概念과 더부러 「庶民的 國民」이라는 낱말의 作用은 独逸民主  
主義 人民共和国에서는 厳格히 禁止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 그  
反對일 수 없는 理由는 社會主義的 國民이란 独逸聯邦共和国 안에  
서의 勞働階級에서 그 补充的構成員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着想에 依하면 独逸聯邦共和國의 勤勞大衆은 社會主義的 國民에 預속되는 것이다. 「社會主義的 平和政策은 그러니까 革命의 인 政策」이라고 하는 確証에 바탕을 두고 호넷커는 1973年5月 29日 独逸統一社會黨 中央委員會 第9次 會議席上에서 国民이라는 概念을 明示的으로 引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西歐도 独逸聯邦共和國과 共히 社會主義로 向한 路程을 밟게 됐을 때 欧羅巴 国民이 어떠한 形態로 自身들의 共同生活을 形成하게 될 것인가는 닥쳐올 未来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獨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 指導層이 基本條約과 合議된, 오직 단 한가지 可能視되는 再統一의 形態라고 看做하고 있는,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憲法 第2條 第8項에 依한 統一은 그러나 基本條約과는 矛盾이 된다. 왜냐하면 再統一은 오로지 自由로운 意思裡에 許容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基本條約은 再統一의 公示를 毀損시키고 있다. 이 條約은 分斷을 強調함으로써 独逸問題의 開放을 恽害시키는, 長期的인 터전이 된 合法的 障害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合法的인 障害物은 基本法 前文의 公示를 毀損시킴으로써 国民의 統一을 持続시켜 自由로하 国家의 再統一을 達成하려고 하는 全體 独逸民族의 意志를 驅逐시키는 것이다. 이 條約은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와 指導層으로 하여금 合法的으로 將次 歷史的 發展의 意志를 俱現하는 相對者로 만들고 있다.

一方의으로 주어진 人間의 便宜, — 独自의으로 觀察해 볼 때 — 그 것은 비록 欽迎할 바이나 独逸人の 歷史的 問題안에서의 短点을 一掃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国民, 또는 独逸人の 国民意識에 執着해서 政治的인 行動으로써 統一을 促進하는 것은 基本法의 偉大하고 重要한 戒命인 것이다. 独逸 땅 위에서 自由가 없는 시스템과 対決하면서도 堅固하고 오래도록 참아가면서 自由裡에 統一을 노리는 慾求에 執着하여 如何한 削除도 許用치 않으려는 戒命에는 어떤 独逸의 政府든지 屈服하고 마는 것이다. 또 한便 歷史도 独逸人の 이러한 関心사를 짓밟지는 못할 것이다. 独逸神聖羅馬帝國에서 그 根源을 가지고 있고 變化무쌍한 그 運命과 더부러 우리의 새로운 歷史의 動的인 要素라고 할 独逸国民은 하도 높은 資質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如何한 國家權力도 이러한 資質을 保存시키기 위한 行動에는匹敵하지 못할 것이다.

基本條約은 独逸問題를 基本法의 目的에 加一層 接近시키지는 못했다. 人物 및 國家에 의한 契約上 相互協定( Modus vivendi ) 条約은 그러한 方向에의 進一步의 수가 있었을 것이다. 国民의 統一에 反하는 合法的인 障害物에 適應하는 것이 障壁과 鐵條網인 것이다. 障壁과 鐵條網이 繼續 存在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가장 허무맹랑하고 世界의 가장 非人間의 限界線의 紀念物로써 더욱 더 完璧을 기하는 道具가 될 수 있다는데 同調하는 하나의 「基本의 条約」이 締結된다면 決코 正常化라는 말은 存在하지 못한다.

Dr.h.c. 품 펠

IX. 1973年6月19日付 口頭公判 記録文書(會議錄)

独逸聯邦憲法裁判所

第二審議部 公開裁判 칼스루해 1973.6.19.

- 2 BvF 1/73

独逸聯邦 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間의 相互關係를 基盤으로 하여 1972年 12月 21日付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間에 締結된 条約이 法律上 違憲의인가 아닌가를 審理하기 위한 处理過程의 公開裁判 記錄文書

陪席判事 :

憲法裁判所 副所長 兼 公開裁判 裁判長 조이페르트  
존 슈라브렌돌프博士, 투프博士, 가이, 히르쉬博士, 링크, 반트 博士  
政府首席秘書官 회펠 (文書官)

10時2分 裁判長이 裁判을 開廷하고 事実審理에 들어가다.

裁判長은 公判狀況을 錄音테이프에 取材하도록 周知시키다.

告訴人側으로써 바이에른州政府를 代理하는 陪席人士 :

訴訟專權委任者 블루멘비츠 博士兼 教授

州政府 事務局長 캐슬러博士

行政監督官 부슬러

벤글리博士 兼 教授

Mr. 디 르넷커

聯邦政府側代理人被告人

클리어웨 博士 兼 教授 (월론)

래베렌츠 博士 (찰스루해)

訴訟專權委任者

聯邦政府 事務局長 바알만

行政監督官 쉬퍼博士, 參事官 마안케 博士

바이에른州政府를 代理해서 Dr. 블루멘비츠教授가 1972年 12月  
21日付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間의 相互關係  
를 基盤으로 하여 同兩國間에 締結된 条約의 法條項이 1973年  
6月 6日付로 基本法과 合議될 수 있음을 確認해 달라는 提議를  
請求하다 (独逸法律誌 2号, 421頁)

独逸聯邦政府를 代理하여 事務局長 바알만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  
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間의 相互關係를 基盤으로 한 同兩國間에 締  
結된 1972年 12月 21日付 条約의 法條項이 基本法과 合議될 수  
있음을 確認해 달라는 提議를 請求하다.

告訴人側을 代理해서 바이에른州政府 事務局長 Dr. 캣슬러가 1973  
年 5月 28日字의 訴答書面을 補充한 1973年 6月 18日字의 訴答

書面을 朗誦하다.

10時 49分 公判은 中斷되었고 11時 8分에 続開되다.

Dr. 블로엔츠教授가 보다 詳細한 提案說明을 하고 특히 國際法上의 問題에 대해 奉論하다.

그가 提示한 証拠申請은 다음과 같다.

1. 独逸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條約의 準備 및 締結에 関係되는 記錄, 文書, 其他의 書類 案들을 独逸聯邦政府로 하여금 手配, 整理시킬 것.

特司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主務部處가 聯邦政府의 陳述대로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의 接受를 証明했다고 하는 領收案 整理를 申請함.

2. 聯邦憲法裁判所는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과의 相互關係를 規定하는 事項과 빼를린 問題를 取扱하는 事項에 該當되는 範圍内에서, 모스크바條約의 準備 및 締結에 関係되는 記錄, 文書, 其他의 書類案들을 聯邦政府로 하여금 手配, 整理시킬 것.

3. 第二号로 名命된 文書에 限하여 모스크바條約 및 基本條約을 위한 諮問과 関係되는 範圍内에서 모스크바條約 및 基本條約과 関係가 있는 独逸聯邦共和国 上·下議院 各委員會의 會議錄案을 聯邦政府로 하여금 整理시킬 것을 申請함.

4.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主務代表部에 對한 便宜, 優先權 및 行動의 自由를 認定하는데 對한 法律案 (聯邦議會印刷物 143号 / 73)에 関係가 있는 独逸聯邦上・下議院 各委員會 會議錄案 整理를 申請함.

文書로된 証拠申請案이 法庭에 넘겨지다.

Dr. 블루멘비츠가 聯邦憲法裁判所判事 하르쉬와 裁判長의 質問에 答弁하다.

公判은 12時 33分에 中斷, 14時 30分에 続開되다.

聯邦政府 事務局長 바알만은 바이에른州政府의 証拠申請을 받아드려는 立場을 取하다. 그는 質問에 臨하여 聯邦政府는 그 속에 나열된 文書들을 오로지 憲法裁判所의 決定如何에 따라서 提示할 수 있는 것이라고 解明하다.

블루멘비츠教授는 이 証拠申請이 証拠를 찾아내는 全般的인 可能性을 公式的으로 处理함에 있어 使用하게 되는 法庭에 대한 発議로 理解해야 할 것이라고 解明하다.

Dr. 블루멘비츠教授는 詳細한 陳述을 부연하면서 특히 憲法上의 法律的인 質問을 繼續하다.

公判은 15時 53分에 中斷, 16時 29分에 다시 統開되다.

独逸聯邦憲法裁判所 判事 가이거의 質問에 対한 答으로 独逸聯邦政府側 事務局長 바알만은 위에서 証拠申請 第1, 2号로 提示된 独逸聯邦政府의 決議書들은 오직 内規로 이루어진 것이며 期限에 対한 協議事項이나 그와 類似한 節次上의 問題와 연관된 書信交換以外에 条約의 다른 어떤 部分을 協議하기 위해 어느 代理人이나 또 그 밖에 어느 閑心의 対象이 된 對外勢力과의 書信交換은 없었다고 解明하다.

独逸聯邦憲法裁判所 判事 Dr. 가이거의 質問에 対한 答으로 告訴人은 바이에른州政府가 信憑할만한 書類라고 認定되는 모든 委員會調書를 所有하고 있으며 또 同時に 그 調書를 处理하는 高等法院決審委員會(審議部)의 그러한 書類가 訴訟에서 引用될 때도 何等의 瑕疵가 없다는 事實을 立証하다.

独逸聯邦政府側으로

事務局長 바알만, Dr. 크리아레教授, 檢事

Dr. 레베렌츠가 意見을 陳述하다.

公判은 19時 13分에 中斷, 21時 8分에 統開되다.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聯邦政府는 1972年 12月 21日字 條約에서 論議된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의 受領通知書를 高等法院 決審委員會(審議部)에 提出해야 한다.

事務局長 바깥만은 受領通知書를 法廷에 넘겨주다.

裁判長은 受領通知書原本을 읽다. 訴訟代理人은 그原本을 檢閱하다.

聯邦政府側 解明은 다음과 같다.

「이 受領通知書는 独逸의 統一을 위해 交付된 書信과 関係가 있다. 概略的인 것이지, 正確한 内容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書信의 交付는 條約을 締結調印하는 날 相對方과 協議된 것이다. 이것은 同時に 모스크바條約을 署名할當時 모스크바에서 그와 相應하는 書信이 交付될 때와 同一한 处理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相對方의 要望이었다」라고.

質問에 对한 答弁:

閣議에 보낸 書信의 交付는 條約의 調印과 때를 같이하여 行하였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書信의 提出과 그原本은 大略 30分後에 公開되었다.

继续的인 質問에 对한 答弁:

1972年 12月 21日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書記長 코울自身은 그런 書信을 아는 바 없고 어떤 声明도 發表한바 없다고 한事實에 对하여, 그 時機에 코울이 閣議에 묵혀 있었을 그 書信을 아직入手치 못했다고 함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檢事 레베렌츠는 1972年 11月 8日付 『日報(署名日)』에서 이미 이러한 書信의 交付가 通告되었음을 指摘하다.

Dr. 뱩글러 教授, Dr. 키아리, 事務局長 바알만, 參事官 Dr. 만케가 詳細한 陳述을 부연하다.

双方은 事件過程의 合法的인 評価를 위하여 訴答書面의 猶豫期間을請求하다.

公判은 21時 37分에 中斷, 21時 45分에 続開되다.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이 公表되다.

双方은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交付過程의 合法的인 判断与否에 对한 細部事項을 부연하는데 1週間의 訴答書面 猶豫期間을 받다.

Dr. 디르넷 캐의 質問에 对해서 參事官 만케는 独逸의 代表団이

署名한當時 領收証이 提示되었는지는 아직 지금으로써는 答弁할 수 없다고 解明함.

Dr. 뱅글러教授, 事務局長 바알만, Dr. 크리이페教授 및 Dr. 블르  
엔비츠教授가 더 詳細한 陳述을 부연하다.

裁判長은 公判의 終決을 짓고 다음과 같은 決議事項을 公表하다.  
決審公判 日時は 1973年 7月 31日 火曜日, 本法廷에서 行하기로  
定하다.

公判은 22時 35分에 閉廷되다.

조이 페르트

회 펠

1973年 6月 19日字 公判記錄文書 附箋 1.

案件 :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間의 相互 関係를  
基礎으로 하여 1972年 12月 21日字 同兩國間에 締結된 条約에의  
法律上 違憲性 与否審議를 위한 1973年 6月 6日字 바이에른州政  
府의 訴請処理에 관하여.

#### 証拠申請

1. 独逸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條約의 準備와 締結에 關係되는 記

錄物, 文書, 其他의 書類案들을 独逸聯邦政府로 하여금 手配, 整理시  
킬 것.

2. 特히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 主務部處가 聯邦政府의 陳述대로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의 接受를 立証했다고 하는 領收案  
整理를 申請함.

3. 聯邦憲法裁判所는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과  
의 相互關係를 規定하는 事項과 빼를린問題를 取扱하는 事項에 該  
當되는 範圍内에서 모스크바條約의 準備 및 締結에 關係되는 記錄  
物, 文書, 其他의 書類案들을 聯邦政府로 하여금 手配, 整理시킬 것.

4. 第 2 号로 명命된 文書에 限하여 모스크바條約 및 基本條約을  
위한 諮問과 關係되는 範圍内에서 모스크바條約 및 基本條約과 關係가  
있는 独逸聯邦共和国 上・下議院 各委員會의 會議錄案을 聯邦  
政府로 하여금 整理시킬 것을 申請함.

5.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主務代表部에 对한 便宜, 優先權 및  
行動의 自由를 認定하는데 对한 法律案 (聯邦議會印刷物 143号/  
73年度)에 關係가 있는 独逸聯邦上・下議院 各委員會 會議錄案 整  
理를 申請함.

## 論 証

1. 本訴請의 引証은 基本條約 第1条에서 생긴 結果이다.
2. 聯邦政府가 行한 再統一公判記錄引用은 憲法의 再統一公示(催告)의 完全한 正當性을 保証하는데 必要不可決하다. 聯邦憲法裁判所가 執行했던 바와 같이 再統一公示(催告)가 「自明할」때에만 이에 對한 違反은 認定될 수가 있다. 그러나 聯邦政府自身이 世上에 公開된다는 理由로 陳述을 留保시키므로써 憲法上의 戒告를 고집한다고 主張할 때에 限해서만은 이러한 自明性을 立証하기가 어렵다. 基本條約에서 말하는 再統一公示(催告)에 重大한 約款의 実効는 聯邦政府의 公開的인 声明으로 보다는 오히려 聯邦政府 스스로 條約의 協商에 對해 行했던 記錄에서 나타난다.
3. 再統一公示(催告)에서와 類似한 事項은 訴訟論拠에서 引証이 된다는 法則에도 通用이 된다. 그리하여 憲法에서 拘束力を 갖는 그 基本的인 國家概念의 問題에 對해서, 條約을 자기 나름으로 解釈하는 聯邦政府는 四大強國의 権利와 責任이 繼續 独逸內에 있는 두個의 國家에 對해 하나의 積 쇄 口實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의 어떤 平和條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繼續해서 存続하는 것이라고 主張해 온 것이다. 1973年4月에 独逸內國的 関係에 對해 결국 聯邦政府內閣이 發行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主義人民共和国의 相互關係의 進展」이라는 文書에서 基本條約에 對한 聯邦政府 나름의 解釈은, 勿論 上述한 國家concept에 関係되는 解明은 除外시켜놓고

充実한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다.

條約에 대한 公式的인 解明에서 우선 国家概念과 관련하여 聯邦政府가 取한 態度는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을 相對로 하는 協商에서 取한 態度와는 一致하지 않는다는 推測을 남겨놓았다.

4. 案件整理를 위한 義務는 國際法의in 狀況을 考慮해서 생겨난結果이다. 비엔나條約法協商 第32項에 依하면 條約을 解說할 때는 「그 條約이 締結된 모든 狀況」도 「解釈의 最高手段」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協商記錄의 引用은 基本條約 解說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前提条件인 것이다. 即 基本條約의 解說은 그 條約이 憲法에 妥當한가를 審理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考慮되어야 할 하나의 先決問題인 것이다.

5. 聯邦憲法裁判所는 決定에 重大한 影響力を 미치는 事實에 對해서도 하나의 独自의in 判決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事實規定과 法律의 結果確認은 不可分의 方法의in 연관성을 짓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聯邦憲法裁判所法律의 改正으로 因해서 聯邦憲法裁判所로 하여금 다른 法廷의 事實評価와 관련을 짓게 하라는 提案은 違憲이라는 非難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万一 聯邦憲法裁判所가 訴訟에서 口頭로 行하는 聯邦政府의 解明에 依存한다면 그 裁判所야 말로 진흙탕에 빠져버린 結果가 될 것이다.

6. 모스크바條約 協商時에 作成된 記錄文書들도 아울러 풀어 모으려는 必然性은 特히 바알(書面 第5, 6項의 結果로 생겨난 것이다. 蘇聯을 相對로 하는 바알)書面 第5項에서 独逸聯邦共和國이 맷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 特히 独逸民主主義共和國과의 協定은 하나의 統一된 完全性을 이루는 것으로 確認되어져 왔다. 바알書面 第5項을 가리켜 모스크바條約의 性質이 形式上의 協定(우산協定: umbrella agreement)의 結果에서 나온 外形上의 接近点이라면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締結해야 할 基本條約에 對한 内容上의 規定들이 바알書面 第6項에는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이다.

事實上 이 같은 「브레즈네프 - 教義(信條)」(國家의 主權에 앞서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優位性)의 支持를 받아 생겨나는 結果는 基本條約을 解說함에 있어 蘇聯邦과의 双方의 関係라는 것도 誘導해 낼 수 있다는 事實이다. 이리하여 어쩌면 바알書面 第6項에 言及이 된 「独立性의 尊重 및 兩國家의 自主性의 尊重」이라는 概念도 基本條約 第6條에 나타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協商의 記錄內容을 안다는 것은 無条件 必要한 것이다. 왜냐하면 별써 그當時에 이미 刊行된 断片的인, 그리고 그 記錄의 確証을 잡는데 있어서도 意見이 分分했던 刊行物들의 内容에서 條約相對國에 對해 받아들인 独逸聯邦政府의 態度가 部分的으로는相當히 独逸巷間에서 알려졌던 見解와는 동떨어져 있었음이 들어나기 때문인 것이다.

協商記錄에 대해서는 1972年 4月 19日付 一般藏書(Archiv der Gegenwart) 細部項目 比較要。 17030頁 參照：

그러나 바알이 그로미코에게 解明한 말은 即 權力行使拋棄條約은 다만 國境條約에 대한 다른 表現에 不過하지만 그레도 그 条約은 權力行使拋棄條約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베를린의 情勢를 놓고서는 合憲的이냐 아니냐하는 생각을 考慮하지 않고 独逸聯邦共和國과 베를린의 関係는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의 関係와 一脈相通하는 것이라고 陳述되었다 것이다.

바알 書面과 이 書面의 基礎를 이루는 協商의 記錄을 参照해서高等裁判所 決審委員會(審議部)의 4名의 判事들 見解도 이렇게 陳述하고 있다. 即 거기에서는 基本條約을 「分離시켜 考察할 수가 없고」聯邦政府에 依해 追求된 東部政策 全般의 文脈에서 觀察해야 될 것임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7. 基本條約에 대한 協商記錄의 參照이 어디까지나 條約을 解說함에 있어 새로운局面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事實은 (모스크바條約을 위한 調善의 聽問과 比較해 보았을 때와 같이.) 基本條約이 締結된 後에 條約相對國에 依해서 받아들여진 態度에

对한 通察力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中에서도 호넷커의 解明은 다음과 같다.

... 「独逸聯邦共和国内의 数많은 人士들이 万一 繼續해서 一般國際法에서 벗어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사이의 어느 한가지 「特異한 性格」을 造成하려고 든다면 率直히 그러한思想의 元祖란 時代의 뒤틀어진 所望에 지나지 않는다...」

「主權國家間의 関係是 確定的인 國際法의 眼目으로 觀察해 볼 때 베를린條約은 決코 人物과 国家에 依한 條約上의 相互協定이 아닌 것」이며 또 그러기에 「論理적으로 보아도 決코 解決못할 独逸의인 問題는 아닌 것이다...」

「恒時 그 反對事實을 완강하게 고집 하려고 主張하는 사람은 時間만 浪費할 뿐이다」.

獨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사이의 関係는 大英帝

국과 美合衆国과의 関係로, 또 独逸聯邦共和国과 奥地利 或은 瑞西  
와의 関係로 对比된다.

8. 「独逸의 統一을 위한 書信」을 受領했다는 領收証을 聯邦政  
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条約을 위한 文書의 成分이지 決코 条  
約이라는 事業 자체의 成分은 아니라는 論拠와 더부려 聯邦下院 司  
法分科委員會에 不法으로 留置시켰다. (1973年 3月 20日字 FAZ  
比較 參照)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内閣書記長 코울은 1972年 12月 12日  
付 東部베를린에서 基本條約에 署名할當時 記者會見席上에서 이어  
한 事態에 대해 解明하기를

「그와 같은 書信이 있다고 한다면 - 本人은 그것을 전혀 아  
는 바 없다 - 그러한 一方的 措置의 正當한 拘束力を 一般이  
모를리 없다」라고 했다.

9.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常任代表部에 对한 便宜와 優先權과

行動의 自由를 認定하는 法律草案의 資料들을 蒐集할 必然性은 基本條約 第8条에서 이 투어진 結果이다.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政府와 이 法律을 연관시켜 双方間의 常任代表部 機構設置 및 法의 인 地位에 對해 合議해야 할 事項이라든지 아니면 独逸民主主義 人民共和国 常任代表部에 對한 便宜, 優先權, 行動의 自由를 認定함에 있어 免除해야 할 法의 인 規定은 基本條約의 解釈과 法의 인 判断에 있어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10. 聯邦憲法裁判所를 通해 政府文件들을 끌어 引用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不利益은 協議訴訟에 있다. 거기에서 法廷의 指示에 따라 協定의 準備 및 締結에 關係되는 外務部 그리고 首相官房長官의 文件들이 作成되었다. (聯邦憲法裁判所決議書 6卷 323頁 : 選集 「協議訴訟」 4卷 1500頁 1502, 1536 및 1567, 1569頁).

IX. 1973年 7月 19日施行 口頭審理中 関係 当事者

代理人의 書面弁論

1. 書面弁論에 대한 發行人註

關係政府의 訴訟全權代理人과 代表者は 口頭審理에서 行한 弁論을 書面으로 準備하여 口頭審理時 聯邦憲法裁判所와 各訴訟相對方에게 伝達하였다. 이 文書는 口頭審理中 行한 弁論內容과 다른 것이다. 口頭審理中에는 一定한 時間에 맞추어야 했고 相對方의 發言을 참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書面弁論은 聯邦憲法裁判所가 判決을 내리는데 참작하였으므로 이 文書도 도한 여기에 出版에 붙인다.

2. 부루멘뷔츠教授의 書面弁論

아우구스부르크

1973年 6月 19日附 바이에른州 訴訟全權代理人

아우구스부르크大学教授 디터. 부루멘뷔츠博士

(서류번호 : 0-3304)

1972年 12月 2日 東西獨間に 締結된 東西獨基本條約에 대한  
1973年 6月 6日의 批准法律(聯邦法律集 第二部 421面)에  
대하여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違憲審査訴訟에서 바이에른州政府

## 訴訟全權代理人의弁論

裁判長님, 判事여러분!

바이에른주政府는 이 訴訟의 提起를 통하여 東西獨間에 締結한  
1972年 12月 2日의 東西獨 基本條約에 對한 1973年 6月  
6日의 批准法律이 基本法에 違反되며 따라서 無効임을 確認하고자  
하는 바이다.

### I.

바이에른주 政府의 提訴는 基本條約을 全體的으로 反對한다. 基  
本法 秩序는 徒來 独逸(독일)의 國際法의 主體의 存立에 影響을  
주는 어떤 聯邦共和國의 條約(締結)도 容納하지 않는다. 東西獨  
政府間에 締結된 交通往来協定은 但只 補充的 技術的 協定으로서  
事實上의 政府(de facto-Regime)와도 締結될 수 있는 協定인데  
反하여, 基本條約은 이제 聯邦共和國(西獨)의 모든 機関(기관)을  
拘束하게 되며, 独逸에 있어서 分離(분리) 및 分割과정의 終結을  
法的으로 確認하는 것이다. 이 條約이 規定하고 있는 内容은 (특  
히 第2條, 3條 2項, 4條 및 6條) 旧独逸國 領土위에 原則의  
으로 主權의이며 相互獨立된 두個의 国家가 存在함을 分明히 約定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基本條約의 成立에 直面하여 이  
條約中 어느 條項이 原則的으로 憲法에 違反되는가는 別 意味가  
있을수 없으며 (本人은 이와 関聯된 特別한 問題에 関하여 後에

다시 言及할 것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된다. 즉 이 条約의 어떤 条項이 또한 國際法的으로 容納되는 解釈이 이 条約의 明白한 規定內容을 憲法合致의 解釈이 아직 可能한 것인 만큼 制限할 수 있는가?

## II. 基本條約의 性格

1) 联邦政府(西獨政府)는 여러번의 言及에서 이 条約에 賦與된 明白한 國際的 性格을 國內法과 國際法 사이의 不透明한 中間領域으로 끌어내리는 여러가지 解釈을 通하여 이 条約에 나타난 違憲性을 避避하려 하였다. 이와같은 論理는 무엇보다도 이 条約과 関聯하여 行한 發言들이 明白(一義的)하지 않다는 데서 그 貢徹力を 壊失하고 있다(例를 들어 보면)

바르(Bahr)聯邦長官은 “西獨이 第三國과 締結한 다른 条約과 꼭 마찬가지의 拘束性”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얀(Jahn)聯邦長官은 “獨特한 種類의 条約”이라고 말하고, 聯邦上院의 포써(Poesser)長官은 “國際法과 類似한 適用”을 말하고, 프랑케(Franke)聯邦長官은 “다른 모든 國家間의 協定이나 合意(註)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國際法의 拘束性”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相異하게 力点을 둔 發言들을 여기서 詳細하게 觀察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a) 이 기본条约과 더불어 规定된 東西獨과의 関係가 形式上 国際法的 性格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関係는 우선 国内法的(憲法的)関係에 가깝다.

그러나 国内法的 関係는 하나의 法秩序를 다른 法秩序의 下位에 從屬시키거나 共同으로 第三의 法秩序에 從屬시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다. 前者の 것은 両当事者가 모두 基本条约 第4条와 6条 때문에 바라는 바가 아니며, 後者の 것을 联邦政府가 部分秩序論의範圍內에서 賛成할현지 모르나 联邦政府로서는 (東獨의 独立과 主權을 文書上으로 確認하고 있는 地역 이므로) 東獨을 이와 같은 独逸의 法的狀態에 関한 見解에 따르도록 強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東獨은 同等하게 国際社会에 參与하고 있으므로 第三者側의 "全體獨逸의 지붕밑으로" 帰属되도록 誘導할 수도 없는 것이다.

b) 끝으로, (모든 理論的 可能性을 公平하게 評価하기 為하여) 東西獨이 만들어낸 特殊 法秩序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小法圈은 同等한 法의 基盤 위에서만 創設될 수 있으며 東獨은 여기서 頑強히 同意를 拒否할 것이다.

c) 基本条约에 "對한 特殊性格도 基本条约 第四条外, 이 条約의 批准 및 發効와 関聯하여 適當한 覺書의 交換을 规定하면서 西獨側 国家元首가 이에 関与해서는 안된다는 狀況下에서는 主張될

수가 없는 것이다.

基本法 第 56 条 1 項 前段에 따라 立法府의 同意을 받도록 提出되는 하나의 条約이 基本法 第 59 条 1 項 後段 規定의 범위내에서 憲法的으로 特別取扱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는 도의시 할 수 있다. 國際法의로 블때 覺書交換에 參与하는 사람이 그 委任을 聯邦政府로 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役割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交換하는 文書의 表示를 어떻게 하느냐도 法의으로 아무런 意味도 없는 것이다.

2) 聯邦政府와 (西獨政府) 그를 支持하는 解釈者들이 主張하는 基本條約은 단지 "協助的 生活方法" 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또다른 論拠로 確信을 주지 못한다. 協助的 生活方法이란 이 問題의 解答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國際法에 있어서는 時間의으로 制限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制限할 수 있는(法) 規定을 말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그 対象이나 内容으로 블때 時間의으로 制限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위에나 条約法 協定 第 42 条는 (이는 이미 通用되고 있는 國際慣習法을 規定에 따르거나 本協定의 該當規定에 따라서만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協定 第 53 条는 条約의 期間이나 失効에 関한 規定이 없는 条約에 있어서는, 条約 当事者의 意思가 確認될 수 없거나 条約의 性質上 發生하지 않는

限 条約의 期間이 만료(満了)되거나 一方的으로 終了시킬 수 없는 것으로 推定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聯邦政府(西獨政府)에 의하여 主張되는 選擇의 保留는 基本條約이나 그 附屬 文書에서 法的 뒷받침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기껏해야 政治的 意義를 가질 뿐이며 基本條約에 單純한 協助的 生活樣式의 法的性格을 賦与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a) 聯邦政府(西獨政府)가 要請한(提示한) 民族의 統一(Einheit der Nation)에서부터 아무런 結果도 유도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基本條約 前文 第5項은 이 問題에 関하여 相異한 見解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即

“歴史的인 事件에서 出發하여 基本的인 諸問題, 그 中에서도 民族의 問題(nationale Frage)에 関한 東·西獨間의 相異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聯邦政府(西獨政府)는 여기서 “東西獨間의 平等한 関係를 規定하기 為한 諸原則과 條約의 諸要素” 第10号에 숨어있는 目標를 달성할 수 없었다.

獨逸民族(deutsche nation)은 (聯邦政府의 諸報告書에서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基本條約 前文에 따라 바로 歷史的 事件에 屬하지 않는 것이다. 前文 第5項에 相異한 見解가 規定되므로 말미암아 事實上 條約 締結에 미치는 破壞的 作用

이 제한되고 局部化 되고 있는 것이다.

“…을 侵害하지 않고 (unbeschadet) ”라는 接続辭는 民族의 問題에 있어서 相異한 見解가 条約原文에 담긴 規定을 侵害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며 따라서 規定內容의 制限을 前提할 수 없다.

b) 이와 마찬가지의 現象은 “独逸統一에 관한 書信 (Brief fur Deutsche Einheit)”에도 該當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文書가 이미 言及한 뷔엔나 条約法 協定意味의 解釈文句가 될지, 아닐지의 問題는 도외시 될 수 있다. 이 問題는 聯邦政府나 東獨側이 이 書信의 接受를 確認했다는 証拠(증거)를 提示할 用意가 있다면 当法庭이 最終的으로 解明할 것이다. 이 書信이 協約的 生活樣式의 意味로 基本條約을 縮小(制限) 할 수 있을지 혹은 西獨에 該當되는 諸義務를 緩和할 것인지의 問題는 이 書信의 内容을 參照하기만 하면 充分하다.

即 여기서는 自由로운 自決權이나 再統一의 權利에 関해서가 아니라 단지 政治的 目的에 関해서만 言及되고 있다. 条約締結과 関聯하여 表明되는 政治的 目的是 条約締結의 어느 쪽도 拘束하지 못하는 것이다.

本 条約를 改正하려 할때는 条約当事者의 条約上 權利가 保障된 가운데 平和的 方法으로 行한다는 政治的 目的 역시 条約에

規定된 諸義務에 相反되지 않으며 이義務들을 制限하지 않는 것  
도 当然하다. 純粹의 法的으로 볼 때 相對方에게 이와같은 政治  
의 目的을 通知한다는 것이 必要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例를 들어 東獨側은 그와같은 書信을 포기 하므로서 独逸国民이  
社會主義的 自決原則에 따라 再統一을 達成하려고 歐洲에 있어서의  
平和狀態에 作用하는 것을 결코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c) 물론 基本條約 第9條는 法的으로 重大한 意義를 가질  
수 있다. 이 条項에 따르면 東·西獨이 이미 締結했거나 東西獨  
에 該當되는 雙方 또는 多邊的 國際條約이나 合意가 이 条約으로  
말미암아 侵害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이 条約 全體의  
條項中 가장 興味있는 条項中의 하나인 것이다.

本弁論은 이 条項이 旧條約에 有利한 優位條項 (Vorrangsklausel)  
인지 調和條項 (Vereinbarkeitaklausel) 인지 아니면  
無影響條項 (Nichtbrührungsaklausel) 인지의 問題까지 다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可能性이 이미 研究文献에서 論議되었으나 (概念規  
定의 困難性 때문에) 어느정도나마 確固한 見解조차 짧은 時間內  
에 形成될 수가 없었다. 本人은 그렇기 때문에 聯邦政府의 主張  
에 가까운 即 第9條의 見解가 旧條約에 有利한 優位條項이라는  
解釈을 옳다고 보고, 以下의 論述에 基礎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聯邦政府의 主張에는 여러가지 困難한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即

〈1〉 聯邦政府가 例를 들어 (1952年 5月 26日에 西獨과  
美英仏 3個國과 締結한) 소위 独逸條項 (Deutschlandvertrag)  
第7条 2項의 條約內容을 되돌아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事実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再) 統一独逸聯邦共和國(西獨)이 갖고 있는 것과 類似한 自  
由主義憲法을 가져야 하며, 歐洲共同體에 統合되어야 한다”는 것이  
第7条 2項에 政治的 目的으로 規定되고 있는데 이 目的是 基本  
條約의 規定內容에 아무런 影響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基本條約 第9条는 東獨側에게도 冷戰時代  
의 狀態를 主張할 權利를 賦与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即 이 條約이 兩側이 追求하고 있는 関係 正常화와 緊張緩和의  
機能을喪失하고 말 것이라는 主張을 할 수가 있다. (例를 들어  
東獨과 蘇聯間에 締結된 1955年 9月 20일의 條約 第5条 2項  
및 1964年 6月 12日 東獨과 蘇聯間에 締結된 友好 및 相互  
防衛條約 第4条 2項과 6項을 根拠로) 끝으로 또한 優位條項으  
로 解釈하는 境遇 信義誠實의 原則이 問題된다. 條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條約当事者는 相對当事者가 雙方間에 合意한 規定內容을  
無視하고 抽象的인 優位條項을 根拠로 第三者(國)와의 條約으로  
부터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明示的으로 義務를 받아 들이며 同時に 이 義務를 形式的으로  
維持하고 있는 特定條項을 根拠로 相對化시키려는 一方의 條約

当事者(당사자)는 새로 합의된 규정내용의 法文書를 通해 相對條約当事者를 여러가지可能な義務의 制限에 대해 不分明한 狀態로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基本條約과 같이 抽象的으로만規定된 優位條項은 이와같은 明白性이 欠如되고 있다. 왜냐하면一方의 條約当事者が 그 相對方이 條約에 임하는 모든 狀態와 또한 그 相對方이 이 條約을 어떻게 解釈하든지에 関해 모두 알고 있기를 期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第9條에 関한 党書交換에서 具体化된 “四個國 権利와 責任”的 優位만이 實際의 意義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 聯邦政府는 独逸政策의 全體的 構想에 있어서 四個國 責任에 決定的 役割을 賦与해 왔다. 이와 関聯하여 이 條約에 对한 聯邦政府의 公式的 解說에 있어서 “独逸內의 두개 国家라고 할때 팔호를” 뿐여 說明하고 있다. 聯邦政府의 解釈家들은 이 解說을 全独逸의 最高 憲法이라고 멋있게 表現하였다.

a) 우선 基本條約의 基礎로 삼고 있는 四個國 理論事項의 表現이 例를 들어 独逸條約의 理解事項과 같지 않는다는 것은 分明히 認識되어야 한다.

(1) 이 基本條約의 表現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欠如되고 있다.

#### - (再) 統一 目的과의 연결

- 独逸과의 講和條約에 관한 言及
- 伯林을 包含하는 独逸全体로서의 関聯對象

(2) 여기에 새로 添加된 것이 1944年과 1955年的 四個國 協定과 함께 처음으로 法的 意義를 알게되는 四個國의 “實行”이다.

이 戰勝國의 “實行”이 独逸 全體에 대한 共同의 責任에서 漸次 멀어져 갔다는 事實은 여기서 더 이야기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부엔나 条約法 協定 第31条 3号에 따라 이와같은 實行은 四個國 責任의 解釈에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 即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to interpretation.*

이와같은 解釈의 重要性은 1972年 11月 9일의 四個國 宣言에서 發生하는데 同宣言은 “四個國의 権利와 責任”과 関聯하여 既存하는 四者의 規定, 決意(意義) 및 實行에 관해 言及하고 있다.

이로써 聯邦共和國의 諸機關은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처음으로 四個國의 地位에 있어서 信託統治의 目적이 表現되지 않는 四個國見解의 規定을 갖게 되었다.

b) 四個國의 権利와 責任의 独逸關係法의 機能에 관한 聯邦政府의 言及은 따라서 最近에 대단히 素朴하게 나타났다.

1972年 末 基本條約에 관해 憲法的 問題點을弁論하기為한 聯邦政府의 解說에서 四個國의 責任은 "独逸內의 두개 国家라는 팔호"를 붙이고 있으며, "四個國"의 責任을 平和條約의 締結時까지 繼続 "存續"함을 明白히 하고 있다.

聯邦內 独逸關係省이 發刊한 (1973年 4月에) 편찬물 (刊行物)에서 "東西獨逸關係의 發展은 聯邦政府가 原來 論議하던 것이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물론 興味있는例外로서 四個國 責任에 대한 팔호의 機能(기능)과 平和條約에 関係되는 論及이 欠如되어 있는 것 이다 (附屬書類 參照)"

本訴訟에서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두개의 独逸國家는 이 書信交換에서 確認된 바와 같이 "四個國의 権利와 責任은 従前처럼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는 式의 發言만을 해왔다 (聯邦法務省)

- 1004E (2321)-198 / 731 12 page ) (註 1)

이와 같은 說明도 法的으로 細密하게 檢討하여 블때 固守될 수가 없는 것이다.

註 1) 發行者, 註, 文書 A VI.

(1) 条約当事者와 四個國(에 대한) 見解를 確定하는 데 있어 決定的인 行為는 書信의 交換이 아니라 이 書信交換에서 豫見하고 있는 (西獨과 西方 三個國 또한 東獨과 蘇聯間의) 覚書인 것이다. 条約当事者が 相互 양해하고 있는 이와같은 樣式의 節次를 이미 共通(共同)의 四個國(에 대한) 見解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明白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一面 西獨과 西方國家間의 関係에 있어서의 四個國(에 대한) 見解와, 他面 東獨과 蘇聯間의 関係에서의 四個國(에 대한) 見解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西獨은 東獨과 蘇聯의 覚書交換에 參与하지 않은 第3者이기 때문에 國際法的으로 볼때 이 覚書를 拘束力있게 解釈할 수 없으며 또는 東獨에 對해 特定의 四個國(에 대한) 見解를 強要할 处地에는 더욱 있지 못한 것이다.

(2) 東獨側의 四個國責任에 對한 態度는 分明한 것이다. 東獨은 独逸政策의 어느局面에 있어서도 西獨側에 對해 四個國의 地位가 東獨에서는 効力を 갖지 못한다는 것을 分明히 해 왔다.

例를 들어 에어푸르트에서 行한 스토프(stoph)의 演說을 살펴보면 “四個國 責任이 東獨과 그 首都 伯林(東伯林)에도 適用된다는 (西獨에 유포되어 있는) 理論은 根拠가 없는 것”이다. 東獨에 関한限 東獨은 四個國 또는 三個國의 權限下에

있지 않은 것이다. 東獨은 独立의 主權的 社會主義國인 것이다.

(1970年 3月 20日字 프랑크 푸르르 알게 마이 베紙에 게재된  
本文)

東獨과 蘇聯間의 党書交換이 純粹하게 法的으로 볼 때 東獨側에게  
四個國地位가 東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命題에서 벗어나도록  
命ず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東獨은 이와 관련된 “實行”을  
내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實行’ 概念은 너무 넓고 추상적으로 理解되고 있어 가령 항공  
교통에서 實施된 관습만이 아니라 西方側의 態度 와는 전혀 다른  
四個國責任에 関한 東獨의 見解도 이 實行의 概念에 包含된다.  
即 東獨이 理解하는 四個國責任이란 “東獨은 포츠담 協定을  
完全히 履行했기 때문에 東獨에 對한 四個國地位는 時代에 맞지  
않은 낡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法的見解는 蘇聯側에 依해 여러 번 東獨側에게 条約上으로  
確認되었던 것이다.

c) 基本條約과 관련하여 全體獨逸의 概念에 不滿足스런  
四個國 權利와 責任의 規定은 오늘날 四個國地位를 어떤 形態로든  
지 全體 獨逸國家와 関聯시켜 관할하는 것을 이 이상 許諾하지  
않는다. 四個國 權利를 좀 誇張해서 表現해보면 英國의 王室이

오랫동안 英聯邦에 意味했던 것과 같은 환상주의이며 이는 唯一代表權의 主張을 輸送 능가하는 것이다.

이 訴訟에서 聯邦政府가 取하고 있는 部分秩序論에 있어 重要한 지붕은 멘젤 (Menzel) 이 “지붕없는 部分秩序論”이라고 그 特性을 規定하므로서 充분히 分明하게 診斷한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 밖에도 聯邦政府는 全体独逸에 대한 憲法的 命令을 (聯邦政府 스스로가 認定하고 있듯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를 第三者에게 委任하므로서 이 憲法的 命令을 公平하게 遂行할 수도 없는 것이다. 憲法은 “完全히 自主的이지 않은데서 얻은 恵澤(長點)”이란 것을 모르며 그런 恵澤이란 政治的으로도 极端적인 兩面刃의 性格을 갖게 되는 것이다.

西獨은 四個國의 國際法的 責任을 指摘하므로서 그의 國內法的義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西獨이 여러 條約에서 東獨이 現在와 未來에 永久히 모든 对内 및 对外的 権利를 가진 外國의 領土임을 承認하는 경우 西獨은 그의 領域에서 또한 内國的 見地에서 (独逸의) 解體 및 分離過程의 終結을 위한 모든 條件을 充足할 것이다.

独逸의 東方政策은 戰勝國의 権利를 一聯의 간섭권으로 格下시켰다. 온 世界가 그것을 認定하였고 오직 聯邦政府만이 이를 認定치 않고 있다.

4) 独逸은 1945年的敗北와 더불어滅亡하지 않았다는(継続說, 소위 没落說觀의 排除)理論과 이 条約과의 關係에 관한限우선 本 条約은 두개 模型의 어느便도 排除하지 않는다.

- 東獨이 独逸을 1945年滅亡하였다는 것을 継続하여 주장하는 것이 禁되지 않는다. 마치 폴란드가 바르샤바 条約과 관련하여 主張한 것 처럼(没落說)

- 独逸은 그 領土위에 두개의 새로운 国家가 設立되는 時期에 没落했을 수도 있다. (소위 分割說)

이는 “지붕없는 部分秩序論의 結果이다.

- 独逸은 基本法의 實際的 適用範圍가 縮小되었다. 独逸國家의 領土에서 分離되어 새 国家가 形成되었다 (소위 縮小說).同一說의 結果이다.

여기서는 이런 理論의 論争에 너무 깊이介入할 必要是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두개 国家 模型이던 基本法이 基礎하고 있는 国家概念과 符合되지 않기 때문이다.

5) 基本條約이 基礎하고 있는 二個國家 模型은 또한 유엔憲章의 諸原則 특히 自決權으로 말미암아 損傷을 입지도 않는

것이다.

만약 両條約 当事者가 그들의 自主国家性을 文書化하고 동시에  
自決權을 主張한다면 그들은 法的으로 그들의 行動이 自決權과  
符合된다는 것을 表現하는 것이며 이는 中部 유럽에서만 特別한  
規定을 必要로 하지 않는 것이다.

6)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本人은 뮤글러 (Wengler) 教授의  
意見書에서 (註 2) 다음의 것을 引用하기로 한다.

本條約의 國際法的 性格은 聯邦政府가 東獨을 國際法의으로 承認  
하지 않았고 承認하려 하지도 않는다고 宣言하므로서 消滅될 수  
없는 것이다. 東獨을 “國際法의으로 承認하지 않으려는 聯邦政府  
의 意見에 대한 敵愾이 많은 發言들을 단지 國際法의 無知의  
所產이나 연막작전이 아니라고 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客觀的으로 國際法의 意味의 國家인 國家들이 그들중 한 國家가  
그러나 다른 한 國家를 國際法의 意味의 國家로 形式的으로 承認  
하는 것을 거부하고, 反面 이 國家는 國際法의 意味의 國家性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第三國에 의해서 주장할 뿐만 아니라 第三  
國에 의해서 이 國家성이 承認되는 가운데 이를 國家間에 하나  
의 条約이 締結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原則이 適用된다.

註 2) 發行者, 註, 文書 C VI 1 參照。

만약 그 条約이 通常 國際法의 条約에서만 볼 수 있거나 그 条約이 國際法의 条約의 内容으로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内容이 그 条約에 들어있는 경우 明示의이고 相對方에 의하여 受諾된 留保 即 이 条約은 國際法 秩序에 包含되지 않으며 “어떤 다른 것”이라는 留保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條約의 内容이 明白히 國家間의 國際法의 条約이 아니라는 両当事者가 合意한 留保가 存在하지 않는 条約을 締結하는 경우, 한 國家가 相對國家와 常駐外交關係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声明하므로써 國際法의 条約의 性格이喪失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両국이 一方 또는 他方에 所在하는 政府의 常駐代表로 交換할 것에 合議하는 경우 이 代表는 만약 그 代表들에게, 또는 他國家가 一方의으로 取消할 수 있는 法律에 의해서가 아닌 類似外交的 地位가 賦与되었다면 國際法에 規定된 常駐外交官의 特權을 갖지 못한다는 明示的 合議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오늘날 그와 같은 類似外交的 特權을 가진 常駐代表도 第三國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이든 自動의으로 一般國際法에 따라 外交官의 特權이 賦与된다고 보는 것이다. 例를 들어 英聯邦 國家間에 交換되는 高等官 (High Commissioners)은 接受國의 特別法에 의하여 当地에서 外交的 特權을 享有하도록 보장되고 있으나, 第三國을 通過하는 경우 이들 國家가 이들에게 外交官의 通行地位를 거부할 수 없다는 데는 疑心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二個國間에 있어서 相互代表團에 對한 特別規定은 그  
代表들이 第三國과의 諿係에서 갖는 外交官的 性格을 부인할 수  
없으며, 더욱기 이와같은 特別規定만 가지고서는 그 規定을 内포하  
고 있는 條約이 國際法的 條約이 아니라는 것을 証明하기에는  
不適當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基本條約 第 8 条가 정말로  
그와같은 特別規定을豫見하고 있는지의 問題는 도의시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境界保障의 問題에 關하여 (註3)

東西獨間 “既存境界”的 確定과 관련되는 諸問題는 條約內에서  
여러번 取扱되고 있다.

- 基本條約 前文 第 3 項에서 “境界의 不可侵性”은 平和保障의  
一般的 原則으로 規定되고 있고

- 第 3 条 2 項은 두개 独逸國家의 條約上 相互義務에 對한 基  
本原則을 規定하고 있으며

- 基本條約 附屬 議定書 第 1 号에서 共同의 境界表示와 文書化에  
관한 問題가 規定되고 있는데 境界委員會의 任務는 議定書에 對한

註3) 発行者, 註, 書類CV(부록)参照。

宣言에 仔細히 要約되어 있다.

### 1) 前文 第3項

基本條約 前文 第3項의 規定은 바르샤바 条約前文 第5項의 字句와 꼭같이 規定되어 있다. 即  
“…(歐洲의 모든 国家가 現在의 境界内에서) 境界의 不可侵性과 領土의 不可侵性 및 主權이 尊重되는 것이 平和의 基本条件임을 意識하여”

內容上으로 볼때 前文의 文章은 모스크바條約 第3條 1項과 마찬 가지이다. 條約 当事者가 歐洲内에 있는 모든 国家의 境界에 대한 不可侵性을 承認하는 것은 이미 모스크바條約 第3條에 대한 討論에서 많은 問題를 야기시켰다. 이 경우 西獨은 유럽내의 모든 国家境界에 관해 声明을 발표할 權限이 없다는 것과 이로써 西獨이 유럽内에서 蘇聯의 霸權的 地位를 確固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 当時에도 正當하게 主張되었듯이 유럽에 있어서 境界의 不可侵性을 承認한다는 것은 雙邊條約의 경우 유럽 내에서 國際法에 反하는 領土變更에 作用하지 않을 不作為의義務만을 包含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独逸內的 関係에 있어서도 더욱이 必要한 것이다. 모스크바條約과는 反對로 基本條約에 있어서는 유럽의 모든 国家의 領土不侵性에 관한 問題가 前文에만 나타나고 이 條約의 施行部分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條約當事者가 이 基本條約을

通过 어떤 政治的 目的을 추구하려는가의 問題와는 相關없이 正當  
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두개의 独逸国家가 그 自身의 領域  
밖에서 個別의으로나 共同으로나 유럽에서의 境界에 對한 責任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基本條約에서 第3條 2項  
以上의 領土 또는 境界保障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다. 両独逸國  
家는 유럽에 있어서 모든 暴力的 領土變更이나 境界侵害을 承認하  
지 않거나 또는 또다른 그 以上의 措置를 取한 계기로 관찰할  
義務를 지지 않는 것이다.

東歐와의 諸條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基本條約에 있어서도 무  
엇보다도 領土 不可侵의 尊重原則이 提示되고 있다.

- 이에 反하여 유엔憲章 第2條 第4項에는 “一個國家의 政治的  
獨立”의 保障對象과 더불어 政治的 不可侵性이 規定되고 있다.  
東歐諸國의 條約 規定에 있어서는 “政治的 不可侵”이란 表現을  
使用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傾向과 可能성이 상당한  
정도 開放되어 있는 것이다. 東獨이 1968年 8月 체코슬로바키  
아에서 自由化運動을 弹壓한 것과 같은 行動은 이 基本條約의 精  
神과 文句에 反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侵略은 東歐諸國  
의 理解에 따르면 체코의 領土 不可侵性을 損傷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1968年 8月 21日 鮑聯이 U·N 安全保障理事會議長에게 보낸

蘇聯의立場에관한書翰参照。

U.N. Documents S/8759 및 S/8772)

西獨은 条約規定의 表現을 잘 選択하므로서 社會主義國家들이 그들의 세력범위 内에서 社會主義的 秩序의 維持를 감시해야 한다는 社會主義國家들의 特別한 責任을 비록 直接 承認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西獨側이 基本條約과 더불어 希望하는 東歐圈에서의 政治環境의 自由化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問題들을 現實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両独逸相互間의 関係에 있어서는 領土不可侵以外에도 政治的 不可侵性이 보장되고 있다. 이와같은 保障은 基本條約 第2條에다 U.N憲章과의 目的과 原則를 規定하므로서 이루어지는데 政治的 不可侵性에 屬하는 主權의 平等, 独立과 自主性의 尊重등도 除外되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서 ■聯邦政府는 全体의 独逸政策의 槩想이라 는 鏡點에서 干涉의 限界를 低下시키는데 対한 関心을 가졌어야 했다. 왜냐하면 人間의 苦痛을 경감시켜주고 独逸의 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가능하다면) 東獨의 경우 外部的 圧力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基本條約 第3條 2項

領土의 不可侵性과 꼭 마찬가지로 基本條約이 적용되는

地域에서 境界의 不侵害原則이 또 한번 반복되며 (对) 西獨關係에 있어서 規定되고 있다.

基本條約 第3条 第2項을 통해 兩側은 그들間의 既存境界線의 不侵害原則을 現在와 未来에 있어서 보장하며 領土不可侵을 無条件 尊重할義務를 지고 있다. 이미 前文 第3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規定도 바르샤바條約(第2条 第2項)의 規定과 그 文句가 꼭 마찬가지이다. 第3条 第2項의 境界規定은 단순한 武力使用의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자세한 것은 부싱글러 意見書参照) 이 規定은 “그들間의 既存境界不侵害”이라는 用語로 고쳐 쓰고 있다. (東歐와의 條約에 있어서와 마찬 가지로).

“現在와 未来에 있어”라는 文句를挿入함으로서 未来의 形態도 함께 包含된다는 것이 強調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된다. 卽, 現在와 未来에 있어서의 境界不可侵이라는 것이 境界不變의 의미로 解釈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問題가 나타나며 그 結果 境界問題에 있어 平和로운 変更도 제외되어 売地利와 独逸間의 関係에서와 비슷하게 두개 独逸國家의 結合禁止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争点은 訴訟의 結果에는 重要하지 않다. 왜냐하면 境界確定의 存続力은 그것이 일단 成立되는 경우 憲法的으로는 重要하지 않기 때문이다. 境界의 確定을 通過 独逸은 憲法上으로 그리고 國際法上으로 分斷되었다. 聯邦政府가 내세운 部分秩序論에 따르면 두개의 国家가 새롭히 結合하는 것을 基本條約의 前文에 따라 統一이

維持되어야 할 国家와 맞지 않는 새로운 国家의 形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 IV. 第 6 条의 法的 内容과 意味.

基本條約 第 6 条 第 2 項의 規定은 明確하기 때문에 本人은 이 問題에 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本人은 여기서 불행하게도 두개 独逸国家相互間의 “보다 緊密하고 特別한 関係”를 確認할 수가 없는 것이다. 当法廷은 어제의 判決에서 基本條約의 条文이나 바이에른州政府가 提示한 論拠에는 言及함이 없이 그 判示理由에서 이보다 緊密하고 特特別한 関係에 重大한 意義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本人은 여기서 國際的인 명성을 가진 独逸의 國際法學者 부싱글러教授의 見解를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그의 意見書에서 引用하려고 한다.

聯邦政府가 基本條約을 締結하여도 東獨을 계속하여 外國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主張하는 것은 전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各條約当事者は 자신의 國土内에서만 最高權을 行事할 수 있다고 基本條約 第 6 条가 規定하고 있다면 이로써 西獨이 東獨地域에 대해 領土를 接続시 키므로서 西獨의 民法, 刑法 또는 行政法을 통해 어떤 사람의 行為義務를 부과할 계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主觀的인 権利나 特惠를 부여하므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外國國土인 個別領土를 內國 即, 自國領土와 마찬가지로 取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取扱은 東獨에만 該當되는 것이 아니고 非獨逸國家領域에도 該當되는 것이다. 西獨의

法律이 그 領土의 適用範囲를 明示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東獨의 地域도 内國으로 理解하려고 한다는 것이 西獨의 法律에 一般的으로 該當된다면 그것은 바로 基本條約 第6條의 의미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V.

基本法, 특히 소위 統一維持條項 및 前文의 再統一原則에 있어서의 独逸概念과 그 規定

이 問題와 関聯하여 重要한 것은 무엇보다도 前文中 다음의 部分들이다.

第1項; "...民族的 및 國家的 統一을 유지할 意思에 찬"

第2項; "独逸國民(즉 西獨의 諸州에 屬하는 独逸國民)은 함께 參与하는 것이 拒否된 저쪽의 (東獨의) 独逸人을 為해서도 行動하였다."

第3項; 모든 独逸國民은 自由로운 自決로서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成就하도록 당부한다.

### 前文의 法的性質에 関한 新見解

前文의 法性質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諸見解가 있다.

- 政治的 告白; 一定한 프로그램 또는 自明한 事項에 對한 国民

## 의儀式的宣布

- 基本法의 解釈에 있어서 지켜야 할 法的으로 重要한 諸確認 및 法的 諸保全

### - 모든 国家機關을 拘束하는 法的 義務

聯邦憲法 裁判所는 1956年 8月 17日 独逸共產黨 禁止裁判에서 憲法前文에 對한 原則的 態度表明에서 모든 解釈 可能性을 考慮하였고 무엇보다도 우선 賦与되는 前文의 “政治意義”以外에도 法的 内容을 確認하였다. 即 序言도 法的 内容을 갖는 것이다. 이 序言은 基本法의 解釈에 있어서 지켜야 할 法的으로 重要한 諸確認이나 法的 諸保全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이 序言에서 西獨의 모든 国家機關이 負担할 法的義務가 導出되어, 全力を 다하여 独逸의 統一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이 目的을 為해 여러가지 措置를 取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한 適合性이 모든 国家機關의 政治的 行為의 基準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判例集 S 127). 联邦憲法裁判所는 또한 소위 兵役義務裁判(判例集 第 12卷, 45 page 以下 - 특히 51 page)에서도 前文의 法的性質을 確認하고 있는데 “独逸의 再統一은 물론, 政治的 目的만이 아니라 憲法的 命令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다.

聯邦憲法 裁判所의 見解에 따르면 前文의 法的性質은 全體前文에  
해당된다 (判例集 第5卷 127 page)

그와 같은 見解는 基本法의 成立過程에서도 表現되고 있다 (슈미드  
議員의 發言参照, JōR 1.1951, S.51) ; 前文은 하나의 簡潔한 序  
言 以上의 것이다. 前文은 (우리들은 基本法 判定過程에서 무엇  
이 遂行 (發生) 되어야 할 것인가는 完全히 意識하면서 進行했던  
것이다) 무엇이 形成되어야 하며 또 무엇이 아직 形成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며 또한 이미 實現된 構成的 要素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前文은 그러므로 法的으로 重要한 確認, 評価, 法的  
保全 및 要請등을 同時に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 前文의 統一維持 및 統一成就條項의 内容

“民族的 및 國家的 統一을 維持할 意思에 찬” 이란 前文의  
文句는 “統一維持根拠條項” 또는 “統一維持命令”이나 “統一維持  
委任”으로 나타난다.

前文 第1項은 (第3項과는 反對로) 法的 命令이나 委任으로  
理解되거나 보다는 確認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法的으로 重要하지 않은 動機인) 하

나의 모티브에만 関係된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이에 反하여 모든 不利한 与件과 西方的 国家를 建設함에도 不拘하고 独逸의 国家的 統一을 固守하려는 憲法制定者의 確認은 同時에 法의 内容을 發散할 수 있는 것이다.

a) 憲法制定者의 確認은 命令과 꼭 마찬가지로 法의 拘束力を 가질 수 있다. 規範이 하나의 確認의 形態로 나타나든 命令의 形態로 나타나든 그것은 法技術의 問題인 것이다.

確認의 法의 行動半徑은 命令을 오히려 능가하는 것이一般的이다. 確認이라 하는 것은 대개相當한 程度의 具体性을 갖고 있으므로 憲法的 命令이 가끔 그려하듯 그때그때 願하는 解釈을 마음대로 供給할 수는 없는 것이다. 命令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規範의 組織속에 存在하며 法을 適用하는 경우 法益裁量이나 裁量을 通해 広汎한 自由로운 活動무대를 갖게되는 것이다.

b) 国家的 統一을 維持하려는 意思를 動機로 혹은 法의으로重要な 確認으로 아니면 法의 保全으로 表示하든 그것은 別로 重要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動機로 만약 그것이 内的動機로만 머물지 않고 憲法典에 規定되는 경우 法의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広汎한 方針條項의 性格을 되었던 바이탈共和國 憲法에 反하여, 엄격한 規範의 性格을 떤 憲法으로 移行해가는 基本法의 一般的 傾向에 符合되는 것이다.

c) 統一維持條項의 解釈에 있어서 憲法成立當時에로 되돌아가면, 이 条項이 상당히 뒤늦게 憲法制定會議(議會評議會)의 討議에 提示된 것을 確認할 수 있다. 이렇게 뒤 늦게 討議에 提示된理由는 前文에 对한 그 以前의 提案들이 独逸國家의 繼続的 存在에 대한 見解가 또한 全히 不充分하게 表現되었기 때문이다.

憲法制定會議의 原則規定委員會에서 전 (Zinn) 議員은 말하기를  
(1946年 10月 6日字 速記錄 參照) :

“결국 우리는 우리의 見解에 따르면 아직도 憲法的으로 存在하는 独逸의 不可分性에 对한 要請을 즉 바이마르 憲法에 의하여 建設되고 形成된 것과 같던 당시의 独逸을 抛棄할 수 없다는 데 对해 言及해야 할 것이다.”

풀·망골드 議員은 (1948年 10月 7日 速記錄參照)

“새 驟邦國家가 바이마르共和國과 또한 지금까지의 独逸國家와 繼續性을 갖는다는 것이 前文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1948年 10月 12日의 速記錄) ; “우리는 事實上에 있어 바이마르共和國의 憲法을 基礎하고 있는 領土的 存立이 侵害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모든 憲法秩序는 国家概念을前提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여 많은 憲法들이 이前提된 国家를 仔細히 表現하거나 法的으로 規定하는 것을 抛棄하고 있다.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国家領域과 憲法領域은 같은 것이다. 国家の 自明事項이나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地位를 憲法에 規制할 理由도 全혀 없는 것  
이다. 그러나 基本法의 制定에 있어서는 그 狀況이 달랐다.

1945年을 경과하여 独逸国家의 繼続性의 問題는 疑心의 餘地가 全혀  
없지 않았다. 独逸軍의 降服當時 (1945年 5月 7 - 8日), 되  
니츠 (Dönitz) 政府의 拘束 (1945年 5月 23日), 勝戰國에  
의한 独逸最高國家權力의 引受 (1945年 6月 5日), 포츠담  
(1945年 8月 2日)에서 여러가지 規定이 採択되던 당시 独逸  
의 制憲議會는 그때마다 그 地位를 費失해야 했다.

- 또한 더 나아가 새로 設立하는 國家는 以前의 独逸国家와의  
關係에서 그 量과 質이 決定되어야 했다.

独逸의 憲法制定에 있어서 우선 解決되어야 할 이 問題에 대한  
憲法制定會議의 対答은 前文 第1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基本法의 여러 規定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前文 第2項 第3項,  
基本法 第23條와 第146條). 憲法條文이 비록 憲法全体를 이해하  
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한 이 問題를 明示的으로 規定하지 않았다  
하드래도 이 問題는 解釈을 通하여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는 다른 問題를 取扱하면서 “憲法을 内的統一”을  
이루며, “그 全體的 内容으로부터 그 憲法 以前에 存在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본의 결단이導出될 수 있을 것이다. (判例集第1卷 227 page 以下 第13卷 56 page)라고 判示했다. 마찬가지로 問題는 憲法의 基本의 前提인 国家概念의 理解에도 해당된다.

- 独逸의 國際法의 主体로 繼続 存続하는 것이 客觀的 國際的 状況에도 相應했는가의 問題는 여기서 論議된 憲法의 問題에는 重要치 않다. 基本法은 그 適用範圍內에 있어서 憲法의 地位의 國際法의 爭點에 対해 결단을 내리며 이 決定에 모든 国家機關을 拘束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対한 例는 西伯林의 地位에 対한 聯邦憲法 裁判所의 判決에서도 分明히 나타난다(判例集 第5卷 7面, 第7卷 7面).

(1) 오늘날 支配的인 三元論에 따르면 國際法과 憲法(国内法)은 原則적으로 分離된 두개의 法域을 이루며 이 規範들間에도 相互符合될 必要性이 없는 것이다. 이 例는 1973年 6月 18日 本法廷의 判決에서도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I BVQ 1/73)(註4)

(一般的 國際法規의 優位와 直接的 適用에 関한 規定인) 基本法 第25條는 비록 두개의 領域內에 調和를 이루려고 努力하기는 하나, 이는

註4) 発行人 註書類, BX参照.

1) “一般的 國際法規”에 만 측 一般的 國際慣習法에 만 関聯된다. 이 國際慣習法은 勝戰國이 敵國에 對하여 要求하는 特種規範( Normen sui generis )으로서의 國際法規를 包含하지 않는다.

2) 國際法의 適用이 固定되지 않으며 따라서 國際法規가 適用되는 여려가지 現實을 包含하지 않는다. 國際社會에는 모든 該当事項에 國際法을 拘束的으로 適用할 機關이 아직 存在하지 않으므로 制憲議會는 그에 依하여 設立된 國家를 拘束하는 形態로 紛爭中의 國際法 問題에 對한 態度를 取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 見解는 東歐와의 諸條約 및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되풀이하여 主張되던 즉 前文의 独逸概念은 變質되었고 또 独逸concept은 承認을 領土的으로 缩小되었고 現実대로의 承認을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論拠를 弱化시킨다. 基本法의 成立歷史나 聯邦憲法裁判所 判決에서 独逸의 國家的統一이 1937年 12月 31日의 境界로 表現되고 있다는 데에 아무런 의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基本法에 따른 國籍을 定義하고 있으면서도 그 文句 그대로만 본다면 領土高權에 関해서는 아무런 言及도 없는 基本法 第 116 条 1 項은 적어도 하나의 間接証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37年 12月 31일의 境界에 따른 独逸 即 基本法的 國家concept은 (基本法 第 79 条에 따른 合法的 方法이든 革命을 通해서이든) 憲法을 改正될 때까지 拘束力を 갖는 것이다. 이는 本来 勝戰國 意思였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國際法에서 發生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憲法制定者들이 이를  
願했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基本法上의 独逸概念을 領土的으로가 아니라 人間과 関聯  
시켜 理解한다면 고작해야 基本法의 独逸concept으로 부터 옛 東部  
地域을 除外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고작해야 憲法規範의 “意味變更”이라는 法的形  
態로 說明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變遷”은 一般的인 見解에 따르면 實際의 規範의 適用範  
圍(“規範領域”, “規範分野”)가 變更될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規範의 解釈 자체는 變化된 狀況에 適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法의 理性(“規範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存在하기 때문이다.

東獨을 独逸의 概念에 끌어 넣는데 反對할 事實上의 根拠들을  
이미 1949年の 憲法制定者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意味變遷이라  
하는 特別한 根拠는 새로 証明되어야 할것이다. 어쨌든 人間을  
基準으로 해서 볼때 東獨의 地域도 独逸의 概念에 包含되므로  
基本條約에 있어서의 意味變遷이라는 問題는 重要한것이 못된다.

(3) 規範에만 局限된 意味變遷의 制度(事態)와 密接한 関係  
를 갖고 있는것이 “조용한 憲法變遷” 即 政治的 社会的 前提의  
見解가 바뀜으로 말미암은 (제한된) 規範變更의 広範한 制度(事  
態)인 것이다.

그와 같은 조용한 憲法變遷은 基本法 第79條 1項에 規定된

形式的 憲法의 原則外에도 하나의 機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変遷은 憲法制定當時에 比하여一般的인 政治的 社会的 意識이 變更된 境遇 일치라도 憲法을 生動하는 憲法으로 維持시켜 주는 것이다。 憲法의 歷史的 繼続性을 위하여 어느程度 必要한 그와 같은 “流動的” 観察 方法은 그러나 基本法 第79條 때문에 일관성 없는 더우기 論爭의 多數에 의하여 政治的 論爭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관철된 法의 改正인 境遇失敗하고 말것이다。 키머니히 (Kimmrich) 도 独逸의 概念에 있어서 “조용한 憲法의 変遷”을 推定하는데 反對하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Politische Studien, 特別号 155. (24) 1972年 10月 “Ein Staat auf Rädern” 參照).

도처에서 認定되고 있는 “默示的 憲法變遷” 이긴 하지만 憲法의 基本原則에는 適用되지 못하는 것이다。前文 第3項의 소위 再統一規定은 여러가지 變形이 可能 하나 国家概念은 憲法的으로 憲法典밖에서는 改造할 수 없는 憲法의 基本的 構造에 屬하는 것이다。

(4) 国家concept을 憲法的으로 繼續 進展시켜 보면 疑心할 여지도 없이 存在와 当為秩序間의 緊張關係에 到達하게 되는데 이는 法學者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實務 政治家들에게는 아마도 感情을 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国家concept이 冒險的인 外交政策에 의하여 处理 되어야 하는 것이다。国家concept은 적어도

憲法에 依하여 形成된 諸制度와 마찬가지의 保護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国家의 興亡은 단순히 議会의 多数에 左右될 수 없는 事件인 것이다.

議会評議회(Parlamentarischer Rat)는 "西方的 国家나 独逸의 統一"이냐의 兩者択一의 立場에서 西方国家에 有利하게 決斷을 내린것이 아니라 이 決定으로 말미암아 徒來 独逸의 國際法의 主体에 影響을 끼치지 않는 만큼 그리고 그 条件下에서 西方国家를 建設한 것이다.

1. 이와 같은 国家의 建設은 두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基本法이 設定한 国家秩序는 全体独逸国家의 보다 큰 秩序와 同一한 것이다. 即 이는 核心国家說의 形態로 나타나는 同一說(Identitätstheorie)이다. 이 說은 独逸에 있어서 오랜동안 支配的 理論이 있고 國務의 处理도 이에 符合되었다.

(Vgl. BVerfGE 3, 3195; 6, 309 (338, 3635, 366) - Konkardatsurteil; BGHZ 13, 265 (294/95); BFH, BSTB 1 1952 III, S. 128 ((129).)

國際法主体로서의 独逸国家는 단지 西獨의 領土만을 包含한다고 하는 縮小国家說(Schrumpfstaatstheorie) 이런것은 보다 広範한 独逸概念에 適合치 不할 것이다.

2. 基本法에 의하여 設定된 国家秩序는 繼統存続하고 있는 全体 国家의 秩序가 아니나 이 全体國家의 秩序를 배려 하려 하지 않고

## 그 秩序 밑에 從屬시키려 하는 것이다 (소위 部分秩序說)

旧独逸의 國際法의 主体를 統承하여 東獨과 西獨의 法의 地位가  
原則的으로 同等함을 可能케 하여 주는 이 部分秩序說은 아마도  
社民党과 自民党聯立政府가 東方政策의 初期에 取한 構想의 基礎를  
이루고 있다.

憲法制定者는 伝來된 國際法主体에 관하여 規定하므로서 (前文 第  
1項) 虛構的 内容을 規定한것이 아니라 同時に 前文 第3項에서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成就” 하도록 命令하고 있는 것이다.

1. 憲法制定者는 그가 規定한 前文 第1項의 規範과 戰後独逸의  
實際的 状況이 다르다는것을 意識하고 있으며 이를 克服할것을 要  
求하고 있는 것이다. 憲法制定者는 基本條約에서도 明示的으로 規  
定하고 있듯이 (基本條約 第1条 第7条; 모스크바條約 第1条 第2  
項; 바르샤바條約 第31条 參照) 正常化過程을 要求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전혀 다른 前兆의 正常化이기는 하나 即

a) 基本條約에 있어서의 正常화란 規範이 事実의 状況에 適  
應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b) 基本法의 前文에서는 反對로 實際의 状況이 規範에 適應  
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規定으로 말미암아 現實  
과 동 떨어진 外交政策이 聯邦政府에 賦與된 것이 아니라 率  
直하게 外交의 目的을 民主的 節次에 있어서 權限있는 諸機關

에 公開提示하고 必要에 따라서는 基本法의 改正을 誘導할 수 있는 外交政策을 聯邦政府에 賦与하고 있는 것이다.

兩獨逸國家間의 “特別한 関係”를 固有한 國際法的 関係로 보려고 하는 것도 問題를 解決하는 適當한 試圖가 되지 못한다. 獨逸의 國際法學者나 政治家들이 以前에 試圖해 보았으나 관철할 수 없었던 “國民과 領土”(Volk und Raum)를 固有한 様式의 國際法概念으로 発展시켜 보거나 “固有한 戰時占領”(occupatio bellica sui generis)으로 規定하려는 試圖들도 適當치 못하다.

2. 基本法의 前文 第1項과 3項은 目的과 手段의 関係인 것이다. 憲法의으로 確固하게 規定되고 伝來된 獨逸의 國際法主体는 適當한 手段을 通해 다시 活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國家機關을 拘束하는 義務인 것이다(聯邦憲法裁判所判例集 第5卷 127面；参照).

a) 憲法制定者は 基本法 第3項에다 모든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獨逸의 統一과 自由 成就의 目的을 위해 努力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目的 設定으로 부터 特定의 行動을 取하라는 命令이 導出될 수 없고 目的을 위한 方法의 選択에는 聯邦憲法裁判所가 獨逸共產黨禁止判決에서(判例集 第5卷 128面) 明白히 判示한 것 처럼 広範한 “政治的 自由裁量”的 領域이 存在하는 것이다.

前文 第3項의 實際的 裁判規範性에서 볼때 이 規定은 보다  
不定의 事項에 即 再統一을 저해하는 措處들을 憲法的으로  
制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適用한다는 結果가 나타난다. 이것  
은 專門的 文獻에서 가끔 使用되고 있는 “再統一妨害禁止”  
規定이라는 解釈과 다르며 이런 解釈은 憲法制定者의 意思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前文 第3項은 独逸의 統一成就를 위  
한 適當한 手段으로서 “自由로운 自決”을 指摘하고 있다.

(基本法 第146條도 역시 “独逸国民의 自由로운 自決로서”라는 文句가 있다). 여기서 本人은 웹글러 (Wengler) 教授  
의 意見書 (28 페이지 以下)를 指摘하고자 한다.

憲法에 規定된 自決條項은 再統一을 위하여 原則의으로 自由롭  
게 選擇할 수 있는 方法을 단지 制限할 따름이다. 即 自由  
를 異생시키는 대가로 統一을 達成하는 境遇의 再統一禁止는  
自由로운 再統一의 原則에 対立되는 것이다.

再統一을 実現함에 있어서 西獨의 諸機關에 부여되는 裁量의  
範圍은 만약 國家的 統一을 (아직 存在하는 만큼) “維持하라  
는 이 命令(規定)의 基礎가 國家機關의 어떤 措置로 말미암  
아 損傷되는 境遇 그 限界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이미 指摘한 憲法的 基準들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다.

a) 基本條約을 分析해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생각해 온 統一의

方式들이 배제되는結果가 나타난다. 即 아직까지 存在하는 統一의 法的 띠를 固守하며 점차 独逸内部의 制限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인데 이 方式은 또한 다음과 같은 希望과 결부되고 있다.

(自由로운 西유럽에 屬하는 西獨의 經濟的 政治的 발달함과 매력을 발판으로) 東獨의 内部事情이 점차 변할것을 期待하면서 점진적으로 独逸전체에 活氣를 불어 넣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講和條約을 통해 戰勝國들과의 問題들을 解決하고 그들의 留保權을 代替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式은 지금에 와서는 基本條約의 前文과 第3条 때문에 (現在와 未来에 있어서 境界의 不侵害性과 現在의 境界의 不侵害를 平和의 基本条件으로 한다는) 不可能하게 되었다.

理論的으로 아직 생각해 볼 수 있는 남아 있는 唯一의 方法은 먼 훗날 戰勝國들과 또한 (基本條約이 締結된 以来) 東獨과도 協議하여 새로운 聯邦的 地位에 관하여 合議를 成立시키는 것이다. 即 우선은 統一에서 멀리 떨어져 물러섰다가 언젠가 다시 統一에接近한다는 “迂迴說”을 말한다.

그러나 基本條約 자체에는 統一의 目적이 아무데도 規定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이 迂迴方式에 反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前文에 規定되고 있는 “民族의 問題에 있어서 相異한 “見解”를 取하고 있다는 事實은 東獨을 이 “民族의 問題”를 承認하고 이를 取扱하도록 強要조차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基本條約 자체는 똑똑하고 明白하게 東獨이 對內・外의으로 自主國家

임을 法的으로 確定하고 또 道德的으로 正當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東獨에게 有利한 条約이 締結되었다는 事實은 다음 例에서  
나타난다. 即 이 基本條約은 實質的으로 아주 커다란 不平等이  
存在해 있는 곳에서도 兩側을 平等하게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参考로 基本條約 第1條를 보면 "平等權의 基礎위에서 先天的 關係"  
를 發展시킨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발사명령(총을 쏘게하는 것)  
이 善隣關係를 해친다는 事實이 아무데도 規定되지 않고 있다.  
또는 記者들의 活動 조건으로 "現行 法秩序의 範圍"를 基礎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分斷國家들(韓國, 越南)에 있어서는 그  
들의 統一의 問題를 現實的인 問題로 維持하며 거듭 強大国의 支  
援을 얻어 내는데 成功하고 있는데 反해(最近 베트남에서의 休戰  
協定 參照) 基本條約에 따르면 世界는 徒來와 같은 "獨逸問題"  
는 이 以上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1972年 11月 8日字 타임스誌 參照) 이에 따르면 아무리  
外交的 表現을 使用한다고 해도 이 基本條約이 비스마르크가 建  
設한 独逸國家를 겨우 百年이 지난後 (完全) 分解했다는 事實을  
감추지는 못한다. 라고 쓰고 있고 바리칸도 역시 報道에 따르  
면 西獨主教의 교구에 속하는 東獨의 地域을 그 교구로부터  
分離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獨逸의 國家的 選択"은 特殊한 方法으로 開放되어  
있다 라고 主張될 수 없으나 아직도 聯邦政府는 비록 "어떤

方法·인가에 관해서는 言及이 없지만 自由로운 自決로써 統一을 이룬다는 目的을 固守하겠다고 여러 声明에서 表明해 왔다.

그 結果는 前文의 法의 内容이 本来의 一般的 見解와는 反對로 公開的으로 宣布한 한 國家機關의 憲法違反이 排除된다는 事實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 b) 基本法의 國家概念과의 符合性

再統一規定의 問題点보다 월씬더 複雜한 問題는 基本條約의 締結로 發生한 國家構造의 變遷이다. 東歐와의 諸條約을 締結하는 데 있어서 그 綜合的 構想을 보면 우선 “西獨”과 “全獨逸”的 法의 主體를 分離시키는데서 出發하고 있다.

1.一面에 있어서 西獨과 또한면에 있어서 全獨逸을 分離시키는 것은 以前의 聯邦政府들이 主張해 온 同一說의 基本思想과 모든 面에서 確實히 反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同一說에 憲法의 地位를 賦与하지 않는 한 聯邦政府는 이 同一說의 見解를 統一成就委任의 範圍内에서 政治的 与件에 따라 變形할 수 있는 것이다. 聯邦政府는 예전에 이미 이런 變形을 단행했던 것이다. (例를 들어 本来 西獨과 西方 3個國間에 締結된 獨逸條約 第7条 3項에 規定된 3項을 抛棄한것을 參照. 이 3項에 따르면 統一獨逸이 同一說에 따라 이 獨逸條約과 歐洲統合諸條約에서 發生하는 모든 義務에 拘束된다는 것을 예전하고 있었다. 統一이 되는 境遇 改正

條項이 이 規定의 자리에 들어 갔다).

2. 그러나 소위 部分秩序說의 立場에서 본다고 하드래도 憲法的問題点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aa) 우선 聯邦政府가 部分秩序說로 선회하는 것은 적어도事實上 그리고 政治的으로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게 보인다. 만약 聯邦政府가 同時에 이 部分秩序說의 見解에 따르면 월전이 되는 (ultra vires) 對象에 대해 葉約을 締結하는 境遇인 것이다. (部分秩序說에 따르면 聯邦政府는 하나의 局部的 事實上의 權力이며 그 自身의 勢力範圍內에서만 國際法의으로 拘束力있게 日常의業務를 規定할 수 있으나 全體獨逸에 관한 事項은 規定할 수 없는 것이다).

bb) 基本葉約의 批准과 더부려 部分秩序說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独逸全體로서의 國際法 主体가 現實的 与件에도 不拘하고 法의으로 繼続 存在한다는 것을 밀받침해 줄 수 있었던 實質的 基礎의 나머지를 損失하고 마는 것이다. 部分秩序說은 統一獨逸만이 講和葉約을 締結할 수 있다는前提에서 出発하였다. 그러나 지금에와서는 講和葉約의 모든 基本的 問題가 이미 따로따로 締結된 講和葉約에서 解決된 것이다. 独逸東部地域에 있어서의 領土變更의 正當性은 모스크바葉約과 바르샤바葉約과 더부려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承認되었다 (바르샤바葉約 第1條, 3項; 모스크바葉約第3條). 東西獨逸 基本的 關係는 境界에 관한한 단지 基本葉約에

規定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西獨이 國際政治무대위에도 함께 出現하고 있다. 即 유엔에의 加入 (基本條約의 調印을 契機로 議定書에 관한 声明 參照), 유럽에서의 安全保障 및 軍備縮小問題等에서의 協調 等을 그 例로 들수 있다. 이로써 部分 秩序說은 講和條約의 지렛대 "로서 그 核心이 적중한 것이다. 反對로 戰勝國의 政策은 講和條約을 要求하므로서 어디까지나 外國의 理解關係가 걸려 있는 現狀維持에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

cc) "全体로서의 独逸"과 그 問題點들 특히 講和條約規定의 締結이 지금까지 四個國留保의 対象을 形成하고 있었기 때문에 基本條約의 締結로서 留保權과 関聯하여 "独逸"은 이 以上 問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四個國의 "權利와 責任" 및 이와 関聯되는 四者의 合意, 決議, 實行等이 問題된다 (東西獨과 西方國家 또는 聯邦파의 書信交換 參照).

基本條約自體에 있어서도 "兩獨逸國家"에 관해서만 言及하고 있고 카셀 (Kassel) 會談의 20 個項이나 聯邦政府의 基本條約에 對한 解說에 있어서 처럼 "獨逸內의 二個國家"에 관해서는 이 以上 言及하지 않고 있다. 聯合國의 留保權은 以前부터 갖고 있는 유보권의 対象을 가지고서는 全體獨逸에 對해서 아무런 機能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過去의) "獨逸"이 存続한다는 主張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規定되지 않는 問題들은 (国籍法, 財產問題; 該當 議定書에 對한 声明 參照) "팔호의 機能" 때문에 除外된 것이 아니라 旧獨逸國家에 對한 수없이 많은 論爭點中 이

나머지 問題들은 現在로서는 規定하기가 너무 複雜하기 때문에 除外된 것이다. 이 問題들에 관해서 後에 合議할때는 오직 基本 条約의 文句와 發展趨勢에 符合되게 合議가 成立하리라는 것은 疑 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3. 基本条約 第9条를 (모스크바條約 및 바르샤바條約 第4条) 通해 지금까지의 独逸關係法의 基礎가 存続하여 西独이 聯合國의 유보권때문에 独逸全体에 對해 큰 影響을 줄 어떤 行動도 取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法的으로 볼때 以前의 狀態에서 아무런 變化도 없다는 대단히 많이 主張되어 온 명제는 確信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명제는 오히려 공리공동적 氣氛를 풍기는 虛構的 性格을 띠다는 点에서 過去의 聯邦政府들이 推進한 独逸政策을 “환상적 独逸政策”이라고 非難하던것을 複述할 能力하고 있고 西独以外에서는 아무도 理解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모스크바條約이 成立된 以來 흘러간 短은期間에 講和條約유보의 例에서 나타나고 있다. 講和條約의 留保는 그當時 西方三個國에 보낸 聯邦政府의 각서에서와 꽤 마찬 가지로 그들의 會談에서도 明白히 言及되었고 이는 또한 國內政治的 및 憲法的 討論에 있어서 独逸政策의 繼続性이 오기되지 않는다고 하는 (1972年 5月 10日 聯邦下院의 与野 共同決議 第2条 參照) 重要한 要點으로서 功獻했기 때문에 講和條約의 問題는 이以上 基本條約이나 그 附屬文書에서 明白한 形態로 言及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또한 聯合国의 留保權이 独逸全体의 問題와 関係를 갖는한 그리고 基本條約에 依해 形成된 法秩序를 相對化 시킬련지도 모른다는 問題에 관한聯邦국의 留保權도 비록 联邦政府가 基本條約에 對한 解說에서 이 留保權을 아직도 “独逸內의 兩国家라는 牌호”로서 強調하고 있기는 하지만 머지 않아 잊혀지게 될것이라는 것은 明白하다.

基本條約의 批准과 더부려 지금까지의 法的 狀況에 아무런 變化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政治的으로 規定된 條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스크바條約 당시만 해도 問題가 되었던 이 問題는 (1972年 5月 10日 联邦下院의 議決 第1号 및 国会의 質疑에 對한 联邦政府의 答辯 VI/2828 即 協助的 生活樣式이라는) 그當時 이미 联邦政府가 基本法 第59條 2項에 따라 이 條約들을 立法府에 송부하였고 이것이 단순히 政治的 意思表明에만 関係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明白히 하므로서 解決되었던 것이다. 基本條約을 둘러싼 国内에서의 政治的 論爭에서 協助的 生活樣式의 概念이 联邦政府에 依하여 이 以上 言及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虛構的인 것들을 漸次的으로 (새로) 形成된 法的 狀況에 適應시키는데 注意할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文句上 “侵害되지 않은” 四個國의 留保權을 비록 基本條約이 締結된 以後에도 四個國에 依하여 潛在的 또는 (蘇聯의 境遇에는) 明示的 政治的 간접도구로 繼続해서 保存될 것이다. 그러나 兩独逸國家關係의 規定에 관한 한 文句上 “侵害

될 수 없다”는데로 後退했다는 것을 基本條約의 規定들에 対한  
戰勝國들의 事實上의 同意를 即 留保權의 行使를 은폐하였다는 것  
이 分明히 나타날 것이다.

4. 以上에서 본 여러가지를 考慮해 볼때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타난다. 基本法이前提로 하고 있는 国家構造 即 1937年의  
境界를 基準으로 한 “独逸” 또는 단지 領土的으로 事實上 独逸人  
이 살고 있는 地域으로 줄어들었고 國際法의 主体로서는 繼続 存  
在하는 “独逸”은 國際法의으로도 部分秩序說에 따르면 이 以上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独逸의 国家機關들을 基本條約의 締結  
로 말미암아 이런 發展에 終止符를 찍었으며 이로써 憲法의 命令  
과 國際法의 規定間에는 間隔이 存在하는 것이다.

5. 이 憲法規定과 條約에 의해 形成된 法秩序間의 間隔을 소위  
接近說을 가지고서도 除去할 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a2) 이와 같은 憲法의 正當化의 論點을 事件에 따라 약간의  
동요가 있기는 하나 자르規定 (Saarstatut) 과 引導條約에 関한  
判決에서 聯邦憲法裁判所에 依해 發展되었고 憲法의으로 問題가 있는  
規定도 (本来 憲法에 반하는 行為도)例外의으로 만약 새로  
形成的 狀態가 既存의 狀態보다 “基本法에 가까운” 境遇 憲法의  
으로 용인(容認)될 수 있다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가 비록 明白하게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드래

도 그 判決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思想이 놓여 있는 것이다。  
即 그와 같은容認은 特別한 狀況 即例外的 狀況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接近說의 시발사건에 있어서는 大部分 占領法秩序의 廢止에 関한 것들이다。西獨은 主權을 되찾기 위한 効果的措處를 取하기 為해서 그 報償으로서 憲法的 양보를 하지 않 을수 없었다。그 後의 判決에서 占領統治에 服従도록 하는 法의 必要의 主張은 完全히 憲法的 狀態로 즉각 복귀하는 境遇 必然的 으로 나타날 實際的 結果들(無政府狀態의 無秩序, 國家破產의 지경에 까지 끌고 간 經濟危機等)을 指摘 하므로서 補完되고 또는 代置되었다。

接近說의 適用에 있어서 그 基本原則은 따라서 問題가 되는 規定을 通해 成就된것과 거기서 회생된 憲法的 存立間의 利益較量인 것이다。그러나 이 較量은 아주 明白하게 行해져서 憲法規定을 嚴格하게 固守하는 것은 “最善이 成就될 수 없으므로 惡은 次善에 따를수 없다” (fiat justitia, pereat mundus)라는 말에서 強調되는 “嚴肅主義”를 意味한다고 하나의 例外的 狀況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어야 한다.

基本條約의 境遇 그와 같은 例外的 狀況에 関하여 이야기 할 수 있을련지는 疑問이다。여기서는 占領法秩序의 廢止를 通하여 漸次로 主權을 회복하자는 것도 아니며 이 條約에 採択된 規定을 抛棄하는 結果는 아주 重大하여 憲法을 固守하는 것이 自由를 保障해 주며 秩序와 平和를 賦与해 주는 法의 힘에 對한 信念을

뒤흔들어 놓기에 알맞는 하나의例外的狀況에 관해 말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bb) 接近說을 手段으로하여 基本條約를 正當化하려는데 있어서의 곤란성은 이미 憲法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될만큼接近이 強力하게 이루어 지느냐의 問題와는 別途로 憲法의 目的에 接近하는 것이 어디에서 可能한가를 確認하는데 있다.

境遇에 따라서는 基本條約에 確定된 国家의 統一을 抛棄하는 代身 “民族的 統一”을 獲得하므로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独逸의 統一에 関한 이 兩局面이 基本法前文 第1項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基本條約前文 第5項에서는 “民族의 問題” 만이 言及되고 있다. 民族의 統一은 (1970년 5월 21일 카셀 (Kassel) 会談에서의 第1 및 第10号는 아직 이를 言及하고 있음을 參照) 確認되지도 않고 있고 目的으로나 또는 條約当事者 의 共同의 問題로서도 認定되고 있지 않다. 이런 表現의 規定은 東獨을 단지 聯邦政府가 아직 民族의 問題를 보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도록 強要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民族의 問題가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하도록 強要할 수 조차없는 것이다. 民族의 問題에 있어서 意見不一致의妥協를 導入하는 “歷史的 与件”과 関聯하여 民族의 統一에 역행하는 原則까지도 承認된다.

獨逸의 統一에 関하여 (아직 發効하지 않았고 第4條에 따라 소급효도 갖지 않는) 뷔엔나 條約法協定 第31條 第2号 (b)의範圍내에서만 “法的 폐더급” 程度로서相當히 重要性을 띠는 書信

은 相對方을 이 書信안에 包含된 프로그램에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다(政治的 目的의一方의 声明으로서 西獨도 이에 拘束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書信은 接近說의 範圍內에서 報償要素로서 除外된다.

基本法에 基本하고 있으며 또한 基本法에 依하여 繼続 賦課되어 온 民族統一의 目的을 向하여 重要한 進展이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東歐와의 条約締結에 関하여 協商하는 도중에 以前에 独逸社會主義統一黨(=東獨共產黨)에 依해서도 認定되던 共通性 根拠가 除去되기 까지 하였다. 여기에 関하여는 1968年4月 6日의 東獨憲法 第8条 2項 參照) 도네체 또는 얼마나 民族統一의 問題가 基本法前文의 自由에 対한 見解와 分離될 수 있는가의 問題에 関하여 仔細하게 考察할 必要是 없다.

cc) 接近說에 対하여 길을 열어 주는 唯一의 根拠는 基本條約과 그附屬文書들에서 合議하거나 宣布한 “人間의 고통의 경감”이다: 이고통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国家나 民族의 統一과는 分明히 다른 어떤 것과 関係되는 것이며, 또한 聯邦政府에 依하여 使用되는 “民族은 人間이 再会할때 存在한다”라는 文句는 歷史的으로나 政治的으로 適當하지 못하다. 그러나 接近說은 相異한 憲法目的의 較量을 許諾해 준다. 基本法 第1条에 規定된 最高의 憲法原則은 다른 重要한 憲法의 法益을 뒤로 물려 나도록 하는契机가 될 수 있는 것이다. “自由로운 統一” 代身에 “統一拋棄下의 自由”가例外的으로 容認될 수도 있는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가 以前의 判決에서 이 接近思想을 “拋棄할 수 없는 憲法의 諸原則”의 限界를 設定했다는 것은 (聯邦憲法裁判所 判例集 第4卷 157面 170面; 第12卷, 281, 294面; 第14卷 1(5)面; 第15卷 337, 349面) 다만 外形上으로만 위에서 말한 憲法의 最高原則이 다른 重要한 憲法의 法益을 拋棄케 하는 契機가 된다는 事實에 対立되는 것이다. 前文의 諸原則 (国家構造에 関한 規定)은 그런 拋棄할 수 없는 諸原則으로 비록 評価될 수 있으나 이 境遇에 두개의 原則이 相互 衝突하게 될 것이다 (基本法 第1条, 79条 3項 및 前文) 聯邦憲法裁判所는 그와 같은 경우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자르-判決에서 基本法 第20条 2項 (第79条 3項)의 制限을 容認했던 것이다. (憲法裁判所 判例集 第4卷 157面 178面 參照).

dd) 基本法 第79条 1項에 對하여 接近說의 機能的 法的 正當化는 그러나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서 分明히 또는 推定의 으로 나타나고 있는 두개의 또다른 特別한 基準을 固守할 것을 要求한다. 憲法適合性의 損失과 接近間에는 “直接的 関係”가 成立해야 한다. 条約相對方의 반대급부는 接近說의 範圍內에서 “相當한 程度”이어야 한다.

憲法의 目的을 拋棄하는 것이 단지 暫定의이라면 問題性을 품은 規定 자체가 法的으로 단지 과도적 性格을 갖게되며 較量하는 境遇이를 記帳하며 대단치 않은 程度의 반대급부로 充分하게 된다.

聯邦憲法裁判所는 第8条에 講和條約에 関한 留保條項을 包含하고

있고 따라서 순수히 法的으로 볼 때 단지 과도적 性格을 갖고 있는 차르規則의 合議에서 充分한 반대급부를 認定하였다. 即 그 当時까지만 해도 問題의 地域에 对한 条約相對方의 엄청난 影響이 중성화되어야 했다(重要機能은 한 유령의 管理에 依하여行事되도록 하였다). 그 規則은 장차 締結될 講和條約의 該當 規定과 꼭 마찬가지로 国民投票에 회부되도록 하였다(具體的인 것은 判例集 第4卷 170面以下 參照).

ee) 基本條約의 法的 評價는 이 条約이 과도적 性格을 띠고 있지 않으며 또한 修正條項도 갖고 있지 않다는데서 出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直接性의 原則 때문에 이 条約(第7條을 包含하여)이나 그 부속문서 자체에서 發生하지 않는 모든 반대급부는考慮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内獨關係에 있어서 重要な “緩和”(Enthrampfung)을 政治的으로 期待하는 것이나 東獨이 基本條約의 締結을 通해 보다 自身을 갖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써 오히려 人間의 面에서 양보를 하게 될 것이라는 希望을考慮 할 수 없는 것이다.

相當한 정도의 接近基準에 充足될 수 있는 반대급부의 評價에 있어서 첫째는 양보의 의무화정도 둘째는 양보의 내용을 考察해야 할 것이다.

離散家族의 會合을 위한 書信交換, 旅行의 緩和 및 言論人們의 (自由로운) 活動可能性등은 단지 一方의이며 따라서 번복할 수 있는 義務의 宣言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指摘 되었다.

條約上으로 拘束力を 갖는 것은 더 많은 境界線通過地点의 開設에 関한 書信交換 및 폭 넓은 正常化의 合議에 関한 基本條約 第7条의 規定等이다.

또한 條約上으로 合議한 여러가지 경감은 그 内容으로 말미암아 実際에 있어 部分的으로 가취가 減少되고 있다. 가령 第7条(이 条項에 예속된 附屬議定書의 取扱에도 決定的인)는 "正常化過程에서" 및 "兩側의 利益을 위한" 條約이라는 全能的 条項으로 말미암아 또한 條約仲裁機關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그 実際的 效果에 있어서 단지 一方的으로 義務를 負担하는 것과 마찬가지 段階로 떨어지고 말수도 있다. 家族會合을 위한 書信交換 및 그 밖의 다른 것들도 "正常化過程에서" 만 東獨의 또다른 措置를 期待하고 있다.

東獨이 그에게 事實上 賦与된 留保條項을 어떻게 使用하려고 생각하는가는 이미 言論人들의 活動可能性에 관한 書信交換에서 "現行法秩序의 태두리內에서"라는 概念을 解釈하는데서 보여 주었다. 東獨은 命令을 通하여 이 태두리를 아주 즐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自由로운 報道라는 것은 거의 말할 수 없게 되었다. 言論人們은 事實은 악의적으로 変造하는 것이 許諾될 수 없다"라는 規定을 가지고 西獨側의 編輯作業에 影響을 주는 手段(지렛대)으로 사용하려고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단치 않은 정도로 保障된 人間的(고통의) 경감이라는 것도 法的으로 分析해 볼때(이미 言及한 例가 보여 주듯이 法的

分析家の 會議는 實際에 있어서 証明되고 있다) 손가락 사이로  
사라지고 말 정도이기 때문에 基本條約에서 다른 憲法的 考慮가  
경시되어야 할만큼 憲法의 目的에로의 接近이 이루어졌다고 事實  
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基本條約에 規定된 경감이라는 것이 관대한 解釈  
과 取扱의 境遇 비록 유엔이 提示한 國家間의 友好關係와 協助에  
關한 國際法의 諸原則의 “水準”을 達成되지 못하지만 接近說의  
適用에 充分할 것인가의 問題에 관해 仔細히 考察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 한바에 따르면 接近說의 憲法的 正當化의 論點을  
통하여서도 基本條約과 現行 憲法間의 意見不一致를 解消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이와 같은 意見의 不一致는 除去될  
수가 있는데 :

aa) 基本法 第 79 条 1 項 1 段에 따른 소위 “明白하게 하는  
法律”을 通해서 이다. 이 추후에 추가된 憲法規範은 異論이 많  
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肯定의으로 評価되어야 할 것이다. 왜  
냐하면 이 規定은 아직 正確하게 解釈을 내릴 수 없는 約約의  
境遇에 行政府가 具體적으로 約約의 締結로 말미암아 어느 憲法規  
範이 또한 어느 程度 損傷되는가를 確定할 必要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長點을 중계해 주기 때문이다. 基本法 第 79 条 1 項 2 段  
은 憲法改正에 있어서 約文에 拘束될 것을 要求하는데 符合되며  
그렇다고 이것이 一般化될 必要도 없이 目的에 알맞는 適應可能性

을 賦与해 주는 것이다.

bb) 伝來된 前文의 独逸이란 1937年 12月 31日의 境界를 基準으로 한 独逸이 아니라 다른 境界를 갖고 있다고 明白히 밝히는 憲法補完을 通해서이다. 憲法의 改正은 아마도 除外될 것이다. 왜냐하면 前文은 (憲法의 成立史나 聯邦憲法裁判所의 지금 까지의 判決에서 結論을 내릴 수 있듯이) 묘사된 独逸의 概念을前提로 하고 있으나 分明히 言及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937年 12月 31日의 狀態에 따른 “独逸国家”概念은 基本法 第116条 第1項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서는 独逸의 領土高權의 境界를 定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블랜드가 繼續해서 基本法 第116条의 改正을 要求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法的으로는 無意味하며 단지 政治的으로만 理解해야 할 것이다).

cc) 새로운 独逸의 東方政策과 境遇에 따라서는 蘇聯의 西方政策의 全体의 운沄을 再現시켜 보면 우리 憲法体系의 憲法的前提들을 全面改正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率直하지 않겠는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現在의 立法者에게는 이를 위한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一般輿論에 对하여 (바로) “특시” (할 수 있도록) 할 勇氣를 내야 하며 또한 以前에는 聯邦下院內의 모든 정당들에 依하여 一致團結하여 支持되어 온 独逸政策의 基盤이 이 以上 存在하지 않으며 四個國의 留保權은 自由로운 가운데서의 統一이라는 憲法的 目的의 觀點에서 볼 때 아무런 機能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告白해야

할 것이다. 남아 있는 것은 한 뉘음의 干涉權이며 이는 憲法의 目的에 機能障礙의 일수 있을 것이며 結局 統一政策의 終點에 이르러서는 統一은 이루어지지 않고 自由도 보다 적어지는 狀態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東獨이 自信이 成長함에 따라 唯一한 社會主義的 独逸 民族國家로서 民族的 唯一代表 要求權을 主張하게 될 수도 있다. 이 用語는 만약 우리 共和國의 精神的 狀態가 最近 展開되고 있는 정도로 繼続해서 희미해 진다면 얼마 안가서 유혹의 힘을 發揮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民主主義는 오직 社會主義內에서만 成就될 수 있다").

第二次大戰以後 우리自身의 公로에 依해서가 아니라 休戰線의 設定過程에서 우연히 굴러 떨어진 우리의 基本的 自由에 對한 意識을 西獨內에서 適當한 時期에 強化하는것, 또한 西獨이 民族的 허상을 抛棄하고 (統一유럽내에서의 태협없는 參与를 通하여) 自由와 團結, 平和와 定義의 價值를 위하여 태협없이 參与 함으로서 決定될 統一유럽내에서의 國際的 地位를 形成하는것 바로 이것들은 東歐條約以後 未來를 指示하는 独逸政治의 謂題인 것이다.

-基本條約을 통한 東獨내의 独逸人에 대한 保護 및 배려의무의 侵害

基本法에 依하여 宣布된 國家와 人間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變遷은 모든 國家權力의 任務는 (古典的 自由主義의 意味에서) 基本權領域의 侵害을 자제한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基本法 第 1 条 1 項 2 段에 法 的 으로 規定된 人間像 을 더 나아가 国家로부터 모든 基本權이 歸屬되는 人間의 權利의 核心인 (Herr-zog) 人間의 尊嚴性 을 保障하기 위하여 積極的 인 行為 를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国家의 義務는 모든 “独逸人” (基本法 第 116 条, 16 条)에 該當된다. 엘베강 저편의 独逸人에게도 自由로운 自決을 可能케 하는 憲法의 基本的 決斷은 前文 第 2 項과 3 項에서도 그 規定을 찾아 볼 수 있다.

東獨에 있어서의 人權의 地位를 強化하라는 国家機關에 対한 積極的 委任도 分明한 基準에 따라서만 裁判이 될 수 있으나 裁判上으로 ullen 쉽게 確認할 수 있는 것은 必要한前提로서 行為委任에 内재하는 不作為義務에 対한 저촉과 權力機構 위에서만 強化된 東獨政權의 強化에 寄与하며 東獨 내 独逸人의 基本的 自由를 위하여는 重要한 前進을 達成하지 못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이다.

이것은 聯邦憲法裁判所가 “자르-判決”에서 発展시킨 “接近說”的 이면에 있는 動機인 것이다. 자르規則에서 自決權을 保障하는 것을 블레 약간의 国家組織法의 目的이 抛棄될 수 있었다 (判例集 第 4 卷 178 面).

當 法廷은 特別히 東獨의 狀況에 관하여 西獨의 (憲法的) 公的秩序는 聯邦과 支邦의 機關들에게 (當時 아직도 그렇게 블렸던) 동부점령지대의 權力体系를 強化하거나 支援하는 것”을 禁止한다고 判示하였다: 이 判決理由를 가지고 聯邦憲法裁判所는 두개의 “權利救濟判決”에서 (判例集 第 11 卷 150 面以下 [160/1]; 判例集

第 12 卷 99 面以下 [109]) 東獨의 刑事判決의 執行可能性에 對한  
法院決定을 解除했던 것이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最少限도 不可避한 技術的 經濟的 協力を  
保障하기 위하여 마치 교통에 관한 条約이나 占領地域間의 貿易協  
定이 그려졌듯이 基本條約에서는 東獨의 体制가 단순하 (不快한  
現實로서) “容認”될 뿐만이 아니다. (収用法分野에 있어서 外  
國 [占領國]의 高權行為에 對한 憲法的으로 認定되는 “단순한  
容認”에 관하여 : 判例集 第 27 卷 253 面以下 및 第 27 卷 326 面  
以下 參照).

오히려 基本條約을 通해 다음과 같은 事項이 充足되고 있다

a) 오태전부터 東獨과 그 밖의 동구권이 提起한 政治的 要求  
가 (1966 年의 부카페스트宣言, 특히 東獨의 領土的 現狀에 對한  
法的 承認과 國際法의 政治的 격상 參考) 充足되었고 東獨內의  
獨逸人을 위한 自決權에 本質의 이거나 눈에 띌만한 보탬이 이루  
어지지 못한채 政治的 協商條件 (協商領域 = *gelaude*) 이 抛棄되었다.  
“人間의 苦痛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西獨에  
서 東獨으로 旅行하는것 또는 東獨에서 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이  
出國하는것 (祖父母나 保護를 必要로 하는 父母가 그 자식이나 손  
자에서 이사하는 것) 等을 말한다. 그런데 發射命令의 禁止에  
關해서는 아무것도 찾아 볼 수 없으며 出國의 自由 保障도 (단지

部分的으로 밖에) 찾아 볼수 없다. 이런 権利는 中世의 絶對的  
独裁自体制度 그 "臣下들"에게 賦与되지 않았던 権利이며 이에  
關하여는 크리엘 (Kriele) 가 적중하게 指摘하고 있다 (ZRP 제71  
卷 261面 參照).

b) 基本條約의 規定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外國에서) 否  
定할 수 없는 法的 外様이 成立되었다. 即 西獨은 實質的으로  
東獨의 体制와 화해하고 이를 同等한 價值을 가진 것으로 承認하  
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基本條約 第1条에서 両国이 "同等  
한 権利를 갖는 것이" 善隣關係의 基礎임을 確認했다. "同等権"  
은 그에 따르면 法的 関係에서 消滅되는 것이 아니라 法的인 것  
을 초월하여 感情的으로 본 "선린적"이라는 말에서 表現되는 것  
처럼 社會的 人間的 狀況의 評価에도 該當되는 것이다. 基本條約  
第2条에서 "無差別"이라고 거칠없이 (留保없이) 言及하는것 이라  
든가 對內 (国内的) 事項에 있어서 独立性의 "尊重" (第6条)  
이라는 말들은 모두 같은 方向의 目的을 갖고 있는 것이다.

(基本條約과 거기서 發生하는 作為 및 不作為義務에 있어서  
西獨의 自由主義的 國家見解를 부인하는 銓衡的인 것은 이미 効力  
을 發生하는 記者 (言論人) 交換에 관한 書信交換에서 (記者들의  
活動條件에 관한 具體的 規定의 자리에) 形式的이요 同價値性이라  
는 것을 미끼로 한 "現行 法秩序의 테두리"와 関聯시키는 것이다.)

c) 끝으로 基本條約에서는 西獨이 장차 그의 配屬保護義務 및

債務의義務를履行할 수 있을지도 모를法的機構를削除해버렸다. 第1条 2条 및 6条 2項은 東獨에게 東獨에對한西獨의人權干涉을 國際무대에對抗하여 또는 그 앞에서 거절할수 있을지도 모르는法的根拠를 그 손에 안겨 주었다.

基本條約에서宣布된 東獨內의 独逸人에配慮義務의侵害배후에는人間的悲劇이 숨어있으며 새東邦政策에걸었던期待에서부터씁쓸하게 깨어난후(옛날이나마찬가지로드리워진)철의장막전너편의独逸人과對話を나누어본사람은이悲劇에对해 누구보다더잘알것이다. 이와같은事實은人生一代以上的期間동안아니未来에까지하나의權力体制에내버려졌다는 기분을들게한다(이와關聯하여브레즈네브독트린을事實上承認하고있는바로(Bahr)文書第5 및第6号는参照)).

이와같은事實에直面하여 만약聯邦政府가保護義務와配慮義務를단지“道徳的 및 政治的問題”로評讐節下하므로서回避하려고시도한다면그것을法的으로만지탱할수없는것이아니다(1973年6月2日字聯邦政府의文書15面参照)(註5)

뿐만아니라여기서는또한憲法的作為와不作為義務는그全体에서비로서憲法的平和의概念을(具體적으로)形成하게되는데이는聯邦政府가방금言及한文書에서(9面)하려는것처

註5) 発行者 註:Dokument(문서) A VII.

럼一般的 “平和의 原則”을 指摘하므로서 없애버릴 (ubespielen) 수 없다는 것도 問題된다.

保護와 配慮義務의 問題와 密接하게 関聯된 것은 国籍에 関한 法과 外交의 保護에 関한 法의 観點에서 基本條約을 評価하는 것이다.

聯邦政府는 国籍에 관한 法이 基本條約으로 말미암아 “直接的으로나 間接의으로 侵害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만약 联邦政府의 議定書籍 宣言 (Protokollerklärung) 이 (“国籍의 問題는 條約에 依해 規定되지 않았다.”) 순수한 (解釈) “留保” (聯邦政府의 基本條約에 對한 回想錄 B便에서 联邦政府는 그렇게 보고 있다)이며 그것으로서 條約相對方도 拘束한다면 읊을 것이다.

議定書에 對한 宣言이 순수한 留保로 생각했다면 이 留保는 相對方에 依한 (明示의으로나 默示의으로) 承認을 必要로 했던 것이다. 東獨은 다만 基本條約은 国籍의 規定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라고만 宣言했으므로 基本條約이 国籍法에 관한 直接의 規定을 包含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만큼만 同意가 成立되어 있는 것이다.

이 議定書에 関한 宣言이 联邦政府의 見解에 따라 條約의 規定領域 밖에 있는 對象과 関聯되어야 한다면 (聯邦政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上記 回想錄 參照) “留保”가 아니라 相對方에 依한 수탁도 必要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또한 拘束하지도 않는 하나의 “法의 保全”이 存在하는 것이다.

東獨이 政治的으로 사용할련지도 모르는 “異見의 活動範圍”가 이 境遇에 더욱 클련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基本條約 第1条 2条 6条 자체에서 부터도 基本法에 規定된 統一의 独逸의 国籍과는 상반되는 国籍問題에 関한 間接的 規定이 나타나게 된다. 即 (東西獨) 関係의 基礎로서의 “同等權” “主權的 平等權” “獨立與 自主性의 尊重” “對內外的 事項에 있어서 獨立性의 尊重” 등이 그것이다. 基本條約 第1条 2条 6条는 内容을 確定하는 (그리고 基本條約에 따라 解約할 수 없는) 장차 締結하게 될 諸規定과 장차 條約合致의로 代替할 수 있는 모든 法의 見解의 原則規範인 것이다.

더우기 基本條約의 締結과 더부터 (이미 詳論한것 처럼) 全独逸의 国家性의 나머지는 国籍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 主體로서 전락될 것이다. 国籍에 関한 法도 領土의 法의 狀態와 関係 없이 繼続하여 存續할 수 없으므로 基本條約 第3条 2項도 여기서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多數國家性 (Mehrstaatigkeit) 을 可能한限 막으려고 하는 것은 國際法의一般的 原則이다. 對內外的 高權을 完全히 承認한 다른 国家의 전 国民을 자기를 위하여 要求한다는 것은 國際法에 반하는 것이다. 旧国家가 滅亡하는 境遇 (全体独逸의 解体) 또는 承認되고 明白하게 된 新国家가 形成되는 境遇 (東獨의 分離) 旧国籍은 自動的으로 消滅되어 新国家의 国籍 (取得)에 아무런 法의 障害도 없는 것이다 (1945年 4月 27日 오지리의

의 成立과 더부려 오지리国籍의 成立에 関하여, 聯邦憲法裁判所 判例集 第4卷 322面以下 參照) (註6)

1973年 1月 11日 外務部가 西獨에 駐在하는 모든 外交的 및 領事的 代表部에 보낸 書翰에서도 (文書番号 502-507,000) 東獨이 第3國과 領事條約을 締結하는 것을 이 以上 막을 수 없다는 憲正스런 認識이 나타나고 있다.

基本條約 締結과 더부려 적어도 “間接的으로” 나타나는 国籍에 関한 第1, 2, 3条 2項 및 6条의 結果中 하나는 東獨이 高權의으로 第3國人에게 賦与한 国籍이 이중 国籍으로 보게되는 것이다. 西獨은 “同等한 價值를 가진 独立性” (第1条, 6条) 을 수락한 이상 이를 막을수도 없을 것이다. 第3國人の 東獨国籍은 (國際法의으로 容納되는 것이다) 効力を 가진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基本條約은 적어도 旧 “独逸國籍”的 部分의 喪失이라는 結果를 가져 오게 된다. 西獨은 東獨의 独逸人을 外國에서도 이 以上 外交的 保護下에 들 수 없는 것이다.

基本法 第23条 2段이 保障한 独逸의 다른 部分이 (西獨基本法에 加入할) “加入權”에 関하여 聯邦政府는 1973年 6月 2일의

註6) 여기에 関하여는 Karl-Heinz Bauer의 아직 發表되지 않은 München 大學 博士學位論文：“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独逸民主共和国（東獨）에 있어 저의 國籍” 參照。이는 最 法廷의 要求에 따라 여기서 提示되었다。

文書(14面)(註7)에서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一致하게)

스스로 “加入可能性”은 열어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基本法 第23条 2段은 再統一과 関係되는 다른 憲法規定들의  
先後關係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前文, 第146条) 또한 “獨逸의  
다른 部分”에 있는 住民들이 그의 自決權을 行使하여 再統一을  
위해 스스로決定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加入可能性에 对한 그와 같은 自由로운決定은 基本條約에 따르면  
이 以上 西獨에 依하여 (條約에 符合되게 보아) 要求될 수 없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境界의 變更를 위한 對話의 相對者는  
結局 “對內外的 独立性을 尊重하게 될” 東獨政府일 것이기 때문  
이다. (基本條約 第1条 2条와 結合하여 第6条 2段) 基本條約  
의 發効後 東獨은 基本法 第23条 2段의 意味의 “獨逸의 다른  
部分”이 이 以上 아니며 이로써 이 条項은 (특히 獨逸法의)意義  
를 費失하게 된다.

더 나아가 東獨은 基本條約을 끌어내어 그와 같은 要求를 물리칠  
것이다. 基本條約의 前文에서 (이 前文은 그 限度 내에서 基本  
法 第2条 2項을 拘束的으로 解釈하고 있다) 現 狀態에서의  
境界의 尊重이 유럽의 平和를 위한 “基本的 条件”으로서 強調되  
고 있기 때문에 解約할 수 없는 基本條約과 一致하여 “平和의  
變更”에 作用할 西獨의 活動의 여지는 대단히 좁은 것이다.

註7) 發行者 註:Dokument(文書) A VII.

끝으로 基本條約에 있어서의 伯林의 取扱은 憲法에 反하는 것이  
다. 伯林은 憲法制定者에 依하여 基本法 第23条 1段에서 다른  
支邦들과 꼭 마찬 가지로 基本法의 適用範圍内에 採択되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法 第23条 1段 (諸地方… 및 伯林地域에서 ))  
과 第144条 2項 前段의 文句에서 出發하여) 繼続되는 判決에서  
伯林은 하나의 支邦的 資格을 갖는다고 判決하였다. 伯林은 이에  
따르면 基本法에 依하여 組織된 聯邦共和国의 한 地方 (州)인 것  
이다. 基本法은 伯林에서도 効力を 가지며 다만 그 適用은 占領  
法의 制限을 받는다 (判例集 第7卷 10面) 聯邦憲法裁判所는 이와  
같은 法的 見解를 단지 지나가는 말로서가 (in obiter dicta)  
아니라 聯邦憲法裁判所法 第31条 1項에 따라 모든 国家機關을  
拘束하는 作用을 가진 重要한 決定 (判決)理由로서 確認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西方聯合國의 相異한 法的 見解를 알면서도 이  
觀點을 主張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伯林의 構成國家資格을  
부인하는 聯合國 高等委員會 (AHK) 가 통고한 見解를 分明히 거부  
하였다 (判例集 第7卷 13面) 立法者は 그의 條約法의 伯林條項으  
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憲法的 狀況에 對하여 지금까지 항상 公  
平하였다 (고소장 14面 參照) (註 8)

聯邦에 있어서 伯林의 地位는 憲法의 으로 固定되고 단순한 立法  
者의 行為에만 屬되지 않기 때문에 그 地位는 原則的으로 司法

註 8) 発行者 註: Dokument (文書) c.i.

的 判決의 法的 効力에 있어서나 그의 権威에 있어서 다른 國際法의 狀況을 통하여서도 侵害되지 않는다.

基本法에만 連結된 憲法解釈과 伯林은 地方이 아니라라는 聯合國의 見解는 항상 對立되었다. 그러나 西獨과의 어느程度의 연결과結合은 聯合國의 留保權行使에 있어서 許諾되었다.

1971年 9月 3일의 伯林에 대한 四個國協定(이 協定에서는 "該当地域"이라고 規定되고 있다) 第2部 B에서 西部占領地域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独逸聯邦共和國의 構成部分(構成的部分)이 아니며" 앞으로도 聯邦共和國에 依해 統治될 수 없다 라고 明白히 說明되었다.

西方國家들은 물론 過去 聯邦共和國(西獨)의 國家機關들이 西部 伯林을 西獨의 地方(州)으로 表示하는 것을 지금까지 錄印해 왔다.

또한 1967年 4月 18일의 書翰에서 상원(Senat)과 하원(Abgeordnetenhaus)은 聯邦憲法裁判所에 대한 慮慮에서 聯合國의 法的 見解를 考慮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基本法을 넘고 있는 占領法은 基本法과(部分的으로)衝突되고 있다. 만약 憲法에 規定된 憲法理論의 指導原理가 政治的으로 實現할 수 없을 때는 法的拘束力を 主張할 수 없다고 法治國家에 반하는 政治의 우위가 옳다고 보면 (H.H.Mahnke가 그런 見解를 主張한다) 基本法의 完全한 廢棄나 停止를 생각하는 것은 排除된다. 오히려 憲法이나 그 規範力에는 可能한만큼 여유가 주어지게 된다.

占領法과 基本法의 緊張狀態로부터 接近 및 平等化要求가 나타나

게 되는데 이要求는 国家機關들에게 어떻게든 可能한限 "마치" 伯林이 하나의 地方인 것 처럼 伯林과의 関係를 規定하는 것을 義務로 賦課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聯邦에 对한 忠誠의 原則에도 該當되는데 이에 따르면 聯邦은 그에게 法的으로 賦与된 根柢 없이는 하나의 支邦을 다른 地方에 对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外部에 对한 代表에도 該當된다. 어떻게든 可能한限 伯林은 모든 다른 地方과 마찬가지로 國際法의 条約을 締結하는 境遇 聯邦을 通해 代表되어야 한다.

基本條約에는 伯林에 对한 아무런 論及도 없다. 条約法의 第2条는 西獨의 条約에서 보통 볼 수 있는 伯林條項과는 달리 "이法은 条約의 規定이 伯林과 関係되는 한 効力を 갖는다..." 条約法 第2条는 따라서 基本條約을 署名할 当時 両側의 声明과만 関聯된다. 이 성명에서는 단지 基本條約 第7条에 規定된 正常化에 관한 合議를 (西)伯林에 拡大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境遇에 合議될 수 있으며 西獨의 常任 代表部은 1971年 9月 3日의 個國協定에 따라 (西)伯林의 利益을 대변한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여기서는 단순한 利益의 대변에 관한 것이며 法的 대변이 아니다. 条約의 締結과 条約에 있어서 伯林의 代表에는 特別히 声明 第1項이 適用된다.

伯林의 代表는 그때 그때의 境遇에 따라 부여하게 될 東獨의 양해에 依存되고 더우기 基本條約 第7条의 範圍內에서 附屬合意에 局限됨으로서 이미 伯林의 代表에 관한 犯法의 同等化 要求가

充足되지 못하였다.

基本條約自体에 따르면 西伯林은 西獨에 依하여 代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東獨과 西獨間의 基本的 関係”와 “東獨과 西伯林間의 基本的 関係”는 相異하다는 것이 수락되는 것이다. 西獨의 同意를 얻어 西伯林은 “独立的 政治單位(統一體)”의 法的 地位를 얻으려고 努力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努力은 憲法의 要求에 正面으로 対立되는 것이다.

協定을 西伯林에 까지 拡張한다는데 관한 声明도 制限된 範圍内에서 예견하고 있는 可能한 代表의 境遇에도 東獨과 西伯林의 上院 (senat) 間에 合意된 事項은 侵害되지 않는다고 하는 만큼 역사 基本法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 一般條項은 基本法 第 32 条 3 項에 依하여 外交的 領域에서 地方들에게 賦与된 権限을 輝씬 넘어서고 있으며 聯邦의 다른 地方들과 伯林의 同等(格)化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独立的 政治單位”를 目的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憲法上의 結果는 兩側에 “該當하는 雙方 또는 다변적 國際條約이나 合議” 및 여기에 包含되는 伯林에 対한 四個國協定을 가르키고 있는 基本條約 第 9 条에 依해서도 緩和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協定에서도 西獨에 依한 西伯林의 (部分的) 代表可能性만이 부여되고 있을뿐 自動的 代表를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

이 点에 있어서 基本條約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것을 確認하는

것은 우선 “安全과 地位에 관한 事項”은 侵害되지 않는다는 基本條約의 条項과 関聯된다. (四個國協定 第2部 II. D, 부록 IV A 2号 參照) 그러나 四個國協定을 을 바로 解釈하는 境遇 그와 같은 違憲性의 確認은 基本條約의 地位形成的 規定에도 該當되고 있다.

(西方) 三個國은 이 協定에서 우선 西伯林의 全體的 代表를 留保領域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리고나서 安全과 地位에 重要하지 않은 問題에 있어서의 代表權은 一般的으로 西獨에 委任하고 있다. 四個國協定의 부록 IV, A의 第2号는 三個國이 더 나아가 個別의 境遇 特別한 代表權의 委任을 即 安全과 地位에 関한 問題에 있어서도 단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留保領域에 있어서의 西獨의 行為는 “三個國의 權利와 責任이 侵害되지 않는다”는 留保下에서 可能한 것이다. 類似한 方法으로 西獨은 基本條約과 앞서의 東歐條約들을 締結할 수 있었다. 이 條約들의 内容은 獨逸條約 (Deutschlandvertrag) 第2条에서 制限된 留保領域에 該當된다.

따라서 憲法的으로는 적어도 聯邦政府가 (西方) 三個國에게서 비록 聯合國의 權利와 責任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形式的 法的) 留保下에서라도 基本條約을 締結할 때 西伯林을 代表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 要請되었다. 마치 聯邦政府가 基本條約에서 또한 東歐條約의 締結時 實質的으로 獨逸法的 規定을 聯合國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留保下에서 規定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말이다.

1973年 6月 2日字 提出文書에서의 聯邦政府의 立場은 維持될 수 없는 것이다. 聯邦政府는 거기서 伯林에 관계되는 問題는 聯邦憲法裁判所의 裁判權에서 除外된다는 見解를 主張한다. 이에 反하여 聯邦憲法裁判所에도 適用되는 聯邦에서 伯林을支配하는 것을 禁止시키는 것은 단지 伯林의 公權行為에 대한 감사 및 伯林의 管轄機關에 政府行為를 設定하는 것에 該當된다. 聯邦憲法裁判所는 原則的으로 “伯林 事項”에 關하여 아무런 権限을 갖지 못하여 伯林事項에 있어서 伯林의 國家機關의 行為는 國內領域의 効果를 가지고 判断된다. 伯林과 關係를 가진 西獨의 公權行為에 대한 判断이나 聯邦政府가 憲法에 依하여 賦与된 西伯林을 代表할 義務를 지키고 있는가의 監督은 除外되는 것이다(聯邦憲法裁判所 判例集 第20卷 257面 參照).



#### IV. Kriele 教授의弁論文

東西獨 基本關係에 관한 憲法的 判斷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선 무엇보다도 이 条約의 原則과 目的이 基本法의 原則과 目的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알아 볼 일이다. 聯邦政府의 解釋는 이 基本條約이 成文憲法典의 個別條文은 勿論 前憲法의 声明權者가 주장하는 여러 原則 및 기본理念과도 内的으로 연관이 있다는 告의 解釋와 一致하고 있다 (BVerfGE 2, 380). 이러한 基本原則과 기본이념은 부분적으로는 法的性格과 연관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政治的 信條 내지 統合政策의 프로그램에 대한 호소이다 (BVerfGE 5, 127).

이 기본원칙과 기본이념들은 바이 말共和國 国家社會主義의 태로정치, 第2次世界大戰, 敗戰 및 그 이후의 독일과 같은 연관이 있는 歷史的 배경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基本法制定者들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였다. 이는 다음에서 보듯이 그 制定史에서도 나타난다 :

(1) 平和保全의 指向과 國際法上의 親善

이러한 觀念은 基本法 前文에서 프로그램의 으로 表現되고 있는 바 (世界平和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基本法 여러 곳에 특히 基本法 第 24, 25, 26 条에 憲法規定을 두고 있다.

(2) 國家와 政治는 人間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될수 없다는 주상적인 원칙을 요구하는 근본원칙

이 관념도 憲法前文에 프로그램의으로 표현을 두고 있고(神과人類에 대한 責任을 의식하고……) 나아가서 基本法 第1条와 그밖에 여러곳에 規定을 두고 있다.

- (3) 独逸은 1945年 国家로서 法的主体가 滅亡된것이 아니고 더 육이 独逸聯邦共和国의誕生으로 滅亡되지 않았다는 표상. 나아가서 独逸聯邦共和国은 道德的인義務性을 가지며 可能한 한 独逸帝国 権利·義務를 繼承한다는 표상을 갖고 있다. 이런 觀念은 基本法 前文에 明示되어 있다(国家의 統一을 維持하고…….)
- (4) 独逸의 政策은 聯邦共和国의 利益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全民族의 利益을 위해서다.

이 觀念도 역시 憲法前文에 明示的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基本法은 參与하지 못하는 独逸人の 問題로 다루고 있다)

- (5) 再統一을 위한 努力에의 추구
- 이 基本原則은 프로그램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直接的으로 法의意義도 갖는다.勿論 이 原則의 重點도 法의으로 보아 基本法前文에서 연유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聯邦政府의 独逸政策 또는 東方政策과 이 여러原則과一致되는 基本條約 및 基本法의 基本理念들을 다음의 두가지 理由로 因하여原告는 잘못 理解하고 있다:

첫째 基本條約의 内容·目的 및 成果를 오해하고 있고 둘째로 基本法의 이러한 基本原則과 基本理念 및 그의 法의 意義와相互關係를 基本法 制定史나 基本法條文과 憲法裁判所의 普遍의 解釋와

는 달리 임의로 解釈하고 있는데에 問題가 있다.

筆者는 여기서 먼저 基本條約을 明確하게 밝혀둘 必要를 느낀다.  
基本條約의 個個規定은 그의 基本原則과 聯繫를 가져야만 하고 또  
그의 意圖를 正確하게 解釈해야 만 한다.

이점을 基本條約의 締結後의 狀態가 어떠한가, 過去 3年半 동안  
의 独逸政策이 万若 없었더라면 어떨했겠는가 또 万若 이 条約締  
結이 失敗로 돌아 갔더라면 어떤 結果가 일어났을까 하는 点들을  
상상해 보면 事態는 分明해 질 것이다. 그러한 比較는 勿論 仮  
說的 要素가 대포되고 있으나 그러나 매우 實現可能한 結果를 낳  
게 한다 :

(1) 独逸의 狀態에 대한 우리에게 負担이 되는 일들 特히 그중  
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가슴아파하는 일은 東方政策이다. 그 다음  
은 伯林을 가로 지르는 담과 그 다음은 지뢰가 문혀진 両獨의  
境界線 그 다음은 충격命運을 들수 있겠다. 아마 그 다음은 東  
독의 内部問題로 우리 基本法의 妥要求가 통용이 안되고 再統一이  
가까운 将來에 實現을 볼수 없는것 들이다.

(2) 우리가 國際社會에서 東獨의 承認을 繼續 저지할수 있었을까  
하는 問題를 잠간 생각해 보면 그 답변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는 것이 現實이다. 過去 3年동안 우리는 目前에 있는 基本條約  
을 理由로 들어 많은 나라들이 東獨을 承認하려는 것을 盟誓할수  
있었다. 그러나 基本條約에 署名即後 東獨을 承認한 나라들이 쏟  
아져 나왔다는 점이 이를 証明하고도 남는다.

우리와 国交를 맺고 있는 西方의 여러나라 들이 東獨을 承認하는 問題는 우리는 몇年間은 遲延시킬수 있을것이나 그러나 繼續 저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万若 그렇게 냈드라면 우리의 立場은 어찌 했을까? 東獨은 우리의 의사에 反하여 國際社會에서 繼統 承認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國際社會는 우리의 의사에 反하는 結果를 가져왔을 것이다. 우리의 意思에 反하는 行動을 取한 西歐 国家들에 대한 우리의 位置는 더욱 거북살 스럽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結果는 방어할수 없을 바에야率先하여 展開시키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3) 더욱 우리에게 負担이 되는 点은 万若 우리가 아직까지 國際社會에서 孤立되어 있었드라면 다음의 狀態에 까지 이르렀을 것이다:原告의 主張과도 같이 法的 見解는 東歐 여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西歐 여러나라에서도 우리는 政治的으로 同格으로 取扱當하거나 또는 不和가 存在하는 地域의 現狀態의 維持라는 問題로 잘못 理解되고 있을 것이다. 至 西方勢力의 外交政策 特히 北大西洋防衛條約機構는 世界平和를 地域의 現狀態의 維持를 確保한다고 基本政策下에서만 움직였을 것이다.

모든 責任있는 政府의 이에 同意하는 見解로는 聯邦政府의 独逸政策이 國際社會의 平和를 確保하는데 寄与할뿐만 아니라 事実 이미 寄与하고 있다는데에 一致된 생각을 갖고 있다.

(4) 基本條約은 두개의 独逸國家間의 法律關係를 分明하게 하거나改善케하는 수 많은 要素를 갖고 있다:

(a) 独逸民主共和国은 条約締結로 因하여 兩獨關係의 条約締結에 있어서 國際法上 国家로 認定하는 것이 前提条件이라는 從來의 主張을 더 못하게 되었다.

基本條約의 어느곳에서도 東獨은 國際法上의 認定을 明示的으로나 決定的으로 証한바가 없다. 그에 関하여는 Leverenz 氏가 仔細히 說明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다만 基本條約 第8条(常任代表), 第10条(必要한 통첩문의 交換)와 第9条(國際上 協定의 留保)만을 지적 하겠다.

留保한 무엇보다도 四大強國과 聯關係의 内容아겠는데 独逸이 UN에 의加入은 四大強國의 明示的인 뒷받침이 絶對必要하며 이는 独逸條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境遇이다. 이점은 四大強국이 全體로서 独逸에 聯關係의 있음을 分明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점은 三大西方國家가 兩獨의 再統一에 대한 努力이나, 平和의 留保에 関해서도 똑같이 適用되는 問題이다. 그 一例로 独逸民主共和国과 締結한 書信交換의 協定에서도 부가적으로 証한바 四大強국의 權利와 責任性은 아무런 障害없이 持續되고 있다. 이는 結果的으로 우리가 繼統 "独逸(Deutschland)"이라는 法概念을 지키며 또 우리가 独逸人民共和国을 우리의 領土로 보지도 않고 同時に 外國으로도 認定치 않고 있다 하더라도 条約違反이라는 結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b) 民族의 問題에 있어서는 独逸民主共和国과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이 異見은 基本條約에서 言及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異見에 대한 어떤 同意가 있었기에 우리의 見解가 条約締結에 障害가 되지 않았다.

(c) 独逸国籍에 関해서는 變動이 없다. 国籍에 関한 의문을 막기 위하여 留保宣言을 通하여 国籍問題는 規定치 않기로 合議를 보았다.

(d) 財產問題에 関해서도 變動이 없는바 이는 合議된 協定書에서 規明하고 있다,

(e) 兩側의 合議된 声明을 通하여 独逸民主共和国内에 있는 西백림은 独逸聯邦共和国에 依附 代表되고 있다.

(5) 同條約에는 兩獨에 있는 人間을 為한 實質的인 改善에 関해 規定을 두고 있다. 그中 무엇보다도 兩地域內의 經濟・科學・技術分野와 交通・法律・郵便・電信制度와 保健・文化・運動・環境保護에 関한 協定을 締結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第7条). 이미 独逸民主共和国에서 그中 몇 가지를, 家族의 結合, 旅行을 쉽게 하고, 商品이 아닌 物品의 交換과 言論人の 言論活動의 許容을 承諾하였다.

以上의 政治的・法的 및 人間의인 改善은 다른 側面에서 보면 두가지 問題를 이르키고 있다: 첫째 問題는 独逸民主共和国의 國家性을 認定하여 條約을 尊重하는 問題인데 이는 이미 1969年 10月 28日의 政府声明에서 밝힌 바 있고 또 通行條約의 締結自体가 國家條約으로 認定되고 있는 바이다. 原告도 이 國家條約은 聯邦會議에서 賛成한 바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独逸民主共和国의 國家性에 대해 異議를 提起한다는 것은 스스로 二律背反의인 行動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国家性의 尊重의 問題는 나아가서 現在의 兩獨境界를 (BVerfGE 18, 353f) 事実上의 「國境」으로 보며 同時に 同等, 自主·独立과 領土의 不可侵의 原則을 尊重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事実的으로나 人為的으로 보아 어떤 不利한 点이 있을 수도 없다.

둘째 問題는 独逸民主共和国을 國際社會에서의 承認의 封鎖를 끝 어주는 것이다. 封鎖의 解除는 独逸聯邦政府에 어떤 不利益을 가져 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封鎖는 우리에게도 独逸에도 独逸民主共和国에도 다같이 利益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他面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封鎖를 오래 持續시킬수 없는 것이다. 封鎖의 解除는 結局에 가서는 우리를 U.N.에로의 길을 터주게 만든다. 왜냐하면 U.N.의 安全保障理事会에서 強大國의 拒否權이 行事되기 때문에 兩獨은 實質的으로나 政治的으로 보아 둘다 U.N.에 加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다 加入할수 없는 実情이다.

다음은 위에서 言及한 基本法의 다섯가지 基本理念과 基本條約을 한번 比較해 보자:

- (1) 基本條約은 實質的으로 平和保全이라는 慎法의 目的에 寄与하고 있다.
- (2) 基本條約은 人間에게 實質的으로 利益을 가져오는 人道主義의 慎法目的에 寄与하고 있다.
- (3) 基本條約은 独逸 (Deutschland) 의 繼続存続이라는 基本法制

定者의 뜻과一致한다.

(4) 基本條約은 基本法制定者의 理念인 独逸聯邦共和国 만의 利益이 아니라 全国民의 利益을 為한다는 政策과 一致한다.

(5) 基本條約은 独逸問題의 解決을 保留하고 있으며 이는 再統一에 害가 되지 않는다.

原告는 이 다섯가지 原則이 그들에게 하등 関聯이 없다고 보고 또 基本條約도 이와 関聯지위 解釈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基本條約의 憲法上의 位置를 잘못 理解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個別的인 問題도 그들의 解釈에 따르면 基本法이나 基本條約에 適合치 않고 있다.

#### 第1. 첫번째의 그리고 가장 重要한 訴訟要點 :

「独逸의 国家의 单一性의 保存」이라는 이른바 憲法国政에 関하여

原告는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國과 同一性을 가진다는 이른바 同一說과 関聯하여 이를 憲法上 認定하고 있으나 그러나 独逸聯邦共和国의 領土는 基本法의 適用範圍를 넘어서 까지 미칠수 있다는 이른바 「國家核心의 變形 (Staatskernvariante)」理論을 取하고 있다. 특히 独逸民主共和国도 独逸聯邦共和国의 領土위에 存在한다는 主張이다. 聯邦의 機関들은 그곳에서 다만 實質的인 理由때문에 当分間 国家高權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原告는 独逸民主共和国을 「國家」로 認定할 수 없고 또한 領土의

不可侵問題나 独逸民主共和国을 国内·国外關係에서 尊重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原告는 独逸의 領土는 独逸聯邦共和国領土만이라는 同一說의 '縮少된 国家 変形 ( Schrumpfstaatsvariante )' 說을 완강히 拒否하고 있다.

이 告訴는 国家核心說과의 妥協를 不可避하게 만들었는데 일면은 그 内容에 他面은 憲法上의 問題이다.

1. 聯邦政府의 눈에 비친 法的主体로서의 '独逸' 과 聯邦共和国과의 関係

(1) '独逸' 은 1945年 二次大戰의 敗亡으로 滅亡되지 않았다. 이 점에 関해서는原告도 같은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憲法裁判所의 判決도 이를 認定하는 바이다.

(2) 1945~1949年間의 國際法上 및 憲法上의 發展過程 :

四大占領國의 最高 権威는 '共同으로' 같으나 다만 각자의 占領地区에만 行使된다. 占領權의 撤收는 最初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始作하여 最高 영역에 까지 미쳐서 '独逸國家權力' 을 되찾게 되다. 東西獨紛爭. 1947年6月8日의 뮌헨에서 州國務總理會議의 決裂. 西方占領地域 國務總理들은 각자가 州의 代理人이라는 意識을 갖고 勤務하는바 여기엔 代表性이 결여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全體責任性을 意識하타. 여기서 '代理人' 으로서의 虚弱한 地位는 後에 基本法 前文에 明示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聯邦共和国 基礎

의 前史：非国家性，非憲法의 制定，그의 失敗 等 (BVerfGE 1,368  
参照)

(3) 联邦共和国과 独逸파의 関係：우선 国家가 아니라는 問題보다  
도 国際法上의 問題：聯邦共和国이 独逸帝国의 権利·義務를 繼承한  
다는데 대한 3 가지 方法의 可能性을 생각해 볼수있다：

(a) 法的 繼承：이는 独逸帝国의 滅亡을前提로 한다.

(b) 同一性

(c) 代理，代表，信託統治，自發的으로 独逸帝国의 権利·義務를  
聯邦政府에 譲渡，國家共同体를 通한 独逸帝国의 権利를 自發  
的으로 認定

b) 와 c) 사이에는 正確한 区別을 내릴 수 없겠으나 그러나  
基本法의 制定을 더듬어 보면 c)의 解決에 더接近한다.

外的境界에 關해서는 1950年5月19日에 뉴-욕에서 行한 外相會議에서 決定을 본바 있다. 独逸의 統一을 볼때까지는 國際關係에서 联邦共和国을 "独逸을 위한 独逸民族의 代表"로 보기로 同意하였다. 同日字 外相兼首相인 아데나워氏는 이 決定은 결코 联邦政府를 法律上 全独逸의 政府로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同一説을 잘못 理解하게 된 原因은 무엇보다도 이 声明이 1971年에야 公開된에 起因하고 있다.

同一性을 갖느냐 또는 代表性을 갖느냐의 性格을 規定지우는 하나의 妥協은 1952/53年에 있는 런던債務協定時に 決定을 보았다.  
聯合軍側의 案에서는 独裁聯邦共和国을 独逸帝国의 責任性을 "委任"

받았다고 記述하였으나 独逸代表가 이를 拒否해 버려서 妥協된 것  
이 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의 責任性을 "繼續하여" 진다고 하였다.

聯邦共和国에서 代表性과 同一性의 차이와, 独逸에 对해 言及한  
權利와 独逸政府로서 行한 權利와의 차이를 抹殺한 듯한 印象을  
주었기에 西方三国은 그들의 立場을 再強調한바 있다. 即 1955年  
5月 제네바에서 行한 美·英 外相會議에서 決定을 보기를 "國際  
法上 独逸은 國際法主体로 繼續 존속함이 認定된다. 그러나 独逸  
聯邦共和国과 이론바 独逸民主共和国이 하나로 合쳐서 돈 나누어서  
든간에 独逸로서의 活動과 義務履行이 全独逸의 政府로 行하는 것  
으로는 認定할 수 없다"

(4) 基本法制定者들은 설명 願하였드라도 이範圍를 넘으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主權은 占領국에 의해 制限되고 있  
었다. 占領국들은 形式上 全独逸에 대해 責任을 지고 있다.

占領국들은 独逸聯邦共和国이 誕生한 後에도 繼續해서 独逸聯邦共  
和国이라는 말과 '独逸'이라는 말을 区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独逸帝国의 國際法主体性의 問題는 後에 再編되야 한다는 見解를  
갖고 있다. 이는 例를 들면 独逸條約에서도 分明히 밝힌바 있는데  
同條約 第2条 및 第7条에서 "独逸"이란 말이 나온다. 여기서  
独逸을 再組織된 全獨을 國家로 보고 장래의 平和條約의 当事者라  
고 보려는 立場인데 反하여 独逸聯邦政府의 見解는 現 独逸聯邦共  
和国이 当事者라고 놓박고 있다.

(5) 따라서 基本法에서는 同一性의 問題에 대해 確固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基本法에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의 区別은 西方三大國의 見解와 같이 하고 있는바 「独逸聯邦共和国」은 基本法에서 構成된 西部國家이고 「独逸」은 國際法主体로서 独逸帝國을 意味하며 그의 再編成의 길은 열려있고 또 努力도 하고 있다. 이에 따를것 같으면 聯邦共和国의 領域은 基本法의 適用領域을 말하고 (基本法前文, 第23條 1項), 「独逸」의 領域은 이를 벗어나고 있다 (前文 마지막 句節, 第23條2項, 第116條2項), 独逸聯邦共和国의 밖은 「独逸의 다른部分」(基本法 第23條 2項)이지 「聯邦共和国의 다른部分」이 아니다.

(6) 基本法의 어느條文에도 同一性의 問題에 確實히 跛한곳은 없다. 이에 대해 基本法에서의 規定들을 살펴보자:

前文에서 「民族的 統一을 維持한다」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聯邦共和国에 分離된 國民을 願치 않으며 오히려 独逸聯邦共和国에 參加할수 없는 独逸人도 고려에 넣고 있다. 우리는单一의 国籍을 堅持한다. 우리는 모든 独逸人에게 独逸人에 賦与된 基本權의 保障을 保証한다.

「……國家的 統一을 維持한다」 우리는 「独逸」이 1945年에 法的主体性이 消滅되지 않았다고 보며, 独逸聯邦共和国의樹立에 의해서는 하등 問題가 될수 없고, 独逸聯邦共和国은 國家의 聯合이 아니라 하나의 聯邦国家이다.

그밖에 基本法 第 146 条에서 基本法이 全独逸人에 適用되는 憲法의 制定時까지 適用한다는 過渡期의 問題, 第 116 条에서 単一의 独逸国籍을 持続시킨다는 点, 第 23 条에서 基本法의 適用에 있어서 独逸의 바깥 領域에는 그들의 加入後에 效力이 發生한다는 点과, 第 89 条 90 条에서는 결코 同一性을 實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反對이다.

万若 同一性이라 믿으면 이 規定을 잘못 理解한 것이겠다. 所有權者란 法的으로 所有權者임을 証明하는 것이다. 所有權의 移転이 한 反對로 同一性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第 134 条는 聯邦과 州의 財產分配에 관해 規定하고 있다. 그第 1 項에서 帝国에서 聯邦으로 権利의 移転에 関해 規律하고 있는바 帝国의 財產은 聯邦財產"이다가 아니라 帝国의 財產은 聯邦財產이 "된다"고 分明히 밝혔다.

## 第 2 同一說

(1) 原告에 의해 主張되는 同一說은 1950 年代에 널리 알려진 說로서 이는 憲法의인 學說이라기 보다는 國際法의인 學說이다. 이 說은 基本法 施行後에 衰退해 버렸다. 처음엔 代表性이라던지 信託統治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用語上 단순히 使用되어왔고 根本的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의주장이 되어버렸다.

(2) 原告가 主張하는 基本法 前文의 「保全條項」에 대한 解釈은  
憲法的으로 賛成할수 없다.

### 基本法 前文

(a) 前文은 一般的으로 直接的으로 效力を 미치기 보다는 美麗辭句의이고 宣言의이고 또 政治的 프로그램의인 表現으로 다른 모든 法規를 解釈하는데 이에 따르라는 뜻으로 만들어 졌다.

基本法의 前文의 단순한 政治프로그램의인 性格은 聯邦憲法裁判所에서도 分明하게 立場을 明하고 있고 다만 例外로는 「再統一에의 促求」( BVerfGE 5,127 )인바 이는 「保全에의 추구」와는 区別되는 것으로原告도 이를 認定하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이例外를 더 拡大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점은 基本法制定者의 意圖와一致하고 있다.

(b) 前文中에는 国家機關의 法의義務를 意味하는 「保全의 許容」이라 理解할 말이 内包되고 있지 않다. 이는 오히려 基本法制定者들이 聯邦共和国이樹立되드라도 國家的 統一을 바란다는 意圖로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再統一이라는 말은 法의許容으로 確定된다고 본다( BVerfGE 5,127 )

全体独逸의 国家權力의行使가 우선 어떤 制限된 地域에만行使된다라는 認識은 여기서는 단순히 基本法前文의 政治的 意味下에서 본것이다. 따라서 法的으로 確固되고 法的으로 保障되어서 基本法

解釈上 꼭 注意해야만 함 強力한 힘으로 理解될것이 아니다.

(c) 保全의 許容이란 말은 不可能을 要求한 것은 決코 아니다.

基本法制定者들은 国家의 統一을 지킬것을 意識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나 이를 이를수가 없었으므로 오히려 反對로 要求하기를 장차 언젠가 統一된 独逸의 成就를前提하였다.

原告는 그들이 主張하는 憲法上의 許用을 特定한 學說의 保障을 許用한것 즉 国家核理論의 保障을 憲法上 保障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基本法 第 23 条는 基本法의 實施되는 州들을 '一部独逸'로 보는 반面에 '다른 独逸'이 있음을 豫定하고 있다.

이는 '独逸'에 대한 独逸聯邦共和国의 関係는 部分秩序說의 意味에서 이지 同一說에서의 意味가 아니라고 理解하고 있다.

(3) 이론과 国家의 統一에 대한 保障의 憲法上의 許容이라 解釈하는原告의 見解는 다음에서 보는 넓은 意味의 政治的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a) 独逸民主共和国은 어떤 狀況에 適해 있드라도 独逸聯邦共和国으로부터 国家權能이 認定되지 못할 것이라는 結果다. 가령 独逸民主共和国이 西歐的 意味의 自由·民主主義의 憲法을 갖는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東獨의 国家性에 아무런 瑕疵가 없더라도 만찬가지라는 結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는 우리領土內에 있는 準반란적인 事實上의 政府로 보아 쥐야 할 憲法上의 義務를 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과

의 再結合이란 独逸民主共和国을 独逸聯邦共和国에 統合시킴으로서  
만이 可能하다는 結果이다.

(b) 独逸民主共和国과의 國家條約은 締結될수 없을 것이다. 基本條約이 違憲的일 뿐만아니라 通行條約은 違憲의이라는 結果를 낳게된다. 基本條約 第7條에서 約束된 條約들은 締結을 볼수 없게 되거나 또는 國家條約으로서 締結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c) 나아가서 우리는 國際社會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이 承認되는 것을 막도록 努力해야 할 憲法上의 義務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努力의 效果가 없다든가 또는 우리의 意思에 反하여 独逸民主共和国이 國際社會에서 認定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國際社會에서 孤立될지도 모른다는 点도豫見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자작한 모든것은 憲法上 許容을 外交政策에 指針이 될 것이고 聯邦機關의 政治的 裁量은 極限에 到達할 것이다.

原告가 생각하는 '保全의 許容'을 行하게 되면 外交政策上 優秀한 計劃이 될수도 있겠으나 이는 分明히 말해 두지만 어리석은 外交政策이 된다. 이는 憲法上의 意義 및 可能性을 벗어날뿐 아니라 基本法 制定者들이 바라지 않았던 結果를 낳게 하는 것이다.

### 3. 聯邦憲法裁判所에서의 이에 関한 지금까지의 判決例

(1) 聯邦憲法裁判所의 同一性問題에 대한 唯一한 分明한 信條는 '國家와 教會와의 條約에 대한 判決' (Konkordats-Urteil, BVerf

GE 6,309)에서 이다. 同判決集 338面에 보면 '만약 基本法에 依하여 構成된 機関들이 臨時로 帝国의 어느 一部에만 適用하는 것으로 局限시키게 된다면 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과 同一時 된다' 이러한 見解는 다음과 같은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a) 이 宣言은 다음의 文章 '結果的으로 聯邦共和国은 独逸帝國에 締結한 契約에 拘束된다'라는 말을 연역케 된다. 이 判決에의 拘束은 그러나 代表牲에 根拠한 同一性이나 또는 独逸帝國의 義務를 기꺼이 繼承한다는 内容을 採択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바이다.

(b) 同一性乃至 代表牲을 '통한 拘束性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問題에 對해 여기서 聯邦憲法裁判所는 전연 言及치 않았고 또 問題삼고 있지도 않았다. 論點은 順次上 帝国의 領域에 미치는 聯邦의 拘束性이 州의 固有權限과 対面케 되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問題삼을 것이 없으며 또 基本法 第 123 条 2項에서 미리 예견하고 있는 바이다.

同一性에 對한 根拠는 完全히 부수적인 結果이다.

(c) 同一性에 對한 主張은 國際法의인 立場에서 主張된 것이지 憲法의인 性格을 갖는것은 아니다. 憲法裁判所는 境遇에 따라서는 國際法의인 問題에 對해 言及해야 한다. 그러나 國際法上의 論爭 問題에 聯關해서 決定해서는 안된다.

(d) 同一性에 대한 主張의 唯一한 根拠는 聯邦憲法裁判所判決集 第3卷 319 페이지 以下에서 言及하고 있다. 여기서도 결코 同一

性에 重点的으로 言及한 것이 아니라 다만 1945年 以後에도 独逸帝国이 存続한다는 点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 存續의 問題는 同一說과 一部統治說을 主張하는데 論爭의 点이 될 수 없을 뿐이다. 同一性에 对한 存續의 終決은 联邦憲法裁判所가 그 判決을 내림에 있어서 同一性이나 代表性의 問題를 何等 考慮치 않았다는 데에 있다.

(2) 同一性 問題에 对한 联邦憲法裁判所의 判決은 国家와 教会間의 条約 (Konkordats-Urteil)에 对한 判決外에 第1審判部에서 行한 緊急採択에 对한 判決이 있다 (BVerfGE 2, 267). 이 判決의 陳述은 a) 多義的이며, b) 消滅된 宣言이고, c) 联邦憲法裁判所의 後의 判決을 통해 이를 超越해 버렸다.

a)에 对하여: 联邦憲法裁判所는 基本法에서의 見解는 全独逸国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全独逸의 国家領域 特히 全独逸의 国家權力 까지도 意味한다고 説明하고 있다.

여기서 全独逸 国家領域을 分明히 基本法의 適用領域보다는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勿論 一部統治說과 같은 見解이다. 一部統治說을 支持하는 말로서, 联邦共和国은 権限있고 独自의 行為能力을 가진 全独逸의 一部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联邦憲法裁判所의 見解는 联邦共和国은 스스로 '全體国家의 国家觀으로서 合法的으로 認定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同一說에 对한 認識으로 밖에 볼 수 없겠는바, 国家核理論을 위한 全独逸国家領域에 对한 陳述이라고 말할 수 있다. 他面 '聯邦의

領域'은 分明 '基本法 適用領域'과 同一視하여 蘇聯占領地域과 別區別하고 있다( BVerfGE 2, 267 ) 이는 結局 다시금 縮少國家說을 말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判決을 가지고 3 가지 說을 主張하는 擁護者들은 그들의 說을 支持하는 判決이며 나아가서 다른 두 說에 우선 하는 文書라고 主張하고 있다. 不分明과 不確實한 이時點에서 理論上의 論爭을 벌린다는 것은 時期尚早의 일이다.

(b) 이 決定의 重要性은, 蘇聯占領地區내의 独逸人이 聯邦共和國 領域내로 移住한 權限은 "一般的이고 永遠한 抛棄"라고 基本法 第11條에 抵触됨이 없이 可能한 것이라고 본다는 点이다. 그 根柢로서는 蘇聯 占領地區내에 있는 独逸人은 基本法 第116條1項에서 말하는 "独逸人"이며 따라서 基本法 第11條에 依拠한 基本法의 適用 對象者임이 分明하다. 聯邦憲法裁判所는 이 根柢에다 부가하여 聯邦共和國은 "全体國家의 國家機關"이며 이의 形成과 機能의 原則의in 見解에 對해서는 基本法 第11條 2項이 適用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判決은 充分치도 또 確實치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附加的인 根柢는 아무런 마련없이 둑살시켜 버릴수 있겠다. 따라서 이는 持続시킬 理由가 못되어 消滅된 宣言이고 또한 이에 拘束될必要도 없다.

이는 우선 聯邦共和國이 全体独逸의 一部일것 이라는 問題를 支持하기 為한 全体独逸領域에 대한 소견에 잘 適用되고 또한 마찬

가지로 聯邦共和国이 「全國家의 國際機關」이라는 소견도 支持하게 된다. 이 問題를 支持하기 為해서는 國家領域에 관한 示唆를 하지 않았음이 오히려 더 낳았을 것인바 이 point에 関해서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混亂만을 惹起시키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도 이를 認識하고 있는듯 하다: 「基本法 第 11 条를 解釈함에 있어서 基本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全獨逸의 國家民族이라는 原則의in 見解뿐만 아니라 全獨逸의 國家領域 特히 全獨逸의 國家權力이라고 原則의in 見解도 갖고 있다( BVerfGE 2, 266, 277 )」

「特히」라는 말은 國家領域에 對한 소견으로는 分明히 不確實한 뜻이다. 이는 正當하게 定立될수 있다. 왜냐하면 分明히 全獨逸의 國籍은 다만 全獨逸의 國家權力에 관한 問題이지 領域에 關한 問題가 아니다. 따라서 居住移轉에 對한 基本權은 獨逸人에 適用되는 것이지 「獨逸」이라는 例를 들면 南獨 等等의 領域에 關한 問題가 아니라 國家領域에 對한 소견은 그래서 消滅된宣言이며 이는 나아가서 다른 消滅된宣言을 낳게되고 따라서 이 소견은 適合치 못하다.

(3) 어떤 學說을 取하는지 分明한 態度를 밝히지 않은것은 獨逸共產黨에 對한 判決( KPD-Urteil )에서 인데 여기서 獨逸聯邦共和国을 「場所의으로 우선 制限된 領域위에 全獨逸의 國家權力を 行使」한다고 보고 있다( BVerfGE 5, 85, 127 ).

이러한 見解는 一部統治說乃至 縮少國家說을 意味하는 것인지 어떤 境遇에 있어서도 國家核學說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一部統

治説을 뜻하는 解釈으로서 全獨逸의 國家權力を 「行使」한다는 말이지 「所有」한다는 만이 아니다. 이 点이 法律的으로 概念上의 差異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 스럽다. 「行使」를 「所有」라고 理解한다면 이 文章은 同一性의 問題를 意味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縮少國家說도 意味하게 되는데 그 理由는 國家核學說에 따르면 獨逸聯邦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의 統治領域도 支配한다고 본다. 分明히 同一性의 問題에 反對하는 말은 期待되는 國家의 再統一의 節次를 考慮하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基本法의 組織은 獨逸民主共和國의 領域에는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全體獨逸國家를 再組織하는 結果가 되었으며 또한 基本法의 「過渡期」의 性格은 끝났다고 말할 動機에 이르게 된다. 基本法 第 146 条가 同一性의 問題에 대해 다만 그 機能만을 생각하고 成就될 再統一이 「새로운 全體國家에 對한 門戶」를 열어는 것이라 보이는 再統一은 오직 全體獨逸國家의 樹立으로서 이루어 지게된다. ( Vocke, Deutschländs Rechtslage im Spiegel der Lehre und Praxis, 同旨 v. Mangoldt-Klein, S. 37, Schuster, S. 144 )

恒常 獨逸共產黨判決 ( KPD-Urteil ) 에 對한 소견에서 理解되는 바와같이 이는 하나의 消滅된 宣言이 分明하다. 判決의 重要性은 基本法 前文이 어떤 法的인 再統一의 許容을 賦與했을 것이고 이는 아직 損傷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再統一의 許容에 對한 根拠와 關聯하여 聯邦憲法裁判所는 基本法은 「當然히 무엇보다도 政治的 意義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政治的 意義의 예

증은, 우리 政治組織이 基本法 前文의 근저에 놓여 있는 「全体独逸의 国家権力의 行使」라는 点이다. 그렇다면 前文의 政治的인 信條일 것이다. 그렇다면 前文은 또한 法的意義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再統一의 許容은 發展될 것이다. 「全体独逸의 国家権力의 行使」에 関한 確定은 決定的인 意義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反對로 直接的인 法的인 意義는 없다고 확정된다. 이러한 확정은 연관된 法的遂行을 除去시켜야 한다는 그 背景을 指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전형적인 消滅된 宣言을 말하는 것이고 如何한 狀況下에서도 연관시킬 수 없다.

(4) 国家核學說을 反對하는 見解는 联邦憲法裁判所의 테레비존判決에서 볼수 있는데, 基本法 第87条 1項의 行政管轄權에 関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外國人이거나 独逸人에 대해 一括的으로나 压倒的으로 独逸聯邦共和国外의 独逸領域에 사는 사람들에게 放送을 보내는 것은 正當한 権利가 있는 것일 것이다 (BVerfGE 12, 205, 250) 여기서 独逸聯邦共和國의 領域을 基本法의 適用領域으로 限定지었음을 分明히 말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이 条文은 一部統治說이나 縮少國家說의 意味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學說은 分明치 못한点이 있어서 国家核學說을 主張하는 者들은 이와 같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条文으로 그들의 主張에 맞게 解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独逸聯邦共和国을 「그 延長이 全体國家領域에 까지」 미치는 联邦共和国과 「憲法

上의 領域에만 限하는 '聯邦共和国으로 区別해 볼 必要가 있다'고

R. Schuster는 主張한다. 이는 具体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두 말할 바 없이 識別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問題가 있을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는 테레비죤判決時에 憲法上의 領域을 國家領域과 区別코자 하였는데 이는 쉽게 '識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요즘 와서 Schuster는, 이 文章은 다만 一部統治說의 意味를 内包하고 있다고 分明히 表現하고 있다. (Wilhelm Wolfgang Schütz가 編輯한 独逸問題에 관하여 1973. 191面, 201面에서).

테레비죤 判決에 对한 이러한 所見은 다만 어떤 宣言的인 性格을 갖는 것이라고 理解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宣言은 어떤 境遇라도 同一性問題에 对해 同意하는 聯関性 있는 法律觀이라 말 할 수는 없다.

(5) 그러나 判決中에는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에 对한 関係에 对하여 宣言의 性格이 아니고, 持続的인 判決理由를 내포한 것도 있다. 여기서는 联邦憲法裁判所가 '聯邦共和国'과 '独逸'을 区別하고 있고 이는 一部統治說에 가까우며 如何든 同一性問題의 見解에 反对하는 것이 分明하다.

그래서 联邦憲法裁判所 判決集 12集 150面과 158面에서 同第 1審判部의 見解는 蘇聯占領地域은 '独逸'에 属하나 이와 独逸聯邦共和国과의 関係에 있어서는 外國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憲法裁判所의 第1審判部는 같은 見解이다 (BVerfGE 1, 341)

(6) 그러므로原告가主張하는同一性問題의主張은憲法上有效한것이못된다.

第1審判部나第2審判部도상치되는法律觀을갖고있다. 가끔適用되는同一性問題는消滅된宣言에不過하다.

結論的으로말해서憲法裁判所의지금까지의見解는一部統治說에더接近하고있다.

#### 4. 「持続意思」의 内容

憲法自体에는「持続의許容」에관한 아무런規定이없고 다만基本法前文에基本法制定者들의「持続意思」가내포되어있을뿐이다. 이것은프로그램적性格乃至期待的性格을가질뿐이다. 따라서이러한期待는결코聯邦共和国과「獨逸」을同一視하지 않는다. 이두가지理由때문에이問題에關한憲法抵触의問題는일어나지않는다. 그럼에도不拘하고이持続에對한기대가어떤内容을가지며基本條約은完全한것인가하는問題가전혀意味없는것만은아니다.

基本法制定者들은法의主体로서獨逸의持続을主張한다. 法의主体로서의獨逸의存續은「國家의in統一의保全」이라는말뜻에내포되고있는데이는聯邦共和国의樹立에依해서도何等障礙를받지않는다고생각하였다. 이와같은意思로부터將來의聯邦機關이그의存續을可能케하고이에侵害되지않을것이라는希望와기대가나오게된다.

獨逸의 再組織이란 基本法制定者들이 우선하여 생각하였든 바의 再統一의 形態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의 保全은 憲法上 再統一의 許容에도 利益이 된다.

이는 再統一의 機会에 法的으로나 事實的으로 障碍가 되지 않도록 要求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獨逸의 存續은 再統一의 機会에 도움이 될것이고 이 存續은 또한 再統一의 許容을 내포하는 것이다.

持統의 許容을 이와같이 理解하는 것은 여하튼 再統一의 許容과 同一視하는 것이다. 이런 觀點下에서는 獨逸의 再統一의 機会를 事實 저해할 것인가 아닌가, 좀더 나아질것인가 또는 이 問題가 聯邦政府의 政治的 裁量의 태두리 안에 있고 또 法的으로는 解決될수 없는 問題인가를 審查 할 뿐이다. 이러한 再統一의 訸容에 상관없는 現存하는 持統의 訸容은 있을 수 없다. 結局은 基本法制定者들의 프로그램적 기대만이 있을 뿐이다.

이 기대는 그러면 實質的으로 또 政治的으로 보아 어떤 内容을 가질 것인가? 오직 다음의 問題만을 갖는다:

- ① 全體로서의 獨逸로 보는 四大強國의 留保를 西方 三  
大國도 따라야 한다.
- ② 法的主体로서 獨逸의 繼統存續은 抛棄되지 않는다.
- ③ 獨逸民住共和国을 外國으로 認定하는 것을 막는다.
- ④ 獨逸民族의 单一性을 固守한다.
- ⑤ 獨逸国籍을 固守한다.

基本條約이 이런 기대에 充分히 寄与하고 있음을 이미 言及하였

다. 基本條約은 우리에게 우리의 法律觀을 繼續 主張할수 있게 하고 있다. 原告는 基本法이 바라는 点을 달리 解釈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内容을 더 添加시켜서 即 우리는 独逸民主共和国과 合意가 안되므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独逸民主共和国과 서로 상치되는 法律觀이다.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의 存続을 否認하고 있다. 東獨의 배후에 있는 蘇聯은 独逸의 存続을 否認하며 이 問題에 对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独逸民主共和国 및 蘇聯과 協商하여 이 意見上의 不一致를 解決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原告는, 聯邦政府가 独逸民主共和国에게 우리와 같은 法律觀을 갖도록 어떤 조건을 부치거나, 独逸民主共和国이 우리와 같은 法律觀을 같도록 強要하거나 또는 基本條約 自体를 破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万若 그렇다면 여기에 3 가지 큰 오류가 근저에 있게 된다. 첫째는 基本法의 拘束力은 適用範圍 밖으로는 더 나갈수 없다는 点, 둘째로原告가 말하는 것 처럼 憲法의 要求이겠는데, 政治的裁量의 自由와 政治的 要求가 不一致한 点이다. 마지막으로 세째로는 国家的 統一은 이 要求를 通하여 決코 그때 그때 필요한 政治를 하도록 許容하고 있지 않는 点이다. 事物의 廉價法으로 보아 独逸의 分斷은 이 方法을 通하여 深化되고 壓固化되고 解決할수 없게 되여 버린다.原告는 단지 이 學說을 끝론것에 불과하고 国家的 統一이란 反對로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이다.

第 2 에 对한 提議文 : (再統一에의 許容)

(1) 聯邦政府가 憲法上의 「持続의 許容」에 对한 原告의 主張 을 否認하는 限 再統一에의 許容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은 (BVerfGE 5,85 ff.) 繼続 有效할 것이다. 基本條約은 이 憲法 上의 許容에 抵触되지 아니한다.

(2) 再統一에의 許容은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

(a) 正確히 말해서 再統一妨害禁止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聯邦共和國의 機関이 再統一의 目的에 对한 어떤 措置를 내린다는 것은 憲法上 「分明」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b) 禁止란 그 侵害가 「分明」 할 때에만 적절한 것이고 措置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正當化 될수 없다(비슷한 境遇가 Saar 判決에서 보여 진다. BVerfGE 4,157,174). 이와 関聯하여 聯邦憲法裁判所는 不明確한 將來의 發展될 問題를豫言한다고 強調할수 있다. 分明한 点은 憲法裁判所는 將來의 政治的 發展은豫言하여 判断할수 없는 것이다.

(c)豫則되는 方法

法의인 또는 事實의인 除外로 因하여 再統一에 对한 不可能한 方法은 憲法에서 考慮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聯邦憲法裁判所의 見解로는 再統一에 对한 모든 생각할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d) 成就可能性

政治的 裁量의 範囲를 限定치우는데 對한 批判을 联邦憲法裁判所는 Saar 判決 ( BVerfGE 4, 1547 ff )에서 처음으로 展開시켰는데 이는 基本條約의 判定에 接近하고 있다. 联邦憲法裁判所는 政治의 인 立場을 考慮하였는바 여기서 "政治的으로 可能한것" 以外에는 主張하지 않았다 ( BVerfGE 4, 157, 168f )

(3)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는 再統一이 基本條約 때문에 障碍가 되는가 좀더 자세히 말하면 法的으로 잘못 되었거나 實際로 實行이 不可能하게 하였는가가 問題이다 ( BVerfGE 5, 130 ) 万若 그렇지 않다면 여러 見解 特히 原告가 主張한 "接近說"에 对해 생각해 볼必要가 있다.

再統一은 法的으로 不可한것도 아니고 또한 實際로는 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4) 再統一에의 機会가 法的으로 不可能하지도 않고 實際로도 不可能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理由때문에 独逸의 分斷이 "深化"되고,原告가 말하듯이 分明하게 深化된다는 것일까 앞으로의 發展과 関聯하여 보면 이런 見解는 根拠가 없다. 反對로 사람들이 再統一을 願하기만 한다면 機会는 오는 것이다. 이는 旅行 및 相互法 問議 可能性을 前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所望을 이 基本條約이 滿足스럽게 解決해 주지는 못하나 더改善되어야 할 것이라는 点이다.

一基本條約은 베를린과 関聯하여서 基本法의 規定에 爭斗할 것  
이라는 바이에른 사람들 및 바이에른 政府의 見解에 對하여  
바이에른 사람들과 그 政府는 이와 関聯하여 세 가지 問題를 고소  
하였는데, 이에 對해 잠간 言及할 必要가 있다.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지금까지 주어진 与件을 넘어서 베를린이 聯  
邦共和国에 密接한 関係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問題이다.  
베를린을 위요한 兩側의 見解는, 独逸民主共和国内에 있는 聯邦政府  
의 常駐代表 四大強國의 協定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利益을 代  
表하여 있다는 것이 의심될 여지없이明白해졌다. 나아가서 베  
를린에 對한 兩側의 똑같은 見解는, 基本條約 附則 第7条에 의하  
여 再確認된 바의 베를린에 對한 四大強國의 協定과 마찬 가지로  
聯邦政府는 確實히 베를린에까지도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基本條約은 法的地位와 安保問題를 除外하고서는  
U N에서 까지도 베를린을 代表한다는 政治的 觀念을 갖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異議에 對하여」 :

(1) 條約法 第2条는 베를린 問題를 除外시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베를린에 関한 諸規定들과 関聯하여 이에 適用시키고 있다.  
이는 第7条에 對한 부수조약에서 보여주는範圍를 넘어서 例를 들

연 家族의 結合을 위한 書信往来, 国籍問題의 留保, 財產問題 等을  
取扱하고 있다.

(2) 그러한 法的狀態로 부터는 베를린에 对한 兩側의 說明은  
合憲法이라는 結果가 나온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사람들과 그 政  
府는 基本條約에 对한 어떤 政治的 要求, 即 基本條約에서 베를린  
에 对한 問題를 自動的으로 強化시키거나 또는 同協商은 破棄해  
버리기를 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行動이란 決코 베를린에  
有利할 바가 못된다. 西베를린에 对한 兩側의 說明은, 베를린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条約들과 마찬가지로 独逸民主共和国과도 맺어  
야 한다는 態度를 取함이 分明하다.

(3) 바이에른 사람들과 그들의 政府가 갖는 또다른 생각은 基  
本條約 第3條 2項에 関해서이다. 東베를린 境界線의 不可侵에  
对한 規定은 独逸民主共和国의 保護와 関聯한 것이고 이는 東베를  
린이 基本法 第23條 1項에서 말하는 「大베를린」의 一部과 하더  
라도 東베를린에 对한 独逸民主共和国의 主權을 認定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問題는 쉽게 解決될수 있는바, 基本條約 第3條 2  
項에서는 東·西베를린을 똑같이 取扱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은 全体가 四大強國의 特別한 責任下에 安保와 地位가 保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이 問題에 对  
해 条約을 맺을 狀度에는 이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社會主義者들은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의 「勞動者階級」

으로서 補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의 所謂 無產階級은 社會主義者에 屬합니다. 社會主義平和政策은 바로 革命政策이라는 것을 再確認하면서 '호네커'는 一九七三年 五月二九日 東獨社會聯合党(SED) 中央委員會 第9次會議에서 国家의 概念에 関해서 말하기를 '万若에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을 包含한 西歐羅巴가 社會主義의 길을 걷는 境遇, 歐羅巴民族들이 어떤 形態로 共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將次 두고 볼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獨逸民主共和国(東獨)의 指導層과 政府가, 基本條約과 合致되는 唯一한 可能한 統一方法이라고 보고 있는 東獨憲法 第8条2項에 의한 統一은 그러나 西獨憲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西獨憲法은 自由統一만을 許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基本條約은 法的인 障碍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独逸의 分割을 確固히 하므로서 独逸問題 解決에 審로운 事實을 초래할 것으로, 그와같은 基本條約은 統一念願과 어긋납니다. 法的인 障碍物은 西獨憲法 專門의 趣旨를 해치므로서, 国民의 単一性을 保存하며 国家의 自由統一을 達成하려는 全獨逸民族의 意圖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基本條約은 東獨의 政府와 指導層으로 하여금 將次 法的으로 意見을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人間的인 面에서 一方의으로 讓歩를 하는 것은 独逸人們의 歷史의인 問題에 関한 損失을 決코 補償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國家와 独逸人们的 国家意識을 固守하며 나아가 政治的인 行為를 通해서 國家와 独逸人们的 国家意識을 奨励하라는 것은 西獨憲法이 크게 命하는 바입니다.

獨逸領土上에서 不自由体制의 담판을 함께 있어서 独逸政府는 強非性을 가지고서 自由統一을 고집해야 될 것이며 決코 滅亡을 許容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렇지 않는 境遇에는 独逸의 一部인 東獨을 喪失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신성로마帝國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变化 무쌍한 運命과 함께 近代史에 있어서 모든 变化의 要素가 된 独逸은 하나의 신성한 영지이므로 모든 國家權力은 이 領地를 保存하기為한 行為를 慎重히 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基本條約은 独逸問題를 西獨憲法의 目的에 接近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生存을 為한 하나의 条約이 바로 그 例라고 볼 수 있습니다. 障壁과 鐵條網(柏林에 있는 것을 뜻함)을 固守하는 것은 國家의 单一性에 背馳되는 法的인 障碍物에 該當됩니다. 障壁과 鐵條網을 存在하도록 하며 또 그 障壁과 鐵條網을 이 세상에서 가장 非合理的이며 非人間的인 境界線의 像徵이 되도록 하는 根本的인 条約을 締結한다는 것은 正常化가 아닙니다.

다시 開廷 하겠습니다.

提案者를 代身해서 브루멘비츠 教授任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브루멘비츠 教授님 質問이 있습니다. 基本條約의 어느 条項이 西獨憲法의 어느條項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좀더 詳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裁判長님, 本人은 法院의 指示事項에 関해 充分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第1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本人은 第1項에 関해서 要望하는데로 짧게 말씀드리고, 또 要約해서 말씀드리므로써 바이에른 州政府首相의 意見口述이 本 法廷의 制限된 時間計劃에 害가 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第1項에 関해서 말하자면, 바이에른 州政府의 제의내용은 基本條約을 全體的으로 反對하고 있습니다. 西獨憲法은 独逸이 國際法上의 主体로서 이전부터 存立하고 있는 것을 動搖시킬 條約을 独逸聯邦國(西獨)이 締結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고 있습니다. 独逸聯邦共

和国（西独）政府와 独逸民主共和国（東独）政府間에 締結된 相互往来에 関한 条約과는 달리, 즉 事實上 存在하는 政府와도 締結할 수 있는 다만 하나의 補充的인 条約과는 달리, 基本條約은 이제부터는 独逸聯邦共和国의 모든 機関이 独逸에서 分離 乃至는 解體過程을 밟도록 拘束된다는 것을 確定하고 있습니다.

條約內容에 있어서 特히 제 2 条 第 3 条 2 項 第 4 条 및 第 6 条는 独逸 땅 위에 理論上 2 個의 獨立된 主權國家가 存在하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基本條約上의 어느 個別 条項이 違憲이냐 하는 것은 疑問의 가치가 적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점에 関해서 더 말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問題가 되는 것은 條約의 어느 条項과 國際法上의 如何한 解釈에 根據하여 合憲的인 解釈이 可能하느냐 하는 点입니다.

一連의 發表를 通해서 西獨政府는 條約의 國際法的인 性格을 떠나 國際法과 憲法의 中間分野에서 合致點을 求하려는 解釈方式을 通해서 基本條約으로 因해서 發生하는 違憲性을 除去 하려고 企図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 土曜日 이 자리에서 分明히 洞察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에 関係되는 政府의 發表는 一貫性이 없으며 明確하지 않다는데에 바로 正當한 論理的 根拠를 찾기 어려운 点이 있습니다.

이미 公表된 것에 関해서 말씀 드리자면 바르聯邦長官은 「西獨과 第3國間에 締結된 其他 다른 約條과 統一한 拘束力」을 論理的 根拠로 들고 있고, 야안聯邦長官은 「特殊約條」이라고 하고, 또 셰長官은 「國際法의 유추적용」을 들고 있으며, 후랑케聯邦長官은 「國家間에 締結된 其他 모든 다른 約條 및 合議對同一한 國際法上의 拘束力」에 関해서 言及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表現上의 差異에 偕해서는 時間關係上 이 자리에서 더 詳細히 檢討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러나 万若에 基本約條上에 規定된 独逸民主共和國(東獨)과의 関係가 形式上 國際法上의 性質을 띠지 않는다면, 憲法上의 問題임은 分明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法秩序를 相對方 法秩序의 下位에 두거나 또는 共同의 法秩序를 第3의 法秩序의 下位에 두는 것을前提로 합니다. 각当事者들은 前者の 境遇은 第4條와 第6條의 明示的인 規定에 根拠하여 別다른 努力を 기우리지 않을 것이다, 後者の 境遇은 西獨政府가 分斷된 法秩序를 理解 하려는範圍內에서 努力を 傾注할 것인데 이에 関해서는 아마도 크리스티가 言及을 하시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境遇에도 西獨政府가 東獨의 独立과 主權을 認定한다면, 西獨政府는 東獨으로 하여금 独逸을 理解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同等한 待遇를 한 後에는 第3國도 東獨으로 하여금 全体独逸의 지붕 밑으로 들어와 종족관계에 서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関해서도 個別의 으로 나의 意見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理論的인 可能性을 正當히 取扱하기 為해서,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것은 西獨과 東獨에 依해서 構成된 特別法秩序 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류의 작은 法域은 뱅그레씨가 말한 바와 같이 同等한 法의인 土台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가 있으며, 東獨은 이에 関해서도 여전히 同意를 하지 않을 것이다.

條約의 비준과 発效에 関한 基本條約 第10条가 該當文書의 相互交換을 하도록 하고 있고, 西獨側에서 國家元帥가 文書交換에 參여하지 않는 狀況下에서도 基本條約의 特殊性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西獨憲法 第59條 第2項 第1節에 따라서 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될 條約은 第59條 第1項 第2節의 範圍內에서 憲法上 特別取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文書交換을 하는者가 西獨政府로 부터 委任을 받았느냐 또는 國家元帥로 부터 委任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國際法上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交換될 文書의 名称도 勿論 法의으로 全혀 重要性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西獨政府 및 政府代弁人們이 提示하는 또 하나의 論理의 根拠, 即 基本條約은 生存을 繼續하기 為함이라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生存을 繼續하기 為함에 있어서는 問題解決의 標準이 되

는 國際法이 한 暫定의 으로 通用되고 있거나, 적어도 暫定의 으로 通用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그 対象이나 内容面에서 暫定性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條約에 関한 「원」協定 第 42 条는 現行 國際慣習法과 마찬가지로 條約의 終了는 條約上 明示의인 規定이 있을때와 同協定上의 該當 規定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또 同協定 第 53 条 「發效期間이나 廃棄에 関한 明示의인 規定이 없는 條約은, 條約의 終了 또는 廃棄를 該當하는 双方当事者の 意思가 立証될 수 없거나 또는 條約의 性質上 必要한 境遇가 아닌 한, 終了되거나 一方의으로 廃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西獨政府는 独逸의 選擇權은 留保되고 있다고 主張하나, 基本條約이나 그 附屬記錄內에서는 法的으로 留保되고 있음을 찾아 볼수가 없으며, 그와 같은 主張은 政治的 意義를 가질뿐, 基本條約에게 살기 為해서 必要로 하는 條約이라는 法的 性質도 賦与할 수 없읍니다.

基本條約 前文 第 5 節에, 意見의 差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西獨政府가 該當하는 國家의 単一性으로 부터는 아무것도 推論할 수가 없읍니다.

즉 基本條約 第 5 節에는 「歷史의 으로 주어진 事實에서 出發하여 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独逸民主共和国(東獨)間의 國家의인 問題

를 비롯한 根本的인 問題들에 對한 見解差異를 해치지 않으면서  
本條約을 締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西獨政府는 이 点에 関한 限 西獨과 東獨間의 대등한 関係를 規定하기 위한 西獨의 基本原則 第10項에 있는 目的을 達成하지 못했습니다. 基本條約의 前文에 関해 強調 하건대 西獨政府의 報告를 通해서 恒常 할 수 있는 바로서는 独逸은 歷史的으로 주어진 事実의 一部가 아닙니다. 前文 第5條에 「見解差異」라는 表現을 함으로서 條約을 締結할 때 發生할 그 條約의 破壞的인 效果는 制限되고 또 局地化 되기도 합니다.

「해치지 않는다」라는 接続辭는 國家的인 問題上에 意見 差異가 있드려도 條約 文句上의 모든 規程은 그대로 存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獨逸統一에 関한 交信에 있어서도 亦是 마찬가지 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独逸統一에 関한 交信文書가 위에서 言及한 「條約에 関한 원 協定」의 適用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確實치 않습니다. 나는 法院으로 하여금 추상적인 國際法上의 論議를 하도록 하자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法院은 이것을 完全히 구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西獨政府가 東獨이 그 文書를 接受하였다는 領收証을 提出할 準備態勢가 되었다면, 條約에 関한 원 協定의 適用을 받을 問題인지의 与否만은 法院이 구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統一獨逸에 関한 書翰으로 因해 生存權을 為한다는 基本條約을 要約할 수 있을지 与否와 西獨이 該當義務를 相對적으로 보느냐 하는 問題에 関해서는 오로지 그 書翰內容을 參照하는 것으로서足합니다. 話題가 되고 있는 것은 自決權이나 獨逸統一에 関한 權利가 아니라 오로지 政治的인 目標(敵)인 것입니다. 條約締結과 関聯하여 表示된 政治的인 目標는 双方을 拘束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締結된 條約을, 條約에 根據한 條約相對方의 權利를 保障하면서 平和的인 方法으로 다시 變更하고자 하는 政治的인 目的 또한 條約上의 義務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와같은 義務를 制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政治的인 目標를 相對方에게 알림으로서, 例컨데 東獨이 該當書翰을 拒否함으로서 自主決定을 通해서 獨逸民族이 統一을 할 수 있는 欧羅巴內의 平和狀態에 影響을 끼치는 것을 絶對로 難늦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法的으로는 決코 必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基本條約 第9條 即 '西獨과 東獨 双方이 이미 締結한 條約과 西獨 및 東獨의 參加下에 이미 締結된 國際條約乃至 合意는 아무런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規程하고 있는 第9條는 法的으로 意義가 크다고 봅니다. 條約 가운데에서 가장 利害關係가 깊은 條項中의 하나가 確實히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 文

句上 서로 거의同一한 규정인 모스크바條約 第4條와 “바르샤바”  
條約 第4條의 규정도 비슷한境遇입니다.

弁論을 하는 가운데, 旧條約의 우선권에 関한條項, 相互合意에 関한條項, 第三者의 保護에 関한條項, 繼續發效与否에 関한條項等이 問題가 되느냐 与否에 関해서 言及할 수 없는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可能한 모든것들이 學問的으로 論議가 되고 있습니다만 確固不動한 意見은 아직 없는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下記 詳論을 為해서, 第9條를 旧條約의 優先을 定하는 규정으로 보는 解釈을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西獨政府의 論理的 根拠에도 어려운 点은 亦是 있읍니다.

万若에 西獨政府가 例컨대 独逸條約 第7條 第2項에 依拠한다면 은, 西獨憲法과 비슷한 自由民主主義憲法을 保有하면서 欧洲共同体에 새로 加入하게 될 統一된 独逸은, 基本條約의 法의內容과는 関係가 없는 政治의 目的으로서 成立되었다는 것이 実証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本人의 意見으로는 이것은 가장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第9條는 勿論 東獨의境遇에도, 條約이 그것으로서 正常化와 緊張緩和의 道具가 되고 双方이 추구하는 技能上에 있어서의 意義를 衰失하게 할, 所謂 冷戰의 條約項目을 방폐로 삼는 것을 正當化시킬것 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1955年 9月 20日付의 東獨과 蘇聯間의 関係에 関한 條約 第5條 第2項과 1964年

6月 12月付의 蘇聯과 東獨間의 友好援助條約 第4条 第2項만을  
参照하도록 하는 바 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学問的으로 크게 抬頭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가 본바로서는 西獨政府는, 우선適用与否에 関한 条項을 解釈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原則이 適用된다는 것을 득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條約 第4条와 関聯되는 問題를 学問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條約을 締結하는 境遇 條約當事者들은 이미 合意된 條約內容과는 달리 추상적인 우선적용여부에 関한 条項을 根拠로 하여 第3者와 맺은 條約에 根拠를 둔 權利主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義務를 받아 들이지마는 그義務를 外形上 규정하고 있는 条項을 相對的인 것으로 보는 條約當事者인一方은 새로 合意된 규정內容에 따라서, 相對方에게 아마 儻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진상을 알리지 않을 義務가 있습니다. 基本條約에 있어서와 같이 다만 추상적으로 규정된 優先適用條項은 明白히 하기에는 不足합니다. 왜냐하면 條約當事者中一方에게서 相對方의 條約上의 地位와 자신의 独特한 解釈方式에 関해서 조회를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第9條에 関한 覺書交換을 通해서 實現된 4大國(美, 英, 仏, 蘇)의 權利義務의 우선권은 특히 意義를 되게 되었음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西獨의 條約上의 地位가 아니라

法的地位에 関해서 具体的인 指示를 받고 있으나, 西獨에 關係되는 文書나 合意가 恒常 問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西獨政府는 独逸의 政策樹立에 있어서 4 大國에게 重要한 役割을 하도록 認定하였습니다. 西獨政府는 案約에 関한 公式發表를 通해서 独逸內의 두個의 國家를 위한 共同性에 関해서 言及하였습니다. 西獨政府의 同調者들은 그 共同性을 全體独逸의 初憲法上에 잘 文字化하였읍니다.

무엇보다도 基本案約에서 基礎가 되고 있는 4 大國에 對한 利害表明이, 例컨데 独逸案約에 있어서의 4 大國에 對한 利害表明과 同一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認識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4 大國에 對한 利害表明中에는 다음 事項이 빠져 있습니다.

1. 統一目的에 関聯되는 것.
2. 独逸파의 強化案約에 関한 言及 ( 이것은 우리의 憲法解釈上 가장 重要한 것임 )
3. 全體로서의 独逸과 '伯林'에 関한 것 ( 이것은 西獨政府의 權限外의 것임 )

새로히 그 表現 가운데 登場한 것은, 1944/45 年度의 4 大國案約과 함께 처음으로 法의 意義를 갖게된 4 大國의 '實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敗戰國이 行한 이 實踐은 独逸에 對한 連帶責

任으로 부터 漸次的으로 멀어져 갔음을 이 자리에서 더 以上 說明할 必要가 없습니다. 누차 引用한 바 있는 条約에 関한 원 (Wien) 協定 第31条 第36号에 따라서 이 實踐은 4大國의 義務를 解決하는데 使用되었고, 이 규정을 根據로 하여 다음과 같은事實은 매우 重大性을 띵니다 :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이 實踐에 對한 說明의 重要性은 1972年 11月 9日付의 4大國宣言에서 由來하는데, 同宣言은 4大國의 權利 및 義務와 関聯되는 규정 및 決議와 實踐에 関해서 言及하고 있습니다.

西獨의 機關들은 이리하여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처음으로 4大國의 이해표현을 자신의 所有로 하였으며 4大國地位의 信託目的은 더 以上 表示되지 않고 있습니다. 4大國의 權利義務와 独逸法上技能 發揮를 하는데 関한 西獨政府의 意思表示는 이에 따라서 近來에 더욱 慎重하게 行하여 지고 있습니다. 나는 証拠 申込時に 이 問題로 되돌아 오겠습니다.

口頭審理가 아니라 文書를 通해서 西獨政府가 지금까지 態度를 講한 바로서는 두個의 独逸國은 相互書信交換을 通해서 確認한 바에 따라 여전히 4大國의 權利義務가 存続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詳細한 說明도 유감스럽게도 詳細한  
法의 檢討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条約当事者에 对한 4大国의 同  
意与否에 판결이 되는것은, 共同書信交換이 아니라, 한便에서는 西獨  
의 西方 3大国에 对한 覺書이고 또 한便에서는 東獨의 蘇聯에 对  
한 覺書인 것입니다. 基礎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共同書信交換이  
아니라, 그 覺書 自体인 것입니다. 그러나 4大国을 共同으로 理  
解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한便에서는 西獨과 西方 3大国  
間의 関係에 關해서 4大国을 理解해야 되고, 또 한便에서는 東獨  
과 蘇聯間의 関係에 關해서 4大国에 对한 理解가 이루어져야 합  
니다. 西獨은 東獨과 蘇聯間의 覺書交換에 參加하지 않은 第3者이  
기 때문에 國際法上 그것에 捆束을 받지 아니하며 東獨으로 하여  
금 4大国의 同意에 捆束시킬 수도 없습니다.

4大国의 義務에 関한 東獨의 態度는 分明합니다. 東獨은 東獨  
内에서 4大国의 協約이 效力を 發生하지 않는다는 関한 진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1970年 3月 19日  
"슈토프"가 "에어포르트"에서 行한 演說을 引用하건데, 그는 말  
하기를 "獨逸民主共和國(東獨)과 수도 伯林에서도 4大国이 義務  
를 진다는 西獨側의 主張은 받아 들일 수 없다. 獨逸民主共和國  
(東獨)은 4大国의 管理下에 있는 것도 아니고, 3大国의 管理下  
에 있는 것도 아니며 主權을 가진 獨立된 社會主義 國家이다" 라  
고 말했습니다.

東獨과 蘇聯間의 覚書交換이 東獨으로 하여금, 東獨內에서 4大国의 協定이 通用되지 않는다는 東獨의 立場을 緩和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東獨은 이미 施行되고 있는 것을 根拠로 하여 自己主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東獨은 누차 蘇聯으로 하여금 포츠담條約의 全面的인 履行을 條約을 通해 確認하도록 했습니다. 全体独逸을 構想하기에 滿足하지 않은, 基本條約과 関聯된 4大国의 權利義務의 具体化는 오늘날 4大国의 地位에 어면 하나의 形態로 全体独逸의 國家性을 떠맡기는 것을 許容치 않고 있습니다. 英国이 코몬웰스에 對해서 한것과 같이, 4大国의 權利를 高度로 文字化하는 것은 西獨만이 单独으로 独逸을 代表한다는 理論과 할슈타인理論을 凌駕하는 환상론입니다. 「맨체」씨가 「지붕없는 分割秩序論」이라고 性格規定을 하면서 예리하게 診斷한 바와 같이, 西獨政府가 本訴訟에서 関聯을 시키고 있는 「分割秩序論을 為한 重要한 지붕」은 消滅되었습니다.

그外에도 西獨政府는 무엇을 行해야 될지를 모르는 第3者에게 憲法이 委任하는 바를 代理하게 하는 方法을 取한다고 하드래도, 西獨政府가 全体独逸의 憲法을 正當하게 다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憲法上의 理由가 있습니다. 우리가 新聞紙上을 通해서 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마는, 完全한 主權을 가지지 않으므로서 오는 長點이란 憲法上에는 없읍니다. 그와같은 것은 政治

의인 面에서 外形上 両쪽에 날이 달린 칼과 같은 것 입니다。独逸의 東歐羅巴政策은 勝戰國에게 많은 간섭을 할 権利를 부여 했습니다。勝戰국의 그와 같은 権利는 西獨政府뿐만아니라 全世界가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外國法에 関한 研究를 하고 있는 뱅그려教授가 詳細히 말씀 드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므로 그 問題에 関해 外國에서의 學問的인 反念이 어찌나 하는 것은 말씀 들이지 않겠습니다。

西獨政府가 東獨政府를 國際法上 承認하지 않았으며 또 承認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宣言을 한다고 해서, 基本條約의 國際法의 性質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이엘 地方의인 완고성이 보인다는 印象을 주지 않기 위해서, 諒解하신다면 國際的으로 알려진 独逸의 國際法 学者이신 뱅그려教授님의 意見中一部를 引用하겠읍니다。뱅그려 教授님의 意見書 10페이지에는

「西獨政府는 國際法上 東獨을 承認할 意思가 없다는데 関한 많은 發表는 國際法에 関한 무지나 또는 연막전술의 소산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고 되어 있고 또 11페이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을 引用할 수 있습니다.

■ 容觀的인 意味에서 國際法上의 国家인 두 나라中의 一方이  
相對方을 形式上 國際法上의 国家로서 承認하는 것을 拒否하는  
反面에 相對方은 國際法上의 国家라고 主張을 하며 이 主張이  
第3國에 依해서 認定이 되는 境遇, 兩当事者가 条約을 締結한  
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適用된다： 即 万若에 그 条約이 一  
般的으로 國際法上의 条約上에만 있울 수 있는 内容을 包含하  
고 있거나 또는 그 内容이 도대체 國際法上의 内容으로 밖에  
는 볼 수 없다면, 그 条約은, 國際法의 適用을 받지 않으며  
좀 다르다 하는 相對方이 受諾하는 明示的인 유보를 必要로  
한다。

언뜻 보기에 國際法上의 条約內容을 内包하고 있으던 서도 國際  
法上의 条約이 아니라는 当事者 双方의 유보가 없는 条約을  
締結한 境遇, 当事者中 一方이 相對국과 常駐外交關係를 맺지  
않겠다고 宣言을 한다고 해서 곧 그 条約이 國際法上의 条約  
의 性質을 衰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兩國이 兩國의 政  
府所在地에 「常駐代表」를 駐在시키기로 合意하는 境遇, 將次  
撤回할 수도 있는 一方의 法律에 依해서 그들에게 外交官에  
準하는 地位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代表는 國際法이 定하는  
바와 같은 常駐外交官의 特權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明示的인  
合意를 또다시 必要로 한다.

그러나 相互合意下에 後者の 方法을 抨하는 境遇에도, 左右間準外交官의 特權을 가진 그와 같은 常駐代表는 第3國에 있어서는 國際法에 根拠한 外交官의 特權이 自動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커먼·웰스'에 屬하는 大部分의 國家들 間에 派遣되는 高等판무관의 境遇에는 비록 接受國의 特別法에 依해서 外交官의 特權이 保障되지마는, 第3國을 通過할 때에 該當 第3國이 이들에게 通過하는 外交官의 特權을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集約하여 表現을 달리 하여 말하건데, 두나라間에 相互交換되는 代表에 關한 特別規程까지도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 代表들로 부터 外交官의 性質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特別規程 만으로서 그 규정을 包含하고 있는 条約이 國際法이 아니라고 立証하기에는 더욱 適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러므로 基本條約 第8條上에 그와 같은 하나의 特別規程을 둘지는 決定되지 않은채 있다.

이것으로서 내가 말씀 들이 고쳐 하는 것 中에서 다음 項目으로 넘어 가겠는데 1945年的 滅亡과 同時に 獄逸帝國은 消滅되었다는 學說과 基本條約과의 關係가 問題가 됩니다. 나의 見解로서는 基本條約은 두個의 國家型中 그 어느 하나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東獨도 출랜드가 와르샤와 条約과 関聯하여 行한 것과 같이

1945年的 独逸帝国이 消滅되었다는데서 出発할지는 東獨의 自由인 것입니다. 念慮하지 마십시오. 37個나 되는 이 独逸學說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本質的인 것만을 集中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第2의 可能性에 関한 것이지마는 独逸帝国은 더 늦게 即 独逸帝国의 領土위에 두개의 새로운 国家가 成立됨으로서 消滅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所謂 分割論이며 分斷된 法秩序論의 帰結입니다. 그러나 独逸帝国은 西獨憲法의 現實의 發效地域으로縮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独逸帝国의 領土로 부터 分割을 通해서 하나의 新生国家가 떨어져 나왔다고 하며, 이것이 所謂 国家縮少論이며, 国家縮少論은 同一說의 帰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쉽게 말을 해야 되므로 나의 意見으로서는 理論上의 論爭을 너무 깊이 다를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또 너무 깊이 다루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西獨政府가 너무 성급한 態度를 取했으므로 境遇에 따라서는 이 자리의 방청을 禁止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때 늦게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숙고하는 것, 即 단점을 많이 가진 同一性을 따를것이냐, 또는 全體独逸의 国籍을 위해서 단점이 亦是 많은 分斷된 法秩序論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이 곳에서 熟考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意見으로서는 그와같은 두개의 国家型은 西獨憲法의 基礎가

되는 国家概念과 一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確認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理論上의 論爭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2項中의 마지막項目에 関해서 말하자면, 基本條約의 基礎가  
되는 두個의 国家型은 UN현장의 原則 特히 民主自決權을 參考로  
하드래도 아무 影響을 받지 아니합니다. 万約에 두 条約当事者가  
自國의 国家的인 独特性을 表明하고 이에 있어서 民族自決權을 根  
拠로서 主張을 하는 境遇에는, 그들은 그들의 行為가 民族自決權과  
合致되어 成立되어 中部歐羅巴에서는 特別한 具体化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法的으로 表明할 것 입니다.

자, 그럼 許諾해 주신다면, 이제 亦是 本質的으로 國際法上의 問題  
와 関聯이 되는 IV項을 끌어 드려서 아주 짧막하게 國境問題에  
關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西獨)과 獨逸民主共和國(東獨)間에 存在하는 國  
境確定과 関係되는 問題들은 條約上 여러 곳에서 言及하고 있읍니  
다.

- 우선 基本條約 前文 3節에 平和를 保障하기 為한 基本原則  
으로서 「境界線의 不可侵性」을 규정했고

一第3条2項은 이 기본原則을 두 独逸國의 相互條約上의 義務로 具体化 하였고

一附錄陳述書에 境界線委員會의 任務를 더 仔細하게 定해 놓고는, 基本條約 附錄I号에 共同境界線의 標識과 表示에 関한 問題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制限된 短은 時間内에 이 모든 提起된 問題를 깊이 다를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두個의 独逸國이 이 境界를 標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即 앞으로 우리는 独逸과 独逸間의 境界線 確定은 第3者들이 하였다고弁明할 수는 없읍니다. 이제는 두개의 独逸國 자신이 그것을 만든 것 입니다.

다음에는 前文 3節에 関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基本條約 前文 3節은 文句上 와르샤와 전문 5節에 該當 되는 바本法廷은 이미 이 東歐羅巴條約들의 本質的인 極端性과 앞 뒤와의 関係들을 分明히 한바 있는데 그 것을 볼 것 같으면

『國境의 不可侵性과 現在의 國境内에 있는 欧羅巴의 모든 나라들의 領土保存 및 主權尊重이 平和를 維持하는데 가장 重要하다;』  
고 하므로서 말하자면 平和의 變更이 아니라 現狀維持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句節들은 内容上 모스크바條約 第3条 1項과 一致되고 있습니다. 欧羅巴内의 모든 国家들의 国境線의 不可侵性을 條約当事者들이 認定한것은 모스크바條約 第3条에 関한 討論時に 이미 쎈세이손을 일으켰습니다. 西独은 欧羅巴内의 모든 国家들의 国境에 関해서 声明을 發表하지 않으므로서, 西独은 欧羅巴에 있어서의 蘇聯의 行주적 地位를 確立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言及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当時に 相互條約을 通해서 欧羅巴内의 国境線의 不可侵性을 認定한 것은 相對方으로 하여금 欧羅巴内에서 國際法에 어긋나는 領土變更에 協助하지 아니 할 不作為義務를 内包한다는 것에 関해서 詳論을 한 것은 대 意見으로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것은 独逸과 独逸間의 関係에도 通用 됩니다. 모스크바條約에서 외는 달리, 欧羅巴에 있어서의 国境은 어려운 問題인 바, 欧羅巴内의 모든 国家들의 領土保全에 関한 問題는 基本條約에서는 全文에만 나타나 있읍니다. 基本條約의 当事者들에게 어떤 政治的 目적이 있느냐의 与否와는 상관없이, 그것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개의 独逸은 자신의 領域外에서는 欧羅巴内의 国境에 对해서 单独으로든 共同으로든間에 責任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条 2項 以外에 있는 領土 및 境界線保障을 基本條約에서 배제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개의 独逸은 欧羅巴内에서 모든 暴力的인 領域變更이나 国境侵害을 認定하지 아니 하거나

그와 같은 行為를 그 以上의 措置를 取할 動機로서 看做한 義務를 지지 아니합니다. 東方條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基本條約에서도 領土保全을 尊重하여야 될 基本原則이 들어 납니다.

한편 유엔憲章 2条4号에는 한 나라의 政治的인 独立을 保護하기 為해서 政治的인 不可侵에 関해서 規定하고 있습니다. 東歐羅巴國家들의 表現에서는 政治的인 不可侵性을 아낌으로서 所謂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確實한 귀추와 可能性이 開放되어 있습니다. 東獨은 이미 그 当時 決定的으로 參与한 바 있는 일이지마는, 1968年 8月에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運動에 対해서 감행한것과 같은 行動은 條約의 精神이나 文句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東歐羅巴불리國家들의 理解下에 行한 그 침공은 체코슬로바키아의 領土保全을 侵害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1968年 8月 21日 安全保障理事會議長에 対한 蘇聯의 意思表明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西獨政府는 大端히 훌륭한 表現을 通해, 蘇聯의 勢力圈内에 있는 나라들의 社會主義秩序維持를 為한 그들 社會主義國家들의 特殊한 義務를 直接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西獨側에서 基本條約을 通해서 갈망하는 東歐羅巴불리內에서의 政治的 関係의 自由化를 생각하건데 그와 같은 것은 現實의 으로 發生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나는 이 問題에 関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개의 独逸國家 相互間의 関係에 있어서는 領土保全外에 政治的  
인 不可侵性도 그럭저럭 保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基本條約 第  
2條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主權의 平等, 独立의 保  
障 等 모든 政治的인 保障을 包含하는 國際聯合憲障의 目적이 아  
낌없이 活用되고 있습니다.

勿論 바로 여기에 外部의 간섭을 減少시킴에 있어서 西獨政府의  
總體의in 政策構想의 意味上 利害關係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人間의으로 譲歩를 한다거나 国家의 統一을 成就하는 것 等  
은 東獨에서는 外部로 부터의 分明한 간섭 없이는 實現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그려면 3條2項에 関해서 :

領土保全에 関한 原理와 마찬가지로 條約의 核心部分에 境界線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原則를 反復함으로서 独逸과 独逸間의 関係에  
있어서 境界線 問題를 具体化 하였습니다. 第3條2項에 依해서  
双方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境界線의 不可侵性을 現在와 未来  
에 對해서 再다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双方은 그들의 領土  
保全을 無制限으로 尊重할 義務를 지고 있습니다. 빙그려 教授의  
意見 中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바와도 같이 武力行使禁止를 明示  
하지 않고 있는 第3條2項上의 境界線에 関한 규정은 文句上 '兩

者間에 놓여 있는 境界線의 不可侵性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条項은 東歐羅巴條約들과 마찬가지로 "現在와 未来"라는 말을 添  
付하여 將來의 일을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解釈上 問題가 되는  
것은, 現在와 將來에 있어서의 境界線의 不可侵이란 境界線의 不變  
을 뜻하는 것으로 解釈되어, 境界線 問題의 平和的인 解決까지는  
禁止되거나, 오스트리아와 独逸間의 関係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東  
西獨의 合併까지도 禁止 되느냐 하는 点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에 関해서도 本 法廷에게 解釈上의 침을 치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境界線에 関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確認함으  
로서 足합니다. 그러므로서 憲法上의 價值를 認定하기에 充分합니  
다. 이 境界線의 存続力은 아마 接近論의 範圍內에서만 숙고할  
價値가 있을 것 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項目으로 넘어감으로서, 아마도 너무 과로를  
가져 올 이 國際法上의 陳述을 끝내겠습니다. 第6條에 関한 말  
씀을 들이겠는데, 나는 이에 関해서 아주 짧게 말씀 들일수가  
있습니다. 이 衆項을 잠깐 들여다 보는 것으로 足하겠는데 그  
內容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읍니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統治權을 各己 自己 領域  
内에 局限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内外問題에 関해서 両국

의 自主性과 独自性을 尊重한다.

이 条項中에는 유감스럽게도 實際로 解釈을 해야 될 것이 全히 없습니다. 나는 또 다시 이에 関한 뱅그려教授의 說明을 簡게 引用하고자 합니다:

• 基本條約이 独逸聯邦共和国(西獨)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独逸民主共和国(東獨)을 外國으로 看做하지 않도록 한다고 主張을 하는 것은 大端히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万若에 基本條約 6条上에 條約當事者의 統治權을 각기 자기 領域内에 局限하도록 明示的인 규정을 한다면, 西獨은 東獨領土의 構成要件의 屬地性을 根拠로 하여 西獨의 司法, 刑法, 行政法 等을 通해 他人에게 行動의 義務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境遇에 따라서는 外國의 領土인 各領域이 西獨에서立法을 할 때 權利保障面에서 外國과 같이 取扱될 수 있다는 것은 特別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東獨에 對해서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独逸領土가 아닌 國家領域에 對해서도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나 基本條約 第 6条로 미루어 보아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의 法律에 関해서 다음과 같이 볼 수는 없다. 即 그 法律上에 效力發生의 地域이 西獨地域에 한한다는 明示的인 규정이 없는 한 東獨地域도 内國으로 보려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法院이 判決事由中에 条約文句나 이곳 바에에  
른 自由主義가 提示한 理論의 根柢와 論判함이 없이 過去의 判決  
에서 行한것과 같은, 두個의 独逸國 相互間의 「가깝고 特別한 関  
係」에 関해 確言할 수 가 없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브루멘비츠教授님, 콜 (Kohl) 氏와 바르 (Bahr) 氏 間에 1972年  
12月 21日에 있었든 覺書交換이 4大国의 権利를 確定함에 있어서  
意義를 지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授 브루멘비츠博士 :

나는 자초지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証拠力에 関한 異意 입  
니까. 또는 暫定的 措置 宣布 申請에 関한 決定을 하는데 対한  
異意 입니까?

소이퍼트 副議長 :

아마 「가깝고 特別한 関係」를 確認함에 있어서 或是 条約  
6條가 特別한 資料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이 条約의 規定內容에는 아무것도 内布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確実히 말씀드렸습니다. 裁判長任께서 万若에 나의 意見陳述

中의 전편에서 나를 따르셨다면, 나는……

소이 피트 副議長 :

네, 그런데 브루멘비츠 教授님께서 우리의 過去의 判決을 지적하신다면, 가깝고도 特別한 関係에 閑해서 다른 証拠資料를 準備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나는 다만 1973年6月18日字의 判決에 있어서 条約의 条文 및 特殊記錄 參考가 이상한 감을 준다는 것은 시사하였을 뿐입니다.勿論 나는 憲法裁判所가 充分히 사물의 價值를 評価하였다고 봅니다. 나는 다만 論理的 根拠를 詳細히 提示하지 않았다는 것을 批判하였을 뿐이며, 아마 核心的인 問題를 判決한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神士 淑女 여려분, 이 國際法上의 陳述은 바이에른州政府의 意見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証拠申請을 하는 바입니다.

1. 憲法裁判所는 西獨政府에서 基本條約의 準備와 締結에 関聯되는 모든 関係書類를 提出하도록 命하고, 특히 西獨政府의 말대로 東獨側의 權限있는 官憲이 獨逸統一에 閑한 書翰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領收証을 西獨政府로 하여금 提出하도록 할것.

2. 憲法裁判所는 西独政府에게 모스크바 条約의 準備와 締結에  
關聯되는 모든 關係書類中에서 独逸聯邦共和國(西獨)의 独逸民主共  
和國(東獨)과의 關係를 規定하는 것과 關聯이 있는 것 및 伯林  
問題에 關聯되는 것을 提出하도록 命할 것.

3. 모스크바條約과 基本條約에 從事한 西獨国会 및 參議院(註：  
Bundesrat를 말하며, 韓國에서는 上院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国會가 아니라 立法上의 하나의 協助機關에 不過하다는 것  
이 現在 西獨에서의 通說임)의 該當分科委員會의 會議錄中에서 모  
스크바條約과 基本條約에 關한 討論과 關聯되는 것을 提出하도록  
할 것.

4. 独逸民主共和國(東獨)常駐代表(參議員 會議錄 143/73)에게  
特權을 保障하는 立法草案作成에 從事한 西獨国会 및 參議員의 該  
當分科委員會의 會議錄을 提出하도록 할 것.

나는 이 申請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함께 理論的인 根拠를 提  
示하는 바입니다.

(1) 申請을 할 수 있는 法的根拠는 西獨聯邦憲法裁判所法 26條  
1項에 있음

(2) 西獨政府에 依해서 이루어 진 基本條約協商에 関한 書類를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은 憲法의 統一命令에 對한 充分한 司法裁判  
을 保障하기 為해서 必要함.

우리는 이 자리에서 司法上의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음  
니다. 그와 같은 것은 憲法裁判所에 関한 法中에 双方에게 証拠  
를 提示하도록 하는 可能성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憲法裁判  
所가 說明한 바와 같이 統一命令과의 저촉여부는 그 저촉이 明白  
할 때에만 確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명성이라는 것은  
西獨政府自身이 공공연한 것과는 다르게 憲法上의 命令을 固守하는  
境遇에는 立証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基本條約 中에서 統一命令과  
關係 있는 条項의 意義는 西獨政府의 公式發表에서 보다도 政府自身  
이 條約協商過程에 關해 作成한 書類中에서 더 먼저 나타납니다.

(3) 訴訟에 關係되는 다른 法規들의 境遇도 統一命令에 關해서와  
비슷합니다. 西獨政府는 條約에 關한 言及을 通해 憲法에서 基礎가  
되는 國家概念의 問題에 關係되는 것을 主張 했습니다. 4大國의  
權利와 義務는 繼續해서 独逸에 있는 두 國家(西獨과 東獨)를  
為한 집개(書類 끝는 집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強化條約  
締結時까지 存続 할 것입니다. 1973年 4月에 独逸國內關係省에  
依해서 처음으로 發刊된 冊子인 '獨逸聯邦共和國(西獨)과 独逸民  
主共和國(東獨)間의 關係變遷'을 通해서 基本條約의 內容全体에  
關한 西獨政府의 解說이 다시 發表되었읍니다. 勿論 위에서 말한

바 있는 国家概念에 関係되는 말은 除外되었습니다. 条約에 对한 公式解説을 通해 国家concept에 関해 西独政府가 取한 態度는 独逸民主共和国(東獨)과의 協商時에 取한 態度와는 同一하지 않다고 추측이 됩니다.

(4) 書類를 提出하여야 될 義務는 國際的인 考慮에서 由来합니다. 条約에 関한 원(Wien)協定 32條에 따라서 条約을 解釈함에 있어서는 条約을 締結한 方式(節次)가 "補充的 解釈方法"으로서 考慮됩니다. 따라서 協商過程에 関係되는 書類를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은 基本條約을 解釈하기 为해 必要한前提입니다. 基本條約의 解釈은 그 条約의 合憲性을 檢討함에 있어서 꼭 參考해야 될 선결문제입니다.

(5) 憲法裁判所는 자신의 判決에 関係가 있는 事實에 对해서도 獨自의인 判断을 내려야 됩니다. 規定法의結果 確定等은 서로 分離할 수 없는 聯関性이 있는 것 입니다. 얼마전에 駐邦憲法裁判所法을 改正하여 憲法裁判所를 다른 機關의 事實評価에 拘束시키려는 提議, 即 立法府와 결속시키려는 提案이 立法過程에서 違憲이라고 각하된 것은 옳은일입니다. 憲法裁判所는 事實与否를 確認함에 있어서 政府가 裁判過程에서 구두로 하는 解明에 依拠한다면 聯邦憲法裁判所가 事實与否를 確認할 수 있는 權限은 不完全한 것입니다. 우리는 聯邦憲法裁判所法上에 binding certificate 制

度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 모스크바條約 締結을 為한 協商過程 中에 作成된 書類도 가  
져 올 必要性은 特히 바르 (Bahr) 覺書 5項과 6項에서 나옵니다  
바르 覺書 5項은 契約에 따라서 蘇聯에 對해 確認하기를, 独逸聯邦  
共和國 (西獨) 이 다른 社會主義國家들과 맺은 條約, 特히 東獨과  
맺은 條約은 하나의 統一된 全體를 形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니다. 憲法裁判所도 그것을 確認한 바가 있습니다. 万若에 바르  
(Bahr) 覺書 5項이 形式上의 補充條項이며, 이에 따라서 모스크  
바條約은 性質上 外廓條約이라고 한다면 바르 (Bahr) 覺書 6項에  
는 独逸民主共和國 (東獨) 과 締結하게 될 基本條約에 關한 内容上  
의 規定이 定해져 있습니다. 國家의 主權보다 社會主義的 國際主  
義가 우선한다는 "브르즈 베프 - 主義" 를 떠난 現實的인 協助로 미  
루어 보아 基本條約을 解釈하는데는 蘇聯과의 双務關係 또한 끌어  
들여야 된다는 根柢가 나옵니다. 아마 바르 (Bahr) 覺書 6項에  
서 言及한 두 나라의 独立과 独自性을 尊重 한다는 생각은 基本條  
約 6條에 다시 抬頭 됩니다. 協商過程의 書類 内容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当時 알려진  
것의 内容을 보면, 西獨政府가 條約當事者에게 對해서 取한 態度에  
있어서 一部는 公表했는 것과는 심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1972年 4月 19日字로 發行된 「現代記錄集 (Archiv der Gegenwart)」 p.17030a에 複写되어 있는 協商文書 하나를 引用하고자 합니다. 이에 依하건데, 바로 (Bahr) 는 크로미코에게 說明하기를 武力拋棄條約이란 國境線에 関한 條約에 不過한데 (解釈上에 있어서 이것은 恒常 重要性을 가짐), 相互立場을 생각하여 武力拋棄條約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伯林의 地位에 関해서는 憲法上의 問題点을 考慮함이 없이, 独逸聯邦共和國(西獨)의 伯林과의 関係는 独逸民主共和國(東獨)과의 関係와 同一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論爭을 즐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Bahr) 書翰 및 그 書翰의 基礎가 되는 協商過程에 関한 書類에 對한 担當裁判部의 判事 비분의 見解를 引用하건데도, 基本條約만을 分離해서 考察할 수는 없고 独逸聯邦共和國(西獨)政府의 全體的인 東歐羅巴政策과 聯關해서 보자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前後關係를 밝히기 위해서 証拠申請을 全部 받아들이기를 本 裁判部에게 임청하는 바입니다.

(7) 基本條約締結의 協商過程에 関한 書類를 參考하면 條約解釈에 関한 새로운 관점이 나온다는 것은, 모스크바條約에 関한 書類檢討 외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基本條約締結後에 相對方이 取한 態度를 살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네커는 말하기를 '独逸聯邦共和国(西獨) 사람들中의一部가 아직도 独逸民主共和国(東獨)과 独逸聯邦共和国(西獨)間의 関係를一般的인 國際法을 떠난 하나의 特殊性을 뛴 関係로 본다면 이는時代에 뒤떨어진 잘못된 생각이다。西獨과 東獨과의 関係는 確定된 國際法上의 関係로 보아야 되므로 베링條約은 生存權을 為한條約이 아니다。事理가 이러 할진대 独逸問題는 未決된 問題가 아니다。恒常 反對主張만을 하는 사람들은 時間만을 浪費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独逸民主共和国(東獨)과의 関係는 英國과 美國間의 関係나 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오스트리아間의 関係, 또는 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스위스間의 関係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8)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을 接受하였다는 領收証을 西獨政府는 国会法制司法委員會에 提出하여야 됨에도 不拘하고, 그 領收証을 条約書 自体의一部가 아니라 附屬書類中의一部라는 것을 理由로 하여, 이를 履行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은 解釈上에 있어서와 書翰의 性質을 規明하는데 重要한 意義를 가집니다. 그 外에도 그와 같은 領收証은 書信이 到着하였을때 発行되는 하나의 正常的인 文書조각이냐, 또는 外交上에 기대되는 바와 같이, 独逸統一에 関한 書信에 合當하는 價値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興味있는 일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東獨)의 콜(Kohl) 次官은 1972年 12月 21日 東伯林에서 基本條約을 署名하는 機会에 記者會見을 通해서 말하

기를 「나는 그와 같은 書翰에 関해 모르고 있지마는, 万若에 그와 같은 書翰이 存在한다면,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서는, 그와같은 一方的인 措施는 法의으로 制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領收証을 보자고 主張을 하는 것입니다.

(9) 独逸民主共和国(東独)의 常駐代表에게 特權을 保障하는 法律  
草案에 関한 資料를 檢討할 必要性은 基本條約 8條에서 나옵니다.  
이 法律과 関聯되는 双方의 常駐代表部의 設置 및 法的地位에 関한 東独政府와의 合意는, 東独의 常駐代表에게 特權을 保障하기 為해서 制定되는 法規와 마찬가지로 基本條約의 解釈乃至 法的判断을 하는데 本質의in 意義를 갖습니다.

(10) 憲法裁判所가 政府의 書類를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은 所謂 교황청과 締結한 條約에 関한 裁判時 이미 그 先例가 있습니다.  
그 때 法院의 命令에 依해서 교황청과 맺은 條約의批准乃至 締結에 關係되는 西獨外務省 및 제국수상청(2次大戰 終結以前 独逸의 境遇)의 書類가 提出되었읍니다(西獨憲法裁判所 判例集 6, p. 313; 編纂集 "Der Konkordatsprozess" IV 卷, p. 1500/1502/1536 以下 p. 1567/1569)

감사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証拠申請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教授 布魯曼比茨 博士

그렇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西獨国会分科委員會 會議錄 提出命令에 関해 무슨 말씀인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艾른州政府가 갖고 있는 그 會議錄을 다른 訴訟当事者들 처럼 利用하실수가 없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提出하도록 命令해야 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教授 布魯曼比茨 博士 :

그 會議錄은 機密事項에 屬합니다. 訴訟代理人으로서 本人이 그것 을 訴訟關係에 使用할 수는 없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国会分科委員會 會議錄을 提出하도록 해야 된다구요? 그와 같은 것은一般的으로 쉽게 求할수 있는 것입니다.

教授 布魯曼比茨 博士 :

아닙니다. 나는 訴訟代理人으로서 그것을 들춰 볼 수가 없습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貴下便에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니란 말입니다?

機密文書라고 생각하세요?

教授 브루맨 빅츠 博士 :

分科委員會會議錄은 機密에 屬합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그렇다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普通 書類의 境遇에는 우리는 提出을 命할수가 없습니다.

教授 브루맨 빅츠 博士 :

証拠申請을 함께 있어서 나는 이전 第3帝國當時의 교황청과 맷은 条約의 境遇에 있었든 先例를 들었습니다. 許容可能한 申請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本 法廷의 裁量입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교황청과 맷은 条約에 関한 裁判時 国会會議錄 提出을 命令하였다 고는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国会會議錄 提出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說明을 듣고 싶습니다.

바알만 局長 :

裁判長님, 우리는 이미 이 회의록이 裁判部에 準備되어 있다는 것을前提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勿論 裁判部가 그 書類를 쉽게 얻을수는 있습니다.

바알만 局長 :

제 생각으로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잘못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機密이라는 도장이 찍혔드래도, 아마 그것이 国家가 当事者인 訴訟에 있어서, 当事者인 国家가 그 내용을 探知하고 利用하는 것을禁止하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勿論 裁判部가 国会會議錄을 容易하게 얻을수는 있습니다.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

그렇다면 이 点에 있어서는 나의 申請이 결말이 난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그것을 利用해도 좋습니까?

教授 브루맨비츠·博士 :

西独政府가 그以外의 点에 있어서 이申請에 同意를 할지는 모  
르겠습니다.

바알만 局長 :

우리는 裁判部가 国会會議錄 全部를 參考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모든 訴訟当事者가 그것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訴訟当事者들은 機密書類도 利用할 수가 있다는 것은 当然합니다.  
当事者들은 그와 같은 書類를 어떠한 方法으로 使用할 수 있는  
지를 勿論 알고있습니다. 브루맨비츠 教授님에게 또 다른 質問이  
있습니까?

하르쉬 憲法裁判所 判事 :

貴下께서는 이 裁判過程에서와 其他 口頭說明을 通해서, 独逸帝国은  
1945年 崩壟과 同時に 消滅되지 않았다는 見解를 피력하셨습니다.  
正確히 말하자면 바이에른州政府의 見解라고도 말할수 있겠습니다마  
는 이와같은 貴下의 見解는 바이에른州憲法 178條와 어떻게 調和  
되는지를 貴下로 부터 알고 싶습니다. 나의 記憶으로서는 그 条  
文上에 바이에른은 將來의 独逸民主聯邦國에 加入할 것이며 將來의  
独逸民主聯邦國은 憲法上의 独自的인 生存의 保障을 받고 있는 独

逸의 各州가 自進하여 結合하는데에 土台를 두어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貴下도 알고 계신 그에 対한 비합나위 없는 주역서 가운데에는, 独逸의 单一国家로서의 結合은 대나치스 独逸帝国의 崩壞後에는 더 以上 存在하지 아니 한다는 見解가 그 条文表現의 基礎가 되며, 따라서 单一国家로서의 独逸은 이제 再建 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說明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은 見解가 正當한지 与否에 関해 意見을 말하지 않고도, 바이에른 憲法에 拘束되어 있는 바이에른政府는 独逸帝国이 消滅되지 않았다는 主張은 할 수 없다는 見解가 나올수 있습니다.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

憲法裁判所判事任, 나는 西独聯邦憲法을 基礎로 해서 이 裁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万若에 내가 바이에른 憲法을 基礎로 해서 裁判을 進行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許容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이 問題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있읍니다. 바이에른 自由州는 決코 閉鎖的이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質問에 対한 答弁이 되겠읍니까?

소이 퍼트 副議長 :

남의 말을 듣는다구요? 貴下의 생각으로서는 바이에른 自由州는 이 憲法規定에 関해서 그동안에 確信이라도 하기를.....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나는 이 問題에 関해서 오늘 午後에 더 広範圍하게 意見을 陳述 하겠습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本来 國際法上의 主体가 아니며, 따라서 國際法上의 主体로서의 存続에 関해 单一國家의 制憲議會를 掴束하는 方法으로 態度를 取할수도 決코 없읍니다. 그것은 基礎가 되는 憲法的인 考慮에서 由來하는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貴下가 強烈한 法的見解가 바이에른州憲法과 어떻게 調和되는지 与否를 貴下에게 質問한다면, 國際法의로 痠이 생각해 보는 것이 要點입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바이에른州憲法은 部分적으로 非連統的인 명제를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西獨憲法은 이 問題를 다르게, 連統性의 意味로 解決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西獨憲法 28 条와 144 条項에 있어서 聯邦과의 連結性을 맺고 있습니다. 西獨憲法 31 条에 따라서 聯邦法은 州法을 깨트립니다. 바이에른 自由主義聯邦에 대한 充実성이 이 끝에서前提가 될 수 있으며, 西獨憲法의 基礎가 되는 判決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局長 캐쓰러 博士：

그런데, 바이에른州 憲法은 西獨憲法을 解釈하기 為해서 引用될 수 없읍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우리는 다만 教授브루멘벳츠博士任의 意見을 解釈하기 위해서 바이에른州憲法을 引用한 것입니다.

教授브루멘벳츠博士：

나는 國際法上의 意見을 陳述했읍니다.

하르쉬憲法裁判所 判事：

教授님, 내가 무슨 質問을 했는지를 다시 말씀 드려도 좋을니까?

바이에른政府가 여기에서 바이에른憲法과 一致되지 않는 見解를 表明하는 것이 바이에른政府의 바이에른 憲法遵守義務와 어떻게 調和되느냐 하는 것을 質問하였읍니다. 西獨憲法上에는 바이에른憲法 178條가 废止되었다는 明示的인 規定이 없읍니다.

教授 브루멘벳츠 博士：

그것은 聯邦法은 州法을 깨트린다는 基本原則에서 由來합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西獨憲法에 拘束되어 있읍니다. 간단한 聯邦의 法律이나, 간단한 聯邦의 命令이라도 바이에른州의 憲法보다 우선합니다.

허르쉬 憲法裁判所 判事：

教授님, 그것은 勿論 当然한 일입니다. 本 裁判部에게 그와같은  
法律問題에 对해서 가르쳐 주실 必要는 없읍니다.

나의 質問을 다시 한번 反復 하겠읍니다. 나의 質問의 要旨는  
다름이 아니라, 巴이에른政府가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178 条의 拘束을 받음에 따라, 教授님은 教授님의 見解를 178 条  
와 어떻게 調和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西獨憲法  
上에는 178 条가 廢止되었다는 規定이 없기 때문입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유감스럽게도 나는 聯邦法은 州法을 깨트린다는 말을 또 다시 하  
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貴下는 巴이에른州政府에 对해서, 만  
약에 이곳에서 巴이에른自由州憲法과 西獨憲法間에 衝突이 생기는  
境遇, 巴이에른州政府는 그 자신의 憲法을 따르리라고 꾸며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서는 巴이에른自由主義 主体性은 分明히  
그렇게 멀리 拡大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나는 이 点에 있어서  
貴下에게 몇가지 더 알려 드릴 것이 있읍니다. 나는 이미 나비  
아스키씨에 관해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巴이에른州憲  
法은 나비아스키氏와 쇄그너氏의 노고를 거슬러 올라 갑니다. 나  
비아스키씨는 1945年 以後 独逸帝國은 消滅되었다는 見解를 提出  
한 法学者 中의 하나 입니다. 소수들이 있읍니다. 나비아스키氏  
는 이들 学者들에 속하였고, 그의 國家概念을 土台로 하여 퀘센과

마찬가지로 이 成果를 達成했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資料에 関한 것이라면, 나도 1945年 以後 나비아스키氏의 친속  
을 通해서 다른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나비아스키氏에 関해 即刻 다시 읽어보셔도 좋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實際로 그럴수 있습니다. 브루멘비츠教授님, 教授님은 처음에는 말  
씀하시기를, 憲法은 전해 내려오는 權利의 主体인 独逸帝國의 存続  
을 動搖시킬 条約은 許容하지 않는다는 것을 理由로 基本條約은  
全体的으로 西獨憲法上 違憲이라고 하셨읍니다. 다른 部分에 가서  
는 두개의 國家모델은 西獨憲法과 어긋난다고 하셨읍니다. 万若에  
東獨의 國家性을 分明한 方法으로 양지하는 条約이 東獨과 締結되  
었다는 단순한 事實이 西獨憲法과 抵触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貴下  
의 見解를 正確히 理解하는 것이겠읍니까?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네, 그것도 오늘 午後 내가 憲法分野에 関해서 말한것 가운데 本  
質的인 部分이 될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다른 部分에서는 말씀하시기를, 4大国의 權利 가운데에서 独逸帝国의 单一国家로서의 繼續性을 찾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와 같은 것은 환상主義에 不過하다 云云 하셨읍니다. 어떤 法的 資料로서, 그外의 어떤 構成要件으로서 单一独逸国家의 法的存続성이理論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수 있겠읍니까?

教授 브루멘벳츠 博士：

独逸帝国이 둘로 分斷됨으로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法的組織을 하지 않는限, 单一国家로서의 存續性을 찾아 볼 수 있는 可能性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全体独逸의 超憲法이 이와같은組織中의 하나일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独逸帝国의 存續性은 더 以上 理論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教授 브루멘벳츠 博士：

基本條約의 締結後에 있어서는 独逸帝国의 存續性을合理化할 수 있는 唯一한 可能性은, 所謂 国家縮少論, 말하자면 独逸帝国은 西獨憲法의 現実的인 發效地域으로 縮少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나의 質問은, 貴下의 意見으로서는 基本條約締結以前에 独逸의 单一國家로서의 存続性의 法的根拠가 어디에 있었느냐 또는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내가 貴下를 理解한 바로서는 4大国의 合意가 그와같은 法的根拠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4大国의 権利를 文書化하는 가운데 单一国家로서의 独逸에 関한 詳細한 引用이 包含되는 限, 오늘 아마 크리래 교수님이 提出하시게 될 見解. 即, 그와같은 때에는 事實上 独逸帝国에 関한 問題를 4大国에게 맡기는 委託關係가 存在하는 것 이라는 見解를 전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1970年 8月 6日 外務長官들의 声明 가운데 「4大国의 権利問題」라는 것이 言及되었는데, 西獨政府는 그後 1970年 8月 7/11日字로 西方 3大国과의 覺書交換時 이 問題를 「全独逸파 伯林에 関한 4大国의 権利 및 義務」라고 自己側의 立場에서 解釈을 한 것은 모스크바條約上에 있어서 참으로 興味있는 일이 었습니다. 그렇지만 西獨은 西獨의 東歐羅巴政策에 関한 公式文書上에 있어서는 이 「拡大한」解釈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늦어도 1972年 11月 9일 부터는 4大国의 義務와의 関聯下에 統一独逸을 建設한다는 말은 學問적으로 더 以上 主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브루맨빗츠 教授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중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쭤보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貴下의 意見으로서는 1972年 11月 9日 4大国의 権利를 새롭히 文書化 하므로서 单一國家性을 理論的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重大한 變化가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이에 따라서 問題가 되는 것은, 万若에 그 当時 4大国의 権利를 새롭히 文書化 함으로서 變化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추가로 基本條約을 通해서 일어났다는 말씀 입니까?

教授 ブルーマンビッツ 博士：

西獨政府는 基本條約 9條에 関한 書翰交換을 通해 "하나의 独逸"이라는 것을 參照함이 4大国의 権利를 文書化 했습니다. 現在까지는 東歐羅巴의 制限된 解釈이 西歐羅巴를 拘束할 수는 없읍니다. 國際法上으로 勿論 可能한 일 입니다. 國際法上에는 이곳과 같은 聯邦憲法裁判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이퍼트 副議長：

万若에 西獨政府가 文書化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요?

教授 ブルーマンビッツ 博士：

万若에 西獨政府가 文書化 하지 않았다면, 西獨政府는 "우리는 見

解가 다르다"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午後에 이問題에 関해서 더 詳細히 言及하겠습니다. 말을 繼續하겠습니다.  
万若에 國際法이 變更된다면 憲法上의 婚結은 무엇이 겠습니까?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憲法의 位置는 간단하게 變更되어 가고 있습니다. 勿論 問題가 되는 것은, 도대체 누가 西獨憲法이 憲法規定의前提가 된다고 보는 國際法의 関係의變化를 確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立法部이 겠습니까? 또는 그때 그때마다 다수파에 依存되어 있는 行政부이 겠습니까?  
나는 이에 関한 說明을 保留하겠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자, 그러면 이제 書類提出에 関한 証拏申請, 特히 領收証提出에  
關해 西獨政府의 立場이 어찌 한지, 証拏申請에 関한 西獨政府의 意  
見을 잠시 들어도 좋습니까?

바알만 局長 :

낮 休息後에 이에 関해 말씀 드리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미 說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即 分科委員會 會議錄은 裁判부가 이미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問題에 関해서는  
더 以上 말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14時 30分까지 休庭하겠습니다.

(12時 30分에서 14時 30分까지 休庭)

소이페트 副議長 :

다시 始作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브루멘벳츠教授님이 繼続  
하실 説明은 다른 것 하고도 関聯이 있는 것 같으므로, 될수 있  
으면 西独政府側이 証拠申請에 関해서 지금 意見을 말하는 것이  
아마 效果의이라고 봅니다.

바알만 局長 :

尊敬하는 判事님, 이 証拠申請이 形식적 要件을 具備 하였는지  
一般的인 의구심이 크게 갑니다. 바이에른政府가 提出한 申請書에  
는 証拠題目이 하나도 明示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外에도 個  
別項目마다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関해서 말씀 드리자면 :

證拠申請 1号, 1節에 基本條約의 準備와 締結에 関係되는 書類들  
을 提出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本憲法裁判所의 判例를 한편 根拠로 하건데 그와 같은 條約을 解  
釈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解釈原則이 適用될 것이냐하는 것은 分明  
합니다. 條約을 解釈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書類는 根本的으로  
適合한 材料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바이에른州政府가 보는 程度로

書類가 細分되어 整備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一方的인 순수한 内部의인 書類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万若에 巴이에른州政府가国会나 其他 公開席上에서 発表된 것을 반박하거나 또는 確固히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申請을 뒷받침하는限, 그와 같은 資料를 提出하도록 하는 것은 이 裁判의 課題가 아니라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証拠申請 1号, 2項의 領收証에 閨해:

이에 閨해서는 条約에 閨한 원 (Wien) 協定 31條에 根拠하여, 그와 같은 解釈材料의 到達与否만이 要点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指摘하는 바입니다. 到達하였다는 것을 特定한 書類를 通해 追加로 立証하는 것은 國際法上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아니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國際法이 要求하는 바가 아닙니다.

西獨政府는 두차 国会에서 이 問題를 取扱한 모든 委員會에서 独逸統一에 閨한 書類는 締結署名途中에 주고 받았다는 것을 說明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追加로 다시 또 指摘하고 싶은 것은 그 事実이 独逸民主共和国(東獨)에 依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 独逸統一에 閨한 書類가 반려되었다고 発表된 바도 없다는 것을, 巴이에른州政府自身도 반박하지 않고 있는 点입니다. 그 書翰이 반려되었다는 発表는 나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協商過程中에 独逸民主共和国(東獨)代表團이, 独逸統一에 閨

한 問題를 取扱한 하나의 書翰이 締結署名 途中에 該當部署에 到達된다는 것을 受諾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州政府自身도 이와 같은 사실을 申請書 6面에서 確認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 시키지 않을수 없습니다.

論点이 되고 있는 일은 아니라고 믿읍니다만, 国会分科委員會에서도 西獨政府에 依한 經過說明에 関해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읍니다.

獨逸民主共和国(東獨)의 쿨(Kohl)次官이 한 말은 그 書翰을 받았느냐 하는데 関한 問題가 아닙니다. 어떻게 到達되었느냐 하는 것이 같은 날 發表가 되었읍니다. 쿨(Kohl)氏가 한 말은 全的으로 政治的 性格을 띠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条約에 関한 원(Wien)協定도 要求하지 않는 바와 같이, 東獨은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內容을 發表하지 않으려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쿨(Kohl)이 한 말의 政治的인 의미입니다. 그 쿨(Kohl)氏의 말은 法的成分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一申請 2号, 모스크바條約의 準備 및 締結에 関係되는 書類에 関해서—

이미 잠간 指摘을 한 바 있는 書類 等에 関해서 말씀 드리자면, 두 개의 條約은 法的인 面에서 全的으로 独自性을 띠우는 것으로

서, 独逸聯邦共和国(西独)과 独逸民主共和国(東独)은 이에 関해서  
分明히 말하건데 아무런 意見差異가 없습니다.

그 外에도 바르(Bahr)書翰 第5号도 모스크바條約의 構成要素가  
아닙니다. 이 5号는 모스크바條約에 들어 가지를 않았으며, 이  
所謂 바르(Bahr)書翰 5号는 左右間 東歐羅巴政策圈内에 들어 가  
는 각 個別的인 条約間에 아무런 法的 聯閼性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西独政府가 오늘 說明한 바와 같이 실은 이러하여, 다  
만 東歐羅巴政策圈內의 각 個別的인 条約間에는 오로지 政治的인  
聯閼性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스크바條約上에는 基本條約의 対象  
을 미리 規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事項이 全혀 없습니다. 이  
와 같은 理由로 因해서, 그에 関한 西独政府의 内部的인 書類들을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은 不必要한 일이며, 그와 같은 書類들은 証  
拠力이 없는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감사합니다. 証拠申請 1号 및 2号에는 唯一한 書面, 即 独逸統  
一에 関한 書翰을 받았다는 領收証이 들어 있습니다. 이 書翰手  
交가 어찌한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裁判部가  
重要하다고 보는 境遇에 對備해서, 条約署名 途中 주고 받았다고 말

씀하신 것을 明記해 두겠습니다.

바알만 局長 :

네, 저는 이와 같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法的 事由로 因해서 西獨政府는 西獨国会의 두分科委員會, 即 独逸  
国内事情問題担当分科委員會와 法制司法分科委員會에도 提示하지 않았  
다는 것을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말씀 하신 가운데 締結署名을 하는동안에 주고 받았다고 하셨는데,  
締結署名을 하는 동안에 주고 그리고 또 받았다면, 領收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바알만 局長 :

아닙니다. 領收証이 있습니다. 万若에 裁判部가 이 領收証을 提示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보신다면, 当然히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보  
겠습니다. 나는 다만 法的인 理由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條約에 関한 원 (Wien) 協定에 따라서 領收証은 바이에른州政府  
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의를 갖지는 않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條約締結署名에 関한 記錄은 作成되어 있습니까?

바알만 局長 :

아닙니다. 本来 領收証은 独逸民主共和国(東獨)의 中央庁의 郵便物接受所의 領收証 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郵便物接受所의 領收証이라고요? 「署名하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알만 局長 :

締結署名은 伯林에서 했습니다.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은 独逸聯邦共和国(東獨)中央庁 建物内에서 인도 되었고, 그리고 郵便物을 받았다는 収領이 証明되었습니다. 따라서 條約에 関한 원(Wien)協定 31号에 該當하는 接受가 이루어진 것이며, 그 書翰은 基本條約에 関係 되는 것이라고 밝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便紙의 文句 内容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그렇다면 어찌 했든 問題가 되는 書面은 領收証과 同一한 것이 겠습니다.

바알만 局長 :

저는 이 領收証을 提示하리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인상으로서는 바이에른州政府는 콜 (Kohl) 次官의 말을 논박하기 為해서 이 領收証 提示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나는 콜 (Kohl) 次官님의 말씀은 아무런 法的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西獨政府의 이름으로 分明히 말합니다. 相對便의 한 高官이나 또는 使節團代表가 實際로 받았다고 말하는 内容인 収領宣言 같은 것은, 条約에 関한 원 (Wien) 協定에 따라서 必要하지가 않습니다. 콜 (Kohl) 次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나친 意義를 賦与 할 必要는 없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더 以上 質問이 없으면 適當한 때에 그 問題를 다른기로 하겠읍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32 条가 意味하는 「補充的인 方法」도 解釋上 使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西獨政府의 書類들은例전에 모스크바條約에 関한 1970年 7月 29日付의 크로미코宣言 같은 것을 解釋하는데 그와 같은 意味에서 法律上 約束力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請하건데, 뱅그리 教授님으로 부터 우선 31条에 関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yal만局長님의 말씀과 関係시켜 領收証의 法的性質에 関한 見解를 말씀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教授 뱅그레 博士：

31条에 따라서 解釈上에 사용될 '記錄'은 相對方 当事者에 依해서 條約에 関係가 있는 記錄으로서 받아 들여 치지 않으면 아닙니다. 따라서 領收証內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即 그 内容이 '우리는 某人으로 부터 基本條約에 関한 記錄으로서 書信을 接受 하였음'하고 되어있느냐, 또는 '우리는 某人으로 부터 書信을 받았음을 確認함'이라고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매우 重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31条 26号에 따른 記錄書類의 解釈上 價値는, 32条에 依해서 解釈에 利用될 記錄書類의 解釈上 가치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当事者들間에 이 領收証의 意義에 関해서 意見差異가 있는 것이 分明 합니다. 裁判部는 이 問題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바알만氏, 西獨政府는 이 領收証은 法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重要하지 않다는 意見입니다. 그렇다면 왜 西獨政府는 提出을 꺼리는지 나로서는 理解가 잘 가지 않옵니다.

바알만 局長：

万若에 裁判部가 그것을 必要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考慮해 보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그것이 必要한지 必要하지 않은지를 認識하기 위해서 裁判部가 어떤 決定이나 發表를 할 必要는 없습니다.

바알만 局長：

이미 陳述한 理由로 因해서 国会의 두分科委員會에 이 領收証을 提示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意味를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가 国會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아무런 法的 必要性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서 履行하도록 要請을 받는다면 合當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接受된 事實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바이에른州政府自身도 独逸統一에 関한 이 書翰이 제대로 接受 되었을 것을前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書翰內容으로 보아, 이 書翰은 基本條約에 関한 것이라는 것이 分明합니다. 그 書翰內容의 要旨는 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独逸民主共和国(東獨)間의 基本的인 問題에 関한 '條約을 오늘 調印함과 関聯하여 独逸聯邦共和国(西獨)政府는 이 条約이 矛盾性을 内包하지 않음……等을 確認함을 荣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條約을 調印함과 関聯하여'라고 分明히 되어 있습니다.

郵便物 接受所의 領收証이라고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郵便物 接

受所에 勤務하는 일개 公務員은 自身이 接受하는 書類의 内容이  
具体的으로 어떤 것이라고 說明할 수 있는 資格을 갖고 있지는  
않읍니다. 그와 같은 公務員이 越權行為를 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다시 말씀 드리건데 그것은 받았음을 確認하는 領收証인  
것입니다.

教授 브루멘벳츠 博士 :

바이에른州政府는 31 条가 意味하는 「記錄」과 32 条가 意味하는  
「記錄」上에는 差異가 있다는 것을再次 主張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서로 関聯性이 있다고 西獨政府가 主張하는 것만으로  
서는 不足합니다. 그 関聯性이 認定되었다고 西獨政府는 說明할  
수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내가 바일만氏의 陳述內容을 理解한 바로서는, 이 領收証이 重要性  
을 띠는지 否否와 그리고 이 領收証이 提示되어야 될지에 関해서  
裁判部가 意思表明이나 或은 決定을 할 것을, 바일만氏는 願하고  
제신것 같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適當한 때에 이 問題를 处理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証拏申請 3号와 4号에 関係되는 것  
으로서, 分科委員會會議錄은 本来 訴訟当事者와 裁判部가 現在 이미  
使用할 수 있지마는 지금과는 다른 方法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本憲法裁判所가 어떠한 命令 같은 것 等을 할 必要

가 있는지를 分明히 試圖 주기를 오늘 아침 이미 試圖 했습니다  
어떠한 措處를 取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디르네커 書記官 :

裁判長任, 제가 말씀 드리자면, 이에 関해 証拠申請을 한 理由는,  
바로 西獨國會法制司法分科委員會 基本條約에 関해 20個의 確認同  
意가 委員會의 少數派에 依해서 提起 되었으나, 多數派로 因해서  
否決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証拠申請을 許容하던지 아니 하던지  
間에, 어느 境遇를 莫論하고 그것은 法的으로 重要한 일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네, 會議錄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措處를 必要로 하시  
는지 그것만을 말씀 하십시오.

디르네커 書記官 :

우리는 會議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그것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機密文書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万若에 貴下의 意見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機密을 公開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고, 또 어  
떤 機密이 되는 것을 公開하라는 것인지 分明히 말씀하셔야 됩니

다. 나는 도대체 이 자리에서 우리가 機密을 公開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會議錄提示를 命令하라는 申請을 나는 理解하지 못하겠습니다.

디르네커 書記官 :

우리 意見은 이러합니다. 西獨国会에서 確認同意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確認同意가 社會民主黨과 自由民主黨으로 成立된 聯合多數派에 依해서 否決되었다는 事實은 곧 條約에 関한 解釈을 逆으로 할 수 있음을 뜻하는 한, 西獨国会와 參議員의 委員會에서의 討論過程을 알아보는 것이 條約解釈上 必要하다는 意見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裁判部が 必要하다고 보는限, 裁判部는 會議錄을 閱覽할 것이라고 確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會議錄의 어느 特定한 部分을 指摘하셨다면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會議錄 提示에 대한 決議는 必要하지 않습니다.

디르네커 書記官 :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機密文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裁判所에 없는것 같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必要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을 使用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바 없읍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貴下의 생각으로서는, 貴下가 이 곳에서 機密文書를 行使할 수 없기 때문에, 機密文書가 이 곳에 提示되지 않으면 貴下의 利益保障上 支障이 있다고 보십니까?

니르네커 書記官：

바로 그렇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自身이 이 公開裁判을 하는 곳으로 그 會議錄을 가져 올 수 는 없읍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그런데, 貴下는 모든 委員会의 會議錄 全部에 関해서 말씀 하셨지, 機密에 속하는 會議錄만을 指摘해서 말씀 하시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어떤 會議錄이 提示되기를 원하는지 잘 알수가 없읍니다.

니르네커 書記官：

裁判長님, 다시 말씀 드리건데, 国会分科委員會의 會議錄들은 機密文書라고 저는 백퍼센트 確信합니다. 独逸国内事情問題担当分科委員會를 말하는 것이며, 外務分科委員會와 法制司法分科委員會도 一部 関係 됩니다. 總會의 會議錄과는 差異가 있읍니다.

소이 페트 副議長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機密性을 없이 할 것입니까, 또는 機密로 그에 関한 心理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디르네커 書記官 :

국회의 分科委員會의 議事進行過程에서 느낀바로서는, 委員會의 議事도 証拏採択을 為한 事實調查에 包含시킬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

万若에 裁判部가, 그와 같은 種類의 모든 文書가 裁判部에게 使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參考로 하기 為해 가져 오는 것이 訴訟上 理由 있다고, 分明히 表現을 한다고 하면 足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르네커 書記官 :

나는 이 자리에서 公式的인 訴訟代理人의 權利를 조금도 侵害하고 싶지 않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그 会議錄들로부터 나을 結論에 関해서, 亦是 機密로, 우리들이 通報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結論에 関해서는 아마 判決時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  
조용히 해 주십시오. 떠드시면 안됩니다.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제가 貴下의 말씀을 理解한 바에 依하면, 貴下의 말씀은 貴下가  
內容을 알고 계신 그 機密會議錄을 이 口頭審理를 為해서 들여오  
도록 하되, 万若에 必要한 境遇에는 非公開心裡로 해야 된다는 것  
이지요. 貴下의 申請內容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勿論입니다. 証拠를 発見하기 為해서는 모든 可能한 方法을 다 使  
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그리면, 브루맨비츠 教授님 말씀을 더 계속하시렵니까 ?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나는 西獨政府에게 对해서, 내가 午前에 言及한 部分에 関해서 어  
떻게 생각하는지 意見陳述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西獨政府側에서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알만 局長 :

다시 反復하여 말하건대, 이 자리에서는 憲法裁判을 하고 있으므로, 当然히 憲法上의 問題가 重點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國際法上의 問題에 関해서 성급하게 意見陳述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本憲法裁判所가 判決上 國際法的 問題를 必要로 하는 境遇에만 國際法上의 問題에 対한 評定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것은 憲法上의 問題들 입니다. 우리는 바이에른州政府가 憲法上의 問題에 対한 意見陳述을 한 後에 우리의 意見을 陳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소아퍼트 副議長 :

말하자면, 지금 당장 브루멘비츠 教授님의 演說內容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브루멘비츠 教授를 向해) 말씀을 繼續 하십시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裁判長任, 憲法裁判所判事 여러분, 저의 말을 繼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本来 憲法에 関係되는 問題인 "獨逸"이라는 概念에 関한 것입니다.

獨逸이라는 概念과 이것의 憲法上의 規定, 特히 西獨憲法前文內의 所謂 単一性保障 条項 및 統一命令 条項 内에 表示되어 있는 것

이 내가 지금 言及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憲法前文 1 節에는 이에 関해서 「国民的，国家的 統一性을 保存하기 위한 意志에 고무된」라고 確言되어 있고，

2 節에는 「그들（西獨內의 各州의 独逸民族）은 參与가 拒否된 独逸人들과도 協議했다」고 되어 있고，

3 節에는 「모든 独逸民族은 自由로운 自由決定으로서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成就할 것을 命令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前文의 法的性格에 関해서 간단히 주석을 달자면, 다음과 같은 概要를 그 中에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即：

1. 政治的 信条, 特定한 計劃에의 国家民族의 嚴肅한 호출
2. 法의 重要性을 认 確認 乃至 憲法을 解釈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될 法的 保障，
3. 모든 国家機關에 関係되는 義務, 等 입니다. 西獨憲法裁判所는 1956年 8月 16日 共產黨에 関한 判決時 憲法前文에 関한 기본적인 見解를 考慮함에 있어서 모든 解釈可能性을 全部 考慮하였으며, 憲法前文의 政治的 意義外에 法的成分까지도 確認하였음

니다. 그것을 引用 하자면, 前文은 法的인 成分도 갖고 있는 것이며, 憲法을 解釈함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法의으로 重要性을 띠는 確認이나 法的保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憲法前文 으로 부터는 더 나아가 独逸聯邦共和国의 모든 政治的인 國家機關間의 法的義務가 파생되는 바, 이義務란 모든 힘을 다하여 独逸의 統一을 達成하기 為해서 努力하여야 될義務, 이目標를 為해서 國家機關이 措施를 取하여야 할義務 및 이目標를 為한 行為를 그들의 政治的 行動의 標準으로 承認할義務等 을 말합니다.

憲法裁判所는 憲法前文의 마지막 구절의 法的性質을 所謂 兵役義務에 関한 判決을 通해서도 確認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引用하자면 "独逸의 統一은 政治的인 目標일 뿐만 아니라, 憲法上의 命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憲法裁判所는 前文全体에 関해서 法的性格을 說明하고 있습니다. 憲法制定沿革上에서도 그것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国會議員 슈밀博士가 한 말을 引用하겠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憲法前文은 허울좋은 序文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創設의인 原動力を 表示하는 것으로서, 그 前文에는 法的으로 重要性을 띠는 確認, 評価, 法的保障 및 請求權 等이 함께 包含되어 있다"고 하였읍니다.

前文中의 統一保障 乃至 統一達成條項의 内容이 제가 말씀 드리고  
저 하는 다음 項目 입니다.

「国民的，国家的 单一性을 保存하기 위한 意志에 고무된」이라는  
前文의 말은 「統一保障動機規定」 또는 「統一保障命令」 乃至  
「委任」이라고 말합니다.

前文 1節은 3節과는 달리 法的인 命令이나 委任으로서가 아니라  
確認으로서 理解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動機만이 問題가 된다는  
것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反對되는 狀況과 하나의  
西方國家의 創設에 구애됨이 없이 独逸의 国家의인 統一을 固守한  
다는 独逸의 憲法制定者の 確認은 法的 成分을 展開시키는 것입니다.  
制憲者の 確認은 命令이나 마찬가지로 法的 拘束力を 갖는  
것입니다. 規範이 外形上 確認이냐 또는 命令이냐 하는 것은 기  
술상의 問題에 不過 합니다. 「確認」의 法的인 行動 반경은 一般  
의으로 命令의 行動 반경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国家의 統一을 保障하려는 意志를 「動機」로 表現하느냐, 또는 法  
의으로 重要한 「確認」으로서, 即 法的保障으로 表現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動機」가  
内部의인 움직임의 原因으로만 떠오르지 아니 하고, 憲法전에 明示  
되는 境遇에는, 「動機」도 法的意義를 取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프로그램식으로 明示的 規定을 두었던 와이 말憲法에 있어서와는 달리, 西獨憲法의 一般的인 傾向과도 合致되는 것입니다.

統一保障條項을 解釈함에 있어서 그 제정내력을 살펴보면, 이 条項은 比較的 늦게 국회에서 論議가 되었음을 確実히 알 수가 있는데, 뒤늦거나마 이것이 論議가 된理由는 憲法前文에 関한 그전 제안들, 即 独逸國家의 繼続存在를 強調하는 見解가 表現하기에 부적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憲法에 따른 法規는 国家概念을前提로 합니다. 이것은 当然한 事實이기 때문에, 많은 憲法들은前提가 되는 国家에 関한 세부적인 規定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国家法分野와 憲法分野는同一한 것입니다.

그러나 西獨憲法을 制定한 後에는 狀況이 다릅니다. 1945年以後에 있어서 独逸국의 繼續性에 関한 問題는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945年 5月 7/8일의 独逸軍의 항복, 1945年 5月 23日의 뢰니츠(Dönitz) 内閣의 逮捕, 1945年 6月 5日付의 声明을 通한 勝戰國의 独逸에서의 最高國家権力의 接受 및 1945年 8月 2일의 포스담條約의 規定內容 等에 閑해서, 独逸의 憲法制定者は 分明한 意見陳述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国家의 量과 質이, 그 전의 独逸国

과 比例하여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獨逸의 憲法制定의 先決問題에 関한 議會의 答은, 憲法前文의 1節  
을 빼고, 西獨憲法前文 2節과 3節 및 本章 23條와 146條 같  
은, 일련의 憲法上의 다른 規定을 解明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 憲法條文이 이와 같은 總體的으로 憲法을 理解함에 있어서 重  
要한 先決問題를 지나쳐 버리고 規定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先決問題는 解釈의 階을 通해서 찾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憲法裁判所는 다른 것과 關聯하여 말하기를, 憲法은 하나의 内的인  
統一体이며, 이 内的인統一体의 總體의 内容으로 부터는 原則과  
基本의 判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憲法의 基本前提의 境遇도  
亦是 비슷 합니다.

國際法上의 主体인 獨逸의 存續性이 客觀的인 國際法의 地位에서  
발원하느냐의 여부는, 이곳에서 言及한 憲法의 問題에 對해서 別  
로 重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重要한 깨달음입니다.  
西獨憲法은 그 憲法의 發效地域에 関한 國際法上 論爭이 되는 問  
題를 憲法의 위계로서 解決할 수가 있으며 모든 国家機關을 이  
解決에 결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히로쉬 憲法裁判所判事님, 勿論  
聯邦憲法制定者는 바이에른州 憲法의 基本의 决定에 拘束을 받지  
않습니다. 兩者の 關聯性에 關해서는 이미 言及을 하였으며, 本人  
은 바이에른自由州의 代表로서, 判事님께서 바이에른 憲法 또한 이  
곳 憲法裁判所의 心理尺度로 삼기를 考慮하고 계신것을, 기쁘게 생

각하는 바 입니다.

오늘날 지배적인 法世界의 二元的構想에 따라서, 國際法과 憲法은 두개의 理論上 분리된 法域인 것이며, 이 두 法域의 규범(基準)이 서로一致해야 될必要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本 裁判部도 暫定의 指處에 関한 判決時에 강수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西獨憲法 25條上의 「國際法上의 一般的의 規定의 우선권 및 直接의 效力発生」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두 法域의 調和를 企図 하는 것이며, 勝戰國이 敵국에게 要求한 國際法上의 規定을 包含하지 않는 國際慣習法에 関係되는 것이며 國際法上의 構成要素를 國內法의 要素로 포섭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当事国들을 國際法上 拘束시키는 國際機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憲法制定者は 自身이 만든 國家制度와 関係되는 形態로 國際法上 論争이 되는 問題에 関해서 態度를 取할 수 있는 것이며, 또 態度를 取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은 洞察은,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늘 말하여 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理論의 根拠를 相對的으로 보도록 하는데, 그 理論의 根拠란, 憲法前文上의 独逸이라는 概念은變化 되었다. 即 領土가縮小 되었으며 現實認定과도 対立되지 않는다는 것을 内容으로 합니다. 西獨憲法의 成立은 憲法裁判所의 判例와 마찬가지로, 独逸統一이란 1937年 12月 31日 現在의 国境을 標準으로 한 独逸의

再現을 말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憲法上 国籍에 関한 問題를 정의할 뿐, 法文上으로 보아 領土權에 関한 規定이 아닌 西獨憲法 116 条 1 項은 여기에 적어도 증빙으로서 끌여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1937年 12月 31日付의 國境線內의 独逸」이라는 憲法上의 国家概念은 憲法이 改正될 때 까지는 拘束力を 가질 것 인데, 이것은 本来 勝戰國 意圖이거나 또는 國際法上의 規定에서 由來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憲法制定者의 意圖이 있든 것입니다.

이 規定을 領土에 関係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関係되는 것이라고 理解할 때, 어찌 하였든 이전 동부지역이 西獨憲法上의 独逸이라는 概念에서 除外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見解는 憲法規範의 「意味变化」로 因해 解明을 必要로 합니다. 規範이 事實上 發効되는 領域, 即 「規範領域」 또는 「規範地域」이 変更되면, 이 独逸이라는 概念이 새로始作된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며, 規範의 解釈自体도 變化된 狀態에 適応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獨逸民主共和国(東獨)을 独逸이라는 概念에 包含시키지 않는 實際의인 理由를 이미 1949年에 憲法制定者が 알고 있었기 때문에, 意味变化에 對한 特別한 根拠가 立証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左右間 사람에 関係되는 独逸이라는 概念은 独逸民主共和国(東獨)

地域을 包含하기 때문에, 基本條約上의 意味變化問題는 後退를 하게 됩니다.

規範과는 界界가 지어져 있는 意味變化制度와 関聯되는 것으로서, 「憲法이 本地적으로 變하는 制度」 即 政治的, 社会的 觀念의 變化나 憲法보다 下位에 있는 法의 變更을 通한 規範變化라는 더 広範囲한 制度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憲法의 本地적 變化는 西獨憲法 79條 1項에 規定된 原理 外에도 口實을 갖고 있습니다. 西獨憲法 79條 1項은 憲法制定當時와는 달리 一般的인 政治的, 社会的 認識이 비록 달라졌다 고 하드라도, 살아있는 組織體로서의 憲法을 維持 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憲法의 歷史的인 繼續性을 為해서 必要로 하는 流動的인 考察方法은 西獨憲法 79條에 따라서, 國會의 多數派에 依해서 政治的으로 論爭의 여지가 있게 通過된 당돌한 法의 變更이 問題가 될 때는 許容되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서 確認한 「本地적인 憲法變化」는 憲法上의 基本原理 앞에서 停止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前文 3節에 있는 所謂 統一命令은 變態下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國家概念은 憲法典外에서는 憲法의 改造될 수 없는 憲法의 基本構造에 屬하게 됩니다.

国家概念을 憲法上으로 明示함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現在의 規定 未来의 規定間의 衝突問題가 생깁니다. 이것은 恒常 法曹家 들이 겪는 經驗이며, 이것은 많은 現役政治人們에게는 激憤을 가져 오며, 대담한 外交政策에는 하나의 障碍物을 가져다 줍니다. 国家概念은 憲法을 通해 마련된 制度와 같은 保護를 받습니다. 国家의 生성과 滅亡은 議會內의 多数決에 依해서 일어날 수 있는 事件이 아닙니다.

西方國家냐 또는 独逸統一이냐 하는 両者择一을 두고 議會는 단순히 西方國家를 择하지는 않았고, 전해오는 独逸의 國際法上의 主體性이 影響을 받지 않는것을 条件으로 그 限度 内에서 하나의 西方國家를 建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의 方法으로 說明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國際法的으로 아주 짧게 그것에 關해서 言及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憲法学의 귀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西独憲法에 規定된 国家에 關한 規定은 全体独逸國에 關한 規定과 同一합니다 (核心國家論의 形態를 取한 同一說). 이 學說은 長期間 独逸에서 判例上의 統率이 었으며, 이 憲法裁判所의 判例와도 一致 합니다.

다만 独逸國은 國際法上의 主體로서도 独逸聯邦共和國(西獨)의 領域만을 표용하는 것이라는 縮小國家論의 形態를 따른 同一說은 広

範囲한 独逸国家概念을 正当히 取扱하지 못할것 입니다.

西獨憲法上에 規定된 国家에 関한 規定은, 存続되고 있는 全体独逸에 関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全体独逸의 것을 排除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밑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所謂 法秩序分割論인데, 이 學說은 國際法上의 主体로서의 이전 独逸의 存續性을 可能하게 하며, 또 独逸聯邦共和国(西獨)과 独逸民主共和国(東獨)을 法的으로 同等한 位置에 두는 것을 可能하게 하는데, 社會民主黨과 自由民主黨이 이끄는 機聯合派가 東歐羅巴政策을 構想할 때 基礎가 되었습니다.

憲法制定者は 伝へ져 오는 國際法上의 主体를 規定하므로서 허황된 의제만을 한 것은 아니고, 兼하여 同時に 憲法前文 3節에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成就'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憲法制定者は 自身에 依해서 1項에 規定된 規範과 戰爭後의 独逸에 있어서의 現實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克服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憲法制定者は 東歐羅巴國家들과의 條約에 関聯하여 要請을 받는 것과 같이, 서로 相衝되는 두 境遇의 正常化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基本條約에 있어서는 規範을 現實에 調和시키는 것으로 解釈이 잡

니다.

그러나 西逸憲法은 前文에서 그와는 달리 反對로 現實을 規範에 調和시키기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憲法前文의 1項과 3項은 目的과 方法間의 關係에 있는 것입니다.

憲法上에 明記된, 伝해져 오는 独逸의 國際法上의 主体가 適合한 方法을 通해 다시 活動시켜 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憲法前文 3項에서는, 憲法制定者는 国家의 機関들에게 對해서 独逸의 統一과 自由를 成就할 目標를 設定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目標設定으로 부터 特定한 行為를 하라는 命令이 과생되지는 아니하며, 目標를 達成하는 方法選択은 憲法裁判所가 共產黨裁判時에 判示한 것과 같이, '政治的 自由裁量'에 속합니다.

前文 3項에 對한 判例를 살펴보면, 이 項目은 統一을 沮害하는 措處를 憲法上 저지하는데 適用하므로서, 말하자면 소극적인 意義를 더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憲法制定者의 意図와 전적으로一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에 關해서는 學說上 '統一妨害禁止'라는 말이 많이 使用되고 있습니다. 独逸의 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適合한 方法으로서는, 前文 3項은 '自由로운 独自的 決定'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西獨憲法

146 条가 "独逸民族의 自由로운 決定云云……" 하는 것과도 같읍니다. 뱅그레 教授님이 이에 関해서 詳細히 말씀 하실 것이기 때문에, 本人은 이에 関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바 입니다.

憲法上에 있어서 自主決定에 関한 条項은 根本의으로 自由로 하 抨할 수 있는 統一方法에 대한 限界에 関해서 言及하는 것입니다. 統一이 自由를 牺牲하면서 이루어 질때에는, 統一命令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統一禁止를 뜻하는 것입니다. 現在까지 東歐羅巴政策을 가장 具体化하고 있는 基本條約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은 憲法上の 基準에 未達하는 것입니다.

本人이 오늘 午前에 이 자리에서 基本條約을 分析하여 본 바로서는, 統一을 成就하기 為해서 지금까지 取한 길은 잘못된 것이 었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統一命令과 우리憲法에서 基礎가 되는 独逸의 国家概念에 對한 本質의인 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基本條約이 独逸民主共和国(東獨) 내에 있는 独逸人們에 對한 保護義務를 侵害한 것에 對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国家와 人間間의 西獨憲法을 通한 関係變化는, 典型的인 自由主義라는 뜻에서 人間의 基本權範囲를 侵害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이 모든 国家權力의 任務가 아니라는 것을, 必然的으로 同伴합니다.

西獨憲法 1条 1項 2節에 法의인 根拠를 가지고 있는 憲法上에 있어서의 人間象은 国家로 하여금 더 나아가, 모든 基本權의 土台가 되는, 말하자면 人權分野의 核心인 人間의 尊嚴性을 保護하기 為한 積極的인 行動을 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国家의 이 義務는 大端히 特別한 方法으로 모든 独逸人們에게 適用됩니다 (西獨憲法 116条 및 16条). 西獨憲法前文 2節과 3節에서는, 엘베강 건너편에 있는 独逸人으로 하여금 自由로운 自主決定을 可能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될, 基本의in 憲法上의 根拠도 亦是 찾을 수가 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国 (東獨)에 있어서 人權을 強化하라는, 国家構成員들에對한 積極的인 委任 또한 法의으로 자명한 根拠를 찾는다면, 行為委任의 必要한前提로서 内在하는 不作為行為에 어긋난다는 것을, 即 말하자면 独逸民主共和国 (東獨) 내에 있는 独逸人们的 基本自由를 為해 本質的인 措處를 取하려고 努力함이 없이 다만 自身의 權力機關만에 依해서 強化된 独逸民主共和国 (東獨) 政權을 強化하는 데에 献身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데에 위배된다는 것을, 裁判部는 쉽게 確認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亦是 "자아르 (Saar)

裁判時에 憲法裁判所에 依해서 説明된 接近論 뒤에 있는 動機인데, 이 接近論에 関해서는 州政府首信任께서 이 자리에서 口頭로 陳述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特別히 独逸民主共和国(東獨)內의 地位에 関해서, 担當裁判部는 説明하기를, 独逸聯邦共和国(西獨)의 憲法은 独逸聯邦共和国의 聯邦과 州의 各機關이 東部地帶(當時는 이렇게 불렸음)의 権力体制를 強化하거나 또는 支援하는 것을 禁止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理論的 뒷받침으로 하여, 憲法裁判所는 独逸民主共和国(東獨)의 刑事問題에 对한 判決의 執行에 関한 法院의 判決을 解除한 바 있습니다.

基本條約에서는 独逸民主共和国의 体制는, 欧羅巴의 심장부분에서 工業과 經濟上의 共同作業을 하기為한 어길수 없는 最低尺度를 保障하기為해서, 相互往来條約과 이전의 東西獨間 通商條約에 있어서 처럼 그와는 다른 現實로서만 単純히 받아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外國統治權에 依한 行為, 例컨대 占領軍의 行為 같은 것을 憲法上 받아드리는 것에 関해서는, 27卷에 있는 判例를 指摘하고 싶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現實로서만 받아 드려지기는 커녕, 첫째로 基本條約을 通해, 独逸民主共和国과 다른 東歐羅巴 블력国家들은 오랫동안 主張한 政治的 要求를 成就 했습니다 (例컨데 1966年

의 「부카레스트-宣言」, 特히 地域的 現狀維持의 法的認定,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法的, 政治的 資格引上 參照). 独逸民主共和國內에 있는 独逸人の 自主決定權을 為해서 本質的이고도 두드러진 푸러스가 되는 것은 達成하지 못한체, 政治的 지형은 抛棄됐습니다.

人間的인 緩和'란 겨우 特히 西에서 東으로 가는 旅行이나, 나아 많은 사람이 独逸民主共和国에서 나오는 것, 祖父母 및 子女들을 들보아 주어야 할 父母가 그들의 子女나 孫子에게로 이사해 가는 程度입니다.

東獨官憲의 發砲命令의 解除나 또는 出國의 自由를 部分的으로만保障하는 것을 解除하였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크리례氏가 指摘한 바와도 같이 中世紀의 絶對的인 独裁者가 自己의 臣下에게 주지 않고 留保하였든 것과 같은 権利는 볼 수 있습니다.

2. 基本條約을 通해서 무엇보다도 外國에서는 反駁할 여지가 없을 法的現狀이 이루어 졌으니, 그것은 独逸聯邦共和国이 實質的으로 独逸民主共和国体와 妥協을 하고, 그 独逸民主共和国体制를 自身과 同等한 것으로 認定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아 해서 條約 1條는 兩國의 「平等」을 「善良한 이웃」關係의 基礎로서 確定하였읍니다. 따라서 「平等」은 法的인 關係에서 끝나지 않고, 法的인 面을 넘어서는 「善良한 이웃」이라는 말이 表現되는 것과 같이, 社會的, 人間的인 狀態의 評價에 關係하게 되었읍니다. 第 2條에 있는 「무차별」과 内部問題에 있어서 自主性의 「尊重」(6條) 같

은 留保없는 宣言도 同一한 方向을 目標로 합니다. 基本條約에 있어서 西獨이 自由國家利害를 부인하고 또 그로 因해서 作為義務와 不作為義務가 由來된 類型은, 이미 發效된 記者交換에 関한 書信交換에 있어서 記者的 勤勞条件의 內容規定部門에서 形式的이고도 同等한 價值을 現혹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現行法規의 태두리」引用에서도 그 例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結局 基本條約에 있어서는, 独逸聯邦共和國이 將次 그들의 保護義務를 履行하는데 使用 할 法的機構가 削除 되었습니다. 基本條約 1条, 2条, 6条2項 等은, 独逸聯邦共和國이 國際輿論 앞에서 独逸民主共和國으로 하여금 人權을 尊重하도록 중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法的根拠을, 事實上의 理由가 아닌 法的根拠을, 独逸民主共和國에게 주고 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國에 있는 独逸人을 為한 保護義務를 基本條約을 通해 폐棄하므로서 人間의 悲劇이 招來될 것인 바, 이 悲劇에 関해서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東歐羅巴政策에 걸었던 期待에서 깨어나 여전히 鐵의 帳幕 저쪽에 있는 独逸人們과 함께 즐거워 하고 있는 사람 이 잘 알 것입니다.

万若에 西獨政府가 6月2日付로 提出한 文書 P.15에서 처럼 道德의이며 政治의인 問題라고 口实을 부치면서, 保護義務를 回避하려

고企図한다면, 그것은 法的으로만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憲法上의 平和概念을 가장 具体的으로 構成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憲法上의 作為義務 및 不作為義務가, 西独政府가 上記文書를 通해서企図하는 것 처럼, 그저 一般的인 「平和要望」이라는 것으로 因해서 履行되지 않는 것은 不當합니다.

国籍에 関한 権利 및 外交上의 保護에 関한 権利에 関聯하여 基本條約의 價值評価는 保護義務에 関한 問題와 密接한 関聯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西独政府는 国籍에 関한 権利는 基本條約을 通해서 「直接的으로나間接的으로나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國籍에 関한 問題는 條約에 規定되어 있지 않다는」西獨政府의 記錄解說이 西独政府가 基本條約에 関한 建議書 B편에서 말한 것 처럼, 하나의 참된 解釈留保이고, 따라서 條約相對方을 拘束한다면 옳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記錄에 関한 說明이 참된 留保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明示의이든, 默示의이든, 相對方의 同意를 必要로 합니다. (이에 関해서는 條約에 関한 원協定을 參考할것). 独逸民主共和国은 단지 말하기를, 基

本條約은 '國籍에 関한 規定을 緩和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  
基本條約이 國籍에 関한 直接的인 規定을 包含하지 않고 있다는데  
關한限, 認定이 갑니다. 行路는 分明합니다마는, 이에 関해서는 本  
法廷에서 말 할 必要는 없읍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自己便 사람  
들의 独逸國籍의 自動的인 壞失을 主張할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  
은 아마도 西獨政府가 이 境遇에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二重國  
籍이 成立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人間의 利害關係上 國籍選択의 規定을 主張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西獨政府가 아마도 그 建議書에서 말한것 처럼, 記錄解  
說이 西獨政府의 見解上 條約上의 規定權 밖에 있는 対象에 関한  
것 이라면 '留保'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拘束을 받지 않는  
相對方의 受諾을 必要로 하는 '法의 保障'이 存在하는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国이 政治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意見相異의 領域'  
은 이 境遇에 더 크다고 봅니다. 基本條約 1条, 2条, 6条로  
부터도, 西獨憲法上에서 固守되고 있는 单一独逸國籍과는 다른 國籍  
問題에 関한 直接的인 規定이 派生됩니다. 基本條約 1条, 2条,  
6条上의, 相互關係의 基礎로서의 '主權과 平等', '独立과 自主性의 尊重'.  
'内外問題에 있어서의 自主性의 尊重'等은 將次 定해 질 모든  
規定 및 將次 계상에 따라 主張 할 法의 見解에 関해, 內容을 規  
定하여 또 基本條約에 따라서 解除할 수도 없는 基本的인 規範  
입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独逸民主共和国은 恒常 世界 모든 나라에서 領事  
條約을 締結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는데, 이 条約上에서는  
西独政府가 国籍問題를 理解하기 為해서 行하였든 것과 같은 解釈  
은 排斥 됩니다. 基本條約 締結로 因해서 「直接」發生할, 基本條  
約 1条, 2条, 3条2項 및 6条의 国籍에 關한 結果中의 하나는,  
西独政府가 「同等한 独立」을 受諾한 後라도 法的으로 저지하지  
않는 限, 独逸民主共和国이 自己領域內에서 賦与한 市民權을 第3國  
은 二重国籍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의 市民權을  
第3國들은 國際法上 有效한 것으로 許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基本條約은 이전 独逸国籍의 部分의인 衰失과 같은 結  
果가 됩니다. 그려므로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이 妨害를  
하는 境遇, 独逸民主共和国에 住所를 가진 独逸人을 外國에서도 더  
以上 外交의인 保護下에 둘 수가 없읍니다.

西獨憲法 23条 2項에 依해서 保障되고 있는 独逸의 다른 地域을  
을 為한 加入權"에 關해서 西獨政府는 1973年 6月 2日付로  
提出한 文書를 通해 憲法裁判所의 判例와 一致되게, "加入可能性"  
이 開放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했읍니다. 西獨憲法 23条 2項  
은 다른 条項들과의 前後 關係上으로 보아 統一에 關係되는 憲法  
規定으로 보입니다.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마는, 아마도 憲法前文과 146条는, 亦是 独逸  
의 國家概念이前提가 되는 바이지마는 다른 地方의 住民들이 그

들의 自主決定權을 使用해 統一에 関해서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西獨政府는 그와 같은 있을 수 있는 加入에 関한 自由로운 決定을 基本條約 以後에는 條約에 따라서 더以上 主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國境變更에 賛同해야 될 對話相對는 自身의 對外・對內의 独立性을 尊重하고 있는 独逸民主共和國政府이기 때문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그것을 넘어서 基本條約을 根拠로 하여 그와 같은 무리한 要求를 拒絕할 수 있을 것입니다. 基本條約 2條2項과 結付 시켜서 解釈해야 될 基本條約前文에서는 現在狀態 그대로의 國境을 尊重하는 것이 「歐羅巴에 있어서 平和를 為한 基本条件」 으로 되어 있으므로, 解除할 수 없는 基本條約과 맞추어 平和的 變更에 影響을 둘 재량의 範囲는 独逸聯邦共和國에게는 外見上 狹小함이 分明합니다.

基本條約에서 「백림」을 取扱한 것도 違憲입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独逸聯邦의 다른 州를 為한 特別한 義務感은 이 자리에서 表示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림」은 西獨憲法 23條 1項을 根拠로 하여 憲法制定者에 依해서 다른 州를 처럼 西獨憲法의 發效地域으로 編入되었습니다. 憲法裁判所는 西獨憲法 23條 1項 (「백림……等의 州領域内」) 과 144條 2項 1節에 根拠하여, 判例를 通해서, 「백림」은 聯邦의 한州의 性質을 띤다는 것을 確認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伯林'은 憲法에 依해서 組織된  
獨逸聯邦共和国의 한 州인 것입니다. 西獨憲法은 伯林에서도 效力  
을 發生합니다. 다만 그 適用이 占領當局이 制定한 法에 依해서  
制限을 받을 뿐입니다.

西獨憲法裁判所는 聯邦憲法裁判所法 31條에 따라서 效力上 拘束力  
이 있는 判決事由를 通해서 모든 國家機關에 對해 이 法的見解를  
確立한 것입니다. 憲法裁判所는 하나의 論爭이 되고 있는 問題,  
國際法上으로도 論爭이 있는 問題를 判決한 것입니다. 憲法裁判所  
는 西方3大国의 法的見解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이 見解를 피  
력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憲法裁判所의 見解는, 伯林은 西獨의 한  
州가 아니라는 AHK의 見解와는 달랐습니다. 立法者는 條約에 依  
한 伯林-약관을 通해서, 憲法의 地位를 正當히 取扱였습니다.

'伯林'의 地位는 聯邦의 憲法上 根拠가 있는 것이지, 單純한 法  
律에 根拠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伯林'의 地位는 根本的  
으로 法的인 效果面에서나 司法府의 裁判에 對한 標準이 되는 面  
에서, 다른 國際法上의 狀況에 依해서도 影響을 받지 아니 합니다.

聯合軍의 意見은 西獨憲法에 関係되는 憲法解釈과는 달라서, 그들은  
'伯林'은 獨逸聯邦共和国의 한 州가 아니라고를 말합니다마는, 그  
러나 獨逸聯邦共和国과의 確實한 결속이 그들의 留保權行使를 通해

서 許容되었습니다.

1971年 9月 3日付의 「伯林」에 関한 4大国條約 II B 편을 通해  
서(條約自体에서는 「伯林」은 다만 「當該領域」이라고 分り 위 쟁음)  
結局에는 「西伯林」은 「前과 마찬가지로 独逸聯邦共和国의 構成部  
분이 아니며 「独逸聯邦共和国에 依해서 앞으로도 統治될 수 없다고  
宣言되었습니다. 勿論 西方3大国(美, 英, 仏)은 지난날 지금까지,  
独逸聯邦共和国의 國家機關들이 「西部」伯林」을 独逸聯邦共和国의 州  
라고 부르고, 또 1967年 4月 18日付의 書翰을 通해서 「西」伯林」  
의 行政府와 立法部에 對해서 憲法裁判所에 對한 意見表明時 聯合  
軍側의 法的見解에 순응하도록 간청하는 것을 참아 왔던 것입니다.

西獨憲法과 層을 이루고 있는 占領當局이 制定한 法은 이 点에  
있어서 하나의 部分的인 衝突을 하고 있습니다.

万若에 憲法에 明示된 憲法理論上의 指針이 政治的으로 實現될 수  
없으므로서 아무런 法的拘束力を 請求하지 못하는 方法으로서, 法治  
國家에 어긋나는 政治의 優位에 忠誠을 盟誓하려고 한다면, 西獨憲  
法의 全的인 廢止나 停止를 받는 것은 免할것입니다. 그러나 오  
히려 그더느니보다 憲法과 그 憲法의 規範의 힘에게 可能한 限  
なく 空間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占領當局이 制定한 法과 西獨憲法間의 不和狀態로 부

터 하나의 憲法学的인 接近 乃至 同等化命令이 派生 되는 바, 이  
와같은 接近 乃至 同等化命令은 可能한限 限度内에서 「伯林」이  
하나의 独逸聯邦共和国의 州인것 처럼 「伯林」과의 關係를 規定할  
것을 國家機關에게 義務로서 賦課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聯邦忠  
誠의 原則(聯邦의 立場에서 親州的 行動을 하는 原則)이 通用될  
것인데, 이 原則에 따라서 聯邦은 法的으로 到底히 避할수 없는  
事由가 없이는, 한 州를 다른 州와 差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对外的인 代表問題에 関해서도 亦是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伯  
林」은 다른 州를 처럼 國際法上의 条約締結에 있어서 聯邦에 依  
해서 代表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基本條約上에는 「伯林」에 對한 參照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條約  
法 2條는 独逸聯邦共和国의 其他 條約上에 있어서 一般化된 「伯  
林」條項과는 달리 「條約의 規定이 「伯林」에 関係되는 것 안 한,  
이 法은 效力を 発生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條約法 2條는  
말하자면 基本條約調印時에 있었던 兩側의 宣言에만 関係될 수 있  
는데, 그 宣言을 通해서 確定된 것은 다만, 7條에서 알려진 正常  
化合意를 「西伯林」으로 伸長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合意될 수  
있고 또 独逸聯邦共和国의 常駐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付의  
4大国條約과 一致되는 限度에서 「西伯林」의 利益을 代表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미 '伯林'의 代表는 条約上 그때 그때마다 独逸民主共和国의 同意에 依存하도록 하고 그 外에도 7条의 範圍內의 結果合意에 制限되도록 하므로서, '伯林'에 関한 憲法上의 同等化命令을 滿足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基本條約自体를 為해서는 '西伯林'은 独逸聯邦共和国에 依해서 代表되지 않습니다. 即 이것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關係의 基礎는 独逸民主共和国과 '西伯林'關係의 基礎와 全혀 다를수 있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의 同意下에 '西伯林'의 法的地位는 '自主的・政治的 単一体'로 표류하는 바 이 것은 바로 憲法의 命令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條約은 '西伯林'으로 伸張하는데 関한 声明도, 制限된 範圍內에서 規定에 따라 代表하는 境遇에 까지 独逸民主共和国과 '西伯林'政府間의 合意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限, 西独憲法에 어긋납니다. 이 一般條項은 西独憲法 32条 3項에 依해서 州에게 주어진 渉外關係에 関한 權限을 심히 초과하는 것이며, 또 '伯林'과 聯邦의 다른 州들과의 同等化를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라, 自主的, 政治的 単一体라는 特殊位置를 目標로 하는 것입니다.

이 憲法学의 인 帰結은 基本條約 9条에 依해서도 달라질 수 없을 것인데, 이 基本條約 9条는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 双方에 関係되는 双方間의 條約과 合意 및 双方에 関係되는 여러 나라

間의 國際條約과 合意 外에도 独逸聯邦共和國에게 "西伯林" 을 代  
表할 수 있는 部分의인 可能性만을 考慮, 自動의인 代表權을 주지  
않는 4 大國條約을 지키도록 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点에 있어서 基本條約의 違憲性 確認은, 基本條約 가운데 "安全  
및 地位에 関한 일" 이 取扱되지 않은 条項과 関聯이 됩니다.

3 大國은 條約上에 있어서 우선 "西伯林" 을 代表하는 것 全體를  
그들의 留保分野에 包含시키되, 安全 및 地位와 重要性이 適은 問  
題에 있어서는一般的으로 代理權을 独逸聯邦共和國에게 委任시키고  
있읍니다( 4 大國條約 附錄 1va, 2 号). 이 規定은 3 大國이 거기  
서 더 나아가 個別의인 境遇에, 말하자면 安全과 地位에 関한 問  
題에 있어서도 代表權을 特別히 委任하는 것을 排斥하는 것이 아  
닙니다. "3 大國의 権利와 義務가 侵害되지 않는다" 는 것을 條  
件으로 留保分野內에서 独逸聯邦共和國은 行動할 수가 있읍니다.  
비슷한 方法으로 独逸聯邦共和國은 그 内容이 狀况 独逸條約 2 条  
에 依해서 限界가 지어진 留保分野에 속하는 基本條約 및 그 이  
전의 東歐羅巴條約을 締結할 수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憲法學的으로 確어도 要望되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비록 聯合國의 権利義務 不可侵이라는 形式上의 法的 留保下일지라도,  
基本條約締結에 있어서도 "伯林" 을 代表할 수 있도록 3 大國側에

대해서 努力を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即 基本條約과 東歐羅巴條約에 있어서 聯合國의 権利를 侵害하지 않는다는 조건下에 實質의 独逸法의 規定을 定하였던 것과 비슷한 措處가 要望됩니다.

1973年 6月 2日付의 文書 (P15) 에서 表明한 西獨政府의 見解는 納得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表明된 西獨政府의 見解에 依하면, 「伯林」에 関係되는 問題에 对해서는 西獨憲法裁判所는 裁判權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알려진 바에 依하면, 憲法裁判所에 对해서도 適用될, 聯邦에 依한 「伯林」統治의 禁止는 다만 「伯林」의 権力機關의 行為를 再審하는 것, 即 「伯林」의 権限 있는 当該機關에 代身하여 政府(伯林)의 行為를 調整하는 것에 局限되는 것입니다. 「伯林」에 関係되는 独逸聯邦共和国의 國家機關의 行為에 대해서 判決을 내리며 또 独逸聯邦共和国政府가 憲法에 依해서 委任 받은 바 있는 「西伯林」을 代表할 義務를 履行하도록 調整함에 있어서, 西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裁判權이 排斥되는 것은 아닙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判事님들中에 質問 없으십니까? 브루멘비츠教授님께 몇 가지 더 質問해도 좋겠습니까?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잠시 休息을 取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이퍼트 副議長：

곧 休息으로 들어 갈 터인데요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나는 별씨 거의 3時間이나 演説을 하였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좋습니다. 그러면 休息後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休廷하겠습니다.

(15時 53分에서 16時 29分까지 休廷)

소이퍼트 副議長：

다시 始作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証拠申請에 関해서 몇 가지 質問이 더 있습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바잘만 局長님, 몇 가지 더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証拠申請中에서

1号를 볼 것 같으면, 基本條約의 準備와 締結에 關係되는 書類等을 提示하도록 命令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万若에 本 裁判部가, 이 書類들은 他人에게 送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内部的인 書類로서 西獨政府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正確하겠습니까?

바알만 局長

그렇습니다. 憲法裁判所判事任, 그것은 순수한 内部的인 書類로서, 비망록 程度에 지나지 않습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

내가 보기에는 申請人側에서 말하는 書類들은 西獨政府와 条約当事者인 相對方側의 어느 代表나 或은 중재자간, 또는 西獨政府와 其他 利害關係가 있는 外部機關間의 實質的인 文書內容을 内包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알만 局長 :

바르 (Bahr) 氏와 콜 (Kohl) 氏 間에 時日決定 等에 關해서 書信往来가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条約에 關해서, 協商過程이라든가 討論時에 있었든 声明 等에 關해서, 비망록 程度로 우리側이 一方的으로 作成해 놓은 内部的인 書類들인 것입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그와 같은 書信往来라면, 그 書信交換에서 要点이 되는 것은 節次 上의 問題나 表現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알만 局長：

바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書面協商은 없었고 바루 (Bahr) 氏와 콜 (Kohl) 氏間に 20回에 걸친 口頭協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関해 그 두분과 兩側 代表團間의 口頭討論을 根拠로 해서 協議가 進行되었습니다. 이것에 関해서 一方的인 内部的인 書類만 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大端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申請人側에게 하가지 묻겠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바이에른州政府는 現時點에서 바이에른州政府가 内容을 이미 알고 있는 그 會議錄의 内容을 口頭陳述을 通해 說明할 必要가 있다고 보거나, 또는 이 内容을 알고 있는 會議錄을 抜萃해서 가져오게 해야 滿足하시겠습니까?

裁判部는 그 會議錄을 保有하고 있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憲法裁判所判事 教授 가이거 博士：

브루멘비츠教授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이 더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自由를 牺牲시키는 統一과 独逸民主共和國体制의 実質的인 人情排斥을 말씀하시면서, 基本條約은 西獨憲法上 違憲이며, 특히 統一命令에 抵触된다고 하셨습니다. 基本條約 1條의 善良한 이웃關係에 関해서 言及된 것과 一致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네, 나는 이에 関해서 뱅그려教授님의 詳細한 說明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알고 계신 바와 같이 善良한 이웃關係를 所望하는 것은 西獨国会의 共同決議에서 부터 始作되었습니다. 그런데 貴下께서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즉 다시 말해서 善良한 이웃關係를 받아 드리는 것이 合憲이라고 본 이 共同決議가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東獨政權에 对해서 分明한 間隔을 두어야 될 義務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그러나 独逸聯邦共和国国会의 共同決議를 引用하여 본다면, 「独逸聯邦共和国 緊張緩和와 善良한 이웃의 原理를 独逸의 兩地域內의 人類 및 団体相互間의 関係에 全的으로 適用함을 原則으로 한다」고 分明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貴下께서는, 그 当時 바로 이 善良한 이웃關係가 憲法에 合致되는 것으로 받아 드린 것을 옳지 못하나고 하십니까?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나의 見解로서는 바이에른州政府의 代表가 이 자리에서……

차이 트러 博士：

잠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国会의 共同決議内에는 한면 또 4  
大國의 分明한 義務와 強化條約의 留保가 指摘되어 있습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그렇다면 더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貴下께서国会의 共同

決議와 憲法의 뜻에서 関係正常化를 説明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  
신 것으로 믿어지는데요.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本人은 이 자리에서 西獨憲法에 包含된 正常化規定을 全般的으로  
説明할 수도 있습니다. 本人의 생각으로서는, 西獨国会의 共同決議  
는 이곳에서 心理의 尺度가 아니 된다고 봅니다. 本人은 오로지  
西獨憲法만을 이 자리에서 基本으로 하겠습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論証을 提起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時間上의 壓力과 또 어떠한 政治的인 壓力下에서 이国会  
의 決議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本 法廷이 이 典型的인 政治的 行為를 判決의 尺度로 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西獨憲法上의 正常化規定에 있어서는 事實을  
規範에 調和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非合  
法的으로 이루어진 事實에 規範을 調和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規範分野에서 들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힘과 法의 問題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貴下에게 다만 周知시키고 싶은 것은 善良한 이웃關係의 判断에  
關한 共同決議가 憲法에 依해서 착안되고 또 이루어 졌을 때, 그  
것이, 貴下가 이 問題에 關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셨고 또 모순성이  
있다고 確認하신 것과 같이, 모순된다는 意見이거나 또는 모순된다

는 意見일 수도 있다는 点입니다.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矛盾性은 實際로 存在합니다. 그래서 이 共同決議는 바이에른自由州에서는 全的인 同意를 받고 있는 못합니다. 國家의 單一性을 떠난 独逸民主共和国과 善良한 이웃關係는 根本的으로 政權의 体制安定化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그렇다면 質問이 더 있습니다. 貴下께서는 条約 2條도 違憲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質問에 關해서는 어떻게 答弁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現在 두 나라는 國際聯合加入을 通해 國際聯合憲章에 따를 義務를 지고 있고 相互間의 関係의 土台를 그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그 問題는 마지막 質問의 問題點과 一致합니다. 바이에른自由州는, 이 条約의 一部 個別的인 条項들이 違憲이거나 또 違憲의 始發点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条約全体가 違憲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万若에 두개의 独逸國이 自主決定權을 公表하는데서 부터 이 条約

이 出發한다면, 다른 規定들과의 関聯性으로 보아 独逸에 있어서  
自主決定權의 實現化를 権利로서 許諾된다는 것을 가로 막는 結果  
가 됩니다.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中에는 많건 적건간에 拘束力이  
없는 政治的인 目標만이 言及되고 있읍니다. 나는 이 点에 있어  
서 西獨政府를 저절로 評価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客觀的  
으로 보건데, 國家間의 涉外的인 分野에 있어서 政治的인 目標라는  
것은 大概 많건 적건 間에 拘束力이 없는것 같이 보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브루맨비츠教授님, 나의 質問의 뜻은 이렇읍니다. 즉 貴下의 말씀  
을 따른다면, 独逸民主共和国도 同時에 加入한다는前提下에 独逸聯  
邦共和国이 이미 國際聯合에 加入하였고, 이에 따라서 國際聯合憲章  
上相互間의 義務나 또는 独逸民主共和国과의 関係에 있어서의 独  
逸聯邦共和国의 義務가 派生되니, 이미 이 加入이 違憲이라는 見解  
가 될수 있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

可能할지는 모르지마는, 万若에 本人이 國際機構加入이 그 機構構  
成員相互間의 存立關係에 繼続 아무런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見  
解를 피력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限度内에서는 西獨政府와 見解  
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大端히 感謝합니다.

디르네커 書記官 :

裁判長님, 잠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洞察하셔야 됩니다.

브루멘비츠博士께서는 두 나라間의 善良한 이웃關係에 関해서 法律的인, 專門的인 用語로서 大端히 깊이 있게 말씀하셨지마는, 所謂 이西獨国会의 決議 가운데는, 政治的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바와도 같이, 다만一般的으로, 「이웃정신에 立脚하여」라고 表現되어 있을 때를입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그러면, 브루멘비츠博士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本人이 貴下의 말씀을 理解한 바로서는 貴下의 말씀은, 独逸聯邦共和国이 「柏林」을 代表하는 것에 関한 協定은 施行面에 있어서 独逸民主共和国의 決定如何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柏林(西部)」에 関한 兩側의 이 声明으로부터 정말 그와 같은 것을 推論할 수 있겠습니까?

教授 브루멘비츠 博士 :

独逸聯邦共和国이 「柏林」을 代表하는 것은 特別히 合意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적어도 国家의 領域은 条

約의 領域과 同一하지 않습니다。理論上 國際法上에 있어서 国家의 領域과 条約의 效力發生地域은 区別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貴下께서는, 独逸聯邦共和國이 「柏林」을 代表하는 것은 特別히 合意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는, 그러나 문구상에는 「独逸民主共和國內에 있는 独逸聯邦共和國常駐代表는 1971年 9月 3日付의 4大国協定과 合致되는 範圍内에서 「柏林(西部)」의 利益을 代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教授 브루맨비츠 博士 :

우리에게 関聯이 되는 것은 条約, 即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規定인데, 如何한 範圍内에서 이곳 「柏林」이, 独逸聯邦共和國이 独逸民主共和國과 締結한 条約에 包含될 것이냐 하는 것은 第1項에 속합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現行条文 1項은, 条約과 規定들을 「柏林」으로 伸張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境遇에 따라서 合意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独逸聯邦共和國이 「西柏林」을 代表하는 것에 関해서는 第2項만이 関聯이 됩니다。

教授 布魯門貝茨 博士：

네, 그런데 저로서는……

索伊斐特 副議長：

第1項은 勿論 貴下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合意될 수 있다」  
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教授 布魯門貝茨 博士：

第1項에는, 条約과 그리고 第7條에 関한 附錄文書에 規定된 規定들  
을 「伯林」으로 伸張하는 것은 個別의 인境遇에 따라서 4大国條  
約 等과 合致되는範圍內에서 合意될 수 있다는, 合意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索伊斐特 副議長：

勿論입니다. 그러나 「伯林」을 代表하는데 関해서는 第2項만이  
關聯이 되며, 그 第2項에는 「代表할 것이다」라고 最終的으로 確  
定되어 입옵니다.

教授 布魯門貝茨 博士：

네, 그러나 本人이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理由는 다  
름이 아니라, 그 条項上에 陳情한 代表에 関한 言及은 없고, 다만  
利益에 関한 言及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소한

利益을 代表하는 것과 參된 代表間에는 큰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소이 퍼트 副議長 :

大端히 感謝합니다. ( 西獨政府의 代表들을 向해서 ) 차, 그러면 여러분側에서 弁論을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미 注文을 提出하셨습니다. 注文全体에 関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또는 집약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判断에 맡기겠습니다.

바일만 局長 :

裁判長님, 이미 提出된 事實을 參酌하여 좀 要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裁判長님, 判事여러분 !

이제 브루멘비츠教授任의 詳細한 陳述을 根拠로 하여 裁判段階가 한層 더 進行되었지마는, 本人은 몇 가지 先決問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裁判狀況에서 由来되는 것이며, 이 裁判이 独逸聯邦共和国에게 對해서 当然히 하나의 큰 意義를 가지며, 또 本 憲法裁判所에게는 이 裁判으로 부터 하나의 큰 責任이 由来되기 때문에, 이것은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暫定的인 措處 宣布問題에 對한 過去의 判決은, 政治的인 分野에

있어서도 法的으로 納得이 가는 判決이 可能하다는 것을 立証하였  
읍니다. 그래서 本人은 바이에른州政府의 批判과 関聯하여 이에  
關해서 말을 하여야 될 것으로 믿읍니다.

重要한 問題의 裁判에 있어서는, 本裁判部의 質問도 그와 같은 것  
을 分明히 하였듯이 協議의 意味의 本来의 憲法学의 考察外에,  
더 広範圍한 檢討를 必要로 합니다. 即 基本條約의 全般的인 法  
的・政治的 背景, 1949年以來에 있었든 憲法規定의 變遷過程, 西獨  
憲法의 制定過程, 그리고 東歐羅巴條約 및 基本條約의 議會에서의  
政治的 取扱 等도 檢討해 보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것들은 再  
検查問題에 있어서 큰 權限을 가지며 또 이것을 土台로 하여 憲  
法의 發展過程에 決定的인 役割을 할, 憲法裁判所의 任務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本来의 問題에 關해서 法的인 陳述을 하기 前에  
이것에 關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基本條約은 이미 오늘날 東歐羅巴條約, '柏林'에 關한 4大国合意  
및 独逸國內의 往來條約 等을 通해 우리의 平和 및 正常化政策의  
表現으로서 하나의 大端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그런 條約中의 一  
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基本條約은 더 나아가 이미 本質의  
으로 緊張緩和政策의 한 部분이 되었으며, 또 오늘날 이미 우리의  
西方側 友邦에 對해서도 独逸聯邦共和國의 國際的인 신의를 為해

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独逸의 두 부분을 漸次 더 隔理시키고 또 境界를 그으므로서 国家의 統一을 再現시키려는 理念을 全的으로 固守하는데서 形成된, 지난 25年間 独逸에서의 變遷過程만을 오로지 参酌하여, 基本條約은 輿論을 理解하는 쪽으로 強力히 밀고 나갔습니다. 基本條約은 勿論 지난번 独逸聯邦共和國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한 問題였습니다. 最近에 있었든 바로 比重이 큰 野黨政治人們의 여러 相異한 声明을 根拠로 하거나 또는 西獨国会와 參議院에서의 結論을 根拠로 하건데,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國內에서 앞으로의 政治的 發展을 為한, 西方側을 한덩어리로 묶었던 境遇에 있어서와 같이, 政治的 힘을 分裂시키는 것이 아니라, 基本條約을 通해 定해진 그 目標와 結付시키는 土台로서 内部的으로 오늘날 받아 드려지고 있음이 分明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基本條約自体는 무엇보다도 政府高位層에 있어서, 그리고 또 兩側代表團의 細部的인 協商을 土台로 한 大端히 오랜 努力의 結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基本條約은, 유감스럽게도 자주 잊혀지고 있는 일이지마는, 우리의 同盟國과의 하나의 大端히 세부적인 調整節次의 所產인 것입니다. 큰 블럭들의 政治의 한部分으로서 이 基本條約은, 欧羅巴 심장부에 있어서의 政治的 狀態와 関聯하여 世界政治上 独逸問題가 自然的으로 가지고 있는 意義를 參照하건데, 國際的인 變遷過程에서 이미 오늘날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自身에 대해서도 基本條約은, 独逸의 두部分의 組織的인 公權을 이룩하고, 国民의 単一性을 생기있게 保存하며, 独逸聯邦共和国을 西方側의 緊張緩和政策에 参与시키고, 独逸民主共和国에 있는 市民들을 위한 具體的이고도 本質的인 緩和를 達成하는 外에도, 國際機構에 있어서 두 独逸國家의 協力を 可能하게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重要한 다음 措處의 前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統一에 関한 問題는 保留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어진 狀況下에서, 비록 統一이 아마도 欧羅巴의 事情이 變更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마는, 事前에 統一에 이르는 길을 편편히 밟을 수 있는 政治的 可能性 또한 保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基本條約은 우리의 憲法規定上의 基本的인 目的과 基本原則과 一致된다고,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은 確信하는 바이며, 本人은 이것을 바이에른州政府代表의 言及과 関聯하여 이 자리에서 힘주어 다시 한번 強調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憲法上으로 要望되는 것을 明確히 保障하여야 된다는 것이 重要的政治의 관점外에, 基本條約의 準備過程이나 그 協商過程에 까지 언제나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의 特別히 重要的 관심사였습니다. 새로운 政策의 導入이 그렇게도 詳細하게 憲法이나 國際法 等 独立性을

면 学問分野에서 事前準備가 된 것은 아마도 드문일이 었으며, 条約과 関聯된 憲法学의 研究가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独逸聯邦共和国内에서 議会의 討論期間동안 크게 行하거친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연한 일이決코 아닙니다. 이것은 심히 緊急한 必要에 依한 것이며, 公영상의 要求와 一致하는 것입니다. 独逸政治에 对한 国内外에서의 信賴가 如何한 境遇에도 動搖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 이 基本條約이 모스크바條約과 와르샤와條約에 関한 알려진 바와 같은 討論을 參照하건데 緊急한 것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9名으로構成된 独逸聯邦共和国의 協商代表團에 만해도 職業上 이 問題하고는 상관도 없는 3名의 憲法專門家가参与하였다는 것을 周知시키고 싶습니다. 特히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国政府내의 2개의 課가 上설기관으로서 協商過程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며, 또 두名의 長官이 直接 責任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그렇게 하므로서, 바로 이와 같은 憲法裁判의 方法을 通한 條約의 憲法学的 再檢討가 가져올지도 모를 広範한 結果를 参酌하여, 이미 本来 모든 保障策을 講究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本人의 생각으로서는, 이미 그렇게 함으로서 広範囲한 権限에 依해서 이루어질 憲法裁判의 結果가 部分的으로 成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같이 広範囲한 憲法上의 再検討의 可能性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外國의 境遇 広範囲한 憲法裁判이可能한 나라에 있어서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重要한 条約의 境遇에는 政治問題로서 取扱하여 처음부터 憲法再検討委員會(憲法委員會)로 회부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制度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制度를 欲迎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独逸聯邦共和國에는 그와는 対照的으로, 憲法裁判所가 憲法制定者에 依해서 심사숙고된 事由를 根拠로 하여 그와 같은 条約의 境遇에도 하나의 法的으로 重要한 共同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前後關係를 살펴보건대, 이 憲法裁判所의 広範囲한 権限으로 因해서, 國際政治問題에 있어서, 当該 國家機關이 그들의 憲法上의 任務를 履行할 수 있도록 또한 保障되고 있는 것입니다. 對外關係를 恒常觀察해야 되는 것은勿論 政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条約協商에서부터 調印하여 議會로 옮기기 까지에 있어서도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주도권을 行使합니다. 그것으로부터 對外關係를 考察함에 있어서 政府와 議會의 行為能力에 関한 事後法的調整의 限界가 結局 由來하는데, 여기에서는 民主政府体制의 固定化라는 관점에서, 그 政府를 保護하여야 된다는 것이 問題가 됩니다.

憲法裁判所의 広範囲한 権限으로 보아, 憲法裁判所는 가장 最上の

法理論을 土台로 하여 우리의 民主社会秩序를 完成하는 裁判을 最終的으로 行하며, 또 그렇게 하므로서 憲法分野에서 政治的으로 일어난 일의 역학관계에 直接 參与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憲法裁判所는 判決을 함에 있어서, 法院만으로 하여금 判決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法的 規範의 拘束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判決을 살펴 보면 대, 憲法裁判所는 순수한 政治的인 紛爭을 解決하는 것은 憲法裁判所의 任務가 아니라는 것을 恒常 認定해 왔습니다. 憲法裁判所는 憲法上의 分明한 規範에 의해서 資格이 認定되고 있으며, 憲法裁判所가 再檢討할 國家의 行為를 순전히 政治的으로 價値評価 하는 것은 憲法裁判所에게 許容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判決의 政治的인 影響도 考慮하고 또 憲法上의 法規를 政治的인 現實과 意義있게 関聯시키는 것은 憲法裁判所의 課題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서 憲法裁判所는 또한 恒常 그의 広範圍한 任務와 다른 憲法機關의 機能尊重의 必要性 사이에서 交替作用을 하여 왔으며, 또 政治와 法 사이의 恒常 流動的인 境界를 憲法裁判上의 不可欠한 기능을 為해서 利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規範調整過程上에서 特殊性들이 由來합니다. 왜냐하면 이 訴訟上에 있어서 憲法裁判所는 말하자면 어떤 当事者들의 주관적인 權利나 또는 實質의인 利益에 關해서 判決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全的으로 訴訟의 主人 即 憲法에 따른 秩序의 唯一

한 監視者 役割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亦是 巴이에른州政府에 依해서 提起된 憲法的인 의구심도 憲法裁判所에 对해서 確實히 重要한 것이나, 그러나 結局은 判決의 範圍内에 있어서의 単純한 材料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첫째로 条約에 関해서 直接 責任을 지는 憲法機關들의 協議나 숙고가 問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重要한 材料는 아닙니다. 對外 및 独逸国内政策의 責任은 条約에 関한 議決權과 마찬가지로 全的으로 聯邦의 憲法機關에게 있기 때문에 巴이에른州政府 申請을 通해 表明된 聯邦의 한 州의 政府見解는 또한 過大評価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対照的으로 오히려 決定的으로 重要性을 띠는 것은, 그 申請이 憲法問題에 对한 더 깊은 討論을 根拠로 하여 国会의 3分之2 以上의 多数와 다른 独逸聯邦共和国의 다른 州들과 共同으로 提起되지 않았다는 点입니다. 本人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考察되지 않으면 아니될 政治的인 憲法上의 現實에 속하는 事情을 염불 수가 있습니다.

万若에 独逸聯邦共和国의 一個 州가 가지고 있는 申請權이 条約의 政治的 完成에 对한 參与權으로서 理解되거나 또는 그 方向으로 잘못 기능을 發揮한다면, 이것은 根本的으로 그와 같은 權利를 滥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本件의 境遇, 그렇지 않다는 印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本人은 이것을 分明히 말하는 바 입니다. 모든 다른 憲法機關과 国民의 多数에 依해서 이루어진 政治的인

진화를 이와 같은 方法으로 抑制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아스  
러운企圖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申請의 内  
容과도 같이, 憲法裁判所를 除外한 모든 聯邦의 다른 憲法機關에게  
对해서 基本的인 憲法理論을 깨트렸다고 象征하는 그와 같은 申請  
은, 本人의 意見으로서는 오히려 自己自身側에서 먼저 憲法規範을  
尺度로 하여 身分을 證明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하나의 憲法上의  
事實이라고 봅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外形上으로는 基本條約의 無效宣言을 主張하고 있  
지마는, 實은 이와 같은 規範調整次를 通해서는 許容될 수 없는  
그들의 本来의 意圖는,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바이에른州政府가  
企圖하는 것은 이 訴訟上에 있어서 좌절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條約當事者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그 条約을 通해 自身들의 目標를  
達成하도록 하며 또 한편 그 条約當事者들을 本来 希望한 程度  
以上으로는 拘束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大端히 重要的  
國際法上의 条約을 解釈하는데 對한, 바로 이 憲法裁判所에 依해서  
確立된 尺度를 参酌하여, 그와 같은企圖는 좌절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모호하게 表現되었다고 생각되는 解釈方法은 度外視 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本人이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과 說明을 觀  
察해 보건대 그 論証의 大部分이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음  
니다.

特定한 사람들만의 解釈을 最高法院의 判決을 通해 確定하는 것,  
특히 独逸聯邦政府와 条約에 관여한 議會內 多數派의 權威 있는 說  
明과 背馳되는 그려한 解釈은 이에 따라서 不可能 합니다.  
그렇지 않는 境遇에는 条約의 成立과 議會의 同意에 對해서 責任  
을 지는 그 憲法機關들의 任務를 侵害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解釈上에 있어서는, 本 基本條約에서는 서로 社会秩序가  
다르며 過去에는 서로 繁張狀態下에 있었던, 두 条約当事者의, 다른  
條約과는 比較할 수 없는 高度의 政治的인 道具가 要点이 된다는  
것이 參照되어야 됩니다. 社会秩序가 서로 다른 두 国家사이에 이  
와 같은 種類의 条約은 거의 없다고 本人은 確信 합니다. 兩側  
은 特히 独逸의 政治的 状況과 国民의 单一性 問題에 있어서 決  
코 一致되지 않는 理念과 政治的 目標設定을 알 수 있을 程度로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은 高度의 政治的 条約에 있어서는  
條約目的의 設定이 經驗한 바와 같이 적지 아니 어려운 것 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独逸民主共和国의 目標設定이 標準的으로 基礎하고  
있는 解釈을 基礎로 하여 憲法上의 再檢討를 하는 것은 通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그들의 政治的 見解에 依하여 본다면, 基本條約을  
그들의 国家的인 自主性의 確認이라고 評価하며 現狀維持의 保障이  
라고 까지 보고 있읍니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独逸問題 解決을

為한 새로운 길도 또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個의 独逸国家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부자연성을 解決하고 共存方向으로 가는正常化節次를 밟는다는 目的은 서로 一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条約當事者들을 拘束하는 모든 政治的 價值評價와 目的觀念이基本條約의 解釈을 為해서 重要한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것은 첫째로 条約當事者들이 一致하여 条約을 가지고서 뒤쫓고 있고 또 그 条約當事者들이 条約文句上 表現한 그 目的이 重要한 것입니다. 勿論 双方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社會秩序 가운데 存在하는고로 서로 差異가 나는 政治的인 目的과 条約 자체内에 表示되지 않은 政治的 目的을 가지고 있습니다. 各當事者가,始作한 正常化節次의 끝에 가서 達成되기를 希望하는 目的觀念은그러므로 直接的인 条約의 対象이 아닙니다. 本人은 그 限度内에서 解釈될 수 있는 対象이 아니라고 보지마는, 그것은 拘束力있는解釈을 通해서一方을 쓸어트릴 수도 없읍니다. 많은 衝突要素가쌓여있는 緊張關係를 解除하려고 尋圖하는 바로 시초에는, 進行途中에 그때 達成할 수 없었던 解決이 아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希望아래, 特定한 法的問題를 파시하지 않는 것이 意義있는 일입니다. 基本條約은 앞으로 展開될 過程을 가로채어서는 아니 됩니다. 基本條約은 오로지 오래 걸릴 正常化節次를 위한 道具입니다. 即 이제 始作段階에 있는 道具이지, 結末段階에 있는 道具가 아닙니다.

反對로 条約當事者들은 条約에 直接規定되어 있는 以上으로 法의拘

束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基本條約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도 誤解할 수 없도록 이루어진 한,一方이 条約으로 因해 어떤 地位를 拘束力 있는 方法으로 抛棄하였다는 것을前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条約은 혹시 独逸帝國의 法的存續의 法的判断이나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法上의 認定問題에 関係되기 도 합니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이미 열론 보기에 부정적인 答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双方에 依해서 지금까지 主張된, 全的으로 基本的이며, 法의 인地位에 関한 問題는 그렇지만 아마도 分明한 確定을 必要로 합니다. 条約에 依해서始作된 正常化節次에 있어서는, 即 戰爭後의 가장複雜한 世界的인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및 理念上의 情勢等에 끼어있고 또 欧羅巴에 있어서의 全體의 東西關係에 對한 影響의 結果를 隨伴하는 그러한 条約에 있어서는双方의 모든 事實上의 또는 法의 인地位가 協商의 價值를 지니는 것이며, 아마 새겨서 말하건데, 法의 인限界를 지을 價值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条約에 있어서는, 万若에 一方이 相對方에 對해서 特定한 解決을 事後에 떠맡기려고企図하는 境遇에는, 하나의 敏感하고도 狀況에 따라서는 重大한 損害까지도 가져올 混亂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条約內容의 改正을 가져올, 条約의 憲法에 따른 解決의 必要性은考慮

될 수 없다는 見解이고, 또 그와 같은 必要性은 着手한 緊張緩和  
節次에 對한 重大한 影響의 結果를 隨伴할 것이라는 見解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暫定의in 措處에 関한 첫번째 決定을 通해  
피력한 本裁判部의 法的 見解를 指摘하고 싶습니다.

可能한 合憲의in 解釈에 関한 바이에른州政府의 見解와 마찬가지로,  
獨逸民主共和国은 合憲性이 결여될 때에는 새로운 協商에 들어가리  
라는 意見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와 같이  
조심껏 準備되었으며 數個月間이나 折衝을 하였던 條約의 境遇에는  
特別히 複雜한 世界政治의in 独逸国内의 狀態를 考慮해 보면은 全  
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두 独逸  
国家 사이에 條約이 없었을 때와 같은 以前狀態가 再現될 것입니다.  
即 基本條約을 通해서 이룩한 人間의in 緩和가 白紙化 될 것  
이며, 우리의 國際聯合加入이 危殆로위지거나 不可能해질 것이며, 独  
逸聯邦共和国과 東歐羅巴間의 條約網 가운데 重要한 部分의 하나에  
우리의 対外의in 政治關係上 大端히 危險한 구멍을 開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西方側의 緊張緩和政策面에 있어서도 独逸聯邦共和国은  
核心役割을 못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国政府가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法의으로 抹消시켜야 될  
그와 같은 広範囲하게 影響을 끼치는 일을 參酌하여 憲法裁判所도  
判例上에 있어서 恒常, 條約의 境遇에 있어서와 같은 対外의in 高

度의 政治的 分野에 있어서는 特殊한 尺度가 適用된다는 것을 恒常 認定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国家사이의 國際的인 共同作業에 있어서는 自國의 생각을 一方的으로 貫徹할 수 있는 나라는 없고, 同盟国이나 다른나라들의 意見을 参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事実에 順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州政府의 意見으로서는, 一般的인 國際法上의 特定한 理論을 適用하는 것이 때로는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을 本人은 이 자리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本裁判部가 이미 過去의 判例에서 確認한것 처럼, 司法上의 자체가 이 分野에서 正當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憲法裁判所가 過去의 判例를 通해 一般的으로 有效한 形態로 發展 시킬 一連의 解釈原理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憲法裁判所는 자르 (Saar) 判決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는 國際法 上의 条約에 関한 解釈原則外에도, 条約이 成熟하게된 政治的 出發點과, 그 条約이 이룩하거나 変更시키고자企図하는 政治的 現實도 參酌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認定하였습니다. 本人은, 브르 맨비츠教授님께서 国家를 現實에 適應시켜서는 아니되고 反對로 現實을 부연하는 것이 任務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커다란 興味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特히 共產黨裁判에서는, 政治機關의 措處는 그 措處로 因해서 統一

에 関한 憲法上의 命令이 顯著히 侵害되었고, 또 그 措處가 아무 런 관점에서도 合理化 되지 않을 때에만 違憲으로 处理될 수 있다고 說明되었습니다. 이 顯著할 때에 한한다는 主義는 直接 責任을 지는 國家機關의 行為能力을 參照해 보면 國家間의 對外政治分野에서 하나의 커다란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統一命令과 関聯하여 憲法裁判所는 共產黨裁判을 通해 그 外에도, 独逸聯邦共和国이 어느 方法을 統一成就上, 政治的으로 正當하고 合目的이라고 보느냐 하는 判断은, 그 政治的 行為를 하는 独逸聯邦共和国의 憲法機關에게 委任되어 있다고 하므로서, 審查熟考한 尺度를 確立하였습니다. 여전히 法的으로 重要한 判決이지마는 統一을 法的으로 妨害하거나 또는 實質的으로 不可能하게 하는 措處만이 排除되었습니다.

兵役義務法에 関한 判決에서도 統一과 関聯하여, 立法機關의 政治的 재량의 範囲가 크다는 것을 또 다시 分明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憲法上의 体制 範囲内에서 '政治問題主義'를 構成하는 몇個의 要素를 派生시키는, 이 恒常 通用되며 또 中心이 되는 判例를 通해서, 憲法上의 分明한 規範을 証明하는데 関한 裁判, 即 檢討할 條約의 分明한 價值評価에 関한 裁判이 커다란 意義를 가진다는 것이 分明해 집니다. 바로 言及한 判例들은 特히 對外的인

措處를 裁判을 通해 再檢討할 資格에 對한 分明한 尺度를 提供하고, 또 行為를 하는 憲法機關과 監督을 하는 憲法機關 사이의 責任領域을 分明히 区分하는 것 입니다.

이 基本原則들을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에 適用하면,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의 意見으로서는 이미 그 理論的 根拠을 參照하여 보면 처음부터 大端히 커다란 의구심이 갑니다.

의례히 国家사이의 重要한 國際協議를 하기 前에 그와 같은 協商을 하는 동안에 権限을 가진 該當國家機關은 該當憲法上의 問題를 細心히 檢討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点도 하나의 国家機關이 바이에른州政府가 한 것과 같은 申請을 할 때에 憲法上의 再檢討에 對한 嚴格한前提를 提示하는 憲法裁判所의 判例上에 있어서의 上述한 基本原則과 마찬가지로 參酌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바이에른州政府가 한 市民의 権利를 배앗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對內外의인 政治分野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와 関聯되는 国家의 裁判에 있어서 처음부터 期待되는 것은 그 申請이 独逸聯邦共和国政府와 議會가 審查熟考한 것을 어떤 方法으로든지 認識하고 또 憲法과의 抵触이 진지하게 考慮된다는 說得力を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国家間의 國際法上의 措處를 再檢討함에 있어서는 高度의 正義가 要求되고 자명성이 事後檢討를 為한 基本前提라는 것이, 申請 가운데에 識別될 程度로 參酌되어야 합니다.

万若에 바이에른州政府가 내놓은 것 같은申請이 이와 같은 国家의 裁判에서 左右間 갖추어야 될, 絶對 不可欠한 条件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오히려 더 憲法을 주시함에 있어서 政府 및 立法府에 依해서 준수된 細心性이 立証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憲法上으로 熟考한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 憲法裁判所의 現在까지의 判例의 土台위에서 独立된 学問分野의 憲法專門家들에 依한 科学的인 檢討를 根拠로 하여 確実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면, 申請은 憲法裁判所를 通해 行하여질 事実檢討에 내놓을 要求를 滿足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申請은 그와 같은 境遇 무엇보다도 分明히 理論的인 뒷 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議會의 討議期間中과 마찬가지로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크리래」 教授님과 辩護士 「래버랜즈」 博士님의 說明을 通해 본 法廷에게 對해서 合당한 立証을 할것 입니다.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은 個別的인 問責點上에 있어서 다음 事由로 因해서 業却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分明히 할 것인 바, 그 事由는 다음과 같읍니다.

1. 바이에른州政府는 그들의 준수한 政治的인 생각을 憲法과 결부시키고 있읍니다. 憲法을 잘못 解釈하거나, 또는 拡大解釈을 하는 그와 같은 평계로 삼는 規範의 태두리로 부터 많은 의구심이 나옵니다.

2.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을 解釈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政治的価値評価를 甚히 一方의인 方法으로 하고 있습니다. 憲法裁判所가 判決을 해서도 아니 되고 基礎가 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代替할 수 없는 価値評価는 하나의 憲法問題로 通합니다. 그런데 이 憲法問題는 勿論 純理論의이고 學問의입니다. 왜냐하면 基本條約이 議會에 依해서 通過된 것 처럼, 바이에른州政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바이에른州政府는 政治의인 出發狀況을 全히 度外視 함으로서, 現實에 背馳되게도, 더 힘주어 協商하였다면 政治의으로 더 有利한 規定을 達成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合意를 全히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印象을 불러 이르키고 있습니다.

4.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을 가지고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目的과 一致되게 行한 意図를 條約의 分明한 内容에 어긋나지도 처음부터 否認하였습니다.

바이에른州政府側의 主張이 理論의으로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은 特히 천신부호로서 使用한 表現인 "分裂條約" 이라는 데서 立証됩니다. 本人은, 이 表現이 오늘 있었던 바이에른州政府의 말 가운데에서 別로 많이 反復되지 않은 것을 欲望합니다. 그러나 이 点에 関한 限 바이에른州政府의 見解는 여전하다고 推定이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大端히 간단히 부정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  
다.

1. 議會의 討論結果에 依하건데、理解하기 困難한 이 價值評価를  
憲法上 正當하다고 認定하도록 가장하기 為해서，바이에른州政府는  
무엇보다도 独逸帝國의 領域위에 다른 하나의 独逸國家를 받아드리  
는 것이 独逸聯邦共和國憲法에 依해서 要求되는 國家의 单一性과  
相衝된다는 憲法規定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独逸聯邦  
共和國은 独逸民主共和國의 領域에도 拡大되며，独逸聯邦共和國의 統  
治權을 그 地域에서 다만 實際的으로 行使할 수 없을 뿐이라는，  
独逸의 法的地位에 関한 法理論이 基礎가 되어 있으나，이것은 分  
明히 独逸聯邦共和國憲法과 合致되지 않는 理論이라는 것을 憲法裁  
判所에 對해서 分明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標準이 되는 法的土台가 共產黨裁判에서 解明되었듯이 誤認되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 判決은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으로 부터 모  
든 政治的 國家機關에 對해서 全力を 다하여 独逸의 单一性을 達  
成하고자 努力할 義務를 推論하였으며 또 統一을 法的으로 저해하  
거나 또는 實際로 不可能하게 하는 措處만이 違憲이라고 判示하였  
기 때문입니다. 分明히 말씀 드리건데，바이에른州政府는 이 分明  
한 判決을，統一委任과 그 自身이 가정하는 独逸의 单一性 保障에  
關한 法的命令을 直接 결부 시킴으로서，우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에 따라 独立의 인

두 公言間에는 大端히 큰 法的인 差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統一命令과는 対照의으로 保障委任은 具体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法規를 表現하는 것이 아니며, 左右間 바이에른州政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範圍內의 表現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保障命令에 있어서는 憲法的인 위계에 있는 政治的인 目的觀念이 要点이 되는 것입니다. 国民과 國家의 単一性은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을 制定할 때는 保障할 때는 保障할 수 있는 狀態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統一命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外에도 主張한 바 있는 政治的 狀態를 率直하게 分明히 해주는 憲法前文 또한 다른고, 言及한 바와 같이 統一委任이란 法的으로 全히 理解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이미 憲法上 合당하지 않은 基本的인 생각外에도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의 解狀을 옳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그 解狀에 따르면 基本條約은 独逸帝國은 消滅되었으며 独逸帝國의 領土위에는 두개의 独立된 國家가 새롭게 成立되었다는 独逸民主共和国이 主張하는 理論의 結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基本條約을 살펴보는 사람은 그 條約上에는 그와 같은 方向의 規定이 없다는에서 바이에른州政府의 主張에 경악을 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條約上에는 그와 같은 面에 関한 조그마한 根拠도 없읍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 根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基本條約은 두 개의 独逸國家와 存統하고 있는 独逸帝國間의 関係를 完全히 整理

하는데 그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独逸에 对한 強化條約이 締結될 때 까지, 같이 뭉치는 方向으로 共存하도록 하는데 그目的이 있기 때문인것 입니다. 基本條約은 그外에도 두独逸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라는 基本原則과도 合致되는 바, 이 点에 대해서는 詳細한 說明이 더 있을 것 입니다.

그外에도 條約當事者들은 独逸帝國이 存続하느냐 또는 消滅되었느냐 하는데 関해서는 規定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問題는 独逸파의 強化條約締結時까지 繼續된 4大國의 責任範囲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始終一貫하여 基本條約은 独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上으로 承認하는 것도 内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이에른州政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同一說"에 関한 課題나 또는 "縮小國家論"의 認定도 基本條約의 対象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基本條約上에서는 學術的인 理論은 取扱되지 아니 합니다. 거기에서 는, 條約上에 規定될 수는 없고 다만前提가 되는, 独逸聯邦共和國의 憲法上 및 政治的인 自己理解에 関한 問題가 要点이 됩니다. 그外에도 勿論 独逸聯邦共和國憲法으로 부터 独逸帝國파의 同一性에 대한 憲法上의 義務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特히 独逸民主共和國의 国家性을 認定하지 않는 方向에서 그와 같은 것을 찾을 수는 없읍니다. 또한 憲法裁判所도 여러가지 判例中에 있어서, "同一性"과一致되는 것은 아니나, 同一性의 概念에 대해서 이전에 學問上에서 때때로 主張되었던 意義를 賦与하지는 않았고, 特히 교황청과의 條約에 関한 裁判을 通해 全的으로 結論 짓기를, 独逸聯邦共和國은 独逸帝國의 條約上 및 그 이외의 権利와 義務를 繼承한다고

하였읍니다. 말하자면 憲法裁判所는 権利의 主体面에 있어서同一性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統治權이나 領域面에 있어서同一性을 말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独逸聯邦共和國憲法은, 独逸聯邦共和國에 依해서 이루어진 國家의 秩序는 帝國領土의 一部分에 局限된다고 明示하고 있읍니다.

3. 바이에른州政府는 分裂條約이라는 論難이 되고 있는 言及外에도 더 나아가, 独逸民主共和國은 時間이 흐름에 따라서 確固한 支配体制를 가진 古有의 國家性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는 政治的인 出發點을 誤認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事實입니다. 基本條約은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特히 独逸에는 서로 外國이 아닌 두個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方向에서, 正常化하려는 利害關係上必要한 結論을 내립니다.

國家의 統一을 為한 서로 一致되는 公言을 얻는 것이 비록 이루 어지지 않았으면서, 独逸問題는 말하자면 保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基本條約이 서로 다른 理念 블럭에 속하는 같은 國民의 国家들 사이에 하나의 土台를 세우려고企図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可能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읍니다. 基本條約의 合憲性에 関해서 決定的 役割을 하는 것이, 條約相對方을 独逸帝國의 存続에 関한 分明한 宣言과 統一問題 및 國民의 単一性 等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또는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브루맨비츠教授님의 意見은 다른 것 같지마는, 独逸民主共和国의 条約上의 行動을 独逸聯邦共和国憲法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 오로지 独逸聯邦共和国自身의 当該國家機關의 行動만이 独逸聯邦共和国憲法으로 測定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独逸聯邦共和国의 國家機關들은, 平和와 自由를 바탕으로 한 統一政策은 基本條約과 合致된다는 것을 必要한 方法으로 保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由來되는 것은, 바이에른州政府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基本目的과 合致되는 限度内에서 基本條約을 가지고서 遂行한 것을 그 條約의 分明한 内容과는 어긋나게도 否認을 한다는 것입니다. 基本條約은, 正常化政策, 即 共存을 為한 政策을 遂行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두개 独逸国家와 人類의 繼続的인 分裂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統一에 関해서 말을 한다면, 첫째로는 繼續的인 分裂을 防止하고, 또 人類의 共同成長의 可能性을 이룩할 것이 要望됩니다. 비록 分明히 그려하기 때문에 独逸民主共和国은 反對로 輿論上 그들의 政治的 異議를 提起할지라도, 그와 같은 方法으로 憲法과의 合憲性이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을 通해서 確實히 保障되어 있는, 平和와 自由를 基本으로 한 政策, 또한 長期間에 걸쳐서 可能해질 것 입니다.

이 統一이라는 核心問題에 있어서는 어느 때를 莫論하고 独逸聯邦共和国의 政治團体間에 意見差異가 없었으며 또 있어서도 아니되므

로, 바이에른州政府 또한 基本條約을 '分裂條約'이라고 評價하지 않기를 期待하면서 本人의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統一에 이르는 方法에 関해서는 分明히 意見差異가 있었으며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問題가 우리에게 그렇게 重要한限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憲法上의 問題가 아니라, 하나의 순수한 政治問題인 것입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感謝합니다. 바알만氏

質問 또 없음니까?

반트 憲法裁判所 判事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条約과 그 添加物에 関해서 独逸聯邦共和国政府에는 다만 内部的인 書類들만이 있을 뿐이지, 그 以外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基本條約의 協商過程은 우리의 同盟国들과의 緊張된 調整節次를 걸쳤다고 하셨습니다. 本人이 알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口頭로만 行하여 졌습니까?

바알만 局長 :

그것에 関해서 正確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分明히 書信交換이 있기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本人이 가이거博士님

의 말씀을 理解한 바로서는, 要点이 되는 것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의 代表團間의 協商이 .....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本人이 알고 싶은 것은, 다만 内部的  
인 메모만이 있느냐, 또는 푸 条約相對方 하고만은 아니드라도, 말  
하자면 第3者하고라도 어떤 種類의 書信交換이 있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바알만 局長 :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協商이 繼續되는 全体期間동안  
에 걸쳐서 이 問題를 專担하여 調整하기 為해서 同盟国과 우리側  
間에 常駐作業班이 하나 構成되었 있다는 것입니다. 그 問題에 関해  
서 文書나 書信交換 같은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해 볼 수 없읍니  
다. 遺憾스럽게도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本人  
自身이 이 種類의 記錄文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上  
直接 알 수가 없읍니다.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

혹시 貴下께서는 이와 같은 点에 関해서 어떻게.....

소이 퍼트 副議長 :

그런데, 이 証拠申請에서 말하는 条約의 準備나 締結에 関한 書類等은 무엇을 뜻합인지, 解明될 수만 있다면 좀 正確히 規定지어 져야 되겠습니다. 勿論 그렇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外交上의 折衝이란 近來에 와서 보면 王狀 書面으로도 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標準이 되는 것은 条約의 解釈上 重要한 書類, 即 条約当事者와의 関係와 条約相對方에 對한 条約의 發效 등에 意義가 있는 書類 等이겠지요.

바일만 局長 :

裁判長님, 저의 答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로서는 더 보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調整은 普通 同盟國이나 友邦하고 重要한 일을 할 때와 같은 方式이 었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勿論 近來에 全體의in 条約이나 外交政策을 準備하거나 誓言하는데 使用된 그런 書類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일만 局長 :

法的으로 어떤 可能한 解釈上의 価値를 갖는 書類는 分明히 가지 고 있지 않습니다. 그 協商은 우리의 政策을 우리의 同盟國들의 政策과 調整하는 協商이었습니다. 그것은 同盟政策에 関한 것이었습니다. 基本條約成立과 関係가 있는 政策이 아닙니다.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

本人을 誤解하지 마십시오, 메모의 範囲를 넘는 書類로서 그 条約 文書에 合綴되지 않은 書類가 있느냐, 基本條約과 関係가 있는 第 3者와의 関係나 또는 陳述을 對象으로 하는 書類가 있느냐 하는 것을 分明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알만 局長 :

解釈上의 材料가 될 수 있는 것이 全혀 아닙니다.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

알고 있습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中斷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独逸聯邦共和国의弁論을 繼續하기 前에 우선 다른 質問을 더 하기로 하지요.

반트 憲法裁判所判事 :

質問이 더 없읍니다.

소이퍼트 副議長 :

그러면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의弁論을 繼續하기로 하겠습니다. 차,

그러면 크리래 教授님 !

教授 크리래 博士 :

判事여러분 ! 本人은 여러분들에게 提出한 陳述書를 크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部分은 口頭訊問時에 參照해 주시기를 託 드립니다.

基本條約의 憲法上의 判斷은 무엇보다도 이 条約의 基本原則 및 目的을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原則 및 目的과 比較하여 볼 것을 必要로 합니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憲法의 個別的인 条項만을 考慮할 것이 아니라, 憲法制定者의 憲法以前의 全體的인 形상을 構成하는, 憲法과 結付되고, 内的으로 関聯이 있는 一般的의 基本原則과 指導理念도 勿論 考慮되어야 한다는 点에서는, 바이에른州政府側과 意見이 一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考慮함에 있어서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条文과 制定時로 부터 特히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과 指導理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 1. 平和保障의 目的 및 國際法尊重의 目的。

이 思想은 憲法前文에 「世界平和에 이바지 함」이라고 明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一連의 積極的인 規定들이 明示되어 있습니다(憲法 24 条 乃至 26 条)。

2. 国家와 政治는 人類에게 奉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基本原則과, 反對로 人類는 추상적인 原理를 為해서 鏡性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原則。

이 思想도 憲法前文에 「神과 人類앞에서 責任을 認識하며」라고 表現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제 1 条와 個別的인 基本權 가운데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3. 権利의 主体로서의 独逸은 1945 年에 消滅되지 않았으며 独逸聯邦共和国의 建國을 通해서도 消滅될 수 없다는 理念과, 더 나아가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國의 道德的인 義務와 可能한 限, 그의 権利·義務를 繼承한다는 理念. 이 思想도 憲法前文에 「國家의 単一性을 保障하기 為한 意志에 고무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서 그 表現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4. 独逸의 政策을 独逸聯邦共和国의 利益만을 為해서가 아니라, 全独逸国民의 利益을 為해서 集中시킨다는 原則, 이 思想 또한 憲法前文 가운데의 「参与가 許容되지 않은 独逸人們을 為해서 行한다」는 表現이 그 根柢입니다.

5. 國土統一을 達成하고자 努力하는 目的. 이 思想은 비록 憲法前文에서 어려운 点을 찾을 수도 있지마는, 莫然히 順序에 따라서 選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直接 法의 意義를 지니고

있습니다.

一般的인 面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特히 基本條約上에 있어서 独逸聯邦共和國政府의 独逸政策과 東歐羅巴政策은 独逸聯邦共和國憲法上의 이 基本原則 및 指導理念과 合致됩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두개의面에서 이것을 誤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이에른州政府는 基本條約의 内容, 目的 및 效果 自体를 곤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便 바이에른州政府는 独逸聯邦共和國憲法上의 基本原則 및 指導理念의 内容, 法의 意義, 相互關係 등을, 憲法制定過程, 憲法의 明示的 規定 및 憲法裁判所의 判例 等에 따라서 解釈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自己意思대로만 解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基本條約에 關해서 몇가지 点을 밝히고자 합니다. 基本條約上의 個個의 規定들은 그 基本條約上의 基本原則 및 그 條約의 意圖 等과 關聯해서 正確히 解釈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基本條約上의 個個의 規定들은, 지난 3年 半間의 独逸政策이 遂行되지 않았을때, 即 独逸의 政策이, 結局에 가서는 失敗로 끝났을 非現実的인 要請대로遂行되었을 때에 存在할 狀況과 比較하여, 基本條約 發效後의 狀況이 如何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之

게 説明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比較는 勿論 하나의 가설적인 要素를 지니는 것이나, 일의 狀況에 따라 比較的 高度의 가연성에 依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独逸狀態는 基本條約締結과 東歐羅巴政策施行以前에 發生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障壁이 쌓여졌고, 또 境界線이 지뢰, 묘지, 殺人武器 等으로 둘러 쌓여졌으며, 發砲命令도 내려졌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 内部事情은 우리의 憲法이 要求하는 것을 滿足시키지 못하였으며, 統一은 展望할 수 없었습니다.

2. 우리가 独逸民主共和国에 对한 國際的인 承認을 永久히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現實性이 稀薄합니다. 지난 3年間 우리는 힘겨웁게 그리고 다만 박두한 基本條約만을 口實로 하여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独逸民主共和国을 承認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基本條約 調印後 첫번째 承認과도는 3年間 繼続된 狀況期間中에도 比較的 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西方側同盟국을 포함한 一連의 다른 国家들이 独逸民主共和国을 承認하는 것을 몇年間 더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永久히 求止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狀況이 어떠하였을까요? 独逸民主共和国은

우리의 意思와는 어긋나지도 그들의 國際的인 承認을 받았을 것입니다. 世界는 우리의 意思를 초월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意思에 관심은 가지지 않는 西方側 国家들에 대한 우리의 位置에는 欠陷이 생겼을 것입니다. 避할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스스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賢明하다고 봅니다.

3. 國際的인 孤立까지 招來할지도 모를 또 하나의 負担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이에른州政府가 主張하는 것과 같은 法的 見解는, 東歐羅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西方側에 있어서 까지도, 領土上의 現狀維持를 將次 非平和的으로 問題를 삼으려는 見解로 解釈되거나, 政治的 影響은 同一하겠지마는, 그와 같은 見解로 誤解될 것이라고 봅니다. 西方強大国 뿐만 아니라 특히 北大西洋條約機構의 外交政策은, 世界平和와 領土上의 現狀維持의 土台 위에서만 保障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습니다. 世界平和에 대한 義務를 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独逸聯邦共和國政府의 独逸政策은 國際平和保障을 위한 寄与를 暗示하는 程度가 아니라. 實際로 하나의 그와 같은데 寄与하는 行為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습니다.

4. 基本條約은 두개의 独逸國家間의 法律關係를 解明하거나 또는 改善하는 一連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關係의 特殊性은 우선關係의改善를 為해서는 하나의 그와 같은 替代한 條約을 必要로 한다는

事實만으로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條約을 締結하면서 부터, 國際法上의 承認이 두 나라間의 関係를 規定하는前提라는 그들의 要求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基本條約은 明示的으로나 解釈上으로나 國際法上의 承認을 内包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것에 関해서는 '래버랜즈' 씨께서 더 상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다만 独逸統一에 関한 書翰에 関해, 8條(常駐代表), 10條(該當覺書交換) 및 9條(國際合意의 留保) 등 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留保條項은 무엇보다도, 独逸條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國聯合加入時, 4大国에 의해서 明示的으로 뒷받침이 된 4大国의 権利와 関聯이 됩니다. 이 独逸條約은, 4大国의 権利가 總體의 独逸에 関係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独逸條約은 西方3大国에게 우리의 맞은편에서 独逸統一을 達成하도록 努力할 義務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있을 強化條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 行한 書信交換은 그外에도, 4大国의 権利와 義務는 変함없이 存続한다는 것을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万若에 우리가 '独逸'이라는 法的概念은 固守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独逸民主共和国을 内국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外國도 아니라고 본다고 하드래도, 違憲일 수는 없읍니다.

國內問題에 있어서는 実은 独逸民主共和国과의 意見差異가 있습니다.

이 意見差異도 基本條約以前에 發生하였습니다. 그러나 '意見이  
다르다는데 同意한다'는 것과 같이 적어도 意見差異에 對한 同意  
가 確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見解를 따르는 것이 條約違反으  
로 解釈될 수는 없습니다. 넘기 어려운 意見差異에 있어서는 그  
意見差異를 許容한다는 共同確認이 比較的 有利한 解決입니다. 말하  
자면 이와 같은 解決은, 意見差異가 政治的으로 경감된다는 것,  
即 그 意見差異는 規定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이 可能性은, 万若에 그 意見差異이가 遷滯된 형식상의  
折衝으로 因해서 은폐되거나, 그 意見差異가 規定의 対象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成立되지가 않습니다.

独逸人の 国籍은 아무런 影響을 받지 아니 합니다. 이 問題에  
關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国籍에 關한 問題는 規定되지 않  
았다는 것을, 留保宣言을 通해서 固守하고 있습니다. 独逸民主共和  
國은 声明을 通해서, 基本條約은 国籍問題에 關한 規定을 緩和할  
것이라는 希望을 表示하면서, 独逸民主共和國은 国籍問題는 変함없이  
그대로 存続한다는 것을 確認하여 있습니다.

하나의 合意メモ가 確認하는 바와 같이, 財產問題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로 아무런 変함이 없습니다.

双方이 合意下에 發表한 한 声明은 独逸民主共和国内에 있는 '西

伯林 "이" 独逸聯邦共和国을 通해서 代表된다는 것을 固守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후속될 条約들은 "西伯林"으로 까지 伸張될 수 있다는 것이 規定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独逸民主共和国이, 都市의 根本的인 地位로 因해서 独逸聯邦共和国은 "伯林"을 全혀 代表할 수 없다는 見解를 正當하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決定的인 突破를 한 것 입니다.

5. 그外에도 基本條約은 独逸의 두 地域에 있는 人類들을 위한 改善策을 内包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그 条約은, 經濟, 科學技術, 往來, 法的交流, 遙信, 保健, 文化, 体育, 環境保護 및 其他 分野에 있어서 条約을 締結할 義務를 包含하고 있읍니다(7条). 独逸民主共和国은 이미 별씨 家族結合, 旅行緩和, 非商業的인 物品交流 및 言論人의 活動可能性 分野에서 이미 同意를 하였읍니다.

이 모든 政治的인, 法的인, 그리고 또 人間의인 改善을 向해 맞은 便에서 두가지가 마주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独逸民主共和国의 国家性을 条約上 尊重하는 点입니다. 이것 은 本来 1969年 10月 28日付의 政府聲明을 通해서 이루어졌고, 하나의 国家條約인 相互條約을 通해서 確認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条約에 대해서는 바이에른州政府는 參議院에서 明示的으로 同意를 하였읍니다. 万若에 바이에른州政府가 이제와서 独逸民主共和国의

国家性을 解除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分明히 모순되는 行動이 아닐 수 없읍니다. 国家性을 尊重한다는 말로 부터는 무엇을 推論할 수 있느냐 하면, 現在 存在하는 統治境界線을 「境界線」으로서 尊重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므로서 原則의平等, 独立, 自主性 및 領土의 不可侵性을 尊重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勿論 이 尊重한다는 것은 境界線을 双方 合意下에 없애거나, 또는 境界線의 性質을 變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独逸民主共和国 外相 「빈처」氏가, 서로 反對되는 두 社会秩序를 가진 두개의 国家가 統一을 한다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말하는 것은, 境界線의 法的 性質이나 境界線을 解除할 수 있는 法的 可能性에 대해서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政治的인 發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同一한 問題가 이미 以前에 「모스크바 条約」 3條와 閔聯하여 일어난 적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蘇聯 外相 「크로미코」의 声明이 分明히 밝히기를, 双方合意下에 境界線을 解除하는 것은 境界線不可侵을 規定하는 条約規定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읍니다. 「모스크바條約」과 閔聯하여 그 外에도 自明性으로 부터 由來되는 것은, 이 条約規定들은 말하자면 双務의이며, 따라서 万約에 「모스크바」가 어느隣接國家와 合意下에 国境變更를 決定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虐의할 수 있는 権利를 認定하지 않으려는 것 이었읍니다.

짧게 말하건데, 實際의이거나 또는 人間의in 聯關關係에서 어떤 損

害가 오는 것은 아니며, 더詳細히 말씀드리겠지만, 統一可能性이  
侵害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첫번째 반대급부, 即 国家性의 尊重으  
로 因해서 変更된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둘째로 独逸民主共和国에 对한 國際的인 承認의 封鎖解除에 関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實際로 우리의 重要한 反對 급부 입니다.  
그러나 이 封鎖解除 또한 独逸聯邦共和国에게 对해서 損害를 意味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承認을 封鎖하는 것이 우리들에  
게나 独逸民主共和国에 있는 独逸人民들에게 封鎖를 하므로서 期待  
하였던 利益을 가져 오지 않았읍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언제까지나 無制限으로 持続할 수도 없  
었읍니다. 그래서,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会에 있어서 強大国들이 가  
지고 있는 拒否權으로 因해서 独逸聯邦共和国이 國際聯合에 加入하  
는 길은 独逸民主共和国과 共同으로 하든가, 아니면 加入하지 않는  
것이 었기 때문에, 封鎖를 解除하므로서, 우리가 國際聯合에 加入할  
길이 열린 것 입니다.

万若에 우리가 基本條約을 이미 言及한 独逸聯邦共和国憲法上의 다  
섯개의 指導理念으로 測定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確認할  
수 있읍니다 :

1. 첫째로 基本條約은 實際적으로 平和保障이라는 憲法上의 目的

에 도움이 됩니다.

2. 두번째로 基本條約은 人間에게 추상적인 理論의 제물이 되었을 實際的인 利益을 가져오며, 박애주의라는 憲法上의 目的에 도움이 됩니다.

3. 세번째로, 基本條約은 우리에게 独逸聯邦共和国憲法과 一致되게 独逸의 存続을 固守하는 것을 許容하고 있습니다.

4. 네번째로,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国憲法制定者の 理念에 따른, 独逸聯邦共和国의 利益뿐만 아니라, 全体国民의 利益을 目標로 하는 政治에 대한 하나의 記錄文書인 것 입니다.

5. 다섯번째로, 基本條約은 独逸問題를 保留해 놓고 있으며, 統一命令에 関해서는 個別의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마는, 統一命令을 壞치는 것이 絶対로 아닙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이 다섯개의 原理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또 基本條約을 이것과 関聯시켜서 解釈하지 않으므로로서, 이미 그것으로 因해서 憲法의in 問題를 誤認하고 있음이 分明합니다. 뿐만 아니라 個別의in 問題에 있어서도 바이에른州政府의 解釈은 独逸聯邦共和国憲法과 基本條約을 正當히 取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申請書의 個別的인 項目에 関해서 말씀드린다면 :

우선 1項에 関해서 :

먼저 첫번째 것이고 또 重要한 申請事項인, 国家の 統一性(单一性)이 存在할 것을 前提로 하여, 바이에른州政府가 두개의 独逸国家가 存在할 수 없다고 추론하는 根拠가 되는, 申請書 가운데 陳述되어 있는 「独逸의 国家の 統一性의 保障」에 関한 憲法上의 命令에 関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関해서 바이에른州政府는 本来 申請書 가운데 하나의 理論의 根拠를 提示한 바 있는데,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은 이것을 이제는 分明히 더 以上 견지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即 바이에른州政府가 提示한 理論의 根拠는, 独逸聯邦共和国의 領土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效力發生地域보다 넓은 것으로서, 이 拡大된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과 同一하다는 所謂 「國家核心論」의 다른 表現인 同一說에 関한 것으로서, 바이에른州政府는 申請書 가운데 이 理論에게 憲法上의 위계를 賦与하였습니다. 이 理論에 따르다면,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의 國家領土위에 存在한다는 理念이 成立되게 되며,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의 機關은 独逸民主共和国의 地域에서 단지 事實上의 事由로 因해서 現在 独逸聯邦共和国의 統治權을 行使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根拠로 하여 바이에른州政府는, 独逸民主共和国에게 國家性을

認定할 수 없으며 또 独逸民主共和国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의 独立性과 마찬가지로 領土의 不可侵權도 尊重될 수 없다고 추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은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은 '同一說'을 根拠로 하여 確立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읍니다.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은 '分轄秩序論'의 土台위에서 있읍니다. 그러나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은 생각 하기를, '분할질서론'의 立場에 서는 境遇에도 独逸內의 두個의 國家라는 것은 認定될 수 없으며,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帝國의 嘉위에 存在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것도 또한 違憲이라고 합니다. 本人이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의 言及을 理解한 바로서는, 同訴訟代理人은 始終一貫하여, 바이에른州政府가 忌避하고 있는 '縮小國家論'의 立場을 그가 받아 드리지 않는限, 独逸聯邦共和国 또한 完全한 國家로서 通用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읍니다.

獨逸聯邦共和国과 独逸帝國間의 関係에 있어서 理論上 어떠한 立場을 取하느냐도 問題이지마는, 左右間 問題가 되는 것은, 바이에른州政府側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内容을 가진 '國家的 統一性의 保障'에 関한 命令이 憲法上 도대체 存在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保障命令'을 '同一說'과 결부시켜서 解釈을 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이 '保障命令'을 '同一說'과는 区分을 하여야 할지, 우리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前文에 있는 保障條項이 正確히 무엇을 意味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獨逸聯邦共和国과 権利의 主体인 独逸파의 関係에 関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부터 結論을 얻어 내는 것이 아마 옳은 일일 것 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과 権利의 主体인 独逸파의 関聯은 一次的으로 憲法上의 問題가 아니라 國際法上의 問題이며,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帝国의 権利와 義務를 繼承할 수 있느냐의 与否와 또 어떻게 繼承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関해서 本人의 意見으로서는, 本質的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分離해서 考察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即 첫째로는 法的承繼인데, 이것은 独逸帝国의 消滅을前提로 할 것이나, 独逸聯邦共和国政府나 巴이에른州政府 모두가 이와 같은 見解를 따르고 있지 아니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独逸聯邦共和国이나 独逸帝国은 同一하다는 것을 根拠로 하여 権利義務의 繼承을 主張할 수가 있겠고, 세번째로는 代表說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帝国을 '代表' 한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代表, 代理, 信託, 独逸聯邦共和国에 依한 独逸帝国의 権利義務의 自進引受, 国家共同社会에 依한 独逸帝国의 権利의 自進認定 等을 뜻합니다.

두번째 可能性과 세번째 可能性에 関해서, 즉 '同一說'과 '代表

說에 関해서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은 正確한 決定을 내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本人이 보기에는 独逸帝国을 代表한다는 데로 憲法上의 根本理念이 分明히 기울고 있는 것 같읍니다.

獨逸聯邦共和国憲法制定當時 아직도 存在하고 있었던 聯合國共同管理委員會에서 制定한 法의 位置로 因해서, 더 上으로 不可能 하였읍니다.

獨逸聯邦共和国이 独逸帝国을 代表할 수 있는 外部的인 限界는 1950년 5月 19日에 「뉴요크」에서 있었던 外相會議에서 다시 한 번 明確히 밝혀졌읍니다. 그 当時 西方側 外相들은 独逸이 統一될 때 까지 独逸聯邦共和国은 國際的인 問題에 있어서 「獨逸을 為한 独逸民族의 代表者로서 発言할 権限을 갖는다는 것을 確認하였읍니다. 그리고 같은 날 西方側 外相들은 解釈의in 覚書를 通해서 「아데나워」 独逸聯邦共和国首相에게, 이 確認이 独逸聯邦共和国政府를 全體 独逸의 政府로서 承認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通報하였습니다. 「同一說」에 関한 誤解는 무엇보다도 이 声明이 独逸聯邦共和国에서 1971年까지 公開되지 않았었던 데서 오는 것입니다.

50年代 初期에 独逸聯邦共和国에서 代表와 統一性間의 差異, 即 独逸을 為해서 代弁할 수 있는 権利와 独逸의 政府로서 行動하기

해서 独逸이 存在한다고 主張하는 権利間의 差異가 消滅되었을 때, 西方強大国들은 그들의 見解를 재천명 하였습니다. 1955年 5月에 있었던 「제네바外相會談」에서 北美合衆国外相과 對英帝国外相은 声明을 通해서, 「國際法上 独逸이라는 主体는 繼続存在한다……… 独逸聯邦共和國과 所謂 独逸民主共和國은 各己 单獨으로든 또는 共同으로든 間에 独逸이라는 國際法上의 主体로서 行動을 하고 義務를 負担할 権限을 갖는 하나의 全體独逸의 政府를 이루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憲法制定者は 이 範囲를 法의으로 넘을래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独逸聯邦共和國憲法制定者の 主權은 聯合國共同管理委員會에서 制定한 法에 의해서 그 점에 關한 限制限을 받았습니다. 占領當局들은, 비록 聯合國共同管理委員會에서 分離해서 가지고 있었지만서도, 全體独逸에 對한 4大国 義務를 外形上 固守하였습니다. 独逸聯邦共和國樹立을 발기한 1948年 6月 7日付의 「6大国推薦」은 동 6 대국은 決코 此後에 있을 独逸問題에 관한 4大国條約을 排斥하지는 않은 것이며, 反對로 緩和할 것이라는 留保條項을 包含하고 있었습니다. 동 6 대국주체은 独逸에서 現狀態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問題들을 解決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占領當局들은 独逸聯邦共和國樹立後에도 独逸聯邦共和國과 그들이 独逸帝國의 國際法上의 権利의 主体라고 本, 権利의 主体인 「独逸」

을 恒常 区別하였습니다. 예컨대, 独逸條約 같은 것을 보면, 그 2 条와 7 条에, 国家로서 再組織될 全体独逸이며 將次 앞으로 있을 強化條約의 條約当事者의 뜻으로 '独逸'이라고 言及되어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国憲法은 따라서 '同一說'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은 概念上으로 볼때, '獨逸聯邦共和国'과 '独逸'을 西方強大國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区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国'이란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을 통해서構成한 西方國家의 이름이고, '独逸'이라 함은 그 再組織이 希望되고 또 추구되는 國際法上의 主體인 独逸帝國의 이름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의 領土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의 效力發生地域에 局限되는 것이고, 独逸의 領土는 그 보다 더 拡大되는 것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 밖의 地域은 '独逸의 다른 부분'일뿐이지, '独逸聯邦共和国의 다른 부분'이 아닌 것 입니다.

獨逸聯邦共和国憲法의 個別的인 規定들로 부터도 '同一說'에 관한 根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関해서는 바이에른州政府의 訴訟代理人도 더 以上 言及을 하지 아니 하고 未決로 두고 있으므로, 本人은 個別的인 項目에 関해서는 말씀드리지를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說을 따르느냐 하는 것과는 別途로 하고, 바이에른州政府가 独逸聯邦共和国憲法前文의 保障條項에 対해서 하는 것과 같은 解釈은 憲法上 到底히 容納되어 질 수 없는 일인 것

입니다.

다음에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前文의 法的 性質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憲法前文은 大概 直接 拘束力이 있는 法的義務를 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憲法上 다른 直接的인 規定을 解釈하는데 利用될,  
낭송적이거나 또는 政治的인 發言의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独  
逸聯邦共和国憲法裁判所도 独逸聯邦共和国憲法前文이 다만 政治의이며  
프로그램順序에 따르는 性質을 떠운다는 것을 確認한 바 있으며,  
独逸聯邦共和国憲法裁判所는, 保障命令과는 区別되고, 또 巴이에른州政  
府에 依해서도 区別이 되는 國土統一命令에 對해 서만 하나의例外  
를 認定하였던 것 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憲法裁判所는 지금까지 이  
例外를 拡大한 일이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은 独逸聯邦共和国憲法制  
定者의 意圖하고도 一致되는 것 이라고 봅니다.

문구상으로 보아도, 独逸聯邦共和国憲法前文은 国家機關의 義務를 意  
味하는 뜻으로 "保障命令"이라고 되어있지는 아니 합니다. 独逸聯邦  
共和国憲法前文은 단지 独逸聯邦共和国樹立에 拘碍됨이 없이 国家  
의 統一性을 保障하려는 独逸聯邦共和国憲法制定者의 意圖를 記錄한  
것으로서, 다만 "国家의 統一性을 保障하려는 意志에 고무되어 独  
逸民族은………云云"하고 있을 때를입니다.

制憲議會의 原則分科委員會委員長이 었던 '폰·망콜트' 博士는 그의 見解를 피력 하기를,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은 全體的인 精神과 歷史的인 関係를 再現하고, 그 点에 関해서 하나의 明確한 法的 意義를 가지는, 하나의 단순한 入門에 불과 합니다. 本来의 法的 規定은 独逸聯邦共和國憲法本文의 各個別의in 条文上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에 関한 주 역서들도 亦是同一한 解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独逸聯邦共和國憲法裁判所는 共產黨裁判을 通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은 우선 政治的이며, 또 프로그램 순서에 따른 性質을 가지는 것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 가운데에 있는 統一命令은 請求的 性質을 가지는 法的命令인 것이다라고 確認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地域上 制限된 領域內에서 全體独逸의 國家權力を 行使하도록 承認하는 것은, 말하자면, 分明히 独逸聯邦共和國憲法前文의 단순한 政治的 意義에 포괄되는 것 입니다. 그와 같은 承認에게 独逸聯邦共和國憲法 解釈上 그 外에도 考慮되지 않으면 아니될, 法的으로 重要한 確認 및 法的保管 以上으로 더 強力한 힘을 認定하여서는 아니되는 것 입니다.

그 外에도, 保障命令이 그 어떤 不可能한 것을 要求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法規들은 不可能한 것을 要求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独逸聯邦共和国憲法制定者는 참으로 国家의 統一性을 保障하라는 의지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独逸聯邦共和国憲法制定者는 国家의 統一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反對로 国家의 統一性의 결여를 独逸의 統一을 完遂하라고 要求하는前提로 한 것 입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国家의 統一性에 依해서 이루어진 憲法上의 命令을, 国家의 統一性에 関한 어느 特定한 理論保障을 為한 命令으로 解釈을 하고 있습니다. 即 同一說이든 분할질서론의 한 特定한 다른 表現이든 間에 國際法의 理論保障을 為한 憲法上의 命令으로 解釈하고 있습니다.

X. 바이에른 州政府訴訟代理人의 1973年 6月 25日字  
書信

發 信 人

아우구스대학교 公法研究所 所長

Dieter Blumenwitz 教授 (1973.6.25)

受 信 人

独逸聯邦憲法裁判所

合議 第2部 貴下

75. Karlsruhe

Schlossbezirk 3.

案 件 ; 1972年 12月 21日 独逸聯邦共和国(西独)과 独逸民主共和国間에 締結된 両独 基本條約에 對한 違憲審查文件

答信題目 ;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에 對한 國際法的性格에  
關한 書面對答과 独逸聯邦政府에 의하여 1973年 6月  
19日 口頭審議때 提出된 “受領證明”에 關한 國際法  
的性格에 대한 答信(註).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  
이라는 것은 西独聯邦共和国이 東獨과 基本條約 文書를

交換할 때 同條約에 대한 앞으로의 解釈에서 發生될지도 모르는 紛爭을 避하기 위하여 西獨側의 解釈見解를 밝힌 것이며 “受領證明”이라 칭한 書信을 東獨이 受領했다는 証明書를 뜻함).

I. 1973年 6月 19日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Max-Planck 國際法 및 外國公法研究所 所屬 Karl Doehring 教授와 Georg Reiss 博士는 裁判部에 出頭하여 口頭審議에 应하여 그들의 國際法的 見解를 밝힌 바 있다.

바이에른州政府는 이들의 主張과 上記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 및 이와 関聯하여 西獨聯邦政府가 1973年 6月 19日 提出한 “受領證明” 等에 对한 國際法的 審議를 要請했다.

이어서 同州政府는 獨逸聯邦州政府가 上記 “受領證明”은 1969年 5月 23日 締結된 비엔나協定과 같은 法的意義를 갖고 있으며 同証明이 “兩獨間의 基本條約” 解釈에 指針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 역시 國際法的으로 어떠한 가를 審議하여 달라고 提起해 왔다. 이외에도 다음에 对하여 特別한 問疑가 있었다.

1. 비엔나協定 31条 2項 (b) “條約關係”라는 明文에 一致되며 同條約關係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條約當事者에게 上記文書를 受交시킨 것으로 充分한가?

2. 1973年 6月 19日 西獨聯邦共和国이 口頭審議때 提出한 “受領證明”이 同協定 第31条 2項 (b)에 明示된 “條約解釈指

針文書”로서 必要하며 条約当事者에 의하여 받아진것 自体로서 条約關係가 증명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受領證明”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3. 東獨政府國務次官 Michotl Kohl 은 1972年 12月 21日

受領했음. 서명. 읽지않았음 (고무인으로 찍혀있음).

國務委員事務處

4. 日字와 著名은 블펜으로 쓰여 있음. “受領證明”書의 양식은 젤라틴판印刷機로 事前印刷되어 있었던 것임.  
受取人の 이름은 타자로 찍혀 있음.

3. a) 上記書信(즉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의 発信人の 性名이 上記 “受領證明”에 밝혀져 있지 않으며  
b) 外交文書 거래처럼 되어있지 않고  
c) 国家間의 関係속에서 重要書信 交換인지가 不分明하게 되어있고,  
d) 官厅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으며, 受領行為를 했다는 確認할만한 官吏의 官職이 밝혀져 있지 않고 따라서 國際私法 거래형식의 証明文書로서 되어 있지 않지 않는가라는 疑問과 더불어 이상과 같은 疑問을 갖고 있는 “受領證明”이 어떤 法的 뜻을 갖고 있는지?

4. 契約当事者が 独逸聯邦共和国政府가 넘겨준 文書(즉 1972年 12月 21日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聯邦政府가 東獨國務委員事務室에 전달한 것을 뜻함)을 受交한 것이 独逸聯邦

政府의 見解와 一致된 見解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미 契約当事者가 聯邦政府의 条約解釈의 見解를 알고 있었다면 그런 書信을 東獨側에 넘겨줄 必要는 없었지 않았는가? 이와같은 疑問이 提起되는 理由는 条約締結當時 東獨側이 西獨의 法的술이 見解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속기록에 記載되어 있기 때문이다.

5. 西獨政府 刊行物 Nr. 155. S. 1853 (聯邦 문공부 Bulletin에 該當) 書信內容과 동문서를 東獨政府에 受交시켰다는 報導가 어떤 法的性格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東獨이 농조약을 國際法의으로 重要視하지 않는다는 것과 西獨政府가 농조약에 대한 議定書 作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関聯하여 上記 의문은 어떤 法的性格을 갖고 있는지?

6. 쟈네바 協定 第 31 条 2 項( b )에 条約의 解釈原則이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다.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國際法의으로 解釈함에 있어 条約當事者를 除外하고 聯邦政府 単独으로 解釈하는 것이 同條文에 違背되지 않는지?

7. 東獨이 상기 書信에 대하여 침묵지간 것이 어떤 法的意義를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어떻게 評価할 수 있는지?

a) 兩獨正常化 基本條約을 署名한 東獨政府全權代理는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바 없다고 宣言했다.

b) 모스크바 条約 때 条約当事者에게 手交한 書信과는 달리  
이 “統一을 위한 書信”은 東獨이 東西獨基本條約을 비준할 때 議  
會에 상정도 하지 않았으며 条約記錄書의 添加物로도 利用치 않았  
다.

c) 東獨外相 Otto Winzer 가 1973.6.13 日 人民委員會에  
서 다음과 같은 發言을 했다.;

… 独逸聯邦政府代表 Egon Bahr 氏가 1973 年 2 月 26 日 東西  
獨基本條約을 마음대로 解釈할려는 시도를 東獨政府가 遏止시켰다.  
両獨의 基本條約解釈이 法的으로 有効하면 国際法의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両 条約当事者가 事前에 合意한 分野에 국한 하는 것이다.  
다.

바로 이점이 条約解釈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d) 1973 年 5 月 29 日 東獨의 党機関紙 Neues Deutschland  
1 面은 東獨의 独逸社會統一黨(共產黨) 中央委員會에서 다  
음과 같이 發言했다고 報導했다.;

完全自主獨立된 두개의 独逸國間に 체결되는 国際法의 両獨正常化  
條約은 永久分斷條約이며 両獨間의 잠정적 内國條約이 아니며 同條  
約에 따라 独逸統一問題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独逸統一問題를 主張한다면 이는  
장교대 같은 소리며 時間만을 浪費하는데 不過할 것이다.

e). 이상의 것 이외에도 州政府가 聯邦憲法裁判所에다가 裁判에  
必要한 증거서류를 더 提出할 必要가 있는지?

즉 1973年 2月 26日의 Bahr 와 Kohl 氏간의 会談때 作成된  
記錄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II. 1973年 6月 24日字로 作成된 Karl Doebring 教授와  
Georg Ress 博士의 法的 見解에 의한다면 “独逸統一을 위한 書  
信”과 “受領證明”이 비엔나協定 第 31 条 2 項(b)에 따른 國際法  
의 条約 解釈의 指針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西獨聯邦政府의 法  
의 見解와 상치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필자들은 그와같이 될 수 없는 理由가 양측이 上記文書  
를 交換하면서 이렇다 할 明確한 合意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主張  
하고 있다.

明確한 양측의 합의가 없다는 根拠는 상기서신이 교환되었다던가  
또는 동서신의 内容등이 協商會議錄에 속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東獨이 默示的으로 手交한 것에 대하여  
도 東獨側이 그후 어떤 言及도 하지 않고 있으며 両獨基本條約을  
비준할때 이를 完全 무시했다는 데서 앞에와 같은 見解가 옳다고  
말하고 있다(참조 1973年 6月 13日의 東獨外務相 Otto  
Winzer 氏의 演說 및 東獨党 第一書記 Honecker의 演說).

이와같은 事実을 미루어 볼때 巴이에른 州政府는 聯邦政府가  
繼続 어떤 다른 記錄書를 証拠物로 提出할 必要도 없다고 본다.  
호네커와 빈저 氏의 演說에 의한다면 上記 書信에 대한 默示의 인  
手交가 비엔나協定 第 31 条 2 項(b)가 말하는 手交(“acceptan-  
ce”)에 該當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III. 上記書信과 受領証이 제네바協定 第32条가 말 하는 条約文書解釈의 “補充的 意味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에 該當될 수 있는지의 問題는 不確実하다.

바이에른 州政府가 1973年 6月13日 구두 심의때 主張한 말에 의한다면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은 法的으로 어떤 뜻도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서신이 兩獨基本條約을 解釈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에른 州政府 訴訟代理人

Blumenwitz 教授



Karl Doebring 教授 하이델베르크 1973.6.24.

Georg Ross 博士

바이에른州政府 主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答辯한다.

題目 ; 兩獨間에 締結된 東西獨基本條約과 関聯된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에 대한 國際法的 評価

I. 上記文件에 대한 法的評価를 내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方法을 취해야 한다.

1972年 11月8日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했다. 同條約이 締結되자 西獨文部省는 동부에서 發行하는 官報 Bulletin을 통하여 (Nr 155/S 1841ff) 동조약을 報導했으며 이어서 1853年에다가 다음과 같은 内容을 報導했다;

西獨聯邦共和國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을 署名하기 전에 東獨共產政府에 "祖国統一"에 대한 内容이 담긴 書信을 수교시켰다.  
이어서 西獨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이 西獨 基本法(憲法)精神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註 西獨基本法 前文은 東西獨이 統一되어야 한다고 明示되어 있다).

西獨政府를 代表한 Bahr 氏와 東獨政府를 代表한 Kohl 氏가 同條約를 각각 署名할 때 (1972年 11月 8日) 發表된 声明 (文部省 官報 Bulletin Nr 1561S. 1860 ff. 1972年 11月 10日字) 속에는 法의으로 이렇다 할 内容이 없었다. 1972年 12月 21日 東伯林에서 西獨政府를 代表한 Bahr 長官이 同條約에 署名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書信이 東獨政府에 手交 시켰음이明白히 밝혀지고 있다;

- 즉
1. 離散家族의 相面과 再結合
  2. 東西獨 通行緩和
  3. 基本條約 第9條와 関聯毛 西獨政府의 見解가 밝혀진 書信과 東西獨 通行路 拡張開放

그러나 이때도 역시 東西獨 独逸에 関한 "祖国의 問題"는 일체

言及되어 있지 않다. 이는 西獨側의 Buhr 長官만이 아니라 東獨을 代表한 Kohl 次官 역시 同一했다 (参照, Bulletin Nr. 171 / S 2009ff. 1972年 12月22日字)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은 1972年 12月22日字 Bulletin (Nr. 171 / S 2012)에 공포되었다. 동서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聯邦政府法律官報 1973.II.425도同一內容報導).

聯邦首相室 特別課題聯邦長官

본 1972年 12月21日

独逸民主共和国 國務委員室 次官

Michael Kohl 次官 賀下

東伯林

親愛하는 Kohl 氏!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에 合意본 東西獨基本條約을 오늘날 著名하는 것과 関聯하여 独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同條約의 精神이나 内容이 西獨基本法(憲法)에 明示된 “統一成就” 精神에 위배되지 않으며, 聯邦共和國의 統一成就 政策에 모순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同書信은 구라파 平和政策에 기여하고자 하는 西獨政府政策目的과도 일치하고 東西獨의 統一을 위한 手段으로 民族自決主義를 표방한 憲法精神과도 같은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貴下의 健闘를 빌면서

Bahr. 올림.

“統一을 위한 書信”이 東獨政府에 手交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령증명”을 東獨政府로부터 받았다고 聯邦政府가 主張하면서 同受領證明書를 聯邦憲法裁判所에 証拠로서 提出했다.

紙上報導에 따르면 (参照 Frankfurter Allgemeine 紙 등등) 聯邦수상실 전권대리인은 同基本條約을 署名하기 전에 “統一을 위한 書信”을 東獨側에 伝達했다고 되어 있다.

聯邦憲法裁判所가 審議에 必要한 証拠物로 接受한 物件은 다음과 같다;

1. 証拠物 ; 吸水우편지
2. 形式 ; DIN A5
3. 内 容 ; 東獨國務委員室 次官 미사엘 코흘 受領

1972年 12月 21日 柏林

내용을 읽지 않았음

(서명)

고무인 국무위원회

우편물 접수처

4. 受領日字와 署名은 블펜으로 되어 있음. “受領證明”에는 官印이 찍혀 있지 않음. 同用紙의 書息은 事前에 印刷된 것으로 서 젤라리판 印刷機로 되어 있음.

手交人の 姓名은 타자기로 名記되어 있음.

◇

西獨聯邦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에 대한 聯邦政府見解를 同條約비준을 위한 議會에 다음과 같은 内容을 提出했다.

… 西獨聯邦政府는 東西獨統一을 達成코자 繼續 努力할 것이라는 것을 東獨政府와 東西獨基本條約協商에서 繼續 뚜렷하게 밝힌바 있다.

以外에도 東獨政府가 同條約을 署名할때 東獨政府에 統一에 대한 의지를 明白히한바 있다.

또한 여기에다가 添加하여 西獨聯邦政府는 “統一을 위한 書信”을 作成 東獨政府에 伝達했다.

1973年 6月6日字의 …法 第1條에 따르면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에 1972年 12月21日 締結한 東西獨基本條約속에는 1972年 12月21日 西獨政府가 東獨政府에 伝達한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도 包含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東獨이 同條約를 東獨人民委員會에 上程시키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東獨人民委員會는 1972年 12月 21日 伯林에 署名한 同條約을 確認한다는 法을 1973年 6月 13 通過시켰다 (東獨官報 1973 II. 25 參照). 그러나 이를 發表한 東獨官報는 條約全文, 이에 대한 속기로 보충속기록 (國民의 財產問題 및 國籍問題에 대한 東獨側 見解만을 報導했다.

이곳에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書信이 밝혀 있지 않을뿐더러 (1972年 12月 21日字) 東西伯林에 関한 協商에 대하여도 沈默지켜지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独逸民主共和国 人民委員會에서의 討議 때도 同書信에 對하여 단 한마디의 討議도 없었다.

그러나 東獨 外務相 오토빈저 (Otto Winzer)는 1973年 6月 13日 人民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이 東西獨統一問題를 留保하고 있다고 상투적인 言辭를 最近에 되풀이 했다.

이와같은 西獨의 자의적인 條約解釈의 시도는 1973年 2月 26日 西獨의 首都 본에서 東獨 國務위원회 차관 Kohl이 西獨 聯邦長官 바르나를 만났을때 일축했던 것이다.

本人은 이곳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의 이름으로再次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은 각각 独立된 主權 國際法의 主體이다.

이와같은 國際法的 意義에서 양국이 1972年 12月 21日 國際條

의인 東西独基本條約을 署名한 것이다.

両国이 独立된 主權 国家며 國際法의으로 対等하다는 大前提下에서 両국의 関係는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와 関聯하여 本人은 東獨의 最高国民代表機關인 人民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밝힌다.

國際法의in 子속력을 갖고 있으며 法的有効가 있는 것은 両獨間의 條約協商에 條約當事者間에 明示的으로 合意된 事項이며 이와 関聯된 속기록이다.

바로 이것이 條約解釈의 唯一한 基本이다. 東獨政府는 條約內容에 따른 完全한 履行과 彻底한 履行 그리고 同條約과 関聯하여 合意된 보충속기록의 内容履行을 遵守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東獨政府는 西獨政府로 부터 同一內容의 遵守가 있기를 기대 疑心치 않는다. (参照. 東獨党 機関紙 Neues Deutschland 1973年 6月13日字 基本條約에 对한 演說文 및 同一内容 外務政策報道 Nr 24 V. 1973年 6月15日字 S 182ff. 東獨外務省公報課 発行).

東西独基本條約은 1973年 6月20日 西獨議会에 의하여 본에서 비준되었다.

이는 同條約 第10條에 따른 각서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동각서 内容이 무엇인가가 밝혀지지 않았다.

覺書交換에 있어서 西獨의 Bahr長官이나 東獨의 Winzer

外相을 莫論하고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에 대하여 한마디의 言及도 없었다.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이 基本條約과 関聯하여 어떤 法的意義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 問題에 對하여 本格의 論難을 하기에 앞서 同書信에 對한 “受領證明”에 對한 法的性格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同 “受領證明”의 内容을 물것 같으면 이는 순수한 郵便書信을 受領했다는 確認書에 不過하다.

이 証明書가 確認한 것은 東西獨 國務委員室 Michael Kohl 次官이 “受領 했다”는 것 뿐이다.

同書信이 “到達되었다”는 것 외에 發信人이 누구며 그 書信의 内容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밝혀져 있는바가 없다. 이러한 “受領證明” 가지고는 同 書信이 1972年 12月 21日 몇時에 到達되었는지를 確認할 수가 없다.

UN이나 國際裁判所 또는 内獨關係取扱所(後에 設立된다면...)에 東獨이 상기서신을 問題삼는다면 同書信이 反証의 対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떤 書信이 伝達되었다는 것만은 手交者인 Egon Bohr 와 受領者인 東獨의 國務委員室 郵便物接受處의 証言에 依하여 立証될 따름이다.

東獨의 國家機關이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정말로 受領했는

지에 대하여 어떤 方式으로 먼저 一切 言及이 없기 때문에 과연  
同 書信이 事實로 伝達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東獨이 發行한 郵便物受領確認証에 發信人の 名儀가 밝혀져 있지  
않음으로 同 証明書가 内國間의 去來 公文書로 無条件 認定될 수  
는 없다.

그러나 發信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問題는 도외시 하고도 証明書  
가 法的證明力を 發揮할 수 있는 "公文書"가 될 수 없는가  
라는 疑問이 提起된다.

受領確認書가 法的 効力を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問題는  
그때 그때의 契約 또는 條約內容에 따라 決定되어야 할 問題임으  
로 國際法의 法律行為를 위한 特殊한 國際法의 効력을 갖고 있다  
고 一般的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確認이 없는 경우보다는 實際運營에 있어 큰 効力を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나 國際法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이다.

(参照 F.Honig 國際法의 法律行為, 國際法事前 三권 1972.  
S.11).

여기에서 疑心할 必要없는 것은 西獨聯邦政府가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東獨에 伝達 하므로서 重要한 法的 意思를 表示했  
다는 것이다.

國家間의 外交關係에서 때때로 覚書로 認定되는 이와같은 書信은  
法的効力이 있는 國際法의 公文書로 認定된다.

이런 覺書의 交換으로 因하여 비준서의 交換, 条約에 对한 声明書 交換 및 속기록 交換때와 같이 決定的인 것이 終結되어지기 때문이다.

(参照 L.Bittner 國際法條約文書에 関한 研究 1924, s.300)

独逸聯邦共和國이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다는 点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타면에 있어서 그와같은 서신의 伝達이 一方의이고 相對方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 境遇란 거의 보기 드문 境遇다. 覺書가 伝達되면은 相對便이 그 書信의 内容을 確認했다고 되어 있고 同內容을 檢討하여 次後에 그에 对한 답신을 보내겠노라고 되는 것이 正常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東獨이 確認한 “受領證明” 속에서는 그와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同 書類가 国家間의 法的去來에 对한 主要文書로 認定될 수 없다.

모든 國際法의 意思表示와 마찬가지로 聯邦政府의 覺書는 受領必要성을 갖고 있다 (参照 G Dohn, 國際法 III 1961, s.4.)

郵便到達의 表示는 実質적으로 한 書信이 그의 内容과 함께 到達되었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그리기 때문에 이는 法的 証明力を 갖고 있는 것이다.

國際法의 去來에 있어서 比較的 이러한데 对한 一定한 양식이 없으나 그러나 그와같은 文書는 一定한 法的証明力を 갖는다.

이런 文書의 法的瑕庇 問題도 그때의 境遇에 따라 決定될 問題다.

條約에 對한 署名과 書信到達과의 関聯이 法的証明力を 높이는 것은 아니다.

東西獨基本條約과 関聯된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이 어떠한 法的 効力이 있는가라는 問題는 同書信의 内容과 同 書信이 어느 程度 條約에 拘束力を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음에 論議하고자 하는점은 이 問題에 對한 点에 局限되어, 同書信이 條約解釈에 法의으로 重要한 補充書가 될 수 있는가에 對하여는 論하지 않기로 한다.

同 書信內容은 蘇聯外務省에서 모스크바條約을 署名할때 聯邦政府가 전달한 書信內容과 同一하기 때문에 聯邦政府가 의도하는바가 무엇인가가 뚜렷하다.

1. 1969年 5月23日 체결된 條約法에 對한 意定은 有効한 國際慣習法에 대한 内容이다.

설사 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이 同協定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同 條約內容에 따라 解釈한다.

同 協定은 一般的인 解釈規定과 補充的 解釈方法을 同協定 第31條와 32條에 자기 달리 취급하고 있다.

補充的 解釈方法은 同協定에 따르면 一定한 한정된 경우에만 適用되도록 되어 있다.

즉 31条 規定에 따라 그 条約이 内포하고 있는 法的意義을 確認하거나 또는 이충적인 의의나 不確実한 점을 確實視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条約文 規定이 賢明치 못 하게 規定되어 있을 때를 前提로 한다. 이에 비하여 条約文書가 明確하여 賢明치 못한 점이 없을 때는 同協定 第31条에 따라 再確認의in 解釈만이 용납될 따름이다.

이런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意義를 갖는다.

兩獨間에 締結된 基本條約規定이 明確하면, 상기 協定 第31条를 근거로 한 解釈을 再確認 시키기 위하여 同協定 第32条을 근거로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解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同書信이 補充的 意義를 가질수 없으며 再確認에 不過하다는 結論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前提하여 놓고 볼때 同書信의 内容이 同協定 第32条가 말하는 “條約解釈의 補充的意義”를 갖는가 또는 第31条가 뜻하는 “條約解釈 一般的 規定”에 該當되는가를 먼저 確認해야 한다.

第31条가 規定한 一般的 条約解釈原則에 따라 条約解釈의 目的이 무엇이며 条約原文은 무엇이며, 条約前文과 附則 等等이 무엇인가가 確定된다. 이와같은 確定은 条約解釈에 커다란 艹을 지닌다.

(条約解釈方法으로 그 条約全体가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은 判示로서 認定받은 原則이다).

同協定 第31条 1項에 의하면 条約解釈은 信義誠實原則을 따르게 되어 있다.

本評価書作成者들이 問題視하고 있는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이 東西獨基本條約의 前後關係와 関聯된 것이라면, 独逸聯邦共和国의 意思表示決定에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条約解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參照되어야 한다.

2. 同協定 第31条 2項에 의하면 “前後關係” 成立이라는 것과 이와 関聯하여 “拡大解釈 될 수 있다”는 두가지의 可能性 이 있다. 즉

a) 条約締結과 関聯하여 条約當事者間에 合意한 内容과 条約에 関係되는 合意事項에 의하거나

b) 또는 条約締結과 関聯된 条約 当事者間에 作成한 文書 等이다.

同條文이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条約內容과 条約과 関聯된 条約締結의 全體精神을 뜻하는 것이다.

條約과 関聯된 条約當事者들의 合意는 書信交換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東西獨基本條約 第9条와 関係된 1972年 12月 21日字의 書信交換은 雙方間의 “合意”로 評價될 수 있다.

“独逸統一을 위한 書信”에 대하여 東獨側은 다만 受領이라는 確認만을 했다. 그러나 東獨은 同書信內容과 関聯된 条文에 對하여 “理解가 갔다”는 어떤 意思表示도 한적이 없다.

이러한 事實을 액면 그대로 解釈할 때 東獨이 西獨의 意思表示인  
同書信內容을 전혀 同意하지 않았거나 또는 同意할 意思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물이 할 수 있다.

제네바協定 第31條 2項에 該當되는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경우와  
다른 意義를 갖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란 覺書交換의 境遇며 이는 明示的으로 同覺書內容을 理解  
했다는 경우도 될 수 있으며 또는 그때 수교의 意義에 따라 동각  
서와 関聯시켜 該當條約을 解釈하겠다는 것을 認定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境遇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法을 통한 意思의 合意가 兩獨間에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이런 合意의 要件이 東獨側에 없었다. 모스크바  
條約에도 東西獨基本條約에도 이런 書信이 交換되어 따라서 그에 대한  
合意가 雙方間에 있었다는 것이 없다.

Steinberg氏가 말한 바와 같이 "獨逸 統一을 위한 書信"이 있  
으며 이는 모스크바條約을 根拠로 한 것이고 蘇聯과 事前에 合意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東西獨基本條約締結當時 이와 같은  
書信을 通하여 西獨聯邦政府의 意思表示가 있을 것이라는豫側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論할 必要가 없다. 설사 그와  
같은豫側이 可能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實質的인 同意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런 意思表示가 東獨側에 의하여 처음부터  
手交도 하지 않고 拒否當할것이 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同意에 不過  
하다.

이와같은 合意 역시 "related to the treaty"에 該当된다.

그러나 이는 書面形式에 極限된 것이지 그의 内容까지를 말 하는 것은 아니다.

意思表示의 内容은 合意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3. 東獨이 受領한 "統一을 위한 書信"이 同協定 第31条 2項이 뜻하는 条約解釈基本指針이라고 評価할 수도 있다.

獨逸聯邦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締結과 関聯하여 同書信을 作成했다.  
따라서 同書信이 同協定 第31条 2項 (b)의 前提要件을 充足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問題가 되는 것은 두번째의 문구다.

즉... "條約과 関聯되어 作成된 文書가 文書가 될 수 있는 것은 第3者로 부터 認定받아져야 한다".

第31条 2項 (b) 역시 條約當事者들의 意思의 合意를 요구하고 있다.

實質的인 同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테서 同條同項 (a) 와의 차이가 (b)에 있다. 따라서 一方의으로만 文書를 作成하고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놓문서를 接受만 하는것 가지고 31条 2項 (b) 가 말하는 條約解釈의 基本指針書라고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

同條同項 (b)에 該当되는 條約解釈指針이 되기 위하여는 相對方이 그를 是認하는 자세속에서 그의 文書를 接受해야 한다. 是認이란 반드시 明示的일 必要是 없지만 적어도 그려기 위한 단정적 인 태도는 있어야 한다.

즉 이 文書가 条約과 関聯한 法的 性格을 갖고 있으며 条約解  
析에 重大性을 띠고 있다는 等等의 단정적인 態度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一方의 意思表示가 他方의 意思表示와 合致 않될 때도 있다.

이런 境遇는一方의 意思表示가 条約解析에 어떤 影響도 주지  
못한다.

問題가 되고 있는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이 意思의 不一致  
속에서 전달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受領證明書”를 東獨側이 發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完全한 의사표시의 同意라고 말하기도 곤란하다.

만일 그렇기가 않다고 解析한다면 一方의으로 意思表示를 하고  
전달하면 “수락”이라는 말로 理解되기 때문이다.

“수락”이라는 말은 모든 國際條約의 意思表示가 말 하듯이 수락  
을 必要로 하는 特別한 意思表示다.

이와 같은 意思表示가 郵便物接受處에 到達했다는 確認만 가지 고는  
충분치 못하다.

郵便物 接受處에서 郵便物을 接受하는 公務員이 國際法의 要求  
하는 “수락”的 意思表示를 할 資格이 없다는 것을 無視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 公務員이 接受한 書信內容을豫測 못한다는 것도 당연  
한 귀결이다. 따라서 東獨이 西獨聯邦政府의 書信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接受했다는 것이 西獨側의 意思를 承諾한 것이라고

말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고로 이는 第 31 条 2 項( b ) 가 말하는 境遇에 該當될 수 없다. 그러나 Steinberger 는 西独政府가 모스크바 条約을 締結 할 당시 紙聯側에 伝達한 書信을 31 条 2 項( b ) 에 該當되는 意思表示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理由로서 “수락”이라는 것은 實質的인 承諾만이 아니라, “條約과 関係” 되면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옳은 見解다. 그러나 東獨側에 伝達된 境遇는 郵便物 接受處 라는 데서 모스크바 条約의 境遇와 판이하게 다르다.

4. 그러나 이必要한 意思表示에 대한 結論은 여러가지 다른 사項으로도 내려질 수 있다.

또다른 각도에서 檢討 되어야 할점은 東獨側의 沈默이 法的으로 重要한 價值가 있는것이 아닌가이다.

만일 兩当事者들간에 이書信에 對하여 論議가 있었다면 一方의 發送이 되었거나 또는 수락이 될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런 境遇가 兩獨間에 있었다면 어떠한 形式으로 듣지 속기록에 記錄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는 東獨이 “수락” 한 것으로 算이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法的으로 論難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런데 實제에 있어서 그런 論議가 雙方間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同條約을 署名하는 当日 東獨의 Kohl次官은 이를 否定만 하고 있었을 때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西獨聯邦政府가 그런 論議라 雙方間에 있었다고 一方的으로 繼続 主張한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속기록을 提出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提出이 없다해도 實質的으로 雙方間에 論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雙方間에 論議가 있었다. 하더라도 聯邦政府의 法的見解가 옳은것은 아니다.

書信에 대한 모든 内容을 재공포하지는 않았으나 東西獨基本條約을 署名하면 날인 1972年 11月 6日 聯邦共和国 文公部는 自体에서 定期的으로 発行하는 官報 Bulletin에다가 書信을 發表했다. 이 書信을 作成한 聯邦政府는 同 書信을 東西獨條約에 署名하는 同日에 東獨政府에 伝達했던 것이다.

따라서 西獨政府는 어떤의도하에서 東西獨基本條約을 둘이 할 것인가에 대하여 東獨側에 明確히 했으며 東書信이 基本條約의 解釈에 어떤 役割을 할 것인가를 分明히 했다.

Bernhardt教授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相對方이 明確한 반대의사를 내 놓지 않고 있는 他方의 一方的意思表示는 相對方에 의하여 "수락"된 것이라고 解釈할 수 있는가?

이는 신의성실의 原則에 따라 判断할 問題라는 것이 國際法의支配說이다.

一方의 国際法行為에 對한 他方의 침묵은 (일정한 期間이 經過하도록) 法律的 損失일뿐 아니라 나아가서 “承諾”으로 간주된다. 또한 長時間을 두고 침묵만 지키고 이에 對한 反對意思表示가 없을 때도 역시 同一한 結果가 發生한다.

또한 條約이 締結되기전에 一方이 一方의로 앞으로 締結될 條約은 어떻게 解釈되는 것이라고 의사를 表示했음에도 他方이 이를 反對하지 않고 있다가 條約이 締結 되었으면 이는 “수락”에 該當된다.

5. 앞에서 말한 原則에 따라서 東獨이 一定한 時間内에 그들의 意思表示(즉 西獨側의 一方의 意思表示에 反對한다는 意思表示)를 해야한다는 國際法의義務가 있다고 前提해 놓고 둘째 상기書信을 침묵으로서 받아 드린것이 “수락”이라는 法的効果를 갖고 왔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東獨이 繼続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이問題에 對한 대답은 아직 내릴수 없는 것이다.

1972年 12月21日字의 東獨 Kohl 次官의 演說은 이와 関聯하여 어떤 意義도 갖다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Kohl의 主張은 西獨의 意思表示를 “拒否”한다는 것 이 아니라 “무엇인지 아는바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東獨의 Winzer 外務相의 말은 明確한 反對意思表示

였다. 그는 이어서 条約当事者間에 合意본 것만이 条約解釈의 指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말을 Winzer가 하므로서 東獨은 西獨의 意思表示에正面으로 反对하고 나온 것이다.

西獨이 東獨에 伝達한 問題의 書信이 条約과 関係되는 解釈의 資料가 될수도 있다. 이런말은 東獨이 침묵을 지키므로서 그 書信을 文書로 認定한 것이라는 評価도 可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東獨이 상기 書信을 文書로 認定하기를 拒否했다는 것은 条約解釈의 基本的原則을 明確하게 限定지었다는 事實로서 分明하다. 그 書信이 明確히 밝히지 않았지 않았는가.라는 疑問이 發生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東獨의 外相演說이 國際法의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가 聯邦政府에 不確實 했을 것이다.

西獨이 發送한 書信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 東獨의 態度는 東獨에게 損失이 가는 行為라고 西獨이 損失가도록 解釈한다면 國際法去來의 신의성실의 原則에 따라 同書信은 条約解釈의 基本이 되며 따라서 東獨의 拒否는 不當하다는 結論이 내려질 수 있다.

東獨外務相 Winzer의 演說이 直接의으로 西獨에 가해진 것은 아니다.

그의 演說은 人民委員會에서 行하여진 것이며 이는 東獨自體 内部에 对하여 가해진 演說이다.

그러나 그의 演說間 前後를 살펴볼때 東獨內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西獨聯邦政府에도 加하여진 것으로 評価되어 진다. 따라서 法的으로 重要効力を 나타낸다.

自国内 国家機關에서 行하여진 發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自国内에서만 効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發言內容과 関聯된 外國에게 까지 効力を 나타낸다는 事實은 國際法去來에서 翁翁 있는 일이다.

이미 1969年 10月 28日 聯邦政府가 強調한 바와같이 宣言의 인政治的演說이 外國에 對한 政治的 프로그램이라고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法의効果를 겸有한 意思表示가 明確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國際社會에 公公然히 알려졌을때야 비로소 國際社會法去來에서 法的重要性를 갖는다.

各国의 國際關係에서 종종 사용 되는 비명록등과는 달리 自由國民에게 보면 宣言이 外務政策의 性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國際社會에 알리는 性格을 지니고 있는한 國際法의 性格을 나타낸다는 F.Berber教授의 主張을 높은 見解다 (参照 Lehrbuch des Völkerrechts I. 1960, S. 288).

그러나 이런 宣言은 直接的일 수도 있고 間接的일 수도 있다. Winzer의 發言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國際法의 性格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客觀的으로 判斷할 問題다.

東獨 Winzer 外務相의 發言要旨는 独逸聯邦政府가 基本條約을 東西獨統一을 단념한 炙約이 아니라는 解析에 정면으로 反對하는

발언이다.

그의 발언중에서 明確히 나타난 重要한 發言은 “東獨共產政府의 이름으로 明確히 밝히고자 하는점은 東西獨基本條約解釈에 있어 基礎가 되고 基本이 되는 점은 兩獨間에 合議본 條約文書와 이와 関聯된 보충속기록이다”라고 한점이다.

이런 内容의 發言은 즉시 東獨党機関紙 Nevez Deutschland에 報道되었으며 聯邦政府가 認識도록 했다.

이는 바로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에 대한 反對答信이며 对 西獨聯邦政府를 向하여 행한 發言이라는 것을 独逸聯邦政府는 認識해야 한다.

“对 聯邦政府에 행하여진 發言”이라고 評価하여 놓고 블때 問題는 明確해진 것이다.

以外에도 무시못할점은 Winzer가 그의 發言中 1973年 2月 26日의 東獨 代表 Kohl과 西獨代表 Bahr간에 주고 받은 發言과 関聯하여 그의 意思를 밝혔다는 点이다.

Bahr과 Kohl의 상기일자의 会談에서 東獨의 Kohl은 西獨政府의 見解를 반박했다. 이와같은 Kohl의 主張은 國際法의으로 블때 西獨政府의 見解를 東獨政府가 明示的으로 反對한것이라는 評価가 내려질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兩代表의 会談이 明確히 알려져 있지 않다. 問題되는 것은 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Kohl의 發言이 東獨政府가 “統一을 위한 書信” 내용中 어느 부분은 同意하고

어느 부분은 反對하는가에 대한 決定이다.

따라서 西獨聯邦政府는 이에 대한 資料를 提供해야 한다.

만일 西獨政府가 必要한 資料를 提出치 않는다면 또는 提出할 수 없다면 國際法의 신의성실의 原則에 따라 東獨이 繼続 "침묵" 만을 지키고 있다라는 主張은 存在할 수 없다.

그의 根拠는 Winzer 東獨外相의 發言이 西獨政府의 意思表示에 正面으로 反對하는 意思表示로 評価되어지기 때문이다.

1973年 6月20日 兩獨이 東西獨 基本條約을 비준했다는 비준각서를 交換하므로서 法的評價問題가 境遇에 따라서 약간 달라졌다고 主張할 根拠도 없는 것은 아니다.

비준각서의 内容이 어떠한 것인지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独逸聯邦政府가 1973年 6月20日의 批准覺書에다가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 内容과 同一한 内容을 記錄했는지도 불명확하다.

만일 聯邦政府가 "統一을 위한 書信" 内容을 批准覺書에다 點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는 問題化되고 있는 "獨逸統一書信"이 제네바協定 第31条 2項(b)에 該當될 수 없다.

東獨政府가 이를 反對했으며, 그 書信內容을 認定치 않았기 때문이다.

聯邦政府가 基本條約批准文書外에 다른 形態의 文書속에 上記 書信의 内容을 담아 伝達했다면 즉 1973年 6月6日 西獨聯邦議会가 立法한 法條文 (BGRI.II 421-429) 을 伝達했다면 이를 東獨이

手交하므로서 問題의 “書信”이 제네바協定 第31条 2項(b)에  
該當되는 것이라고 評価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問題에 対하여는 그렇게 간단히 結論을 내릴 수 없다.  
이런狀況下에서도 답을 내린다면 東獨이 먼저는 “書信”을 認定  
치 않았으나 此後에 상기 法條文을 手交하므로서 東獨이 다시 한번  
그 法條文에 対한 反對의 意思表示를 해야 할 法的義務가 있다고  
結論 내릴 수도 있다.

獨逸聯邦政府가 東獨에게 手交하는 東西獨基本條約 批准文書속에  
어떤 内容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하여 東獨政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事実이다.

東獨政府代表가 批准書 즉 條約締結에 바탕히 反對했어야 한다  
는 다시 말하여 보자면 問題되는 그 部分을 수락하기를 拒否  
했어야 한다는 主張도 可能하다.

타면에서 볼때 東獨 外相 Winzer가 基本條約의 拡大解釈을  
明示的으로 反對한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같은 發言으로 東獨은 이미 批准書를 交換·하기전에 西獨이  
一方의으로 “獨逸統一書信”을 發送하고 條約을 拡大하는 것에 反  
对한다는 意思表示가 明確히 있었다고 主張되어 질수도 있다.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聯邦政府가 批准文書를 아무런 意義  
없이 東獨이 수락한것은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수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評價가 가하여진다.

批准文書를 交換할때도 兩獨의 見解는 過去와 같았고, 또한 양측

이 서로 다른 見解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처지였으므로 상기 "書信"은 東獨이 "接受"했다는 것以外에 아무런 變化가 없다는 結論이 따른다.

바로 이런 結論의 明確性은 本評価者들이 자신할 수 없다.

時間的 여유도 없고 充分한 資料도 없다는 것이 출직한 짐정이기 때문이다. 重要한 法的 結論을 내리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決定的 資料가 必要하다.

특히 Bahr 西獨聯邦長官과 Kohl 東獨 次官의 会談內容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方式과 狀況下에서 上記 問題의 書信이 전달되었는가라는 資料가 本 法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열쇠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外에도 必要한 資料로서는 1973年 2月 26日 Kohl 博士가 Bahr 聯邦長官에게 어떤 内容의 말을 했으며 基本條約 第10條에 따른 批准文書의 内容이 어떠했는지가라는 것이다.

以上 作成者

教授 Karl Doebring 博士

Georg Ress 博士,

2. 1973年 6月 14日字、東獨 党機關紙 Neues Deutschland는 다음과 같이 報道 했다。

- 條約은 政策에 有益토록 作用할 것이다. -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条約締結에

대한 獨逸民主共和国 Otto Kxinzer 外相의 演說

의장님!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1972年 12月21日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政府間에 署名한  
兩獨間에 基本條約에 關한 法律 草案이 여러분들에게 提出되었읍니다.

이는 同條約을 確定짓기 위한 마지막 作業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國務委員會의 委任을 받아, 同草案 理由를 說明하고자 하는 本人의 發言을 許容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2年 12月21日 獨逸民主共和國 수도 백림에서 兩獨이 署名한 基本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에 한하여 歷史의 인큰 意義를 갖는것이 아니라 보다 나아가서 구라파의 平和外에도 全世界 平和를 위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同條約의 締結이 世界的으로 환영 받고 있는 것입니다.

平和를 사랑하는 人間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가 直接的으로 代置되어 있다는 現實下에서 國家間의 関係正常化를 위한 基本의 値條約的規定은 커다란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兩獨間에 어떤條約規定도 없었던 20여년간의 関係는 구라파의 政治風土에 많은 負擔感을 안겨 주었읍니다.

구라파 국가들의 国家社会秩序가 서로 相異하여 平和協力이 상치되어 있고 國際機構의 휴메니즘活動이 沮害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오늘날까지 解決치 못한 여러 가지 問題는 이제 부터 解決되어 질수 있으며 이는 同條約을 署名하는 兩獨의 努力으로서만이 아니고 구라파 모든 国家들의 努力에 의하여 解決될수 있겠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兩獨間의 関係正常化의 始作은 구라파 국가들의 相互協力과 理解, 그리고 政治的 分위기에 많은 影響이 가리라는 것을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 - 持続的인 平和를 위한 真正한 前提条件 -

獨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에 基本條約의 締結은 구라파 政治風土의 새 時代의 始作일뿐만 아니라 구라파 政治發展의 양성적인 變化에 크게 寄与하는 것입니다. 魯聯共產黨 中央委員會 第一書記 브레즈네프는 東獨을 親善訪問한 자리에서 구라파는 冷戰에서 繫張緩和로 變化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구라파 政治風土變化는 独逸民主共和国이 持續的인 平和 政策과 会談成果에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발생된 結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커다란 功獻은 당연히 東獨에 돌아와야 한다고 감히 東獨이 主張할 수 있습니다.

國際社會內의 힘의 関係는 平和를 위하여 變化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것은 蘇聯國力의 신장이며, 東獨 역시 永遠히 그리고 불가분적 要素로서 包含되어 있는 社會主義 国家共同体의 國力增強입니다.

우리国民의 희생적 努力은 우리共和国을 強力한 国家로 만들었읍니다.

그리하여 東獨이 구라파내에서 社會主義平和政策을 遂行하는데 커다란 功獻을 할수 있겠금 했으며, 世界平和의 原動力으로서 커다란 役割을 하도록 했고 구라파의 安全과 世界의 安全에 기여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政府는 모든 우리国民에게 感謝를 들이며 이를 認定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世紀동안만 해도 破壞의 世界大戰이 두번이나 이구라파를 戰場으로 만들었읍니다.

이같은 구라파大陸上에 持続的인 平和와 安全의 保障을 위한 前提条件이 両獨間의 基本條約 締結로 인하여 탄생된 것입니다.

평화공존정책은 서구라파政府와 社會로 부터 認定되어 지고 있는 現実입니다.

보다 改善 되어야 한다는 風土는 구라파国民의 意志와 希望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라파는 보다 安全化 되어가고 있으며, 第三次 世界大戰은 事前에豫防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길이 冷戰에서 繁張緩和로 变하게된 決定의 標石은

蘇聯과 独逸民主共和国에 締結된 条約, 와르샤와條約 및 独逸聯邦共和国과 폴란드人民共和国間에 締結된 条約의 發効 입니다.

모스크바條約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社會主義國家들과 締結된 条約의 母體로 評價됩니다.

이條約의 核心은 国境不可侵과 国家間의 完全主權의 不可侵 및 社會政策變化의 不可侵에 대한 구속력 있는 國際法的 認定입니다.

이는 2次大戰의 終結과 구라파에서의 前後 變遷에서 나온 結果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滅亡은 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잔재하고 있는 나치 보 복주의자들을 점차적으로 索出키 위한 길을 이 条約들이 開放시켜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西獨의 지난 政策이 좌초되었고 世界政策發展의 現實主義 가 멸시될 수 없다는 것을 西獨의 브란트-뮐政府가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西獨이 社會主義欧羅巴와 國交를 정상화시킬 철호의 機会가 바로 오늘 날입니다.

비로서 西獨政府는 西獨国民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소리에 일체 감을 갖다주었습니다. 와르샤와條約과 모스크바條約은 欧羅巴政治 상황변화에 決定的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条約이 西伯 林에 对한 4大強大国協定을 可能토록 했습니다.

兩獨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백합條約은 이들 協定과 一致합니다. 两獨基本條約은 西方側이 賛明도록 하는데 커다란 寄与를 했습니다.

兄弟国家共同体에 確固하게 예속되어 있는 社会主義国家 東獨은 고립이라는 대가를 원치 않는한 이 条約을 빼이콧하지 않을 것입 니다.

明確한 事実을 뚜렷이 밝혀두어야 겠습니다 즉 東西独基本條約은 明確한 条約体制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구라파 安全에 기여하는 견고한 초석이다.

이런점을 根拠로 党中央委員會 第9次會議에서 党 第1書記 Erich Honecker 동무는 다음과 같은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条約의 批准과 効力發生으로 말미암아 兩獨間의 正常化의 새로운 章이 열렸다.

이条約이 구라파 政治風土에 보다 強한 기여를 할것에 疑心치 않는다고……

獨逸聯邦共和國과 체코간에 進行되고 있는 協商이 成功的으로 끝날 것이며 다음날에는 兩國間의 条約이 締結될 것이라는에 充分한期待를 겁니다.

나치政權에 의하여 最初로 희생당한 체코国民들이 犯罪的인 원한協定의 無効를 獨逸聯邦共和國에 要求한 것은 정당요구였으며 우리 東獨政府가 재차 支持하는 바입니다.

이모든것이 欧羅巴協力과 持続的인 平和形成에 根本的으로 功獻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이며 鮑聯共產黨 第一書記 브레즈네프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數百万의 人命을 희생시켰으며 거대한 破壞를 가져왔던 侵略

戰爭을 되풀이 치렀던 欧羅巴는 영원한 過去에 예속되어야 한다.

戰爭으로 인한 破壞대신 새로운 大陸이 形成되어야 하며 平和의 大陸, 相互 信賴하는 大陸, 모든 國家間에 相互 利益이 되도록 協助하는 大陸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热望 하는 바이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5個項目에 達하는 欧羅巴平和를 위한 計劃을 東獨 統一社會黨 第8次 全党大会에서 採択되었는데 이를 独逸民主共和国이 充實이 履行하는데 커다란 功獻을 했습니다.

獨逸民主共和国政府는 國際法을 根拠로 하는 西獨과의 関係正常化樹立의 委任을 받았습니다.

1972年 4月18日 独逸사회통일당 당수 호네커氏가 소피아를  
礼訪했을때 이런 任務를 独逸民主共和国이 実現할 것을 천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네커씨는 「独逸聯邦共和国이 블랜드 人民共和国 및  
蘇聯과의 条約을 비준한후 우리와의 関係正常화를 위한 意見을  
交換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必要한 國際法的合意에 到達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호네커氏의 提議는 欧羅巴의 法的 및 政治的 現實에  
合致합니다.

1945年 滅亡한 独逸諸國의 땅위에 国家社会秩序가 各己 反對되  
며 서로서로 完全獨立된 두개의 主權独逸國家가樹立된 것입니다.

따라서 両國間의 関係는 友好的인隣接国家로서 正常的인 國際法的 関係가樹立될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것입니다.

### 東獨國務委員會의 主導權行使

이와같은 根本을 바탕으로 独逸民主共和國의 國務委員會는 両獨基本條約 탄생에 主導的 行使를 했으며 이에 対한 協商을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政府는 양성적결과를 成就할려고 많은 努力を 했습니다. 独逸聯邦共和國政府가 蘇聯 및 폴란드와 条約를 締結한後 우리와의 関係正常化를 위한 努력을 했기 때문에 東西獨 基本條約이 탄생된 것입니다.

東西獨基本條約과 이와 関聯된 속기록 및 補充的속기록 등은 하나의 훌륭한 쇄어투레이의 산물입니다.

이들은 両側의 合理的인 理解의 反応입니다. 또한 이를 条約은 国家社會秩序가 서로 相異한 国家들간의 어렵고複雜한 問題들을 平和的共存에 依하여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立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両獨間의 基本條約은相互獨立된 主權 国家간의 関係正常化를 위한 國際法의인 正常化 条約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国家社會秩序가 서로 판이하다고 하여 冷戰의 대立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結果는 오늘날과 같은 関係正

常化를 不可避 하게 갖다주었던 것입니다.

戰後 30 餘年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西獨側에 現實主義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개의 동등한 國際法 主體로서의 独逸民主共和國과 独逸聯邦共和國은 國際法的으로 구속력 있는 관계정 상화조약을締結했읍니다. 이條約의 기둥은 同條約 第 2 条에 規定된 義務입니다.

유엔憲章에 規定된 바와같은 条約의 目的과 原則를 遵守한다는 것이 同條約 第 2 条의 内容입니다. 以外에도 兩獨이 主權의인 同等性을 갖고 있다는 原則입니다. UN 總會는 1970 年 10 月 24 日 다음과 같이 宣言했읍니다. 이에 따르면 主權의 同等原則을 뜻 한것입니다. 모든 国家는 法的으로 同等하다 즉 모든国家는他国家의 國際法主体를 尊重할 義務를 갖고 있다 領土의 不可侵性과 国家의 政治的 獨立性은 不可侵이다.

基本條約締結에 따라 条約當事者인 東獨과 西獨이 履行해야 할 主權同等性에 該當되는 것은 國際法 原則의 宣言에 따른 것이며 나아가서 모든国家의 権利와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 体制를 선별하고 発展시키는 것입니다.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서 兩獨間의 条約이 國際法의in 性格을 갖고 있다는 것은 疑心할 必要없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國은 백합條約 第 2 条에서 合議본 바와같이 西獨과의 関係 正常化 基本原則을 絶對的으로 遵守했으며 앞으로도 遵守 할 것입니다.

## 領土不可侵의 絶對的 尊重

基本條約 第3条는 両國間의 武力衝突 및 危脅에 대한 拠棄를  
規定한것 外에도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現存하는 國  
境不可侵의 強化를 要求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両獨間의 絶對的 領  
土不可侵을 宣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림條約은 論難여지도 없겠금 明確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武力行使 禁止의 合意는 無限定으로 効果를 나타내  
겠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同條約 第3条와 前文을 다음과 같습니다. …國境의 不可侵과  
國境不可侵의 尊重 및 現國境線 속에서 欧羅巴 모든国家의 主權에  
대한 尊重은 平和를 위하여 基本的인前提条件이다 라고 되어 있  
는데 이는 모스크바 条約 第3条와 와르샤와條約 第1条와 一致되  
는 것입니다.

上記 3個條約 当事国들이 오늘날 存在하고 있는 欧羅巴 各국의  
國境을 尊重하겠다는 宣言은 國際法의 承認이며 主權의 安全을  
保障하는 것입니다.

協商을 통한 合意에 따라 現國境線의 平和的 变動이 可能하다는  
獨逸聯邦国内에서의 指導層의 主張은 政治的 現実主義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오늘날 独逸聯邦共和國內에서는 우리 東獨파의 合意에 따라 現在  
의 両國間의 國境을 없앨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國際法의 으로 청반대되는 国家秩序와 社会秩序를 갖고 있는 両國間에 이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르며 상치되는 군사동맹체에 加入하고 있는 両국間에는 完全히 不可能한 것입니다.

平和共存原則에 一致되는 関係正常화와는 西獨의 의도가 完全히 빗나가는 것이며 그와같은 試圖는 또한 合意에 到達할 수 없는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條約 第5条를 보다 重要視합니다.

第5条는 欧羅巴 심장부에 있는 両獨의 歷史的責任을 明白히 한 것입니다.

이는 전구라파의 協力과 安全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상의 것 외에도 앞으로 다가올 헬싱키 欧羅巴安全會議와도 直接的인 関聯을 맺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비엔나에서 開催될 欧羅巴軍備縮小會談과도 聯繫되어 있는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앞으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軍備縮小를 위한 모든 世界的 努力を 繼続 支援할 것입니다.

實体없는 '内獨'義務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의 立場에서 물때 平和共存이라는 것이 戰爭을 防止하기 단을 위한 手段은 아닙니다.

平和共存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内包하고 있습니다.

이 平和共存이란 말은 相互利益을 토대로한 國家間의 平和的 協力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原則下에서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을 대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原則이 백립조약 第7條와 그에 対한 보충속기록에 反映되어 있습니다. 関係正常化는 實質的인 人道主義的 問題를 規定할때만 可能한 것입니다. 經濟分野, 學術과 科學技術, 交通, 法律去來, 通信, 保健, 文化와 体育 公害 및 其他 다른 関心있는 分野 등의 協定을 締結할 수도 있습니다.

자명한 事実은 이모든 協定의 締結이 共同協力이 可能하다는前提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憲章과도 一致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동안 独逸聯邦共和国에 期待하고 努力한바와 같이 相互有益을 위한 平和的協力이란 主權同等性의 原則, 領土不可侵의 原則 및 謹謗禁止原則을 철저히 遵守한다는데서만이 可能한 것입니다.

基本約條 第7條에는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이 雙方이 이미 第3國과 締結한 國際協定과 같은 性格의 共同協力에 관한 協定을 締結토록 되어있습니다.

東西獨의 関係는 第3國과의 関係와 같은 것이 아니며 어떤 特殊한 関係라고 独逸聯邦共和国 聯邦議會가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錯誤이거나 또는 國家를 잘못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不當한 前提下에서 東獨이 西獨의 일부다라는 不當한 主張이 나오고 있는 実情입니다. 이는 바로 “實体없는 内獨義務” 를 뜻하는 것입니다.

兩獨間의 関係基本에 관한 백립條約의 規定은 明確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의 一部가 아니며 또한 反對로 独逸聯邦共和国 역시 独逸民主共和国의 一部가 아니라고…….

兩獨間의 関係正常化를 위하여는 西獨이 東獨國民은 西獨國民이 아니라는 明確한 態度를 취하고 오늘날까지 使用하고 있는 不法의 国籍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絶對的인 것입니다.

두개 主權國家, 独立國家가 서로 다른 두개의 國民을 갖고 있다는 엄연한 事實을 独逸聯邦共和国이 앞으로도 繼続 無視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東獨代表團은 이런 意味에서 協商速記錄을 作成할 때 말한 것입니다. 즉 “独逸民主共和国은 東西獨基本條約이 國籍問題를 널어준다고 解釈한다” 라고.

앞으로의 協商에 依하여 解決될 이 國籍規定이야말로 兩條約當事國의 利益과 그들 國民들의 利益을 위한 平和的 協力を 真正으로 促進시킬 것입니다.

唯一合法性의 主張은 現實主義을 破壞

東西独基本條約 第4条와 6条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同条項들은 条約当事者인 両独逸国家間의 어느 独逸国家도 自國의 領土를 넘은 어떤 主權行使도 해서는 안되어 国際社会에서 다른 独逸国家의 国家代表權을 行使할 수도 없고 他 独逸国家의 国名으로 行使해서도 안된다고 強調하고 있습니다.

이는 國際法의 基本的인 要求입니다.

백범條約속에 明示되어 있는 이를 条文은 特別한 政治的 法의 意味를 갖고 있는데, 이는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과의 関係에서 오늘날 까지 明確하고 자명한 國際法原則을 무시했다는데서 이와같이 規定된 것입니다.

언제는 上記 두개의 条文으로 말미암아 西獨이 오직 國際法의 基礎的 原則을 尊重할 義務 밖에 없습니다.

보복주의자들인 独逸聯邦共和国이 数年동안 끈질기게 主張해온 唯一合法性은 現實主義을 破壞했던 것입니다.

東獨이 主權國家로서 第3國家와 国交를 맺고 國際機構에 加盟할려는 것을 沮止하려고 努力한 独逸聯邦共和国의 시도는 破滅하고 말았습니다.

東獨에 대한 外交孤立政策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이 現在 84個 国家와 国交를 正常化시키고 있다는 엄연한 事實은 이를 立証하는 것입니다.

独逸社会統一党 中央委員會 第9次會議에는 선의에서 蘇聯共產黨

第一書記 브레즈네프가 東獨을 親善訪問했을때 友情의 共同체뮤니케이션을 發表했던 것입니다. 이는 歷史的 意味를 特別히 確認하는 것이 있음을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的 承認은 欧羅巴에서 成功的으로 이끌고나가 社會主義政策이 後退되지 않았음을 立証하는 것이며 社會主義 独逸国家에 對한 外交的孤立政策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立証한 것이다”라고.

独逸民主共和国은 모든国家에게 感謝를 드리는바 입니다.

여기에는 魁聯과 社會主義共同體에 속하는 다른 国家들이며 이들은 國際的 同等權을 成就할려는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의 闘争을 끝까지 支援한 国家들입니다. 이들 国家들에 感謝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이들 国家들은 独逸民主共和国의 政策을 支援하므로서 國際緊張緩和에 지대한 功獻을 한 것입니다. 東西獨이 같이 第3國家들과 国交正常化를 갖는다는 것은 世界平和를 促進시키며 緊張을緩和하는데 가장 適切한 手段이라도 独逸民主共和国의 数次에 걸친 主張이 現實的으로 옳다는 立証을 한 것입니다.

東西獨의 関係는 國際法의으로 拘束力を 가진 規定이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独逸聯邦共和国 놀트라인 베스트 화렌주 首相 퀸씨는 独逸聯邦共和国 上院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東西獨基本條約은 独逸前後歷史를 終止符시켰습니다。独逸戰後歷史의 終止符라는 것은 過去에 우리 聯邦政府가 끈질기게 主張해온 唯一合法主張 즉 할슈타인原則, 國際法理論의 国家同一性의 原則 등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独逸聯邦共和国의 戰後歷史였다는 것은 옳은 表現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원 주정부수상이 말 했다고 해서 独逸聯邦共和国의 政策이 完全無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繼續 分斷國의 理論인 東西獨의 特殊關係를 主張하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独逸聯邦政府의 見解에 对하여 独逸民主共和国은 兩獨間의 関係正常化基本과 平和的共存은 暫定의 될 수 없으며, 永久의 基本이며 永久의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兩獨間의 関係의 持続의 國際法의 拘束力を 갖고 있는 規定은 欧羅巴安全을 위하여 永久不滅의 것입니다.

兩獨基本條約 自体가 永久의으로 되어 있습니다. 兩獨이 合意한 國際法의 条約規定이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内容의 条文은 条約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수 없습니다.

東西獨基本條約은 無期限의이며 어떤 時期에는 解約된다는 条件이 없습니다.

獨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締結한 基本條約을 비준하는 議회 회기말에 独逸聯邦共和国 外相 웰氏 역시 모스크바條約,

와르샤와 条約, 서백림에 관한 4大国協定 및 東西獨基本條約들은 单一의 全体性을 形成했다고 즉 同一하다고 말했습니다.

以外에 웰 外相은 注目할만한 發言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國際政治 조류의 주류인 繁張緩和趨勢속에서 兩獨間의 關係만을凍結시키고 유엔에서 우리의 자리를 抛棄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은 이같은 發言에 전적으로 찬동하는바 입니다.

우리 政府는 이같은 主張을 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유엔憲章이 規定한 目的과 原則를 절대준수한다는 의도를 갖고, 백  
립條約이 規定한대로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은 유엔會員國이 될 것 입니다.

党 中央委員會 第9次會談때 党 第1書記 호네커氏가 말 한바와  
같이 独逸聯邦共和国은 20年前부터 N A T O의 會員國이 있으며  
西歐羅巴同盟體의 加盟國이 있읍니다.

指導의인 位置에 있는 본의 정치가들은, 이들중에는 물론 西獨聯  
邦首相과 聯邦外相도 包含되는 것으로서, 最近에 다시금 다음과 같  
은 인상적인 말을 했읍니다. “北大西洋軍事同盟機構와 西歐羅巴  
共同體에 独逸聯邦共和国이 繼続 머물러 있을 것이며 繼續 이 機  
構를 發展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繼續 N A T O에 머무른다는 것은 社會主義國家, 여기에는  
東獨도 包含되는 것으로서에 対抗하는 政策을 繼續 밀고 나가겠다  
는 것을 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事實을 간단

히 넘겨버릴수 없는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蘇聯이核心이되어 있는社会主义国家共同体의發展에 지대한功獻을 세웠습니다.

호네커 등무가 말 한바와 같이 資本과 労動, 諸國主義와 社会主義로 대峙 되어있는 두개의 独逸国家가 오늘날 存在하고 있습니다.

歐羅巴安全과 平和의 理解속에서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兩獨關係가 規定되어 있다고 우리는 主張하는 바입니다.

資本主義와 社会主義는 대峙 되어 있는 狀態이긴 하나 이것이나 저것이어야 한다는 極端的인 것은 아니라는 데닌의 原則은 繼續实行되고 있는 것입니다.

独逸聯邦政府는 東西獨基本條約이 独逸統一問題를 유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解釈할려고 最近에도 재차 시도했읍니다.

이와같은 자의적인 条約解釈의 시도는 1973年 2月 26日 西獨의 首都 본에서 바-르 聯邦長官과 만났을때 우리 政府의 國務委員室 次官 쿨博士에 의하여 拒否당했읍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이問題에 对하여 明確히 다시 한번 強調 하겠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은 두개의 主權 國際法의 主體다. 이런 意圖에서 兩獨은 1972年 12月 21日 東西獨基本條約에 署名된 同條約은 이와같이 國際法의으로 規定되어 있다. 基本的인 歷史的 事實은 前独逸帝國 國土위에 두개의 独立된 主權 国家가 建立되었으며 이 두개의 国家는 根本的으로 各己 다른 国家秩序를 갖고 있다. 이런 兩国家

의 関係 發展을 위하여 모든国家의 主權同等原則이 지체없이 尊重되어 쟁여한다는 것은 決定的인 前提条件이다.

### 徹底한 履行과 死守

이와 閑聯하여 本人은 独逸民主共和国의 国民의 最高代表機關앞에 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確固히 하는바 입니다;

國際法의으로 拘束力이 있으며 法의으로 有効한것은 東西独基本條約과 그의 補充速記錄이 作成될때 條約當事者들이 合意본 事項이다. 바로 이 点이 條約解釈에 唯一한 基本이 된다. 独逸民主共和国은 누차 強調하노니 우리政府는 이 原則을 徹底히 지키며 履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政府는 이 條約과 補充速記錄에서 나오는 義務를 充実히 履行할 것이며 거기에서 認定한 權利를 充実히 行使하고 또한 独逸聯邦政府도 同一할 것이라는 것을 期待한다.

이렇게 될때에 비로소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両獨間의 協力이 可能할 것이며 両獨国民의 利益에 功獻할 것이다.

親愛하는 의원여러분!

独逸民主共和国은 國際聯合機構의 意義를 特別히 높이 評価하는 바입니다.

이 機構는 유엔속에서 헛트려 팽성주의와 그를 따른 戰犯들에 对한 反膨脹主義鬭爭을 成功的으로 이끌고 나갔으며 同時に 平和的

共同協力, 国家の 独立, 世界平和의 維持를 위한 2次世界大戰의  
희생자들에 대한 保護·等等에 관한 義務도 成功시켰던 것입니다.

社会主義 独逸国家로서 独逸民主共和国은 滅亡한 独逸諸國의 諸國  
主義的 占領政策의 犬해를 完全 滅亡 시켰던 것입니다.

戰爭의 재앙하에서 신음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後世代를 保護하기  
위한 우리政府의 努力은 유엔의 노고이며 이를 우리는 해를 넘기  
고 날을 거듭하면서 強力히 支援 했던 것입니다.

基本條約에 관한 協商과 더불어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  
은 UN會員국이 되는데 必要한 措置를 취할 것에 合意 보았던  
것입니다.

유엔加入에 必要한 書信交換이 兩獨代表에 依하여 1972年 11月  
8日 署名되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어제인 1973年 6月 12日 유엔安保理事会에  
加入申請을 提出 했습니다. 역시 独逸聯邦共和国도 加盟申請을 提  
出할 것입니다.

우리는 UN安保理事会가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의 加入  
申請을 즉시 審查하고 UN總會에 이 두 中歐羅巴 国家들의 加入  
을 推薦하기를 希望하는 바 입니다.

#### UN加盟国 會員의 커다란 政治的意義

蘇聯, 英国, 美国 그리고 佛蘭西政府는 1972年 11月 9日 独逸民

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이 UNO에 加入하는 것을 全的으로 支援하겠다는데 合意 보았습니다.

유엔總會는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국의 加入에 對해 9月会期가 始作되면서 부터 取扱할 것이豫想됩니다.

유엔機構에 独逸民主共和国을 加入시킨다는 것은 國際法과 政治의 큰 意義를 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큰기대속에서 맞이 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独逸民主共和国은 同等權의 UN會員國으로서 유엔機構의 目的과 原則를 이행하는데 가장 有効한 寄与를 할 수 있을 것이며 戰爭의 참화앞에서 모든 人間을 구출하기 위하여 反ヒートリ集団과 戰爭할 것을 주저치 않을 것입니다.

歐羅巴의 安全問題, 國際政治속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体制가 相異한 國家間의 相互協力問題를 보다 強化시켜야 할 時期속에서 両獨의 UN加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両獨의 UN加入은 繼張緩和에 對한 世界的인 趨勢와 蘇聯을 위시로한 社會主義國家共同体의 위대한 平和프로그램을 実現시키는데絕對의in役割을 할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 國務委員會議 이를 으로 本人은 独逸民主共和国 国民代表 最高機構에 영광스럽게 다음과 같이 호장을 하는 바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UN加盟國으로서 全世界의 平和維持와 現存하는 紛争除去, 軍備縮少, 植民政策에 對한 戰爭支援, 人種差別 政策 및 아파타이트 政策에 對한 戰爭等等에 積極的으로 參與함을 宣言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

東西獨基本條約이 公布後에 그의 完全한 効力を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明確한 事実입니다.

따라서 独逸民主共和国은 처음부터 이에 대한 批准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具体的인 例를 들어 보자면 條約이 發効해야 비로소 양독간의 交通往来와 親族訪問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東獨國境地帶에 居住하는 独逸聯邦共和国의 国民들에게 一定한 東獨地域에 限定하여 訪問機會가 열릴 것입니다.

東西獨基本條約이 効력을 發生하고난 後에 両獨 代表들이 모여 保健에 関한 協力問題를 協商할 豫定이 있으나 이를 지체없이 즉시 論하자고 独逸民主共和国이 独逸聯邦共和国에게 今年 3月에 提議했습니다.

그리고 遙信協定을 締結키 위하여 이미 數個月前부터 具体的인 協商이 進行中입니다. 그리고 1月부터는 両獨國境線의 표시문제 및 境界地域과 関聯된 分界委員會가 両側에서 나와 協議에 임하고 있습니다.

以外에도 独逸民主共和国은 両獨間의 法律協助問題를 6月中旬부터 論議할 準備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両獨關係에 負担을 주었던 모든問題에 대하여 신실주의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解抉될 수 있는 이 어려운 問題를 어느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両獨間의 國際法의 正常關係가 両獨 国民의 利益에 功獻한다는  
것이 이미 立証되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이 東西独基本條約을 条文이 明示한 날말과 條約精神에 立脚하여 充実히 履行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明白히 宣言하는 바 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善意와 合理性을 가지고 條約을 履行할 것이며 또한 独逸聯邦共和国도 그와같은 応答을 우리에게 보내을 것이라는 것이 期待 되는바 입니다.

社会主義体制와 合致될 수 없다는 것을 認定 하면서도 좋은 隣接国과의 同等權의 関係를樹立시키기 위한前提条件이 있다는 것을 強調 하는바 입니다.

平和共存의 政策은 오늘날까지 적대관계에 있던것에 종지부를 찍고 両國家間의 平和的으로 規定된 相互關係를樹立하기 위한 문호를 開放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平和共存을 할 準備가 独逸民主共和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正常關係와 좋은 隣接国家가 될려고 努力할 것입니다.

이는 백립조약의 精神이기도 합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政府가 同一하게 할 것이라는 期待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國際社會發展의 課題와 完全一致되는 것이며 持続的인 平和 및 좋은 隣接国家끼리의 相互協力의 새 時代를 위한 欧羅巴大陸에 存在하는 것입니다.

우리政府는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이 安全과 協力에 관  
한 全歐羅巴會議에 絶對的인 寄与를 할 것이라는 것을 期待하는  
바 입니다.

이런것은 平和의 大陸, 相互信賴의 大陸, 및 相互有益한 共同協力  
의 大陸이 歐羅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國務委員會의 委任에 따라 本人은 尊敬하는 議員여러분들에게  
東西獨基本條約을 批准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바 입니다. (끝).

社会統一党 第8次全党大会決議에 对한 實踐의 持続的인  
前進

(1973年 5月29日 日字 党 機関紙 Neues Deutschland  
報道)

党中央委員会 第9次 會議에 对한 政治局의 報告

親愛하는 여성동무, 남성동무!

第8次 中央党大会에서 세웠던 우리의 課題는 第9次 全党大会가  
이루어지는 때와 같이 하여 우리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主導的役割은 3年째로 들어섭니다.

1973年 11月1日부터 1974年 2月17日까지의 党選舉는 지금  
까지 成就시킨것을 다시금 点檢하고 第8次 全党大会에서 決議한

내용의 実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確固이한 機会가 우리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國内外의인 中央委員會의 政治活動을 論議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 問題는 根本的인 檢討가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武力으로 解決할 수 없는 것입니다.

蘇聯共產黨의 平和프로그램은  
共同行動의 프로그램이다.

重要한 國民經濟課題를 解決하기 위한 決定的인 時期인 오늘이 벌서 第8次全党大会가樹立한 課題 施行의 第3次年度가 되었습니다. 第3次年度가 된 오늘날 우리는 独逸民主共和国内의 發展의인 社會主義社會形成을 위한 内外의인 조건을 현저히改善시켰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外務政策의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第8次全党大会가 2年이 經過한 오늘날 独逸民主共和国이 82個國家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中에는 블란서, 영국, 아태리, 일본 모든 스칸디나비아 国家들 및 거의 모든 西歐羅巴国家들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아프리카 国家 南美諸國 및 濱洲, 그러니까 이지구상의 모든 国家들과 外交正常化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美國과의 国交正常化도 時間問題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

民主共和国과의 常設代表部交換도 문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유엔에 代表部를 設置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UN의 여러 뜻있는 特別機構의 同等權의 會員國입니다.

유엔加入 역시 独逸聯邦共和国과 함께 時間 問題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를 가로지른 장막은 完全히 사라졌읍니다.

勞動者 農民의 社會主義國家로서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的 地位는 強化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게 되었읍니다.

國際生活에 있어서의 東獨의 同等權의 參与는 保障되었읍니다.

이와같은 發展은 独逸民主共和国의 모든 国民을 자부케 만들었읍니다.

또한 이는 社會主義國家로서의 独逸民主共和国의 모든면의 強化와 社會主義共同体에 当然한 예속서인 東獨國民의 利益을 위한 絶對的 인 담보며 平和保障을 위한 利益이라는 第8次 全党大会의 決議를 再 確認한 것입니다.

親愛하는 여성동무, 남성동무 여러분!

歷史의 發展을 繼続 指針하는 平和와 社會主義의 前進은 社會主義 生活의 利益, 社會主義의 幸福한 現在,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을 위한 国民의 鬪爭을 開放시키고 있다.

우리全体 社會主義 国家同盟体의 確固한 囘結, 駐聯의 強力한

國力 및 強力한 指導力이 数十年동안 解決되지 못 했던 國際問題  
를 解決하는 决定的인 原因이 된다는 것은 낱이 갈수록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 蘇聯과의 友好關係

第 24 次 蘇聯全党大会에서 決議한것을 実現시키고 있는 蘇聯共產  
党 中央委員会의 主導의이며 原則이 確固한 政策으로 말이아마  
우리가 决定的인 結果를 가져 올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蘇聯共產黨의 平和促進計劃은 社會主義 共同體의 行動計劃과 共產主  
義 世界運動을 保障하고 모든 問題에 대한 現實的인 解決을 갖다  
주는 基本이다.

이와같은 事実은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이 第 8 次 党大会때 確定지  
은 外交政策을 實踐에 옮기는데 주도적인役割을 하고 있다.

歐羅巴가 平和大陸이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우리 社會主義 兄弟同盟國家의 모든 党의 努力과 발을 맞  
추어 独逸民主共和国도 그런 노선에 가담하는 바이다.

蘇聯共產党 第一書記 브레시네브의 親善訪問은 지금 現存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繼続發展 되어갈 經濟적 관계에 대한 위대한  
表現이다.

社會主義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保障이며 基本人 蘇聯과의 友  
好關係가 우리의 고통하는 짐창이라는 것이 우리 国民들에게 그  
어느때 보다도 強力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蘇聯과의 友好關係가 보다 緊密해지며 두터워진다는 것은 世代에  
서 世代로 이어나갈 하나의 課題다.

브레즈네프동무와 같이 우리가 한 회談은 両側의 広範囲한 利害關  
係였으며 좋은 분위기에서 行하여졌다.

社會主義共同体의 모든国家들의 형제적 盟邦關係를 모든面에서  
継続 發展시키며 団結을 보다 強化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가장  
重要한 課題라는 것을 그 회談에서 再確認했다.

前進發展의 決定的인 方法으로서 社會主義經濟의 全體企劃을 実現  
시키며 우리兄弟兩國家의 國民經濟를 向上시키고 社會主義 労動分割  
의 우선과 協同을 最大로 利用한다는 것에 우리는 完全合意 보았  
다. 이렇게 됨으로서 우리는 全體社會主義 共同体의 國民들의 權  
益에 기여 하는 것이며 國際的發展의 鐘울대속에서 우리들 社會主  
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들의 단호한 결의와 단결의  
파시, 모든分野의 政策을 共同으로 成功시킨 結果, 이 모든것이 社會  
主義의 작성된 영향력의 決定的 原動力이 된다는데 疑心치 않으며  
平和와 社會主義를 위한 힘의 變更에 決定的 原因이 된다는데도  
疑心치 않는다.

우리党과 独逸民主共和国이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와 브레즈네프동  
무 個人에게 24次 全党大会가 決議한 平和프로그램의 実現을 위  
한 嶄爭에 確固한 政策과 賢明한 政策을 갖다준것을 높이 評価  
한다고 말했다.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의 4月總会의 決議에 나타난 評価와

結論은 우리의 成果를 절대 支持한 것이다.

歐羅巴가 冷戰에서 繁張緩和로 가겠금한 變化는 實存하는 社會主義가 人民의 社會主義的 解放의 過程일뿐 아니라 戰爭의 침화앞에 서의 解放을 促進시키는 証拠다. 이와같은 成功的인 結果를 通하여 欧羅巴平和가 눈에 띄일정도로 나타났으며 브레즈네프 동무가 말 한바와 같이 앞으로의 世代가 平和的發展의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確固하고 安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단호한 政策에 의하여 國際政治속에서 陽性的인 變化는 後退시킬수 없는 것이며 第24次 全黨大會에서 決議한 平和프로그 램 實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未來에 対한 커다란 寄与가 될 것이다.

이와關聯하여 平和, 安全, 繁張緩和에 対한 外交政策이 完璧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產主義와 社會主義의 建設을 위하여 좋은 与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重大한 前提 条件이다.

얼마나 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社會主義가 侵略主義에 対抗했으며 数없는 手段을 강구했는지……, 戰爭의 結果를 克服하기 위하여 얼마나도 많은 代價를 支払 했던가!

오늘에 이르러는 모든것이 克服되어 좋은 時期가 되었다.

30餘年동안 이歐羅巴에 平和가支配 했다는 것은 새로운 침화앞에서 우리大陸의 모든 人民을 救出 保護 했으며 社會主義의 위력을 膨脹시켰다. 社會主義의 平和政策은 革命政策이다. 이 社會主義 政策은 發展의인 社會主義 社會를 形成시키며 勞動者들의

闘争 속에서 資本主義國家에 社會主義의 서평을 친란히 비춰주는 것  
이며 新生国家의 發展을 強化하고 帝國主義의 活動範圍를 좁히는  
可能성을 말 하는 것이다.

지난 時期의 結果를 들이켜 본다면 어떤 政策과 經濟와 道德의  
힘을 社會主義가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다. 더구나  
우리 社會主義國家 共同体가 앞으로의 3次年度, 4次年度에 平和  
5個年計劃을 얼마나 成功的으로 이끌수 있느냐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蘇聯共產黨의 平和實踐計劃과 모든 兄弟國家들의 平和外交政策의  
土台가 되는 平和共存에 대한 레닌의 政策이 모든 人類를 위한  
歷史的意義가 된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 - 우리는 団結했다 -

親愛하는 女性동무, 남성동무 여러분!

第8次全党大会를 開催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努力은 陽性的인 發展을 거듭했다고 評価 됩니다.

다급한 問題를 프로레타리아의 國際主義에 依하여 解決했습니다.  
우리는 团結했으며 团結을 과시했습니다. 英雄的인 戰爭을 한  
越盟民族은 勝利 했습니다. 美國의 侵略은 10餘年的 殺人的 戰  
爭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베트남民族의 戰爭終結과

平和再建을 위한協定이署名 되었읍니다.

이協定의實現이여러가지로沮害된다하더라도커다란意義가 있는것만은事實입니다.

우리는蘇聯과其他 다른社会主义国家들과더불어모든鬪爭 속에있는베트남兄弟들을支援했읍니다.

베트남民主共和国内에社会主义가建設되고印度支那国民들의 정당한國家의希望이이루어지도록정당한行為를한것이우리들입니다.

獨逸社会統一党中央委員會政治局과獨逸民主共和国國務委員會는  
党中央委員會에베트남동무들의希望에일치되며完全破壞된  
都市의再建에우리民族은그들을지원한다는團結의表現으로그들을  
돕는다는것을提議하는바입니다.

歐羅巴大陸위에歐羅巴의永久的平和와安全및共同協力を  
위하여蘇聯,폴란드및獨逸民主共和国이獨逸聯邦共和國과함께  
일연의條約을締結한것은平和,安保를위한前提条件이었읍니다.

이런條約들은國境不可侵의原則을承認한것이며歐羅巴모든  
国家들의州不可侵도承認한것입니다.

또한이는獨逸民主共和国이國際法의으로獨立된主權國家라는  
것을承認한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国에대한이런폭넓은國際的承認은歐羅巴大陸에  
展開되고있는社会主义運動을拋棄해서는안되어獨逸社会主义国家를

國際社會로 부터 고립시킬려는 政策이 東獨의 前進을 防害할 수  
없었다는 것을 立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은 両獨  
基本條約 締結을 위한 協商을 進行中입니다.

문현独裁의 無効와 違法性이 시인되는 合意가 両獨間에 이루어지  
리라는 것이 期待됩니다.

따라서 條約內容에는 重要한점이 反映될 것입니다.

정상적이며 조용한 發展이 西伯林地域에 이루어 지기 위하여  
西伯林市와 独逸民主共和国間에 協定이 締結 되었고 또한 同一한  
內容의 協定이 2年前에 4大国間에 締結되었습니다. 西伯林에 관  
한 이 複雜한 協定과 合意는 參与当事者들의 賢明한 利害關係의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西伯林은 (資本主義의 섬, 独逸民主共和国의 特別地域) 어떤國家  
의一部도 아닙니다. 이와같은前提下에서 合意 対象의 問題가  
規定되어 졌습니다.

이런 合意에 对한 徹底한 理解만이 西伯林에 관한 問題에 理解  
를 갖고 있는 側의 賢明性입니다.

西伯林과 関聯하여 提起되는 実質的 모든 問題解決을 위한 基本  
이 바로 이 点인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에 該當되는 것은 우리가 '正確히' 完全히 履行할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입니다.

다른 側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의 할바를 充實히 履行할 것이라

는 것을 우리는 期待하는 바 입니다.

過去어느때 보다도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的位置는 確固하다.

親愛하는 女性동무 男性동무여러 분!

第8次 党大会가 지난지 2年이 되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것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의 國際的 地位는過去 어느  
때보다도 確固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社会主义国家의 労動者  
農民의 사랑이며 모든 社会分野上의 主導的役割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는 独逸聯邦共和国과의 関係에서 繼続的인 政治的發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兩側이 다 얻은것 뿐이지 損失은 없었다는 것을 뜻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수주전에 独逸聯邦議회는 東西独基本  
條約을 비준 했습니다. 이 条約의 비준과 施行 公布로서 兩獨逸  
國家間의 関係에 새로운 章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欧羅巴 政治분위기를 造成하는데 좋은 效果를 나타낼 것입  
니다. 내가 또 다시 한번 되풀이 하는데 基本條約은 体制가 다른  
두개 独立된 主權國家間에 締結된 國際法의 条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性格의 条約은 平和共存 原則와 一致하며, 이와같은 条約  
内容을 우리는 条約의 表現文句와 精神에 따라 遵守 할 것입니다.

우리외에 相對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事實입니다。相對方도 우리와 같이 同條約을 遵守할 것이라는 期待가 갑니다。

만일 独逸聯邦共和国의 内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一般國際法原則을 無視하고 東西獨基本條約의 「特殊性格」의 것이라고 主張한다면 이는 낡은 世代들의 主張과 같은 것임을 指摘해야 겠습니다。

両獨基本條約은 明白하여 뚜렷하게 規定되어 있습니다。即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聯邦共和国의 一部가 아니며 또한 独逸聯邦共和国도 独逸民主共和国의 一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개의 主權國家間의 関係를 國際法의으로 明白히 規定한 同條約은 分斷狀態를 認定하는 暫定的 規定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合理的인 解釈은 独逸問題가 유보되었다는 結論이 나을 수 없음을 말 하는 것입니다。

이와 正反對 되는 主張을 아직까지도 繼続 主張하는者가 있다면 그는 時間만을 浪費할 따름입니다。

#### 새로히 確認된 平和共存 原則

基本條約이 批准되기전에 이미 우리는 重要한 前進을 거듭했읍니다。

누구나 確認할수 있는바와 같이 이 前進은 欧羅巴平和 安全에 有益하고 人間의 福祉에 寄与하고 있습니다。

両獨間의 関係正常化가 両국의 平和와 国民에게 有益하다는 것이 앞으로 보다 뚜렷 하여질 것입니다。

본의 一部層에서는 東西獨基本條約을 자기들에게 有益하도록 解釈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겠습니다.

西歐羅巴의 報道機關 특히나 聯邦共和国의 放送과 新聞, 雜誌가  
그렇게 떠들썩 할 것이라는 것은 秘密이 될수 없읍니다. 이뿐만  
이 아니라 經濟的 利益도 作用할 것입니다 즉 独逸民主共和国의  
主權活動範圍를 좁힐려는 시도가 經濟政策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할수 있습니다 独逸聯  
邦政府가 25年間 펼쳐온 冷戰政策이 중국에 가서는 左초당하고  
말았읍니다.

지금은 平和共存 政策이 履行되고 있는 것입니다. 歷史的 崩壊  
이 있는 政治的으로 重要한 成果를 우리가 이루었읍니다. 欧羅巴  
우리 大陸의 平和的 未来를 保障하는 實質的인 對策을 講究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合意를 모든参与国家의 安全과 共同協力에 對  
한 會議를 進行키 위한 作業이 한창입니다.

이는 바로 國境不可侵의 原則과 関聯되어 있고 선량한 隣接国家  
間의 関係를 개선하고 平和的共同協力を 目的으로 하는 對策입니다.

우리는 헬싱키 会談에서 이렇다 할 結果가 나오기를 바라며 와르샤  
워條約国家들의 편에서 모든手段을 總動員하여 이全体 欧羅巴會談을  
成功的으로 이끌고 나가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中心欧羅巴의 가장 重要한 謀題인 軍備縮小會談이 核心을 이룰것  
입니다.

女性동무, 남성동무 여러분!

브레즈네프동무의 独逸聯邦共和国 訪問은 美國訪問豫定과 함께 繫  
張緩和 過程과 國際的發展에 지대한 寄与를 할 것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 首都에서 브레즈네프의 4日間에 걸친 會談結果에  
對한 西獨파의 共同聲明은 다음과 같은 것을 뚜렷이 했습니다.

蘇聯共產黨 第24次 全党大会는 蘇聯의 平和計劃을 実踐키위한  
보다큰 前進을 가했습니다.

브레즈네프 동무는 独逸聯邦共和国 테레비죤을 通하여 聯邦共和国  
國民들에게 両國間의 関係를 위하여 蘇聯이 努力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蘇聯의 数百万의 国民들은 히트러가 蘇聯을 侵攻하고 무서운 破壞  
와 人命被害를 갖다준 지난戰爭을 생생하게 記憶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레즈네프 동무가 이와 関聯하여 우리와 蘇聯間의 兄弟的  
同盟關係를 堅固히 하고 있다는 것을 明確히 한점에 높이 強調  
하는 바입니다.

그는 強調하기를 우리의 盟邦 独逸社會主義國家와 蘇聯은 보다  
堅固한 友好關係를 오래전부터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事実을 疑心할 수 없으며 이런 国家間의 関係  
世界平和에 至大한 影響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原則은 体制가 다른 国家間의 関係에도 適用되는 것입니다.  
레-닌이 말한 国家間의 平和共存原則을 施行하는 것을 蘇聯共產  
黨 中央委員會는 지난 4月 會議에 世界 政治속에서 좋은 政治趨

勢에 대한 拡張과 堅固를 위한 重要한 前提条件이라고 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레즈네프 동무가 独逸聯邦共和国을 訪問하여 平和共存 原則을 再 確認시킨 結果가 되므로 환영하는 것이다.

그의 訪問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좋은 隣接국과 関係를樹立시키는 結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높이 評価하는 共同聲明속에 鮑聯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상방의 利害關係改善을 하겠다고 말 한점만이 아니라, 繼續하여 欧羅巴의 緊張緩和를 구축하고 平和的 未来에 對한 大陸, 相互信賴 및 雙方間의 利益에 對한 共同協助의 길을 摸索한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摸索은 兩側이 相互對立되어 있는 理念을 無視하지 않고 明確한 限界를 세웠기 때문에 現實主義이며 가장 賢明性을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다.

브레즈네프의 訪問이 또한 東西獨의 関係를 개선시키는데 좋은 影響을 줄것이라는 疑心할 餘地가 없다.

政經問題가 分離될 수 없다는 것이 鮑聯과 独逸聯邦共和国間의 協定에 지난週 反映되어 署名되었다.

相互有益을 위한 經濟關係 개선의 發展은 自國國民에 對한 커다란 利益이며 平和를 위한 絶對的인 土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은 永遠한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社會主義國家共同体와 鮑聯의 基本 目標에 合致되는 것입니다.

이런方法에 依하여 이루어진 意義 있는 成果는 蘇聯共產党 第 24 次 全党大会 때 決議한 平和政策計劃처럼 레닌政策의 表現입니다.

무한한 기쁨을 금치 못하며 西独 본에 位置한 共產党에게 敬意를 表하는 바 입니다. 본에 있는 勇敢한 階級동무들은 과감한 方法으로 蘇聯, 플랜드와 緊密한 紐帶를 맺으면서 平和共存을 誘示했던 것입니다.

이 偉大한 共產主義者들과 이들과 密接한 紐帶를 맺고 있는 独逸聯邦共和国内의 進步主義의 势力은 冷戰時代에 個人의 犠牲을 무릅쓰고 平和共存政策을 위한 闘争을 했으며 항상 偉大한 蘇聯과의 密接한 兄弟關係를 立証했던 것입니다. 第 8 次 全党大会에서 証明한 바와같이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이 蘇聯과 兄弟同盟을 持続시키며 社會主義 國家同盟体를 보다 強化시키는 政策을 遂行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自明한 事實입니다.

바로 이러한 点이 우리가 平和共存 原則과 함께 緊張緩和의 過程을 促進하는 政策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國際平和를 危脅하는 侵略的 NATO勢力의 움직임을 방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帝國主義의 軍事同盟블록은 競争의 軍備強化를 繼續하고 있음을니다.

國際政治에의 急進의 變化는 全世界政治狀態를 비참한 方向으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前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에 對備할 것이 要求됩니다.

独逸聯邦共和国内에서는 새로운 独逸民主共和国像이 形成되고 있다.

親愛하는 女性동무, 男性동무 여러분!

独逸聯邦共和国 国民들 과의 対話에서 그들 多数 国民들이 最近 새로운 独逸民主共和国의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独逸聯邦共和国内의 여러 與論調查所는 体制가 相異한 兩獨의 存在는 必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無視할수도 없고 無視할意思도 없는 現実主義의 反映인 것입니다.

兩獨間의 基本條約은 우리時代의 現実主義와 歷史의in 發展에 따라 必要한 結果로서 파생된 것입니다.

브란트-쉘政府가 國際關係속의 새로운 것을 認識하고 모스크바, 와르샤워 및 빅토리아와 함께 非現實의in 位置에 차해 있는 独逸民主共和国의 政策을 修正코자한 功勞입니다.

独逸聯邦国 共和国内에서 새로운 独逸民主共和国像이 形成되고 그러한 윤파이 繼統 뚜렷하여져 간다는 것은 歷史의 意義의 前進입니다.

勞動者 農民의 社會主義國家로서의 独逸民主共和国의 生存問題가 独逸聯邦共和国 指導層의 눈의 가치로서 存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넘겨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支配層은 항상 분열의感情 속에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独逸民主共和国의 끊임없는 國際的 地位의 確保를  
簡單히 참고 넘기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오늘의 조류가 그들에게 適切하지는 않은 것  
입니다.

他面에 있어서 그들은 両獨間의 隣接國家關係 개선이 両國間의  
主權 承認과 尊重을前提로 한다는事實을 만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 東西獨의 상반되는 社會的構造

社會統一黨이 独逸歷史의 共通點과 言語, 文化 等等의 単一性을  
歪曲 變質시키고 있다는 정당치 못한 主張을 하면서 独逸民主共和  
국의 새로운상을 強力히 沽止시킬려는 独逸聯邦共和国에 있으나 東  
獨 国民들의 自覺이 強力하기 때문에 그리 슬픈일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도망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歷史와 文化는 独逸聯邦共和国 指導層의 歷史와 文化와  
다른 것입니다.

20世紀의 偉大한 人道主義者들 그려니깐 Thomas Mann이 라던가,  
Heinrich Mann, Arnold Zweig, Lion Feuchtwanger, Bertolt  
Brecht, Johannes R. Becher 및 Anna Seghers 등과 같은 사  
람들이 우리独逸民主共和国의樹立을 새로운 歷史의始作이라고

했으며, 지난過去의 反動分子들에 對한 決定이고, 하나의 變化로서  
慶祝할만 하며 支援할만한 것이라고 말하여 하나의 政治体制에서  
나온 不可避한 結果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支援하고 찬양한 것은 社会를 發展시키고 平和的  
인 労動과 自由속에서 人間의 尊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次世界大戰이 終結된後인 지난 数十年을 둘어켜 보는자는 東獨과  
西獨의樹立 歷史를 생각하는자는, 東獨의 發展을 본자는 独逸聯邦  
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間의 文化, 言語의 차이는 相反되는 政治体  
制에서 나온 結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다. 즉 独逸民主共和國은 私有財產制度  
를 폐기시켰습니다. 独逸聯邦共和國은 資本主義다. 즉 私有財產이  
生産手段이다. 그리고 前과 마찬가지로 人間에 依하여 人間이  
약탈 당하고 있습니다.

兩獨의 相反된 体制下에서 兩獨을 混合할 수 없다고 누차 強調  
한 브란트의 말은 이問題에 대한 좋은 对答이 될수 있습니다.

言語單一과 墏實主義와는 다른 것입니다.

言語單一性과 國家의 同一性과도 다릅니다.

英語가 母國語로 되어있는 美國, 英國, 濟洲等에서 이런 事實이  
立証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独逸語가 母國語로 되어있는 오지리  
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깐 東西獨의 관계역시 기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勞動者階級의 指導下에

### 있는 社會主義國家

東西獨의 歷史와 文化가 같다는 것을 確認할려고 지난세월 깊숙히 파고 들어갈 必要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国民들의 그것과 같이 独逸歷史는 항상 階級鬪爭의 歷史였습니다.

問題가 되는 独逸歷史는 国家的인 形態입니다. 階級鬪爭, 数十年을 넘은 反応과 前進의 鬪争. 이러한 속에서의 国家의 鬪争입니다.

오지리를 核心国家로 하는 独逸의 조그마한 군주국가들은 비스마르크가 武力으로 統一 시킬때 까지 26個의 군주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西獨에서 主張하는 바와같이 우리 独逸民主共和国이 独逸歷史로 부터 “逃走하고 있다”고 繼続 主張한다면, 이것은 独逸의 大부루조아를 위한 말에 不過한 것입니다.

独逸歷史는 헛트러 팟쇼主義와의 鬪争에서 봄은軍隊와 反헛트러 同盟体가 勝利한후 成功시킨 革命이 두려워 많은 諸國主義国家들과 결속하면서 1949年 5月에 西獨憲法으로 하여금 西獨의 基本法(憲法)을 制定 公布하고, 1949年 9月에는 独逸聯邦共和国을樹立한것이 바로 独逸의 歷史입니다. 따라서 独逸의 歷史는 東西獨의 分斷으로부터 始作되는 것입니다.

独逸歷史의 評価는 両獨이 独逸語를 使用하고, 文化的 伝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군주국가시대 부터였다. 또는 비스마르크가

統一시킨후 부터였다. 등등으로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자리国民, 스위스国民, 独逸民主共和国国民, 独逸聯邦共和国의 国民이同一民族이 였었다고 하는 強要는 안되는 것입니다.  
Nation 이란 말이 그国家, 国家에 따라 개념이 달리 使用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事實입니다.

그에대한 實例를 들어보자면 美国의 여러나라들 특히나 라틴아메리카를 입니다. 西歐羅巴, 이곳에는 西獨도 包含 하는것으로서, 社會主義路線을 否定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는未來가 말 하여 줄 것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独逸歷史上에서 가장 伝統的인 國家形態를 拥하고 있습니다.

즉 中世紀의 동부중요시대의 歷史, 1848 年의 革命民主鬪爭時代, 맙스-엥겔스의 時代, 베벨과 리브크네히트가 이룬 独逸勞動者運動, 반포조鬪爭속에서의 英雄的行為者들 等等의 歷史가 바로 独逸民主共和国의 歷史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内에서는 労動者階級의 指導하에 社會主義 民族國家가 發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共和国의 社會主義的 民族文化속에는 새로운 芽이 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民主共和国에는 資本主義的 歷史와 文化가 完全 두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国家는 農民層과 결속한 労動者階級이 支配하며 其他 다른 勤勞者層과 紐帶한 労動者階級이 支配합니다.

우리의 社会主義国家는 蘇聯을 核心으로하는 社会主義国家共同体에서 分離될 수 없겠금 發展했읍니다.

낡은 우통을, 새로운 우통으로 補充말라!

两次世界大戰에서 파생된 社会的構造로 되어 있는것이 独逸聯邦共和国이 라는것은 이미 歷史家에 한한 秘密이 아닙니다. 資本家들의 호주머니와 여기에서 成長한 政治的權力層의 호주머니가 經濟力を 独占한 資本主義의支配가 人間에 依하여 人間을 摧取하는 原泉이며, 이支配가 바로 人間의 生活을 持続的으로 危脅하고 밖으로는 拡大主義, 侵略主義를 育成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国은 20年 前부터 NATO에 加盟했으며 西歐羅巴共同体의 一部입니다.

指導的 본의 政治家들은 最近에도 다시금 独逸聯邦共和国이 繼続적으로 이들의 盟邦이 될것이라고 宣言했읍니다. 이런말은 그들 역시 核武器共同保有국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基本的으로 体制가 다른 두개의 独逸國家가 있습니다. 이는 勞動과 資本, 諸國主義와 社会主義로 되어 있는 두개의 相異한 独逸国家입니다.

歐羅巴 平和와 安全의 関心속에서 平和共存의 原則을 따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 하는바 입니다.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와의 상호존립이 過去의 冷戰時代와 같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平和共存에 对한 레닌의 原則은 現在 實現되고 있습니다.

平和共存은 非戰爭입니다. 平和共存이란 賢明하고 共同으로 일을 하는 것이며 모든 可能한것을 共同으로 利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体制가 相異한 國家間의 関係正常化입니다.

平和共存은 어떤 体制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며 相對國의 世界觀 역시 認定해야 하는 것입니다.

社会主义아니면 資本主義여야 한다. 階級的 区分을 하며 冷戰으로 이끌었던것이 아메나워時代 였습니다.

歴史의 수레바퀴는 뒤로 구르는 것이 아닙니다.

獨逸民主共和国의 民族的觀心과 一致하는 政策을 持続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82個國家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冷戰에 대항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西獨은 繼統 우통하고 있습니다.

낡은우통을 새로운 우통으로 바꾸려는 西獨의 態度는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發展을 주시하는 바 입니다.

#### XI.聯邦法務長官의 1973年 6月26日字 書信

聯邦法務長官

1004E(2321)-252 / 73

53 본. 1973.6.26.

聯邦憲法裁判所

副院長 貴下

(合議第2部裁判長)

75. 칼스루해 1.

案件：1972年12月21日 署名한 東西獨基本條約에 관한 法

一. 1973年 6月19日 联邦憲法裁判所 命令에 関하여 一

2 Bvf 1/73.

위에 表示한 联邦憲法裁判所의 命令에 따라 本人은 다음과 같은  
意見書를 提出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에서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을 接受했다는  
“受領證明”을 發行했는지에 대한 与否는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  
에 関한 法的性格을 규명함에 어떤影響도 없을니다.

그런고로 “受領證明”的 形式이 어땠는지는 어떤役割도 못  
합니다:

問題가 되고 있는 “獨逸統一을 위한 書信”은 1972年12月  
2日 兩獨間에 署名한 基本條約에 관한 1973年 6月6日字의 法  
第1条에 正確히 明示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事實이 協商때부터 獨逸民主共和國에 잘 알려져 있었

면 것입니다 즉

1. 書信의 内容은 모스크바書信에 對한 解釈이 있으며,
2. 그書信은 同條約 署名前에 伝達되었고
3. 問題의 書信이 接受되었다는 確認書가 우리 代表들의 수중에  
오기 전에는 同條約에 署名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것이 1972年 12月21日 東伯林에서 行하여 졌습니다.

즉, 어떤目的下에서 独逸聯邦共和国 政府가 條約를 署名할 것이라  
는 것이 独逸民主共和国에 事前에 잘 認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對한 目的은 條約解釈을 東獨側이 独逸民族의 自決權의 原  
則에 違背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同書信의 法的效力은 條約에 對한 우리들의 同意의 性質속에 있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보자면 同書信에 違背되는 條約이 締結된 것은 아니  
라는 것입니다.

(参照 H.Steinberger ZaōR.1971.S.63 ff.S.113)

同書信은 1969年 5月23日 締結된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定  
第31条 2号(b)의 條約解釈의 器具에 該當됩니다. 同協定의  
規定은 國家間의 訴訟法을 明文化한 것입니다.

同條文은 國家間의 條約 解釈에는 條約締結과 関聯하여 한当事者  
나 또는 여려当事者들이 伝達한 모든 文書와 関聯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여 보자면 同條文이 말한 "accepted"란 말은 어떤一定한 形式을 거칠 必要도 없이 両当事者国家들에게 条約과 関聯된 것이면 充分하다는 것입니다. 同條約規定이 말하는 解釈機構로서의 書信性格은 그 書信이 条約과 関係되어져 있고 이런 事實이 協商때 이미 東獨側에 通告되어 있었고 그れ 함에도 不拘하고 東獨이 同書信을 接受한다는 것으로서 發生되는 것입니다.

同書信은 自由스러운 自決原則에 따라 統一을 成就하겠다는 独逸民族의 努力에 違背되지 않는것이 本 条約이다 라고 明白히 記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内容의 書信은 重大性을 떠우므로 聯邦政府는 条約法 1條에다가 다시금 그 書信의 内容을 明文化 시켰으며 立法部에 提出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條約解釈에 있어 同書信이 參照되어야 합니다.

以上과 같은 見解를 明白히 밝히는 바입니다.

聯邦法務長官

Gerhard John.

XII. 1973年 7月 31日 裁判期日 公告

聯邦憲法裁判所

칼스루해 .1973.7.31.

合議 2 部 公開裁判

- 2BvF 1/73 -

### 公 告

東西獨 基本條約法에 対한 違憲審査期日을 公告한다.

### 担当法官

當院 副院長 Seuffert 를 裁判長으로 하고 Schlabrendorff  
博士, Rupp 博士 Geiger 博士, Hirsch, Rinek 博士 및 Wand  
를 裁判官으로 한다.

裁判開廷時間 12時

### 裁判參與者

바이에른 州政府訴訟全代理人

原告側代表 Blumenwitz 教授

理事官 Kepler 博士

副理事官 Büßler

聯邦政府를 代理하여

被告側。

Kriele, Köln 大教授 }  
弁護士 Leverenz 博士 } 全權代理人

理事官 Bahmann

副理事官 Schiffer 博士

書記官 Mahnke 博士

書記官 Neuser.

裁判長은 判決文을 낭독했다.

裁判은 12時 51分에 끝났다.

Seuffert

記錄人 Höfel

### XIII. 1973 年 7 月 31 日字 独逸聯邦憲法裁判所 判決文

1. 独逸聯邦共和国 基本法 第 59 条第 2 項에 따라 聯邦의 政治關係를 規定하거나 또는 聯邦의 立法事項에 關係되는 一切의 條約은 締約當事國이 基本法規定으로 보아서 外相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国会의 同意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国会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2. 司法 上의 自制原則은 憲法이 다른 憲法機關에 부여한 諸般事項이 政治的으로 自由로히 形成될 수 있도록開放하여 두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3. 行政府가 聯邦憲法裁判所에 관한 節次問題를 侵犯하는 것은 憲法裁判所의 관장사항에 관한 基本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것이다. 基本條約의 境遇와 같이 한條約이 行政府의 見解로 보아 憲法上節次가 完了되기 以前에 例外的으로 기필코 發効되어야 할 境遇에는

該當憲法機關이 그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4. 統一課業이란 어떠한 憲法機關도 国家의 統一性을 再確立하는 政治的目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모든 憲法機關은 各者의 政策을 通하여 前記한 政治的 目的達成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 内的으로는 統一에 대한 念願을 고취시키고 外的으로는 이리한 主張을 관철시키기 위한 努力도 여기에 包含된다. 그리고 統一을 저해하는 모든 措置는 中斷되어야 한다.

5. 憲法은 独逸聯邦共和国이 統一을 追求하고 自決權을 行事하는 手段으로서 利用할 수 있는 基本法上의 権利를 포기하거나 基本法과 一致하지 아니한 権利를 創作하거나 또는 統一目的遂行을 위한 労力에 反하는 権利의 設定에 參加하는 것을 禁止한다.

6. 基本條約은 二重機能을 兼하고 있다. 즉, 이 条約은 一種의 國際法上의 条約이며, 또한 条約의 特殊한 内容으로 보면 自体內部關係를 規定하는 条約이다.

7. 基本法 第23條는 聯邦政府가 独逸의 他方(東獨)을 法律的側面에서 単独으로 受容하지 못하고 오로지 어떠한 締約当事國과의 合意에 의해서만이 受容할 수 있는 國際法의 隸屬關係에 빠지는 것을 禁止한다.

8. 基本法 第16條는 基本法 第116條 1項에 規定된 “独逸國籍”이 独逸聯邦共和国의 国籍을 意味한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다. 따라서 基本法이 規定한 独逸國籍所有者는 聯邦共和国의 国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9. 独逸人은 何時를 막론하고 独逸聯邦共和国의 国家秩序의 保護領域에 存在하는限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의 全幅的保護의 基本法에 規定된 基本權의 保障을 要求할 수 있다.

独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文

宣告日：1973年 7月31日

1972年 12月21日의 独逸基本條約에 관하여 1973年 6月6日  
에 制定된 (聯邦法律官報 2部 420項) 関係法律 (以下 基本條約法으로  
略称함) 의 合憲性에 대하여 聯邦憲法裁判所 第二合議部는 1973年  
6月 19日의 口頭公判을 根拠로 하여 合憲的임을 国民의 이름으로  
宣言한다. 聯邦憲法裁判所 第二合議部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裁判長：쏘이펠트 (聯邦憲法裁判所 副院長)

陪席判事：슈타부렌홀프博士

루프博士

가이거博士

힐슈法官

링프法官

반트法官

原 告：바이엔州政府

代表：州政府首班

法定代表人：教授 디이터 부루멘비츠博士

參加者：独逸聯邦政府

代表：聯邦法務相

法定代表人：教授말틴 크리스博士 幷護士베른하트 레베렌쓰博士

1972年 12月 21日에 署名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 사이에 締結된 基本條約에 관하여 1973年 6月 6日에 制定된 基本條約法은 다음에 열거한 法的根拠에 비추어 보아 基本法과一致된다.

### 法的根拠

A.

I.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에 合意를 거친 基本條約은 1972年 11月 8日에 批准되었다. 基本條約은 聯邦政府가 “基本條約을 署名하기에 앞서 国家의 次元의 問題에 있어서 聯邦政府의 目的을 解明한 公한을 独逸民主共和国政府에 発送한다”는 内容을 일련의 附屬文書와 함께 聯邦官報 155号에 公表하였다.

基本條約 原文은 다음과 같다.

第一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善隣友好關係를 增進한다.

第二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모든 国家의 独立과 主權平等, 独自性, 領土保存 및 自決權과 人權尊重, 또는 無差別 등과 같은 國際聯合憲章의 諸原則과 目的을 雙方關係의 基準으로 삼는다.

第三条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모든 紛爭을 全的으로 平和的인 方法에 依하여 解決하며,

폭력에 의한 危脅이나 또는 폭력의 使用을 삼가한다.

雙方은 現在에 있어서나 未来에 있어서나를 불문하고 境界線의 不可侵性을 遵守하고 領土保存을 無制限으로 遵重한다.

第 4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兩國間에 어느 一方도他方을 國際的으로 代表할 수 없으며 自身의 명의로 行動하지 못한다.

第 5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歐洲諸國과 平和의 인相互關係를 增進하며 歐洲安保와 相互協力에 功獻한다.雙方은 歐洲에 있어서 関係국의 安保를 害치지 않고 軍事力減少와 軍縮을 위한 努力を 支援한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効果的으로 國際監視를 받는 보편적이고도 완전무결한 軍備縮小를 目的으로 特히 核武器와大量虐殺武器의 軍備制限과 軍備縮小를 위한 努력을 支援하여 國際安保에 奉仕한다.

第 6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兩國의 主權이 自己領域内에만 限定됨을 原則으로 한다. 雙方은 相互間에 国内政治나 國際政治에 있어서 独自性을 尊重한다.

第 7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相互關係를 正常化함에 있어서 實際의이고 人道의인 事項을 調節한다. 兩국은 基本條約의 原則에 立脚하여, 그리고 雙方의 利益을 위하여 經濟, 科學, 技術, 交通, 法律, 遗信, 保健, 文化, 体育,

環境保護와 其他分野에 있어서의 協力を 도모하고 增進시키기 위하여 協定을 締結한다.

具体的 問題는 附屬議定書에 規定한다.

第 8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常設代表部를 交換한다.  
同代表部는 相對方首都에 設置한다. 代表部設置에 関係되는 現実的인 問題는 추가해서 調節한다.

第 9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하였거나, 또는 雙方이 現在 関係되는 雙務的 또는 多邊的 國際條約과 合意事項에 基本條約이 저촉할 수 없다는 데에 合意한다.

第 10 条 本條約은 認准을 必要로 하며 特別覺書를 交換한 그翌日부터 發効한다. 基本條約은 1972年 12月 21日 締約當事국의 全權委任代表에 依하여 伯林에서 署名되었다.  
基本條約에는 雙方이 合意한 附屬議定書와 그外에도 基本條約과 関聯된 下記附屬文書가 添付되어 있다.

- 가) 財產問題에 關해 法的地位가 相異한 関係로 因해 基本條約을 통해서 調整되지 못한 議定記錄書
- 나) 議定書에 關한 두개의 声明書
  - o 独逸聯邦共和国側 声明書  
独逸國籍問題는 基本條約에도 規定하지 않는다.
  - o 独逸民主共和国側 声明書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條約이 國籍問題의 解決에 기여할

결로 간주한다.”

- 나) 國際聯合加入申請을 위한 議定書에 대한 두개의 声明書
  - 라) 境界問題委員會의 任務事項審議書에 관한 兩側 使節團長의  
    声明書
  - 마) 行政事務에 관한 独逸民主共和国 使節團長의 声明書
  - 바) 協定과 規定을 (西) 伯林에도 拡大 適用하는 데에 대한  
    兩側 声明書
  - 사) “政治會談”에 関한 兩側 声明書
  - 아) 言論活動用 通信에 関係되는 議定書에 대한 声明書
  - 자)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條件 및 施行條件의 改善과 가족상봉  
    에 관한 1972年 12月 21日字로 交換된 공한
  - 차) 新設 4個越境管理所의 開設에 관해 1972年 12月 21日  
    字에 交換된 공한
  - 카) 基本條約 第9條에 대한 独逸聯邦共和國의 西方3國에 대한  
    覺書와 独逸民主共和国의 蘇聯에 대한 覺書의 原文手交를  
    위한 1972年 12月 21日字 공한
  - 타) 通信制度에 관한 공한
  - 파) 國際聯合加入 申請에 관한 공한
  - 하) 言論人活動에 관한 공한
- 基本條約署名直後 統一性問題에 대해 1972年 12月 21日字 独逸  
聯邦共和國의 공식 서한이 独逸民主共和国政府에 手交되었다. 独逸聯  
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1972年 12月 21日字 基本條約에

판한 1973 年 6 月 6 日字의 基本條約法은 該當立法機關의 審查過程  
을 거쳐서 宣布되었다.

基本條約法 第 1 条는 다음과 같다.

下記文書를 包含하고 있는 1972 年 12 月 21 日字의 基本條約에  
대하여 同意한다.

下記文書란 다음과 같다.

- 가) 独逸統一性에 관하여 独逸聯邦共和國政府가 独逸民主共和國  
政府에 보낸 1972 年 12 月 21 日字 공한
- 나) 基本條約에 대한 附屬議定書
- 다) 財產問題에 관한 議定記錄書
- 라)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條件 및 施行條件의 改善과 가족상봉  
에 관해 1972 年 12 月 21 日字로 手交된 공한
- 마) 独逸聯邦共和國의 國籍問題에 관한 留保事項記錄書
- 바) 新設 越境管理所의 廉設에 관해 1972 年 12 月 21 日에  
手交된 공한
- 사) 基本條約 第 9 条에 관해 独逸聯邦共和國政府가 佛蘭西共和  
國 및 英國과 美合衆國政府에, 그리고 独逸民主共和國政府  
가 社會主義소비에트共和國政府에 覚書原文을 手交하기 위  
하여 交換된 1973 年 12 月 21 日字의 公翰
- 아) (西) 伯林에 관한 声明書

基本條約과 공한 및 附屬議定書, 議定記錄書, 留保事項記錄書 및  
交換된 공한 声明書는 추후 発表한다.

基本條約은 「본」에서 独逸聯邦共和國政府와 独逸民主共和國政府間에 1973年 6月 20日에 覺書가 交換된 1973年 6月 21日에 發効하였다.

## II.

1. 「바이에른」州政府는 1973年 5月 28日에 聯邦憲法 第13項第6号 및 第76項第1号와 関聯된 基本法 第93条 第1項 第2号에 따라 下記事項에 대해 確認하여 달라고 提訴하였다.

### 確認事項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사이의 1972年 12月 21日字의 基本條約에 関한 基本條約法은 基本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無効だ。」  
「바이에른」州政府는 提訴根拠로서 法院의 司法權을 引用하였다。  
訴訟理由는 다음과 같다。

基本條約은 独逸國家의 統一性을 維持하여야 한다고 하는 要請을 위반하고 있다. 基本條約은 旧独逸帝国이 滅亡한 後 그 領土에 두개의 国家가 樹立되었다는 것을 基本法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인된 法的見解에 根拠하고 있다. 聯邦共和国은 独逸全体를 代表할 수 없는 것이며, 独逸의 統一性에 관한 公한 自決權이나 統一權을 치침하는 것이 아니고, 現状打破는 平和的인 手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政治的目的을 意味하는 것으로 前記要旨와는 無關한 것이다. 基本法에 따르면 独逸의 統一性은 聯合國의 留保權과 独逸聯邦共和國의 法律規範과 各機關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基本法이 規定한 統一謀業을 違反하고 나아가서는 独逸

民主共和国을 独逸聯邦共和国과 同等한 独立国家로서 認定하고 있다.

基本條約은 旧独逸帝国에 代身하여樹立된 두개의 主權國家가 존속하도록 保障하고 있으며, 自意로 条約을 締結하여 現在의 休戰線을 国境線으로 代置하여 独逸을 分斷하도록 合意한 것이다. 基本條約은 이와같이 現今의 分斷狀態를 惡化시킴으로써 統一課業을 違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基本條約이 造成한 새로운 狀態가 基本條約이 締結되기 以前의 狀態에 比하여 더 "基本法에 合當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不當하다. 基本條約은 베르лин에 관한 基本法規定에도 違反된 것이다. 基本條約法上의 伯林條項은 一般法律의 形式과는 상이하다. 이 伯林條項은 伯林州가 基本條約法이 伯林에도 適用된다는 것을 確認하여 条約規定이 伯林州에 관한範圍内에서 基本條約法이 伯林에도 有効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렇게 블때 伯林條項은 (西)伯林에 관한 兩側声明만을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条件의 改善과 같은 伯林의 地位에 関係없는 問題를 取扱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基本條約法이 伯林을 폐농을 수 없는데도 伯林을 폐농하고 있는데 이것은 不當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西)伯林에 관한 声明 역시 憲法違反이다. 왜냐하면 附屬議定書 第7條의 規定은 경우에 따라서 (西)伯林에 拡大 適用될 수 없다고만 合意되었는데 이 規定은 장차 独逸民主共和国이 동의해야만 適用될 수 있는 것으로 保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基本法第23條第1項을 違背하고 있다. 이 規定은 또한 (東)伯林에

관한 独逸民主共和国의 主權의 인정과도 一致하지 않을 것이다. 基本條項은 独逸民主共和国에 있는 独逸人에 대한 基本法上의 保護條項마저도 違背하고 있다. 独逸民主共和国에 거주하는 者는 基本法 第 116 条에 의한 独逸国民이다. 그러나 基本條約 第 6 条는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出身 独逸人을 위하여 介入하는 것을 法的으로 禁止하고 있으므로 第 3 国에 駐屯하는 独逸聯邦共和国 公館이 独逸民主共和国出身 独逸人을 돋고자 할 境遇에는 곤란한 일 이 생긴다. 基本條約이 설사 國籍問題를 未決로 두었다 할지라도 基本條約은 基本法의 國籍條項과 無關할 수 없는것이다. 어쨌든 独逸民主共和国 国民이 独逸民主共和国을 떠나 独逸聯邦共和国으로 旅行할 수 있는 最少限의 台憲性이義務的으로 保障되어 있을 때에만 独逸民主共和国과 條約을 締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綜合하여 보면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 사이의 特別한 関係를 制度面에서 確定짓지 못하였고 国家의 統一性마저도 確立시키지 못하였다. 基本條約에도 또한 解約期限이나 屢棄条件도 設定되어 있지 않고 謂和條約에 관한 留保條項도 없으므로 이것을 暫定協定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基本條約으로 “独逸問題”가 基本法의 目的에 맞도록 조금이라도 解決되었다고 할 수 없다. 基本條約은 條約發効에 関聯하여 환영 할 價值가 있는 人道的인 안일책단을 規定하였으므로 独逸問題가 이로 말미암아 解決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바이에른」州政府는 上記見解의 正當性을 強調하기 위해서 伯林의 맹글러教授의 法律意見書를

첨부하였다.

2. 联邦政府는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에 1972年 12月 21日에 署名된 基本條約에 관해 1973年 6月 6日에 制定된 基本條約法이 基本法과 一致하다는 것을 確認하여 달라고 提訴하였다. 理由는 本質的으로 다음과 같다. 國際條約을 憲法規定에 따래서 檢討할 때에는 联邦憲法裁判所의 司法權에 따라야 하며 訴狀이 条理가 있어야 한다. 「바이에른」州政府의 訴狀도 例外일 수는 없다. 즉, 「바이에른」州政府는 联邦政府의 意圖와 联邦議會의 討議結果를 신중히 檢討하여 基本條約이 어떻게 해서 憲法을 違反하였는가를 立証하여야 할 것이다. 國際法的措置나 國家間의 措置를 檢討할 때에는 高度의 正當性과 確認이 있다고 하는 것을 訴狀에 明白히 記錄하여야 한다. 만약에 联邦政府나 立法機關이 憲法을 주의깊게 遵守하였는데도 提訴者가 上記한 불가결한 憲法的要請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提訴状은 联邦憲法裁判所의 審查를 要請할前提条件을 充足시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確實히 根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에른」州政府는 순수한 政治的主觀을 法律的論題아래 基本法에 無理하게 맞추어서 解釈하고 自身의 政治的評価를 條約解釈을 위하여 一方的으로 適用하고 基本政策을考慮하지 않고 나아가서 基本法의 根本目的과 一致한 基本條約의 의도를 明白한 基本條約의 内容에 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州政府의 提訴는 부당한 것이다. 基本條約을 代身할만한 방도는 없다. 基本條約発効以後에 定立되어지는 國際關係를 基本

條約이 締結되지 않았더라면 發生할 수도 있는 不幸한 事態와 比較할 때 우리는 비로소 基本條約의 優越性을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다. 基本條約은 平和保存이라고 하는 憲法目的에 事實上 부합하는 것이며, 人間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人間性을 規定한 憲法目的을 위하여 奉仕하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立法精神에 따라 独逸의 존속을 認定하고 聯邦共和國만의 利益을 위한 것이 아니라 独逸全体의 關心에 부응하는 政治文書이며 基本條約은 “独逸問題”를 未解決狀態로 남겨 두는 것이다. 基本法은 “同一性命題”에 관해서 確固한 言及을 회피하고 다만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만을 区別하여 놓고 있다. 基本條約은 統一課業에逆行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西方三大強국은 四大強國의 留保事項을 独逸全体에 拡大適用할 義務를 繼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基本條約은 法律自体로서 존속하는 独逸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独逸民主共和國을 外國으로 規定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을 따름이다. 基本條約은 独逸의 統一性과 國家性을 고수하고 있으나 独逸民主共和國을 國際法의으로 承認한 것은 아니다. 基本條約은 政治的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을 이룩한데 지나지 않으며, 統一遂行方法에 구애됨이 없이 統一展望을 實際的으로나 法律的인 側面에서도 消滅시키지 않고 있다. 基本條約은 政治的인 側面에서나 人道的인 側面에서 많은 改善이 있을것이며 나아가서는 그以上の 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協定締結을 위한 根拠를 提供하기 위한 것이다. 基本條約은 어느 事項을 完結지은 것이 아니며, 最終적으로 規制한 것도 또한 아니다.

基本條約은 오히려 將來의 改善策에 대한 可能性과 그것에 必要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伯林의 地位는 四大強國合意事項가 운데 規定되어 있어서 締約當事者는 伯林의 地位에 관해서 如何한变更도 加할 수 없으므로 基本條約은 伯林의 地位改善에介入치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聯邦政府는 基本法에 따르면 独逸民主共和国領域内에서 그곳에 常住하는 独逸人을 保護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義務는 없다. 基本條約은 外國에 가 있는 独逸人을 위한 聯邦機關의 保護權 및 救護權에 関해서 法的으로나 實際의으로 아무런 变更를 加한 일이 없고 모든 独逸人에게 独逸民主共和国으로부터 出국할 수 있는 自由를 부여하느냐? 하는 問題는 人間關係의 改善을 위하여 奉仕하여야 할 合意事項의 憲法의前提條約과는 無關한 것이다.

3. 基本條約에 関係되는 立法機關의 審議事項에 대한 議定書는 이미 裁判所에 提出되어 있다. 이外에도 独逸統一性에 대한 공한接受에 関係되는 文書가 口頭公判時에 提出되었는데 이 文書에 대한 書類도 公判參加者에게 양도된 후 裁判所에 提出되어 있다.

B.

1. 聯邦憲法裁判所의 司法權에 따르면 提訴狀을 받아 들여야 한다 (聯邦憲法附屬法律 4. 157(1617)).  
이와같은 義務條項은 独逸民主共和国이 基本法에 비추어 終外國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通用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基本法第59條 第2項에 의하면 聯邦의 政治關係를 調整하는 条約과 또는

聯邦立法事項에 関係되는 条約은 締約当事國이 外國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同意法에 의한 議會의 制裁를 받아야 한다고 規制하고  
있다.

C.

1. 1973年 6月6日의 基本條約法 및 基本條約과 附屬議定書  
는 規範規制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部分은 基本條約의 全體  
의in 評価를 위해서는 貴重한 것이며, 基本條約의 解釈을 위한 資  
料로서 참고될 수 있는 것이다. 法第1條에 言及된 餘他記錄과  
留保事項記錄書 및 声明書와 書信들이 規範規制의 対象이 되느냐하  
는 問題는 아직 未決問題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理由는 이  
러한 資料가 基本條約과 相互依存關係에 있으며 部分的으로는 声明  
書內容만이 들어있고 그外에도 内容으로 보아서 다음과 같은 基本  
條約에 대해 法的인 側面에서 考察하여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基本法과 一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資料는 基本法  
前文과 마찬가지로 基本法의 解釈을 위해서는 重要한 資料인 것  
이다.

2. 그 規範規制節次上 重要한 尺度는 基本法이다. 基本法을  
最終的으로 解釈하는 것은 聯邦憲法裁判所의 課題이다. 이러한  
原則에서 考察하여 보면 現存憲法秩序가 하나의 条約에 의하여  
變更될 수 있다고 하는 思考方式이 止揚될 수 있는 緊張關係는  
政治的 現実과 憲法秩序사이에는 없다. 条約은 實質的憲法을 創造  
할 수 없고 基本法의 解釈에 參考가 될 수도 없다. 오히려

反対立場이妥當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憲法에違反되는  
條約은相當한 憲法改正을通해서만이 憲法上의 基本權과一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假定하여 보면 聯邦憲法裁判所가 基本法을  
가진自由民主主義国家에서 다른憲法機關의 責任을考慮하여一般的  
으로發展시킨根本原則은 한條約을 憲法規定에 비추어 檢討할  
때에도通用되는 것이다. 즉 많은解釈가운데서 basic條約이合憲  
의므로영속적일 수 있다고 하는 한가지解釈을 抨-할 수  
있다는 것이다(聯邦憲法附属法律第4条 및 第157条).

이外에도聯邦共和国과第三國과의關係에 관한憲法規定을解釈  
함에 있어서政治的形態造成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制約的側面을考慮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것은條約이合憲  
의냐하는것을檢討할 때必要한 important한解釈原則에 속한다.  
이러한点에서基本法은外交分野에 있어서도 모든政治權力を  
法律의으로拘束할 수 있다. 이와같은原則은基本法에 의하여  
確立된法治國家秩序의本質인 것이다. 聯邦憲法裁判所는 이러한  
憲法秩序를最終적으로終局적으로責任지고施行하여야 한다.

聯邦憲法裁判所가法的自制原則을採択한다면 이것은憲法裁判所의  
上述한機能을 단축하거나弱化시키는 것을意味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憲法이制定하여놓은自由로운政治形態의領域에간섭함  
으로써政治를拋棄하는 것을意味하는 것이며,憲法이 다른憲  
法機關을 위하여保障한 관장규범을政治形態가自由로히形成될  
수 있도록開放하여두는것을目的으로하고 있다. 이렇게생각

하여 볼 때에 条約에 関係되는 規範節次에 있어서의 決定이 条約 發効以前에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憲法機關은 憲法이 規制한 根本關係에 相應하여 그 条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聯邦憲法裁判所가 憲法上의 檢討를 可能한 限度内에서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만아니라 다른 憲法機關도 聯邦憲法裁判所의 審查權을 条約 認准과 關聯된 節次를 執行할 때 考慮하여 聯邦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適期에 効果的인 職務執行을 곤란하게 하거나 不可能하게 만드는 일은 곧 中斷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意味한다. 行政政府가 聯邦憲法裁判所에 繫屬되어 있는 節次問題에 대해서 越權을 하는 것은 包括的인 憲法的 司法權을 위한 基本法의 決定에 違背되는 것이다. 基本條約의 境遇처럼 行政政府의 見解로 憲法裁判所의 節次가 完了되기 以前에 条約이 發効되어야 한다는 境遇가例外적으로 일단 發生하게 되면 該當憲法機關이 만약의 境遇 發生할 事態에 대하여 責任을 쳐야 하는 것이다(1973年 6月16日字判例).

### III.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基本關係를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基本條約를 判断하기 위해서는 独逸의 法的地位에 대한 基本法의 規定을 分析할 必要가 있다.

1. 基本法은 國際法学說이나 國家法学說의 命題에 따르면 基本法 前文이나 또는 基本法第 16 条, 第 23 条, 第 116 条와 第 146 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独逸帝国이 1945年의 敗亡을 넘어서서 存続하는 것이며, 独逸의 항복이 联合国의 独逸占領 또는 联合国에 의한 独逸主權代理行使등에 의하여 消滅되지 아니하였다는前提에서 出發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姿勢는 裁判部가 승복하여야 할 聯邦 憲法裁判所의 司法權에 符合되는 것이다. 独逸帝国은 永続하며 (聯邦憲法附屬法律 2.266[277]; 3. 288[319]; 5. 85[126]; 6. 309[336.363]) 從前과 다름없이 権利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国家機關이 組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特히 制度的으로 必要한 諸機關이 欠乏되어 있으므로 行為能力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基本法에도 全体独逸의 国家民族과 全体独逸의 国家權力이 存在한다 는 見解가 提出되어 있다 (聯邦憲法附屬法律 2.226[277]). 全体独逸에 대한 責任은 四大強국에 있다 (聯邦憲法附屬法律 I. 351 [362, 367]).

獨逸聯邦共和国이 設立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西獨國家가樹立된 것 이 아니라 独逸의 一部가 새로이 組織되었다고 하는 것뿐이다 (聯邦議会 第6会期에 있어서의 “칼 슈midt”的 発言).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帝国의 法的인 後繼者가 아니라 다만 国家로서 特히 領土面에서 部分的으로나마 独逸帝国과 一致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領土의 一致性도 绶對的인 것은 아니다. 国家民族과 国家領土라고 하는 側面에서 보면 独逸聯邦共和国이 不可分의 部分으로서 自國의 国民이 屬하는 独逸(独逸帝国)이라고 하는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割一의 国家民族을 認定하느냐 또는 不可分의

部分으로서 自國의 國家領土가 屬하는 独逸(独逸帝国)이라고 하는  
割一的 國家領土를 認定하느냐 하는 問題와는 相關없이 独逸聯邦共和  
國이라고 하면 独逸全体를 치칭하는 것은 아니다. 独逸聯邦共和  
國의 主權은 國家法律的 見地에서 보면 基本權의 効力이 미치는  
範圍에 局限되어 있으나 (聯邦憲法附屬法律 3.288[319]; 6.309[388.  
366]) 独逸全体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基本法前  
文).

現在의 独逸聯邦共和國은 基本法 第 23 条에 열거되어 있는 諸州와  
伯林으로 構成되어 있다. 聯邦共和國의 伯林州의 地位는 縮小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縮小되어 있는地位는 四大強國의 辦務官의  
이른바 留保權에 의하여 制約되어 있다 (聯邦憲法 附屬法律 7.1[7]  
; 19,377[388]; 20. 257[266]). 独逸民主共和國은 '原則的으로  
獨逸에 屬하는 것이며,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國과의 関係를 檢討하여  
볼 때 独逸民主共和國을 外國으로 간주할 수 없다 (聯邦憲法附屬法律  
11.150[158]). 그러므로 例컨대 東西獨의 交易이나 이에  
준하는 商易은 對外貿易이 아닌 것이다 (聯邦憲法附屬法律 18.3.53  
[354]).

2. 联邦裁判所는 基本法의 統一課業과 自決權을 認定하지 않으  
면 안되었거니와 本 裁判部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基本  
法의 첫머리는 政治的인 意味만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라 法的인  
內容도 兼備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은 联邦憲法의 至上의 課業이  
다. 이러한 課業을 政治的으로 어떻게 追求하는 것이 合理의이며

正当하나 하는 問題는 該當 聯邦共和國 機関이 決定하여야 한다.

하나의 憲法的인 措置가 統一遂行을 法的 側面에서 저해하고 妨害하고 또는 事實上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 措置가 中斷되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基本法에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制度를 守護하도록 受任한 機関이 決定할 問題이다. 立法機關만이 広範囲한 政治的 裁量權을 갖고 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立法機關이 自身의 裁量權의 限界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立法機關의 措置가 法的으로나 또는 實際的으로 自由統一原則에 確實히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立法機關과는 対立할 수 없는 것이다 (聯邦憲法附屬法律 5.85 [126]; 12.45 [51]) 確實히 알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說明이 必要할 것이다. 統一課業의 論理는 다음과 같다. 즉 独逸聯邦共和国의 憲法機關은 政治目的으로서의 国家統一性의 目的을 抛棄하여서는 안되며, 政策上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努力할 義務를 갖고 있다. 憲法機關은 内的으로 統一意慾을 부각시키고 外的으로 統一의 當為性을 主張하여야 하며, 統一遂行에 反對되는 措置는 곧 中斷시켜야 한다. 聯邦政府은 어떠한 政治的인 手段을 通하여 어떠한 方法으로 基本法이 要求하는 統一課業을 遂行하며, 이 目的에 어떻게 接近하느냐 하는 問題를 스스로 自身의 責任下에 決定하여야 한다. 政策을 決定하는 機회를 查定하는 것은 聯邦政府의 任務이며 同時に 聯邦政府을 構成하는 議會多數黨의 任務이다. 法院은 여기에 對하여 批判을 할 수도 없으며 政策遂行全盤에 대하여 自身의 意見도 피력할 수 없다. 이에 關한 政治的責任은 政治機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憲政国家 또는 法治国家로서의 独逸聯邦共和国에서 聯邦裁判所가 設定하거나 制定할 수 있는 한가지 限界는 独逸聯邦共和国이 統一을 이루하고 自決權을 行使하는데 必要한 手段으로서의 基本法의 權利名義(法的地位)를 포기하는 것을 憲法이 禁止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뿐만 아니라 聯邦共和国이 基本法에 違背되는 權利名義를 制定하거나 혹은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努力할 때 反對될 수 있는 權利名義에 參加하는 것을 憲法이 禁止하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權利名義가 効力を喪失할 危險이 發生하지 않는 한 政治的으로 權利名義를 利用하지 않는 것과 權利名義를 가지 고는 政治的인 實効를 거둘 수 없으니 權利名義는 現在에나 未来에 있어서도 無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差異가 있으며, 法的 意味의 權利名義를 抛棄하는 것과도 差異가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우리는 現實과 政治的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다. 現在나 未来에 있어서 統一을 위한 努力を 促進하는 論題를 提供할 수 있는 權利名義는 基本法에 根柢를 두고 있는 것이며, 基本法은 이러한 權利名義가 複生되지 않도록 要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論理는 反對의 境遇에도 通用되는 것이다. 政治的 態度는 後에 가서 “誤算한 結果”라고 判明될 때도 있는 것이다. 聯邦政府의 統一을 위한 努力도 政治的側面에서 反對에 부딪칠 수 있다. 憲法裁判所가 註解를 달 수 없는 이러한 事實은 独逸聯邦共和国이 하나의 法律機關의 協助를 받아서 統一을 위하여 努力할 때 第3者에 의하여 兩者가相互 对立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事実과는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 이와같이 볼 때 우리는 独逸聯邦共和国政府의 明白한 法的地位를 認識할 수 있으며, 우리는 基本法이 前提하고 定立한 우리의 独逸(全体) 国家民族과 하나의 (全体) 独逸國家權力を 갖고 있는 全体独逸이라는 存在를 우리 論理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独逸全体를 包括하는 意味로 独逸國이라고 부를때 이것이 独逸国家民族에 대한 鴻의어로 使用되었고 그때에 上記한 法的地位가 수호되어 있는데도 다만 政治的 배려에서 이와같은 하나의 다른 語句가 사용되었다면 何等의 異議를 提記할 수 없는 것이다. 独逸國이라고 하는 새로운 語句가 独逸国民意識 가운데 存在하는 言語上의 単一性이나 文化上の 単一性이라고 하는 概念을 内包하고 있다면 法的으로 이것은 抛棄될 수 없는 法的地位가 解決하여야 할 課業인 것이다. 後者は 聯邦政府가 허락된 手段으로 追求할 目的으로서의 統一이란 要請에 反對되는 것이다. 四大強國의 責任이 聯邦政府의 統一을 위한 努力의 基本的法律原則을 國際法으로나 또는 國家法律의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聯邦政府가 確信하고 있는 바와 같이 合憲의이다.

聯邦 憲法裁判所는 単獨代表權의 政治的 命題에 대하여 한번도 言及한 적이 없다. 聯邦 憲法裁判所는 独逸聯邦共和国의 独逸全体에 대한 単獨代表權이 法的 側面에서 보아 基本法에서 정당한 論拠을 誘導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檢討하거나 決定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3. 基本條約은 따라서 上述한 基本法의 要旨와 反對되는 方向으로 解釈되어서는 안된다. 独逸聯邦共和國內에서의 公式發言을 基本條約과 関聯시켜서 解釈할때 上記한 憲法的 根柢를 度外視하여서는 안된다.

#### IV.

1. 基本條約은 広意의 関係에서 考察할 때는 法的인 側面에서 높히 評価되어야 한다. 基本條約은 하나의 包括的인 政策이며, 聯邦政府가 緊張緩和를 추구하기 위한 東歐政策의 一部인 것이다. 이와 같은 政策가운데서 “모스크바”條約과 “바르샤바”條約이 가장 특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두개의 條約은 基本條約締結을 위한前提였고 基本條約은 前記한 두개의 條約을 締結함으로써 이를하고자 했던 聯邦政府의 目的이었다. 이러한 点으로 보아 基本條約은 “모스크바”條約이나 “바르샤바”條約과 같이 基本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基本條約은一般的인 政策의 措置와 마찬가지로任意로 수정할 수 없는 措置인 것이며, “基本”이란 語句가 지칭하듯이 하나의 새로운 長期政策의 基調를 이루고 있으므로 時間을 定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떠한 解約期限을 設定할 수도 없는 것이다. 基本條約은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사이의 関係가 새로이 形成되어지는 歷史的 転換點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関聯性은 基本條約을 法的側面에서 判断할 때에는 대단히 重要한 것이다. 基本條約은 基本法과 마찬가지로 (基本法 前文, 第23条 및 第146条) 独逸問題을 위한 最終的in 解決策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基本條約을 兩國間의 関係를 今后에 最終的으로  
규정할 때까지의 하나의 단순한 過渡期的 解決策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兩國間의 関係를 조절하는 어찌한  
다른 原則的인 새 規定에 의해서 代置될 수 있는 合意를 본 暫  
定協定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러한 基本條約은 締約當事者가 法  
的으로 自由로운 相互合意下에 該當法律原則에 따라서 變更 또는  
補完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는 상관없이 兩國相互間의 関係規  
定을 위하여 真心으로 바라던 새로운 原則인 것이다.

以上과 같은 基本條約의 政治的 意味와 関聯하여 다음에는 基本  
條約의 法律的 側面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基本條約은 두개의 独逸國家間의 関係를 위한 새로운 根本原則으로서  
장차 기필코 끊은 法律的 並存關係와 相關關係를 具體적으로 發展  
시킬 것이다(基本條約 第7条). 그러나 장차 取할 法的인 措置  
는 基本法과도 合致하여야 하며 基本條約과도 合致되어야 하는 것  
이다. 基本條約을 引用하여 앞으로 取해지는 法的措置와 관련된  
모든 事件은 條約上의 基本原則에 대하여 憲法的 見地에서 異議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法的으로 合當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確實히  
하여 둘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規範規制節次에 있어서는  
将来의 合意와 타협을 거쳐서 基本條約을 活用하도록 憲法上의 限  
界를 개판할 수 있는 限「明白히 提示하여야 하는 것이다.

2. 基本條約은 基本條約을 法的으로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包括的이고 特別한 法律關係 가운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側面은 우리가 基本條約 第2条, 第3条에 있는 國際聯合  
憲章에 관한部分을 참고하면 明白히 알 수 있고 締約当事者가  
이미 締結하였거나 또는 締約当事者가 現在 關係하고 있는 雙務의  
혹은 多邊의 国家條約이나 合意事項이 基本條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 第9条의 規定을 보아도 또한 明白히 알 수가 있다. 特히  
独逸聯邦共和国이 “西方側과 이미 締結한 条約”은 基本條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즉 聯邦共和国이 西方三大強국과 “平和的  
手段으로 그들의 共同目的 達成”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相互協力  
할義務가 있다고 (第2項) 규정한 独逸條約 第7条는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에 그들의 共同目的이란 聯邦共和国의 憲法과  
같은 自由主義的 憲法을 채택하고 유럽共同体에 統合된 独逸을  
의미한다. 또한 “모스크바”條約과 “바르샤바”條約도 마찬가지로  
저촉되지 않으며, 独逸全体에 관계되는 四大強國의 合意事項과 그리고  
獨逸全体에 관계되는 範圍內에서 独逸民主共和国과 「폴란드」  
人民共和国사이에 締結된 國境條約 및 友好條約도 또한 저촉받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本條約 第9条의 意義는 兩側의 會談代  
表들即 佛蘭西, 英國, 美合衆國 및 蘇聯大使에게 각각 보낸 覺書에  
관하여 상호연락하기 위하여 交換한 書信이나 伯林에 대한 1971  
年 9月 3日字의 四大強國協定에 관계되는 兩側聲明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上述한 내용을 檢討하여 보면 両国間に 現存하는 特別關係라고 하는 表現과 “基本條約은例外的인 狀況에 따르는 特別條約이다”라고 하는 表現이 어떠한 意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國際法의 意義에 있어서 하나의 国家이며 또한 國際法의 主體인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을 國際法의으로 승인하느냐 하는 問題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을 國際法上 正式으로 承認한다고 表現한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國際法上의 승인을 繼続적으로 거부하여 왔던 것이다. 独逸聯邦共和国이 緊張緩和政策을 추구함에 있어서 独逸民主共和国에 取한 태도를 특히 独逸民主共和国과 締結한 基本條約을 事實上의 承認으로 評價한다고 하면 이러한 事實上의 承認은 特別한 種類의 것이라고 解釈하여야 할 것이다. 基本條約은 一般國際法의 規定이 適用되는 雙務條約이며, 따라서 다른 國際條約과 같은 効力を 갖고 있으나 基本條約의 特徵은 비단 劍一의인 国家民族을 소유하던 全體独逸이란 国家가 存在하지만 아직 再組織되어 있지 않으므로 行為能力이 없는 国家이기 때문에 国境을 明白히 규제할 必要가 없는 二個部分 사이에 맺어진 條約이라고 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理由로 말미암아 두개의 国家가 相互協力하여야 하는 獨특한 法的接近性이 대두되는 것이며, 따라서 両국이 相對國 政府所在地에 大使를 交換하지 않고 常駐代表部를 交換한다고 하는 第8條의 規定이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같은 理由로 聯邦 大統領의 全權委任

에 의한 批准書의 交換으로 批准節次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特別覺書의 交換이 必要하게 된것이고 이러한 特別覺書 가운데 하나를 独逸聯邦共和国이 作成하였던 것이다. 같은 理由로 接境을 넘는 人間關係의 改善이라고 하는 目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진밀하게 協助하여야 한다는 条約의 一般的的傾向이 강조되었다(基本條約前文 第6条, 第7条와 附屬議定書).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交易은 現存 協定에 依拠하여 推進한다는 基本條約第7条에 의한 附屬議定書의 첫째번 規定은 前記한 交易이 外國과의 対外交易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特別히 강조한 것이다. 基本條約의 特性은 基本條約이 “自体内部關係”를 調整한다고 한 文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基本條約은 全的으로 特別關係만을 조정한 것이 아니므로 一般國際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基本條約은 自体의 特性에 依하여 創出된 特別法의 범주나 혹은 法對象에 의하여 創約을 맡는 特別法의 범주에도 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特別範疇에 屬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은 締約當事국의 関係에는 根本的으로 國際聯合憲章을 適用한다고 明白히 規定한 基本條約 第2条 및 第3条에서 由来된 것이다. 따라서 基本條約은 二重的 特性을 所有하고 있다. 즉, 이 条約은 國際法上의 条約임과 同時に 自体内部關係를 調節하는 特別한 内容을 가지고 있는 条約이다. 國際條約에 있어서 自体内部調節이란 基本條約의 境遇와 같이 하나의 国家가 完全히 存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完全한 国家秩序가 機能을 発揮하지

못할 때에 必要한 것이다. 联邦国家内部에서 조차도 만약 联邦憲法에 構成州間의 相互調整策이 없을 경우에는 一般國際法規定이 適用되는 것이다(独逸帝国 国家裁判所判決 第 178 号 및 第 207 号와 基本法에 따르는 後繼條項 및 联邦憲法 附屬法律 1.14[51]; 34, 216[230]). 따라서 “二国家論”이란 見解는 基本法秩序와 一致하지 않는다”고 하는 主張은 正當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V.

具体的으로 基本條約을 憲法的 見地에서 判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한 考察이 必要한 것이다.

1. 上述한 바와 같이 国家機關의 裁量權은 基本法의 統一課業에 依하여 憲法的 側面에서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확인하면 独逸国民의 自由스러운 自決原則에 의한 統一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基本法으로 부터 由来되는 法的地位도 포기되어서는 안되며, 联邦政府의 統一을 위한 努力에 反對되고 基本法과 一致되지 아니한 法律機構는 独逸聯邦共和国의 憲法機關이 参加하는 가운데 設立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고찰할 때, 独逸統一性에 관하여 联邦政府가 独逸民主共和国에 보낸 公한의 意義있는 것이라 하겠다. 公한서의 本質的 内容은 会談이 完了되기 이전에 伝達되었고 相對方의 回答이 基本條約의 署名直前에 伝達되었다고 하는 것은 1973 年 6 月 19 日의 口頭公判結果, 確実히 認定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基本條約은 独逸国民이 自決權에 따라 統一性을

되찾게 될 瑪羅巴의 平和狀態를 위한 聯邦共和国의 政治的 目的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判明되었다. 独逸聯邦共和国의 上記 공한은 따라서 상술한 憲法의 内容에 準하여 理解되어야 하는데, 이 공한은 上述한 바 있는 基本條約의 解釈結果 自体를 再確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基本條約 前文에는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国家的 次元의 問題를 包含한 根本問題에 관한 見解差異와는 상관없이”라고 적혀 있다. “国家的 問題”란 具體적으로 独逸聯邦共和国에 대해서는 “独逸国民의 国家統一性의 維持”에 関係되는 基本法上의 統一課業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基本條約 前文은 基本條約 全體의 解釈을 위한 決定的 役割을 하는 中요한 문장인 것이다. 이 前文은 基本法의 統一課業과 一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独逸民主共和国과의 関係를 包含한 모든 國際關係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자유스러운 自決權에 依拠하여 独逸国民의 国家的 統一性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名義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 또한 聯邦政府는 基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政策面에서 平和的 方法으로 國際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前記한 自身의 目的을 위하여 努力할 權利名義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基本條約은 分斷을 深化시키는 試約도 아니다. 基本條約은 独逸国民의 国家의 統一性을 再組織할 수 있도록 聯邦政府가 全力を 추구해야 한다는 当為性을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基本條約은 國際法界에 널리 알려진 하나의 聯盟의 變體에서 끝나는 장구한 과정속의

첫째번 措置인 것이다. 즉 하나의 国家 가운데서 独逸国民의 再統一을 実現키 위한, 다시 말해서 独逸의 再組織을 達成키 위한措置인 것이다.

2. 基本條約 第3条 第2項은 締結当事者の 境界線이 現在나未來에 있어서도 不可侵의인 것이라는 것을 確認하고 있으며, 締結当事者が 그들의 領土의 保全을 絶對的으로 相互尊重할 義務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法的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相異한 種類의 境界線이 있다. 行政区劃線, 休戰線, 影響圈劃定線, 基本法 効力境界線, 1937年 12月 31日 現在의 独逸帝國國境線과 國家法律로 定한 境界線 또는 國家全体를 둘러싼 境界線이나 하나의 全体國家内部에 있는 小單位構成國家 (例컨데 独逸聯邦의 州政府)를 相互分離시키는 境界線이 있다. 第3条第2項은 하나의 國家法律에 의한 境界線을 意味하고 있다고 하는 事實은 基本條約의 第1, 2, 3条 第1, 4, 6項의 内容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兩國의 境界線은 國境線으로 認定하는 것이 基本法과 一致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하여 두개의 國家사이의 國家法律에 의한 境界線이라고 規定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두개의 國家사이의 國家法律에 의한 境界線의 “特徵”은 그것이 “全體로서의 独逸”이란 存在하는 國家의 기반위에 存在한다고 하는데에 있으며 独逸聯邦共和国 構成州의 境界線과 같은 國家法律에 의한 境界線이라고 하는데에 있다. 境界線을 이와같이 規定하면 兩國이 “正常的이고 善隣의인 相互關係를 平等原則에 입각하여” 發展시킨다고 하는 (基本條約 第1条)

타협이 통용되며 両国은 國際聯合憲章의 모든 主權国家는 平等하다는 平等原則에 따른다는(基本條約 第2条) 타협도 통용되고 또한 両국의 主權은 自身의 国家領土에 局限되고 両国이 相對國의 内政과 外交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는(基本條約 第6条) 타협도 통용된다. 또한 基本條約 第3条 第3項의 国境線의 定義는 独逸国民의 国家的 統一性成就라고 하는 国家的 問題를 未決로 두어야 한다는 基本法의 要請과도 一致하는 것이다. 基本條約 第3条 第2項의 "確認"이라고 하는 用語로 부터 国境線에 国家法律에 依한 国境線의 特徵을 부여한 "모스크바"條約의 規定이 여기에 適用되었다고 하는 結論을 유도할 수는 없다. 즉 條約規定에 設權的 意義를 부여할 수 없다는 結論을 算出할 수 없다는 것이다. 国境線으로서의 境界線은 條約上 여러가지로 認定하고 保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法的으로 意義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理由는 條約上 여러가지로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結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條約의 相應한 規定이 어떠한 法的인 意味를 갖느냐 하는 것을 調査할 必要도 없이 基本條約 第3条 第1項은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境界線을 새롭히 추가해서 條約上 認定하고 이 境界線을 設權的으로 保障한다는 뜻을 内包하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境界線은 이와같이 定義함으로써 만이, 그리고 또한 다만 이러한 資格을 가짐으로써만이 基本法과 一致하게 定義될 수 있는 것이다. 基本條約 第3条 第2項의 境界線의 存立과

進路에 관한 합의事項은 基本條約에 適用된 國際法規定에 따라서  
앞으로도 相互合意하여 變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自明한 이치  
이다.

3. 締結當事者는 第 6 条에서, 自身의 主權을 自身의 國家領土에  
局限되며 締結當事者는 相對方의 内政 및 外交에 있어서의 獨立性  
과 自立性을 尊重한다는 原則에서 出發하는데 合意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事項은 独逸聯邦共和國이 基本條約을 締結할 수 있는  
根拠가 基本法에 規定되고 있는 바와같이 独逸이 組織되지 않아서  
行為能力을 所有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의 國家로서 存続하고 있  
다고 하는데 있으며 全體獨逸國家의 部分의 一部로서 並存하고 있  
다는 特別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兩國의 主權은 自身의 國家領土에  
만 局限되고 兩國은 相對方의 内政과 外交에 関한 獨立性과 自主  
性을 尊重하여야 한다고 보아야지만 비로소 基本法과 一致되는 것  
이다.

4. 基本法 第 23 条는 “基本法이 当分間 独逸聯邦國家의 諸州  
에만 有効하며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에는 聯邦에 加入된 後에  
만 비로소 効力이 發生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이  
統一課業과 긴밀한 関係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確實하나 그와  
같은 것이 問題가 된 것은 아니다. 이 規定은 規定自體로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内容으로 보아서도 基本法의 特徵을 이루는 重要  
한 規定이라고 볼 수 있다. 이 規定에 依하면 独逸聯邦共和國은  
領土의으로 不完全한 것이다.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國은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이 独逸聯邦共和国에 편입할 의사가 있어서 편입할 수만 있다면 上記 憲法의 規定에 따라서 可能한限 빨리, 必要한措置를 取할義務를 가지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이 聯邦에 屬하게 될 때, 비로소 “完全”한 것이 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国이 그간 성숙한 狀況에 대하여 “法律的側面”에서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것은 다른 部分(東獨)이 聯邦에 편입하기로 決定하면 즉시 受容할 것을 단독으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規定은 独逸聯邦政府가 法律的側面에서 다른 部分(東獨)을 단독으로 편입시킬 수 없으므로 相對方의 양해하에 수용할 수 있다는 条約上 하나의 의존관계에 빠지는 것을 事前에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事前禁止措置는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이 그간 異質的政体를 갖는 国家로서 組織되었으나 “受容”에 必要한 要件를 구비하게 되었을 때는 즉각 수용할 機会를 포착하여야 할 聯邦政府의 政治的 또는 事實的義務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基本法 第23條는 그간의 政治的變化로 말미암아 無用하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法律的 理由로 퇴폐된 것도 아니다. 이 条文은 여전히 有効하다.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도 그간 独逸民主共和国이라고 하는 하나의 国家로 發展하였고, 国家組織을 가지므로써 憲法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自身의 憲法에 의거해서만이 聯邦共和国과의 統合(“편입”)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統合實現에 있어서 難題는

獨逸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 内部의 国家法律의 発展過程에 아무런 法的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있다. 이러한 狀況은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을 受用할 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基本法 第23条의 憲法上의 義務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基本法 第23条의 門戶開放이라는 憲法的 規定은 금번의 基本條約에 있어서도 变경되지 않고 있다. 환언하면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을 受用할 때에는 独逸民主共和国의 法的意思에 따른다는 基本條約의 規定은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이 独逸民主共和国이라고 하는 한 国家内에 組織된 後 合法的인 것을 再確認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든 基本條約規定이 基本法 第23条의 義務를 履行할 聯邦政府의 法的 態勢가 條約違反의 態度라고 解釈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独逸聯邦共和国은 基本條約이 發効된 후에도 法의으로 하나의 自由로운 独逸国家로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独逸의 다른 部分(東獨)을 이와같은 자유로운 独逸国家에 受容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基本法의 法的 見解인 것이다. 이것은 独逸이 장차 共產主義에 의해서 統合되어야 한다고 하는 独逸民主共和国의 政治的 信念과는 反對되는 것이라 하겠다.

5. 基本條約이 基本法 第16条와 第116条 第1項의 国籍에 관한 條項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考察이 必要하다. 聯邦共和国은 議定書에 基本條約이 “国籍問題는 저촉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国籍問題가 解決”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基本條約이 基本法 第16条와 第116条

第2項의 国籍規定에 “영향”을 주느냐 또한 준다면 어떠한 영향이 前記한 基本法의 規定에 위배되느냐 하는 등의 問題가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基本法 第16條는 基本法 第116條第1項에도 언급된 “独逸国籍”이란 独逸聯邦共和國의 国籍을 의미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말은 独逸国籍이란 独逸聯邦共和國의 国民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独逸聯邦共和國은 他国에 의한 国籍의 剝奪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國을 또한 他国에 의한 国籍의 박탈을 法的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国籍의 박탈은 独逸聯邦共和國의 見地에서 보면 아무런 効力도 없는 것이다. 基本法에 規定한 独逸国籍을 所有한 基本法에 따른 独逸人의 地位는 如何한 措置에 의해서도 減少되거나 減縮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独逸聯邦共和國도 이 規定에는 저촉될 수 없다. 이러한 独逸人의 地位는 故국이 自國民을 保護하여야 한다는 義務에서 유래된 것이다. 独逸國民은 그가 独逸聯邦共和國의 法에 따라서 法廷에서 자기의 權利를 찾기 위하여 努力하는 것을 抛棄하지 않는 한 그가 何時라도 独逸聯邦共和國의 国家法律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故국의 보호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聯邦憲法裁判所는 外國이 아닌 独逸民主共和國의 法院의 判決에 대해서도 公共秩序를 적용시키도록 하였던 것이다(聯邦憲法附屬法律 11,150〔160〕). 이와같은 논리는 다른 事項에도 適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경우를 막론하고 独逸民主共和國 국민이 基本法 第16條 및 第160條 第1項에 규정한 独逸人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基本條約을 解釈하여야 한다면  
基本條約은 確實히 基本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條約이 發効된 後라고 할지라도  
独逸聯邦共和国에 대하여 外國이 아니라고 解釈되어야 基本條約은  
合憲의다라고 하는 結論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独逸聯  
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国의 國籍法에 구애받지 않고 独逸民主共和  
國 国民이 独逸聯邦共和国의 保護区域(領土)이나 独逸聯邦共和国의  
憲法의 効力이 미치는 데에 있을 때에는 基本法 第 116 条 第 1 項  
과 第 16 条에 따라서 独逸民主共和国 国民을 独逸聯邦共和国 国民  
과 똑같이 취급하여야만 基本條約의 合憲性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独逸民主共和国国民은 基本法의 効力이 미치는  
곳에서는 独逸聯邦共和国의 司法權의 保護를 公的으로 賦予하고  
基本法 第 14 条의 基本權을 包含한 基本法에 규정된 모든 基本權  
의 보장도 賦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基本條約이나 또는  
基本條約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合意事項이 基本法이 부여하는  
憲法의 保護를 감축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基本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6. 基本權은 또한 “財產問題에 대한 相異한 法的地位 때문에  
基本條約에 의해서 조정될 수가 없다”고 하는 議定書의 記錄도  
같은 意味로 해석되어야 한다.

7. 聯邦政府가 基本法 第 116 条 第 1 項에 규정된 모든 独逸人  
을 保護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基本法의 義務規定이

基本條約에 위배되지 않는 것도 基本條約의 上述한 特性에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이다. 聯邦政府는 基本法의 効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자신의 海外公館을 통하여나 혹은 聯邦共和国이 加入한 國際機構를 通하여 發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獨逸國"의 利益을 위하여介入한 權能을 所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基本法 第 116 条 第 1 項에 規定된 獨逸國民이 그들의 權利와 基本權의 効果的인 保護를 받기 위하여 獨逸聯邦共和国의 官廳을 찾아왔을 때에는 도와줄 수 있는 權能도 종전과 다름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獨逸聯邦国으로서는 본래에 있어서도 獨逸聯邦共和国国民과 "다른 獨逸國民" 사이에는 아무런 法的 차이가 없는 것이다.

基本條約의 特性은 基本條約이 "根本原則的 條約"으로써 獨逸聯邦共和国과 獨逸民主共和国사이의 特別한 法律關係를 設立한 종전의 여러 가지 法律原則(消滅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再組織되지 아니한 獨逸全体의 法律事項과 獨逸全体에 대한 四大強國의 責任事項과 더불어 獨逸内에 있는 두개의 国家를 다른 어떠한 兩國間의 正常的 國際條約보다 더 緊密하게 相互關聯 지우는 하나의 새로운 法律原則)을 추가해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있다.

8. 伯林의 法的地位는 예로부터 獨逸聯邦下院과 聯邦上院 및 聯邦政府와 州政府 그리고 聯邦憲法裁判所가 基本法을 採用하여 고수하였던 바 基本條約도 이러한 伯林의 地位를 변경시킬 수 없다. 基本法은 미래에 있어서도 聯邦이나 各州의 憲法機關에 이러한 法的地位를 무조건 수호하고 그를 위하여 介入할 義務를

부여하고 있다. (西) 伯林에 관한兩側의 声明도 오로지 이러한 관점에서 解釈하고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声明書 第1項의 양해 사항은 附屬議定書 第7條의 協定과 規定이 1971年 9月3日의 四大強國協定에 따라(西) 伯林에 拡大 適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해 사항도 聯邦共和國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機關의 基本法上의 義務를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에 基本法上의 義務라고 하는 것은 内容上 伯林州와 伯林州民에 拡大 適用될 수 있는 協定과 合意事項을 独逸民主共和國과 締結할 때에는 이러한 協定과 合意事項이 伯林에 拡大適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伯林에 관한 聯合國의 留保事項을 보류해두고 “1971年 9月3日의 四大強國協定에 따라서” 基本法의 効力範圍에 해당하는 法的地位에 대한 伯林과 伯林住民의 法的地位가 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야 할 義務를 의미하며 이러한 主張이 관찰될 때에만 前記 協定과 合意事項을 独逸民主共和國과 締결할 義務를 지칭하는 것이다. 独逸民主共和國내에 있는 独逸聯邦共和國의 常駐代表部가 (西) 伯林의 “利害關係도 代理行使하여야 한다고 하는 第2項의 合意事項도 同一한 法理論的 根據에 의거하고 있다. 第3項에 암시된 “独逸民主共和國과 西伯林州政府間의 合意可能性에 관한 規定”은 伯林州가 基本法에 따른 法律秩序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明白히 밝혀둔다.

9. 지금까지 基本條約의 해석을 위해서 上述한 것은 모두 附屬議定書 第7條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基本條約實施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国과의 後継條約이나 合意事項의 締結時에도 의 미상으로 보아서 해당되는 것이다. 例컨데

a) 附屬議定書 第7条 第5号에 言及된 通信協定도 獨逸聯邦 共和国 및 獨逸民主共和国国民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附屬議定書 第7条 第1号에 언급된 現存協定에 따른 獨逸 聯邦共和国과 獨逸民主共和国間의 交易은 앞으로 이 文易이 진척될 때라도 對外貿易으로 変質되어서는 안된다. 환언하면 이 交易에 대하여 對外貿易에 부과되는 關稅의 障壁이 合意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b) "프로그램"作成時 政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테레비와 라디오에 관해서도 基本條約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어 獨逸民主共和国이 원치 않은 방송을 法的인 조치나 行政的인 措置를 통해서 저지하기 위한 法的根據를 提供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確실히 밝힐 必要가 있다. 방송국 自体의 一般的 好강에 따라 現存 放送機構에 의하여 獨逸聯邦共和國內에서 방영되는 방송은 基本條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獨逸聯邦共和国은 방송기구의 自由를 제한하는 어떠한 合意事項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基本法 第5条의 基本權은 締約當事者中 어느一方이 相對方의 어떠한 방송프로가 자기의 内政을 간섭하는 것이므로 基本條約의 義務履行上 금지되어야 한다고 主張할 때라도 하등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c) 結社의 自由에 대한 基本權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단체의 約領이 締約相對方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단체가 基本法에 입각한 질서를 준수한다면 설사 締約相對方이 이  
단체의 目的과 宣伝이 基本條約의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  
하면서 이 단체가 独逸民主共和国의 内政에 간섭하므로 이 단체를  
締約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基本法  
第5条의 基本權은 制限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a) 联邦政府와 联邦 및 各州의 모든 公共機關은 独逸聯邦  
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에 存在하는 共通点에 대해서 뿐만 아  
니라 生活秩序와 法律秩序의 側面에 있어서의 世界觀의인 政治의인  
또는 社會의인 差異點에 대하여서도 대중인식을 작성시켜야 할 憲法  
上의 義務를 가지고 있다. 基本條約은 前記 公共機構의 이러한  
義務를 면제시켜 준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上記 分野에 있어  
서의 联邦政府의 自由와 联邦政府의 自由民主秩序를 위한 憲法的  
活動을 独逸民主共和国에 대한 内政干涉으로 간주하고 基本條約의  
내용과 정신에 위배되며 따라서 基本條約 違反이다 라고 主張하면  
서 制限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은 곧 反憲法의인 처사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b) 결국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사이의 境界上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 즉 장벽, 철도망, 死線과 사격명령등과 같은  
사태는 전적으로 基本條約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혀둔다.

## VI.

끝으로 本判決을 論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해명이 必要한 것이다.

1. 上述한 論述은 基本條約을 마치 聯邦立法府가 制定한 하나의 法律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條約의 해석에는 特別한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외시된 한계점은 基本條約前文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같이 “國家的 次元의 問題”에 관하여 締約当事者는 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였다고 하는데에 合意하였다라는 根本的 問題에 관한 의견차이에 비추어서 모든 基本條約에 대한 合憲的인 해석을 檢討하여야 한다고 하는 事實을 고려하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國家的 次元의 統一性問題”에 合意을 못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같은 問題를 包含한 모든 根本問題에 대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間의 의견차이는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같은 見解는 独逸聯邦共和国이 締約当事者로서 基本法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할 결론을 判決이 基本條約에 대한 異見으로 부터 도출한다면 이 경우에는 條約의 解釈에 관한 特別規定에 합당한 措置인 것이다.

2. 上述한 설명을 고려하여 보면 實踐을 目的으로 한 하나의 條約으로서의 基本條約은 存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서도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아서도 뿐만아니라 장래의 後統條約에 대한 基本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도 法律的 側面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基本條約의 내용에 전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설명

이라고 할지라도 判決理由에 관한 진술은 모두 聯邦憲法裁判所의 司法權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必要한 것이고 또한 그려한 진술은 判決을 내릴 때에 必要한 理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條約이 發効(1973年 6月20日)되기 전에 聯邦憲法裁判所에 계류중인 公判에 관하여 양지하고 있었으며 聯邦政府와 모든 憲法機構, 聯邦 및 各州의 法院과 官廳이 聯邦憲法裁判所의 判決에 승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양지하고 있었고 立法時 聯邦政府의 法的陳述內容이 本質에 있어서 이 判決로 捆束力を 갖게 된 法的見解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基本條約 批准時 通告된 独逸의 統一性에 관한 공한을 包含한 基本條約法의 聯邦法律官報에 공고된 全文을 알고 있었다. 独逸民主共和国은 聯邦政府로 부터 聯邦政府가 基本法과 一致하는 범위내에서 基本條約을 締結할 수 있다는 통고를 받았는데 그때에 아무런 反對意見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國際法의 側面에서 分析・検討함에 있어서도 基本法에 따라 必要한 基本條約의 설명을 條約相對方에게 알려주는데 적합한 것이다. 이와같은 일은 만고에 例外的으로 한 條約當事者가 條約相對方에게 條約이 어떠한 解釈에 있어서 國內憲法에 反對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認定하지 않으면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면 國際政治現實에 있어서 意義를 가질 수 있는 一般國際慣習法의 命題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VII.

이 判決은 全員一致로 決定한 것이다.

判事; 쏘이펠트法官, 슈라프렌돌푸博士, 루프博士, 가이거博士, 틸슈法官, 링커博士, 반트法官。

XIV. 1973年 7月31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公報處 發表

發 表 文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第2部는 오늘 判決文에서 밝힌바와 같이  
東西獨基本條約이 基本法에 違背되지 않는 合憲이라고 判示했다.

이 判決文은 全文이 6章으로 되어 있다.

第1章에는 聯邦의 政治問題나 또는 聯邦立法府에 속하는 対象이  
東西獨基本條約에 規定되어 있으므로 聯邦議會의 批准을 必要로  
한다고 했다.

第2章은 聯邦憲法裁判所의 權限을 밝혔다. 이에는 “規範審議  
로서 條約과 關係되는 事項이 違憲인가에 対한 것이다.

이와 관하여 聯邦憲法裁判所와 其他 다른 憲法機關과의 基本法  
의 關係도 취급했다. 소위 法院의 自体制限은 同判決文에 따르면  
自由스런 政治的形成權을 위하여 憲法的裁量範圍를 認定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憲法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政治的活動範圍는  
憲法裁判所가 判여할바가 아니며 이는 政治的 세량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第3章은 基本法 規定에 따른 独逸의 法的地位였다.

이에 의한다면 1945年 멀망한 独逸은 戰爭으로 인하여 法의으로

完全 消滅한 것이 아니라 滅亡을 극복하고 國際法의 主体를 持続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全體國家로서는 制度의 瑕疵에 由於 國際法의 行為能力이 없다는 것이다. 이 全體獨逸이 獨逸國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全體國家 全體國民에 의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不可分의 一部이며, 聯邦共和國의 地域 역시 全體獨逸地域에 一部에 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同判決文은 獨逸聯邦共和國은 全體獨逸과 部分的으로 同一性을 유지하여 獨逸의一部分이 재조직되었다는 것에 어떤 影響도 주지 못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은 그의 高權行使에 있어 基本法이 効力を 미치는 곳에, 限定시켰으나 그의 책임은 全獨에 미친다. 獨逸民主共和國 역시 全體獨逸에 屬한다. 그리고 聯邦共和國 獨逸과의 関係에서 外國이 아니다.

基本法의 再統一要求는 獨逸聯邦憲法機關이 政治的으로 統一을拋棄해서는 안되며 모든 憲法機關은 이 目的을 達成하는데 그들의 政策이 作用하고 이런 目的을 위하여 統一의 要求를 内的으로 각성유지 해야하며 外的으로는 積極的으로 이를 主張하고 統一을 淪害하는 것은 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밝히고 있다.

이런 憲法的 要求속에서의 정치적제량의範圍가 憲法의으로 무엇이냐에 对하여는 聯邦政府가 基本法에서 파생되는 權源을拋棄해서는 안되며 그 權源이란 獨逸民族自決權과 統一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또한 聯邦政府의 政策이 基本法에 違背되는 根源을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했으며 이런 目的을 向하여 政策을樹立해서

도 안된다고 했다.

第4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判決理由를 밝혔다;

條約에 나타난 보다큰 政策과 関聯하여 基本法規定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方法으로 独逸統一問題가 最終的으로 解決될 수 없다는 논조가 나온다. 설사 그것이 파도적인 規定이 아니고 兩獨關係에 대한 規定을 위한 새로운 基本이라 하더라도.....

同條約은 二重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즉 그의 性格으로 볼때는 國際法의 條約이다.

條約의 特殊性에 따라 볼것 같으면 内國 관계다.

第5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가장긴 章임),

同條約은 基本法의 再統一要求에 違背되지 않는다, 즉 그條約은 分斷條約이 아니다.

独逸国民이 그国民의 統一國家를 다시금 組織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联邦共和国이 오늘이다, 또는 미래다 하고 規定하고 있지 않다.

基本法은 統一을 即時 이루라고 規定된것이 아니라 長期的過程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独逸民族의 自決權의 原則을 바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2. 條約 第3條 3項은 特殊性을 갖고 있는 国境을 保障하고 있다.

이곳에서 말하는 特殊性이란 独逸聯邦共和国의 各州들의 国境과 같은 그런 国境의 保障이다.

3. 同條約 第6條의 規定은 自國의 地域과 相對國獨立의 尊重,

国内外問題의 各国의 自治権등에 行使되는 自國의 高權行使의 自主制限權은 兩獨이 全體独逸의 一部分으로서 特殊關係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4. 基本法 第 23 条는 独逸聯邦共和國이 他独逸國에 예속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独逸聯邦共和國이 独逸民主共和國에 어떤 영향도 가 하지 않는다는 條約 規定이 基本法 第 23 条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5. 基本條約 第 16 条에 따르면 独逸國籍은 同時에 独逸聯邦共和國 国籍이라고 되어 있다.

基本法이 뜻 하는 独逸國籍은 独逸聯邦共和國의 国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独逸國籍을 가진자가 他國家를 認定치 않는다고 해서 聯邦共和國國籍을 貧失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境遇가 西獨의 基本法이 말하는 独逸國民이어야하면 独逸聯邦法에 따라서 자기의 基本権을 憲法裁判所 법정앞에서 請求할 수 있고 基本法이 規定한 모든基本権의 請求를 主張할 수 있는 位置에 到達했을때가 独逸國民인 것이다 (註 外國人の 基本権은 西獨內에서 制限되어 있음).

6. 独逸聯邦共和國政府는 前과 마찬가지로 모든 独逸人을 基本法 第 116 条 1 項에 따라 保護해야 하며 最小의 生活을 保障해야 한다. 즉 基本法의 効力이 미치는 範囲안에서, 그러니까 外國駐在 独逸公館內의 独逸人, 國際機構內의 独逸人 등이며, 이와 한가지에 基本権의 영향이 가도록 積極性을 띠어야 한다.

7. 東西独基本條約은 伯林의 法的位置에 어떤影響도 주지 않았다.

8. 基本條約을 모체로한 부수적 條約規定도 역시 위헌이 아니다.

東西独의 체신협정이 独逸聯邦共和国内의 独逸人이나 独逸民主共和国内의 独逸人, 어느누구의 基本權 즉 基本法 第 10 条가 規定한 通信의 自由가 制限받지 않았으며 第 5 条가 規定한 言論의 自由도 制限하지 않았다.

東西独의 상거래는 外國을 相對로 하는 貿易去來가 아니다.

條約의 解釈上 一定한 放送에 限하여 東西独이 相互 방영하겠다는 規定 역시 基本法 第 5 条 言論의 自由에서 파생되는 방송자유의 原則을 制限한 것은 아니다.

이와 同一한것이 결사의 自由다.

憲法機關은 一定한 憲法的義務가 주어져있다. 이러한 憲法機關의 憲法的義務가 基本條約規定때문에 없어졌다고 東西独基本條約을 해서는 안된다.

基本條約이 東獨의 主權行使와 國境을 承認한것은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憲法의 問題가 없으나 同條約이 東獨의 장벽, 철조망 및 西獨으로 越境하는자에 对한 東獨側의 死殺權 등을 認定하는 것은 違憲이다.

第 6 章에서 條約內容과 関係없는 判決理由도 聯邦憲法裁判所로서 関聯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判決理由로 採択했다고 明白히 밝혔다.

이 判決文은 이어서 이判決文이 独逸民主共和国에 对하여 國際法

的으로 어떤 意味가 있는가도 밝혔다.

칼스루해 1973.7.31.

D. 联邦憲法裁判所 裁判官 로트만博士에 对한 바이에른  
州政府의 1973年 5月 28日字의 기피신청심사

I. 1973年 5月 28日字의 바이에른 州政府의 忌避申請

(테렉스)

바이에른州政府 首相

8 뮌헨 1973.5.28.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2部 貫下

75. 칼스루해

案 件 ; 1972年 12月 21日 署名한 東西独基本條約에 对한 法의  
違憲審查에 関한 審議

法官忌避

1973年 5月 22日 基本條約의 効力에 对한 仮处分申請을 한바  
있는 바이에른 州政府는 联邦憲法裁判所法 第 19 条에 依拠 联邦憲法  
裁判所 判事 Joachim Rottmann 博士가 裁判에 "편견" 적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判決을 위하여 그를 裁判官으로 任命한것을  
忌避하는 바 입니다.

理由；地方新聞報道에 따르면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1973年 4月28日字) 로트만 判事는 自民党 칸스루해 市  
地区党에서 東西獨 基本條約에 関한 講演会를 가진바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中立을 지켜야 할 裁判官으로서 裁判前에 自己의 意  
見을 發表했다는 것을 裁判에 重大한 影響力이 잘 意識가 있다  
하겠다.

新聞에 報道된 그의 講演內容에 따르면 아데나워首相이當時의  
現實主義를 認定한 나머지 独逸分斷을 認定한 바와 같이 브란트-  
쉘 政府 역시 現實을 考慮하면서 東西獨基本條約을 締結한 것이라  
고 되어 있다. 이어서 그는 東西獨은 서로가 独立된 主權國家라  
고 했으며 兩獨間의 関係는 國際法에 따른다고 했다. 또한 그는  
基本條約이大使交換이라는 外交的분수를 피했다 해도 同條約의  
國際法的 性格에는 어떤 影響도 주지 듯 하며 따라서 基本條約은  
完全한 外交關係를 예상한것이 리고 했다. 結論에 이르러 同 演士  
는 聯邦政府의 東方政策을 欧羅巴 平和에 친정하고 重要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評했다.

上記 演士의 發言의 重點을 政治的인 것이 있기 때문에 聯邦憲法  
裁判所法 第18條3項 2号의 例外構成要件을 充足한 것이 아니다.

名譽博士 判事 풀펠

II. 1973年 4月 28日字의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新聞記事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マン博士;

東西独을 同等権의 國家

自民党支部党은 独逸政策에 関하여 ロットマン博士와 討議하다.

1949年에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이 새로이樹立됨으로서 実質的面에서 볼때 늦어도 이때는 滅亡한 独逸諸國은 國家法의으로도 역시 이때 消滅한 것이다.单一國家라는 國家意識이 両獨間에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法的見解를 联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マン博士가 칼스루해 自民党 支部党이 주재하는 講演場席上에서 東方條約締結後의 独逸에 대한 法的狀況에 관하여 라는 題目下에 피력했다.

칼스루해 自民党 支部黨委員長이며 市長인 Rehberger博士로부터 환영을 받은 로트만 判事는 그의 講演初에 前後 独逸問題變遷에 대한 관망도 피력했다.

東歐軍事同盟의 一員이며 蘇聯과 함께 西伯林을 占領할려고 시도하는 東獨이 있는가 하면 타면에 있어서 東獨을 蘇聯의支配領域에서 離脱시키도록 시도하는 独逸聯邦共和國이 있다는 것이 欧羅巴平和安全을 위해 얼마나도 위험한 것인가 말했던 것이다.

東西独이 戰爭도 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分斷狀態를維持

하고 이렇다 할 변화도 없이 冷戰만 거듭하는 것이 独逸国民을 위하여 얼마나 슬픈일인가 라고 말 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현 브란트 政權이 東方條約을 締結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다소나마 減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1949年부터 1963年동안 政權을 지워온 아데나워政府가 分斷을 기정 사실로 認定하여 現実主義政治를 하여온 바와 같은 現実政策이다 라고 했다. 로트만 博士는 率直한 法的見解를 訝혔다.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相互主權国家처럼 代置되어 있다. 그들의 法的關係는 國際法에 따르고 있다. 基本條約이 “大使”라는 用語를 避하고 “代表”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이로서 條約의 國際法의 性格을 変質시키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條約에 따라 完全한 外交關係가樹立된 것으로豫想된다고 했다.

演士는 結論에 가서 聯邦政府의 東邦政策은 欧羅巴 平和를 위한 진정하고 重要한 기여라고 評했다.

同條約締結로 말미암아 両獨間의 國境 紛爭은 解消되기 시작했다. 西伯林의 國際法의 安全과 西伯林 通絡의 自由通行, 東伯林 및 東獨旅行의 懶和는 両獨國家에 居住하는 國民에 對한 意義있는 發展이라는 것이 로트만 判事의 要旨였다.

III. 1973年 5月4日字의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의 독자난 투고

政府는 統一政策을 確固히 維持하고 있다.

東西独이 同等權의 國家라는 1973年 4月28日字의 貴紙報道에  
의하여 독자들은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트만博士의 法的見解를  
잘 읽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独逸諸國은 國家法의으로 볼때 消滅했으며 東西獨基本  
條約締結로 인하여 兩獨間의 完全한 外交關係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로트만 博士의 見解는 聯邦政府外相과 自民黨見解와도 다른 것입  
니다.

또한 聯邦憲法裁判所의 과거판시와도 상치 됩니다. 오늘날 까지의  
法的支配說은 独逸帝國이 消滅된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ロット만博  
士는 単一獨逸國家 認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判断은 과연 東西獨의 國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具体的인 認識을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연사가 独逸軍民이 分斷을 現実的인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는 구체적인 資料를 내어 놓았어야 했습니다.

兩獨間의 戰爭없이는 分斷狀態의 變化가 있을수 없다고 한것은  
統一의 可能性을 부정한 말입니다.

獨逸聯邦共和国은 武力에 의한 統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解放後 어떠한 聯邦政權도 統一을 政策을 確固히 하고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憲法前文 역시 이를 明文化 하고 있습니다.

基本條約에는 東西獨의 完全한 外交關係를 規定한것이 아니라, "特殊性의 関係"라고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트만 博士가 그렇게 말함으로서 自己党을 위하여는 좋 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가장 잘못된것은 그가 基本條約에 대한 違憲与否判断을 내려야 할 判事로서 이와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홀즈教授는 党財政支援에 대한 判示를 내려야 할때 判示以前에 學說論難에서 이問題에 대한 論文을 發表했다고 해서 廷견우려를 理由로 忌避당했습니다.

이같은 事實이 로트만 判事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質問합니다.

1. 이미 裁判官으로서 忌避당한 것이라는것을 確信했기 때문에 그같은 發言을 했는가?
2. 그는 그렇게 말을 하므로서 그의 態度와 法院이 不信을 당하고 그의 명예가 損傷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가?
3. 또는 自己가 公開席上에 나타나는 것이 政治家로서의 出発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난 것인가?

以上과 같은 공공연한 發言이 얼마나도 危險한 장난인가는 내일  
이면 社民黨所屬 聯邦憲法裁判所 裁判官이 社民黨支部党에서 講演을  
할 수 있고(社民黨支部党이 主催하는 講演場에서) 또 다음날은  
기민당 所屬裁判官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는 境遇 結果는 뻔한 것이며 聯邦憲法裁判所는 終止符를 찍어야  
한다.

Gerold Benz

#### IV. 칼스루해 自民党 支部党 委員長 레벨거博士의 讀者의 편지

(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 1973.5.8 日字 )

“法的으로 옳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칼스루해 出身 国會議員 Benz는 지난 金曜日版 読者의 난을  
通하여 로트만判事의 講演要旨를 통박했다.

이에 대하여 칼스루해 自民黨支部党 委員長 레벨거 博士가 意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벤즈너는 우리党이 主催하는 公開席上에서 聯邦憲法裁判所 判事が  
最高의 論難꺼리인 法的問題를 피력했다고 독자난을 통해 야유했다.

만일 聯邦憲法裁判所가 이問題를 取扱한다면 이는 裁判官 기피에  
該當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主張은 聯邦議會 國會議員으로서 法의 無知를 나타  
낸 것이다.

1970 年 議会는 該當事件審議에 対한 學問的인 見解 發表는 法官忌避要件인 “연관”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立法했기 때문이다.

以外의 問題는 즉 独逸帝国이 國家法의으로 오늘날까지 存続하고 있는가라는 法的問題는 벤즈議員自身이 憲法學을 공부해서 判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境遇는 자작적인 學問的 見解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法官이 公開席上에서 法的問題를 出力하므로서 聯邦憲法裁判所가被害를 입었을 것이라는 主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過去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裁判所의 名譽가 毀損 된적이 없기 때문이다.

聯邦國會議員으로서 그런 말을 한것이 오히려 聯邦憲法裁判所에 被害를 갖다준 것이다.

찰스루히 自民党支部党 委員長

Horst Rehberger 博士

#### V. 바이에른주政府에 보내는 聯邦憲法裁判所의 書信

1973 年 5 月 28 日

聯邦憲法裁判所

1973.5.28.

합의 2부

2 BvQ1 / 73

바이에른州政府

首相 貴下

문 헨

案 件; 1972 年 12 月 21 日 署名한 東西独基本條約法에 对한  
違憲審査

- 仮処分申請 -

1973 年 5 月 28 日字의 바이에른 州政府의 忌避申請에 对하여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 博士는 다음과 같은 公的見解를 밝힌  
다.

내가 편견이 있었다고 느끼지도 않으며 편견인 적도 없습니다.

1973 年 4 月 27 日 本人은 非公開 自民党 칼스루해 支部党大会  
에서 基本條約의 内容과 西伯林에 对한 4 大強大国協定에 관한  
講演을 가진 바 있습니다.

伯林에 对한 4 大強大国協定 内容에 관하여는 本人이 이미 지난  
学期에 기센大学校에서 講義한 바도 있습니다.

上記 党大会에서 基本條約의 違憲여부에 对하여는 전혀 말 한바  
가 없습니다.

내가 또한 그런 강연을 했다면 시청자 自体도 흥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主催者の希望에 대하여本人은 내가 聯邦憲法裁判所 判事이며  
합의 2부의 裁判官이기 때문에 基本條約의 違憲与否에 대하여는 事  
前에 發表 할 수 없다는 것을明白히 상기시켰습니다.

忌避申請人이 들고나온 新聞報道는 나의 講演內容과 一致되는 것  
이 아닙니다.

많은 청중들의 見解가 討論을 通하여 옳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新聞에 報道될 어떤 理由도 없었습니다.

貴下의 忌避申請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火曜日 10時까지 기다  
려야겠습니다.

副院長

Seuffert.

VI. 1973年5月29日字 바이에른州首長의 書信

바이에른州首長

1973.5.29 9時30分

聯邦憲法裁判所 副院長兼

第2合議部 裁判長 貴下

案 件 ; 仮処分申請과 基本條約法 違憲与否審查에 对한  
法官忌避申請

AZ.2 BVQ1/73 1973.5.28 서신에 대한 답신

바이에른 州政府는 로트만 判事의 問題의 発言에 대한 情報를 앞서 指摘한 新聞紙上과 이와 関聯된 国會議院 벤즈 및 그의 意見을 통박하는 自民党 칸스루해 支部党 委員長 레하벨그氏 等의 読者投告欄을 通하여 알았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忌避申請은 이 같은 事實에 立脚한 것이며 이와 関聯된 로트만判事의 公的見解에는 言及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바 입니다.

新聞의 報道와 이를 부정치 않았던 事實로 미루어 보아서 로트만 博士가 独逸聯邦政府의 동방정책에 대한 國際法의 및 憲法의 結論을 내렸으며 이는 過去憲法裁判所 判示가 憲法의으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忌避申請을 낸 것입니다.

타면에 있어서 그는 東邦政策을 公開的으로 번호 했으며 환영하여 政治的으로 호의적 평을 다 했습니다.

東西獨基本條約은 聯邦政府의 東邦政策의 基本的 政策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聯邦憲法裁判所 裁判官으로서의 見解는 “현전”이 念慮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이에른州政府 首相

名譽博士 クエル

VI. 1973年 5月 29日 聯邦憲法裁判所의 決定

- 2 BvQ. 1/73 -

聯邦憲法裁判所

- 2 BvQ. 1/73 -

審議件

国民의 이름으로 1972年 12月 2日 署名한 東西独基本條約에  
對한 反处分申請과 関聯된 로트만 裁判官에 对한 忌避申請을 处理  
한다.

忌避理由 “편견”이 意願됨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2部

関与判事

当裁判所 副院長兼 合議

2部 裁判長 Seuffert

関与 判事

博士 V. Schlabrendorff

博士 Rupp

博士 Geiger

Hirsch

博士 Rinck

Wand

1973年 5月 29日 決定

忌避申請은 理由없다.

理 由

I.

1. 바이에른 州政府는 로트만판事が 裁判에 參与하는 것은 裁判決定에 “편견”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1973年 5月 28日 그를 忌避했다.

忌避理由는 다음과 같다;

1973年 4月 28日字 Badische Neuesten 新聞에 依한다면 上記法官이 自民党 칼스루해 支部黨이 招請한 講演에서 東邦條約에 따른 独逸의 法的狀況에 관해 意見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의 意見이 裁判에 “편견”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949年부터 1963年 까지의 政治가 独逸分斷을 實質的으로 承認하므로서 分斷의 基本이 된 것이며 이것 역시 当時의 現實政策인 것처럼 오늘 締結된 東邦 역시 마찬가지로 現實政治だ 라고 그가 主張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独逸聯邦共和國과 独逸民主共和國은 서로서로 主權國家다. 兩獨關係는 國際法의 關係다. 基本條約에는 完全한 外交關係를 맺도록되어 있다.

聯邦政府의 東方政策은 欧羅巴 平和를 위한 기여다。以上과 같은 發言의 核心은 政治的인 面이기 때문에 联邦憲法裁判所法 第18条3項 第2号의 例外構成要件에 저촉되지 않는다。

2. 忌避當한 法官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를 말 했다。

그는 上記 講演場所에서 基本條約內容과 西伯林에 관한 4大強大國協定에 대한 紹介講演을 했다。이 問題가 憲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主体者의 간청이 있었으나 그에게 자기는 联邦憲法裁判所 合意2部裁判官으로서 그에 대한 見解를 裁判前에 밝힐하는 것은 禁止라고 뚜렷이 밝혔다。신문지상보도 내용은 自己의 發言과 거리가 멀다。新聞에 보도된 内容의一部는 그곳에 參与한 방청객과의 討論에서 있었던 일이다。그러나 나와는 関係가 없다。

本裁判部는 바이에른州政府에게 이판시에 대한 見解를 피력할機會를 부여한다。

## II.

申請은 理由없다。

1. 한法官의 中立性이 의심스러울만한 合理的 理由가 있을 때는 联邦憲法裁判所法 第19条에 따라 忌避는 効力を 발생하는 것이다。

忌避당한 法官이 実質的으로 中立의 되지 못하거나 또는 偏見  
적이어야 함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偏見이 있다고 하기를 要하는 것도  
아니다.

決定的인 것은 法官의 客觀의이며 事前發言이 아니라는 疑心이  
갈만한 原因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2. 이와같은 價值評価에서 聯邦憲法裁判所法이 構成要件을 規定  
할때 特別한 測定을 前提로 한것인가에 對하여도 考慮 해야 한다.  
즉 가문도 어떤 一定한 정당소속도 그리고 立法當時에 立法에 參  
与한 境遇도 또는 學問의 發言의 境遇도 그法官을 제척시킬 正  
當性이 없다(聯邦憲法裁判所法 第18条 2項 및 3項). 이原則은  
역시 "偏見"이 우려되는 境遇도 適用된다.

3. 聯邦憲法裁判所法에 따라 한法官이 忌避當할때는 審判에  
影響이 간다. 즉 8名의法官에 依하여 審判해야 하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이는 審判決定에 있어 多數決議에 影響을 준다.

8名의法官이 있었더라면 즉 한명이 기피당 하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결과가 된다.

그것은 欠員된法官의 수를 補充할 수 없기 때문이다.  
聯邦憲法裁判所와 그에 屬하는法官은 特別한 知識을 要하고  
議會에서 選出된 憲法裁判所의法官은 政治的으로 中立性을 要한다.  
憲法과의 関係를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憲法裁判所의法官은 信任  
이 두터운 것이豫想되고 偏見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期待된다.

4. 이상 3의 要件이 認定되면 은 巴이에른 州政府가 主張하는 바와 같은 편견은 있을수 없다.

忌避申請을 받은 法官은 自己는 基本條約의 違憲性 与否에 對하여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主張했다.

基本條約에 對한 紹介정도에 불과하고 政治的 發言이 核心이 되어 있는 法官의 講演을 가지고 "편견"이 있을 念慮가 있다고 判断할 程度는 되지 않는다.

E. 1973年 6月15日字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  
博士에 對한 巴이에른 州政府의 忌避申請에 関한  
節次

1. 1973年 6月15日의 巴이에른 州政府의 申請

바이에른 州政府首長

1973.6.15 14時 50分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第2部貴下

案 件 ; 基本條約의 違憲 与否에 관한 審議申請

- 联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博士에 对한 忌避申請誌件 -

日刊紙 "Die Welt" 1973年 6月14日字에 依하면 联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オット만 博士가 1973年 5月7日 칼스루해市議員 구트만에게 自己는 判例에 影響이 잘 程度의 発言 한적이 없다는 書信을 發送한 것으로 되어 있다. 州政府는 "현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名譽博士 韓國人

바이에른 州政府首長

II. 1973年 6月14日字 "Die Welt" 紙의 報導

憲法裁判所 判事 ロオット만博士가 新聞記事를 確認 했음。

문행 6月13日

裁判에 "현경"이 있을 意願가 있다는 理由로 联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박사가 바이에른 州政府에 依하여 忌避당한 바 있는데 오늘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ロット만 博士의 書信에 依하여 새로운 난관에 빠졌다.

1973年 5月末에 ロオット만 判事が 忌避당한 理由는 칼스루해 自民党支部党에서 基本條約에 관한 講演때문이었으며 이런 事實이 그地域에서 發刊되는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가이를 報道하는데 연유했다. 同紙의 보도에 의한다면 ロット만博士가 여러가지

말중 問題가 된 것은 東西獨은 相互 主權國家다.

東西獨의 法的 関係도 國際法의이다 등이었다. 聯邦憲法裁判所는  
로오트만 判事が 자기는 基本條約의 違憲性 与否에 대하여 말한적  
이 없다는 公식적 견해를 듣고 바이에른주政府의 忌避申請을 기각  
했다.

1973년 5월 7일 칼스루에 市議員 구트만씨에게 로트만判事는  
그의 發言 全文을 作成하여 發送했다.

이書面에서 자기는 자기 발언에 对한 個個問題에 对하여 論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独逸諸國이 國際法의으로 어떤 狀態에 있는가  
에 对하여, 한国家의 存續에 对한 決定은 法院이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國家共同体가 判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5년 내지 20년전에 나온 法律理論은 유감스러우나 政治的 現實  
主義에 따라 사장되었다고 말 했다.

繼続 그는 기민당과 사민당은 1949年부터 独逸問題에 对하여  
국민앞에 政治的事實을 읊폐시켰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러나 사민당  
은 이런 짓을 断念했다. 자민당도 사민당과 유사하나 그러나 자민  
당이 野黨이기 때문에 아직 不確実하다.

分斷된 両獨逸은 固定化된 것이다.

獨逸이 統一되어야 한다는 부르짖음 가지고는 両獨의 永久分斷을  
막을 수는 없다고 끝을 맺었다.

III.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구트만 博士가 칼스루해 市議員 구우트

만에게 보낸 書信

구트만 貴下

1973. 5. 3.

75. 칼스루해

尊敬하는 구트만씨!

祖国의 問題는 나처럼 貴下에게 関係되는 것이기 때문에 1973  
年 4月 28 日字의 貴下의 片紙에 對하여 事實을 確認할 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답변도 하겠습니다. 新聞報道 内容은 完全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2時間에 걸쳐 講演을 했으며 新聞報道 보  
다 조심스러히 했던 것입니다。

新聞報道는 어느정도 事實입니다.

神話와 같은 소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診斷을 한結果 암이라는 結論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希望이 없다  
는 말을 한 의사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家族을 슬프게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볼때 여기에  
의사가 무슨 責任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貴下는 理解하리라고 믿습니다.

國家法 理論을 根拠로 國家를 診斷해 보니깐 그 國家의 生命이  
없어져 죽었다는 結論은 곧 그 國家가 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

였으며 그렇다고 하여 統一政策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明確한 事実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날의 國内外情勢속에서  
생각하여 볼때 東獨의 国家秩序를 없애버리고 그 東獨을 聯邦共和  
國속에 흡수시켜 統一을 이룬다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내  
렸다 해서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나는 貴下의 見解를 尊重합니다.

貴下의 質疑內容은 聯邦議會議院 벤츠氏가 読者欄을 通하여  
質疑한 内容과 같습니다. 그 内容은 政治的希望 事項입니다.

貴下의 書信內容이 말하는 政治的 希望 事項을 1949年 부터  
자민당과 사민당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런 政治의 結果는 国民을 冷戰속으로 휘밀리게 하여 国民들을  
참화속으로 이끌고 갔으며 따라서 国民에게 연막전술만을 썼던  
것입니다.

그후 사민당은 이런 政策을 断念했습니다.

기민당 역시 사민당이 断念한것과 유사하게 断念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야당이된 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不確実  
합니다. 다음의 몇가지는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獨을 흡수하는 前提下에서 統一을 이루겠다는 聯邦政府와 같  
은 国家는 独逸聯邦共和國을 除外하고 이 지구상에 없읍니다.

伯林條約의 当事者인 4大 強大国 역시 東西獨의 통일을 원하지  
않읍니다.

드골대통령이 아데나워首相時節에 가장 철친한 친구였으니다만은 그 역시 分斷은 明確한 事實이라고 했습니다.

아데나워時代의 基督教民主党은 美國을 위시로 하는 친서방정책을 썼습니다.

이에 反對하는 사민당의 정책을 뿐리친 아데나워는 이런 政策만이 東西獨의 統一을 可能케한다고 主張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친서방정책이 곧바로 統一政策이 었읍니다. 東獨의 實力者들이 統一을 真情으로 원한적이 없읍니다.

두개의 分斷国家는 보다 견고히 되어갔고 雙方이 敵對關係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狀況下에서 아무리 統一을 부르짖어 보았자兩獨의 分斷을 解決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認定치 않고 独逸統一을 부르짖는자가 있다면 그것으로서 充分치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겠습니다.

진정으로 統一을 원한다면 먼저 分斷의 固定化를 緩和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東方政策입니다.

이 政策의 結果는 過去 어느때보다도 西伯林의 安全을 갖다주었으며 独逸聯邦共和國과 西伯林을 위한 國際的 치위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充分한 것은 아닙니다. 独逸民族의 '國家的' 危險除去와 独逸國家의 '法的地位'에 관해 充分치가 못하겠금 타협되어 있으니깐요

끝으로 賢下의 書信에 对하여 몇 가지 말씀 을릴까 합니다.

우리의 祖國을 統一시 켜야 할 欧羅巴的 委務는 없읍니다。 独逸國土가 도둑당한것은 國際政治上에서 볼때 敗戰에 대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伝統的인 刑罰입니다。

히트려는 폴란드를 分離 시켰읍니다. 分離시킨 폴란드의 國土를 헛틀려는 独逸에 合併시켰읍니다.

이와같은 히틀려의 行為는 폴란드 国民의 자결권을 無視하고 단행한 처사입니다. 이와같은 히틀려의 처사가 그로부터 始作하여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國際政治에서는 左右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振子는 우리를 강타 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역습을 당한 것이지요.

歷史的으로 보아서 바이마르共和國時代에 負担을 갖다준 “포기政策”이란 말은 낡고 병든 政策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使用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바로 統一을 抛棄하는 抛棄政策을 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國家의 이해를 위하여 이를 實現키위한 努力を繼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聯邦憲法裁判所의 機能을 위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独逸帝國이 持続되어 있다 지속되어 있지 않다는 聯邦憲法裁判所의 判示가 世界政治를 变動시키지는 못 합니다.

한 国家의 存続의 決定은 한 法廷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国家의 存続은 國際國家社會가 決定하는 것입니다. 보다 두렷이 말씀을 리겠습니다. 한法廷의 判決은 15년 20년전에 나온 法理論을 根拠로 한 것입니다.

이 낡은 理論은 政治的 現實의 發展에 따라 유감스러우나 아무런  
效果도 나타 내지 못합니다.  
以外에도 나와같이 繼統 討議 하실려고 한다면 줄거리 討議에  
応하겠읍니다.

貴下의 健闘를 빌면서

S. 로트만 올림.

IV. 1973年 6月 15日의 聯邦法務長官에게 보내는 聯邦憲法裁判

所의 書信

聯邦憲法裁判所

1973. 6. 15. 19時 50分

合議 第2部

2 BvQ1/73 과 2BvF1/73

聯邦法務長官 貴下

본

案 件; 基本條約法에 関한 連憲審查·申請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博士의 忌避申請誌件-

1973年 6月 15日字의 바이에른주政府의 忌避申請 理由書

1973年 5月 28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博士의

功績見解에 관한 書信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マン博士가 구트만氏에게 発送한

書信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マン博士는 1973年 6月15日字의 바이에  
른주政府 忌避申請에 对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밝혔다;  
判事忌避의 理由인 “偏見”이 있다고 할지 안할지에 对하여 合議  
部가 審議하여 달라는 1973年 6月15日字의 바이에 른주政府의  
書信에 对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本人은 밝힌다.

1. 1973年 5月28日 本人이 言及한 말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2. 1973年 5月7日 구투만씨에게 發送한 나의 書信은 공적  
이 아니라 사적인 書信으로서 1973年 4月28日字의 구투만氏의  
사신에 对한 답신이다 (두현지 모두가 合議部에 提出되어 있음).  
나는 구투만씨의 政治的 見解에 상반되는 書信을 作成 그에게 發  
送 했다. 同書信은 独逸諸國의 國際法의 存続与否에 对한 구투만  
씨의 非難에 对한 答信이었다.

내가 公적으로 나의 見解를 밝힌 書信에서 問題된 新聞의記事  
는 내가 행한 講演內容과一致하지 않는다고 밀했다.

나는 長時間을 두고 伯林協定과 基本條約의 内容에 对하여 이야  
기했고 新聞紙上에 報道된 内容은 討議에서 나온 말에 不過하다.  
구투만氏는 나의 講演을 指導 않고 歪曲된 新聞報道를 믿으면서  
나에게 非難의 書信을 보낸것은 不當하다. 내가 다시 한번 強調  
하고자 하는 것은 同講演場에서 憲法과 關係되는 부문은 일체

言及한바가 없고 取扱도 하지 않았다는 点이다.

合議部의 要請에 따라 나에게 던진 質疑에 다음과 같은 答信을 보낸다.

4大強大国 伯林協定과 基本條約內容에 对한 나의 講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한시간 반에 걸쳐 1945年부터 4大強大国伯林協定이 締結될 때까지의 伯林의 變遷過程에 대한것, 4大強大国協定後의 伯林의 法的地位, 独逸聯邦共和国과 西伯林과의 関係, 東獨과 関係되는 東伯林의 法的地位 등에 대하여 講演을 했다. 이때 나는 4大強大国協定에 따른 西伯林安全保障에 对한것과 새로운 協定에 따른 伯林과 関係되는 政治的關係 및 独蘇와 독일 폴란드간에 締結된 条約에 대하여 말을 했다.

東西独往来에 对한것을 重點으로 하는 兩獨과의 関係를 1949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現況에 对해 說明한바 있다.

이 말을 하는 도중 이것과 関聯도 基本條約內容과 同條約에 나타난 東西独往来來에 对해도 言及했다.

2.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가 1973年 4月28日에 報道한 내용은 내가 말한것이 아니라 그곳에 參加한 청중들이 討議席上에서 한 말을 내가 한것처럼 報道한 것이다.

合議部가 나에게 내준 質疑는 1973年 5月28日字의 나의 見解와 아무런 関係가 없는 것이다. 1973年 5月28日字의 나의 公式的見解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質問과 다르다.

1973年 5月 28日 다음과 같아 言及했다;

問題된 同新聞의 記事內容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聽衆들의  
討議에서 聽衆들이 말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나의 講演內容과 新聞報道의 相致는 제일질문에 对한 다음과  
같은 答弁이 된다.

新聞의 報道內容은 나의 講演과 無関하며, 記事取扱者の 関心있는  
部門만 報道한 것이며 내가 말한 점은 거의 기사화 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옳지가 않다.

新聞이 記事化한 어떤部門은 나의 말과도 関係가 있으나 그러나  
청중들의 討議內容과 混合시켜 拡大시킨 글이다.

新聞記事의 題目은 내가 한 말이다.

첫文章과 마지막文章은 청중들의 討議에서 나온 말이다.

나는 事實만을 말했으며 어떤 結論도 내린 바 없다.

3. 내가 구투만씨에게 쓴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1973  
年 5月 28日字의 나의 見解表明에 对하여 말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新聞의 記사는 옳지 않다. 그 記事는 나의 講演內容과 다르며  
청중들이 한 말을 記事化한 것이다.

이 問題에 对하여는 나의 첫번째 公式 解明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구투만氏는 나의 講演을 들은 바 없다. 그는 新聞報道를 토대로  
나에게 質疑했다. 이런 質問에 对하여 내가 答弁할 必要는 없었

으나 新聞報道를 토대로 내가 答弁했다.

私信에 对한 私的答信을 공적견해에 関聯시켜 質問을 한다는 것은 正當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審判이 進行되도록 나는 質問에 答弁했다. 또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 것은 나의 私的領域의 問題를 가지고 質問을 拡大하여 問題삼는다는 것은 正當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博士 ロット만。

여기에 对한 말을 할 수 있는 機会는 1973年 6月16日 오전 8時(土曜日)까지입니다.

副院長

Seuffert.

V. 바이에른 州政府에게 보내는 1973年 6月15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의 書信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第2部

1973年 6月15日 21時10分

2 BvQ 1/73 및 2 BvF 1/73.

바이에른州政府 首相 貴下

문 헌

案 件 ; 東西独基本條約의 違憲審查에 關한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

-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오트만博士의 忌避申請 -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오트만博士는 1973年 6月 15日字의  
忌避申請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發表했음 (앞의 EIV에서  
紹介했음).

이에 對해 答弁할 機会는 1973年 5月 16日 午前 8時 土曜日  
까지 임.

副院長 Seuffert.

VI. 1973年 6月 15日字 独逸聯邦共和国 法務長官의 書信

聯邦法務長官 1973年 6月 15日 23時 50分

聯邦憲法裁判所 副院長兼

合議、第2部 裁判長 貴下

칼스루해

案 件 ; 基本條約의 違憲審查

- 1973年 6月 15日 22時 15分의 書信에 對한 答信 -

(앞의 E IV에 紹介되어 있음)

独逸聯邦憲法裁判所는 1973 年 5 月 29 日의 決定에서 聯邦憲法裁判所의 判事는 政治的으로 争点이 되는 問題를 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事前의 偏見이 있어도 안되어 이려 한자는 同裁判所의 判事が 될 資質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原則을 세웠다. 바이에른州政府에서 제기한 判事의 忌避申請理由는 充分치가 못 하다.

한 法官이 合議部에서 除斥當하므로 因한 合議部의 人的 결합은 結果的으로 判示決定에 至大한 影響을 준다는 結論은相當한 신증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偏見”이 무엇인가에 대한 決定을 내리는 데 가장 適切한 定義라 하겠다(参照 Friesenhan 論文 JZ 1966, 704,706). 이것은 憲法의in 基本秩序問題를 決定함에 重要한 客觀的 方法으로 通한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로트만判事의 事前偏見行為 与否를 審議에 있어서 앞의 原則이 最大로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과 로트만判事의 問題의 發言은 이에 該當될 수 없다고 主張하는 바이다. 上記判事는 1973年 5月7日 구트만氏에게 보낸 書信속에서도 基本條約의 違憲與否에 關한 法的 問題는 일체 다루지 않았다고 評価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政治的으로 말 했을 따름이다. 그의 書面을 全体的으로 볼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도 發見할 수 없다. 그는 上記書信이나 또는 問題된 新聞記事에서 具體的인 個別 問題를 다룬것이 아니라 全体的인 흐름을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演說中 어느部門만을 짚라내어 問題를 삼는다면 이는 不當하기

작이 없는 것이다.

이런 評価方法은相當한 조심을 해야 하며 삼가해야 한다.  
로트만判事が基本條約의違憲問題에 대하여 結論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容納할 수 없는事實이다.

그와같은 評価 方法에 대하여 独逸聯邦政府는 反對한다.

政治的發言權은 判事에게도 賦与된 権利다.

구투만氏에 보낸 書信은 1973年 5月 28日字의 로트만判事의  
공무상의 선서다. 그때 그는 基本條約의 違憲与否에 대하여는 말  
한바가 없다고 했다.

同書翰 역시 忌避申請理由가 되지 못한다. 同書翰에서 極히  
적은一部分을 발췌하여 마음대로 기사화한다는 것은 新聞法의으로  
볼때 의심스러우며 憲法審議와는 無關하고, 全體의印面에서 볼때  
“偏見”이라는 것이 成立될 수 없다.

바이에른州政府의 主張은 不當한 非難에 不過하다.

Gerhard Jahn.

#### VII. 1973年 6月 16日字의 바이에른州政府首長의 書信

바이에른州首長

1973年 6月 16日 1時 45分

聯邦憲法裁判所

合議 第2部 裁下

칼스루해

案 件 ; 基本條約法의 違憲審查에 対한 바이에른州政府의 申請  
- 聯邦憲法裁判所 로트만判事에 対한 忌避申請 -

1973年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マン博士의 講演에 対하여 本人  
은 다음과 같은 見解를 밝힙니다;

1. 구투만씨에게 보낸 1973年 5月7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 博士의 書信을 순수한 사적서신이라고 생각지 않음니  
다.

a) 同書信은 公共集회와 関聯되었으며 그 集会에서 聯邦憲  
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 博士가 演說한 것이며 그의 講演內容은  
Badische Neueste Nachrichten紙의 것과 같고 이에 対하여 読  
者觸에서도 指摘된 바 있습니다.

b) 同書信에는 発信의 住所가 聯邦憲法裁判所의 住所와 個人  
의 住所가 모두 記載되어 있습니다.

2. a) 1973年 5月28日字의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  
博士의 公的 書翰에도 同新聞이 자기講演內容과 "가까움지가 않  
다"고 再次 主張했음을니다.

b) 오늘에 이르러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ロット만 博士가 明  
確히 말을 하고 있는데… 新聞에 報道된 内容中一部는 틀리지  
않았다. 그 内容은 나의 말과 청중들의 討議內容을 합쳐 拡大한

것이다 라고….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事實을 부인한다는 것은 法官의 信賴만을  
추락시키고(参照 1973.5.29. Nr BvQ 1/73). 이로 인하여  
“偏見”이 念慮된다는 理由成立에 充分性이 있다.

c) 上記新聞의 編輯局은 1973年 5月 29日字의 바이에른州  
政府에 보내는 書翰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 즉 新聞報道內容은  
나의 講演要旨와 같지 않으며 그報道의 内容은 聽衆들의 討議에서  
나온 말과 같다는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의 말에 正面으로 반  
박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항변이 없다 하더라도  
客觀的으로 明白한 事實이다. 客觀的인 判断이란 레벨거博士와  
벤즈 議員의 投稿內容이다.

自民党 칼스루해 支部長이며 칼스루해 市長인 레벨거博士도 그의  
본지 投稿欄에서 “正確히 報道한 同記事는…” 했다. 또한  
1973年 5月 4日字의 本紙 投稿欄에 聯邦議會 國會議員 벤즈씨가  
演士의 發言에 对하여 헐란한 비판과 質問을 가했는데도 이에 对  
한 答信이 一切 없었다는 것은 이를 立証한다”…

3. 그가 政治的 發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發言이 청중의  
心情을 굳혀 준것으로서 “偏見”이 있다고 充分히 말 할 수 있다.

4. 바이에른 州政府는 새롭히 어떤 証拠을 가지고 偏見을 主張  
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한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한번 公公연하게 法官의 信賴  
가 疑心스럽다고 抬頭된 以上 그것만으로도 充分히 “偏見”이

있다는 念慮에 該當될 수 있다고 본다.

5) 바이에른 州政府는 聯邦憲法裁判所가 正當한 判示를 해 줄것을 期待한다.

바이에른 州政府首相

名譽博士 끔펠

VIII. 1973年 6月16日字 聯邦憲法裁判所 決定

-2 BvQ 1/73, 2BvF 1/73 -

聯邦憲法裁判所

国民의 이름으로

1942年 12月 21日 東西独間에 署名한 基本條約批準効力에 对한 仮処分申請과 違憲審查申請을 심의함에 있어 이와 関聯하여 바이에른 州政府가 제기한 聯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博士에 对한 忌避申請을 決定한다.

판여判事

副院長兼 裁判長

Seuffert

博士 Dr. Schlabrendorff

博士 Dr. Rupp

博士 Geiger

Hirsch

博士 Rineck

Wand

로트만判事에 对한 忌避申請은 理由 있다.

### 理 由

1. 联邦憲法裁判所는 1973年 5月 29日 判示를 통해 바이에른州政府가 提起한 联邦憲法裁判所 判事 로트만博士에 对한 忌避申請을 理由없다고 파기 한적이 있다.

2. 1973年 6月 15日 바이에른州政府는 로트만博士가 1973年 5月 7日 구트만씨에게 発送한 書信內容을 理由로再次 忌避申請을 했다.

同書信은 Badische Neueste Nachrichten 紙의 報道內容을 事實과 다르다는 理由를 들어 否定한 것과는 달리 어느 程度 시인 되어 있는 書信이었다.

同書翰의 重要骨字는 다음과 같다.

本人도 貴下가 念慮하는 것처럼 国家問題에 对하여 念慮하는 바 이므로 貴下의 書信에 对하여 자세히 答弁할까 합니다. 問題된 新聞記事의 部分的 보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두시간에 걸쳐 講演을 했으며 따라서相當히 조심했던 것입니다.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新聞報道의 内容이 나의 主張과 一致되는 部分  
도 있읍니다.

내가 우화같은 소리 한마디 하지요.

医師가 한 환자를 診斷하여 보니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医師가 診斷의 結果를 그 患者的 家族에게 알리면서 希望이 없다고 말 했다면 그의 家族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 医師는 암에 어떤 責任도 질수 없읍니다. 그以上의 것이지요 즉 그医師가 암이였기를 希望한것도 아니지요. 本人이 왜 이와같이 말씀 올리는지 貴下가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法理論에 따라 独逸第3帝國이 滅亡했다는 말은 하나의 診斷입니다.

이것이 그 独逸帝國이 滅亡하기를 希望한 것이라고 끌어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独逸統一政策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独逸民主共和国을 滅亡시키고 그東獨을 西獨이 吸收하여 統一을  
成就시키겠다는 오늘날의 政策은 不可能 하다는것이 이런政策을  
활용하고 싶지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本人은 貴下의 고견을 尊重합니다.

벤츠国會議員이 나를 반박하는 投稿記事에서 말한 政治的 希望과  
같은 그런 希望을 貴下께서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本人은 反  
对하는 바 입니다.

그와같은 政治的希望은 1949年부터 基督教民主党과 社会民主党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政治的 希望속에서 政治를 했으나 結果는 国民을 참화로 이끌었고 안개속으로 이끌고 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부터 작성율 한 사민당은 이런政策을 斷念했읍니다. 60年代에 이르러 기민당도 사민당과 같이 断念한듯 합니다. 그러나 기민당이 야당이 된후부터였다는 것을 생각할때 아직 야당으로 남아있는 한 不確実 합니다.

몇가지점에 대하여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独逸聯邦共和国이 独逸民主共和国을 吸收하는前提下에서 統一을 하겠다는 나라는 独逸聯邦共和国을 除外하고 이地球上에 또 없읍니다.

伯林協定의当事者인 4大強大国 역시 東西獨의 統一을 希望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겠읍니다.

슬픈 일이나 東西獨의 統一은 希望事項에 不過하다고 佛蘭西의 大統領 드플이 말했읍니다.

그가當時에 아데나워首相과 가장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지요.

東獨은 統一을 진정으로 원한적이 없읍니다. 아데나워政府는 親西方 일변도의 政策을 써 왔읍니다. 그것이 統一의 걸이라고 생각했지요.

兩獨의 分斷은 보다 堅固해져만 갔읍니다. 아무리 統一을 할려는 努力과 希望이 있어보았자 分斷을 막을길이 없었읍니다. 希望事項 가지고는 어쩔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실증이지요.

獨逸은 統一되어야 한다는 主張만 가지고는 充分치 못 하다는 것입니다.

結論的으로 말 하여보자면 獨逸을 統一시킬 欧羅巴의 義務는 없습니다.

敗戰하면 國土를 빼앗긴다는 것이 伝統의 国際政治刑罰입니다.

헛틀려 역시 勝戰의 대가로 블랜드의 땅을 빼앗아 獨逸帝國에 合併시켰습니다.

聯邦憲法裁判所의 任務는 法的 診斷입니다. 이는 15年 내지 20餘年前에 나온 낡은 理論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法院이 国家의 消滅이 있다고 해도 国際政治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實質的으로 国家는 存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法理論이란 별로 問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以外에도 賁下가 繼續 討議할 용의가 있다면 즐거히 応하겠읍니다.

忌避당한 로트만博士는 州政府의 見解에 対해 다음과 같은 答信을 했다. (앞에 紹介했음).

II. 上記判事의 發言內容을 불례 반드시 政治的問題에 局限시킬것이 아니라 法的問題도 言及되었다는 것이 上記書信에 依하여 確認되었다. 그의 法的部門이 될만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獨逸諸國은 國際法의으로 完全 消滅했고 東西獨은 서로가 主權國家로서의新生國家다.

兩獨關係는 國際法의 関係에 놓여 있으며 完全한 外交關係樹立이豫想된다. 이와같은 発言은 裁判에 影響을 줄 “偏見의 念慮”가 있겠다고 볼 수 있다.

